법부 검사국 기안

법부 형사국 기안

법부 사리국 기안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

법부 검사국 기안
法部 檢事局 起案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법부 사리국 기안
法部 司理局 起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발간사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 중심에서 벗어나 만민 평등을 지향한 한국 민주주의의 시원이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전국적인 구국 항쟁이었습니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정치적 혼란을 거치면서 동학란(東學亂), 반란 사건 등으로 왜곡·축소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1994년에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그 흐름에서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발굴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2023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사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 유실(遺失)·멸실(滅失)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이 전개되면서 흩어져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를 모아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전 30권)가 발간되었으나, 한자 원문으로만 되어 있어 일반인이 쉽게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번역사업을 시작하여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6권, 2006~2008년)를 간행한 데 이어, 2010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7~13권, 2010~2015년)와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권~16권, 2015~)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하는『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법부 자료에 실린 동학농민군의 재판 기록을 발굴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수록된 사료는 법부 검사국, 법부 형사국, 법부 사리국에서 작성한 기록물로서, 동학농민군의 사건 파악과 처벌 수위 등을 상세히 알 수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인물은 물론 참여자로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의 활동상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번역본은 동학농민군의 재판 기록을 번역한 번역본 외에 원문과 영인본을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어디서나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에도 탑재하였습니다.

끝으로『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이 나오기까지 자료 수집과 번역, 교정·교열·감수에 참여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김 양 식

일러두기

1. 수록 자료 및 체제
   1) 자료 성격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법부(法部) 자료에 실린 동학농민군 재판 기록
   2) 대상 자료 : 동학농민군 재판 기록 3종의 사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 법부 검사국 기안(法部 檢事局 起案, 1895~1899년)
      - 법부 형사국 기안(法部 刑事局 起案, 1895~1899년)
      - 법부 사리국 기안(法部 司理局 起案, 1899~1905년)
   3) 체제
      ① 체제는 번역문, 원문, 영인본 순으로 구성하였다.
      ② 목차는 원본의 내용 순서에 따라 일부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③ 내용은 원본의 문서 체제를 그대로 따르되, 일부 변형하였다.
      ④ 책의 첫머리에 독자의 편의를 위해 수록 자료의 해제를 실었다.

2. 편집 원칙
   1) 동학농민군을 지칭하는 용어는 원문 그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대어로 다듬고 고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국한문 병용을 원칙으로 하되, 반복되는 용어는 한 번만 국한문 병용을 적용하였다. 또한 간단한 용어 해설은 함께 표기하였다.
   4)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로, 긴 역주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5)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6) 번역문에서 쓰인 주요 기호는 다음과 같다.
      ① “ ” : 1차 인용
      ② ‘ ’ : 2차 인용
      ③ ■ : 원문에 글자가 있으나 안 보이거나 번역 불능인 것을 표시한다.
      ④ ( ) : 일부 한자 원문을 병기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내용 설명한 것을 표시한다.
      ⑤ [ ] :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경우 또는 일부 한자를 병기하거나, 문맥상 구분이 필요할 때 표시한다. 괄호 안에 괄호가 있을 경우 바깥 괄호로 사용한다.
      ⑥ 소자(小子) : 원문에 있는 작은 글자와 괄호 안에 글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작은 글자로 표기한다.

3. 기타
   1)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책 말미에 인명, 지명 등에 대한 색인을 실었다.
   2) 본 책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www.e-donghak.or.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례

발간사 | 4

일러두기 | 6

해제 | 16

법부 검사국 기안

| 국역 | 원문 | 영인

안(案) 제99호 | 45 | 337 | 4

안(案) 제35호 | 45 | 337 | 4

안(案) 제149호 | 47 | 338 | 5

안(案) 제153호 | 48 | 339 | 5

안(案) 조복(照覆) | 49 | 340 | 6

안(案) | 51 | 341 | 6

안(案) 훈령(訓令) 제107호 | 52 | 342 | 7

동학도 김재홍(金在洪)을 처단하는 일로
임천군(林川郡)에 관문(關文)을 보내는 건/안(案) | 53 | 343 | 7

충청도 청산현감(靑山縣監)의 첩보(牒報)/안(案) 제54호 | 55 | 344 | 8

충주목사(忠州牧使)의 첩보(牒報)/안(案) 제55호 | 56 | 345 | 9

충주목사(忠州牧使)의 서목(書目)/안(案) | 60 | 347 | 10

청산현감(靑山縣監)의 서목(書目)/안(案) | 61 | 347 | 10

충청병사(忠淸兵使)의 첩보/안(案) 제75호 | 62 | 348 | 10

안(案) 제54호 | 64 | 349 | 11

전(前) 전운사(轉運使) 조필영(趙弼永)을 보방(保放)하는 건/제안(題案)	65	350	11
안(案) 제25호	67	351	12
안(案) 제27호	68	352	13
조필영(趙弼永) 관련	69	353	13
안(案) 제98호	70	353	13
안(案) 제123호/안(案) 제124호	71	354	14
한용건(韓用健), 최석주(崔錫疇), 남춘봉(南春鳳)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이송하는 건/안(案) 제216호	73	355	15
안(案) 통첩(通牒) 제220호 고등재판소 주사(主事) 김사현(金思鉉) 좌하(座下)	74	356	15
최석주(崔錫疇), 한용건(韓用健)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이송하는 건/안(案) 제224호	75	357	16
안(案) 제265호	76	358	16
안(案) 제268호	77	358	16
안(案) 제269호	78	359	17
안(案) 제270호	79	360	17
안(案)	79	361	17
서학(西學)의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킨 일을 외부(外部)에 조회(照會)하는 건	80	362	18
안(案) 제305호	81	362	18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회(照會)하는 건/ 안(案) 제341호	84	364	20
안(案) 제359호	86	365	20
안(案) 제236호	87	365	21

안(案) 제237호 | 87 | 366 | 21
안(案) | 89 | 367 | 22
지령(指令) | 90 | 368 | 22
안(案) 제99호 | 91 | 369 | 23
안(案) 제478호 | 91 | 370 | 23
안(案) 제255호 | 92 | 371 | 23
안(案) 제257호 | 93 | 372 | 24
홍주부 관찰사(洪州府觀察使)에게 훈령(訓令)하는 건/
안(案) 제258호 | 95 | 373 | 24
안(案) 제579호 | 97 | 375 | 25
해주부(海州府)에 지령(指令)하는 건/안(案) 제1호 | 98 | 375 | 25
전주부(全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10호 | 99 | 376 | 26
전주부(全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11호 | 100 | 377 | 27
해주부(海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10호 | 101 | 378 | 28
안(案) 제16호 | 103 | 379 | 28
안(案) 제17호 | 104 | 380 | 29
훈령(訓令) 개성부(開城府) 제10호/안(案) | 105 | 381 | 29
해주부(海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14호 | 106 | 382 | 30
안(案) 제18호 | 108 | 384 | 31
공주재판소(公州裁判所)로 훈령(訓令)하는 건/
안(案) 제25호 | 109 | 385 | 31
해주재판소(海州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안(案) 제20호 | 112 | 387 | 33
해주재판소(海州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안(案) 제23호 | 114 | 388 | 33

안(案) 제36호	115	389	34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40호	116	390	34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50호	118	392	35
안(案) 제1호	120	393	36
경상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15호	122	394	37
예천군수(醴川郡守)에게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1호	124	396	38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회(照會)하는 건/안(案) 제86호	127	397	39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로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114호	130	399	40
한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21호	132	400	41
경상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21호	135	402	42
한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4호	138	404	43
한성부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29호	140	405	44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41호	142	406	45
장성군(長城郡)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호	144	407	45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41호	146	409	46
상주안(上奏案) 건/안(案) 제215호	149	410	47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47호	151	412	48
경상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45호	153	413	48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안(案) 제20호	154	414	49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判事)에 훈령(訓令)을 보내는 건/안(案) 제10호	156	416	50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3호 | 159 | 418 | 51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34호 | 161 | 419 | 52

법부 형사국 기안

황해 병영에 관문을 보내는 건/안(案) | 165 | 423 | 54
탁지부(度支部) 조회에 답하는 건/조회(照會) | 167 | 424 | 55
한성재판소에 통첩(通牒)하는 건/안(案) 제184호 | 168 | 425 | 55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복(照覆)하는 건/
안(案) 제204호 | 169 | 426 | 56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김재홍(金在洪)의 사형(死刑)에 관한 지령 건/지령(指令) | 170 | 426 | 56
충청도 청주영장(淸州營將) 및 청주군수(淸州郡守)가
품의한 바에 따라 비류(匪類) 오일상(吳一相)의 사형(死刑)과
여비(餘匪) 3명에 관한 지령 건/지령 | 171 | 427 | 56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에게 지령하는 건/
안(案) 제3호/지령 | 173 | 428 | 57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가 품의한 바에 따라 비괴(匪魁)
오일상(吳一相)과 여비(餘匪) 3명에 관한 지령 건/
지령 제14호 | 174 | 429 | 57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에 수감되어 있는 김재홍(金在洪)의
사형(死刑)에 관한 지령 건/지령 제13호 | 175 | 430 | 58
임천(林川) 비괴(匪魁) 김재홍(金在洪)의 처교(處絞)에 관한
소단자(小單子) 건/안(案) | 176 | 431 | 58
훈령(訓令) 제17호 | 177 | 432 | 59
한산군(韓山郡)에 지령하는 건/지령 제19호 | 178 | 433 | 59

내각 기록국(內閣記錄局)에 통첩(通牒)하는 건/안(案) 제447호 | 180 | 434 | 60
군부(軍部)에 조회하는 건/안(案) 제454호 | 181 | 435 | 60
군부 대신에게 조회하는 건/조회 제424호 | 183 | 436 | 61
해주부(海州府)에 지령하는 건/지령 제25호 | 184 | 437 | 62
안(案) 제568호 | 186 | 439 | 63
홍주부(洪州府)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1호 | 187 | 439 | 63
군부에 조회(照會)하는 건/안(案) 제4호 | 189 | 440 | 64
동래부(東萊府)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4호 | 191 | 442 | 65
장연군(長淵郡)에 훈령하는 건/안(案) 1호 | 193 | 443 | 65
해주부에 훈령하는 건 제11호/안(案) | 194 | 444 | 66
내부에 조복(照复)하는 건 제19호/안(案) | 196 | 445 | 67
장연군(長淵郡)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2호 | 197 | 446 | 68
군부에 조회하는 건/안(案) 제10호 | 199 | 448 | 68
문건을 상주(上奏)하는 건/안(案) | 202 | 449 | 69
공주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27호 | 204 | 451 | 70
안건을 상주하는 건/안(案) 제18호/처형 죄인(處刑罪人)에 관한 건 | 207 | 453 | 72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4호 | 211 | 456 | 73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안(案) 제5호 | 213 | 457 | 74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안(案) 제6호 | 215 | 459 | 75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안(案) 제8호 | 216 | 460 | 76
상주안(上奏案) 건/안(案) 제7호 | 218 | 461 | 76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 221 | 464 | 78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6호	223	464	79
한성재판소에 조회하는 건/안(案) 제47호	224	466	79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3호	225	467	80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23호	227	468	80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39호	229	469	81
충청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30호	231	471	82
한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139호	233	472	83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23호	237	474	84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78호	243	478	87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1호	245	479	88
충청북도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0호	247	481	88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6호	248	482	89
인천항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1호	250	483	90
경기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11호	252	484	91
경기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35호	254	485	91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33호	256	487	92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73호	259	489	93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74호	263	491	95
문건을 상주하는 건/안(案) 223호	264	492	96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58호	266	494	96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152호	269	495	97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5호	273	498	99
안(案) 제4호/별지(別紙)	274	499	99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5호 | 277 | 501 | 100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3호 | 278 | 502 | 101

법부 사리국 기안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38호 | 283 | 505 | 104
한성부 재판소에 조복(照覆)하는 건/안(案) 제94호 | 285 | 506 | 104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42호 | 286 | 507 | 105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22호 | 287 | 508 | 105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64호 | 289 | 509 | 106
내부(內部)에 조복(照覆)하는 건/안(案) 제5호 | 290 | 510 | 106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13호 | 291 | 511 | 107
전라북도 재판소에 조회(照會)하는 건/안(案) 제1호 | 293 | 512 | 108
전라남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33호 | 294 | 513 | 108
상주안(上奏案) 건/안(案) 제204호 | 295 | 514 | 109
평리원(平理院)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54호 | 297 | 515 | 109
평리원(平理院)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55호 | 298 | 515 | 110
상주안(上奏案) 건/안(案) 제204호 | 300 | 517 | 111
상주안(上奏案) 건/안(案) 제243호 | 301 | 518 | 111
상주안(上奏案) 건/안(案) 제252호 | 302 | 519 | 112
평리원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38호 | 303 | 520 | 112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40호 | 305 | 521 | 113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33호 | 306 | 522 | 113

황해도 재판소에 비밀 훈령하는 건/안(案) 제71호 | 308 | 523 | 114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45호 | 309 | 524 | 114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호 | 311 | 525 | 115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8호 | 312 | 526 | 116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7호 | 313 | 527 | 116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9호 | 315 | 528 | 117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7호 | 316 | 528 | 117
평리원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58호 | 317 | 529 | 118
함경남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14호 | 318 | 530 | 118
평안남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안(案) 제17호 | 320 | 531 | 119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27호 | 322 | 533 | 120
평리원에 훈령하는 건/안(案) 제144호 | 325 | 534 | 121
내부(內部)에 조회하는 건/안(安) 제12호 | 327 | 536 | 122

원문 | 333
영인본 | 539
찾아보기 | 663

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법부 자료에는 동학농민군의 재판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중 검사국(檢事局) 기안(起案)은 1895년 5월부터 1899년 8월까지 법부 검사국에서 각 부, 재판소에 훈령, 지령, 조회한 것과 법부대신의 상주 기안문 등을 묶은 것으로 전 33책으로 되어 있다. 형사국(刑事局) 기안은 법부 형사국에서 1895년 4월부터 1899년 5월까지 기안한 사안을 연월일 순으로 묶은 것으로 전 42권이다. 사리국(司理局) 기안은 법부 사리국에서 1899년 6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중앙 각부, 각도·각항 재판소 등에 보내는 훈령·지령·통첩·조회·조복 및 상주 안건 등의 기안문을 합철한 것으로 전 32책이다.

법부 각국(局) 기안은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는 기간 사법제도, 동학농민군 참여 인사들의 활동과 정부의 사후 처리, 민란과 활빈당·의병을 비롯한 사회변혁과 생존 투쟁·체제 수호를 위한 각종 운동, 동시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사회상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중에는 1894년 이후 동학과 농민군 활동에 대한 문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사의 대부분은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살아남은 경우도 활동 당시와 그 직후에 대부분 체포되어 특별한 심리 과정도 없이 현장에서 처형되는 것이 일상이었다. 반면 법망에서 빠져나가 피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후 1904년 러일전쟁 전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역 공동체 사회의 감시와 지목의 대상이 되었고 체포된 후 판결을 거쳐 처벌되었다.

법부 각국 기안에는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공식 등록된 3,913명에 포함된 인물은 물론 갑오년 이후 이른바 '동비여당(東匪餘黨)'의 지속적인 활동상 및 체포 처형 관련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많다. 동학교도와 동학농민군, 그 지도자, 서학 투탁자, 영학당 등의 체포 수사 및 처벌의 수위, 근거 법률까지 다양한 사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검사국 기안은 용담의 김낙삼 등 49명, 형사국 기안은 해주의 윤덕여 등 15명, 사리국 기안은 고창의 김재호 등 64명의 참여자로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의 활동상도 파악할 수 있다.

1. 법부 검사국 기안

법부 검사국 기안의 동학농민군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 파악, 해당 국의 판단과 기본적인 처리 방안 제시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 전주부 관찰사는 동학의 잔당과 체결하여 군기를 빼돌리고 포고를 써 붙인 박준상 등 6명은 모두 총살하였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도망가 체포하려고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부는 사형 이상을 선보고 없이 처형하는 것은 율례에 어긋나니 앞으로는 미리 보고할 것이며, 나머지는 속히 잡아 처리하라고 훈령하였다.

한편 담양군에서는 같은 동학당인 국홍묵을 살해한 일로 그의 아들 국재봉과 국재준이 복수차 투옥 중인 김형순과 압송한 정인악을 대질한 바 있다. 갑오년 8월 당시 김형순과 정인악 등은 통문을 돌려 수백 명을 모아 국홍묵을 총살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정인악이 토설하자 국재봉 형제는 그를 끌고 가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고종은 "아비를 위하여 복수한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서 그런 것이다"라며 다시 재결하라고 법부에 되돌려 보냈다. 결국 법부는 이들을 고등재판소에 압송하여

성지를 널리 알린 후 국재봉은 징역 10년에 처하고 국재준은 특별히 풀어주라고 훈령하였다.

충청도 임천군의 경우 옥에 갇혀 있는 '비적 우두머리' 김재홍은 범한 죄가 매우 악하고 모질어서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를 인명을 살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한다는 소단자(小單子)를 정서하여 바치라는 지령이다. 군수는 김재홍은 "동학의 무리에 뛰어들어 접주가 되어서는 관청 창고의 군기를 빼앗고, 관속들을 위협하고 도를 강요하였습니다. 또 전봉준의 후장(後將)이 되어서는 마을을 도륙하여 파괴하고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라고 첩보하였다. 이에 법부는 중범죄에 관계되는 것이라 압송하여 처단하는 것이 합당하나 민심을 위로하고 미혹된 무리에게 경고하기에는 고을에서 총살하는 것만 같지 못하므로 즉시 처형 후 전말을 보고토록 지령하였다.

청산현에서 '동학 비도'에 참여한 송치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치삼은 본래 토호로 향촌을 억압하였고 동비들이 창궐하자 팔도도집강(八道都執綱)이 되어 무리를 이끌고 고을을 돌아다니며 약탈하고 시찰관의 친척이라고 사칭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부는 장교와 나졸을 보내서 엄중히 칼과 쇠사슬을 채워서 압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충주 민섬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 원래 토호로 동학 무리의 괴수가 되어 일본 군대에 체포되었다가 요행히 풀려났다고 한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감영에서 장교를 파견하여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고 재산과 벼 포대를 몰수하였다고 법부에 무고하고, 마을 백성들을 붙잡아 채찍질하면서 독촉하는 등 행패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부에서는 장교와 나졸을 정해 압송하여 엄히 징벌토록 조회하였다. 공주군에서는 평택 사는 박서유는 유명한 '동괴(東魁)'로 법망에서 빠져나가 이전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과부를 겁박하여 억울한 호소

가 있었는데도 무죄 방면을 지령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법부는 고등재판소에 분명하게 조사하여 심판하라고 조회하였다.

황해도 동학농민군 관련한 새로운 내용으로 평산의 경우 경무청에서 파송한 순검에게 '동학 죄인' 이용손을 압송하여 좌옥(左獄)에 가두도록 하였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으니 사령을 보내 죄인을 받아 오라는 조회문이다. 법부는 경무사에게 분명하게 알려 특히 엄히 다스려서 해이해지는 폐단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비적 수괴' 박대련·신창식·박기영 등을 체포 조사해 보니 범죄가 심상치 않아 더 심문하여 보고하라는 훈칙과 즉시 처벌할 범죄이면 그렇게 하라는 훈령이다. 은율군의 경우 동학당 김계문·정택근·정관선·김이섭·이경환·이근달·조승찬·사명철·김명학을 포살한 사건을 조사하여 범죄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토록 한 훈령, 이들이 군의 문서와 장부를 불태우고 진상품과 군기를 약탈하여 총살하였다는 군수의 보고문이 확인된다. 법부는 은율군수가 이들 9명을 마음대로 총살한 사건 전말과 처리 과정을 자세히 조사 보고하라고 해주부에 훈령하였다. 한편 법부는 해주부에 재차 훈령하여 강령군에서 체포한 오원경·이봉신은 서울로 압송하되 적용할 법률을 살펴 보고하고, 김영하·오헌근·현학진·조사여·조순승·배동명·연순길·송만영·조붕도·오가인 등 10명은 각별히 엿보아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였다.

경기도의 경우도 농민군이기보다는 동학교도로서의 활동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성재판소에 보낸 법부 조회문을 보면 일본군에게 체포된 광주의 동학도들은 심사 후 방송되었으나 아직도 수감 중인 연노성을 일본 영사관에 조회하여 심의 결정 후 귀농토록 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서는 이천군에서 체포한 이상옥·신명우·김정업·김낙철·권성좌 등을 조사하니 모두 '갑오년 이전에 동학에 물든 동학 비류'로 감옥서에

엄히 가두고 경기재판소로 압송하여 신문 문서를 첨부하고 전말을 보고하라는 훈령이다.

기독교에 투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된 충청도 서천군의 서창길과 유한표의 범죄는 공술 없이 단지 자복했다는 보고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다시 조사 보고하라는 훈령과 이들은 '동괴'로 수사망에서 빠져 달아났던 자로 서학(西學)에 투입하여 전후 못된 행실을 하였다는 조회문이다. 법부는 이들이 허다한 죄상을 자복하였지만 반은 토설하고 반은 삼키는 등 진술에 의혹이 있으니 재조사 후 보고하고, 압송한 서창길과 유한표의 보인(保人) 송병근과 정의중을 엄히 심문 후 옥에 가두고 사정을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 서창길의 경우, "동학 소요 때에 그 무리에 이름을 올려서 관장을 능욕하고 백성을 침학하며 한산과 서천 두 고을을 무너뜨린 허다한 죄상은 군수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 지목하는 바"였지만 도망쳐서 잡지 못하다가 체포된 후 충남 관찰부로 압송되었다. 대질신문에서 그는 이 사건은 꾸며낸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전라도 장성군 '동비 거괴' 박군달은 부자가 서교(西敎)에 이름을 올렸으며, 부인과 주점을 열고 금전을 사취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혐의로 법부는 그를 붙잡아 공초를 받고 관찰부에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

다음은 영학당(英學黨) 관련 인사에 대한 판결이다. 첫 번째는 흥덕군 '난괴' 이화삼과 송민수가 영학에 투탁하여 행패하였고, 수서기 박우종도 이들과 왕래한 혐의가 있다고 하니 이들을 조사 후 압송하여 심사 처벌하고 속히 보고하라는 훈령이다. 두 번째는 본래 '동비 거괴'로 도망쳤다가 죽음에서 살아날 계책으로 영학을 자탁(藉託)하고 7읍 계장(七邑禊長)을 칭하며 통행하는 길에 방문을 붙이고 평민에게 가입을 협박하여 돈을 거두는 등의 패행을 저지른 영광군민 김태서를 자세히 신문 조사하라는 훈령이다.

영학당 활동 후 체포된 고창군의 포군 순찰 김상흠과 대장 기수 김재호가 범죄를 저지른 정절을 별도로 심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과 압송해 온 '비류 죄인' 김상흠과 김재호의 진술서를 검토한 내용이다. 전남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 민영철은 법부대신 조병식에게 김상흠은 법망을 빠져나간 동학 무리로 다시 비류가 되어 3개 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사람을 위협하여 돈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사도(邪道)의 주문을 외우고 성찰 직을 맡는 등 여러 죄상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재호는 갑자기 비당(匪黨)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오년 때의 놀란 기억으로 도망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기수로 강제로 충당되었고, 고창의 전투에 참여했지만 도망치려고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학농민군 참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인사 또는 농민군들에게 협조한 인사들의 사례도 보인다. 전북 용담 서면에 거주하는 이름을 모르는 '비적 괴수' 김가와 같은 읍에 사는 김낙삼은 내부의 비밀 관문에 따라 체포되었다. 김낙삼은 전주부 재판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보고서에도 그를 '동학 괴수의 제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법부 검사국에서 살펴보니 범죄를 수사하여 체포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인데, 지난번 내부에서 전라북도에 비밀리에 관문을 보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조회하였다. 이후 전주부는 김낙삼에게 적용할 죄명을 몰라 처리에 주저하자, 법부는 동학 참여 여부 문제를 엄중히 조사 후 처리토록 조회하였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상황도 범죄 행위로 가정하고 적극 해석하면서 처벌토록 주문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충청도 충주목의 노백용이 동학도에 참여하여 이규백의 조카를 타살한 사실, 접주 정택진을 '동도죄(東道罪)'로 처형한 이유 등 전말을 엄히 문초 후 보고토록 지시한 문서이다. 충주목사의 첩보에 따르면 이규백

이 참모사가 되면서 노백용의 처남 전만철을 붙잡아 거짓 진술을 받았는데, 전만철이 "정영진의 동생이 몰래 노백용을 시켜서 이규백의 조카를 죽였습니다"라고 자백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택진은 살옥의 간증 혐의로 동학도의 죄로 총살되었다. 정영진은 이는 모두 이규백의 모함에 빠진 것이므로 상세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소장을 제출하였다. 상세히 조사 보고하라는 법무아문 조회에 따라 충주목에서는 이규백의 형 규상을 붙잡고 동의 두민에게 따져 물었다. 충주목에서는 정택진이 처음에는 옥사의 간증으로 체포되었다가 후에 억지로 동학도의 죄명이 더해져 억울하게 처형된 것 같으나,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다며 처분을 요청하였다. 검사국은 정택진이 정확하지 않은 지목으로 '동학의 죄'로 모함에 빠져 비명횡사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에 확실한 증거 유무를 매우 빠르게 조사 정리하고 모든 내용을 긴급하게 보고토록 하였다. 그러나 충청도 가도사 공주목 판관은 정택진이 동도인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아 최종 처결은 알 수 없다.

농민군 조력자 처리에 관한 사례이다. 황해도 장연군 조니만호(助泥萬戶) 안택순이 '비괴' 김영보를 도주하게 한 사건으로 고등재판소에 관한 일이므로 원장을 함께 보내니 살펴서 재결하라는 통첩이다. 신천군 화포영장 한용건과 최석주는 농민군이 전향한 사례로 군부는 이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인 혐의로 고등재판소로 이송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대로 시행하고 다시 한성재판소로 이첩하라고 조회하였다.

동학농민군 참여 사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은 사례를 보면, 경상도 예천군 동도 창궐 시 '비적 괴수' 전도야지의 전토를 속공함에 그 아들 전세진이 안동부에 호소하여 되돌려 받은 사정의 시말을 조사 보고하라는 훈령이다. 예천군수는 전도야지 부자의 토지를 속공한 것과 관련하여 남경

익이 간특한 짓을 벌이므로 그를 잡아 처벌해 달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사안을 먼저 자세하게 파악한 후 훈령을 내릴 것이니 상소와 고등재판소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알려 달라고 조회하였다. 경제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사례로 하동군 아전 정찬규가 범포(犯逋)한 갑오조(甲午條) 결전(結錢) 3,109량 5전 5푼은 동학과의 싸움 당시 사용한 공전(公錢)으로 이미 면징된 바 있으니 그를 석방하라는 내용이다. 탁지부는 문적이 분명하니 석방할 것을 법부에 알렸고 법부 또한 경상남도 재판소에 석방을 훈령하였다.

2. 법부 형사국 기안

형법 적용과 피고인에 대한 처치 등의 사안은 형사국에서 전담하였다. 형사국 기안은 법률적 판단과 해당하는 조문 적용, 지방관에 대한 훈령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학농민군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한 군부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친위대 제2대대장은 전북 태인 등지에서 체포한 권성중 등 동학교도와 추후 잡아들인 '비류' 이주보 등 11명을 전주 남문 밖 장시에서 처형했다. 수종한 문복만 등 17명도 장형에 처하였다. 친위대에서 동학교도와 농민군을 동시에 체포 처형하였는데, '비류(농민군)와 결탁하여 군심(軍心)을 현혹'하였다는 애매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법부는 군율에 관계된 것이 아님에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군부에서 독단으로 집행한 것을 힐문하였다. 즉, "법부의 지령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인명을 죽인 것은 신식(新式)에 위배가 되고 게다가 폐지한 정형(正刑)과 장형(杖刑)을 거리낌 없이 집행하여 법률을 준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니 분명하게 회신하라는 것이다.

법부는 태인 등지에서 체포한 18명은 박준상의 잔당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으니 무리를 이룬 이유를 조사 보고 후 지령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김천용이 올린 소장에, 지난 갑오년에 '동학난의 죄'로 경상도 남해군으로 유배를 가서 그때 무주군의 같은 죄인 4인은 되돌아왔는데, 제 아비 김귀서만 홀로 풀리지 못하니 남해군에 훈령하여 무주군에서 징역을 치르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법부는 징역이 정식이 된 이후에도 전과 같은 유배형을 따른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로 즉시 압송해 와서 징역형으로 분간하여 처리하고, 죄가 종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그동안의 유배 기간을 형기(刑期)로 계산하라고 훈령하였다.

전주부에서 정읍과 태인 등지에 순검을 파견하여 접주 김형순 등 10명을 체포하였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갑오년 동학의 남은 무리로 속으로 사악한 뜻을 품고 여전히 수상한 자취를 밟아서 결국 사람들의 지목을 받아 이렇게 수색하여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다. 비류의 두목 김형순은 인명을 상해하고 전재를 약탈하는 등 악행이 끝이 없었으며, 심도풍·임몽기·조진옥·강도련은 모두 갑오년의 잔류로 지목되어 잡혀왔고, 이내형·김재원·조대집·한용기·최동골은 장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억지로 죄를 씌울 수 없다고 하였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이들 중 심도풍은 '그 도를 닦으면 재앙과 질병이 없다'라며 부적을 받고 주문을 외웠으니, 비류로 지목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그는 수감 얼마 후 구체적인 병명 없이 단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접주 김형순은 동학농민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인사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지 동학의 부적을 받고 주문을 외운 심도풍 같은 용의자도 옥중 사망할 정도로 엄히 처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주 오일상의 경우는 군부와 법부의 동학농민군 여부 판단의 차이와

처형 수위로 인한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사례이다. 법부는 영장과 군수가 보고한 '비괴' 오일상은 하는 짓이 매우 악하고 모질어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그 무리 오두상·이정도·김인동은 죄를 참작하라고 지령하였다. 그러나 연이어 지령을 내려 보고한 모든 서류를 상세히 조사하니 오일상은 악명이 널리 퍼져 있으나 실제로는 도리에 어긋난 행실이 없었고 사민(士民)을 비호한 공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형에서 1등을 감하고, 나머지 3인은 경중에 따라 처분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군수는 군부에서 훈령으로 수감한 '도적 수괴' 오일상을 친위 제2대대 행진소에서 총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비록 그 죄명은 왁자하게 말해지고 있으나 실제 행패를 벌인 흔적이 없어 이미 징역형으로 처결하였음에도 군부 훈령으로 그를 총살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한 군부의 조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충북재판소에 보낸 또 다른 훈령에서는 종범 오두상과 이정도는 '동비(東匪)의 수종'으로 말과 곡식을 빼앗았으니, 이는 6범(六犯)의 하나인 절도에 해당하므로 1등급 감형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2년 징역형을 받고 옥에 가두었는데 기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였다.

당진의 사례는 평민 김성원이 갑오년 동도에 투입하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사건으로 공소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고등재판소에서는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2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판결한 선고서를 보내니 관보에 게재하라고 통첩하였다. 한편 전 천안군수 김병숙이 살해당한 일로 '비괴' 박만귀를 잡아 조사하니 갑오년 동학군이 천안군의 군기(軍器)를 탈취해 갈 때 그 자신이 관문에 총을 쏘았고 관방에 난입한 사실 등은 위협을 받아서 했던 것이라고 자복하였다. 이에 법부는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 도착 즉시 박만귀를 교수형에 처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

황해도의 경우, 황해도 관찰사에게 신천·송화·장연·옹진·강령 등의 고을에 들어가 관사를 불태우고 돈과 식량을 약탈한 혐의로 문화군에 수감되어 있는 이동엽은 교형을, 승려 금월은 징역 종신의 율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급히 보고하라는 훈령이다. 이어 '비괴' 이동엽 등 교형에 처한 죄인의 죄목과 성명을 내각 기록국에 보내 관보에 게재토록 하라고 통첩하였다.

재령 장수산성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윤덕여 등의 판결 문서는 다음과 같다. 해주부는 군부 훈령에 따라 갇혀 있는 '적괴' 윤덕여를 사방으로 통하는 큰길에서 총살하고, '여당' 김운성은 대낮에 물건을 빼앗은 조항으로 도(徒) 2년, '수종' 맹소회는 도 1년에 의율하여 모두 새로운 정식을 따랐다고 보고하였다. '여자 도적' 2명은 해주부로 이송하여 각각 그 남편을 염탐하여 붙잡아오는 사이에 우선 보증을 서서 맡아 두었다. 그러나 법부대신은 이는 처음 듣는 일로 이 사건에 군부가 간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군부대신에게 조회하였다. 나아가 군율을 제외한 사건에 대한 일체의 조율은 법부에서 짐작하여 헤아려야 하므로 반드시 법부의 지휘를 기다려 시행하라고 다시 조회하였다.

아전 출신인 강달조는 재령에서 동학 접주가 되어 여러 곳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 수백 석을 징수하였다. 그는 이후 원용일 포(包)와 함께 장수산에서 활약하였고 강희열로부터 벼 27석을 징수하여 화포에게, 김첨사로부터 잡곡 36석을 징수하여 농민들에게 농사 빚[農債] 상환용으로 나누어 주었다. 강달조는 이 일로 체포되어 해주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법부 훈령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해주부에 대한 법부의 또 다른 조회문으로, 백낙희 등이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자 도주하였는데 이들을 서둘러 체포한 후 전후 사정을 조사 보고하

고 이들을 율에 따라 처리하도록 장연군에 지령토록 하였다. 그런데 장연군에서는 백낙희 등 6명을 극형에 처하자고 해주부에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령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는 형사사건은 내부가 아닌 법부에 보고토록 할 것이며, 위 6명에 대한 처벌을 속히 시행하라고 훈령하였다. 그 결과 백낙희는 본래 동학은 물론 산포(山砲)의 우두머리로 전양근·백기정·김계조와 모의하였고, 김의순·백낙규는 그 수종이 되어 반란을 꾀한 혐의로 재가를 받아 모두 교형에 처하였다. 도망친 김형진·김창수(김구)·김재희·유학선·최창조와 문화군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 등 6명은 즉시 체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황해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동도의 화포영장 김선장은 '수대산 108형제'라는 도당으로 순포를 자칭하면서 백성들의 돈과 재물을 토색한 죄로 교수형에 처하라는 훈령이다. 그다음 훈령도 화포 이원조가 동도 수백 명으로 봉산군 사원참에 몰려와 인명을 포살하고 재물을 약탈한 사실을 자복하였으므로 김선장과 같이 교수형에 처하라는 내용이다. 내각에서 상주하여 재가받았기에 이들을 각기 교형을 집행하고 그 사정을 보고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원조가 병사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그의 시체를 즉시 매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음은 동학교단의 주요 인사 또는 교단 활동에 치중하다 체포된 사람들로 2대 교주 최시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과 일반 동학교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북접 교단 지도부 중심인물인 보은의 '동도 죄인' 황하일에게 징역 3년 형을 적용하였는데 3천 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 보내라 하니 어떤 일인지 상세히 알려 달라는 조복이 보인다.

청주지방대의 체포 압송 내역을 보면, 서석여와 김시묵은 갑오년 8월 동학이 일어났을 때 거괴 손사문(손천민) 포의 접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이에 이들을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같이 체포된 19세인 임도호는 사학(邪學)에 오염된 자취가 없음이 확실하게 증명되므로 잘 타일러서 풀어 주라고 훈령하였다. 그러나 이후 충남재판소는 서석여와 김시묵을 "훈령을 받들어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징역 죄수 중 6범 외의 범인들에게 임금의 뜻을 널리 알린 뒤 모두 풀어 주고, 성명 책자를 먼저 작성하여 올립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이들은 6범 이내의 범인인데도 살피지 않은 책임은 경계할 것이며 즉시 재수감하여 징역에 처한 후 결과를 급히 보고토록 훈령하였다. 당시 법부 형사국에서 김시묵과 서석여에게 적용한 죄명은 '동학죄(東學罪)'였다.

형사국 기안에 따르면,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은 1866년 강원도 간성에서 박춘만으로부터 동학을 전하여 받은 후 인민을 선동 규합하고 호를 법헌(法軒)으로 부르며 두목을 각 지방에 임명하고 포(包)와 회소(會所)를 설치하였다. 1893년 대궐 상소와 보은에서 무리를 모았고, 1894년 전봉준·손화중 등의 활동은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 데 연유하였다는 것이다. 황만기는 갑오년 임학선의 협박을 받아 동학에 입도하였다가 곧바로 귀화 후에도 도망 중인 최시형을 방문하여 생선을 바쳤고, 송일회는 1894년 4월 동학에 투탁하여 최시형이 청산에 있을 때 방문하여 만나보았고 이후 박윤대와 함께 경무청에 체포되어 길잡이 역할을 하여 원주로 가서 최시형을 포획하였다고 한다. 이상의 이유로 법부는 피고 최시형은 교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내용을 상주하여 그대로 처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고등재판소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라고 훈령하였다. 황만기는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최시형 포획 시 공로가 있는 박윤대와 송일회는 감등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박윤대는 최시형에게 식비를 제공하려 한 행동거지가 놀라우니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고,

송일회는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충청도의 경우 목천·진천·연산·문의 등지에서 동학이라 칭하고 도당을 이루는 것이 극심한데, 특히 공주 산내면 상하 소전리에는 소굴을 이루었다는 소문이 낭자하였다고 한다. 이에 공주 수비대에서 병정을 파송하여 김여포를 붙잡아 가두었지만, 유몽석·이봉여 등은 다른 곳에 있어 붙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법부는 죄수들이 마치 한 입으로 말하듯이 변명하고 있는데 공주군 서기는 무엇을 근거로 비밀리에 탐지한 것인가 알 수 없으니, 충청남도 재판소는 다시 조사하여 진술서를 갖춰서 급히 보고토록 훈령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무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즉시 방면하고 죄지은 자는 요행히 도망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동학농민군 출신으로 기독교에 투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된 또 하나 사례이다. 한산군의 김선재와 서가량은 '동학난류(東學亂類)'로 서학(西學)이라 칭하며 타인의 집과 재산을 파괴하고 금전을 빼앗는 등 동학 소요 때보다 심하니, 폐가 없게 해 달라는 조회문이다. 법부는 이들을 비호한 서양인 선교사를 엄히 타일러 경고하라고 외부에 조회하였는데 아직 회답이 없다며 해당 공관에 다시 조회토록 하였다. 홍주부 관찰사에게는 김선재와 서가량을 재물손괴와 절도에 준하여 논하고 태 100, 징역 종신의 율을 적용하여 처벌 후 보고토록 지령하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즉각 법부로 압송하고 명령을 어기고 한산군수가 마음대로 풀어 준 이유를 즉시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어지는 지령은 상세히 조사하니 김선재의 경우는 동행하였을 뿐 포악한 짓을 돕지 않았으니, 수종한 것이 분명하면 가벼운 쪽을 따라 형률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징역 처소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동학농민군 참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은 또 다른 사례도 확인된다. 첫 번째는 자살한 농민군의 재산을 추심하는 경우로, 전라도 고산군 정인현

이 '동학난' 때 빼앗긴 가산과 집기를 추심할 차로 김치경의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비적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고 이미 목매고 죽었기로 물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고소 내용이다. 이후 김치경이 오히려 모함하여 정인현의 조카 정치모는 강원도 홍천군에, 아들 정세모는 전라도 강진군에 정배된 후 귀양에서 풀려났으나 전주부로 잡아 올려서 불문곡직하고 징역형에 처했으니 원통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재판소는 이들의 죄명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두 번째는 농민군 참여자의 인척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다. 진안군 두미면 전내삼의 5촌 조카는 전에 '동비'에 들어갔다가 근처 마을에서 말을 취한 일로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런데 무주군에 살던 이경장이 적색 노새를 잃어버렸다며 박성삼 등을 시켜 전내삼에게 그 노새를 돌려달라고 협박하므로, 동서로 다녀도 금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침내 칡덩굴에 목매 자살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부는 전라북도 재판소에 박성삼은 태 100에 처결하고 풀어 주되, 매장은 10냥을 추징하여 희생자의 친족에게 지급하라고 지령하였다.

3. 법부 사리국 기안

사리국은 법부 관제 개정으로 1899년 6월부터 기존의 형사국과 검사국을 통합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부서로 동학농민군 관련 판결은 그해 7월 영학당 관련 판결부터 시작한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김태서는 갑오년에 법망을 빠져나간 '동비 무리'로서 요행히 도망쳤다가 영학(英學)에 투탁하여 사창(社倉)에 방문을 내걸고 말목(抹牧; 고부 이평면 말목장터)의 모임에 참여하여 패거리를 모은 자취를 감출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

는 처음 보고한 것과 해당 범인이 앞서 진술한 내용이 모호한 바가 있어 갑작스레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상세히 사실을 확인하여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헤아려 처결하라고 훈령하였다.

정읍에서 영학당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최일서의 아버지 최영두 등 29명의 처벌에 관한 법부 훈령이다. 최영두는 봉기한 뜻을 '왜놈과 양놈을 물리치고 보국안민(輔國安民)'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주장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겉으로는 영학을 칭하였지만 내실은 전일의 동학'이었다. 최영두는 저지른 정황을 스스로 다 실토하였으니 사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율문을 검토하여 처단토록 하였다. 정읍의 하윤현은 위협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총을 짊어지고 최가의 집에 가서 묵었으므로 수종의 지목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27명 중 고부의 최동순 등 5명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이미 풀어 주었으므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고, 정읍의 김춘언 등 22명은 진술서를 참조하여 범죄 정황을 확인해 보니 책망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며 풀어 주도록 훈령하였다.

전라북도 재판소는 정읍의 비도를 수종한 혐의로 박승도·이홍구·이석교·김대율·최한경을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다. 그러면서 김사일·이성문·남윤선·진찬문은 형벌과 위엄 때문에 겁먹고 정치조의 지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경중·김기홍·이문화·배치성·김정화는 죄상을 보아 용서하는 쪽으로 처결해야 할 것 같다고 질품하였다. 이에 법부는 박승도 등 5명은 선고대로 집행하고, 김사일 등 4명은 '협박 때문에 저지른 죄는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뜻에 비추어 용서할 만하고, 이경중 등 5명은 재판소에서 논의한 것이 이치에 합당하므로 모두 풀어 주라고 지령하였다.

다음은 '비류 죄인' 오재봉과 양선태를 참형(斬刑)에 처하는 율을 적용해

야 하나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선고한 관례가 없다는 전라남도 재판소의 보고이다. 이에 법부는 훈령을 내리기를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님에도 선고한 격례가 없다고 하니 즉시 율을 헤아려 선고하고 보고하되, 형명(刑名)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이들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안건에 재가가 났으니 집행 후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

동학교단의 주요 인사 또는 교단 활동에 치중한 인사의 경우로 '동학죄인' 서정만 등 34명을 교수형에 처하자는 법부대신의 상주, 서정만은 재가받았으므로 즉시 형을 집행하라는 훈령, 검사의 공소에 따라 서정만·김당골·편합덕·육사명 등의 안건을 평리원에서 심리한 내용 등이다. 이에 따르면 '동학 거괴' 서정만은 최시형의 제자인 선산 사람 김치만에게 동학을 배웠고, 최시형이 처형된 후에도 동학교도 정해룡·양지동 등과 상의하여 그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무리와 재물을 모아 속리산에 치성을 드린 후 상경 복합상소를 위해 '남조선충의장군(南朝鮮忠義將軍) 선봉대원수(先鋒大元帥)'라는 푸른 깃발을 만들고 물품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김당골과 편합덕·육사명은 서정만에게 동학을 배워 속리산 치성에 같이 갔으며, 국모의 불공을 드린다는 등의 설로 사람을 유인하여 '성심전(誠心錢)'을 내게 하고 상복과 술·떡 등을 준비하였다. 법부는 서정만을 교수형에 처하고, 김당골·편합덕·육사명은 모두 태 100, 징역 종신에 선고한 것에 따라 집행하도록 평리원에 지시하였다.

다음은 검사의 공소에 따라 서장옥과 손사문을 심리한 내용이다. 최시형과 함께 동학의 핵심 지도자의 한 사람인 서장옥(서일해)은 1888년부터 동학을 숭상하기 시작하여 1894년 백성들을 선동하였는데, 그 기세가 전봉준·김개남·최시형과 막상막하였다고 한다. 최시형의 최측근이기도 한 손

사문은 이보다 앞선 1883년부터 동학을 숭상하였고, 1894년 청주 북면 등지에 접을 설치하여 따르는 자들이 수만 명이었으며 그해 9월에 전봉준에게 합세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은 진술에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모두 교형에 처할 것을 선고하고 상주하였다. 그 결과 상주대로 시행하라는 명에 따라 법부는 평리원에 즉시 이들을 교형 집행 후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

평리원은 최시형의 사위 김연숙과 최명기에게는 갑오년 '동비 창궐' 때 생명 보존을 위해 유혹에 빠지거나 위협을 받아 입도하였고 아직도 동학을 배척하지 못하였다는 혐의로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다. 또한 김춘서·조성덕·이기현·김영래도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자 하나, 애초부터 행패를 부린 적이 없으므로 참작하여 본율에서 1등을 감하여 각각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였다. 이에 법부는 모두 원래 헤아린 율대로 집행 후 형명부(刑名簿)를 즉시 올려보내도록 지령하였다. 그로부터 2년 반 후 평리원은 징역죄인 김연숙을 풀어 주고 죄명·형기·속전(贖錢)의 실제 액수와 방면한 날짜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법부는 김연숙 체포 이후 사면령 이전에 1등을 감하더니 평리원에서 멋대로 풀어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법부의 판단은 그 범죄 행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교화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당초 해당 안건을 법부에 질품하여 그 처결 지령을 기다려 집행해야 하는데도 속전을 받고 멋대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범죄 사항은 용서할 만한 흔적이 없고 좌도(左道)로서 정도(正道)를 어지럽힌 풍화(風化)에 관계되므로, 실제 사정을 살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김연숙은 다시 잡아들여 가두고 속전은 내어주고 전에 처했던 징역으로 처리 후 당시 판결했던 판사도 확인하여 급히 보고하도록 훈령하였다.

다음은 동학교단 활동자 또는 동학교도로서 체포되어 판결받은 인사들에 관한 사례이다. 처음 문서는 여산 '동학 거괴' 고문선이 옥중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내부 조회문이 법부에 전달되었다는 조회문이다. 전라북도 재판소도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유덕장·이관동(이원팔)·이용구는 모두 교형으로 결정하였고, 김성초·장한여·이치옥 등은 징역 종신으로 결정하였다고 질품하였다. 이에 법부는 김준홍 등은 고문선의 무리이기 때문에 고문선이 수범이라면 이들은 자연히 종범이 되므로 수율(首律)로 결정지을 수 없으므로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성초 등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율에서 2등을 감해 각각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지령하였다. 이들은 농민군이라기보다는 북접 계열의 동학 교단 인사였다.

전라북도 재판소의 질품서에 의하면, 진위 제2연대 제3대대 대대장 김한정의 조회에서 '전도(傳道)를 칭하면서 무리를 모으는 동비'들을 비밀리에 탐문 체포하였다고 원수부에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대에 가두었던 '동비' 조창식·이명삼·정순구·김덕화·이이노·김문영과 이인규·홍종한·박순경·조가희 등 10명을 압송하였다고 조회하였다. 이 외에 '백성들을 선동하며 전도한 거괴'로서 태인의 유달수, 임피의 김광유, 진산의 김치삼 등을 체포하여 사실조사 후 신문기록을 보냈다. 이에 법부는 전라북도 재판소에 조창식·이명삼·정순구·김덕화·이이노·김문영·유달수·김광유 등은 교형을 선고하되 모두 특별히 단단히 가두었다가 상주를 거쳐 훈령을 기다려 집행하라고 지령하였다. 또한 이인규·홍종한·박순경·조가희·김치삼 등은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여 집행 후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형은 반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부는 사형수를 감등하는 것은 대사면이 아니면 의논할 수 없고 애초에 용서할

수 있으면 극형을 논하지도 않았을 것이니, 감등은 논할 수 없다고 훈령하였다. 이들 또한 앞의 고문선 부하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도'를 통한 포교에 치중한 활동과 판결 죄목으로 보아 동학 교단의 인사들로 판단된다.

대한제국 시기 후반부의 평안도의 사례들도 동학교도로서의 활동 관련 내용이다. 의주진위대에서 병사들을 파견하여 체포한 '동학의 여당(餘黨)' 원의길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태 100, 징역 종신, 오치덕·이원선은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집행하고, 황해도로 도주한 정기명은 법부에서 황해도 각 군에 훈령하여 염탐해 붙잡자고 보고하였다. 동학 수범(首犯) 강성탁은 평안북도에서 접주가 되어 그 무리가 많았는데, 양민들을 속이고 미혹시켰다는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하였고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병업과 박종근은 우매한 소치로 사교(邪敎)에 잘못 빠져들어서 용서할 만하니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선고하겠다고 질품하였다. 법부는 강성탁은 상주를 거쳐 훈령을 기다리고 강병업과 박종근은 즉시 집행하라고 훈령하였다. 이후 법부는 황제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강성탁은 형 집행 후 보고하라고 재차 훈령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한편 평안남도 재판소는 중화군의 김영학과 그 조카 김광찬은 동학 괴수로 도당들을 모아 돈과 재물을 거두고 민심을 선동하였으므로 김영학은 교형에 처하고, 김광찬은 장 100, 징역 종신에 처하여 선고하겠다고 질품하였다. 법부도 평의한 바가 모두 타당하니 원래의 율대로 처리하도록 지령하였다.

함경도도 평안도와 유사하다. 함경남도 재판소는 '동학당' 맹범영·김응삼·정승조 3인을 태 100, 징역 3년, 백낙현과 임수련은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그러나 윤형천·승재원·최성도는 사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당연히 법부의 지령을 기다려 집행해야

하나, 현재 함경남도 각 군에 동학이 크게 치성하여 의외의 사건이 일어날 우려가 없지 않아 시일을 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권도(權道)를 좇아 즉시 포살(砲殺)'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윤형천 등 사형수들은 모두 법부에 보고하여 상주를 거쳐 재가 후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는 것이 본디 정해진 법이므로 '응당 보고해야 할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논하여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시 보류하고, 이후에는 규정을 각별히 준수하여 시행하라고 지령하였다. 맹범영 등에 대해서는 경중을 나누어 심리 처단한 것은 타당하므로 모두 원래의 율에 따라 즉시 처결토록 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우 동학농민군 잔여 세력인가 판단 여부 문제는 자료가 제한되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해당 법률 조항과 처결 양태

대한제국 시기 형법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대명률(大明律)』 형률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의 규정을 이용하고, 처벌 방법은 『형률명례(刑律名例)』를 따랐다. 적도와 강도의 처벌에는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와 제8조를 주로 적용하였다(정진숙, 2007, 「1896~1905년 형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형법대전』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40쪽). 당시 체포된 동학농민군에게 적용한 법률의 대부분은 『대명률』 관련 조항이고, 그다음은 조선시대의 법률 체계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전회통』의 일부 조항으로 전근대적인 법률 체계를 활용하였다.

법부 각국 기안 자료에서 보이는 『대명률』 적용 사례는 황해도 해주의 강달조로 그는 세 가지 조항을 적용받아 처형되었다. 즉, 『대명률』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무릇 요서와 요언을 만들어 내

거나 이를 전하고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 참한다"는 법률, 『대명률』 '백주창탈조(白晝搶奪條)'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는 장 1백, 도형 3년에 처한다"라는 법률, 『형률명례』의 "두 죄를 같이 지은 경우는 무거운 죄로 논한다"라는 규정이었다. 함경남도에서 동학 활동을 한 윤형천·승재원·최성도도 '조요서요언조'로 처형되었다.

동학농민군에게 가장 많이 적용한 법률은 『대명률』「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과 종범"에 관한 율이었다. 이 조항으로 동학사상을 창시한 교조 최제우를 대구 감영에서 처형하였고, 2세 교주 최시형도 같은 조항의 '수범(首犯)'에 관한 율로 교수형을 집행하였다. 최시형의 제자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은 '동학 죄인' 서정만 등 34명도 같은 조항을 적용하였고, 북접 농민군 핵심 지도자인 서장옥과 손천민도 이를 적용하여 교형에 처하였다. 황해도 장연의 백낙희·전양근·백기정·김계조·김의순·백낙규는 『대명률』「적도편」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의 "무릇 모반을 공모한 자는 수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한다"라는 율로 교형을 집행하였는데, 농민군 참여자 가운데 '모반'으로 판결한 유일한 경우였다.

한편 김선재와 서가량은 『대명률』「전택조(田宅條)」 "남의 재물을 훼손하면 물건의 수를 헤아려서 절도에 준하여 논한다"와 『대전회통』「추단조(推斷條)」 "유생(儒生)으로 수령에게 발악한 자는 장[태] 100, 유 3,000리[징역 종신]의 율"을 적용받았다. 김성원은 『대명률』「적도편」 '발총죄(發塚罪)' "무릇 분총(墳塚)을 발굴하여 관곽(棺槨)을 드러낸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장 100, 유 3,000리에 처하는데, 이를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 제1조에 의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였다. 형리 정의중의 경우 농민군의 탈옥 책임을 물어 『대명률』「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일부러 놓아주면 각각 수인(囚人)과 같은 죄이다"라는 율에, 「명례편(名例編)」 '칭여동죄조(稱與同罪條)'의 "사죄(死罪)에 이르면 1등급을 줄인다"라는 율을 참조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되 탈옥수를 붙잡아 바치는 날에는 풀어 주라고 훈령하였다.

『대전회통』을 적용하여 교형에 처한 사례는 김재홍·박만귀·이동엽의 경우로, 『대전회통』「추단조」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에서 작변(作變)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교형]에 처한다"라는 율이었다. 전봉준과 손화중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형되었고, 영학당 하윤현은 『대전회통』「추단조」와 『대명률』「명례편」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수종자는 1등을 감한다"라는 율을 적용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농민군 활동 이후 의병과 기독교에 투탁한 홍병섭에 대해 경기재판소는 『대전회통』「금제조(禁制條)」의 "시골에서 세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침학함"에 관한 율 적용을 문의하자 법부는 『대명률』「명례편」의 "수종자는 1등을 감한다"라는 율의 적용을 지령하였다.

정택진의 경우는 '동도죄'로 법률적 판단과 심리 없이 총살 처형된 특이한 사례였고, 서창길은 법망에서 빠져나간 후 서학에 투입한 혐의로 '비류죄'를 적용한 경우였다. 그러나 '동도죄'나 '비류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죄명이 아니었다. 오재봉·양선태도 '비류죄인'으로 처결되었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이들은 『대전통편(大全通編)』「추단편(推斷編)」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에서 작변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에 처한다"라는 율을 적용해야 하나, 종신 이상은 선고한 관례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법부는 건양 원년(1896) 4월 4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형률명례』 제15조("제15조 : 국사범을 역형에 처할 시는 반드시 상주를 거침이 가함")를 개정한 후 법부에서 훈령을 내리기를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님에도 선고한 격례(格例)가 없다고 하니, 즉시 율을 헤아려 선고하고 보고하되 형명(刑名)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령하였다. '동도 화포영장' 김선장과 봉산군 화포 이원조는 『적도처단례』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다리·몽둥이 혹은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겁취한 자는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형을 적용받은 유일한 사례였다.

조재곤(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국역본

國譯本

법부 검사국 기안

法部 檢事局 起案

안(案) 제99호

개국 504년(開國五百四年, 1895) 윤5월 초4일 기안
개국 504년 동5월 4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건은 전주부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99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5월 강진(康津) 고금도(古今島)에 안치한 죄인 전 고부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을 이미 잡아들여 현재 감옥에 수감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죄인은 여러 차례 해당 읍(邑)에서 정사(政事)가 매우 가혹하여 소요(騷擾)에 이르렀으니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탐학한 사정을 낱낱이 조사한 후에 밤새워 급히 보고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案) 제35호

개국 504년 윤 월 4일 기안

개국 504년　동월　4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건은 경무청(警務廳)에 베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35호

어제 귀청(貴廳)에서 파송한 순검(巡檢) 김광련(金光鍊)과 박승호(朴昇浩)에게 동학죄인(東學罪人) 이용손(李龍孫)을 압송하여 좌옥(左獄)[1]에 가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답 보고가 없어서 저희 부(部)의 사령(使令)에게 그 죄인들을 받아서 오도록 하였습니다. 일 처리가 혼잡할 뿐 아니라 해당 순검의 행동이 무슨 이유로 태만하고 소홀함이 이와 같은 것입니까? 귀 경무사(警務使)에게 분명하게 아뢰어 특별히 엄히 다스려서 뒷날에 해이해지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조선시대 지방의 옥(獄)은 보통 좌옥(左獄)과 우옥(右獄)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는 남녀 혹은 죄의 경중을 구분하여 수감하기 위한 구조였다. 지역에 따라 동쪽에는 남자를 수감하고 서쪽에는 여자를 수감하거나, 좌옥에는 중죄인을 우옥에는 경죄인을 수감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은석, 2021,「조선시대 지방 옥(獄) 구조에 관한 고찰 - 발굴 유적과 고지도 비교를 중심으로」,『헤리티지 : 역사와 과학』54-4, 국립문화재연구원).

추신 : 죄인을 수사하여 체포한 일이니 별순검(別巡檢) 두 사람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案) 제149호

개국 504년 윤 월 5일 기안

개국 504년 동월 동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건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 베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149호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탁지부(度支部) 조회의 내용을 보니, “연산(連山)의 대동미(大同米)를 횡령한 죄인 심계택(沈啟澤)은 해당 읍(邑)에서 보고한 말에 따라 귀부(貴部)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교사(舟橋司) 선주성책(船主成冊)을 다시 조사하니 집주선주(執籌船主)인 손중원(孫仲元)이 연산의 대동미 600석을 포장하여 실었다는 문서가 아주 상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손중원을 불러서 조사하였더니 손중원은 변명할 거

리가 없었으며, 무인년(戊寅年, 1878) 연산의 대동미를 나누어 싣기로 한 선주를 그가 멋대로 심현택(沈玄澤)에게 매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계택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심계택의 무죄가 여기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위의 손중원은 성명이 주교사 성책에 분명하게 실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곡(國穀)을 포장하여 운반할 때 선주를 그가 당차(當差)[2]하여 멋대로 매매하고, 막중한 공곡(公穀)을 횡령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위의 손중원을 압송하니 분명하게 살펴서 처리해 공곡을 충당하여 납부하도록 하시고, 심계택은 죄가 없음이 판명되었으니 전례에 따라서 타당하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공곡과 관련된 범죄이므로 손중원을 즉시 조사하여 판단하시고 심계택은 죄가 없음이 판명되었으니 타당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신 : 손중원이 지금 우옥(右獄)에 수감되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추신 : 좌옥(左獄)에 수감된 동학죄인(東學罪人) 이용손(李龍孫)을 압송해 올려서 조사하고 처리함.[이중칠(李仲七)의 아들]

안(案) 제153호

개국 504년 윤 월 5일 기안
개국 504년 동월 동일 시행

2 조선시대 형별 가운데 하나로 죄인의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건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 베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153호

삼가 답변합니다. 보내온 문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심계택(沈啟澤)의 이름이 잘못되었던 것은 탁지부(度支部)에 이미 문서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손(李龍孫)의 죄명은 이미 군부(軍部)의 조회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베껴서 함께 보냅니다. 평산군(平山郡)의 보고서는 달리 착오가 없고 압송해서 올리는 사유이기 때문에 베껴서 보내지 않습니다. 손중원(孫仲元)의 사정과 문서는 탁지부에서 공문을 옮겨올 때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案) 조복(照覆)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국교(丁國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건은 내부(內部)에 베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조복(照覆)

귀부(貴部) 제 몇 호(문서)를 접수하였더니, "전라도 첩보 내용에 '아문(衙門)의 비밀 관문(關文)에 따르면 「용담(龍潭)에 살고 있는 비적괴수(匪賊魁首)로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와 같은 읍에 사는 비적괴수의 제자 김낙삼(金樂三)을 즉시 체포하여 조사하여 처리한 후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김가는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 체포할 수가 없었고, 김낙삼은 현옥(縣獄)에 체포하여 가두었으나 죄명을 몰라서 조사하여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귀부(貴部)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통지합니다. 살펴보신 후에 해당 도(道)에 지시하여 조처하십시오."라고 하신 조회를 받아서 이에 따라 조사하니 범죄를 수사하여 체포하는 것은 저희 부(部)의 소관인데 지난번 귀부에서 해당 도에 비밀 관문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지금 이같이 조회를 하였으니 앞으로 (전라도에) 관문을 보내서 조처하려고 합니다.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개국 504년 윤5월 17일

법부대신

내부 서리대신 유길준(俞吉濬) 각하

안(案)

개국 504년 윤 월 19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건은 전주부(全州府)에 베껴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안(案)

내부(內部)에서 보낸 조회를 접수하여 살펴보았더니, 귀 영(營)이 보고한 바가 "용담(龍潭) 서면(西面)에 거주하는 비적괴수(匪賊魁首)로 이름은 모르는 김가(金哥)와 같은 읍에 사는 비적괴수의 제자 김낙삼(金樂三)을 내무아문(內務衙門)의 비밀 관문(關文)에 따라 수사하여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가는 이름이 부정확하기에 아직 체포할 수 없었고, 김낙삼은 겨우 붙잡은 후 현옥(縣獄)에 가두었으나 죄명을 역시 몰라서 조사하여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회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살펴보니, 범죄를 탐색하여 수사하는 것은 본부(部)에서 명령하여 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내부(內部)에서 귀영(貴營)에 비밀 관문을 보낸 것이 월권입니다. 그리고 이미 동학 괴수와 제자로 지목했으니 귀 영의 보고

에서 “죄명을 몰라서 조사하여 처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이름을 모르는 김가는 내버려 두고, 김낙삼의 경우는 동학 여부를 다시 엄중히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案) 훈령(訓令) 제107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경무청(警務廳)에서 보내온 문서를 살펴보니 평강(平康)에 사는 박일록(朴日祿)이 민요(民擾)의 수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재물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 즉시 관문(關文)을 해당 군수에게 보내서 압송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裁決)을 바라니 아래의 안건을 베껴서 보내길 바랍니다.

안(案) 훈령(訓令) 제107호

말하려는 바는 귀군(貴郡) 고삽면(高揷面) 하옹동(下甕洞) 정신평(庭神坪)에 사는 박일록이 민요의 장두(狀頭)[3]가 되어서 경사(京司)[4]에 뇌물을 준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재물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악은 그

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에 훈령하니 즉시 압송해 올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개국 504년 윤5월 일

법부대신

평강군수

동학도 김재홍(金在洪)을 처단하는 일로 임천군(林川郡)에 관문(關文)을 보내는 건 / 안(案)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형사과장

고문관

동학도 김재홍(金在洪)을 처단하는 일로 임천군(林川郡)에 관문(關文)을 보내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임천군수의 첩보(牒報) 내용에 "본읍(本邑)에 사는 김재홍은 동학(東學)의 무리에 뛰어들어 접주가 되어서는 관청 창고의 군기(軍器)를 빼앗고, 관속(官屬)들을 위협하고 도(道)를 강요하였습니다. 또 전봉준(全琫準)의 후장(後將)이 되어서는 마을을 도륙하여 파괴하고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여, 온 마을의 아전과 백성들이 그의 고기

3 여러 명이 연명하여 소장(訴狀)을 제출할 때 제일 앞에 이름을 적는 사람을 말한다.

4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를 씹어 먹고자 한 것이 오래되었으나 뒤쫓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소란이 진정되었을 무렵 김가 놈이 모습을 바꾸고 쇠락한 몸을 끌고 돌아오자 온 지역의 아전과 백성들이 다투어 붙잡아서 관아에 바쳤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마땅히 백성들을 크게 모아서 바로 포살(砲殺)하여야 하지만, 잘못이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워 함부로 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구를 갖추어 단단히 가두고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니, 아 저 김재홍은 죄악이 가득차서 아전과 백성들이 다투어 붙잡아 바쳤으니 백성들의 분노가 격해진 바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범인이 스스로 되돌아와 체포당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니 하늘의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그 악행이 이미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지경이니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본국(本局)의 소견은 해당 군에 관문을 보내서 즉시 포살해서 재앙을 당한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원통하게 죽은 귀신들을 위로하는 것이 올바른 일 처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안(案)을 임천군에 관문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이달 13일 귀 보고의 내용에 "동학도 김재홍은 마땅히 즉시 포살해서 아전과 백성들을 기쁘게 해야 하지만 잘못이 있을 것 같고 또 범죄가 매우 무거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가 놈의 죄악은 실로 잠시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의(法意)가 존재하는바 중범죄에 관계되는 것이라 압송하여 올려서 처단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나, 민심을 위로하고 미혹된 무리들에게 경고하기에는 고을에서 포살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이에 지령하오니

즉시 거행한 후에 전말을 신속히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도 청산현감(靑山縣監)의 첩보(牒報) / 안(案) 제54호

개국 504년 5월 8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충청도 청산현감(靑山縣監)의 첩보(牒報)

삼가 말씀드립니다. 이 첩보의 요지를 보니, "본현(本縣) 남면(南面) 도분리(島分里)에 사는 송치삼(宋致三)은 본래 토호(土豪)로 향촌을 억압하였습니다. 동비(東匪)들이 창궐함에 이르러서는 팔도도집강(八道都執綱)으로 그 무리를 이끌고 고을에 마구 돌아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약탈하였습니다. 또 시찰관(視察官)의 친척이라고 사칭하면서 다른 고을까지 널리 알렸습니다. 토호로 논하자면 온 도(道)의 수괴를 차지하고, 비적(匪賊)의 무리로 말하자면 팔로(八路)의 집강(執綱)이 되었으니 그 죄상을 살펴보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붙잡아 체포하여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국(本局)의 소견은 이러한 패악한 무리들은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 즉시 압송해 올려서 징벌하여 처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래의 안(案)을 해당 현에 관문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4호

보고해 온 것을 살펴보니 송치삼이 지금까지 패악을 벌인 것이 듣기에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체포한 것이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죄악은 예사롭게 징계하고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즉시 장교(將校)와 나졸(邏卒)을 보내서 압송하되 더욱 엄중히 칼과 쇄사슬을 채워서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충주목사(忠州牧使)의 첩보(牒報) / 안(案) 제55호

개국 504년 5월 8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검사과장	
	고문관	

충주목사(忠州牧使)의 첩보(牒報)

삼가 말씀드립니다. 이 첩보의 요지를 보니, "본 충주에 사는 진사(進士) 정영진(鄭榮鎭)이 법부(法部)에 올린 소장(訴狀)의 내용에, '같은 이웃에 사는 노백용(盧白用)이 동학(東學)의 무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마을에 있는 집이 헐려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노백용이 그것에 원한을 품고 이규백(李圭白)의 조카를 때려죽였습니다. 이규백이 참모사(參謀士)[5]가 되기에 이르자 노백용의 처남 전만철(田萬哲)을 붙잡아 억지로 진술을 받았고, 그때 전만철이 말하길 「정영진의 동생이 몰래 노백용을 시켜

서 이규백의 조카를 죽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금영(錦營)[6]에서 정영진의 동생을 살옥(殺獄)[7]의 간증(看證)으로 붙잡아 간 후에 동학도(東學徒)의 죄로 포살(砲殺) 당하였으니 이는 모두 이규백의 모함에 빠진 것입니다. 상세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부에서 제사(題辭)[8]로 '조사하여 보고하십시오.'라고 하여 본목(本牧)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탐색하여 여러 범인들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도망치고 다만 이규백의 형 규상(圭常)을 붙잡고 해당 동의 두민(頭民)을 문초하였더니 두민이 진술하기를 '노백용이 동학의 무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이 헐려져 이에 원한을 품고서 그 처남 전만철과 함께 이규백의 조카를 때려죽였으며 정영진의 동생이 몰래 사주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만철의 진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백의 조카와 정영진의 동생이 죽은 것은 모두 억울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규상이 진술하기를 '정영진의 동생 택진(宅鎭)이 몰래 노가(盧哥)에게 사주하여 이씨 가문을 제거하였다는 소문을 어쩌다가 들을 수 있었고, 또 (정택진이) 동학의 무리가 되었기에 선봉진(先鋒陣)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선봉진에서 공주진(公州鎭)에 관문을 보내 체포하였고, 정택진은 전만철과 함께 포살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영진이 진술하기를 '이규백

5 참모사(參謀士)는 의병(義兵)이 봉기했을 때 임명하는 직책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향촌의 유림들이 동학의 진압을 위해 의병을 조직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규백 역시 동학에 반대하는 의병에 참여하여 참모사의 직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6 조선시대 충청도 관찰사가 직무를 담당하던 감영(監營)을 말한다.

7 조선시대 살인사건과 관련된 옥사(獄事)를 말한다.

8 관청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대해 판결하거나 지시한 내용을 말한다.

과 노백용은 빚 때문에 원한이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동생이 몰래 사주하였다는 것은 애초에 이치와 거리가 멉니다. 또 제 동생이 수감 되었을 때 이규백이 와서 저의 아비에게 와서 말하길 「말값과 여비를 마련해 주면 감영(監營)에 가서 풀어 주도록 해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당시에 몰래 사주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도리어 풀어 주도록 해보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또 동학으로 죄를 논하자면 억지로 가입했을 때 비단 저의 동생만이 아니라 이규백의 형제가 모두 가입했으니 어찌 저의 동생만 혼자 죽은 것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규상이 다시 진술하기를 '노백용이 빚을 독촉한 것은 모두 정택진이 시킨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모두 갚았으니 어찌 그것 때문에 원한을 품겠습니까? 말값을 지목하여 말하더라도 빌린 것은 정영진의 친척에게서였지 정택진의 아비에게 빌린 것이 아니고, 여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애초에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조사해 보니 수범(首犯)인 노백용은 도망쳤고, 간범(干犯)인 전만철과 몰래 사주한 정택진이 이미 사망하였으니 무엇을 가지고 증거로 삼아서 판명하겠습니까? 숙부와 형에 이르러서는 각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끝까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택진이 처음에는 옥사(獄事)의 간증(看證)으로 체포되었다가 후에 동학도의 죄로 죽임을 당했으니 억지로 죄명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또 이규상이 직접 온 집안을 끝장내겠다는 말을 이미 들었다면 어찌 정택진이 붙잡혔을 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으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 충주목에서 논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하여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국(本局)의 소견은 해당 도(道)에 관문을 보내서 우선 포살한 이유를 묻고 즉시 수범과 간범을 수색하여 체포하여 엄히 조사하고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 마땅합

니다. 아래의 안(案)을 제사(題辭)로 관문을 나열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5호

충주목사가 조사하여 보고한 것을 받아 살펴보니, "본 충주 금목면(金目面) 오룡동(五龍洞)에 사는 정택진이 같은 이웃에 사는 이규백의 모함에 빠져서 동학의 죄로 비명횡사한 일로 본부(本部)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한 제사에 따라 해당 동의 두민과 이규백의 형 규상, 택진의 형 영진을 붙잡아서 심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억울함을 호소해서 끝까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본부에서 논하여 판단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이규백의 조카가 노백용에게 해를 입은 것은 결코 의심이 없으니 해당 감영과 해당 목사가 즉시 노가 놈을 수색하여 체포해서 옥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은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택진이 포살 당한 것에 이르러서는 이규상과 정영진의 진술에서 모두 '옥사의 간증으로 체포되었다가 동학으로 죽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곡절이 있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택진이 과연 동학의 무리라면 체포했을 때 어찌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옥사의 간증이라고 지목한 것입니까? 만약 옥사의 간증이라면 어찌 먼저 수범인 노가 놈을 체포하여 심문하지 않고 갑자기 간증을 죽인 것입니까? 여기에서 동학이라는 것은 애초에 지목할 증거가 없고, 또한 옥사의 간증으로 여겼더라도 결국 실정(實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규백의 모함에 빠졌다는 것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괴이하지 않으며, 해당 감영에서 인명(人命)에 소홀하였던 것이니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의심스러운 안건은 함부로 재론(再論)하여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정택진이 옥사의 간증이어서 실정을 얻어냈는지 여부와 동학도라는 확실한 증거 유무를 매우 빠르게 보고해 오고, 이규백과 노백용은 급히 수사해서 체포해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서 조사 정리한 모든 내용을 긴급하게 보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충주목사(忠州牧使)의 서목(書目) / 안(案)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형사국장	
	고문관	

충주목사(忠州牧使)의 서목(書目)[9]

삼가 말씀드립니다. 이 서목을 보니 정택진(鄭宅鎭)의 옥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감영(監營)에 관문(關文)을 보내자는 뜻으로 이미 논의를 거

9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 올리는 원장(原狀, 첩정 또는 문상)에 구비(具備)하는 문서이다. 서목에는 첩정에 첨부하는 서목과 문장에 첨부하는 서목이 있다. 첩정에 첨부하는 경우는 단지 서목이라 하고, 문장에 첨부하는 경우는 문장서목이라 한다. 서목에는 원장의 대강을 쓰게 되며, 원장에 첨부된 서목을 받은 상관은 서목의 여백에 원장에 대한 처분(處分)을 쓴 뒤 원장과 서목을 올린 하관에게 돌려주게 된다. 하관은 서목에 써 있는 상관의 처분대로 시행하게 된다. 직접적인 상관이 아니라도 현감·현령·군수 등이 부윤(府尹)·부사(府使)에게 올리는 첩정에도 서목을 첨부하였다. 서목은 지방에서만 사용되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목사의 서목에 회답하는 제사(題辭)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아래의 안(案)을 제사로 하여서 소장 안에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엄하게 조사하여 결말을 지으라는 뜻으로 방금 순영(巡營)에 관문을 보냈습니다.

청산현감(靑山縣監)의 서목(書目) / 안(案)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형사국장	
	고문관	

청산현감(靑山縣監)의 서목(書目)

삼가 말씀드립니다. 이 서목을 보니 토호(土豪)이자 비적(匪賊)의 괴수인 송치삼(宋致三)을 단단히 가두고서 급히 보고한 일에 대하여 압송하여 올리라는 관문(關文)을 보내기로 이미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목에는 회답하는 제사(題辭)가 없을 수 없으니 아래 안(案)을 제사로 하여서 소장 안에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관문의 내용대로 거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충청병사(忠淸兵使)의 첩보 / 안(案) 제75호

개국 504년 5월 13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형사국장

고문관

충청병사(忠淸兵使)의 첩보

삼가 말씀드립니다. 이 첩보의 요점을 보니, "본 충주에 사는 민섬호(閔暹鎬)는 원래 남의 위세에 기대는 토호(土豪)로 동학 무리의 괴수가 되었다가 결국 일본 군대에 체포되었습니다. 죄를 진술한 바가 매우 무거워서 가리거나 감쌀 수가 없으나 요행히 풀려나서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예전의 버릇을 고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법부(法部)에 무고(誣告)하여 말하기를 '감영에서 장교를 파견하여 행패를 부리고 집안의 재산과 벼 포대를 몰수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풀려났으니 하나하나 찾아서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법부의 제사(題辭)에서는 '집안의 물건을 뒤진 것은 이것이 무슨 법리(法理)입니까? 감영에서 억지로 가져간 것이니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일일이 내어주고 보고해 오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벼 포대로 말하자

면 민섬호가 기포(起包)하여 싸움이 붙었을 때 불에 탄 민가가 80여 호였고, 백성들이 굶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벼를 가지고 나누어 먹인 것으로 또한 일본 군대와 협의한 것입니다. 물건으로 말하면 뒤진 바가 없으며 이미 제사로 신칙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벼 포대의 경우는 추수를 기다렸다가 갚으라는 뜻으로 해당 재민(災民)들에게 명령하여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민섬호는 끝내 듣지 않고서 마을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채찍질을 하면서 독촉을 하니, 재민들이 시찰관(視察官)에게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민섬호가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발기[件記][10]를 거짓으로 기록하였으니 매우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국(本局)의 소견은 민섬호가 죄를 사면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행패를 부리는 것이 매우 심각하니,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즉시 압송해 올려서 징벌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아래의 안(案)을 관문으로 해당 감영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75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내온 보고를 살펴보니 민섬호의 행위가 어찌 이리도 심한 것입니까? 그 이전의 죄를 살펴보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풀려나서 고향 마을로 돌아간 것은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의 버릇을 고치지 않고서 도리어 더욱 사악하고 잔혹하게 굴어서 마을 백성들을 곤경에 이르게 하였기 때

10 물품이나 인명 등을 나열하여 작성한 목록을 말한다. 각 건(件)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여 한자로는 '件記'라고 적었다. 이 가운데 '件'은 우리말로 '붇'에 해당하므로 '붇기'라고도 하였고, 현재는 발기로 읽는다.

문에 감영에서 논보(論報)[11]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행위가 예측할 수 없음을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벼 포대로 말하자면 감영에서 이미 추수한 후에 갚으라는 뜻으로 신칙하였으니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부족할까 우려하여 재민들을 독촉하고 심지어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재민들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입에 풀칠할 것도 여전히 부족한데 어디서 갑자기 한 말이나 한 가마니의 쌀과 벼를 마련하겠습니까? 이러한 실상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패를 부렸으니 본래 마음가짐이 불량하다는 것을 여기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벼 포대를 찾아서 지급하라는 제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아울러 자기 마을로 돌아가라고 풀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교와 나졸을 정해 압송하여 올려서 엄히 징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안(案) 제54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국교(丁國敎)
	검사국장	
	형사국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노성(延魯城)을 심사하여 판결하는 일로 한성

11 조선시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자신의 의견을 붙여서 보고하던 것을 말한다.

재판소(漢城裁判所)로 공이(公移)[12]를 보냈습니다. 아래의 안(案)을 베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54호

작년 11월에 일본 병사가 압송하여 올린 광주(廣州)의 여러 동학도는 이미 심판하여 풀어 주었는데 연노성은 여전히 그대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살펴보면 실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정을 생각하였을 때 매우 답답합니다. 본국의 소견은 한성재판소에서 일본 영사관에게 조회로 알려서 즉시 심사하여 판결하고 해당 백성은 편의에 따라 농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추신 : 경무청 공초를 첨부합니다.

전(前) 전운사(轉運使) 조필영(趙弼永)을 보방(保放)하는 건 / 제안(題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재판장 판사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12 관청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의 총칭이다. 관청 상호 간에 문서의 교류는 그 관청의 격(格)에 따라 문서의 양식이 달랐는데, 동등한 관청 사이에는 평관(平關),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는 관(關),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보내는 문서는 첩정(牒呈) 등으로 양식이 분류되었다(『한국고전용어사전』).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전(前) 전운사(轉運使) 조필영(趙弼永)을 보방(保放)[13]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수감되어 있는 조필영이 올린 소장을 살펴보니, "지난번에 장부를 마무리하는 일로 소장을 올려서 '빨리 장부를 마감하여 조사해 처리하는 데 편리하게 하라.'는 제사(題辭)를 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마감하려는 때에 문서가 짐말로 6마리 분량을 넘고 종인(從人)과 서리들이 20여 명이며 또 경사(京司)의 차인(差人)과 지방의 차인들을 대질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서가 많고 복잡하며, 사실의 조사는 번거롭고 바빠서 옥중(獄中)에서 거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옥서(獄署)의 근처로 보수(保囚)하여 속히 공적인 업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국(本局)의 견해로는 사리와 형세가 비록 그러하나 감옥 밖으로 내보내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옥서 내부의 협실로 보수하여서 장부를 마감하는 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안(題案)

장부의 마감 기한을 7일로 하고 일단 옥서 내부의 협실에 보수하여서 속

13 조선시대 행형제도(行刑制度) 중의 하나로 옥(獄)에 갇혀 재판을 대기 중인 피의자나 도·유형(徒·流刑)이 집행되고 있는 죄인 등에게 질병이나 친상(親喪)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 기한 이후 환수(還囚) 또는 환배(還配)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보증인(保證人)을 세우고 일시 석방하는 제도이다(元載淵, 2006, 「조선시대 保放의 典據와 그 實態」, 『법사학연구』 33, 한국법사학회).

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案) 제25호

개국 504년 5월 22일 시행

재판장 판사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베껴서 경무청(警務廳)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25호

말하려는 바는 위의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전 영백(嶺伯)[14] 이용직(李容直)과 전 판서(判書) 조병식(趙秉式)은 노환(老患)이 있어서 그 아들이 각각 소장을 올려서 보방(保放)을 청하였습니다. 옥사(獄事)의 체제를 살펴보니 외부에 처소를 두는 것이 불가하지만 사정과 형세를 생각하면 불쌍하게 여길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部)의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병을 치료하는 동안만 감옥서 내의 협실(夾室)에서 보수(保囚)

14 조선시대 경상도 관찰사를 말한다.

하라는 뜻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를 올리니 위의 두 사람을 오늘부터 감옥서 내의 협실에 머물게 하고 그 자식과 조카의 출입을 특별히 허락하여 병을 조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추신 : 죄인 조필영은 문서를 마감하는 일로 보방을 청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번잡하고 많은 문서와 허다한 이서(吏胥)들을 옥중에서 조사하기 어려우니 근처에 보수해 주길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대신에게 아뢰니 "사무의 체제에 있어서 감옥을 나가는 것이 불가하지만 문서를 마감하는 일 역시 시급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감옥서 안의 협방(夾房)으로 나와서 머물게 하고 문서의 마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십시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서를 보내니 해당 감옥서에 신칙(申飭)하여서 협방으로 나와 머물게 하시고 또 문서와 관계된 사람을 지명하여 기록해 두고서 출입을 금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한은 7일이니 살펴 주십시오.

안(案) 제27호

개국 504년 5월 23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베껴서 경무청(警務廳)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27호

말하려는 바는 지난번 귀 조복(照覆)을 보니 "수감된 죄인 조병갑(趙秉甲), 박수만(朴受晩), 이응헌(李應憲), 민치순(閔致純), 송정섭(宋廷燮), 민형식(閔炯植), 채경묵(蔡慶默), 민영주(閔泳柱) 8명도 역시 실제로 병이 있어서 특별히 감옥서 내의 협실(夾室)에 보수(保囚)하는 것을 허락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검사(檢事)가 지금 가서 검사한 후에 본 대신(大臣)의 재결을 거쳐서 다시 문서를 보낼 것입니다. 이에 살펴 주십시오.

추신 : 이용식(李容植), 조병식(趙秉式) 두 사람은 어제 협실로 보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습니다. 이는 필시 거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수장(守長)을 이끌어서 신칙해 속히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필영(趙弼永) 관련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우옥(右獄)에 수감된 조필영(趙弼永)이 장부를 마감하는 동안에 잠시 감옥서(監獄署) 내부의 협방(夾房)으로 보수(保囚)하는 일은 어제 이미 기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다시 감옥 안을 살펴보았더니 감옥 건물 밖에 협실(夾室)은 불과 몇 칸(間)에 불과하였고, 이미 늙은 병자(病者)가 있어서 조필영이 머물 수 있는 다른 방이 없습니다. 장부를 정비하는 일은 매우 많고 복잡하니 어쩔 수 없이 보방(保放)한 연후에야 속히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국(本局)의 소견은 일단 보방을 허락하여 신속하게 장부를 마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안(案) 제98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해주부(海州府) 관찰사(觀察使)에게 관문(關文)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98호

말하려는 바는 신천군수(信川郡守)가 탁지부(度支部)에 보고한 문서를

보니 “해당 군(郡)에 사는 안태훈(安泰勳)과 안태원(安泰元) 두 놈이 동비(東匪)를 토벌한다고 하면서 병장기를 함부로 움직여서 민심을 소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탁지부에서 공적으로 거래한 쌀 500석을 빼앗아 군량(軍糧)으로 기록하여 사용하고는 채워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포하여서 독촉해 받아내려고 하였더니 안가가 지금도 여전히 수하들을 데리고서 마을에 머물면서 관청의 하인들을 쫓아내고 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기에 작은 읍(邑)의 장교(將校)와 나졸(邏卒)들이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문(關文)을 보내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장교와 나졸을 많이 보내서 반드시 체포하고, 차꼬를 채워서 압송해 올리되 혹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교화에 따르지 않는 버릇을 엄중히 징계하고 공적으로 거래한 쌀을 채워 넣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의 관문을 해주부 관찰사에게 보냅니다.

안(案) 제123호 / 안(案) 제124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2개 안(案)을 탁지부(度支部)로 조복(照覆)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123호

말하려는 바는 어제 보내온 문서를 받아서 모두 잘 살펴보았습니다. 각 도(道)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의 가하급장전구별성책(加下及贓錢區別成册)은 삼가 수령하였습니다. 가하조(加下條)[15]는 조사하여 징수해서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상납액에 충당하도록 하고, 장전(贓錢)[16]은 법률에 따라 처결하라는 일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해당 각 감영(監營)의 보고서와 귀부(貴部) 파원(派員)이 보고한 바를 아울러 보내주셔서 조사하는 데 편하게 해 주십시오. 삼가 조복합니다.

이상 조복

탁지부 대신 어윤중(魚允中) 각하

안(案) 제124호

말하려는 바는 어제 보내온 문서를 받아서 모두 잘 살펴보았습니다. 신천군(信川郡) 안태훈(安泰勳)과 안태원(安泰元) 두 놈이 병장기를 함부로 움직이고, 관청 소유의 미곡을 탈취하였으니 저지른 죄가 막대합니다. 작은 읍의 장교(將校)와 나졸(邏卒)이 체포하기가 어려움은 일의 형세가 원래 그러합니다. 폐부(弊部)에서 해주부(海州府)에 관문을 보내서 엄중히 다스려 압송해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귀부(貴部)에서 거래한 쌀 500석은 붙잡아 올릴 때를 기다려서 징수할 것이나 살펴 주십시오. 삼가 조복합니다.

추신 : 신천군수의 보고서는 반환해 보내니 살펴서 받으십시오.

15 환곡(還穀)이나 진휼미(賑恤米) 등을 운영할 때 정해진 액수, 곧 예산 이외에 더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한국고전용어사전』).

16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금전을 말한다.

한용건(韓用健), 최석주(崔錫疇), 남춘봉(南春鳳)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이송하는 건 / 안(案) 제216호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한용건(韓用健), 최석주(崔錫疇), 남춘봉(南春鳳)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이송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군부(軍部)에서 보내온 죄인 한용건, 최석주 및 원산항(元山港)에서 압송해 온 죄인 남춘봉을 모두 고등재판소로 이송하여 즉시 판결하여 징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216호

군부에서 보내온 함부로 사람을 살해한 죄인 한용건, 최석주와 원산항 감리서(監理署)에서 압송해 올린 거짓으로 일본인이라고 칭한 죄인 남춘봉을 모두 좌옥(左獄)에 단단히 가두고 그 진술과 문서를 보냅니다. 잘 살펴보신 후에 빨리 판결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통첩(通牒)합니다.

고등재판소 주사(主事) 박재선(朴齊璿) 좌하(座下)

안(案) 통첩(通牒) 제220호 고등재판소 주사(主事) 김사현(金思鉉) 좌하(座下)

개국 504년 6월 2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청도(淸道)의 하리(下吏)[17] 김한진(金漢璡), 장주덕(張周德)의 포장(逋帳)[18]을 전 군수(郡守) 채경묵(蔡慶默)에게 이속(移屬)시켜서 납부를 독촉하라는 뜻으로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조회(照會)하시기를 바랍니다.

안(案) 통첩(通牒) 제220호 고등재판소 주사(主事) 김사현(金思鉉) 좌하(座下)

탁지부(度支部)에서 보내온 조회를 살펴보니 내용에 "청도의 하리 김한진과 장주덕 등의 소장(訴狀)에 '저희들이 지난 신묘년(辛卯年, 1891) 전

17 관아(官衙)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로 조선시대(時代)에는 경향(京鄕)의 모든 이직(吏職)의 관리를 뜻하였다(『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18 조선시대에 관가(官家)의 물건을 빌리고서 돌려주지 않는 것, 국가의 조세(租稅)를 납부하지 않는 것, 미납으로 인한 결손액 등을 포흠(逋欠)이라고 하였다. 관원(官員)들의 포흠을 관포(官逋), 이서(吏胥)의 포흠을 이포(吏逋)라고 하였다(『한국고전용어사전』). 이러한 포흠을 조사하여 만든 문서를 포장(逋帳)이라고 한다.

세(田稅)의 징수 담당자로 (임무를) 거행하면서 각기 250냥(兩)의 돈을 본관(本官) 채경묵의 임기 동안에 빼앗겨서 공전(公錢)이 포흠되어서 포장을 마무리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알리오니 위의 500냥을 전 군수 채경묵에게 빨리 상납을 재촉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조사해 보니 귀소(貴所)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알리오니 채경묵을 다시 조사하여 신속하게 납부를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회합니다.

추신 : 지난번에 최석주(崔錫疇), 한용건(韓用健)의 사건에 대한 해주부(海州府) 관찰사(觀察使)의 첩보를 함께 보냅니다.

최석주(崔錫疇), 한용건(韓用健)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이송하는 건 / 안(案) 제224호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장 신재영(申載永)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최석주(崔錫疇), 한용건(韓用健)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이송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보내온 조회(照會)를 받아서 이에 회답하오니 아래의 안(案)을 고등재판소로 베껴서 보내시길

요청드립니다.

안(案) 제224호

귀 조회를 받아서 모두 잘 살펴보았습니다. 최석주와 한용건의 이송은 이치상 매우 타당하니 이에 따라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案) 제265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장용연(張龍淵), 한용건(韓用健) 사건에 대한 문화군(文化郡)의 첩보(牒報)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보내며 이에 따라 조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265호

장용연, 한용건 사건으로 문화군수 홍재준(洪在駿)의 첩장(牒狀)을 받아보니 귀소(貴所)와 관련되어 송부하니 살펴서 받아 보십시오. 이에 조회(照會)합니다.

안(案) 제268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로 통첩(通牒)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268호

신천군수(信川郡守)의 첩보(牒報)를 받아 보니 한용건(韓用健)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말미에 기록되었습니다. 원래의 문서는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보내었기에 한용건의 사건만 기록하여 보냅니다.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신 : 신천군수의 첩보 중 한용건 사건

한용건은 원래 비적(匪賊) 무리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었는데, 도리어 본영(本營) 병대(兵隊)의 영장(領將)이라는 명색이 되었습니다. 설령 동학 무리의 가지에서 흘러나온 잔당을 포살(砲殺)하였다는 작은 공이 있더라도 비적을 빙자하여 행패를 부렸기에 백성들의 원한이 지금까지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으로 죄를 갚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에 삼가 엎드려 처분을 기다립니다.

법부(法部) 검사국장(檢事局長) 신재영(申載永)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검사(檢事) 김기조(金基肇) 좌하(座下)

안(案) 제269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통첩(通牒)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269호

장수(長壽)의 별장(別將) 장용연(張龍淵) 사건으로 신천군수(信川郡守)의 첩보(牒報)를 받아 보니 귀소(貴所)의 소관이기에 원본 문서를 함께 보내니 살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부(法部) 검사국장(檢事局長) 신재영(申載永)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검사(檢事) 오용묵(吳龍默) 좌하(座下)

안(案) 제270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통첩(通牒)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270호

전 황해감사(黃海監司) 조희일(趙熙一)의 첩보(牒報)를 받아 보니 조니만호(助泥萬戶) 안택순(安宅舜)이 비적수괴(匪賊首魁) 김영보(金永甫)를 놓쳤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귀소(貴所)의 소관이기기에 원본 문서를 보내니 살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부(法部) 검사국장(檢事局長) 신재영(申載永)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검사(檢事) 오용묵(吳容默) 좌하(座下)

안(案)

개국 504년 월 22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의 소관인 한용건(韓用健), 최석주(崔錫柱) 사건은 인명과 관계된 사안으로 매우 엄중합니다. 그런데 가정하여 판단한 것이 매우 갑작스러우니 본소(本所)에 훈령을 내려서 재심(再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한용건, 최석주의 사건은 인명과 관계된 사건이니 그 전후 상황을 끝까지 파악하여 재판하였어야 하는 데 갑작스럽게 가정하여 판단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이에 훈령하니 한용건, 최석주 두 사람을 다시 붙잡아 가두고 따로 심판하는데 형률(刑律)을 헤아려 적용함에 충분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성재판소 판사(判事) 한창수(韓昌洙) 좌하(座下)

법부대신(法部大臣) 서○○(徐○○)

서학(西學)의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킨 일을 외부(外部)에 조회(照會)하는 건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서학(西學)의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킨 일을 외부(外部)에 조회(照會)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한산(韓山), 공주(公州) 두 군수(郡守)의 첩보(牒報) 내용에 "동학 무리의 남은 비적(匪賊)들이 서학(西學)에 의탁하여 민간을 약탈하고 선교사(宣教師)를 믿고서 많은 행패를 부립니다. 하지만 지방관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징벌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외부에 조회로 알려서 해당 공관(公館)에 조회를 보내 해당 선교사들에게 엄히 신칙해서 이처럼 위반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05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외부(外部)에 베껴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305호

한산군수(韓山郡守)의 첩보(牒報) 내용에 "본군(本郡)에 사는 김선재(金善在), 서가량(徐可良)은 모두 동학(東學)의 어지러운 무리입니다. 작년 동학 소요 때에 오응로(吳應老)와 무슨 일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지 동학 무리의 위세에 의지하여 허다한 악행을 저질러서 그 죄를 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군수로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또 위로하고 어루만져서 교화로 돌아가게 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거듭되었으나 위의 두 놈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지금에는 서학(西學)을 칭하면서 출몰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이 동학 소요 때보다도 심합니다. 문득 이전의 혐의라고 하면서 무리를 이끌고 오응로의 집에 가서는 집과 재산을 파괴하고 수도 없이 구타하고는 수백의 돈을 억지로 빼앗으니 그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응로는 겨우 몸을 빼내어 도망쳤고 그 아내는 소장(訴狀)을 품고 와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놈을 잡아들여 엄히 조사하였더니 스스로 서학이라 칭하면서 관청에서 패악질을 부리는데 마치 옆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들은 바와 본 바가 과연 법률이 없는 듯 난리와 행패를 부리는 무리였습니다. 사람이 목숨은 비록 신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어지러운 무리들은 크게 징계하여서 여러 사람을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포하여 가두고 나서 급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선재와 서가량 두 놈을 체포하여 보고한 일로 대(大) 프랑스 선교사 남일량(南一良)[19]의 서찰이 덕산(德山) 양촌

19 본명은 퀴를리에(Jean Jules Leon Curlier)이다. 1886년 9월 13일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 1889년 3월 3일 사제서품을 받고 프랑스를 떠나 그해 6월 21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첫 임지인 이천(伊川)으로 내려가 이미 그곳에서 전교활동 중인 쿠데르(Couderc, 具) 신부와 합류하여 힘을 합쳐 전교활동에 전념하였다. 이어 8월에는 충청도 지방을

(陽村)에서 왔는데 그 글의 내용에 '김선재, 서가량 두 사람은 본래 천주교도이고, 오응로는 동학의 무리입니다. 작년 7월쯤에 백성 서가량이 오가에게 이유도 없이 구타당하였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듣기에 매우 괴이합니다. 오응로를 붙잡아 가두고 두 사람은 즉시 풀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범죄의 유무와 다스림의 여부는 각기 지방관이 살펴서 판결할 수 있는 바가 있으면 고을에서 처리하고 또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은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참작해 처리하는 것이 사리의 당연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국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죄상(罪狀)을 모르고 다만 천주교도를 보호하면서 이와 같이 간섭합니다. 법이 법이라 할 수 없고 다스림이 다스림이라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공주군수(公州郡守)의 첩보 내용에서는 "소요를 거친 나머지 흩어지고 떠나간 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 번 서울의 관문(關文)에 따라 면(面)마다 타이르고 깨우쳐서 겨우 편안해질 가망이 보였습니다. 여름 이후로 동학 무리의 남은 비적들이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서학에 다시 붙어서는 무리의 세력에 의지하여 마을을 마구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백성들을 구타하고 돈과 재산을 약탈하니 버티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맡게 되어 내포평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처음엔 다블뤼(Daveluy, 安) 주교가 체포되었던 곳에서 약 2km쯤 떨어진 양촌이라는 큰 공소에 자리 잡았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박해를 겪을 뻔했으나 이를 모면하고, 몇 해 뒤에는 합덕(合德)으로 옮겨 그곳에 성당과 사제관을 지어 교세를 확장시켰다. 1904년까지 그곳에서 전교한 후 이 지방의 중심지인 공주(公州)로 가서 1909년까지 본당을 맡았다. 그 무렵 충청도 지방이 차차 안정을 되찾자 주교에게 간청하여 간도(間島)와 같은 벽지로 가기를 자원하였다. 1921년에 베네딕토회가 이곳을 맡게 되자 황해도의 매화동(玫花洞)으로 가서, 1935년 6월 6일 사망할 때까지 선교사업에 종사하였다(『가톨릭 용어사전』).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첩보합니다. 법부(法部)에서 공관(公館)과 왕래하신 후에 징벌에 대한 방해를 미리 막아서 불쌍한 백성들이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모두 어지러운 무리들이 서학에 의지하여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죄를 받기에 이르러서는 선교사로부터 도리어 무고(誣告)를 당하여 죄의 유무는 살펴보지 않고 이 무리들을 비호하여 각 군(郡)의 행정에 간섭하며 방해를 하니 법규(法規)에 있어서 매우 타당하지 못합니다. 각국의 약장(約章)으로 말하더라도 선교사를 보호할 뿐이지 죄를 범하는데도 내버려두고 묻지 말라는 조규(條規)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이 세력을 믿고서 소란을 일으킴이 매우 심하니 징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외국인과 관계된 것이라 이에 알립니다. 귀부(貴部)에서 해당 공관에 조회하여 해당 선교사들에게 엄히 신칙해 이와 같이 위반하는 폐해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부대신

외부대신 각하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회(照會)하는 건 / 안(案) 제341호

개국 504년 7월 23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국교(丁國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회(照會)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에 따라 베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341호

공주군(公州郡)의 보고서를 받았더니 내용에, “해당 진(鎭)에 수감 중인 평택(平澤) 거주 박서유(朴瑞有)는 유명한 동학(東學)의 수괴(首魁)로 몸을 빼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과부(寡婦)를 위협하고 결박해서 백성의 호소와 고을의 보고가 간곡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보고하였는데 지령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박서유의 형 박수창(朴受昌)이 동(洞)의 보고와 고을의 제시(題辭)가 모두 애매하다며 무소(誣訴)를 하여서 풀어 주라는 지령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소인의 버릇이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여 알리오니 살펴보시고 분명하게 조사하여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국 504년 7월 23일

법부(法部) 주사(主事) 정국교(丁國敎)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낭서(郎署)

안(案) 제359호

개국 504년 8월 1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국교(丁國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베껴서 외부(外部)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359호

지난날에 한산(韓山) 등지의 동학(東學) 잔당 무리가 서학(西學)에 의탁하여 백성을 때리고 재물을 약탈하여서 지금까지의 행패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벌하기에 이르자 선교사(宣敎師)로부터 도리어 무고(誣告)를 당해, 죄의 유무는 상관하지 않고 이런 무리들을 비호하니 각 군(郡)의 행정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부(貴部)에서 해당 공관(公館)에 조회(照會)하여서 해당 선교사에게 엄히 신칙해 달라는 일로 본 대신께서 귀 대신에게 조회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답이 없으시기에 이에 알리오니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外部) 주사(主事) 심종순(沈鍾舜) 좌하(座下)

안(案) 제236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은율군(殷栗郡)에 훈령(訓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236호

귀 보고서를 받아 보니 "동학(東學) 무리인 김계문(金啓文), 정택근(鄭宅根), 정관선(鄭寬善), 김이섭(金以燮), 이경환(李京煥), 이근달(李根達), 조승찬(趙昇贊), 사명철(史明哲), 김명학(金明學) 아홉 놈을 이미 포살(砲殺)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니 여러 놈들의 범죄가 비록 용서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일이 인명과 관계된 사안이라 소홀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 아래에 무슨 범죄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달아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案) 제237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최문현(崔文鉉)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해주부(海州府)로 훈령(訓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237호

은율군수(殷栗郡守)의 보고를 받아 보니 "김계문(金啓文), 정택근(鄭宅根), 정관선(鄭寬善), 김이섭(金以燮), 이경환(李京煥), 이근달(李根達), 조승찬(趙昇贊), 사명철(史明哲), 김명학(金明學) 등은 모두 동학 무리로 혹은 해당 군(郡)의 문서도 불살라 없애고 혹은 진상품(進上品)도 약탈하고 혹은 군기(軍器)도 탈취하였기 때문에 모두 포살(砲殺)하고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니 범죄가 비록 크지만 생명이 매우 중요한데 여덟아홉의 사람을 군에서 마음대로 죽였으니 소홀하다는 우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본부(本部)에서 이미 은율군에 훈령을 보내서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귀부(貴府)에서도 역시 따로 상세하게 탐문하여 해당 여러 범죄의 실상을 조목별로 나열하고 베껴서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案)

개국 504년 9월 4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민영룡(閔泳龍) 사건으로 최석주(崔錫疇)와 한용건(韓用健)을 붙잡아서 재심(再審)하라고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 훈령(訓令)하였으나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최석주가 사는 강화군(江華郡)과 한용건이 사는 해주군(海州郡)에 훈령하여서 즉시 압송해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래의 안(案)으로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귀군(貴郡)에 거주하는 최석주를 본부(本部)에서 조사할 사안이 있으니 특별히 염탐하여 즉시 체포하고, 나졸(邏卒)을 정하여 압송해 올리되 혹시 놓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강화군수(江華郡守) 좌하(座下) 241호

귀군(貴郡)에 거주하는 한용건. 이하의 말은 위와 같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해주군수(海州郡守) 좌하 240호

지령(指令)

대신 서리　　협판　　검사국

주임 유원성(柳遠聲)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동래부(東萊府)에 베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령(指令)

귀 질품서(質稟書) 제1호를 받아 보니, "흥해군(興海郡) 민요(民擾)의 수괴(首魁) 장상홍(張相弘)을 체포하여 가두고 지금까지의 죄상을 나열하여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니 이와 같은 흉악한 행패는 잠시도 용서하기에 어렵기에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죄를 신중하게 심의하는 도리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자세하게 살펴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조사하여 진술과 다짐을 상세하게 베껴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법부대신(法部大臣) 서리장(署理張) 박(博)

동래부 관찰사(東萊府觀察使) 지석영(池錫永) 좌하(座下)

안(案) 제99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신성묵(辛成默)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경무청(警務廳)에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99호

우옥(右獄)에 수감된 한용건(韓用健)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로 옮겼습니다. 이에 조회(照會)하오니 살펴보시고 수도(囚徒)에 옮겨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법부(法部) 검사국(檢事局) 주사(主事) 신성묵(辛成默)

경무청(警務廳) 신문계(訊問係) 문규복(文奎復) 좌하(座下)

안(案) 제478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신성묵(辛成默)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478호
해주부(海州府)에서 압송해 올린 죄인 한용건(韓用健)을 우옥(右獄)에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귀소(貴所)의 심판에 관계되었기에 이에 통첩(通牒)하오니 살펴보시고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재판소 주사(主事) 권재운(權在運) 좌하(座下)

안(案) 제255호

대신 서리 협판 검사국
주임 신성묵(辛成默)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해주부(海州府)로 훈령(訓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255호
이달 25일에 강령군수(康翎郡守)의 보고를 받았더니 "본군(本郡) 비적(匪

賊)의 무리 가운데 거괴(巨魁)를 체포하여 처형한 자도 있고 도망쳐서 붙잡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이에 위의 비적 거괴 중 사망하거나 체포하지 못한 자의 성명을 책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냅니다. 그중 오원경(吳元京), 이봉신(李奉信)을 지금 체포하여 가두고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해당 군(郡)이 귀부(貴府)의 관할이기에 해당 군수의 보고 가운데 비적의 무리 김영하(金永夏), 오가인(吳可人), 오헌근(吳憲根), 현학진(玄學振), 조사여(趙士汝), 조순승(曺舜承), 배동명(裵東明), 연순길(延順吉), 송만영(宋万永), 조붕도(趙鵬道) 등은 각자 특별히 염탐하여 체포하고 수감된 두 놈을 귀부로 압송해 올려 진술을 받아 사실을 알아낸 후에 권한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서 보고해 오십시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국 504년 9월 28일

법부대신(法部大臣) 서리장(署理張) 박(博)

해주부 관찰사(海州府觀察使) 이명선(李鳴善) 좌하(座下)

안(案) 제257호

개국 504년 10월 6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서리	협판	검사국
		주임 신성묵(辛成默)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해주부(海州府)로 훈령(訓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257호

지난번에 귀 제13호 보고를 받았더니 "은율군(殷栗郡)의 보고 내용에 '장연(長淵) 오리포(梧里浦)의 일본 병사가 동학(東學) 무리 13명을 붙잡아서 본군(本郡)에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9명은 죄가 용서할 수 없었고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여서 의병(義兵)에게 포살(砲殺)하라고 하고 해당 범인의 죄상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성책(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해당 범인의 죄명만 있고 진술안은 없으니 일에 소홀한 것입니다. 또 하물며 목숨과 관계된 것은 법률에서 신중해야 할 것인데 해당 군수가 갑자기 바로 실행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실상이 과연 죽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군수가 함부로 죽였다는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바가 있기에 앞으로 따져서 판단할 것입니다. 귀부(貴府)에서는 따로 사관(査官)을 정하여 해당 범인의 죄상을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군수가 함부로 죽인 근본적인 이유를 상세히 탐색하여 보고해 올릴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국 504년 10월 6일

법부대신(法部大臣) 서리장(署理張) 박(博)

해주부 관찰사(海州府觀察使) 이명선(李鳴善) 각하(閣下)

홍주부 관찰사(洪州府觀察使)에게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258호

대신 서리	협판	검사국
		주임 신성묵(辛成默)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홍주부 관찰사(洪州府觀察使)에게 훈령(訓令)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한산군수(韓山郡守)의 보고서를 접하니 "수감된 비적(匪賊) 무리 김선재(金善在), 서가량(徐可良)을 각별하게 징벌한 후 엄히 신칙하고 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김선재, 서가량 두 범인의 죄상은 해당 군수의 이전 보고에 따라 본부(本部)에서 지령하기를 장일백(杖一百) 유삼천리율(流三千里)의 율(律)을 적용하여 본군(本郡)에서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해당 군수가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부령(部令)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군수는 법을 잘못 적용한 법률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 즉각 붙잡아 올리고, 두 범인은 다시 체포하여 가두고 본부(本部)가 적용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일로 홍주부에 지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58호

한산군수의 보고서를 받았더니 "해당 군(郡)의 비적 무리 김선재, 서가량이 동학(東學)을 처음 주창하여 행패가 끊임이 없었다가 서학(西學)에 의

탁하여 나쁜 버릇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군옥(郡獄)에 가두고 효수(梟首)하여 경계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숨에 관련된 사안은 매우 중요하니 진술을 받아서 급히 보고하라고 지령하였고, 해당 보고를 다시 받았더니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이 이전 버릇을 고치지 않고서 오응로(吳應老)의 집과 재산을 때려 부수고 돈 수백 냥(兩)을 빼앗았으며 관청의 뜰에서 발악하였다고 하니 죄가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대명률(大明律)』「전택조(田宅條)」 '남의 재물을 훼손하면 물건의 수를 헤아려서 절도(竊盜)에 준하여 논한다.'와 『대전회통(大典會通)』「추단조(推斷條)」 '유생(儒生)으로 토주관(土主官)[20]에게 발악한 자는 장[지금은 태(笞)를 적용] 일백 유삼천리[지금은 종신징역(終身懲役)]의 율'을 적용하여 귀군(貴郡)에서 처벌한 후에 상황을 급히 보고하십시오."라고 지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를 바로 받아 보니 "부(部)의 지령을 삼가 받들었습니다. 해당 범인은 이미 제재받을 줄을 스스로 알고서 잘못을 고치고 선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무거운 것이기에 한 가닥의 목숨을 용서하여 각별하게 징벌하여 그치게 한 후에 엄히 신칙하여 풀어 주고 연유(緣由)를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김선재, 서가량 두 놈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군수가 이전과 이후의 보고한 것에 경중(輕重)이 같지 않아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본부에서 법률을 적용한 후에 함부로 풀어 주었으니 해당 군수가 이치에 맞지 않게 이의(異議)를 제기하여 법을 잘못 적용한 법률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에

20 백성이 해당 고을의 수령을 일컫던 말이다.

서 붙잡아 징벌할 것이니 즉각 압송해서 올리고, 명령을 어기고 풀어 준 곡절을 비밀리에 탐색하여 보고해 오십시오. 김선재, 서가량 두 놈은 귀부(貴府)에서 다시 붙잡아서 본부에서 적용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부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홍주부 관찰사(洪州府觀察使) 이승우(李勝宇) 각하(閣下)

안(案) 제579호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로 통첩(通牒)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579호

한용건(韓用健)과 최석주(崔錫疇)의 사건문서를 돌려보내니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통첩합니다.

법부(法部) 검사국장(檢事局長) 신재영(申載永)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검사(檢事) 최문현(崔文鉉) 좌하(座下)

추신 : 한용건의 보방장(保放狀)을 함께 보내니 모두 수령하십시오.

해주부(海州府)에 지령(指令)하는 건 / 안(案) 제1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해주부(海州府)에 지령(指令)하는 건

해주부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동학(東學) 수괴(首魁) 강달조(姜達祚)를 부옥(府獄)에 엄히 가두고 지령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았더니 조심하고 삼가는 바가 없을 수가 없으니 공안(供案)[21]을 올려 보내라고 지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호

재령군(載寧郡)의 하리(下吏) 강달조를 부옥에 엄히 가둔 일로 구력(舊曆) 12월 4일에 봉인하여 보낸 보고서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범인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법률이 따라서 무거워 조심하고 삼가는 바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공안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올려보내서 헤아려 살려봄에 편리하게 할 일로 이에 지령합니다.

법부대신(法部大臣)

해주부 관찰사(海州府觀察使) 이명선(李鳴善) 각하(閣下)

21 조선시대에 죄인을 심문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전주부(全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10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전주부(全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에 따라서 훈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0호

이달 10일에 귀 보고서 제1호를 받아 보니 "본부(本府) 경무관보(警務官補) 김한정(金漢鼎)의 보고서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병정을 바꾸어서 서리와 장교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동학비적(東學匪賊)의 잔당과 결탁하여 군기(軍器)를 숨겨두고 문서를 발송하여 방(榜)을 써 붙인 부(府) 관할의 패악한 무리 박준상(朴俊尙) 등 여섯 놈은 모두 포살(砲殺)하였습니다. 최재복(崔在卜) 등 열한 놈은 순서대로 대질조사한 뒤 참작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김도성(金道成) 등 스물다섯 놈은 미리 앞서서 도망쳤기에 빨리 염탐하여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중대장(鎭衛中隊長) 김윤창(金潤昌)이 패악한 무리에게 병정으로 뽑아준다고 하면서 뇌물을 약속하고 먼저 받아들였던 것은 증거와 진술이 틀림없습니다. 패악한 무리들이 맡겨 둔 군기(軍器)는 진위대에게 우선 내어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이러한 패악한 무리들은 용서할 수가 없으나 사형(死刑) 이상은 본부(本部)에 우선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린 후에 처벌하라

는 훈령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군법(軍法) 이외에 포살하는 법률은 없는데 박준상 등 여섯 놈을 앞질러 포살하였으니 법률과 규례에 크게 어긋나 무거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재복 등 열한 놈은 엄중히 조사하여 사실을 얻어내고, 귀부(貴府)에서 경중을 구분하여 적당한 법률을 살펴서 본부(本部)에 질품(質稟)하십시오. 도망친 김도성 등 스물다섯 놈은 기한을 정해서 염탐하여 체포하고, 남은 군기(軍器)의 수는 반드시 탐색하여 찾아낸 후에 그간의 상황을 모두 보고해 올릴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부대신(法部大臣) 조(趙)

전주부 관찰사(全州府觀察使) 조민희(趙民熙) 각하(閣下)

전주부(全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11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전주부(全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에 따라서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1호

이달 16일에 귀 전보(電報)를 받아 보니 "전에 태인(泰仁) 등지에서 무리를 모으고 통문(通文)을 보낸 비적(匪賊)의 수괴를 계속 기찰하고 염탐해서 병정과 순검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거괴(巨魁) 가운데 열여덟 놈을 체포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만약 보고서를 보내면 사형을 집행하는 절차가 늦어질 것 같으니 속히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지금 체포한 열여덟 놈이 지난번 박준상(朴俊尙) 등의 잔당인지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갑자기 사형을 시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모아서 의탁했던 근본적인 사유를 진술로 받아서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기를 위하여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부대신(法部大臣) 조(趙)

전주부 관찰사(全州府觀察使) 조민희(趙民熙) 좌하(座下)

추신 : 회답 전보를 보냈는데 전신선이 중간에 끊어져서 전신이 통하지 않아서 이 훈령을 보냅니다. 진술을 받은 후에 보고하는 것이 늦어질 것 같으면 전신선로가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린 후에 대략을 먼저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해주부(海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10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해주부(海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에 따라서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0호

내부(內部)의 조회를 받아서 장연군수(長淵郡守) 염중모(廉仲模)의 보고서와 반역죄인 백낙희(白樂喜)의 공안(供案)을 살펴보니 "귀부(貴府) 소관인 해주군(海州郡) 검단방(檢丹坊)에 사는 유학선(柳學善), 같은 군 같은 방(坊) 손이고개에 사는 김창수(金昌守),[22] 같은 군 묵방(墨坊) 청룡사(靑龍寺)에 머물던 김형진(金亨鎭), 안악(安岳) 대덕방(大德坊)에 사는 최창조(崔昌祚), 문화(文化) 차장동(遮牆洞)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장연 신화방(薪花坊) 빈양동(彬陽洞)에 사는 김재희(金在喜) 등 여러 놈들이 반역죄인 백낙희 등과 망령된 계획을 몰래 빚어내다가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는 지경에 이르자 미리 알고서 도망쳤습니다. 본군(本郡)에서는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았더니

22 김구(金九)의 다른 이름인 김창수(金昌洙)의 오기 혹은 이칭(異稱)으로 보인다. 당시 김구는 동학에 가입한 뒤 황해도 일대에서 백낙희(白樂喜)의 주도하에 김형진(金亨鎭), 최창조(崔昌祚) 등과 함께 해주성을 점령을 계획하며 중국에서 원군의 요청을 시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도진순, 1997, 「1895~96년 金九의 聯中 義兵 活動과 치하포사건」, 『韓國史論』 3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여러 놈들이 저지른 사실들이 매우 위중한 일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훈령이 도착한 즉시 방법을 특별히 마련하여 위의 여러 범인들을 기한을 정하여 염탐해서 체포하되 한 놈이라도 도망가는 폐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포한 후에는 부옥(府獄)에 엄중히 가두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진술받아서 급히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양 원년 3월 일

법부대신(法部大臣) 이(李)

해주부 관찰사(海州府觀察使) 이명선(李鳴善) 각하(閣下)

안(案) 제16호

건양 원년 3월 12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아래의 안(案)을 내부(內部)에 조복(照覆)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16호

귀 조회(照會) 제16호를 받아 보니 "반역죄인 백낙희(白樂喜) 등을 붙잡

아 가두고 진술을 받아서 보고한다는 해주부(海州府) 장연군수(長淵郡守) 염중모(廉仲模)의 보고서를 받아서 살펴보니 사안이 귀부(貴部)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와 공안(供案)을 보내니 해당 군(郡)에 신속하게 지령(指令)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백가 놈 등의 저지른 바가 모두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땅한 법률을 적용하여 해당 군에 지령하였습니다. 도망친 여러 놈들은 기한을 정하여 염탐하여 체포하라는 일로 해주부에 이미 훈령을 보냈습니다. 해당 보고와 공안은 돌려보내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 3월 일

법부대신(法部大臣) 이(李)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 각하(閣下)

안(案) 제17호

건양 원년 3월 12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아래의 안(案)을 내부(內部)로 조복(照覆)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17호

귀 제17호 조회를 받아 보니 "개성부(開城府) 총순(總巡) 김천규(金天圭)의 보고서 내용에 '평산(平山)의 비적(匪賊) 괴수(魁首) 박대련(朴大連), 신창식(申昌植), 박기영(朴基英) 세 놈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이 귀부(貴部)와 관련되오니 살펴보시고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이러한 범죄를 평소대로 처리하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심문을 더욱 특별히 하여서 법률을 살펴 급히 보고하라는 일로 해당 관찰사(觀察使)에게 훈령(訓令)으로 신칙하였습니다. 이에 조복하오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 3월 일

법부대신(法部大臣) 이(李)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 각하(閣下)

훈령(訓令) 개성부(開城府) 제10호 / 안(案)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훈령(訓令) 개성부(開城府) 제10호

아래 안(案)에 따라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지금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의 제17호 조회(照會)를 받았더니 "개성부 총순(總巡) 김천규(金天圭)의 제6호 보고서 내용에 '평산(平山) 지역의 비적(匪賊) 수괴(首魁) 박대련(朴大連), 신창식(申昌植), 박기영(朴基英) 세 놈을 체포하여 가두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이 귀부(貴部)와 관련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처리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이러한 때에 이러한 범죄를 평소대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귀 관찰사(觀察使)는 심문을 더욱 엄중히 하여서 질품(質稟)할 사안을 제외하고 직권 내에서 마땅히 판단할 범죄라면 판결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양 원년 3월 일

법부대신(法部大臣) 이(李)

개성부 관찰사(開城府觀察使) 이교영(李敎榮) 각하(閣下)

추신 : 이러한 범죄가 있을 때는 귀부(貴府)에서 우선 심문한 후에 법률을 헤아려서 급히 보고하는 것이 사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부(貴府)의 총순이 내부(內部)에 보고만 하고 귀 관찰사는 본부(本部)에 보고가 여전히 늦어지고 있으니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에 특별히 훈령하니 이유를 상세하게 갖추어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해주부(海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14호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동월 동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해주부(海州府)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에 따라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4호

귀 보고서 제21호를 받아 보니 4월 24일에 도착한 장연군수(長淵郡守) 염중모(廉仲模)의 보고서 내용에 "본군(本郡)에 수감된 백낙희(白樂喜)는 이미 포살(砲殺)하였고, 백낙희와 공모한 전양근(全良根), 백기정(白基貞), 김계조(金啓祚)와 수종(隨從)한 김의순(金義淳), 백낙규(白樂圭) 등을 이달 6일에 모두 교수형에 처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보고서 내에 "시찰관(視察官)의 인신(印信)과 문서봉투를 찾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송화(松禾)의 비적(匪賊) 수괴(首魁) 강성일(康成日), 같은 무리인 강운영(康云永)과 본군의 산포(山砲) 이승조(李承祚) 등을 지금 체포하여서 엄중하게 신문하였습니다. 강운영의 진술 내용에 '제가 전에 동학(東學)의 무리로 다시 산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에 강성일과 목감(牧甘) 땅에서 기포(起包)하여서 시찰관과 나졸(邏卒) 두 사람을 포살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강성일이 빼앗아 간 인신과 문서 봉투는 어디로 갔는지 알지는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승조의 진술 내용에 '기

포한 장소에 갔다가 강성일, 강운영이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앉아서 시찰관을 해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운영, 이승조 두 놈은 전에 동학의 무리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산포로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로 소란을 피우다가 저지른 죄가 용서하기 어려우니 결단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시찰관의 인신과 문서를 빼앗아 간 강성일의 경우는 빨리 염탐하여 체포하라는 뜻으로 송화군(松禾郡)에 엄중히 신칙하였으나 아직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강운영, 이승조 두 놈은 모두 형구(刑具)를 갖추어 엄중히 가두라고 해당 군(郡)에 지령으로 신칙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지령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해당 세 놈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기찰하고 염탐하여 날짜를 정해서 체포해야 합니다. 강운영, 이승조의 진술 내용은 보고에 뒤섞여 베껴놓아서 상세하게 살펴보기 어려울 뿐더러 공안(供案)을 따로 갖추어서 첨부해 보고하는 전례(前例)가 이미 있습니다. 해당 두 범인을 더욱 다시 조사하여 실제 사정을 알아낸 후에 마땅한 법률을 헤아려 적용하고, 공안을 따로 갖추어 급히 보고하여 본부(本部)의 지령을 기다리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를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주부 관찰사(海州府觀察使) 서리 참서관(參書官) 김효익(金孝益) 좌하(座下)

법부대신(法部大臣) 한(韓)

안(案) 제18호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안(案)을 군부(軍部)로 조복(照覆)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18호

귀 조회(照會) 제23호를 받아 보니 "청주지방대(淸州地方隊) 참령(參領) 구영조(具永祖)가 보고한 내용 중에 다시 동학(東學)으로 방자하게 구는 서석여(徐石汝), 김시묵(金時默)과 임경원(林景元)의 아들 임도호(林道浩)를 체포하여 가두고 조사한 사건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해당 범인들이 요행히 처벌을 면했다가 되살아난 것은 매우 놀랍기가 그지없고, 놓쳤다가 다시 체포한 것은 이치상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처단해야 하지만 목숨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다시 한번 살펴본 뒤에 처벌할 것입니다. 귀부(貴部)에서 해당 참령에게 훈령으로 신칙하여서 해당 범인들을 공주재판소(公州裁判所)로 붙잡아 넘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조복하오니 살펴 주시기를 힘써 바랍니다.

법부대신(法部大臣) 한(韓)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윤용(李允用) 각하(閣下)

공주재판소(公州裁判所)로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25호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공주재판소(公州裁判所)로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에 따라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5호

군부 대신(軍部大臣)의 조회(照會) 제23호를 받아 보니 내용에 "바로 청주지방대(淸州地方隊) 참령(參領) 구영조(具永祖)의 제11호 보고를 받아 보니 내용에 '청주(淸州) 산외면(山外面) 인근에서 지난날의 비적(匪賊) 수괴(首魁) 서석여(徐石汝), 김시묵(金時默), 임경원(林景元) 등이 흔적을 숨기며 왕래하여 다시 동학(東學)으로 소란을 일으키려고 통문(通文)을 보내서 접(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병정을 보내서 서석여, 김시묵, 임경원의 아들 임도호(林道浩)를 붙잡았고, 세 놈의 집에서 동학의 문서와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찾아내서 바로 바쳤기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른바 『동경대전(東經大全)』 한 권은 서가 놈의 집에서 나왔다고 하고, 치포관(緇布冠) 두 개, 『동경대전』 한 권, 올해 2월에 보낸 경통(敬通)을 베껴 쓴 책자 한 권, 갑오년(甲午年, 1894)에 동학의 무리로 횡행하였던 명첩(名帖) 등 잡다한 물건은 김가 놈의 집에서 나왔다고 하고,

올해 2월에 보낸 경통의 원본은 임가 놈의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병정들이 입으로 말하기를 「서석여의 집 뒤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화로를 두었는데, 화로가 아직 식지 않았고 향(香)이 매우 많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놈을 붙잡아 들여서 자세히 물어보니 서석여가 아뢴 내용에 「저는 일찍이 거괴(巨魁) 손사문(孫士文)[23]의 포(包) 휘하의 접주(接主)로 도망쳐서 숨었다가 이번에 요행히 돌아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동학을 엄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감히 다시 동학을 하겠습니까? 『동경대전』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돌아와 머물고 있던 뒤에 아직 내다 버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뒤뜰의 향로(香爐)는 진실로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니니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미 들어간 소문이 있어서 이처럼 체포되었으니 변명할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시묵이 아뢴 내용에 「저도 역시 손사문 포 휘하의 접주로 도망쳐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머문 뒤에 서석여가 다시 동학을 일으키자는 뜻으로 저에게 경통(敬通)을 보냈습니다. 2월 10일에 서석여의 집에서 치성을 드리는데 저는 비록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거괴인 강채서(姜采西)가 종종 왕래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석여와 강채서 두 놈이 분명히 주창자이고 집안에 있던 동학의 여러 물건들은 모두 강채서가 맡겨 둔 것이라 하면서 횡설수설하며 고문을 견디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경원의 아들 임도호가 아뢴 내용에 「저의 아비가 오래 도망쳤다가 요즘 비록 왕래하지만 항상 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통은 서석여가 보

23 충청도 청주 출신으로 동학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손천민(孫天民)을 말한다. 3대 교주인 손병희(孫秉熙)는 그의 서질(庶姪)로 1882년 동학에는 적서(嫡庶)의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손병희를 입도시켰다. 문필이 뛰어나 동학의 각종 문서를 담당하였다고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내서 보관해 둔 것이지만 사연은 모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석여, 김시묵 두 놈은 여러 진술과 확보한 물건이 이같이 정확하니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임도호는 나이가 어려서 알지 못하고, 차지(次知)[24]로 붙잡아 온 것이니 다른 죄인과 구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살펴서 지령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세 놈의 범죄는 귀부(貴部)와 관계된 형안(刑案)이니 잘 살펴서 처벌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위 세 놈이 저지른 바는 잠시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심판하는 도리에 소홀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부(軍部)에 조회로 알려서 해당 참령에게 훈령으로 신칙하여 해당 범인들을 귀 재판소(裁判所)로 붙잡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압송해 도착한 후에는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진술을 받아 공안(供案)을 따로 갖추고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올려보내서 본부(本部)의 지령을 기다리십시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부대신(法部大臣) 한(韓)

공주재판소(公州裁判所) 판사(判事) 좌하(座下)

해주재판소(海州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20호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24 조선시대에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던 하인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던 사람을 말한다.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해주재판소(海州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에 따라서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0호

귀 보고서 제30호를 받아 보니 "부(部)의 훈령을 받들어 송화군(松禾郡)의 비적(匪賊) 괴수(魁首) 강성일(康成日)은 따로 더욱 기찰하여 체포하고 장연군(長淵郡)에 수감된 산포(山砲) 강운영(康云永), 이승조(李承祚) 등이 범죄를 저지른 실상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공안(供案)을 따로 갖추어서 급히 보고하여서 전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당 군(郡)에 바꿔서 신칙하였습니다. 해당 군수 염중모(廉仲模)의 보고 내용에 '도망 중인 강성일은 널리 펼쳐서 기찰하고 염탐하였고, 수감된 강운영, 이승조 등이 범죄를 저지른 실상을 더욱 엄중하게 조사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안(供案)을 만들어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안을 올려보내니 살펴보시고 지령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강운영의 진술에는 '(자신은) 강성일의 수종(隨從)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승조의 진술에는 '강운영이 강성일과 같이 반수(班首)가 되어 동쪽과 서쪽에 우두머리로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범죄의 수범(首犯)과 종

범(從犯)을 구분하지 않으면 (법률을) 적용하여 처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범인을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수범과 종범을 분간하여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양 원년 6월 23일

법부대신 한(韓)

해주부 관찰사 서리 해주재판소 검사 김효익(金孝益) 좌하(座下)

해주재판소(海州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23호

건양 원년 7월 9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원년 7월 10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해주재판소(海州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에 따라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3호

귀 보고서 33호를 받아 보니 대략의 내용이 "안악군수(安岳郡守) 유기대(柳冀大)의 보고에 따라 치하포(鴟河浦)에서 일본인을 찔러 죽인 김창수

(金昌洙)[25]를 체포하여 가두고 진술을 받아서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해당 범인의 행위가 지극히 패악스러워 잠시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과 관계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안악군수의 보고와 귀 재판소에서 특별히 파견한 관리가 회답한 보고에는 김창수가 일본인을 찔러 죽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범인의 공안(供案)에는 치하포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악군수와 귀 재판소의 관리는 분명한 증거를 어떻게 인지한 것인지 해당 범인의 공안과 서로 모순되어 급하게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악군에 훈령으로 신칙하고 귀 재판소의 관리에게 소상히 탐문하여 찔러 죽인 확실한 증거를 자세하게 급히 보고하십시오. 해당 범인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사실을 얻어내서 즉각 보고해 오십시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양 원년 7월 9일 법부대신 한(韓)

해주부 관찰사 서리 참서관(參書官) 해주재판소 검사 김효익(金孝益) 좌하

안(案) 제36호

건양 원년 7월 13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25 김구(金九)의 이명이다. 당시 김구는 을미사변(乙未事變)으로 살해당한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안악의 치하포(鴟河浦)에서 만난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국모 살해에 가담했던 일본 군인으로 인식하고 살해하였다(도진순, 1997, 「1895~96년 金九의 聯中 義兵 活動과 치하포사건」, 『韓國史論』 38).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박재선(朴齋璿)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아래 안(案)을 내부(內部)에 조복(照覆)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36호

귀 조회(照會) 제35호를 받아 보니 "해주부(海州府) 안악군(安岳郡) 치하포(鴟河浦)에서 일본인을 찔러 죽인 김창수(金昌洙)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해당 부(府)의 보고와 해당 범인의 공안(供案)이 폐부(敝部)에 도착했는데 보고의 내용과 진술이 모순이 있어서 다시 조사하여 급히 보고하라고 해당 부(府)에 이미 훈령을 보냈습니다. 이에 조복하오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원년 7월 13일

법부대신 한(韓)

내부 대신 박정양(朴定陽) 각하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40호

건양 원년 12월 2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곽응순(郭應淳)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에 따라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0호

귀 보고서 제81호를 받아 보니 내용에 "서천군수(舒川郡守) 유기남(柳冀南)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본군(本郡)의 백성 서창길(徐昌吉)이 작년 동학(東學) 소요 때에 그 무리에 이름을 올려서 관장(官長)을 능욕하고 백성을 침학하며 한산(韓山)과 서천(舒川) 두 고을을 무너뜨린 허다한 죄상은 군수(郡守)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 지목하는 바였으나 도망쳐서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서학(西學)에 들어서 세력을 믿고 도박판을 벌이고 패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같은 마을의 사대부를 결박하여 잡아다가 함부로 악독한 형벌을 가하면서 돈과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지난번에 저지른 범죄가 사형에 처하기 충분한 데, 다시 나쁜 버릇을 부려대니 법에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본군의 하리(下吏) 유한표(劉漢表)는 작년 동학 소요 때에 운량접주(運粮接主)라고 하면서 본군의 수군과 육군의 군기(軍器)를 무수히 빼앗고 한산과 서천을 유린하였습니다. 돈과 곡식을 압류하고 소와 닭을 배정하는데 누군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군들 분함을 품지 않겠습니까. 남쪽의 비적(匪賊)과 의기투합하여 여러 성(城)을 무너뜨리고 서울의 병사가 와서 토벌할 때 도망쳤습니다. 같은 무리인 현도하(玄道河)와 함께 서학에 이름을 올렸던지 올빼미 같은 사나운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호남(湖南)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현가 놈은 전주부(全州府)에 붙잡혔고, 유가 놈은 도망쳐서 함열(咸悅)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교(將校)를 보내 붙잡아 와서 서창길과 함께 하인을 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이들과 같이 허리를 자르고 목을 베어야 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목을 매달아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법에서 당연한 바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서창길과 유한표를 관찰부의 뜰에 붙잡아 와서 지금까지의 행위를 질문하니 군의 보고와 동일하게 구구절절이 자백하였습니다. 진실로 저지른 바가 이와 같으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이러한 범죄는 비록 용서할 수 없으나 문서로 작성된 진술이 없으니 다만 구구절절이 자복했다고 범범하게 말하는 보고로는 헤아려서 처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두 범인을 다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상세하게 공안을 갖추어서 급히 보고하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양 원년 12월 4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한(韓)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판사(判事) 이건하(李乾夏) 각하(閣下)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50호

건양 원년 12월 22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에 따라서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0호

귀 보고서 제115호를 접수하니 내용에 "서천군(舒川郡)에서 압송해 온 죄인 서창길(徐昌吉), 유한표(劉漢表) 등은 동학(東學) 수괴(首魁)로 도망쳐서 서학(西學)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난리를 일으킨 정황을 각자 진술을 받은 후에 조경선(曺京先)은 특별히 책임을 물을 것이 없어서 임시로 보방(保放)하고 진술을 따로 기록하여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지난번 제81호 귀 보고서에는 "서천군수에게 받은 보고에 따라 서창길이 동학 소요 때 이름을 올려서 관장(官長)을 능욕하고 백성을 침학했으며, 한산(韓山)과 서천 두 고을을 무너뜨린 허다한 죄상과 유한표가 수군과 육군의 군기(軍器)를 수없이 탈취하여 한산과 서천을 유린하고 남쪽 비적(匪賊)과 의기투합하여 여러 성(城)을 무너뜨린 지금까지의 행위를 관찰부의 뜰에 붙잡아와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군(郡)의 보고와 동일하게 구구절절이 자백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진술에는 모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다만 변명만 하고 있으

니 지난번 질문했을 때의 자백은 누구의 자백인지, 두 범인의 죄안(罪案)이 앞서서는 무겁고 뒤에는 가벼운 것은 특히 의아할 만하고, 귀 보고서의 말이 앞뒤가 같지 않음은 특히 더욱 놀랍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당 군(郡)이 보고한 바는 확실한 근거가 분명하다고 하고, 해당 진술에서 원통하다고 한 것은 증빙이 전혀 없습니다. 범인 유한표의 죄상은 조경선의 진술에 이미 드러났고, 조경선의 경우는 범인 유한표의 진술 내용에 "유도(儒徒)라고 하면서 포군(砲軍)을 이끌고 저의 첩을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한 번의 대질도 없이 진술을 묶어서 문서로 작성한 만든 것입니까? 해당 세 범인을 따로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진실을 알아내고, 만일 해당 범인들이 한결같이 자백하지 않으면 그 애매한 증거를 소상히 질문해서 공안(供案)을 갖추어 보고해 와서 결정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양 원년 12월 22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조(趙)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판사(判事) 이건하(李乾夏) 각하(閣下)

안(案) 제1호

건양 2년(建陽二年, 1897) 1월 12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만교(鄭萬敎)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아래의 안(案)을 탁지부(度支部)로 조회(照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案) 제1호

괴산군(槐山郡) 하리(下吏) 김해붕(金該鵬)의 소장(訴狀)을 받아 보니 내용에 "괴산군이 갑오년(甲午年, 1894) 10월쯤 동도(東徒)의 소요 때에 각종 문서들이 불에 타서 본군(本郡)의 보고가 상세하지 못하여 경저리(京邸吏)[26]와 서로 차이가 있게 된 일을 을미년(乙未年, 1895) 8월쯤에 올라가서 바로잡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미납한 공전(公錢)은 작년에 탁지부에 보고하여서 다 탕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병신년(丙申年, 1896) 10월쯤에 본부(本部)에서 충청관찰부(忠淸觀察府)에 훈령(訓令)하여서 공납(公納)을 대질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올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공납을 대질할 일이 없어서 탁지부의 문서를 첨부하여 소장을 올립니다. 일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 훈령하셔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삼가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이 사안은 지난 을미년 7월 19일에 각 고을의 공납 가운데 연체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저리와 경차인(京差人)[27]의 이름을 보내신 귀부(貴部) 조회에 따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로 바로 넘겨 보내서 독촉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괴산

26 서울에 머물면서 지방 관아(官衙)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령(守令)이 임명하던 아전(衙前) 또는 향리(鄕吏)를 말한다.

27 서울의 관리나 세도가들이 공무로 인하여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사람을 말한다.

군의 색리(色吏) 김해붕은 본군(本郡) 저리(邸吏) 정진환(鄭鎭煥)과 대질할 일이 있다고 하여서 훈령으로 신칙하여 붙잡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받은 해당 소장 내용에 "작년에 탁지부에 보고하여 다 탕감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해당 저리가 실로 납부를 연체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 포흠(逋欠)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만약 갑오년 이전이라면 자연히 논할 것이 없겠지만 전후 상황이 어떠한 사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알리오니 살펴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2년 1월 12일

법부(法部) 검사국장(檢事局長) 신재영(申載永)

탁지부(度支部) 사세국장(司稅局長) 이해만(李海萬) 각하(閣下)

경상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15호

건양 2년 6월 28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김창형(金昌炯)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경상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案) 제15호

귀 관할인 산청군(山淸郡) 황산(黃山)에 사는 김기승(金琪升) 등의 소장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에 "무릇 사람의 자식 된 자로 아비의 원수를 갚지 못한 지가 지금까지 4년으로 이렇게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하늘에 사무친 원한을 세세하게 살펴 주십시오. 저의 아비 김천락(金千洛)은 원래 고을의 일을 보던 사람으로 군(郡) 전체의 공무에 따라 갑오년(甲午年, 1894)쯤에 본군(本郡)의 좌수(座首)[28]가 되었을 때 마침 동학(東學)의 어지러운 무리들이 크게 일어나서 백성들이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관(亞官)[29]의 몸으로 막지 않을 수 없어서 꾀를 내어서 주선하다가 몸에 해를 입고 뼈가 불살라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희들이 그 커다란 원한은 더욱 어떻겠습니까? 저의 세 형제가 사람이 자식으로서 어찌 당장 원수를 갚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제 아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손을 쓴 범인은 민계약(閔桂若), 민성언(閔性彦), 양윤문(梁允文) 세 놈으로 그때에 수괴(首魁)가 되어서 수많은 어지러운 무리들을

28 악질 향리의 규찰과 향촌의 교화를 위해 유향품관(留鄕品官)에 의해 조직된 유향소의 우두머리이다. 각 고을의 향안(鄕案)에 입록된 사족(士族)들이 참석한 향회(鄕會)에서 연로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선발하여 좌수로 삼고 그다음을 별감(別監)이라 하였으며, 주부(州府)에는 5인, 군(郡) 4인, 현(縣) 3인으로 정했다고 한다. 임기는 일정하지 않아 곳에 따라 2년으로 한 곳도 있으나 종신으로 한 곳도 있다. 선조(宣祖) 때에 향회에서 선출된 자를 수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변하여 사실상 임명권이 수령에게 넘어갔다. 따라서 초기에는 좌수의 권한이 강력해 수령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나 선조 이후 크게 약화되어 별감 이하 향임의 인사권과 행정 실무의 일부, 즉 군기(軍器)의 정비, 정군(正軍)의 선발, 군포전(軍布錢)의 징수, 환곡(還穀) 등 주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수령의 수석 보좌관 격으로 전락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9 좌수를 달리 이르던 말이다.

이끌며 모이고 흩어지기가 견줄 곳이 없었습니다. 세 형제의 약한 몸으로는 강함과 약함이 같지 않아서 복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영(監營)과 고을에 소장을 올렸고 이제 법부(法部)에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로소 복수할 날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하늘의 사무친 원한을 자세하게 살펴 주신 후에 특별히 엄중한 제사(題辭)로 해당 관찰부에 위의 세 놈을 기한 내에 잡아다 바치라고 하시면 단칼에 원수를 갚아서 만분의 일이라도 원한을 풀 것입니다. 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엄중하고 밝은 분들에게 호소하오니 이러한 원한을 깨끗하게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그 아비가 횡사를 당하였으니 자식이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과 관계된 사안이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시 민계약, 민성언, 양윤문 세 놈을 따로 염탐하여 체포해서 실제 범죄의 유무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형식을) 갖추어 보고해 법률로 조처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양 2년 6월 28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한(韓)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판사(判事) 조시영(曺始永) 각하(閣下)

예천군수(醴川郡守)에게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1호

건양 2년 6월 22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김창형(金昌炯)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예천군수(醴川郡守)에게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案) 제1호

귀군(貴郡) 전 군수 김근연(金近淵)의 보고서 제1호를 받아 보니 내용에 "본군(本郡)이 갑오년(甲午年, 1894)부터 3년 사이에 두 번의 동학(東學) 소요와 의병(義兵) 소요를 겪었습니다. 피폐해진 상황은 이미 서울과 지방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군수로 작년 7월에 부임한 이후로 고을의 폐습과 백성의 고통 등 허다한 병폐를 밤낮으로 생각하여 되살릴 희망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힘써야 할 것은 예전의 미상납(未上納)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살펴보니 거의 소실되었고 일고여덟은 누락되었습니다. 갑오년 6월 이후의 상납 가운데 죽거나 도망쳐서 징수하려고 하여도 방법이 없는 포흠(逋欠)이 수 만여 냥(兩)의 액수에 이르렀으나 청산할 길이 없었습니다. 갑오년 즈음에 전전(前前) 조군수(趙郡守)가 재임할 때 동학 무리가 창궐하여 전도야지(全道也之) 부자가 모두 비적(匪賊) 수괴(首魁)로 어두운 밤에 고을을 덮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가 몸을 빼내서 도망쳤습니다. 완전히 흔적을 감추어 버려서 고을에서는 그 전토를 찾아내서 이미 속공(屬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미년(乙未年, 1895) 여름에 전도야지의 아들 전세진(全世鎭)이 몰래 전(前) 안동부(安東府)에 가서 호소하여 되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겨울 세

무시찰관(稅務視察官)이 군에 와서 적에게 승리한 공은 여기에 있고 몰수한 토지는 다른 곳에 속하니 가히 월(越)나라 사람이 경작하였지만 조(趙)나라 사람이 수확한 것이라 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동부에 조회(照會)하고 본군에 훈령하여 다시 이 토지를 포흠에 보충하는 곳으로 떼어 붙이라는 뜻으로 작성하여 지급한 완문(完文)[30]이 군(郡)에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상납하여 포장(逋帳)을 청산하는데 있어서 그 공적(公蹟)의 소재를 헤아려서 이러한 사유로 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결국 시가로 팔아서 갑오년에 이미 상납한 것 가운데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즈음에 용궁(龍宮)에 사는 남경익(南敬益)이 중간에서 튀어나와서 이미 속공하여 상납에 충당한 물건을 뜻밖의 횡재로 여겼습니다. 전세진에게 충동질하여서 토지를 샀다는 것을 알고도 전세진의 이름을 빌려서 고을에 촉탁을 하였으나 간사한 짓을 성공시키지 못하였고, 관찰부에 호소하여 제사(題辭)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잘못을 알았다면 물러나서 자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배를 불릴 욕심으로 더욱 요행을 바라면서 서울의 부(部)에 다시 소장을 올려서 정중한 훈령이 내려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저 백성 남경익은 계획이 비록 정교하나 실상은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협잡하는 폐단을 만약 더욱 맹렬하게 엄중히 징벌하지 않으면 법이 시행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사실에 따라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고 법률을 헤아려서 처리하여 패악한 버릇을 징벌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전가 놈이 행패를 저지른 것은 과

30 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하는 사실의 확인이나 각종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확인서를 말한다.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연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체포하는 것을 따라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장토(庄土)를 적몰(籍沒)한 것에 이르러서는 신식(新式)을 참고하면 특히 근거가 없는 것이니 해당 재판소에서 판결이 있게 되면 따라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보고할 때는 귀 관찰부를 거쳐서 전달 보고하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양 2년 6월 22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한(韓) 예천군수(醴川郡守) 이인성(李寅聲) 좌하(座下)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회(照會)하는 건 / 안(案) 제86호

건양 2년 6월 5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김창형(金昌炯)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회(照會)하는 건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案) 제86호

예천군수(醴川郡守) 김근연(金近淵)의 보고서 내용에 "본군(本郡)이 갑오년(甲午年, 1894)부터 3년 사이에 두 번의 동학(東學) 소요와 의병(義兵) 소요를 겪었습니다. 피폐해진 상황은 이미 서울과 지방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군수로 작년 7월에 부임한 이후로 고을의 폐습과 백성의 고통 등 허다한 병폐를 밤낮으로 생각하여 되살릴 희망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힘써야 할 것은 예전의 미상납(未上納)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살펴보니 거의 소실되었고 일고여덟은 누락되었습니다. 갑오년 6월 이후의 상납 가운데 죽거나 도망쳐서 징수하려고 하여도 방법이 없는 포흠(逋欠)이 수 만여 냥(兩)의 액수에 이르렀으나 청산할 길이 없었습니다. 갑오년 즈음에 전전(前前) 조군수(趙郡守)가 재임할 때 동학 무리가 창궐하여 전도야지(全道也之) 부자가 모두 비적(匪賊) 수괴(首魁)로 어두운 밤에 고을을 덮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가 몸을 빼내서 도망쳤습니다. 완전히 흔적을 감추어 버려서 고을에서는 그 전토를 찾아내서 이미 속공(屬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미년(乙未年, 1895) 여름에 전도야지의 아들 전세진(全世鎭)이 몰래 전(前) 안동부(安東府)에 가서 호소하여 되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겨울 세무시찰관(稅務視察官)이 군에 와서 적에게 승리한 공은 여기에 있고 몰수한 토지는 다른 곳에 속하니 가히 월(越)나라 사람이 경작하였지만 조(趙)나라 사람이 수확한 것이라 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동부에 조회(照會)하고 본군에 훈령하여 다시 이 토지를 포흠에 보충하는 곳으로 떼어 붙이라는 뜻으로 작성하여 지급한 완문(完文)이 군(郡)에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상납하여 포장(逋帳)을 청산하는 데 있어 그 공적(公蹟)의 소재를 헤아려서 이러한 사유로 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결국

시가로 팔아서 갑오년에 이미 상납한 것 가운데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즈음에 용궁(龍宮)에 사는 남경익(南敬益)이 중간에서 튀어나와서 이미 속공하여 상납에 충당한 물건을 뜻밖의 횡재로 여겼습니다. 전세진에게 충동질하여서 토지를 샀다는 것을 알고도 전세진의 이름을 빌려서 고을에 촉탁을 하였으나 간사한 짓을 성공시키지 못하였고, 관찰부에 호소하여 제사(題辭)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잘못을 알았다면 물러나서 자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배를 불릴 욕심으로 더욱 요행을 바라면서 서울의 부(部)에 다시 소장을 올려서 정중한 훈령이 내려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저 백성 남경익은 계획이 비록 정교하나 실상은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협잡하는 폐단을 만약 더욱 맹렬하게 엄중히 징벌하지 않으면 법이 시행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사실에 따라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고 법률을 헤아려서 처리하여 패악한 버릇을 징벌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적몰(籍沒)하여 속공(屬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어떠한 지를 먼저 상세하게 알아야 훈령(訓令)을 발송할 수 있으니 애초에 남경익의 상소가 언제 있었으며 귀 재판소에서 어떻게 듣고 판결하였는지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본 대신의 말씀을 받아서 이에 알립니다. 살펴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 2년 6월 5일

법부(法部) 검사국장(檢事局長) 신재영(申載永)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유기환(俞箕煥) 각하(閣下)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로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114호

건양 2년 7월 27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인복(鄭寅福)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로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재결하시길 바랍니다.

안(案) 제114호

경무사(警務使)의 보고 제14호를 받아 보니 내용에 "고소인(告訴人) 유기(柳璣)의 진술에 근거하여 여러 피고인을 염탐해 붙잡아서 심문해 보니 김형진(金亨鎭)의 경우 요사스럽고 황망한 거짓말로 속이며 기도(祈禱)를 빙자하여 스스로 영(靈)과 통한다고 과시하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몰래 반역을 생각하며 마음을 시구로 드러냈습니다. 그 패악한 바가 사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전(呂基銓)의 경우는 신이 돕는다고 현혹하며 직책에 임명한다는 말을 달게 듣고서 그 집을 사는데 많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여러 날 찾아갔습니다. 김운배(金雲培)의 경우는 역시 기도를 알고서 황촉(黃燭)을 대기로 약속하였고, 꿈에서의 조짐을 해석하여 흉(兇)을 길(吉)로 바꾸어 해석하였습니다. 3월에

일이 있을 것이라 듣고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사(刺史)로 임명될 것을 물으니 단지 참가해서 듣기만 하였다고 반복하여 변명하고 있습니다. 백완형(白完亨)의 경우는 가까운 이웃으로 김형진의 흉계와 여러 사람들의 모임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관악(冠岳)의 기도와 일곱 별이 떨어진 곳을 역시 따라다녔습니다. 김신원(金信元)의 경우는 염불암(念佛庵)에서 체포되어 역시 김형진이 역모를 꾸미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망한 뜻이라며 치워 버렸다고 하며 꾸며 대고 숨기고 있습니다만, 이미 감히 말로 다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으면서도 망연하게 고발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행위는 역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중 법천(法天)의 경우는 염불암의 주지로 그 가운데 섞여서 체포되었으나 따로 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린 사리(闍梨)[31] 인성(仁聖)의 경우는 16세의 어린 나이로 진술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廣州)에서부터 여러 곳에 기도를 드릴 때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하였으니 증거를 심문할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고발인 유기와 피고 김형진, 여기전, 김운배, 백완형, 김신원 등은 모두 공안(供案)을 갖추었고, 두타(頭陀)[32] 법천과 인성을 합하여 여덟 명을 일체 압송해 보냅니다. 순검 김태규(金泰圭)는 설령 드러내 보일 것이 있으나 전말(顚末)을 알지 못하여 근거할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노역을 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옥서(監獄署)에 엄히 가두고 해당 진술서를 일체 보내니 즉

31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의 행위를 바르게 지도하여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승려(僧侶) 혹은 귀한 집 아들로서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된 총각을 대접하여 이르던 말이다. 여기서는 문맥상 두 번째 의미로 어린 총각 승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산과 들로 떠돌면서 괴로움을 무릅쓰고 불도를 닦는 승려를 말한다.

각 압송해 올려서 따로 철저하게 심사하여 공안(供案)을 갖추어 보고해 오십시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양 2년 7월 27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한(韓)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검사(檢事) 한용교(韓鏞敎) 좌하(座下)

한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21호

건양 2년 8월 7일 기안		월 일 가결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인복(鄭寅福)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한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21호

귀 한성재판소의 보고서 제766호를 받아 보니, "법부 훈령 제114호와 제115호를 받들어 피고 김형진(金亨鎭)에 관한 문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김형진은 본래 무지렁이 백성으로, 일찍이 18년 전에 자식을 얻기 위해 처음으로 기도(祈禱)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신년(丙申年, 1896) 2월경에 기도할 때 산마(山魔)를 접신하기에 이르러 그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

믿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대군주 폐하께서 창덕궁에서 천자(天子)의 지위에 오른 후 자신은 당연히 자사(刺史)가 되는데 이는 소국(小國)의 왕과 비슷하다는 말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대법(大法)에 통달하여 손오공(孫悟空)과 같게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산마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필코 대법에 통달하여 자사의 지위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장(神將)이 각국을 소탕할 것이라는 말로 대중들을 현혹하거나 부적을 만들어 '질병을 피하는 부적'이라고 사칭하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였으니, 그 저지른 바가 지극히 악랄합니다.

백완형(白完亨)은 아들의 질병 치료로 인하여 김형진과 친근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가 수고해 준 대가로 심부름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따라서 김형진이 그동안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아의 뜰에서 조사했던 초초(初招)에서는 경무청의 공초에 있다시피 성실하게 자백했으나, 재조사 때에는 갑자기 진술을 변경하여 사건의 진상을 혼란하게 하며 단지 김형진이 자사가 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 번복이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여기전(呂基銓)은 부모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비용을 내고 약을 썼으며 수고에 대한 대가를 후하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김형진의 말에 현혹되어 부적을 구매하기까지 했으나 결국에는 허황됨을 알고서 그대로 절교했습니다.

김운배(金雲培)는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김형진을 알게 되어 그를 추종하기도 했으나, 허탄(虛誕)한 말을 듣고 그의 품행이 조잡하다는 것을 보고 꾸짖으며 절교하였습니다. 꿈 해몽이라는 한 가지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의례히 대답했던 것이고 애초부터 재물을 약속하거나 도움을 베풀겠

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신원(金信元)은 머리를 깎지 않은 중으로 사문(沙門)[33]에 자취를 숨기고 있다가 일찍이 김형진의 황당무계한 말을 듣고서 비록 그가 기도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으나, 본래 공모한 사실이 없으니 깊이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총각 스님인 인성(仁聖)은 비단 나이가 어릴 뿐 아니라 따라다닌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김형진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승(僧) 법천(法天)은 애초 김형진이 기도하는 곡절(曲折)을 알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따져 볼 일은 없습니다.

고발인(告發人) 유기(柳璣)는 김형진의 요망하고 황당함을 순검(巡檢) 김태규(金泰圭)에게 듣고, 그 자취를 탐지하기 위해 김형진한테 가서 만나서 친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도움을 주기로 기약하고서 김가의 범행 정황을 탐지한 뒤 이를 기록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완악한 저 김형진은 가벼운 사실만 실토하고 중요한 사실들은 숨겨서 오로지 숨기고 꾸미기만을 일삼으니 지극히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유기가 기록하여 고발한 것과 구두 진술을 근거로 하고 김형진의 행위를 상호 참조해 보면 김형진은 분명히 사람들을 기만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치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말들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자백한 것은 없으나 그 본질은 국사범(國事犯)에 관계된 듯하오니 본 한성재판소에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이 그동안 진술한

33 사문(沙門) : '부지런히 모든 좋은 일을 닦고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문(佛門)에 들어가서 도(道)를 닦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공안(供案)과 유기가 경무청에 올린 녹지(錄紙) 1편을 첨부하여 그 연유를 보고하오니 밝게 살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이치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말들이 고발 내용에 있으나 이미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갑자기 국사범으로 단정하여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산마(山魔)가 강림한다고 사칭한 것, 오로지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을 일삼은 것은 김형진 또한 자백했으니,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등을 귀 한성재판소에서 경중(輕重)을 나누어 율(律)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간의 공안과 기록 서류를 되돌려 보내고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2년 8월 6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한(韓)

한성재판소 검사 한용교(韓鏞敎) 좌하

경상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21호

광무 원년(光武元年, 1897) 8월 17일 기안 월 일 가결

광무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정인복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경상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1호

귀 경상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1호를 받아 보니, "법부 훈령 제15호를 받아 보니, 민계약(閔桂若), 민성언(閔性彦), 양윤문(梁允文) 세 놈을 특별히 탐문하여 체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윤문은 동학 소요 이후 간 곳을 알지 못하고, 민계약과 민성언만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민(狀民)[34]인 김기승(金琪升)과 그 동생들인 김상승(金相升), 김규승(金奎升) 등과 대질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상승 등의 진술 내에, '제 아비가 지난 갑오년(甲午年, 1894) 좌수(座首)를 지내던 때에 민란(民亂)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직접 범행하였는지 비록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한 가지 근거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난민의 깃발에 쓰여 있기를 「장두(狀頭) 민계약 민성언」이라 하였으니, 제 아비의 죽음이 저들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이로써 유명(幽明)을 달리한 아비의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민계약 등의 진술 내에, '민요(民擾)가 발생하던 처음에 저의 숙부가 연세가 많고 행실이 높아서 우리 가문의 문장(門長)[35]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 타이르기를, 「민(閔)을 성(姓)으로 삼는 자들 중에서 만약 민요에 참가하면 마땅히 족보에서 이름을 파낼 것이다.」라고 말하고서, 곧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마을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애초에 민요와 관계가 없었고, 만약 장두로 참여했다면 어찌 깃발에 이름을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는 필시 난민 놈들이 우리 숙부가 방을 붙인 것에 대해 혐의를 품고서 함께 나쁜 길로 빠지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34 장민(狀民) : 관가(官家)에 소장(訴狀)을 낸 백성(百姓)을 말한다.

35 문장(門長) : 한 문중(門中)에서 항렬(行列)과 나이가 가장 위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계약이 김상승에게 말하길, '내가 너와 더불어 인척(姻戚)으로 맺어진 정의(情誼)가 있고 티끌만큼도 서로 미워할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 아비의 죽음이 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지목하는 것인가? 그리고 아비를 위해 복수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단지 미심쩍은 단서만으로, 몇 년 전에는 죄없는 우리 친족들을 정소(呈訴)하여 유배형을 받았다가 바로 풀려나게 했는가? 또한 4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깃발에 이름을 적었다」라고 하여 우리 종형제들을 체포한 것도 과연 아비를 위해 복수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김상승이 답하길, '네가 만약 죄가 없다면 그 당시의 장두를 분명하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당연히 너를 놓아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안이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신중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러 차례 사실을 조사한 결과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양쪽의 말을 서로 참조하여 보면, 김상승 등은 아비를 위해 복수하려고 미심쩍은 것을 증거로 삼았고 또 「장두를 분명하게 말하라」는 말이 대질하는 장소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불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민계약 등은 그들의 숙부가 방을 붙인 것을 볼 때 그 가문의 행실이 매우 가상하고 애초에 모의를 주도하지 않았으니, '깃발에 적힌 이름'을 이유로 재앙의 빌미를 만들어선 안 되고 참작하여 용서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에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지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김상승 등이 복수를 하려는 게 이치상 비록 당연하지만 민계약이 이미 범행한 바가 없으니 파헤칠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수감되어 있는 민계약 등을 석방하고, 김상승 등은 알아듣게 타일러 돌려보내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원년[36] 8월 17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한(韓)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조시영(曺始永) 각하

한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4호

광무 2년(光武元年, 1898) 2월 21일 기안 월 일 가결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한지연(韓止淵)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한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4호

경무사(警務使) 이충구(李忠求)의 보고서 제10호를 받아 보니, "이달 11

36 원문에 건양(建陽)과 광무(光武)가 병기되어 있으나, 기안 일자 표기를 보면 광무가 맞는 것 같다.

일 내부(內部)에서 온 훈령에 '시찰관(視察官) 김교혁(金敎爀)이 이천군(利川郡)에서 패악한 무리들을 체포하였으니 압송하여 공초(供招)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순검(巡檢)을 파견하여 군옥(郡獄)에 가두어 둔 이상옥(李尙玉), 신명우(申明雨), 김정업(金正業), 김낙철(金洛哲), 권성좌(權聖佐) 등을 붙잡아 와서 신문하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학 비류(東學匪類)로서 요망스러운 참언(讖言)을 허위로 떠들어서 어리석은 대중들을 부추겨 선동하였고, 은밀하게 지렁이처럼 엉켜서 화심(禍心)[37]을 품고 있었음이 공사(供辭)에 드러났습니다.

갑오년(甲午年, 1894)에 조정에서 토벌을 시행하여 그 거괴(巨魁)들을 섬멸하였으나 여당(餘黨)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법망을 벗어난 거괴(巨魁)들은 매우 빨리 포교(捕校)들을 내보내 기필코 체포할 것이며, 위 다섯 명의 범인들은 모두 공안(供案)을 갖춰 압송하여 보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이 사안은 귀 한성재판소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5명을 감옥서(監獄署)에 엄히 가두고 해당 공안(供案)을 첨부하여 보내니, 해당 범인들을 귀 한성재판소로 압송하여 별도로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문서를 갖춰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2월 21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이(李)

한성부재판소 검사 함태영(咸台永) 좌하

37 화심(禍心) : 남을 해치려는 마음 또는 재앙의 근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성부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29호

광무 2년 3월 17일 기안 월 일 가결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한지연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한성부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9호

귀 한성부재판소 보고서 제15호를 받아 보니, "법부 훈령 제14호를 받들어, 감옥서(監獄署)에 수감된 이상옥(李尙玉), 신명우(申明雨), 김정업(金正業), 김낙철(金洛哲), 권성좌(權聖佐) 등에 대해 일체의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범인들이 모두 '갑오년(甲午年, 1894) 이전에는 동학(東學)에 들어가 더러운 행적을 남겼으나 조정의 토벌을 받은 후로는 동학을 버리고 농사꾼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성좌는 동학 비괴(東學匪魁)인 김치구(金致九)네 외가집의 산소 가까운 곳에 그의 아비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자 김치구가 무덤을 파가라고 늘상 독촉하더니 '네가 동학을 다시 따르면 파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소를 보존하기 위해 다시 동학을 숭상하였으나 동학을 전파한 적은 애초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명우는 그의 아들이 동학 괴수 최가(崔哥)의 데릴사위로 들어갔고,

김치구가 보내온 축롱(杻籠)[38] 등의 물건을 기탁받았으나 동학을 다시 믿은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낙철은 김숙여(金淑汝)에게 꼬임을 당하여 김치구네 집에 가서 교육을 받겠다고 말로 허락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와 김숙여는 친척 관계입니다. 또한 동학 괴수 최가를 만나 보고자 하여 김치구네 집에 있었으나 입교(入敎)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김정업은 동학을 등졌지만 남은 자취가 있는 놈으로 그 무리들의 서찰(書札)을 전송하였으나 다시 믿은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옥은 김치구가 편지를 보내 예전에 배웠던 바를 다시 숭상하라고 했을 때 사절하는 답장을 보냈고 다시 미혹된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공초(供招)를 듣고 얼굴 모양을 살펴보면 모두가 무지렁이 농민들입니다. 권성좌는 다시 사술(詐術)로 돌아선 점은 지극히 악랄하지만 사실 선조를 위하는 마음에서 말미암았으니, 그 실정(實情)을 파헤쳐 보면 용서할 만하고 불쌍히 여길 만합니다. 신명우는 아들에게 불의(不義)를 가르친 책임은 벗어나기 어려우나 법(法)을 따져 볼 때 적용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찰을 전달하거나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여러 범인들의 행위를 깊이 파헤쳐 보면 앞뒤가 똑같이 원래 대중을 미혹시킨 게 아니고 모두 미혹을 당한 것이니, 사술을 따른 죄로 결단하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귀화(歸化)하도록 달래고 격려하여 사민(四民)의 도리를 다하도록 힘쓰게 하는 게 그들에게 천만 다행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죄수들을 경기도 재판소로 옮겨 보내어 각각 주소지에 따라 범인의 죄적(罪跡)에 대한 사실들을 조사하여 사실 여부에

38 축롱(杻籠) : 싸리나무로 결어서 만든 고리.

준하여 결정을 논의하게 하면 결코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공안들을 첨부하여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하니, 이상옥 등 5명이 옛 습성을 고치지 못한 것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들을 만약 별도로 엄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술(邪術)에 물든 무리들이 반드시 잇따라 나타나서 대중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중(輕重)을 구분하여 율(律)을 헤아려 처리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재판소에 조회를 보내어 해당 범인 5명을 그대로 경기재판소로 압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3월 17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이(李)

한성부재판소 검사 함태영(咸台永) 좌하

추신 : 일체의 서류를 되돌려 보냅니다.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41호

광무 2년 6월 18일 기안 월 일 가결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1호

귀 충청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15호를 받아 보니, "법부(法部)의 제40호 훈령을 받들어, 서천군(舒川郡)에서 압송해 온 죄인 서창길(徐昌吉), 유한표(劉漢表) 등이 동학 괴수로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서학(西學)에 투탁하여 그동안 작경(作梗)했던 정황들에 대해 각각 공초(供招)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경선(曺京先)은 특별히 책임을 지울 만한 점이 없으므로 일단 보방(保放)[39]하고 공사(供辭)는 별도로 기록하고 보고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서천군의 보고서를 보니, 귀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유한표, 서창길 두 범인의 허다한 죄상(罪狀)을 대질하여 조사한 날에 구구절절 자백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법부의 훈령을 받아 공초(供招)를 받던 때에 두 범인이 진술한 바가 절반은 토설하고 절반은 감추었으니 자꾸 많은 의혹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옥사(獄事)의 심리를 충분히 하여 판결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별도로 다시 조사하여 율(律)을 헤아려 속히 보고하고, 보방한 조경선을 함께 불러 대질한 후 그대로 보방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6월 18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조(趙)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정주영(鄭周永) 각하

39 보방(保放) : 보증인을 세우고 죄인을 방면(放免)하는 것을 말한다.

장성군(長城郡)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호

광무 2년 7월 1일 기안 월 일 가결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장성군(長城郡)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호

귀 장성군(長城郡)의 보고서 제1호를 받아 보니, "김흥순(金興淳)은 자칭 성교인(聖敎人)이라 하고 도당(徒黨)을 체결(締結)하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도굴하고 인명(人命)을 구타하는 등 못 하는 짓거리가 없는데, 자신은 관가에서 관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군달(朴君達)은 동학 비적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거괴(巨魁)였는데, 지금은 아비와 아들이 서교(西敎)에 투탁하였습니다. 그의 처 만금(萬全)은 앞마을에 주점(酒店)을 열고 부잣집 사람들과 간통한 뒤 사기를 쳐서 금전을 탈취하는 짓거리를 지금까지 능숙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군(淳昌郡)에 있는 양관(洋館)[40]에 증거를 부탁하고 그들을 잡아 오도록 금란패

40 양관(洋館) : 서양식으로 지은 건물로 서양 각국의 공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천주교 교회당을 의미하는 듯하다.

(禁亂牌)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들을 침학하여 금전을 토색하였고, 선교사의 비호를 믿고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고, 악랄할 짓거리들을 멋대로 저질렀습니다. 해당 선교사인 프랑스인 조유도(曺有道)[41]는 편파적으로 죄인을 편들고 수령을 위협하며 제어하였고, 법망을 빠져나간 비적 괴수들과 음행을 일삼는 천한 창기(娼妓)들을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백성들을 잡아갔고, 그 무리들을 사주하여 금전과 재물을 토색하게 하고서 군수가 공적으로 처리할 때에 오히려 교활한 말로 거짓을 지어내고, 말 트집을 잡아 흔단(釁端)을 만들었고, 무례하고 지극히 패악스러운 말로 위협하여 제어하려고 딴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만국공법(萬國公法)[42]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국가 간의 조약에도 실려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를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입교(入敎)한 백성은 이미 우리 백성이 아닌 것이요, 입교하지 않은 백성들은 반드시 모두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근심하며 분노함이 극에 달해 외람됨을 무릅쓰고 연유를 갖춰 곧바로 보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하니, 해당 선교사가 비호한 사실은 이미 외부(外部)

41 조유도(曺有道) : 데예(Albert Deshayes, 알베르토, 1871~1910) 신부의 한국 이름이다. 1896년 6월 28일 사제 서품을 받고 10월 13일 조선에 입국하였으며, 10여 년 동안 전라도 지역에서 사목하다가 1909년 성경 번역을 위해 주교관에 올랐다. 서울에서 일 년 동안 머무르다가 1910년 1월에 선종한 투르니에 신부 후임으로 원산 본당 제9대 주임이 되었으나 한 달여 만에 말라리아에 걸려 2월 1일 선종하였다(『한국가톨릭대사전』 3, 참조).

42 원문에는 '공법(公法)'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만국공법(萬國公法)'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만국공법'이란 개항기 시기에 '국제법'을 가리켰던 용어이다.

에 조회를 보내 알렸으니 응당 그 조회를 해당 국가의 공사관(公使館)에 전달하여 보이는 대로 금단(禁斷)할 것입니다. 김홍순, 박군달이 서교에 의탁하여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은 듣기에 매우 놀랄 일입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두 범인들을 붙잡아 가두고 상세히 조사하여 공초(供招)를 받아 전라남도 관찰부에 급히 보고하여 죄의 경중(輕重)을 나누기를 기다려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7월 1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조(趙)

장성군수(長城郡守) 김성규(金星圭) 좌하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41호

광무 2년 7월 27일	기안	월 일	가결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1호

지난번에 학부(學部)의 제7호 조회를 받아 보고서, 조홍기(趙鴻基), 김익

용(金益容)[43]의 안건에 대해 귀 황해도 재판소에서 철저하게 사실을 파헤쳐서 경중(輕重)을 나누어 율(律)을 헤아려 처리한 후 보고하라고, 이미 금년 3월 28일에 훈령을 보냈으니 해당 군(郡)에 응당 통지하고 신칙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배천군(白川郡)에 사는 조종헌(趙鍾憲)의 소장(訴狀)을 받아 보니, "저의 아비 조홍기가 안사건(安士健)의 무고(誣告) 때문에 법부(法部) 훈령에 따라 황해도 관찰부에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안이라는 점은 황해도와 배천군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 갑오년(甲午年, 1894)에 동학 비적들이 소요를 일으키던 때에 안사건의 문족(門族)들은 집안이 동학당의 괴수가 되어서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안정민(安貞愍) 공(公)의 위패(位牌)가 바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안씨 성을 가진 그 후손이며 인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난 자가 어찌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이른단 말입니까? 온 고을의 사민(士民)들이 모두 원통하고 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논의하기를 '공맹(孔孟)의 학의 근원을 민멸(泯滅)시킬 수 없다'고 하여 구안(舊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원에서 예전에 소장하고 있었던 향안(鄕案), 유록(儒錄)과 유림(儒林)들 중에서 기록해 놓은 몇 건을 찾아내어, 구본(舊本)을 베껴서 정안(正案)을 만들었는데 단 1위(位)도 착오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 안사건 등이 경향(京鄕)에 출몰하면서 그 세력이 못하는 짓이 없더니,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우리 선조의 순서가 잘못되었

43 원문의 앞 부분에서는 "김익용(金益容)"이라 되어 있지만, 이하 아래의 원문 모두 "김용익(金容益)"으로 되어 있다.

다'라고 하여 소송을 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의 짓거리가 얼마나 만부당한 일입니까? 대체로 유가(儒家)들이 존경하는 스승은 저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안을 만들던 날에 한두 사람이 일을 맡아 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유사(有司)가 제 멋대로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 고을의 유향(儒鄕)들이 공동으로 논의하여 구본(舊本)을 베껴 정안을 작성했으니 어찌 착오가 있겠습니까? 만약 정민 공의 후손으로서 안씨 성을 가진 자들이 진정으로 선조를 사모하는 의리가 있었다면 어찌하여 정안하는 날에 와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차례 불러도 오지 않더니 도리어 남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파헤쳐 보면 애초부터 방화(放火)할 생각을 가지고 틈을 엿보았다가, 그 선조의 일을 빙자하여 타인들을 침학하려고 계획했음을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용익(金容益)이 멋대로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린 일로 트집을 잡았는데, 취중에 저지른 망령된 행동의 단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김용익이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더라도 저의 아비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팔순 노인으로 하여금 이같이 뜻밖의 재앙을 당하게 하여 여러 달 갇혀 있게 하였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훈령을 내어 석방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해당 안건을 결정짓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몇 달 동안이나 시일을 끌었는지 진실로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별도의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과연 소장(訴狀)의 말과 같다면 해당 죄수 조홍기는 사리에 맞게 공정하게 결정짓고 김용익의 안건도 즉시 처리하여 보고하되, 혹시라도 이전과 같이 애매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7월 27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신(申)

황해도 재판소 판사 이근용(李垠鎔) 각하

상주안(上奏案) 건 / 안(案) 제215호

광무 2년 7월 11일 기안 월 일 가결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고문관

상주안(上奏案)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15호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신 조(趙)는 삼가 아룁니다.

이달 2일에 전 군수 황기인(黃夔仁)의 언사소(言事疏)에 대한 비지(批旨)에 "상소를 보고 모두 잘 알았다. 공초(供招)한 여러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름을 지적하지 않는가? 법부(法部)에서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법부(法部)에서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어 황기인을 불러들이려고 할 즈음에 해당 관원이 스스로 고등재판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공초한

여러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째서 지명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하였습니다. 그가 진술하기를, "법사(法司)에서 조사하는 일을 신중히 하고 비밀리에 하는데 지방에 사는 제가 어떻게 그 성명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최시형(崔時亨)의 공초에서 나온 줄 알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벼슬아치들 중에 나온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로를 지나다가 남들의 풍설(風說)을 들으니, 최시형의 공초에서 벼슬아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명이 아무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관원의 직명(職名)을 "전 군수"로 상소하였는데, 공초하는 장소에서는 경인년(1890)에 영덕현령(盈德縣令)에 제수(除授)되었다가 신묘년(1891)에 당진 현감(唐津縣監)으로 이배(移拜)되었다고 공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어긋나는 데 대해 물으니, 공초에서 근래에는 외임(外任)을 모두 군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임금께 아뢰는 글이 얼마나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해당 관원이 감히 시기하는 생각으로 멋대로 상소를 올려 성명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직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저지른 일을 따져 보면 죄는 마땅히 감처(勘處)해야 하나 성지(聖旨)를 받들고 조사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신의 법부(法部)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상주합니다.

광무 2년 7월 11일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신(臣) 조(趙)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47호

광무 2년 8월 5일 기안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7호

지난번에 귀 재판소 판사(判事) 이건하(李乾夏)의 제115호 보고서를 받아 보니 내용에 "서천(舒川)에서 압송해 온 죄인 서창길(西昌吉), 유한표(劉漢表) 등이 진술한 바가 반은 숨기고 반은 실토하여서 의혹이 거듭 생겼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충실히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결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따로 다시 조사하여서 법률을 헤아려서 급히 보고하고, 보방(保放)한 조경선(曺京先)을 함께 불러서 대질하십시오."라고 훈령으로 신칙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귀 보고서 제84호를 받았는데 내용에 "서창길, 유한표를 부(部)의 훈령을 받아서 다시 조사하려고 붙잡아 들이게 하고, 조경선을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창길, 유한표 두 놈의 경우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모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府) 관할지역에 살던 송병근(宋秉根)이 서창길을 담당하고, 정의중(鄭宜中)은 유한표를 담당하여 맡아 관리하겠다고 자원하였으나 오랫동안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병이 났던 것을 염려했던 것인지 전 판사

재임 시에 각 해당 담당자에게 맡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하니 해당 두 사람의 진술 내용에 '병의 치료를 위하여 잠시 돌아가도록 하락하였더니 결국 와서 대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고,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였더니 두 범인이 모두 도망쳐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판사 시절에 수감된 죄인을 마음대로 보방을 청하였으니, 보수(保囚)의 책임에 있어서 만약 결탁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조사할 때도 역시 종적이 없다고 하니 그 저지른 죄를 살펴보면 해당 범인보다 지나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담당자 송병근, 정의중은 모두 엄히 장(杖)을 쳐서 단단히 가두고, 조경선을 불러서 대령하라고 해당 군(郡)에 훈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인(商人)이라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에 사실에 따라 보고하오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니 중죄인의 보방을 받아준 것이 이미 마땅하지 않은 것인데 보인(保人)이 함부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니 더욱더 놀랍습니다. 일부러 놓아준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실수는 반드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시 이른바 보인이라고 하는 송병근과 정의중에게 그 일부러 놓아준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빨리 나타나게 하도록 독촉하고 상황을 급히 보고하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광무 2년 8월 5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신(申)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판사(判事) 정주영(鄭周永) 각하(閣下)

경상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45호

광무 2년 10월 29일 기안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경상남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5호

지금 탁지부(度支部)의 조회(照會)를 받아 보니 내용에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의 서리 정찬규(鄭燦圭)가 포흠(逋欠)한 갑오조(甲午條, 1894) 결전(結錢) 3,109냥(兩) 5전(錢) 5푼(分)을 징수하는 일로 이미 알렸습니다. 지금 그 아들 정정득(鄭丁得)이 호소한 바에 따르면 '저의 아비가 갑오년에 이방으로 동학(東學)의 소요 때에 싸우다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흠한 공전(公錢)의 징수를 이미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숨기고 빠트린 것인지 서울 관청에서 징수를 면제한 문첩(文牒)을 첨부하여 호소하오니 예전과 같이 징수를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살펴보니 서리 정찬규가 포흠한 돈은 특별히 징수를 면제한 문서에 근거가 분명하여 마땅히 나누어 판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알리오니 살펴보신 후에 해당 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훈령하여 수감된 자를 석방하도록 하시길 요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살펴보니 해당 서리가 징수를 면제받은 증거가 이미 명확하니 마땅히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광무 2년 10월 29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서(徐)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판사(判事) 조시영(曺始永) 각하(閣下)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 안(案) 제20호

광무 3년(光武三年, 1899) 2월 17일 기안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훈령(訓令)하는 건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0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의 보고서를 접수하니 내용에 "관할 흥덕군(興德郡)에서 난민들이 소요를 일으킨 일로 해당 군(郡)의 수서기(首書記) 박우종(朴佑鍾)의 문서를 근거해 보니 해당 난민들이 분수를 업신여기고 기강을 범한 것은 마치 그들의 일시적인 분풀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수의 평소 조치들이 진실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면 이렇게 흔치 않은 변괴에 이르렀겠습니까. 해당 수령의 정령이 올바름을 잃어버린 것과 난민들이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엄중하고 처치하게 따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장성군수(長

城郡守) 김성규(金星圭)를 따로 명사관(明查官)으로 정하여서 이 일의 전말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충분히 살펴보니 해당 군수 임용현(林鏞炫)은 직책이 지방의 수령이라면 마땅히 몸가짐이 청렴결백해야 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매우 놀랍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오직 마땅한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난민들의 수괴인 이화삼(李化三)의 경우는 원래 흔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로 멋대로 영학(英學)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서서 이웃과 친구들의 원망을 짊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죽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잠자는 백성들을 두드려 깨워서는 바로 관아(官衙)로 들어가서 임금이 임명한 관리를 능멸하고 관리의 거처를 수색하여 관리를 발로 차고서 인장(印章)을 취하였으니 기강이 매우 심하게 어그러진 것입니다. 송민수(宋敏洙)의 경우는 해임자가 다시 임명된 것에 원한을 가져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서 이화삼을 따르는 것이 하나이지만 둘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달아났으나 다른 도망친 여러 놈들과 함께 특별히 기찰하고 염탐하도록 신칙하여서 반드시 체포할 것입니다. 수서기 박우종의 경우는 변고가 밤중에 발생하여 일이 비록 정신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행동거지를 절제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난민들과 왕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과 행적이 망측하고 도리가 어그러졌으니 합당한 처벌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해당 군수 임용현이 정령에 올바름을 잃어서 이와 같이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난민의 수괴 이화삼이 처음 소요를 일으키고 심지어 관리를 발로 차고 인장을 취한 것은 그 행위를 살펴볼 때 너무나도 통탄스럽습니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임용현을 붙잡아서 심사하고, 이화삼과 박

우종도 역시 압송해 올려서 따로 조사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광무 3년 2월 일

법부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학부대신(學部大臣) 신(申)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검사(檢事) 함태영(咸台永) 좌하(座下)

추신 : 해당 도(道)의 보고서와 사안(査案)을 함께 보내니 재판을 끝낸 후에 반송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判事)에 훈령(訓令)을 보내는 건/안(案) 제10호

광무 3년 3월 3일 기안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判事)에 훈령(訓令)을 보내는 건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0호

귀 보고서 제9호를 받으니 내용에 "관할 영광군수(靈光郡守) 신태관(申泰寬)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내용에 '외부(外部)의 훈령(訓令)에 근거한 관

찰사(觀察使)의 훈령을 받으니 「본군(本郡)의 경내에 만약 영학(英學)을 빙자하고 계(禊)를 만들어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면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막론하고 붙잡아 가두고 이름을 지목하여 급히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군 삼남면(森南面) 김태서(金台書)라고 하는 놈이 사람과 물건들을 유인하고 속여서 돈과 재물을 빼앗는 것이 곧 그의 장기였습니다. 최근에 영학에 빙자하여 평민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무리로 몰아넣다가 조금이라도 그의 뜻에 거스르면 원한을 품고 분풀이를 해서 걸핏하면 화근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저 시골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악행을 싫어하다가 연명하여 호소를 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김가 놈의 더러움이 장차 선량한 사람에게 미칠 것 같습니다. 연못에 물고기가 뒤섞이고 까마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문을 만들어 주셔서 맑음과 탁함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시 붙잡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에 흠결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염탐하였더니 이른바 김태서라는 자는 동학(東學) 비적(匪賊)의 거괴(巨魁)로 이미 도망쳤다가 갑오년(甲午年, 1894)부터 고을에서 지목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계책으로 영학을 빙자하고 예전의 버릇을 부리고자 여러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같이 난폭한 짓을 하였습니다. 칠읍계장(七邑禊長)이라고 하면서 통행하는 길에 방(榜)을 붙이고 날짜를 지정하여 무리를 모으고서 평민을 억지로 가입시켜 돈을 거두어 욕심을 채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선동하고 현혹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의 밖에 있는 무리는 징벌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위의 김가 놈을 우선 붙잡아 가두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김태서를 본소(本所)로 압송해서 대령해 저지른 죄의 실상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아서 별지에 나

열해 기록하여 보여드리기 위해 올려보냈습니다. 이번에 이 김태서가 갑오년 비적의 수괴로 도망쳐서 살길을 도모하였다면 마땅히 그 마음과 얼굴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학을 빙자하여 계안(禊案)에 이름을 올리고 송문여(宋文汝)가 맡은 일을 몰래 차지하고서 사창(社倉)과 남계(南溪)에 방(榜)을 내걸었으니 계장으로서 행위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일서(崔一西)의 지휘를 믿고 따르면서 고부(古阜) 말목(抹牧)의 모임에 참여하여 평민들을 협박한 것이 놀랍습니다. 지금까지의 화근은 비록 작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선동에 현혹당하기는 쉽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무리는 법에 따라 크게 징계한 연후에야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가 될 것입니다. 경무서(警務署)에 엄중히 가두고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무릇 사람이 저지른 죄를 자세하게 진술받고 증거를 탐색하여 모아서 논의하고 헤아려 질문하는 보고를 하는 안(案)에 불필요한 문자를 들어내고 평범하고 사실적인 것에 따르기를 힘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귀 보고를 살펴보면 문자가 장황하고 사실은 도리어 소상함에서 부족합니다. 한두 가지를 들어 보면 "조금이라도 그의 뜻에 거스르면 원한을 품고 분풀이를 해서 걸핏하면 화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분풀이를 한 것은 어떻게 하였으며, 화근은 어느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돈을 거두어 욕심을 채웠고 여러 방면으로 선동하고 현혹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욕심을 채운 돈이 몇 관(貫)이며, 어떤 사람에게 토색하고, 선동한 방법이 몇 건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러한 사정이 범인의 진술에 분명하고 증거로서 명확해진 후에야 헤아려 처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김태서의 진술서 첫 줄에 '영학 죄인'이라고 썼습니다. 영학은 어떤 학문인지 자세하지 않고, 글자의 뜻만으로 추측하더라도 영학이라는 두 글자가 어찌 죄명에 가깝겠습

니까? 이것이 귀소(貴所)에서 죄를 헤아렸을 때 실수일 뿐 아니라 웃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됨이 적지 않을 것이라 특히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김태서를 다시 신문을 행하되 자세하고 더욱더 자세하도록 힘을 써서 진실을 증명하여 준비하도록 충분히 의지를 더하여서 문서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광무 3년 3월 일

법부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학부대신(學部大臣) 신(申)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판사(判事) 민영철(閔泳喆) 각하(閣下)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3호

광무 3년 3월 18일 기안		월 일 가결	
광무 3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3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호를 받아 보니, "흥덕군(興德郡)의 난

민(亂民)들이 소요를 일으킨 일에 대하여 장성군수(長城郡守) 김성규(金星圭)를 사관(査官)으로 정하여 조사 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안(査案)을 올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이화삼(李化三)은 군수의 과실(過失)을 애초부터 정확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자기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데도 선창(先唱)하여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명리(命吏)를 능욕하고 관방(官房)을 뒤졌으니, 본분을 무시하며 기강을 위반하고 사납게 날뛰며 흉악하고 모질어서 진실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박우종(朴佑鍾)은 수서기(首書記)가 된 몸으로서 이날 밤의 광경을 수수방관했을 뿐 앞장서 나아가서 막을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 일의 체모로 따져 볼 때 또한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들을 율(律)을 헤아려 급히 보고할 것이며, 도망간 송민수(宋敏洙), 이이선(李二先), 이복환(李卜煥), 채기엽(蔡基燁), 박기수(朴基洙), 정계술(丁桂述) 등을 엄밀히 탐문하여 체포한 뒤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고 경중(輕重)을 나누어 징감(懲勘)하기 바랍니다. 해당 군수 임용현(林鏞炫)은 사안(査案)에 뇌물을 받았다는 말이 있으니 마땅히 즉각 징경(懲警)해야 할 것이나 증거의 말이 갖춰지지 않아서 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특별히 찾아내서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광무 3년 3월 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유기환(兪箕煥)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永喆) 각하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34호

광무 3년 7월 8일 기안 월 일 가결

광무 3년 월 일 시행

대신 서리 협판 검사국 주임

검사국장

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4호

귀 관할 고창군수(高敞郡守) 정윤영(鄭崙永)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본 고창군에서 체포한 난당(亂黨)들이 진술한 동류(同類), 성명(姓名), 거주지(居住地) 등을 각각 갖추어서 성책(成册)하여 올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해당 성책(成册)의 내용에, 난당 김상흠(金相欽)은 이른바 포군순찰(砲軍巡察)로 체포되었고 김재호(金在浩)는 이른바 대장기수(大將旗手)로 체포되어 음력 4월 25일에 전라남도 관찰부로 압송해 보냈다고 했습니다. 해당 두 범인들이 과연 압송되어 왔는지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그들이 범행한 정황을 특별히 심사하여 율(律)을 헤아려 급히 보고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광무 3년 7월 8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 서리 중추원 의장 조(趙)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永喆) 각하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황해 병영에 관문을 보내는 건 / 안(案)

개국 504년(開國五百四年, 1895)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이휘선(李徽善)

형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황해 병영에 관문을 보내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황해 병영에서 보낸 관초(關艸)를 아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오니 즉각 수정(修正)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개국(開國)” 아래에 연월일을 적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상고(相考)합니다.

군부의 조회문을 받아 보니, “황해 병사의 첩보(牒報)를 보니, ‘지금 본 황해도 시찰위원(視察委員) 안종수(安宗洙)의 비밀보고서를 받아 보니, 「장수산성(長壽山城) 별장(別將) 장용연(張龍淵)은 본래 동학 무리의 와주(窩主)로, 본 황해도 관찰사가 부임하던 길에 관찰사를 붙잡아가서 3일 동안 구류하고 동학 무리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풀어주었습니다. 해당 관찰사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장용연과 그의 무리 현학진(玄學瑱)을 비장(裨將)[1]으로 차임(差任)하여 귀화(歸化)시킨다고 한

결과, 동학 무리들이 근거지로 삼는 소굴들이 점점 커져서 그 해독이 도내에 흘러넘쳐 아직까지 깨끗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장용연의 무리 한용건(韓用健)이 자원(自願)하여 귀화하고서 의병(義兵)이라 칭하고 순영병정(巡營兵丁)의 영장(領將)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학 무리들의 세력이 치성할 때에 출전한다 하면 동학 무리들이 내응함으로써 도피할 길을 몰래 열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로 입도(入道)했다가 귀화한 자들을 '동학 무리'라 불러 협박하며 재산을 약탈하고 집을 불태우고 평민들의 집에서 군수(軍需)를 토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관찰사만 속이고 도(道) 내에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소문이 해괴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병사(兵使)가 정탐한 결과도 내용상 차이가 없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장수산성 별장 장용연을 우선 면직하오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2]에 명하여 잡아다 그 죄상을 심문하여 감처(勘處)하시기 바랍니다. 현학진과 한용건도 동학 무리들의 은괴(隱魁)[3]이므로 하루빨리 압송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해당 장수별장 장용연은 이미 그 직책을 면직하였으니 귀 법부에서 붙잡아 심문하여 감처(勘處)[4]하시고, 현학진과 한용건 또한 조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관문을 보내오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별장 장용

1 비장(裨將) :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견외(遣外)·사신(使臣)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武官) 벼슬을 말한다.

2 유사(攸司) : 해당 업무를 맡은 관아(官衙), 즉 관계 기관을 말한다.

3 은괴(隱魁) : 숨어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도적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4 감처(勘處) : 죄인을 심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

연을 즉각 인원을 파견하여 압송해 올리고, 현학진과 한용건도 죄범(罪犯)이 긴중(緊重)하오니 똑같이 본 법부로 압송해 올려서 처판(處判)하기 편하게 하기 바랍니다.

위 관문

황해 병사 ○○ 좌하

개국 504년 5월 7일

탁지부(度支部) 조회에 답하는 건 / 조회(照會)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탁지부(度支部) 조회에 답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한 회답조회를 정서(正書)하여 탁지부로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照會)

전 호남총무관(湖南前總務官)[5] 조필영(趙弼永)을 법부에 가두어 감죄(勘罪)[6]할 예정입니다. 그 당시 문서에 관여하였던 종인(從人)[7]과 영리(營吏)[8]

등과 관련된 일들은 본 법부에서 처리할 것이니 조량(照亮)[9]하기 바랍니다.

개국 504년 5월 15일

법부대신 서(徐)○○

탁지부 대신 어윤중(魚允中) 각하

한성재판소에 통첩(通牒)하는 건 / 안(案) 제184호

개국 504년 윤5월 17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5 총무관(總務官) : 1886년 내무부의 산하 기관인 공작사(工作司)에서 화륜선(火輪船)을 구입하여 각도의 공물을 운반하게 되었다. 화륜선에 의한 공물 운반을 맡아 관리하는 관원이 총무관(總務官)으로 당상관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 23년 7월 15일 참고)

6 감죄(勘罪) : 죄인(罪人)을 심의(審議)하여 처분함.

7 종인(從人) : 남에게 딸려서 따라다니는 사람. 수종인(隨從人) 또는 종자(從者)라고도 한다.

8 영리(營吏) : 조선시대에 감영(監營)이나 군영(軍營), 수영(水營) 등에 딸려 있던 아전을 말한다.

9 조량(照亮) : 형편(形勻)이나 사정(事情)을 살펴서 밝히 앎.

한성재판소에 통첩(通牒)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한 문서를 베껴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184호

삼가 말씀드립니다. 원주에서 보낸 첩보 중 동도죄인(東徒罪人) 이규하(李圭夏)는 홍종성(洪鍾成)과 동당(同黨)이며 5월 27일 공문을 보낼 때 첩보 및 증거물을 하나하나 송교(送交)하였으니 좌옥(左獄)[10]에 가두어 둔 이규하는 홍종성과 한꺼번에 심판(審辦)하기 바라며 이에 통첩합니다.

개국 504년 윤5월 17일 법부 형사국 낭서(郎署) 양효건(楊孝健)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복(照覆)하는 건 / 안(案) 제204호

개국 504년 윤5월 26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10 좌옥(左獄) : 조선시대 때 포도청은 좌우(左右)의 양청을 두었고 각각 옥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官)과 민(民) 모두 일반적으로 이를 좌옥(左獄) 또는 우옥(右獄)이라 칭하였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복(照覆)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한 문서를 베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204호

어제 귀 고등재판소에서 보낸 조회에 "동도죄인(東徒罪人) 황하일(黃河一)을 도3년(徒三年)에 처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3천리(流三千里)[11]라 하니, 어떤 사유인지 상세히 알려 주기 바라며 이에 조복합니다.

개국 504년 윤5월 26일 법부 형사국 낭서(郎署) 양효건(楊孝健)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김재홍(金在洪)의 사형(死刑)에 관한 지령 건 / 지령(指令)

개국 504년 7월 9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제2과장	

11 유삼천리(流三千里) :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는 것을 말하며, 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벌이다. 이것은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3천리 거리의 유배지가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유삼천리'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규정하여 《대전회통》 등 법전에 제시해 두고 있었다.

고문관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김재홍(金在洪)의 사형(死刑)에 관한 지령 건

임천군수가 보고한 일체의 문첩(文牒)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김재홍의 저지른 바가 극악절패(極惡絶悖)하여 사형(死刑)에 합치(合宜)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시한 문안(文案)대로 임천군수에게 지령하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지령(指令)

충청도 임천군

개국 504년 7월 9일 제1호

귀 임천군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김재홍(金在洪)은 임천군에서 교수형에 처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법부대신 서(徐)

충청도 청주영장(淸州營將) 및 청주군수(淸州郡守)가 품의한 바에 따라 비류(匪類) 오일상(吳一相)의 사형(死刑)과 여비(餘匪) 3명에 관한 지령 건 / 지령

개국 504년 7월 9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충청도 청주영장(淸州營將) 및 청주군수(淸州郡守)가 품의한 바에 따라 비류(匪類) 오일상(吳一相)의 사형(死刑)과 여비(餘匪) 3명에 관한 지령 건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가 보고한 일체의 문첩(文牒)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해당 범인 오일상은 저지른 바가 극악절패(極惡絶悖)하여 사형(死刑)에 합치되며 여비 3명도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에 관계되지만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시한 문안(文案)대로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에게 지령하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지령

충청도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

개국 504년 7월 9일 제1호

청주영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오일상은 교수형에 처하고, 여비(餘匪) 오두상(吳斗相), 이정도(李正道), 김인동(金仁東) 3명은 청주영 및 청주군에서 죄의 경중을 나누어 법률에 의해 처판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법부대신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에게 지령하는 건 / 안(案) 제3호 / 지령

개국 504년 7월 11일 기안

개국 504년 동월 동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고문관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에게 지령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한 문안(文案)을 정서(正書)하여 본 형사국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3호

지령

청주영장 청주군수

개국 504년 7월 11일 제 호

청주영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오일상(吳一相)은 교수형에 처하고, 여비(餘匪) 오두상(吳斗相), 이정도(李正道), 김인동(金仁東) 3명은 청주영과 청주군에서 죄의 경중을 나누어 법률에 의해 처판한 후 거행한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법부대신 ○○○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가 품의한 바에 따라 비괴(匪魁) 오일상(吳一相)과 여비(餘匪) 3명에 관한 지령 건 / 지령 제14호

개국 504년 9월 5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고문관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가 품의한 바에 따라 비괴(匪魁) 오일상(吳一相)과 여비(餘匪) 3명에 관한 지령 건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가 보고한 일체의 서류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 오일상이 겉으로는 시끄러운 소문이 낭자하지만 실제로는 패악한 행위가 없고 도리어 사민(士民)들을 보호한 공이 있다고 하니 참작할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일상은 감사일등(減死一等)[12]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여비 김동인(金東仁), 이정도(李正道), 오두상(吳斗相)은 경중을 나누어 처판하도록 지령함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12 감사일등(減死一等) : 사형(死刑)에서 한 등급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극변(極邊)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는 형률을 적용하게 된다.

지령 제14호

귀 청주군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 오일상은 겉으로는 시끄러운 소문이 낭자하지만 패악을 저지른 자취가 없고 도리어 사민(士民)들을 보호한 공이 있다고 하니 참작할 바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일상은 감사 일등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여비 김동인, 이정도, 오두상은 죄의 경중을 나누어 법률에 의해 처판한 후 거행한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하므로 이에 지령합니다.

청주군수 이교하(李敎夏) 좌하(座下)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에 수감되어 있는 김재홍(金在洪)의 사형(死刑)에 관한 지령 건 / 지령 제13호

개국 504년 9월 5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에 수감되어 있는 김재홍(金在洪)의 사형(死刑)에 관한 지령 건

임천군수가 보고한 모든 서류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 해당 범인이 저지른 바가 극악절패(極惡絶悖)하여 사형에 합치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文案)대로 임천군수에 지령하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지령 제13호

임천군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김재홍이 범행한 바는 『대전회통(大典會通)』「추단조(推斷條)」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官門)에서 작변(作變)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斬刑)에 처한다[지금은 교형(絞刑)을 적용함].[13]"라는 법률을 적용하여 임천군에서 교수형에 처한 후 그 거행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지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개국 504년 9월 5일

법부대신 서리

임천군수 유진옥(兪鎭沃) 좌하(座下)

임천(林川) 비괴(匪魁) 김재홍(金在洪)의 처교(處絞)[14]에 관한 소단자(小單子) 건 / 안(案)

개국 504년 9월 5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13 옛 법에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대개 봄·여름에는 집행하지 않고 가을철 추분(秋分)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부대시참(不待時斬), 즉 때를 기다리지 않고 신체를 절단해서 죽이는 형벌은 대죄(大罪)를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잔인한 형벌이 갑오개혁 이후 교형(絞刑), 즉 교수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14 처교(處絞) : 교수형에 처함.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형사과장

임천(林川) 비괴(匪魁) 김재홍(金在洪)의 처교(處絞)[15]에 관한 소단자(小單子)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한 문안(文案)대로 소단자를 정서(正書)하여 올려 주기 바랍니다.

안(案)

법부

임천 비괴 김재홍을 인명을 살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함

개국 504년 9월　일

훈령(訓令) 제17호

훈령(訓令) 제17호

전임 황해도 관찰사가 보고한 바를 보니 문화군(文化郡)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이동엽(李東燁)과 승려 금월(錦月)이 진술한 내용에, "많은 화포수(火炮手)를 거느리고 신천(信川), 송화(松禾), 장연(長淵), 옹진(甕津), 강령(康翎) 등의 읍(邑)에 돌진하여 관사(官舍)를 불태워 없앴으

15 처교(處絞) : 교수형에 처함

며 전곡(錢穀)을 약탈하였고 인민들을 살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범행한 바가 극악(極惡)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엽은 『대전회통(大典會通)』「추단조(推斷條)」[16]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官門)에서 작변(作變)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斬刑)에 처한다[지금은 교형(絞刑)을 적용함]."라는 법률을 따르고, 승려 금월은 "그 추종자는 장(杖) 100을 쳐서 유삼천리에 처한다[지금은 종신징역(終身懲役)]."라는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황해도 관찰부에서 문화군에 훈령하여 법률에 따라 처판한 후 거행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훈령합니다.

개국 504년 9월 6일

법부대신 서리(署理) ○○

해주부 관찰사 이명선(李鳴善) 각하

한산군(韓山郡)에 지령하는 건 / 지령 제19호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16 추단조(推斷條) : 추단(推斷)은 조선시대 왕과 사법 기관이 관리들의 비리와 일반 범죄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추단은 국청(鞫廳)에서 심문하고 처벌하는 추국(推鞫)과 구분되며, 중요 사건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일반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추단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추단(推斷)조에 죄인 처리 절차 및 형신의 방법과 강도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사용하는 형장(刑杖) 및 형구(形具)의 종류와 규격을 제한하고 있다. 추단조의 내용은 피의자의 신분과 죄질에 따라 형신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분제 사회의 사법적 특권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한산군(韓山郡)에 지령하는 건

한산군수의 보고서를 받아 본 결과, 수감되어 있는 비류(匪類) 김선재(金善在)와 서가량(徐可良)이 서학(西學)을 자칭하고서 오응노(吳應老)의 가산(家產)을 무수히 때려 부수고 돈 수백 냥[錢數百金]을 빼앗고 관정(官庭)에서 악을 썼다고 합니다. 해당 죄범(罪犯)은 『대명률(大明律)』「전택조(田宅條)」의 "타인의 기물을 버리거나 훼손하면 장(贓)으로 계산하여 절도죄에 준하여 논한다"라는 법률과 『대전회통(大典會通』「추단조(推斷條)」의 "유생이 수령에게 악쓰면 장(杖) 100 유(流) 3000리이다[지금은 종신징역(終身懲役)]"라는 법률을 적용하여 처판해야 합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文案)대로 지령하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지령 제19호

귀 한산군에 수감되어 있는 비류 김선재와 서가량의 죄상을 다시 조사한 보고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전의 보고에는 효경(梟警)[17]하는 게 옳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용서하기를 청하였는데, 어떠한 참작 사항이 있는지 실로 보고에 준하여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인이 이전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서 오응노의 가산을 무수히 때려 부수었으며, 돈 수백 냥

17 효경(梟警) : 효수(梟首)하여 경계시킴.

을 빼앗았고, 관정에서 악을 썼다고 하였다 하니 그 죄는 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인은 『대명률』「전택조」의 "타인의 기물을 버리거나 훼손하면 장으로 계산하여 절도죄에 준하여 논한다"라는 법률과 『대전회통』「추단조」의 "유생이 수령에게 악쓰면 장(杖) 100 유(流) 3000리이다[지금은 종신징역]"라는 법률을 적용하여 귀 한산군에서 처판한 뒤 그 시행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지령합니다.

개국 504년 9월 8일

법부대신 서리(署理)

한산군수 백낙형(白樂亨) 좌하(座下)

내각 기록국(內閣記錄局)에 통첩(通牒)하는 건 / 안(案) 제447호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형사과장	

내각 기록국(內閣記錄局)에 통첩(通牒)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文案)을 베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447호

교수형에 처한 죄인들의 죄목(罪目)과 성명을 아래와 같이 적어 보내니 관보(官報)에 게재하기 바라며 이에 통첩합니다.

개국 504년 9월 일

법부 형사국장 조중응(趙重應)

내각 기록국장 박영두(朴永斗) 좌하(座下)

임천군(林川郡) 비괴 김재홍(金在洪)을 인명을 살해한 죄로 교수형에 처했고, 문화군(文化郡) 비괴 이동엽(李東燁)을 여러 읍의 관사(官舍)를 불태워 없애고 인민들의 돈과 곡식을 약탈한 죄로 교수형에 처함.

군부(軍部)에 조회하는 건 / 안(案) 제454호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군부(軍部)에 조회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文案)을 베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454호

해주부(海州府)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군부 훈령 제5호를 받아서, 장수산성(長壽山城)에서 머리를 맞대고 모의하여 본 해주부에 수감되어 있는 적괴(賊魁) 윤덕여(尹德汝)를 큰 길거리에서 포살(砲殺)하였고, 그 여당(餘黨) 김운성(金云成)은 「백주창탈(白晝創奪)」 조항으로 1등급을 감등하여 ‘도(徒) 2년’의 법률을 적용하였고,[18] 맹소회(孟所回)는 「그 수종(隨從)」으로 2등급을 감등하여 ‘도 1년’의 법률을 적용하여 모두 신정식(新定式)[19]에 따라 징역형에 처했으며, 여성 범죄자[女賊] 2명은 해주군에 이송하여 각각 그 지아비를 붙잡아 둔 채 우선 보석하였고, 방이조(方彝祚)는 그들의 위협을 견디지 못해 총기를 제조하였고 애초에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엄히 장(杖) 30도(三十度)에 징계하고 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본 법부에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귀 군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훈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이에 조회하오니 밝게 헤아려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개국 504년 9월 13일

법부 형사국 제2과장 이희덕(李熙悳)

군부 군법국(軍法局) 이사 홍우형(洪祐亨) 좌하(座下)

18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형률(刑律) 도적(盜賊)〉에 “凡白晝搶奪人財物者, 杖一百徒三年”(대낮에 타인의 재물을 창탈(搶奪)하면 장 100 도 3년이다)라고 하였다.

19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개정된 규칙을 지칭하는 말이다.

군부 대신에게 조회하는 건 / 조회 제424호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형사과장

군부 대신에게 조회하는 건

해주부(海州府)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군부 훈령에 의거하여 장수산성(長壽山城)의 적괴(賊魁) 윤덕여(尹德汝) 등을 포살(砲殺)하거나 도배(徒配)[20]에 처했다고 합니다. 군부는 군령(軍令) 이외에 조율(照律)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무릇 일체의 조율은 본 법부에 지조(知照)해야 하며, 군부에서 해주부에 훈령하여 명안(命案)[21]과 옥사(獄事)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군부에) 조회하려 합니다.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조회 제424호

해주부(海州府) 제7호 보고서를 받아 보니, “법부 제5호 훈령을 받들어 장수산성의 적괴 윤덕여를 큰 길거리에서 포살(砲殺)하였고, 여당(餘黨) 김운성(金云成)은 「백주창탈조(白晝創奪條)」로 1등급을 감등하여 ‘도 2년

20 도형(徒刑)에 처한 뒤 귀양을 보냄.

21 명안(命案) : 살인 사건.

(徒二年)'에 처하였고, 맹소회(孟所回)는 「그 수종(隨從)」으로 2등급을 감등하여 '도 1년(徒一年)'에 처하되 신식 징역형에 따랐고, 여성 범죄자[女賊] 2명은 각각 그 지아비를 붙잡아 둔 채 우선 보석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 군율을 제외한 일체의 법률 적용은 모두 본 법부에서 작량(酌量)할 사항이지 귀 군부의 소관은 아니므로, 이 사항은 본 법부에 지조(知照)하여 처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군부에서 독단(獨斷)을 행하여 인명을 함부로 죽이기에 이르렀으니 사체(事體)가 타당하지 못합니다. 해주부 관찰사도 함부로 (사형을) 집행한 죄과가 없지 않으나 귀 군부 훈령을 받들어 거행하였다 하므로 우선 참작합니다. 이후 이러한 종류의 사항들이 있을 경우 본 법부에 지조(知照)[22]하시기를 요망하며 이에 조회합니다.

개국 504년 9월 15일

법부대신 서리

군부 대신 조희연(趙羲淵) 각하

해주부(海州府)에 지령하는 건 / 지령 제25호

개국 504년 9월 15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22 지조(知照) : 알리다. 통지하다.

형사국장

검사국장

형사과장

해주부(海州府)에 지령하는 건

해주부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군부 훈령(軍部訓令)에 의거하여 장수산성(長壽山城)의 적괴(賊魁) 윤덕여(尹德汝) 등을 포살(砲殺)하거나 도배(徒配)에 처했다고 합니다. 군부에서 본 법부에 알리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해서도 안 될 뿐더러, 해주부 관찰사가 경솔하게 먼저 함부로 집행한 후 보고한 것도 격식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해주부에 지령하여 차후의 격식 위반을 막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지령 제25호

귀 해주부의 제7호 보고서를 받아 보니, 군부의 제5호 훈령을 받들어 해주부에 수감되어 있던 장수산성에 취수(聚首)[23]하였던 적괴 윤덕여를 큰 길거리에서 포살하였고, 여당 김운성은 「백주창탈조(白晝創奪條)」로 1등급을 감등하여 '도 2년(徒二年)'에 처했고, 맹소희는 「그 수종(隨從)」으로 2등급을 감등하여 '도 1년(徒一年)'에 처하되 신식 징역형에 따랐고, 여성 범죄자 2명은 각각 그 지아비를 붙잡아 둔 채 우선 보석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 이러한 중대 사항은 반드시 본 법부의 지휘를 기다려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비록 군부의 훈령이 있었다

23 취수(聚首) : 머리를 맞대고 가까이 모여 앉음.

해도 군부에서는 군율(軍律) 이외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귀 해주부에서도 함부로 집행한 후 보고한 것이 격식에 어긋나므로 진실로 논경(論警)[24]하여 마땅하지만 우선 정상을 참작(參酌)합니다. 차후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반드시 먼저 본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에 지령하니 이를 인식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개국 504년 9월 15일

법부대신 서리

해주부 관찰사 이명선(李鳴善) 각하

추신 : 여러 범인들의 조율안(照律案)[25]을 조사해 보니, 중범죄를 경감했을 뿐 아니라 감등(減等)에 착오가 많아서 정당한 적용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흠휼지전(欽恤之典)[26]에 있어서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차후에는 특별히 더욱 신중히 심사하여 이러한 오류가 없게 하기 바랍니다.

안(案) 제568호

개국 504년 10월 24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24 논경(論警) : 상급 관원(官員)이 하급 관원(官員)의 잘못을 경계(警戒)하는 것을 말한다.

25 조율안(照律案) : 범죄의 경중에 맞는 형률을 적용하는 것을 조율(照律)이라 하며, 따라서 조율안(照律案)은 그 과정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26 '죄수에 대하여 신중히 심의하라'는 은전(恩典)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문안(文案)을 고등재판소[高所]에 통첩하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안(案) 제568호

김선재(金善在)와 서가량(徐可良)의 사건 관련 문서 5장을 보내오니 조열(照閱)하시기 바라며 이에 통첩합니다.

법부 형사국 주사 양효건(楊孝健)

고등재판소 주사 이규진(李圭晉) 좌하(座下)

추신 : 홍주부(洪州府)에의 훈령 및 한산군(韓山郡)에의 지령 초안을 함께 보내오니 서리대신(署理大臣)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홍주부(洪州府)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1호

건양 원년(建陽元年, 1896) 정월 6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홍주부(洪州府)에 지령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한 문안(文案)을 베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1호

귀 홍주부의 보고서 제7호를 받아 보니, "한산군(韓山郡)의 비류(匪類) 김선재(金善在), 서가량(徐可良)을 법부의 법률 적용에 따라 모두 종신징역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말을 자세히 살펴보니, 김선재는 서가량이 오응노(吳應老)의 집에 가서 야료를 부릴 적에 동행했을 뿐이고 포악질을 거든 적이 과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같은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공평하고 진실해야 할 법의(法義)에 흠결이 생길 것이므로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김선재가 서가량의 수종이 분명하다면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선재는 귀 홍주부에서 경중(輕重)을 헤아려 법률을 적용하여 처판하고 징역을 살게 할 공간도 귀 홍주부에서 설행(設行)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지령합니다.

건양 원년 1월 6일

법부대신

홍주부 관찰사 이승우(李勝宇) 각하

군부에 조회(照會)하는 건 / 안(案) 제4호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검사국장

군부에 조회(照會)하는 건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文案)을 베껴서 보내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안(案) 제4호

공주부(公州府) 관찰사 이종원(李淙遠)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청주군수(淸州郡守) 박정빈(朴正彬)의 보고서 내에, '본 청주군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 오일상을 친위대(親衛隊)[27] 제2대대 행진소(行陣所)[28]에서 군부의 훈령에 따라 이달 1월 9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무렵에 포살(砲殺)하였습니다.'라고 하므로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7 친위대(親衛隊) : 조선 말기 왕궁의 경비를 담당했던 중앙군이다.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 때 일제가 명성황후 시해에 훈련대를 동원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훈련대를 해산하고, 이른바 '육군편제강령'을 반포하여 왕성 수비를 위한 중앙군으로 이를 설치하였다.

28 행진소(行陣所) : 군사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밖으로 나가 있는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말한다.

이를 확인해 보니 위의 오일상에 대해서는, 청주군수와 청주영장이 작년 9월에 보고한 내용에 의거하여 범행한 정황을 상세히 조사했었습니다. 해당 범인의 죄명은 겉으로는 시끌벅적하나 실제로 패악을 저지른 자취가 없으므로 법부에서 적당한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 군부의 훈령에 따라 포살하였다고 하니, 귀 군부로부터 적실한 훈령이 있었는지 어떠한 죄목에 의거하여 포살하였는지 사안이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본 법부에서 이미 조율(照律)한 것을 귀 군부에서 직권을 넘어 포살하였으니 본 법부의 행정에 방해와 장애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안으로 본 법부대신이 귀 군부 대신에게 조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년 9월 16일에 해주부(海州府)의 비괴 윤덕여를 포살한 일로 귀 법부에 조회했었습니다. 귀 군부의 회답 조회 내에, 차후에 이러한 종류의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법부에 알리고 독단(獨斷)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1일에 충주부(忠州府)의 보고를 받고서 귀 군부에 조회하였더니 그 회답 조회 내에, "군율(軍律) 이외 일체의 법률 적용은 귀 법부에서 작량정의(酌量定擬)[29]하시는 게 신식(新式)에 타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부(各府)에 특별히 신칙하여 사형(死刑)은 귀 법부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은 뒤에 처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 포살하라는 귀 군부의 훈령이 있었으니, 이는 귀 군부의 회답조회가 상투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전후의 회답조회와 행정이 매우 모순되기 때문에 이에 조회하오니 밝게 헤아리신 후에 시명(示明)[30]하시기를 요망합니다.

29 작량정의(酌量定擬) : 짐작하여 헤아려서 현안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정함.

30 시명(示明) : 일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림.

건양 원년 1월 23일

법부대신

군부 대신 임시서리 탁지부 대신 어윤중(魚允中) 각하

동래부(東萊府)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4호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동래부(東萊府)에 지령하는 건

아래의 문안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호

귀 동래부의 제3호 질품서(質稟書)를 받아 보니, "흥해군(興海郡) 민란의 우두머리 장상홍(張相弘)이 결역(結役)을 감정(減定)할 사안으로 소장을 올리겠다는 핑계로 무리를 모아 관청에 난입했습니다. 관가에서 총을 쏘고 몽둥이를 휘둘러 내쫓자 산 위에 깃발을 세워놓고 흩어져 나간 백성들을 모아서 민가를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난민(亂民)의 소행이므로 현재 그 해당하는 법률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장상홍은 『대명률(大明律)』「소송조(訴訟条)」의 "입으로는 판결을 구한다고 칭하면서 곧바로 아문에 들어가 관리를 협제(挾制)[31]하는 경우에는 변원(邊遠)으로 보내 충군한다."라는 조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죄범준계조(罪犯準計条)」의 "죄가 변원에 충군하는 데 해당하는 것은 장1백, 유3천리 율에 처하는 것에 준한다."라는 율(律)을 적용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소요가 애초에 군폐(郡弊) 때문이었고, 저지른 바가 백성들을 모아 소란을 일으켰으되 관정에서 멋대로 패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드러난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정상이 이와 같음을 참작하여 특별히 1등급을 감하여(장(杖) 1백으로 지금은 태(笞)를 적용함) 유배 15년(지금의 징역 15년)에 처함이 옳기 때문에 이에 지령합니다.

건양 원년 2월 28일

법부대신 이(李)

동래부 관찰사 지석영(池錫永) 각하

추신 : 김용구(金龍九)의 경우, 폐단이 있으면 반드시 호소하는 건 논의할 만할 일입니다. 게다가 난민(亂民)들이 따라 일어난 것이 사실 그가 시킨 게 아니었고 또한 그가 난리의 근본을 염려하여 기회를 보아 물러났으니, 앞뒤 상황을 참작하여 용서한다고 하였습니다. 원통함이 있을 때 반드시 호소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니, 귀 동래부에서 엄히 신칙하고 풀어 주는 게 옳습니다.

31 협제(挾制) : 권세(權勢)에 의지하거나 특정인의 약점을 틀어쥐고 강제로 복종시킴.

장연군(長淵郡)에 훈령하는 건 / 안(案) 1호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검사국장	

장연군(長淵郡)에 훈령하는 건

아래의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앙망합니다.

안(案) 1호

내부(內部)의 조회 제16호 내용에, "해주부(海州府) 장연군수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역모를 꾀한 백낙희(白樂喜) 등을 붙잡아 가두고 문초하여 진술받은 내용을 보고합니다.'라고 하기에 해당 보고서와 공초안(供招案)을 첨부하여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백낙희는 본래 동학 무리의 괴수로서 또한 산포(山砲)의 괴수가 되어 몰래 흉모(凶謀)을 빚어내어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양근(全良根), 백기정(白基貞), 김계조(金桂祚)는 함께 모의하였고 김의순(金義淳), 백낙규(白樂圭)는 수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범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잠시라도 살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흉악한 짓을 모의한 백낙희, 함께 모의한 전양근, 백기정, 김계조, 수종

한 김의순, 백낙규 등 여섯 놈은『대명률(大明律)』「적도편(賊盜編)」'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의 "무릇 모반(謀反)은 단지 같이 모의만 하여도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陵遲處死)[지금은 교수형이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망한 김형진(金亨鎭), 김창수(金昌守), 김재희(金在喜), 유학선(柳學善), 최창조(崔昌祚)와 문화군(文化郡)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가(李哥) 등 여섯 놈을 즉각 탐문하여 체포할 것을 훈령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3월 11일

법부대신 이(李)

장연군수(長淵郡守) 염중모(廉仲模) 좌하

해주부에 훈령하는 건 제11호 / 안(案)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해주부에 훈령하는 건 제11호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을 베껴 보내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귀 해주부의 보고서 제6호를 받아 보니, “재령군(載寧郡)의 하리(下吏) 강달조(姜達祚)가 비류(匪類)로서 작경(作梗)한 실상을 엄히 심문하여 받아낸 공사(供辭)[32]를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강달조가 동학 접주(東學接主)가 되어 동당(同黨)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각 지역의 요민(饒民)들에게 곡물을 압류한 것이 수백 석이고, 신천군(信川郡)을 불태워 없애 버린 접주 원용일(元容馹)을 무리를 거느리고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희열(姜熙烈)의 조(租) 27석을 빼앗아 화포(火砲)에게 나누어 주었고, 김첨사(金僉使)[33]의 잡곡 36석을 빼앗았습니다. 그 흉악한 짓을 저지른 정적(情迹)이 지극히 패악스럽기 때문에 비괴(匪魁) 강달조는 다음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명률(大明律)』「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에 “무릇 요서(妖書)나 요언(妖言)을 지어내거나 전파하여 뭇사람을 현혹하면 참형에 처한다[지금은 교수형을 적용함].”고 하였고, 「백주창탈조(白晝搶奪條)」에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는 장 100(杖一百)[지금은 태(笞)를 적용함], 도 3년(徒三年)[지금은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하였고, 「명례(名例)」에 이르기를 “두 가지 범죄가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강달조는 교수형에 처하고 그 거행 결과를 즉각 급히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훈령하오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3월 28일

32 공사(供辭) : 범인(犯人)이 자신(自身)의 범죄(犯罪) 사실(事實)을 진술(陳述)하는 말.

33 첨사(僉使) :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준말. 지방 군영(진영)의 장수, 즉 첨절제사진(鎭, 부대)의 영장(營將, 지휘관)이며, 기준 품계는 종3품이었다.

법부대신 이(李)

해주부 관찰사 이명선(李鳴善) 좌하

내부에 조복(照复)하는 건 제19호 / 안(案)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내부에 조복(照复)하는 건 제19호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청합니다.

안(案)

귀 내부에서 보낸 조회(照會) 제19호를 받아 보니, "장연군수(長淵郡守)의 보고서 내에, '본 장연군의 비류(匪類) 백낙희(白樂喜) 등의 공안(供案)을 이미 작성하여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처의 산포(山砲)들이 작변(作變)하여 본 장연군 관아를 소탕(掃蕩)하고 백낙희를 탈옥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므로 이 비류들을 잠시라도 숨이 붙어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시찰관(視察官)[34]의 원혼(寃魂)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34 시찰관(視察官) : 갑오개혁 이후 신설된 내부(內部) 소속의 주임관(奏任官) 벼슬.

시찰관을 운구(運柩)할 때에 괴수(魁首) 백낙희를 포살(砲殺)함으로써 저승에 있는 시찰관의 혼을 위로하려고 하며, 나머지 여러 죄인들은 지령을 기다린 후 거행할 계획으로 우선 가두어두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귀 내부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에 조회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해 보니, 귀 내부에서 보낸 조회 제16호와 장연군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역모를 꾀한 백낙희와 같이 모의한 전양근(全良根), 백기정(白基貞), 김계조(金桂祚)와 수종한 김의순(金義淳), 백낙규(白樂圭) 등 여섯 놈은 교수형에 처하고, 도망친 김형진(金亨鎭), 김창수(金昌守), 김재희(金在喜), 유학선(柳學善), 최창조(崔昌祚)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문화군(文化郡)의 이가(李哥) 등 여섯 놈을 즉각 탐문하여 체포하라는 내용으로 이달 12일에 장연군수에게 훈령하였습니다. 이를 조량(照亮)하시기 바라며 이에 조복(照復)[35]합니다.

건양 원년 3월 28일

법부대신 이(李)

내부 대신 박정양(朴定陽) 각하

장연군(長淵郡)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2호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35 조복(照復) : 물어 온 조회(照會)에 대하여 회답하는 행위나 그 회답문을 말하며, 조복(照覆)이라고도 한다.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장연군(長淵郡)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제2호

귀 장연군의 보고서 제 호를 받아 보니, “역모를 꾀한 백낙희(白樂喜)와 전양근(全良根), 백기정(白基貞), 김계조(金桂祚), 김의순(金義淳), 백낙규(白樂圭) 등 여섯 놈 각각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속히 조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주부에 보고하였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지령도 내려오지 않기에 부득이 격례(格例)를 넘어서는 것을 무릅쓰고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해 보니, 형옥(刑獄)은 본 법부의 소관이거늘 귀 장연군수가 본 법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 보고한 것은 격식을 위반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후에는 신중히 거행히 살펴 거행하기 바랍니다.

내부의 조회 제16호의 내용에, “장연군수가 불궤한 백낙희 등 여섯 놈을 붙잡아 가두고 취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귀 법부에 관계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와 공초안(供招案)을 첨부하여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흉모(兇謀)한 백낙희와 같이 모의한 전양근, 백기정, 김계조와 수종한 김의순, 백낙규 등 여섯 놈은 『대명률(大明律)』「적도편모급대역조(賊盜編謀及大逆條)」의 “무릇 모반(謀反)은 단지 같이 모의만 하여도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陵遲處死)[지금은 교수형]

이다."라고 한 법률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고, 도망친 김형진(金亨鎭), 김창수(金昌守), 김재희(金在喜), 유학선(柳學善), 최창조(崔昌祚)와 문천군(文川郡)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등 여섯 놈을 즉각 탐문하여 체포하라고 금년 3월 11일에 훈령하였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위 여섯 놈을 하루빨리 처판하고 그 시행 결과를 속히 급히 보고하라는 일로 다시 훈령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4월 1일

법부대신 이(李)

장연군수 염중모(廉仲模) 좌하

추신 : 귀 장연군의 보고서에 호수(號數)가 없어서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후에는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보내서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군부에 조회하는 건 / 안(案) 제10호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군부에 조회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제10호

전주부 관찰사 서리 참서관(參書官) 염규환(廉圭桓)의 무호 보고서(無號報告書)를 받아 보니, "본 전주부 경무관보(警務官補) 김한정(金漢鼎)의 보고서 내용에 '친위대(親衛隊) 제2대대 대대장 겸 사령관의 훈령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거행하였습니다. 본서(本署)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로서 태인(泰仁) 등지에서 체포했던 동학 무리 17명 중에 권성중(權成中), 조성오(趙成五), 김윤중(金尹仲), 최문겸(崔文兼), 장사원(張士元), 김준삼(金俊三), 김치홍(金致弘), 신경백(申京伯), 박윤거(朴允巨), 오택수(吳宅洙)와 추후에 체포한 비류(匪類) 이주보(李周甫)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여 실정(實情)을 알아본 뒤 이상의 11놈을 당일 오후 1시에 남문(南門) 밖 장시에서 사형(死刑)에 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수종한 문복만(文卜萬), 차성규(車聖圭), 김봉현(金鳳鉉), 최병용(崔秉用) 등은 각각 엄히 장(杖) 30도를 치고, 최병우(崔炳宇), 박화숙(朴化叔), 김군거(金君巨) 등은 각각 엄히 장 20도를 치고, 비류들에게 부동(符同)하여 군심(軍心)을 어지럽힌 죄로 수감된 수종죄인(隨從罪人) 11놈 중에 최재복(崔在卜), 고복돌(高卜乭), 김성렬(金性烈), 김복인(金卜仁), 배영춘(裵永春), 장복동(張卜同), 김유문(金有文), 백치선(白致先), 김순용(金順用), 주제풍(朱濟豊) 등 10놈은 각각 엄히 장 30도를 치고 한결같이 엄히 징계하고 풀어 주었고, 박봉렬(朴鳳烈)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기에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해 보니, 동비 권성중 등 11명을 사형에 처하고 수종 문복만 등 17명을 엄히 장을 쳐서 풀어 주었다고 한 내용이 매우 괴이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이달 8일에 도착한 해당 전주부 관찰사의 보고서 중에 있는 해당 범인 등의 공안(供案)을 살펴 조사해 보니, 해당 비류들이 저지른 죄범(罪犯)의 경중이 분명히 다르고 수종의 정도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부에서 법부의 지령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인명(人命)을 죽인 것은 신식(新式)에 위배됩니다. 게다가 폐지한 정형(正刑)과 장형(杖刑)을 거리낌 없이 집행하여 법률을 준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귀 군부의 조복(照复) 제2호의 내용에, "군율(軍律) 이외 일체의 법률 적용은 법부에서 작량정의(酌量定擬)[36]하시는 게 신식에 타당하기 때문에, 각부(各府)에 특별히 신칙하여 '앞으로 적도(賊徒)를 포획할 경우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린 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단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위와 같은 조복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귀 군부에서 해당 대대장에게 훈칙하여 이번과 같은 형법(刑法)을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대대장이 망령되게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여 행한 것인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조회하오니 조량(照亮)하시고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건양 원년 4월 21일

법부대신 한(韓)

군부 대신 이윤용(李允用) 각하

36 작량정의(酌量定擬) : 짐작하여 헤아려서 현안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정함.

문건을 상주(上奏)하는 건 / 안(案)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강진희(姜璡熙)
	형사국장	
	제2과장	

문건을 상주(上奏)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상주하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해주부 장연군(長淵郡)의 비괴(匪魁) 백낙희(白樂喜)는 본래 동학 무리의 괴수(魁首)인데 또한 산포(山砲)의 괴수가 되어 몰래 흉모(兇謀)를 빚어내다가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모의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양근(全良根), 백기정(白基貞), 김계조(金桂祚)는 같이 모의하였고 김의순(金義淳), 백낙규(白樂圭)는 수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 "무릇 모반은 단지 같이 모의만 하여도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이다[지금은 교수형을 적용함]."라고 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평양부 개천군(价川郡)의 하리(下吏) 이정은(李廷恩)은 군수 유석환(柳錫煥)에게 사혐(私嫌)을 보복하려고 본 군수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에 "이졸(吏

卒)이 자신이 속한 부(部)의 5품 이상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하여 죽이면 참형이다[지금은 교수형을 적용].”라고 한 율에 따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인천부 수원군(水原郡)의 비도(匪徒) 엄윤명(嚴允明), 박경옥(朴敬玉) 등은 각각 병기를 지참한 채 적괴(賊魁)를 수종하여 시골 마을에서 재물을 약탈하였고 안성군(安城郡)의 이방(吏房)과 용인(龍仁) 지방의 행인 2명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영순(柳永順)은 병기를 지참한 채 적괴를 따라 다니며 공사(公私)의 재산을 약탈한 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3명은, 금년(1896) 법률 제2호 제7조 ‘강도율(强盜律)’ 제7항 표에 의거하여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평양부 순안군(順安郡)에 사는 김승문(金承文)은 한국현(韓國玄)과 사돈지간인데 서로 재화를 다투다가 한국현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은 『대명률(大明律)』「인명편(人命編)」 투구조(鬪毆條)의 “무릇 싸우다가 사람을 때려죽이면 손, 발, 다른 물건, 쇠붙이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絞刑)이다.”라고 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상원군(祥原郡)에 사는 박득권(朴得權)은 이웃에 사는 최소사(崔召史)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분노를 사자 수치심과 분노가 폭발하여 숫돌과 절굿공이 난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은 『대명률(大明律)』「인명편(人命編)」 고살인조(故殺人条)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참형(斬刑)이다[지금은 교형(絞刑)을 적용].”라고 한 율에 따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제정한 「형률명례(刑律名例)」 제9조에 의거하여 상주안(上奏案)을 바칩니다.

건양 원년 5월 30일

법부대신 한(韓)

내각총리대신 윤용선(尹容善) 각하

공주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27호

건양 원년 7월 1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공주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의 문건을 베껴 올리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제27호

귀 공주재판소의 보고서 제54호를 받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청주지방대(淸州地方隊)에서 체포한 비괴(匪魁) 서석여(徐石汝), 김시묵(金時默)과 임경원(林景元)의 아들 임도호(林道浩)를 압송해 오기를 기다려서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내어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이미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20일에 위 죄인 3명을 청주지방대에서 압송해 왔기에 형구(刑具)를 설치하고 좌우로 반핵(盤覈)[37]하여 취

37 반핵(盤覈): 자세히 캐물어 조사함.

조하였습니다.

청주군 산외면(山外面) 금암(琴巖)에 살며 올해 나이 48세인 서석여가 진술하기를, '저는 갑오년(甲午年, 1894) 8월 동학(東學)이 치성하던 시기에 거괴(巨魁) 손사문(孫士文) 포(包) 휘하의 접주(接主)로서 도망쳐서 숨어있다가 이번에 다행히 환접(還接)[38]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금년 음력 3월 25일에, 읍(邑)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예전에 살았었다고 하며 강채수(姜采水)라는 이름을 쓰는 놈이 우리 집에 와서 억지로 권장하기를, 지금 같이 흉흉한 세상에서는 단을 설치하고 치성을 올리는 것이 화(禍)를 예방하는 최고의 합당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4월 초1일에 과연 깨끗하게 청소하고서 분향(焚香)하였습니다. 『동경대전(東經大全)』의 경우 예전에 보존했던 것인데 환접한 이후에 미처 내다 버리지 못하고 아직 집 안에 있어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것은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주군 산외면 사동(寺洞)에 살며 올해 나이 38세인 김시묵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손사문 포 휘하의 접주로서 다행히 목숨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3월 25일에 서석여가 강채수를 통해 통문(通文)을 제게 전달하여, 다시 동학을 일으키기 위해 단을 설치하고 치성을 올린다고 하며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가서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며, 동학과 관련된 물건들은 강채수에게 맡겨 둔 것입니다. 더 진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주군 산외면 사동에 살며 올해 나이 19세인 임도호가 진술하기를, '저의 아비는 일찍이 동학 접주로서 오랫동안 도피해 있으면서 근래에 왕래

38 환접(還接) : 돌아와 거주함.

는 있었으나 항상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통(敬通)」은 서석여가 보내와서 맡아 두었으나 그 연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석여, 김시묵 두 놈은 모두 비괴(匪魁)로서 처음에는 요행히 법망을 빠져나가 벌을 받지 않았으나, 지금 다시 범죄의 싹이 나옴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도 이같이 허물을 숨기고 꾸미는 것이 더욱 지극히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게다가 단을 설치하여 치성을 올리고 「경통」으로 기약을 정하는 등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이른바 『동경대전』과 「경통」을 베껴 쓴 책자와 명첩(名帖) 및 잡적(雜蹟)과 치성을 드리는 데 쓰는 여러 도구들을 보면 모두 거리낌 없던 예전 짓을 답습하는 자취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임도호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아직 몰지각한 어린 나이이니 응당 고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반 증거물들은 별지에 적어서 모두 올려보내니 밝게 살펴보시고 지령을 내려 주시기를 기다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서석여와 김시묵은 본래 동학 괴수 손사문의 접주로 다행히 법망을 피했었는데 또다시 강채수의 권유를 받아 단을 설치하여 치성을 올렸으니 다시 요서(妖書)를 읽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약을 정하는 통문을 돌린 것은 양민들을 선동한 근인(根因)입니다. 교사(敎唆)는 본래 범인이 있지만 그를 따랐기 때문에 율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명률(大明律)』「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에 "좌도(左道)로 정도(正道)를 어지럽히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인민을 부추겨 현혹시킨 종범(從犯)"의 율을 적용하여 각각 장(杖)[지금은 태(笞)를 적용] 100, 유(流) 3천리[지금은 종신징역]에 처합니다.

임도호는 사학(邪學)에 오염된 자취가 없음이 확실하게 증명되므로

잘 타일러서 풀어 주되, 그 아비의 범행은 그가 말한 진술에서 감출 수 없으니 함께 도망한 강채수와 일체 탐문하여 기필코 체포한 후에 진술을 받아서 급히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6월 30일

법부대신 한(韓)

공주재판소 판사 이건하(李乾夏) 각하

안건을 상주하는 건 / 안(案) 제18호 / 처형 죄인(處刑罪人)에 관한 건

건양 원년 9월 9일 기안

건양 원년 9월 10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정인복(鄭寅福)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안건을 상주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서 올리는 게 어떠할지,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제18호

처형 죄인(處刑罪人)에 관한 건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의 강도죄인 이성탁(李聖澤), 황해도 비류(匪類) 김선장(金善長), 함경남도 영흥군(永興郡)의 살옥정범(殺獄正犯) 김재호(金在浩), 충청남도 면천군(沔川郡)의 살옥정범 성운서(成雲西), 황해도 봉산군(鳳山郡)의 화포(火砲) 이원조(李元早), 충청남도 목천군(木川郡)의 포군(砲軍) 이만용(李萬龍) 등 6명을 아래에 나열한 바와 같이 처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 제정된 법률(法律)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제9조에 따라 상주안(上奏案)을 제정(提呈)합니다.

건양 원년 9월 9일

법부대신 한(韓)

내각 총리 대신 윤용선(尹容善) 각하

一. 한성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한 강도죄인 이성탁이 전동(典洞)의 객주(客主) 김보민(金普民)의 집에 가서 "별은(別銀)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서 거간(居間) 장진국(張鎭國)을 유인하여 별은 21냥을 휴대하고 신사(新寺) 아래 승전봉(勝戰峯)에 함께 이르러 여기에서 칼을 뽑아 장진국을 찔러 죽이고 해당 금을 탈취한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39]의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

39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조선 말에 제정된 도둑의 처벌에 관한 형벌법(刑罰法)이다. 건양 원년(1896) 4월 1일에 법률(法律) 제2호로 공포 시행되어 광무 9년(1905) 4월에 『형법대전(刑法大全)』의 제정 실시로 폐지될 때까지 약 9년 동안 시행되었다.

(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황해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비류 김선장이 본래 동학 무리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라 칭하고 '수대산(壽大山) 108형제'라고 하는 도당을 거느리고 촌락에 멋대로 횡행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또 순포(巡捕)라고 거짓으로 칭하며 궁촌(窮村)과 고도(孤島) 등에 출몰하며 돈과 재물을 토색하였음. 그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함경남도 영흥군의 살옥정범 김재호가 사망한 김제순(金濟淳)의 종손녀를 겁박하자 김제순이 가서 손녀를 불러 돌아오고 있었는데, 김재호가 장(杖)으로 목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고 다음날 아침에 사망함. 이 죄로『대명률(大明律)』「인명편(人命編)」"다투다 때려서 사람을 죽인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충청남도 면천군의 살옥정범 성운서가 사망한 손금산(孫今山)에게 배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고 하며 갑자기 손금산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말뚝에 묶어서 사망하게 한 죄로, 『대명률(大明律)』「인명편(人命編)」"다투다 때려서 사람을 죽인 자"에 관한 율을 적용

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황해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봉산군의 화포 이원조가 동학 무리 수백 명을 데리고 사원참(沙院站)에 와서 불을 질러 태워 버리면서 어떤 사람이든 불문하고 만나는 대로 포살(砲殺)한 것이 40여 명임. 그 중 송상원(宋相源)을 포살하고 은전(銀錢)을 탈취한 일로 그 아들 송윤화(宋允和)가 호소함에 따라 이원조를 체포하여 심문하였더니 과연 인명을 포살하고 재물을 탈취하였음을 자복(自服)함. 이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목천군의 이만용이 이웃에 사는 유회일(柳會一)로부터 부채 25냥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원망을 품고서, 신설된 포군(砲軍)에 들어가 유회일을 적도(賊徒)라고 모함하여 무리를 거느려서 체포하였음. 그 애매한 정상(情狀)을 사방의 이웃들이 본 군(郡)에 와서 호소하므로 풀어 주었는데 중로(中路)에서 포살하였음. 유회일의 아내 허소사(許召史)가 억울함을 호소함에 따라 이만용을 체포하여 조사하니 과연 사혐(私嫌)으로 함부로 인명을 살상했음을 자복함. 이 죄로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4호

건양 원년 9월 11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호

귀 황해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3호를 받아 보니, "봉산군수(鳳山郡守) 이민고(李敏皐)의 보고를 받아 보니, '본 봉산군 사원참(沙院站)의 송원화(宋允和)가 소구(訴求)한 내용에, 「작년 1월경에 재령(載寧)의 동학 무리 수백 명이 본 참(站)에 와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포살(砲殺)하며 불을 질러 집들을 태워 없애 버릴 때 죽은 사람이 40여 명이고 불태워진 민가가 300여 호입니다. 그때 저의 아비 송상원(宋相源)이 화포(火砲) 이원조(李元早)에게 포살 당했으나 당시 이놈들의 세력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복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잡아들이오니 속히 제 아비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위 이원조를 잡아들여 엄히 신문하였더니 공초

(供招) 내에, 「송상원과 김기성(金基成)을 과연 포살했습니다.」라고 하므로 공초기(供招記)를 첨부하여 보고드리오니 특별히 감처(勘處)하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연이어 받은 봉산 사원참 송윤화의 소구(訴求) 내용도 보사(報査)와 같으므로 지금 비류(匪類)들이 작경(作梗)한 것을 다시 추적하여 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원조가 화포를 자칭하고 무리를 거느려 사원참 아래에 돌입하여 민가들을 불태워 없애고 인명을 살해한 정절(情節)을 그가 이미 자복(自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초기(供招記)를 아래에 적어서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징판(懲辦)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원조가 비적질을 저지른 내력이 이미 명확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집에서 원수를 갚고자 하며 자복도 있으니, 엄중한 법의 처벌을 그가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범인을, 금년에 제정한 법률(法律) 제2호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겠다는 뜻으로 이달 10일에 상주(上奏)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달 11일 내각(內閣)의 지령(指令) 내에, "화포 이원조의 교수형에 관한 건을 삼가 상주하여 재가(裁可)를 얻었기에 이에 지령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정범(正犯) 이원조를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9월 11일

법부대신 한(韓)

황해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 / 안(案) 제5호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호

전 해주부 관찰사 서리 참서관(參書官) 김효익(金孝益)의 보고서 제38호를 받아 보니, "해주군 마산방(馬山坊)에 사는 김선장(金善長)은 본래 동학 무리로, 임종현(林宗鉉)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라 칭하고 '수대산 108형제(壽大山百八兄弟)'라고 하는 무리를 이끌고 촌락에 멋대로 횡행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던 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경병(京兵)과 일병(日兵)이 성부(城府)에 주둔하여 도적들과 맞닥뜨려 토벌할 경우 비적들의 소굴이 와해되는지라, 그 놈이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었다가 근래에

또 순포(巡捕)라고 거짓으로 칭하며 궁촌(窮村)과 고도(孤島)의 사이에 수시로 출몰하여 종종 침학하는 폐해가 많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을 파견해서 포획하여 그동안 작경(作梗)한 행위에 대해 주리를 틀며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그 공안(供案)을 갖추어 올려보내오니 밝게 조사하여 징판(懲辦)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이 본래 비류(匪類)로 도당(徒黨)들을 불러모아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 이미 몹시 악한 일이거늘 또 순검을 사칭하고 촌락에 출몰하여 침학하고 행패를 부린 것은 극도로 모질고 흉악한 일입니다.

해당 범인은, 금년에 제정한 법률(法律) 제2호 제7조「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겠다는 뜻으로 이달 10일에 상주(上奏)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달 11일 내각(內閣)의 지령(指令) 내에, "비류 김선장의 교수형에 관한 건을 삼가 상주하여 재가(裁可)를 얻었기에 이에 지령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비류 김선장을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9월 11일

법부대신 한(韓)

황해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 / 안(案) 제6호

건양 원년 9월 29일 기안

건양 원년 9월 30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6호

귀 황해도의 보고서 제7호를 받아 보니, "봉산군(鳳山郡)의 이원조(李元早)가 화포(火砲)를 자칭하고 무리를 거느려 참(站) 아래에 돌입하여 집들을 불태워 버리고 인명을 살해한 정절(情節)에 대해 공안(供案)을 갖추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봉산군수 이민고(李敏皐)의 보고서에, '본 봉산군 사원참(沙院站)에서 송상원(宋相元), 김기성(金基成) 등을 포살(砲殺)한 이원조가 우연히 설증(泄症)[40]에 걸려 날마다 심하게 아프다가 치사(致死)하기에 이르렀다'고 옥졸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간(摘奸)[41]하게 했더니 살빛이 누렇고 몸이 야윈 모습이 질병으로 사망

40 설증(泄症) : 설사(泄瀉) 증세(症勢).

한 게 분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원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기 전에 먼저 질병으로 사망한 것은 지극히 공교롭지만, 실인(實因)을 조사한 결과가 이미 분명하여 달리 규명할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시체를 내보내 매장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9월 29일

법부대신 한(韓)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 / 안(案) 제8호

건양 원년 10월 13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정인복(鄭寅福)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41 적간(摘奸) : 난잡(亂雜)한 죄상(罪狀)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조사(調査)하는 것을 말하며, 척간(擲奸)이라고도 한다.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8호

전라북도 고부군(古阜郡) 답내면(畓內面) 창전리(蒼田里)에 사는 어린아이 이동순(李東淳)의 소장(訴狀)을 받아 보니, "고소인의 아비 이달숙(李達淑)이 작년 2월경에 본 고부군에서 발생한 민요(民擾)의 사건에 걸려들어 연안군(延安郡)으로 정배(定配)를 가게 되었습니다. 즉시 배소(配所)를 향해 가는 도중에 병을 얻었는데 3~4개월 동안이나 병이 낫지 않아서, 6월이 되어서야 배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개국 504년(1895) 이전에 죄를 지은 자 중에 여섯 가지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42] 풀어 주라.'라는 칙명(勅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에 유배되어 있던 죄수들이 일체 감옥에서 석방되었으나 유독 고소인의 아비만은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촉(洞燭)하신 후 즉시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가 고찰해 보니, 개국 504년 6월 27일 칙명에 "짐(朕)이 경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유신(維新)한 정치에 짐작하여 헤아림이 없지 아니하니, 개국 504년 4월 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 중에 모반(謀反), 살인(殺人), 절도(竊盜), 강도(强盜), 통간(通奸), 편재(騙財)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 일체 감옥에서 석방하여서 죄를 널리 탕척해 주는 은전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달숙의 죄명이 비록 위 여섯 가지 범죄는 아니지만 사면령이

42 원문에 '육조(六條)'라고 되어 있는데 모반(謀反), 살인(殺人), 절도(竊盜), 강도(强盜), 통간(通奸), 편재(騙財) 등 여섯 가지 중죄를 말한다.

내려진 이후에 유배소에 도착했기 때문에 애초에 유배 죄인 중 석방자 명단을 작성할 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소장을 살펴보니 범죄가 4월 1일 이전에 있었던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유배소가 있는 읍에 훈령하여 즉각 풀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송화군(松禾郡)에 유배된 죄수 송정화(宋正化)와 은율군(殷栗郡)에 유배된 죄수 김처중(金處中) 등은 모두 이달숙과 더불어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같은 시기에 유배지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 죄수들이 있는 유배지의 관장(官長)들에게 즉시 신칙하여 모두 즉각 풀어 주게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아울러서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10월 13일

법부대신 한(韓)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상주(上奏) 안건 / 안(案) 제7호

건양 원년 10월 23일 기안

건양 원년 10월 28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상주(上奏) 안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올리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7호

한성부재판소 강도죄인 장명숙(張明叔), 강도죄인 엄경필(嚴敬弼), 강도죄인 한만돌(韓萬乭)과 인천재판소 강도죄인 김창수(金昌洙)와 평안남도 자산군(慈山郡)의 살옥정범(殺獄正犯) 죄인(罪人) 김세종(金世種)과 강원도 재판소 지평군(砥平郡)의 포군(砲軍) 박정식(朴定植)과 한성재판소에서 관할하는 강화부의 강도죄인 주은쇠(朱銀釗), 이개불(李介佛), 여상복(呂尙福), 최성근(崔聖根)과 강원도 재판소 비도(匪徒) 이덕일(李德一) 등 총 11명을 모두 아래에 나열한 대로 율을 적용하여 처판하였습니다. 이에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3호「형률명례(刑律名例)」제9조에 의거하여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건양 원년 10월 22일 봉지(奉旨)

신(臣) 한(韓)

一. 한성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한 강도죄인 장명숙과 강도죄인 엄경필은 도당(徒黨)을 체결하여 각자 몽둥이와 칼을 들고 각처에서 재물을 탈취하였고, 한만돌은 협박을 받아 종범(從犯)이 되어 함께 행동하고 장물을 나눠 가졌음. 이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인천항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김창수가 '좌통령(左統領)'이라 자칭하고 일본 상인 토전양량(土田讓亮)을 그 자리에서 때려죽여서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재물, 돈, 환도(環刀)를 탈취하여, 800금(金)은 점주(店主)에게 맡기고 나귀를 샀으며 그 외의 돈 꾸러미는 동행한 3인에게 분급하였음. 그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평안남도 자산군의 살옥 정범죄인 김세종이 사망한 황금천(黃金千)의 처와 몰래 통하고서 간사한 정이 흡족하지 못하여 술자리를 벌여 함께 마시다가 속으로 흉심(兇心)을 품고 옛날의 채무를 강하게 독촉하다가 낫으로 황금천을 찔러 죽임. 이 죄로 『대명률(大明律)』「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살인한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강원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지평군의 포수 박정식이 작년 12월경에 해당 지평군의 군수 맹영재(孟英在)를 향하여 "개화한 사람에게는 총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서 3차례 총을 쏘았음. 이 죄로 『대전회통(大典會通)』「추단조(推斷條)」 "읍민이 관장(官長)을 향해 포

(砲)를 쏜 자"에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한성재판소에서 관할하는 강화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주은쇠, 이개불, 여상복, 최성근 등이 도당을 결성하여 강화부 경내에서 총을 쏘고 불을 지르며 마을에 횡행하여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인민들을 상해하였음. 이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강원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비도죄인 이덕일이 전 춘천부 관찰사 조인영(曺寅承)이 부임할 때 "삭발 관찰사"라고 욕을 하며 동네 사람들을 지휘하여 길 가운데에 잡아 두었다가 다음날 비류들이 잡아가서 끝내 포살하였음. 이 죄로 『대명률(大明律)』「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 "부민(部民)이 자신이 속한 곳의 지부(知府)의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하여 죽인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거주 평민

피고(被告) 김성원(金性元)

나이 46세

위 피고 김성원이 남의 무덤을 사굴(私掘)한 사건에 대한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따라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는 개국 503년(1894) 7월에 당진군에서 동학 무리에 들어가 동 당진군에 사는 손병일(孫炳一)의 아내의 무덤이 당금지지(當禁之地)[43]가 아닌데도 피고의 산(山)이라 칭하고서 무리를 모아 사굴하였다. 그 사실은 손병일의 고소와 피고가 자백하여 진술한 말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된다. 이는 '적도편(賊盜編) 발총죄(發塚罪)'에 해당하므로 "무릇 분총(墳塚)을 발굴하여 관곽(棺槨)을 드러낸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피고를 '장 100 유 3,000리'에 처하여, 이를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 제1조에 의하여 '태 100(笞一百) 종신징역(懲役終身)'에 처할 만하다. 그러나 앞선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2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한다.

건양 원년 11월 5일

검사 유학근(柳學根) 검사시보(檢事試補) 이휘선(李徽善) 입회함

고등재판소 재 판 장 한규설(韓圭卨)

판 사 권재형(權在衡)

예비판사 김기조(金基肇)

예비판사 김교성(金敎性)

주 사 정석규(鄭錫圭)

43 당금지지(當禁之地) : 이미 묏자리가 들어선 곳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공간으로, 다른 사람이 장사(葬事)지내거나 뫼를 쓸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6호

건양 2년(建陽二年, 1897) 2월 5일 기안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정인복(鄭寅福)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6호

귀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무주군(茂朱郡) 김천용(金千用)의 소장(訴狀)을 보니, "저의 아비 김귀서(金貴西)가 지난 갑오년(甲午年, 1894)에 동요(東擾)의 죄로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에 정배(定配)되었는데, 당시 본 무주군에서 같은 죄를 지은 5명이 함께 정배되었습니다. 그중 4명은 법에 따라 감죄(勘罪)되어 본 무주군에서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저의 아비만 홀로 해배(解配)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해군에 훈령을 보내어 법에 따라 본 무주군에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똑같이 감죄해 주시기를 천만으로 애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징역정식(懲役定式) 이후에도 이전의 유배형에 따랐다는 것을 들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귀 재판소

에서 경상남도 재판소에 문서를 보내어 기필코 압송해 와서, 그 죄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징역형으로 처판해야 합니다. 죄가 종신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유배 기간을 형기(刑期)로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2년 2월 25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조(趙)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윤창섭(尹昌燮) 각하

한성재판소에 조회하는 건 / 안(案) 제47호

건양 2년 3월 22일 기안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한성재판소에 조회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7호

귀 재판소에서 판결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들 중에 아래에 성명을 적은

사람들의 공초(供招)를 즉시 보내어 열람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조회하오니 밝게 헤아려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양 2년 3월 22일

법부 형사국 주사 양효건(楊孝健)

한성재판소 주사 정명섭(丁明燮) 좌하

아래[左開]

손정흠(孫鼎欽)　김성원(金性元)

김창수(金昌洙)　남의근(南義根)

함종국(咸鍾國)　총 8명

박치삼(朴致三)

황명연(黃命淵)

유홍렬(劉弘烈)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3호

건양 2년 3월 23일 기안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유학주(俞鶴柱)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3호

귀 전라북도 고산군(高山郡) 동하면(東下面) 시우동(時雨洞)에 사는 정인현(鄭寅賢)의 고소(告訴)에, "고소인은 갑오년(1894) 동요(東擾) 때에 집안의 재산과 살림 도구들을 빼앗겼습니다. 동요가 진압된 후에 살림 도구들을 잃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추심(推尋)을 하기에 고소인도 추심하려고 김치경(金致景)의 집에 갔더니, 공교롭게도 김치경의 아들이 비괴(匪魁)로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고 이미 목을 매어 죽어서 하나의 물건도 되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치경이 멸구(滅口)[44]할 목적으로 도리어 저희를 모함하여, 고소인의 조카 정치모(鄭致模)는 재작년 무렵에 홍천군(洪川郡)에 정배(定配)되었고 고소인의 아들 정세모(鄭世模)는 강진군(康津郡)에 정배되었다가 작년 무렵에 모두 해배(解配)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년 5월 무렵에 고소인의 아들 정세모를 본 전주부(全州府)로 잡아 올려서 불문곡직하고 징역형에 처했으니, 어찌 지극히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은 전의 소장(訴狀)에 비춰보면 명백하므로, 이에 고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정세모, 김두봉(金斗奉), 고동업(高同業),

44 멸구(滅口) : '입을 없애어 말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비밀(祕密)스럽게 한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비밀(祕密)을 아는 사람을 가두거나 빼돌리거나 죽임을 이르는 말이다.

박두술(朴斗述), 김봉주(金奉柱) 등을 징역형으로 환처(換處)한 후 그 죄상(罪狀)을 소상에게 적어서 보고하라는 일로 건양 원년(1896) 3월 24일에 훈령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형식적인 문구로만 여기고서 아직까지 보고를 지체하고 있는 것인지, 그 거행을 살펴보건대 매우 놀랍습니다. 그 당시의 관찰사는 이미 체임되어서 논경(論警)할 수 없었으나 이제 장차 논경할 것입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위 5명의 죄명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 그 기록을 심리(審理)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2년 3월 23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서리 의정부 찬정 조(趙)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윤창섭(尹昌燮) 각하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23호

건양 2년 4월 13일 기안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강진희(姜璡熙)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3호

귀 충청남도의 보고서 제41호를 받아 보니, "본 부(府)의 관할 아래 있는 지역에서 이른바 '동학(東學)'이라 칭하고 갑자기 도당(徒黨)을 이루는 수상한 행동거지가 있는데 목천진(木川鎭), 금련산(岑連山), 문의(文義) 등의 지역이 특히 심합니다. 공주(公州) 산내면(山內面) 상하(上下) 소전리(蘇田里)에는 와굴(窩窟)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낭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내부(內部)에서 비훈(祕訓)을 보내어 '이 비훈이 도착하는 즉시, 과연 정말로 그러한지 실상을 자세히 탐지하여 불일간 급히 보고하되 만일 시간을 지체하여 폐단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위 각 군(郡)들에 급히 비칙(秘飭)을 날려보낸 연유는 이미 보고했고, 목천 등 4개 군에서는 아직 수상한 흔적이 없다고 연속으로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공주군수(公州郡守) 서옥순(徐玉淳)이 순교(巡校)와 서기(書記)를 파송하여 비밀리에 탐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냈기에, 순검(巡檢) 18명, 청사(廳使) 2명을 파견하여 15명을 붙잡아 와서 그들의 공사(供辭)를 별지에 나열하여 적었습니다. 유몽석(柳夢石), 이봉여(李鳳汝) 등은 출타 중이어서 아직 붙잡지 못했고, 김여포(金汝宗)는 수비대(守備隊)에서 병정들을 파송하여 붙잡아 해당 부대에 가두었으나 아직 공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유(緣由)를 내부(內部)에 보고하고, 이에 베껴서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여러 죄수들이 마치 한 입으로 말하듯이 변명

하고 있는데 공주군의 서기는 무엇을 근거로 비밀리에 탐지한 것인지요?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다시 조사하여 진술서를 갖춰서 급히 보고하되, 만약 무죄(無罪)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즉시 방면하여 혹시라도 죄없는 자는 잘못 걸려들지 않게 하고 죄지은 자는 요행히 도망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를 따라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2년 4월 13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 찬정 조(趙)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이건하(李乾夏) 각하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39호

건양 2년 7월 19일 기안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김창형(金昌炯)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이달 16일에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신(臣) 한규설(韓圭卨)이 삼가 상주하기를, "금번 칭경진하(稱慶進賀)[45] 때에 반포하신 조서(詔書)에 '하나. 각도(各道)의 유배(流配) 이하 죄인은 모두 죄의 등급을 감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하나. 중앙과 지방에 감금(監禁)된 죄인들도 범죄 내용을 분명하게 조사하여 분별해서 등급을 감하도록 결정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정상이 본래 가벼워서 용서해 줄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부서가 분명히 조사해서 품지(稟旨)하여 정탈(定奪)[46]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배되거나 감금된 죄인들을 각각 몇 등급을 감할 것인지, 징역 죄인들도 아울러 감등할 것인지의 여부 및 어떠한 죄인들을 감등할 수 있는지 등을 신(臣)의 법부에서 감히 함부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받든 성지(聖旨)에, '모반(謀叛), 강도(強盜), 절도(竊盜), 살인(殺人), 통간(通奸), 편재(騙財)[47] 외에는 각각 1등을 감하고 미결수로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1등을 감하라'고 하명하셨습니다. 삼가 조칙을 받들어 고등재판소 및 한성재판소에서 판결한 죄인들 중 모반, 강도, 절도, 살인, 통간, 편재 외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1등을 감해야

45 칭경진하(稱慶進賀) : "국왕에게 축하를 올린다"라는 뜻으로, 왕실이나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의 경사는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것을 말한다. 고종은 환궁을 계기로 육범 외의 죄수들을 각각 감1등 하도록 하는 사면령을 내렸다.

46 정탈(定奪) : 신하들이 올린 몇 가지의 논의(論議)나 계책(計策) 중에서 임금이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결정짓는 것을 말한다.

47 편재(騙財) :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는 것을 말한다.

할 자들의 성명, 죄명 및 징역을 시작한 날짜 등을 별지에 적어 상주하였더니, 같은 날 받든 성지에 '상주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윤허하신 말씀의 뜻을 받들어 살펴 시행해야 합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에 적은 죄인들을 압송하여 성지(聖旨)를 널리 알려 각각 1등급을 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2년 7월 19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한(韓)

고등재판소판사 이인우(李寅祐) 각하

아래[左開]

김성원(金性元)

박경운(朴景雲)

충청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30호

광무 원년(光武元年, 1897) 8월 17일 기안

광무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충청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48]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0호

귀 충청북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59호를 받아 보니, "제7호 훈령을 받들어 본 부(府)의 징역죄수들이 있는 곳에 각각 성지(聖旨)를 널리 알리고 본래의 율에서 1등급을 감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명, 형기(刑期)와 도내의 각 군에 이전에 유배와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 징역 죄인 중 만기(滿期)로 석방해야 할 자들을 오로지 밝게 헤아려 일체(一體)로 나열하고 주(註)를 붙여 설명하여 이번 4월 29일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령을 받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오두상(吳斗相)과 이정도(李正道)는 동비(東匪)의 수종(隨從)으로 말과 곡식을 빼앗았으니 이는 (6범(六犯)의 하나인) 절도(竊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등급 감등 여부를 거론할 수 있습니까? 황동준(黃東俊)은 죄가 비록 적도(賊盜)이나 징역기한이 이미 만기가 되었으니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풀어 주어야 합니다. 제천군(堤川郡) 유배된 죄수 심치성(沈致成), 이달제(李達濟)와 청풍군(淸風郡) 유배된 죄수 노창근(盧昌根) 등은 모두 귀 재판소로 압송하여 그들의 범죄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한 후 율에 의거하여 낱낱이 헤아려서 징역형

48 내용으로 보아 '충청북도'가 아니라 '충청북도 재판소'에 보내는 훈령이다.

으로 바꾸어 처리하되, 각각의 유배기간을 징역기한 내에서 제외해 주어야 합니다. 심치성은 과부를 겁탈하는 죄를 지었으니 감등하기 어렵고, 노창근, 이달제는 사면령을 받들어 각각 1등급을 감등하고 거행 결과를 즉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를 따라 거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원년 8월 17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한(韓)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박제억(朴齊億) 각하

한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139호

광무 원년 월 일 기안

광무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김창형(金昌炯)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한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39호

귀 한성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 제810호를 받아 보니, "본 한성재판소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피고 김형진(金亨鎭), 백완형(白完亨), 여기전(呂基銓), 김운배(金雲培), 김신원(金信元), 승 법천(僧 法天), 홍인성(洪仁聖) 등의 안건을 심리(審理)했습니다.

피고 김형진은 일찍이 18년 전에 자신의 후사(後嗣)를 얻기 위해 명산(名山)에서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신도(神道)[49]에 지나치게 빠져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의식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병신년(丙申年, 1896) 2월 이후로는 산마(山魔)에게 본성(本性)을 빼앗겨 망령된 말로 대중을 미혹시키고 심지어 자신이 당연히 자사(刺史)가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을 만들어서 병액(病厄)을 헤아린다고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피고 백완형은 김형진이 그동안 저지른 행위를 대략 아는 듯합니다만 중간에 말을 바꿔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고 가벼운 사안들만 이야기함으로써 옥사(獄事)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피고 여기전은 부모님을 위해 수고비 조로 돈을 낸 것은 인지상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속아서 부적을 산 것은 우매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가 매우 망령됨을 깨닫고서 비로소 절교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김운배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여 김형진을 추종하다가 그 허탄(虛誕)함을 보고서 꾸짖고 절교하였다고 하오나 그 해몽(解夢)하는 말은 어찌 그리 어리석으며 허탄합니까?

피고 김신원은 염불암(念佛庵)에 머물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형진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자사가 된다는 말을 허탄하다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49 ① '귀신'의 높임말 ② 영묘한 도리 또는 신의 도리.

피고 승 법천과 피고 홍인성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거나 혹은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하기도 했으나 모두 실정(實情)을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조사해 보건대 김형진은 마귀에 접해서 실성한 사람으로 산령(山靈)이 내렸다고 가탁하면서 미친 소리로 대중들 현혹시킨 것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그러나 유기(柳璣)가 고발한 말은 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로 만드는 무고에 관계되고,[50] 백완형이 중요한 말은 삼키고 가벼운 말만 내뱉은 실정은 얼버무려서 의심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형진이 신명(神明)을 모독한 것과 사신(邪神)이 내렸다고 가탁한 것은 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김형진은 『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 설독신명조(褻瀆神明條)의 "무릇 사가(私家)에서 하늘에 고하거나 북두칠성(北斗七星)에 절하여 신명(神明)을 더럽힌 자"에 관한 율과, 동률 동편(同律同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의 "사신(邪神)이 내렸다고 가탁하여 부적을 쓰고 물을 떠 놓고 주문을 외워서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首犯)"에 관한 율을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명례편(名例編)」[51]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피고 백완형은 동률(同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為條)[52]의

50 《大明律集說附例 권7 69장》 무고만 해도 교형이므로 가벼운 죄를 무고하여 무거운 죄로 만들면 역시 교형이다. [但誣告者絞 則誣輕爲重者 亦絞矣]

51 『대명률(大明律)』「명례편(名例編)」: 〈명례〉의 '명(名)'은 오형(五刑)에 상당하는 죄명(罪名)이며, '예(例)'는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 등 육전(六典)의 범례(凡例)이다. 따라서 〈명례〉는 모든 율문의 일반규정을 집대성한 것으로 『대명률』의 첫머리에 배치되어 있으며, 모두 47개 조이다.

"무릇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경우, 사리로 볼 때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笞) 80에 처해야 합니다.

피고 여기전, 김운배, 김신원 등은 동률 동편 동조(동률同編同條)의 "무릇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40에 처하는 게 옳으나, 피고 등이 범행한 바가 6범(六犯) 외이기 때문에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각각 1등급을 감등해야 합니다.

피고 승 법천과 피고 홍인성은 특별한 범죄 행위가 없기 때문에 참작하여 방면하는 게 옳으며, 고발인 유기는 어떻게 처판할지 아울러 이에 질품하오며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올리오니 밝게 조사하여 지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김형진이 마귀에 의지하여 대중을 현혹시킨 것, 백완형이 말을 삼켰다 뱉었다 하면서 옥사를 어지럽힌 것, 여기전, 김운배, 김신원 등이 사술(邪術)을 지나치게 믿은 것 등의 정절(情節)이 이번의 회사(會査)에서 모두 남김없이 드러났는데 그 범행한 바를 규명함에 모두가 지극히 놀랍습니다. 귀 한성재판소에서 논의한 바가 매우 타당하니 모두 원하는 대로 법을 적용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 8월 16일에 "모든 미결수(未決囚)는 판결을 기다려 일체로 또한 1등을 감하라"고 하옵신 성지(聖旨)를 널리 알린 후 각각 1등을 감해야 합니다. 김형진은 태(笞)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백완형은 태 70에 처판하여 풀어 주었고, 여기전, 김운배, 김신원은 각각 태 30에 처판하여 풀어 주고, 승 법천과

52 『대명률(大明律)』「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為條) : '불응위(不應為)'란 사람이 이치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며, 『대명률』은 '불응위'를 행하는 것도 죄로 규정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세상일을 모두 다 율례(律例)에 실을 수 없어서 이 규정을 두어 보충한 것이다.

홍인성은 실정을 참작하여 자취를 규명함에 죄를 줄 만한 단서가 별로 없으니 고발인 유기와 더불어 일체로 석방하고 그 거행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원년 9월 13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한(韓)

한성재판소 판사 서상세(徐相世) 좌하

추신 : 일체의 서류를 반환합니다.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23호

광무 원년 월 일 기안

광무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김창형(金昌炯)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3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 보고서 제25호를 받아 보니, "본 전라남도 관할 하의 광주군(光州郡) 부동방(不動坊) 양림리(楊林里)에 사는 정기우(鄭琪愚)가 건양 원년(1896) 12월에 원장(原狀)을 안고 관찰부 관정(官庭)에 와서 읍소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정순교(鄭洵敎)가 매우 애매하게 범치명(范治明)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살인범의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것입니다. 살인 사건을 심리하는 일은 어렵고 신중해야 하므로 동복군수(同福郡守) 최준상(崔俊相)을 특별히 사관(査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복군수가 해당 사건의 초검(初檢) 및 복검(覆檢)의 원안(原案)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웃들이 증언한 진술들을 다시 샅샅이 조사한 결과를 성안(成案)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관찰부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상호 참조하고 인범(因犯)을 집정(執定)하여 이치를 따져서 알린 지령에, '이를 조사하니, 사건에 의혹이 있으니 비록 열 번이라도 조사하여 반드시 사실을 파헤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범피고(正犯被告)는 우선 논하지 말고, 고주(苦主)가 범인으로 지목하는 자는 바로 딱 한 사람 정순교인데 오랜 동안 법망을 피해 달아나서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특별히 더욱더 기찰하고 탐문하여 체포하는 대로 즉각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 유사한 것을 명목에 바꿔 넣으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어찌 흠결이 없겠습니까? 수감되어 있는 정기우는 풀어주고 그 아들 정순교를 특별히 더욱더 기찰하고 탐문하기 바랍니다.'라고 해당 광주군에 훈칙(訓飭)하여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일에 정기우의 소장을 받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옥사(獄事)는 사람 목숨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남에게 피살되었다고 잘못 알려지고 산 자는 억울하게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면

비록 이승과 저승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찌 죽은 자와 산 자가 주륙(誅戮)하는 이치가 없겠습니까? 범치명이 갑오년(甲午年, 1894) 12월 일에 조포(租苞) 문제로 비괴(匪魁) 백반석(白半石)의 진술에서 흘러나와서 관가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범치명은 10여 년 동안 저희 집 논의 마름[舍音]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달 16일 해질 무렵에 저의 아들 정순교를 찾아왔습니다. 이날 정순교는 군수 책실(册室)의 생일 잔치에 가서 부재 중이라 범치명은 저에게 백반석이 빼앗긴 조포를 도와줄 문제, 관가에 체포된 내력, 무사하게 주선해 달라는 사안 등 몇 마디를 부탁한 뒤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범씨들 30여 명이 범치명의 시신을 둘러메고 정순교를 지목하여 관아에 발고(發告)하였습니다.

검험(檢驗)할 때 시신에 아무런 상흔이 없었던 점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고 하늘의 태양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관(檢官)이 형리(刑吏)들에게 분부하며 「이같이 실질적 증거가 없는 사건을 어찌 성안(成案)한단 말인가? 한번의 보고로 결단할 수 있는가?」 운운한 것을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또 이웃들의 증언에 진술된 것을 보더라도, 범치명이 해질 무렵에 저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정순교를 만나지 못하고 저와 더불어 잠시 이야기한 뒤 돌아간 상황은 증언이 분명합니다. 범치명이 그날 밤에 술에 취해 서문 밖 냇가에 거꾸러져 있는 것을 수성군(守城軍) 송순지(宋巡之), 조영중(趙永仲)이 돌아오는 길에 똑똑히 보고서 그 아들 범현식(范玄植)을 찾아 촌점(村店)으로 업고 들어가 구호했으나 소생시키지 못한 사실은 진술 내용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구타를 당했다는 무함은 허망한 결론으로 귀착되고 범치명의 죽음이 정순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저절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가서는 절린(切隣)인 김판복(金判卜)과 이춘화(李春化)

에게 형(刑)을 시행하며 억지로 문초하여, '구타를 당하여 죽음'으로 논하고 '정범(正犯)'으로 단정지어 갑자기 옥안(獄案)을 뒤집어 이같이 천만으로 애매한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악명(惡名)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금석(金石)은 갈아 없앨 수 있으나 이 악명은 없앨 수 없습니다. 천신(天神)이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추후의 복검(覆檢)이 한결같이 초안(初案)과 같게 되어,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저렇게 공정하지 않은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극도의 원통함을 여섯 차례나 전주감영에 호소했으나 아직까지도 다시 심사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는 조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부에 호소하니 제사(題辭)를 내려 주었고 그것을 수령하러 내려왔습니다. 저의 아들 정순교가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악명을 벗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저와 범치명이 이미 접촉하여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죄로 범치명 사건에 연루된다면 혹은 원통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범치명과 정순교가 피차간에 풀어 주기 어려운 악명을 갖게 된 것을 보지 않는다면, 비록 범치명의 귀신이라도 유죄(有罪)요, 정순교의 귀신이라도 유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법부의 제사를 곧바로 전주부(全州府)에 바쳐서, 광주군에서 심사하고 또 나주부(羅州府)에서 재판하여 범치명의 아들 범민식과 초검, 복검의 형리들과 3자 대질한 후 앞뒤의 정절(情節)을 다시 샅샅이 조사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에서 또 훈령하기를, 나주부에서 광주군으로 다시 조사하라는 훈령을 보내어 당시의 중요한 증인들에게 직접 진술을 받아서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안(斷案)을 받지 못하자, 병신년(丙申年, 1896) 9월 일에 다시 관찰부에 원통함을 호소했더니, 동복군수를 사관(査官)으로 정하여 사건 당시 질문에 응했던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 하나 조사하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범가의 식주인(食主人) 전철문(全哲

文)의 진술 내용에, 그날 밤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범치명의 시신을 왜 우리 집에 메고 왔느냐? 즉시 퇴송(退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치명의 아들이 말한 이른바 「살아나서 유언을 남겼다」는 말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원(醫員) 천성재(千成在)가 진술한 내용에, 12월 26일 밤에 범덕중(范德仲)이 '길을 가다가 협체(挾滯)[53]한 사람이 있으니 급히 약을 써야 한다.'고 하기에 소합환(蘇合丸)을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치명이 비괴 백반석의 진술에서 나온 일로 체포되어 읍에 들어가자 겁을 먹어 기(氣)가 막혔음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보고서 중 「구타 당했다.」는 것이 무함(誣陷)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에 송사를 결단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천만으로 울며 호소하였습니다.

법부에서 내려온 지령을 보니, 「정범피고(正犯被告)를 논할 것 없이 정기우는 풀어 주고 정순교를 기찰하고 정탐하여 붙잡는 대로 보고하라.」고 처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순교가 검험 전에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증인들을 윽박질러 만들어낸 진술서로 성안(成案)하여 인범(因犯)으로 잘못 지목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이렇듯 원통함을 품고서 도망친 것입니다. 사건 당일에 정순교가 책실의 생일 잔치에 하루 종일 참석하였으며 밤에도 돌아오지 않은 사실은 삼반관속(三班官屬)들이 모두 목격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범(正犯)으로 지목받은 것을 발명(發明)하여 벗어나려면 필경 그 당시에 범치명과 접촉하여 말을 나누었던 그 아비에게 피고라는 이름을 귀착시키게 됩니다. 부자지간에 죄명(罪名)을 서로 덧씌우는 경우에 그가 악명(惡名)을 입더라도 지극히 원통합니다. 다시 심리(審理)하여 상부에

53 협체(挾滯) : 체증(滯症)과 아울러 다른 병(病)이 겹쳐서 생기는 증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고하여 악명을 벗어던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순교가 범치명 사건을 뒤집어쓴 것에 대해 그의 아비 정기우가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일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검안(檢案)을 다시 살펴보면 이 옥사는 의심스러운 사건인데 그 의심을 깨뜨릴 한 가지 단서가 있으니, 이 단서를 잡고서 규명해 보면 인범(因犯)을 억단(臆斷)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순교가 당일에 책실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밤중까지 돌아오지 않은 점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범치명이 술에 취해 서천(西川)에 거꾸러져서 냉기에 접촉된 후 업혀 온 점은 송순지, 조영중의 증언에 명확하고, 사망한 지 이미 오래된 범치명의 시신을 다시 물리쳐 보낸 점은 식당 주인 전철문이 진실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치명의 아들 범민식이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 유언을 남겼다.'는 말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고주(苦主)가 정순교를 지목한 것은 비록 긴절(緊切)하나 무릇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찌 고주의 말에 따라 편파적으로 사건을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그 죽고 사는 문제의 상황에서 유감이 없어야 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불행이나 과오로 인한 죄는 용서해 주고[54]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범치명이 정순교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이 없었는데, 범치명의 아들이 그 아비의 유언이라고 가탁하여 정순교를 지목함으로써 정범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단정된 후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갑작스레 도망쳤으니 그를 탐문하여 붙잡아야 하는 것은 법에

54 우형(虞刑) : 순임금 시기의 형벌을 말한다.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불행이나 과오로 생긴 죄는 놓아주고 용서했다.〔眚災肆赦〕"라고 하였다.

있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 호소한 바를 보면 부자지간에 죄명을 서로 덧씌울 수는 없어서 사세 부득이하게 도망친 것이라 하니, 인륜을 따져 봄에 그 실정이 용서할 만하기도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건에 살리는 은전(恩典)을 시행할 것을 논의하다 보니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여 결국 억울한 호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는 부득불 법부에서 명확하게 조사하여 재판하신 연후에야 원통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드리오니, 밝게 조사하여 원고와 피고를 대질 조사하여 판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하니, 사망한 자가 술에 만취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점은 지금 보고하는 내용에 토대해 볼 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인범(因犯)을 확정하여 지목할 때 어찌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지하여 판단하겠습니까? 귀 재판소에서 법률 적용을 논의한 바가 매우 타당하니 정순교를 추적하여 탐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원년 9월 17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한(韓)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윤웅렬(尹雄烈) 각하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78호

광무 원년 11월 10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이용성(李容成)

형사국장

형사과장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78호

귀 충청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49호를 받아 보니, "훈령을 받들어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징역죄수 중 6범(六犯) 외의 범인들에게 성지(聖旨)를 널리 알린 뒤 모두 풀어 주고, 성명 책자를 먼저 작성하여 올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그동안의 훈칙(訓飭)이 얼마나 준엄했는데 지금 이렇게 죄수들을 풀어 주는 데에 전혀 조심하고 삼가지 않아서 6범 이내의 범인들이 방면한 죄수 명단에 혼입되었으니, 그 거행에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살피지 않은 책임은 장차 논경(論警)할 예정인데, 먼저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에 나열한 범인들을 다시 수감하여 징역을 살게 한 후 그 결과를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굴죄인(私掘罪人) 이우일(李友日)의 경우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애초에 이러한 범죄가 없었고, 다만 전곡(錢穀)을 토색한 죄인 이우일(李友一)이 있으니 이름은 비록 비슷하나 죄는 각각 같지 않습니다. 해당 이우일(李友日)을 즉각 다시 수감하고 곡절을 상세히 조사하여 신속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원년 11월 일

의정부 찬정 외부대신 임시서리 법부대신 조(趙)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이건하(李乾夏) 각하

아래[左開]

유치배(柳致培) 비요(匪擾)에 종범죄(從犯罪)

서석여(徐石汝) 동학죄(東學罪)

김시묵(金時默) 동학죄(東學罪)

정재하(鄭在河) 비요죄(匪擾罪)

김선재(金善在) 남의 집을 때려 부수는 데 수종(隨從)한 준절도죄(准窃盜罪)

안성수(安聖秀) 전곡(錢穀)을 토색하는 데 종범죄(從犯罪)

정완돌(鄭完乭) 공해(公廨)를 몰래 팔아먹은 죄

이우일(李友日) 다시 조사하기 위해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1호

광무 2년(光武二年, 1898) 2월 5일 기안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호

귀 질품서(質稟書) 제29호를 받아 보고 귀 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는 진안

군(鎭安郡) 두미면(斗尾面) 가림리(佳林里)에서 사망한 남자 전내삼(全乃三) 사건을 조사한 문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내삼(全乃三)의 5촌 조카가 일찍이 동비(東匪)에 들어가 주변 읍의 말들을 끌어왔었는데 그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茂朱郡)에 사는 이경장(李敬長)이 노새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이웃에 사는 박성삼(朴成三), 변약금(卞若金) 등으로 하여금 전내삼에게 와서 노새를 내놓으라고 독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내삼이 관아에 고하여 변명(卞明)하였으나 이경장이 또다시 박성삼, 변약금 두 사람을 보내어 노새값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내삼이 25냥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박성삼과 변약금 두 범인은 5냥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전내삼은 더 마련해줄 생각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려 하다가 결국 빌리지 못하게 되자 칡넝쿨 새끼줄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죽음이 비록 허망하나 이경장이 관아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함부로 침탈하다가 이같이 인명(人命)이 스스로 죽게 한 것이 지극히 악랄하니 기필코 사실을 파헤쳐 정죄(定罪)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성삼, 변약금은 이경장의 지시를 따라서 멋대로 악독하게 재물을 토색하다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자신으로 말미암은 형률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삼은 『대명률(大明律)』「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 "무릇 일로 인하여 사람을 위협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笞) 100에 처판하여 풀어 주되, 매장은(埋葬銀)[55] 10냥을 추징하여 희생자의 친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도망한 변약금은 기한을 분명히 정해서

55 매장은(埋葬銀) : 살인(殺人)을 저질렀을 때 죽은 사람의 장례비(葬禮費)를 살인자에게 징수하던 은(銀)을 말한다.

탐문하고 체포하여서 동일한 율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2년 2월 5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이(李)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윤창섭(尹昌燮) 각하

충청북도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0호

광무 2년 3월 4일 기안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충청북도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0호

귀 충청북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6호를 받아 보니, "제3호 훈령을 받들어 징역죄수들의 성명과 죄명 및 형기(刑期)를 상세하게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연이어 받은 문의군(文義郡) 이정영(李正永)의 소장(訴狀)을 보니, "형 이정도(李正道)가 1895년 10월경에 애매한 일로 징역 2년형에 처해졌고 형기는 지난 9월인데 아직까지 석방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징역죄수 엄삼윤(嚴三允), 방종석(方宗石), 김복원(金卜元), 김수근(金水根), 박삼철(朴三哲), 김재원(金在元) 등은 저지른 범죄가 박과(縛寡, 과부 보쌈)인데 이는 6범 이내이기 때문에 우선 풀어줄 수는 없으나 마땅히 감등(減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두상(吳斗相), 이정도(李正道)의 경우 징역 형기가 이미 만기가 되었는데 어찌 석방하지 않아서 이러한 분소(奔訴)에 이르게 되었는지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오두상, 이정도를 속히 풀어 준 후 즉시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3월 4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이(李)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박제억(朴齊億) 각하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6호

광무 2년 3월 29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6호

귀 황해도 재판소 제30호 보고서를 받아 보니, "법부 제12호 훈령을 받들어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에서 본 황해도 토산군(兎山郡)에 정배(定配)된 죄인 이종태(李鍾泰) 사건에 대해 부(府)에 올린 배안(配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종태는 초비(剿匪)를 칭탁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토색한 죄로 1895년 7월 19일에 유배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바로 그 시기에 마침 영속(營屬)들이 바야흐로 해이하고 관찰부의 업무가 안정되지 못하여 유배지에 도착한 상황을 애초에 작성하여 보고하지 못한 것 같고 배문(配文)[56]도 잃어버렸고 남아 있는 것은 다만 배안(配案) 1책뿐입니다. 이 사건이 재물을 토색한 것이라 6범에 가까운 범죄이므로 과연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 이종태가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는 애초에 보고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10월 28일에 본 법부대신이 배안(配案)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종태의 범죄가 비록 6범이긴 하지만 신식(新式) 이전의 범죄인들을 성은(聖恩)의 아래에 상주하여 특별히 아울러서 풀어 주라는 성지(聖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종태만 홀로 사전(赦典)에서 누락되었으니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군(郡)에 신칙하여 성지를 널리 알린 후 풀어 주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56 배문(配文) : 죄인(罪人)을 유배(流配)할 적에 형조(刑曹)에서 유배(流配)할 곳의 관아(官衙)에 보내는 통지(通知).

광무 2년 3월 29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이(李)

황해도 재판소 판사 김가진(金嘉鎭) 각하

인천항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1호

광무 2년 3월 29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인천항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1호

귀 인천항 재판소 보고서 제3호를 받아 보니, "어제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무렵에 본 인천항 재판소 경무관 유한익(劉漢翼)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오늘 낮 12시에 당직(當直) 권임순검(權任巡檢) 태정진(泰貞鎭), 임재호(任在鎬)와 감옥(監獄) 간수 순검(看守巡檢) 오기환(吳基煥), 황세영(黃世永)이 보고한 내용에, 「수감되어 있는 징역죄인 조덕근(曺德根), 양봉구(梁鳳九), 황순용(黃順用), 강백석(姜伯石)과 일본인을 찔러 죽이고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인 김창수(金昌洙)가 감옥을 뚫고 담장을 넘어 모두 도망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즉각 순검(巡檢)들과

인천항 아래의 마을들과 선박들을 하나하나 탐문하였으나 현재 종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수륙(水陸)에 순검들을 나누어 파견하여 기필코 탐문하여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 권임순검 태정진, 임재호와 감옥 간수순검 오기환, 황세영과 감옥 압뢰(押牢) 김춘화(金春化)를 모두 체포하여 수감하였습니다. 기필코 탐문하여 체포할 것이나 아직 드러난 자취가 없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헤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감옥서(監獄署)에 수감 중인 죄인들을 많이 놓쳤다는 게 듣기에 매우 놀랍고 의아스러우며, 또한 해당 범인들이 6범에 관계되고 그중 김창수(金昌洙)는 진술한 바가 중대하며 외국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아직까지 재결(裁決)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경무관 유한익에게 특별히 더욱 엄칙(嚴飭)하여 사찰하여 모두 잡게 하라고 했으나 해당 감옥서장, 당직 순검 등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경책(警責)은 본 판사가 결코 처단(處斷)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헤아려 처리하여 지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들이 감옥을 넘어서 도망하였다는 게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도망 중인 놈들을 기한을 정해 탐문하여 체포하되 만약 100일 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귀 판사, 해당 경무관, 감옥서장을 장차 논경(論警)할 것이니 십분 두렵게 생각하여 혹시라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간수 순검 오기환, 황세영은 감옥에서 근무하는 직책인데 이러한 실착(失錯)이 있었고, 감옥 압뢰 김춘화는 몸소 옥졸이 되어 있으면서 죄수들이 도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놀랍습니다. 해당 범인들은 모두 엄히 수감해야 합니다. 당직 순검 태정진, 임재호는 감독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책임져야 할 일은 없으니 엄히 징계하고

풀어 주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3월 29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이(李)

인천재판소 판사 서상교(徐相喬) 좌하

경기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11호

광무 2년 5월 4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경기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1호

귀 경기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 제1호를 받아 보니, 그 내용에 "한성재판소 검사 함태영(咸台永)의 제1호 조회를 받아 보니, 법부 훈령 제14호를 받들어 감옥서(監獄署)에 수감된 이상옥(李尙玉), 신명우(申明雨), 김정업(金正業), 김낙철(金洛哲), 권성좌(權聖佐) 등에 대해 일체로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갑오(甲午, 1894년) 이전에는 동학(東學)에 오염된 적이 있었으나 조정의 토벌을 받은 후로는 동학을 등지고 농사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개 이들의 거괴(巨魁)는 최

시형(崔時衡),[57] 김치구(金致九) 두 놈인데 도망 중이라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고, 현재의 이 범인들은 모두 억지로 동학을 행한 것이지 사실 기꺼이 따랐던 것이 아닐 뿐더러 또 이미 지난 일이고 현재 다시 미혹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치는 것이 귀중하다.'[58]는 말과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말라.'[59]는 말을 특별히 좇아, 신칙하여 타일러서 풀어 주어 각각 귀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공안(供案)[60]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처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들이 이미 귀화(歸化)하였으니 '억지로 행했다'든가 '기꺼이 따랐다'든가 하는 말을 지금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귀 경기도 재판소에서 생업에 안주하도

57 최시형(崔時亨)을 말한다.

58 '고치는 것이 귀중하다(改之爲貴)' : 《논어》〈자한(子罕)〉에 "바른 소리로 일러 주는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뒤에 잘못을 고치는 것이 귀중하다. 완곡하게 이끌어 주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뒤에 그 말을 추슬러 보는 것이 귀중하다. 좋아하기만 하고 추슬러 보지 않거나 따르기만 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法語之言 能無從乎 改之爲貴 巽與之言 能無說乎 繹之爲貴 說而不繹 從而不改 吾末如之何也已矣]"라는 공자의 말이 보인다.

59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말라(脅從罔治)' : 《서경(書經)》〈윤정(胤征)〉에 "괴수는 섬멸하되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말라[殲厥渠魁 脅從罔治]"라는 내용이 보인다.

60 공안(供案) : 조선시대 때 죄인(罪人)을 문초(問招)한 내용(內容)을 적어둔 문안(文案)이다. 형사사건에서 죄인·증인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를 통틀어 공초(供招)라 하였는데, 이 공초에 의해서 공안을 작성하였다. 공초에는 취초(取招)·봉초(捧招)·갱초(更招)·직초(直招)·공사(供辭:초사)가 있는데, 죄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며 이에 따라 확정판결문인 결안(結案)이 작성되고 형이 집행된다.

록 신중히 권장하는 뜻으로 특별히 신칙한 후 모두 풀어 주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2년 5월 4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이(李)

경기재판소 판사 김영덕(金永悳) 각하

경기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35호

광무 2년 7월 8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경기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5호

귀 경기재판소의 제15호 질품서(質稟書)를 받아 보니, "양성군(陽城郡) 노곡(老谷)에 사는 홍병섭(洪秉燮)은 동학(東學)의 남은 무리로서 다시 의병(義兵)에 들어갔다가 의병이 귀화하자 또 다시 야소교(耶蘇敎)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용인(龍仁)에 사는 교두(敎頭) 김준희(金俊熙)와 더불어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불의(不義)를 자행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양성과 용인 두 군(郡)의 주민들이 그 피해를 혹심하게 받아서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김준희는 그 사이에 이미 징역을 살았으나 홍병섭은 아직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여 항상 체포하여 징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치가 밝아져 죄인들이 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인지 홍병섭이 김준희의 행패 정절(情節)을 대신 진술하여 발명(發明)하겠다고 사실을 조사하는 곳에 와서 자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홍병섭을 붙잡아 가두고 그 행적을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진술한 내용이 소문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야소교인을 빙자하여 평민들을 침학하고 돈과 재산을 약탈한 짓이 예전 동학이나 의병 때에 작폐하던 짓보다 더 심하여, 양성군 노곡에 사는 이보경(李寶京)의 답토(畓土) 15두락과 농우(農牛) 1마리를 빼앗은 그동안의 사건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호하고 폭력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패악한 무리들은 실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조(禁制條)의 "시골에서 세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침학함"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이에 질품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지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홍병섭이 야소교를 빙자하여 패악을 저지른 죄는 비록 통탄스럽지만, 이미 수범(首犯) 김준희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니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의 구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범인 홍병섭은 『대명률(大明律)』「명례편(名例編)」의 "수종(隨從)은 1등을 감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김준희에 적용한 본율(本律)에서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2년 7월 8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조(趙)

경기재판소 판사 김영덕(金永悳) 각하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33호

광무 2년 7월 12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3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의 제14호 보고서를 받아 보니, "부(府)에서 특별히 순검(巡檢)을 파송하여 정읍(井邑), 태인(泰仁) 등지에서 비류(匪類) 10명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절(情節)을 엄하게 샅샅이 파악하여 공초(供招)를 올려보냅니다. 지금 이 열 놈들 중 김형순(金亨淳)은 비괴(匪魁)로 인명(人命)을 함부로 해치고 돈과 재물을 약탈하는 등 허다하게 행패 부리는 짓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에 이미 법망을 빠져나갔었는데, 지금 또 범죄의 자취가 드러났으니 그야말로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록 무리를 일으킬 소굴이 있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더러움에 물든 사설(邪說)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꾸며 속였으니, 이와 같은 부류들은 잠시라도 살려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율을 시행하여 경책하고 격려하는 것은 오직 법부의 처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심도풍(沈道豊), 임몽기(林蒙基), 조진옥(趙辰玉), 강도련(姜道連)은 모두 갑오년 동학의 여당(餘黨)들로 속으

로 사악한 뜻을 품고 여전히 수상한 자취를 밟아서 결국 사람들의 지목을 받아 이렇게 수색하여 붙잡았으니, 그들이 저지른 바를 규명해 보건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내형(李乃亨), 김재원(金在元), 조대집(趙大集), 한용기(韓用基), 최동골(崔同骨)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 숨긴 것을 잡아낼 만한 것이 없으니 억지로 죄명을 덧씌울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19호 보고서에서는 "비류 10명의 공초(供招)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 10명 중 거괴(巨魁) 김형순(金亨淳)은 예전에 이미 법망을 빠져나갔다가 지금 겨우 체포하였으니 만약 그놈이 살기를 추구하더라도 절대로 살려 둘 수 없습니다. 조진옥(趙辰玉)은 김형순의 와주(窩主)가 되었는데, 동학 관련 문서를 그놈에게서 찾아냈으므로 어찌 감히 '무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도풍(沈道豊)은 거짓으로 꾸며 대는 말들을 달게 받아들여서 '그 도(道)를 닦으면 재앙과 질병이 없다'고 하며 부적을 받아 주문을 외웠으니, 비류로 지목되는 것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임몽기(林蒙基), 강도련(姜道連), 이내형(李乃亨), 김재원(金在元), 조대집(趙大集), 한용기(韓用基), 최동골(崔同骨) 등 일곱 놈의 경우 3개월 동안 가두어놓고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 숨긴 것을 잡아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죄명을 더해서는 안 되겠으나, 회답지령이 내려오기 전에 죄인들을 부(府)에서 함부로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암행어사가 있는 곳에서 기찰하여 체포해 온 자들의 경우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로 눈을 흘기면서 각자 남들을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서 안도(安堵)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적으로 체포했다는 유언비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미 귀화한 백성들로 하여금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나 않을까 한탄하게 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권경(權經)의 기술을 적절히 써야 하므로,[61] 수감된 죄수 중 김형순, 조진옥, 심도풍은 엄히 목에 칼을 씌워 가두고, 그 나머지 임몽기, 강도련, 이내형, 김재원, 조대집, 한용기, 최동골 일곱 놈은 부정(府庭)에서 엄히 징계하고 밝게 타일러서 생업으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모두 풀어 주었습니다. 이미 보고한 죄인들을 회답지령이 내려오기 전에 석방을 천단(擅斷)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연유를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32호 보고서에서는 "총순(總巡) 신광희(申光熙)의 보고에, 수감된 죄수 김형순에게 진술을 받은 후 격식을 갖춰 가두었는데, 해당 범인이 사람들이 조용한 밤을 틈타 가추(枷杻)를 열어 빼내고 목에 씌운 칼을 부수고 차꼬 자물쇠를 절단한 뒤 벽을 뚫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34호 보고서에서는 "총순 신광희의 보고에, '본 감옥에 수감된 비류죄인 심도풍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기에, 관례에 따라 검험(檢驗)하게 하였더니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확실하므로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김형순은 법을 무릅쓰고 행패를 저지른 것에 대해 그가 스스로 자복(自服)하였고 또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몸소 먼저 도망하였으니 지극히 통탄스러우니 계속해서 기찰하고 탐문해야 합니다. 심도풍은 저지른 정절이 김형순과 똑같은데 미처 법의 처벌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으니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조진옥은 공안(供案)을 조사하여 살펴보니 죄가 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책자(冊子)를 찾아낸 문제의 경우

61 원문은 "宜用權經之術"이다. 권경(權經)의 경은 일정불변(一定不變)의 상리(常理)를 말하고, 권은 임기응변의 처리를 말한 것으로, 일의 처리를 때에 따라 사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는 바로 김형순이 맡겨놓은 것이라 하므로 이내형 등과는 마땅히 달라야 합니다. 조신하고 행동을 삼가서 죄에 빠지지 말라는 뜻으로 특별히 밝게 신칙해서 풀어 주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7월 12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조(趙)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73호

광무 2년 7월 19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73호

귀 고등재판소의 제12호 질품서(質稟書)를 받아 보니, 본 고등재판소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피고 최시형(崔時亨), 피고 황만기(黃萬己), 피고 박윤대(朴允大), 피고 송일회(宋一會)의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최시형은 병인년(丙寅年, 1866)에 간성(杆城)에 사는 필묵상(筆墨商) 박춘배(朴春瑞)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른바 동학(東學)을 전수받아서,

선도(善道)로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주문(呪文)으로 신(神)을 내리게 한다고 칭하면서 여러 군(郡)과 도(道)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라는 13글자로 된 주문,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為大降)"이라는 8글자의 강신문(降神文), 그리고 동학원문(東學原文)의 제1편 포덕문(布德文), 제2편 동학론(東學論), 제3편 수덕문(修德文), 제4편 불연기연문(不然其然文), 궁궁을을(弓弓乙乙)의 부적으로 인민을 선동하여 미혹하게 하고 도당(徒黨)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형벌을 받아 죽은 최제우(崔濟愚)가 지은 "만년 묵은 가지 위에 꽃이 피어 천 떨기요, 사해의 구름 가운데 달 솟으니 한 개의 거울일세(萬年枝上花千朶 四海雲中月一鑑)"라는 시구를 높이 사모하며 법형(法兄), 법제(法弟)라는 호칭의 높임을 따라 법헌(法軒)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월(海月)이라는 인장을 새겨서 교장(敎長), 교수(敎授), 집강(執綱), 도집(都執), 대정(大正), 중정(中正) 등의 두목들을 각 지방에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포(包)와 장(帳)이라는 회소(會所)를 설치하여 무리를 모은 것이 1,000만으로 헤아릴 정도였습니다.

법의 처벌을 받은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어 준다고 하며 지난 계사년(癸巳年, 1893)에 그 신도 수천 명을 데리고 대궐 문앞에 나아가 집단으로 상소하였다가 곧 해산하였습니다. 또 보은(報恩)의 장내(帳內)에 많은 무리를 모았다가 순무사(巡撫使)의 선유(宣諭)를 받아 각자 해산하였습니다. 갑오년 봄에 이르러 피고의 도당(徒黨)인 전봉준(全琫準)이 고부(古阜) 지방에서 같은 패거리들을 불러모아 기미를 틈타 세찬 바람처럼 일어나서 관리들을 살해하고 성진(城鎭)을 함락시켜 충청도와 전라도 두 지역이 썩어 문드러져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사주하거나 호응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소란 전반의 단계와 재앙의 근원을 궁구해

보면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대중들을 미혹시킨 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피고 황만기(黃萬己)는 지난 갑오년 5월에 동학 무리 임학선(林學善)의 협박을 받아 동학에 입도하였다가 곧바로 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1897년) 7월에 또다시 임학선의 말을 듣고서, 도(道)를 숭상하는 입장에서 대종선생(大宗先生, 최시형)을 의리상 만나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도망 중인 최시형을 방문하여 만나 생선을 바쳤습니다.

피고 송일회(宋一會)는 갑오년 4월에 동학에 투탁하여 들어가서, 최시형이 청산(靑山) 지방에 있을 때 한 차례 방문하여 만나 보았습니다. 그 후 금년(1898년) 정월에 이르러 친하게 지내는 동학 무리 박윤대(朴允大)로부터 최시형이 이천(利川) 지방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옥천(沃川) 사람 박가(朴哥)가 있는 곳에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경무청(警務廳) 관리에게 체포되어 박윤대와 함께 동행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원주(原州) 지방으로 가서 최시형을 포획하였습니다.

피고 박윤대는 동학에 투탁하여 들어가서 최시형의 사위 김치구(金致九)의 집에서 고용살이하다가 경무청 관리에게 체포되어 송일회와 함께 길잡이 역할을 하여 원주 지방에서 최시형을 포획한 후 이 때문에 석방되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친하게 지내는 동학 무리 박치경(朴致景)을 우연히 만났는데, 박치경의 부탁을 받고 엽전(葉錢) 20냥을 휴대하고서 서울에 가서 최시형의 식비를 도와주려고 경무청에 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에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최시형은『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首犯)"에 관한 율로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피고 황만기, 박윤대, 송일회는 「동편(同編)」 동조(同條)의 "종범(從犯)이 된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할 만합니다. 그러나 피고 송일회, 박윤대는 최시형을 포획할 당시 길잡이를 한 공로가 없지 않으니 마땅히 감등할 만합니다. 아울러서 이에 질품하오며 일체의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올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최시형은 죄악이 가득 찼으니 잠시라도 용서할 수 없으므로 원의율(原擬律)[62]에 따라 선고한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황만기는 임학선의 지시를 기꺼이 받아서 동학을 숭상하겠다는 뜻으로 최시형을 방문하여 만나봤으니 수종에 관한 율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이 죄인도 원의율에 따라 처판하기 바랍니다. 박윤대, 송일회도 수종에 관한 율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나 최시형을 포획할 때 길잡이를 했던 공로가 있으니 귀 고등재판소에서 논의한 감등이 진실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박윤대는 최시형에게 식비를 제공하려 한 행동거지가 지극히 놀라우니 원의율에서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고, 송일회는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2년 7월 19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조(趙)

고등재판소 판사 주석면(朱錫冕) 각하

추신 : 일제의 서류를 반환합니다.

62 고등재판소에서 법 적용에 관하여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말한다.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74호

광무 2년 7월 19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74호

귀 고등재판소 제33호 보고서를 받아 보니, “법부 제73호 지령을 받들어 피고 최시형(崔時亨)을 『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킨 수범(首犯)”에 관한 율로 교수형에 처함으로 선고하고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피고 최시형을 원의율(原擬律)에 따라 교수형에 처하는 뜻으로 오늘 상주(上奏)하였더니, 동일(同日) 상주한 대로 처리하라는 성지(聖旨)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최시형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7월 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조(趙)

고등재판소 판사 주석면(朱錫冕) 각하

문건을 상주하는 건 / 안(案) 223호

광무 2년 7월 18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형사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문건을 상주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223호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신(臣) 조○○(趙○○)은 삼가 상주합니다. 지금 고등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를 받아 보니, "본 고등재판소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피고 최시형(崔時亨)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 최시형이 진술한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시형은) 병인년(丙寅年, 1866) 무렵에 간성(杆城)에 사는 필묵상(筆墨商) 박춘서(朴春瑞)로부터 동학(東學)을 전수받아 선도(善道)로 병을 치료하고 주문(呪文)으로 신(神)을 내리게 한다며 여러 군(郡)과 도(道)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라는 13글자로 된 주문,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為大

降)"이라는 8글자의 강신문(降神文), 그리고 동학원문(東學原文)의 제1편 포덕문(布德文), 제2편 동학론(東學論), 제3편 수덕문(修德文), 제4편 불연기연문(不然其然文)과 궁궁을을(弓弓乙乙)의 부적으로 인민을 선동하여 미혹하게 하고 도당(徒黨)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형벌을 받아 죽은 최제우(崔濟愚)가 지은 "만년 묵은 가지 위에 꽃이 피어 천 떨기요, 사해의 구름 가운데 달 솟으니 한 개의 거울일세(萬年枝上花千朶 四海雲中月一鑑)"라는 시구를 높이 사모하며 법형(法兄), 법제(法弟)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 법헌(法軒)이라는 호칭을 고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해월(海月)이라는 인장을 새겨서 교장(敎長), 교수(敎授), 집강(執綱), 도집(都執), 대정(大正), 중정(中正) 등의 두목들을 각 지방에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포(包)와 장(帳)이라는 회소(會所)를 설치하여 무리를 모은 것이 1,000만으로 헤아릴 정도였습니다.

법의 처벌을 받은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어 준다고 하며 지난 계사년(癸巳年, 1893)에 그 신도 수천 명을 데리고 대궐 문 앞에 나아가 집단으로 상소하였다가 곧 해산하였습니다. 또 보은(報恩)의 장내(帳內)에 많은 무리를 모았다가 순무사(巡撫使)의 선유(宣諭)를 받아 각자 해산하였습니다. 갑오년 봄에 이르러 피고의 도당(徒黨)인 전봉준(全琫準)이 고부(古阜) 지방에서 같은 패거리들을 불러모아 기미를 틈타 세찬 바람처럼 일어나서 관리들을 살해하고 성진(城鎭)을 함락시켜 충청도와 전라도 두 지역이 썩어 문드러져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사주하거나 호응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소란 전반의 단계와 재앙의 근원을 궁구해 보면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대중들을 미혹시킨 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피고 최시형은『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

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首犯)"에 관한 율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최시형을 원의율(原擬律)에 따라 처판하겠다는 뜻으로 삼가 아룁니다.

광무 2년 7월 18일 성지를 받듭니다.

신(臣) 조(趙)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58호

광무 2년 8월 23일 기안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형사과 주임 정제현(鄭濟賢)
	형사국장	
	형사과장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8호

귀 충청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90호를 받아 보니, "본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죄인 서창길(徐昌吉)의 보인(保人) 송병근(宋秉根)과 유한표(劉漢表)의 보인 정의중(鄭宜中)에 대하여, 고종(故縱)의 이유를 샅샅이 따져 조사하여 하루빨리 관아에 출두하도록 독촉케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고 한 제47호 훈령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서창길은 그 사이에 이미 스스로 출두하였기 때문에 우선 진술서를 받았고 송병근은 징계하고 풀어 준 연유를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정의중의 경우 유한표를 기한을 정해놓고 출두를 독촉하라고 한 게 여러 번이었으나 끝내 붙잡아 바치지 않았을 뿐더러 또 2가지의 죄가 함께 발각되었습니다.

관찰부 아래의 군옥(郡獄)은 예전 감영(監營) 시절부터 감영의 죄수와 읍(邑)의 죄수를 섞어서 수용하고 군에서 형쇄(刑鎖)[63]를 두어 감독하고 지키게 했었는데, 관찰부를 설치한 후에도 감옥서(監獄署)와 군옥(郡獄) 두 곳을 혼용하였고 군의 형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건양 원년(1896) 11월에 보고하여 아직 미결 상태인 직산군(稷山郡)의 살옥죄인(殺獄罪人) 한기주(韓基周)는 바로 도적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여 심판(審辦)하기 위해 전 판사(前判事) 재임 시에 압송해 올려서 진술을 받고 공주군 감옥(公州郡獄)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감옥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병세가 위독해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 죄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던 중에 지레 죽을 우려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하여 전 판사 재임 시에 보석을 청하여 질병 치료를 허락받았는데 질병을 조리한 후에 즉각 돌아와 수감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현임 판사가 도임한 초기에 죄수들을 점열(點閱)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태의 실정이 탄로났습니다. 현 판사가 도임하기 전에 도망갔기 때문에 먼저 엄히 징치하고 범인이 출두하도록 연달아 독촉하였고, 분명하게 붙잡아 바치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해 준 게 몇 차례나 지나 지금에

63 형쇄(刑鎖) : 옥사쟁이

이르렀습니다.

죄수를 한 사람만 잃어버리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운데 두 죄수가 모두 도망간 것은 그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보석을 허가한 것은 혹시 그놈이 지레 죽을까 봐 염려해서인지요? 추후에 도망한 것은 반드시 대신 벌을 받는 자가 있어야 훗날의 폐단을 막고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정의중을 엄히 가두고 장(杖)을 치며 심문했더니 진술하기를 멀리 깊은 곳까지 탐문하고 뒤져서 기필코 잡아 바치겠다고 하였으나,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직 엄히 헤아려 처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정의중은 감옥의 형리(刑吏)로 되어 있으면서 중범죄인을 두 사람씩이나 멋대로 보석을 청하였고, 범인들이 도망친 후에는 여러 차례 정해 준 기한에 출두하지 않았으니 고종(故縱)에 관한 율을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일부러 놓아주면 각각 수인(囚人)과 같은 죄이다."라는 율에 「명례편(各例編)」 칭여동죄조(称與同罪條)의 "사죄(死罪)에 이르면 1등급을 줄인다."라는 율을 참조하여 태(笞) 100 징역 종신(懲役終身)에 처하기 바랍니다. 다만, 유한표 등을 붙잡아 바치는 날에는 방송될 수 있는 율이 있으니, 도망친 유한표, 한기주 등을 특별히 탐문하여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칙유(飭諭)하여 거행하되 격식을 갖추어 단단히 가두고 의례에 따라 징역살이 등의 절차를 2배로 엄칙하여 혹시라도 소홀히 하여 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8월 23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신(申)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정주영(鄭周永) 각하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152호

광무 2년 12월 21일 기안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형사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52호

귀 고등재판소의 질품서 제14호를 받아 보니, "본 고등재판소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피고 국재봉(鞠在奉), 국재준(鞠在俊), 송내춘(宋乃春)의 안건을 심리(審理)했습니다. 피고 국재봉과 국재준은 그의 아비 국홍묵(鞠弘默)이 지난 갑오년(1894) 8월 3일 같은 군(郡) 용귀동(龍歸洞)의 비괴(匪魁) 김형순(金亨順), 김문화(金文化) 등에게 피살당했으나, 김형순, 김문화 등이 바로 도피하여 아비의 원수를 갚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금년 1월 22일에 전라도에 파견된 어사(御史)가 동(同) 비괴 김형순을 정읍(井邑) 지역에서 체포하여 담양군(潭陽郡)으로 압송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국재봉 등이 아비의 복수를 하기 위해 담양군수에게 고(告)했으나 어사에게 잡힌 죄인이라 지방관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장청(戶長廳)에 갇혀 있는 김형순이 피고 국재봉에게 말하기를, '내가 붙잡혔다는 것을 정인악(鄭寅岳)이 알게 되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재봉 등이 자신들의 종제(從弟) 국기동(鞠基同) 등을 보내어 정인악을 붙잡아 와서 호장청에 가두고 관아에 고했습니다. 군수가 '마땅하게 조치하겠다.'고 하고 수교(首校)에게 명하여 간수(看守)하게 한 후 관찰부(觀察府)에 갔습니다. 피고 국재봉이 김형순에게 그의 아비를 살해한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갑오년 7월경에 정인악이 본군(本郡) 훈련청(訓鍊廳) 앞 재인(才人)의 집에 와서 만났을 때, 그리고 우도(右道)의 동학 무리들이 정인악의 집에 와서 약탈할 때 자신을 요청하여 맞이해서 부탁하기를 '국홍묵을 제거하여야 훗날의 염려가 없을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 8월 2일에 송내춘을 그 집 문 앞의 길가에서 만나 거듭 부탁하기를, 동학 무리의 국홍묵이 집강(執綱)을 도모하여 용귀동 접(接)을 도륙하려 한다고 하기에 통문을 돌리고 무리를 모아서 그다음 초3일에 사정(射亭)에서 포살(砲殺)하였다고 했습니다.

음력 금년 1월 24일에 광주부(光州府)에서 순검(巡檢)을 파송하여 김형순과 공초한 여러 놈들을 모두 압상(押上)하라는 훈칙(訓飭)이 있어서 정인악도 압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국재봉 등이 순검에게 정인악, 김형순 두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한 차례 질문하기를 부탁하여 해당 군의 불월루(拂月樓) 아래에서 대질하였습니다. 여기서 김형순이 정인악에 대해 지난번과 똑같은 말로 설명하자, 피고 등은 정인악의 답변에 질문을 하지도 않고서 홍살문[紅箭門] 노상으로 끌고 가서 국재봉은 칼로 배를 가르고 국재준은 칼로 목을 찍었습니다.

피고 송내춘은 갑오년 8월 2일에 담양군의 장시(場市)에 가는 길에 정인악을 그 집 문 앞 길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국홍묵이 동학 집강(東學執綱)을 도모하여 읍포(邑包)를 도모하고 용귀동 접을 타파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러한 일의 기미를 용귀동 집강에게 가서 전하여 미리 예방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가서 전했더니 해당 집강 김형순 등이 그다음 날 사정(射亭)에 모두 모이자는 뜻으로 통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다음날 해당 무리 수백 명이 사정에 모여서 국홍묵을 붙잡아 와서 즉각 포살(砲殺)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사건을 보았고, 피고 등이 진술하여 자복(自服)하였고, 해당 도(道)의 순교(巡校) 문진원(文振元)이 증언한 진술이 있으니 그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피고 국재봉은 『대전회통(大典會通)』「살옥조(殺獄條)」의 "그 아비가 피살되어 옥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건을 수사하기 전에 멋대로 그 원수를 죽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한다."라는 율로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했습니다. 피고 국재준은 동조동율(同條同律)과 『대명률(大明律)』「명례(名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가인(家人)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면 일반인의 수범과 종범으로 논한다."라는 율과 동조(同條)의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수종자(隨從者)는 1등급을 줄인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3년'에 처했습니다. 피고 송내춘은 동율(同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인조(謀殺人條)의 "무릇 살인을 모의하되 따라 가공(加功)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율을 적용하여 '태100, 징역 종신'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어떠할지 이에 질품하오며 일체의 서류를 함께 올립니다. 밝게 조사하여 지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했습니다. 피고 국재봉, 국재준 등은 그 아비가 피살당한 후 범인이 잡혔으면 관(官)에 고하여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멋대로 살인을 자행함은 불법입니다. 하물며 김형순이 총을 쏘아 죽인 것은 명백하고, 정인악이 고의로 사주했다는 것은 애초에 자복(自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김형순이 자신에게 닥친 화(禍)를 넘겨씌울 계획으로 정인악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김형순과 정인악을 대질하는 장소에서 정인악의 대답을 채택하지도 않은 채 그를 원수로 지목하여, 삽시간에 형은 배를 가르고 동생은 머리를 찍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흉악함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국씨 형제들이 정인악을 죽인 행위가 원수 갚음이었다는 것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 귀 재판소에서 평의한 바는 합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피고 국재봉은 『대명률(大明律)』「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살인한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고, 피고 국재준은 국재봉을 처벌한 본율(本律)에서 "수종은 1등을 감한다."라는 율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 억울하게 죽자 서둘러 복수하려다가 이러한 죄를 이루게 된 것은 착오로 인한 일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율에서 각각 1등을 감하여 피고 국재봉은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피고 국재준은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기 바랍니다. 피고 송내춘의 경우, 정인악이 부탁한 말에 비록 살인을 모의한 실정(實情)이 없었다 해도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함부로 전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해당 범인은 『대명률(大明律)』「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為條)의 "무릇 응당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데 사리(事理)가 중(重)한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태 80에 처한 뒤 풀어 주고, 도망친 김형순은 해당 재판소에 훈칙(訓飭)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탐문하여 체포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합니다.

광무 2년 12월 26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윤(尹)

고등재판소 재판장 윤(尹) 각하

추신 :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오니 조사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5호

광무 3년(光武三年, 1899) 1월 17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호

이달 14일에 본 법부대신이, “이달 2일에 유학(幼學) 신(臣) 국재남(鞠在南) 등이 상소하였습니다”라고 삼가 상주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비지(批旨)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아비를 위하여 복수한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서 그런 것이니, 법부로 하여금 다시 재결하도록 하겠다.”하고 명(命)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비지를 받들어 국재봉(鞠在奉), 국재준(鞠在俊)의 재결안(裁決案)

을 별지에 적어서 삼가 상주하였더니, 같은 날 받든 성지(聖旨)에 "상주한 대로 국재준을 특별히 풀어 주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윤허하신 말씀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여,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재봉, 국재준 등을 귀 재판소에 압송하여 성지를 널리 알린 후 국재준은 특별히 풀어 주고 국재봉은 징역 10년에 처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 1월 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이(李)

고등재판소 재판장 이(李) 각하

추신 : 별지의 주본(奏本)은 등본(謄本)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안(案) 제4호 / 별지(別紙)

광무 3년 1월 14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호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신(臣) 이(李)는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이달 2일

에 유학 신 국재남(鞠在南) 등이 상소하였는데, 비지(批旨)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아비를 위하여 복수한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서 그런 것이니, 법부로 하여금 다시 재결하도록 하겠다."하고 명(命)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어 국재봉(鞠在奉), 국재준(鞠在俊) 등의 재결안(裁決案)을 별지에 적어서 삼가 상주합니다.

광무 3년 1월 14일 성지를 받듭니다.

신(臣) 이(李)

별지(別紙)

고등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한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의 살옥죄인(殺獄罪人) 국재봉(鞠在奉), 국재준(鞠在俊) 등의 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지난 갑오년(甲午年, 1894) 8월 3일에 국재봉의 아비 국홍묵(鞠弘默)이 비도(匪徒) 김형순(金亨順), 김문화(金文化) 등에게 살해되었는데, 두 김가 놈들이 그대로 도망가서 복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금년 1월 22일에 김형순이 전라남도 암행어사에게 체포되어 담양군으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국재봉 등이 군수에게 복수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양군수는, "암행어사에게 체포된 죄인을 군수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호장청(戶長廳)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형순이 국재봉 등에게 말하기를, "내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만약 정인악(鄭寅岳)이 알게 되면 필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재봉이 정인악을 붙잡아 와서 가두어 놓고서 담양군수에게 알렸더니 군수가, "마땅히 조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수교(首校)로 하여금 간수(看守)하게 했습니다.

국재봉이 김형순에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형순이 말하길, "갑오년 7월에 동학 무리들이 와서 약탈할 때 정인악이 나를 불러서 '국홍묵을 제거하여야 훗날의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부탁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도 송내춘(宋乃春)을 통해 전언(傳言)하기를, '국홍묵이 동학 무리의 집강(執綱)을 도모하여 장차 용귀동(龍歸洞)의 접(接)을 도륙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문(通文)을 발송하여 무리를 모아 사정(射亭)에서 포살(砲殺)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음력 금년 1월 24일에 전라남도 관찰부에서 담양군에 훈칙하여 김형순 및 그가 모집한 여러 놈들을 모두 압송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인악도 압송되었는데, 담양군 불월루(拂月樓) 아래에서 국재봉 등이 마음대로 정인악과 김형순 두 사람을 대질시켰습니다. 이때 김형순이 정인악에 대해 지난번과 같은 말을 하자 국재봉이 정인악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노상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국재봉이 칼로 정인악의 배를 갈랐고 국재준은 칼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대개 정인악이 교사(敎唆)했다는 것은 비록 본인이 자복(自服)하지는 않았으나 송내춘(宋來春)이 입으로 전한 것이나 김형순이 귀로 들은 것 등 모두 정확하므로, 국재봉 형제들이 정인악을 살해한 것을 고살(故殺)로 처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범인 국재봉은 『대전회통(大典會通)』 살옥조(殺獄条)의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되어 옥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원수를 죽이면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한다."라고 한 율을 적용하여 종신징역에 처하되, 아비를 위해 복수하였으니 마땅히 정상을 헤아려 참작해야 하므로 본율(本律)에서 1등을 감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11월 28일에 '비록 6범 내에 들더라도 본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할 여지가 있는 자는 1등을 감한다고 윤허(允許)하신 말씀을 받들어 한 번 더 1등을

감하여 징역 10년에 처해야 합니다.

국재준은 동율(同律)로 헤아리고『대명률(大明律)』「명례(名例)」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가인(家人)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여 죄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면 일반인의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으로 논한다."라고 했으니, 수종한 형률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를 위하여 복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 크게 다릅니다. 두 아들을 함께 징역 받게 하는 문제는 죄수 처리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리로 놓고 볼 때 참작하여 용서할 근거가 없지 않은 만큼 특별히 가벼운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5호

광무 3년 1월 2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호

귀 충청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10호를 받아 보니, "천안군수(天安郡守) 조응현(趙應顯)의 보고서를 보니, '본 천안군의 전전 군수 김병숙(金炳

塾)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사람을 기절시킬 만큼 놀랄 만한 일입니다. 비괴(匪魁) 박만귀(朴萬貴)를 잡아들여서 조사하여 심문했더니 진술하기를, 갑오년(甲午年, 1894)에 본 읍(邑)의 군기(軍器)를 탈취해 갈 때 관문에 총을 쏜 사실, 관방(官房)에 난입한 사실, 수령에게 총을 쏘려고 한 사실 등은 위협을 받아서 했던 것이며, 만약 자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도 애석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안(供案)을 별도로 기록하여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처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박만귀는 이렇듯 더할 나위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어찌하여 벌을 받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까? 지금 다행히 붙잡았으니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인을 『대전회통(大典會通)』「추단조(推斷條)」의 "군복(軍服) 차림으로 말을 타고 관문(官門)에서 변고를 일으킨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작년 12월 31일에 상주하였습니다. 같은 날 받든 비답(批答)에 "상주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박만귀를 교수형에 처한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 1월 22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유(兪)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정주영(鄭周永) 각하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3호

광무 3년 1월 25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담양군(潭陽郡)에 사는 진사(進士) 정대섭(鄭大燮)의 청원서(請願書)를 받아 보니, "무릇 옥사(獄事)를 검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정범(正犯)이 자가 책임지는 게 법례(法例) 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살복수죄인(故殺復讐罪人)인 국재봉(鞠在奉), 국재준(鞠在俊) 형제가 범행을 저지른 뒤, 사험관(查驗官)의 노잣돈을 본 담양군의 세전(稅錢) 중에서 엽전 1,700냥을 떼어내어 사용하고 죄를 만든 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려고 합니다. 세전을 어떠한 곳에 떼어 쓰는지는 비록 알지 못하겠으나, 죄를 만든 자의 법례(法例)를 헤아려보니 애초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옥비(獄費) 문제는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도록 천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옥사에 드는 비용을 시친(屍親)[64]에게 토색하는 것이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담양군

64 시친(屍親) : 살해(殺害)를 당(當)한 사람의 친족(親族)을 말한다.

에 엄히 신칙하여 정대섭의 재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 1월 25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유(兪)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법부 사리국 기안

法部 司理局 起案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38호

광무 3년 7월 17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8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62호를 받아 보니, "김태서(金台書)를 다시 신문해서 공초를 받아 문안을 작성한 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당초 조사하여 보고할 때 '영학(英學)' 두 글자를 직접 죄명으로 지목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태서 놈은 갑오년(甲午年, 1894)에 법망을 빠져 달아난 비류(匪類)로 요행히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다가 영학에 투탁하여 사창(社倉)에 방문을 붙이고 말목(抹牧)의 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1] 그러므로 무리를 모은 흔적을 가릴 수 없습니다. 또 한 두 가지 직임을 띠고서 7개 읍을 연결하여 스스로 돈을 거둔 수효가 있으며 이웃 주민들이 그 더러운 짓거리를 미워하여 관아에 바친 공문(公文)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학교사(英學敎師)[2]가

1 1898년 9월 29일 영학당원(英學黨員)들이 현 정읍시 이평면 두자리 소재 '말목장터'에서 대규모 회합을 가진 바 있다.

2 영사(英師) : 영학교사(英學敎師), 즉 영국인 선교사를 말한다.

폐단을 금지하자 날을 정해 모이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 같은 부류는 동학의 옛 무리들로서 겉으로는 귀화(歸化)한 것 같으나 안으로는 화심(禍心)[3]을 안고 있으면서, 영학 계(稧)에 들어간다고 칭하면서 동학의 주문을 읽고 외워서 날마다 무리를 모으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황을 헤아려 보고 당시의 상황을 따져본다면, 이같은 부류들을 만약 영학의 신자들로 여겨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대중들의 마음이 쉽게 현혹될 것이고 우매한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다시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처음 보고한 것과 해당 범인이 앞서 진술한 내용이 모호한 바가 있어서 다시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귀 재판소의 보고에 "무리를 모은 흔적을 가릴 수 없다."고 했으나, 해당 진술에 "이른바 계안(稧案)은 영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성명을 나열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귀 재판소의 보고에 "스스로 돈을 거둔 수효가 있다."고 했으나, 해당 진술에 "각 사람마다 5전씩 숫자를 정해서 대중들이 모인 날의 지출 비용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계안에 이름을 나열한 것'을 '무리를 모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5전씩 거둔 것'은 액수가 적을 뿐 아니라, 동학(東學) 수종(隨從) 문제의 경우에는 그가 이미 후회하여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고서와 진술서를 근거로 참고해 볼 때 갑작스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다시 상세히 사실을 확인하여 확실한 근거가 있거든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마땅함을 헤아려 처판(處辦)하기

3 화심(禍心) :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나 재앙의 근원을 의미하는 말로, 여기서는 동학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光武三年, 1899) 7월 17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중추원 의장 조(趙)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한성부 재판소에 조복(照覆)하는 건 / 안(案) 제94호

광무 3년 7월 21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한성부 재판소에 조복(照覆)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94호

귀 한성부 재판소의 조회문 제100호를 받아 보니, "피고 신광희(申光熙)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피고가 일찍이 1898년 윤3월 20일에 전라남도 관찰부의 총순(摠巡)으로 입직(入直) 근무하던 중에 살옥죄인(殺獄罪人) 김형순(金亨巡)이 차꼬를 부수고 감옥에서 도망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에게 적용할 법률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먼저 도망한 김형순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김형순이 살옥죄인이면 그 사안은 귀 법부 사리국(司理局)의 소관이 됩니다.

김형순에게 어떠한 율(律)을 적용할지 자세히 알아야 해당 안건을 귀결지을 수 있겠기에, 이에 조회하오니 명백하게 알려 주시기를 요망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전에 고등재판소에서 국재봉(鞠在奉) 등의 안건을 심판(審辦)하고 보고할 때 김형순을 어떻게 처판(處辦)할 지 품의한 바가 없었으므로 본 법부에서도 판단을 지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도망한 김형순을 아직 체포하지 못하여 실상을 상세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귀 한성부 재판소에서 평리원(平理院)에 조회하여 해당 범인 등의 안건을 살펴 정죄(定罪)해야 합니다. 이에 우러러 조복(照覆)하오니 밝게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광무 3년 7월 21일

법부 사리국장(司理局長) 민영선(閔泳璇)

한성부 재판소 판사 이계필(李啓弼) 좌하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42호

광무 3년 8월 4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2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67호를 받아 보고, 고창군(高敞郡)에서 압송해 온 비류죄인(匪類罪人) 김상흠(金相欽), 김재호(金在浩) 등의 공안(供案)을 조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김상흠은 범행한 바의 정황을 그 놈이 이미 숨김없이 다 실토하였으니 사형(死刑)으로 처판(處辦)할 것은 다시 의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장차 그대로 의단(擬斷)[4]할 예정입니다. 김재호의 경우, 그가 가진 기수(旗手)라는 명목이 스스로 기꺼이 따라서 갖게 된 것이 아니고 강제로 징집된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곤욕을 당한 것이 그 확실한 증거이니 어찌 책망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풀어 주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 8월 4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중추원 의장 조(趙)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22호

광무 3년 8월 4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4 의단(擬斷) : 죄를 헤아려 형벌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2호

귀 전라북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5호를 받아 보고, 비류(匪類) 최영두(崔榮斗) 등 29명에 대한 문건을 조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영두는 범행한 정황을 그놈 스스로 숨김없이 다 실토하였으니 사형(死刑)으로 처판(處辦)할 것은 다시 의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장차 의단(擬斷)할 예정입니다. 하윤현(河允玄)은 비록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허물을 숨기고 꾸며 대었으나, 총을 짊어지고서 최가의 집에 가서 유숙한 것이 이미 함께 범행한 흔적입니다. 게다가 이번 소요[5]의 시종(始終)에 대해 그놈이 이미 조목조목 진술하였으니 어찌 수종(隨從)이라는 지목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범인은 『대전회통(大典會通)』「추단조(推斷條)」,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官門)에서 작변(作變)한 자"의 율과 『대명률(大明律)』「명례(名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수종자(隨從者)는 1등을 감한다."라는 율(律)을 적용하여 태(笞) 100, 징역 종신(懲役終身)에 처해야 합니다. 나머지 27명 중 최동순(崔東巡) 등 5명은 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이미 풀어 주었으므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춘언(金春彦) 등 22명은 진술서를 참조하여 범죄 정황을 확인해 보았으나 책망할 만한 점이 별로 없으니 모두 풀어 주어 조정에서 망치(罔治)[6]하는

5 1898~1899년의 영학당 운동을 말한다.

6 망치(罔治) : 《서경(書經)》 하서(夏書) 윤정(胤征)에, "큰 괴수를 죽이고 위협에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말아서 옛날에 물든 나쁜 풍습을 모두 함께 새롭게 하겠다.[殲厥渠魁 脅從罔治 舊染汚俗 咸與惟新]" 하였는데,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따른 자는 그

뜻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 8월 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중추원 의장 조(趙)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이완용(李完用) 각하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64호

광무 3년 8월 14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64호

귀 충청남도 재판소에 수감되어 있는 서창길(徐昌吉)이 그동안 진술한 공사(供辭)를 조사했습니다. 동학 소요에 이름을 올렸고, 관장(官長)을 능욕하였고, 평민들을 침학한 사실에 대해 그놈이 비록 잡아떼고 있으나, 윤(尹)과 이(李)가 증언하는 내용이 저같이 명확하고 부(府), 군(郡)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놈이 진술한

죄를 다스리지 않고 용서함을 말한다.

내용에도 '제 조카의 고공전(雇工錢)을 받아내려고 제가 3~4명과 더불어 윤사평(尹士平)의 집에 가서 언사가 자연히 '공손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연히 받아낼 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어찌 3~4명이 작당을 하였겠습니까? 이미 작당하여 가서 토색하였고, 그 자신이 말하길 '공손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으니 능욕하기만 했겠습니까? 단서가 이미 드러나서 정적(情跡)을 감출 수 없으므로 그놈의 변명 때문에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범인은『대전회통(大典會通)』「금제조(禁制條)」"시골에서 세력으로 평민들을 침학한 자"에 관한 율(律)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국왕의 사면령 이전의 범행이므로 금년 2월 10일의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 본율(本律)에서 1등을 감하여 태(笞) 100, 징역 15년에 처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 8월 14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중추원 의장 조(趙)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각하

내부(內部)에 조복(照覆)하는 건 / 안(案) 제5호

광무 사년 4월 5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내부(內部)에 조복(照覆)하는 건

안(案) 제5호

귀 내부의 조회문 제3호를 받아 보니, "여산(礪山)에 사는 동학(東學) 거괴(巨魁) 고문선(高文詵)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보고가 우리 법부(法部)에도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우러러 조복하오니 밝게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광무 4년(光武四年, 1900) 4월 5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권(權)

의정부 찬정 내부 대신 이건하(李乾夏) 각하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13호

광무 4년 4월 11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3호

귀 전라북도 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 제2호를 받아 보니, "지난번에 체포

해 온 고문선(高文詵)의 동당(同黨) 김준홍(金準弘), 유덕장(柳德長), 이관동(李關東), 이용구(李龍九) 등 4명의 죄수들은『대명률(大明律)』「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인심(人心)을 부추겨 현혹시킨 수범(首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성초(金成初), 장한여(張漢汝), 이치옥(李致玉) 등 3명의 죄수들은『대명률(大明律)』「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종범(從犯)은 각각 장 100 유 3,000리"라는 율을 적용하여 종신징역(終身懲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에게 각각 선고한 후 이에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윤국(金允國) 등 11놈들은 여러 공초(供招)에서 진술한 바가 나왔으므로 일일이 탐문하여 체포한 뒤 엄히 가두고서 보고하라는 뜻으로 각 군(郡)에 비밀 훈령을 내려 엄칙(嚴飭)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받아 본 귀 전라북도의 보고서 제19호에, "이관동(李關東)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관동은 이미 지레 죽었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습니다. 김준홍 등은 고문선의 동당(同黨)이기 때문에 고문선이 이미 수범(首犯)이라면 김준홍 등은 자연히 종범(從犯)이 되므로 수율(首律)로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준홍, 유덕장, 이용구는 원래 헤아렸던 율(律)인 "종범(從犯)"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笞) 100 징역 종신(懲役終身)에 처하기 바랍니다. 김성초, 장한여, 이치옥은 비록 화응(和應)한 자취가 있기는 하나 모두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어서 정상(情狀)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율(本律)에서 2등을 감하여 각각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기 바랍니다. 도망간 김윤국 등 11명은 특별히 더욱 엄칙하여 기필코 탐문하여 체포하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4년 4월 11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권(權)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이완용(李完用) 각하

전라북도 재판소에 조회(照會)하는 건 / 안(案) 제1호

광무 4년 4월 14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전라북도 재판소에 조회(照會)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호

본 법부(法部)에서 지난번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의 질품서를 받아 보고 고문선(高文詵)과 그 동당(同黨) 김준홍(金準弘) 등 6명을 이제 겨우 처판(處辦)하여 훈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받아 본 귀 전라북도 재판소의 보고서에, 김준홍 등 7명을 모두 압송해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해당 범인들을 압송하여 보내는 것이 비록 본 법부의 훈령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압송하여 도착했으므로 당연히 조사를 다시 시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처판하여 훈령한 내용은 자연히 말소되는 안건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해당 13호 훈령을 즉시 되돌려 보내라는 본 법부

대신의 지시를 받들어 전달하오니 밝게 헤아리기 요망합니다.

광무 4년 4월 16일

법부 주사 이규진(李圭晉)

전라북도 재판소 주사 좌하

전라남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33호

광무 4년 5월 18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3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의 질품서 제43호를 받아 보니, "비류죄인(匪類罪人) 오재봉(吳在奉), 양선태(梁先太)를 『대전통편(大全通編)』「형전(刑典)」 추단편(推斷編)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官門)에서 작변(作變)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7] 참형(斬刑)에 처한다."라는 율(律)을

7 옛 법에 사형을 집행할 때 대개 봄·여름에는 집행하지 않고 가을철 추분(秋分)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부대시참(不待時斬), 즉 때를 기다리지 않고 신체를 절단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들의 징역형의 경우 종신(終身) 이상은 본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율을 헤아려 선고한 격례(格例)[8]가 없기에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5조를 개정한 후 법부(法部)에서 훈령을 내리기를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니 응당 차례대로 도달했어야 하고, 관보에 게재하였으니 또한 응당 살펴서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한 격례가 없다고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소홀함에 해당합니다. 이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들에게 율을 헤아려 선고하고 상소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에 다시 보고하되, 무릇 형명(刑名)[9]에 특히 주의를 더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데 힘써서 혹시라도 위반함이 없기 바라며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4년 5월 18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권(權)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상주안(上奏案) 건 / 안(案) 제204호

광무 4년 7월 25일 기안

서 죽이는 형벌은 대죄(大罪)를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잔인한 형벌이 갑오개혁 이후 교형(絞刑), 즉 교수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8 격례(格例) : 격식이 되어 있는 관례라는 의미이다.

9 형명(刑名) : 형벌(刑罰)의 이름, 즉 징역(懲役), 금고(禁錮), 벌금(罰金), 구류(拘留), 과료(科料) 따위를 말한다.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상주안(上奏案)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04호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 찬정 신(臣) 민(閔)은 삼가 아룁니다. 평리원(平理院)에서 심리(審理)한 동학죄인(東學罪人) 서정만(徐定萬), 한성부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옥죄인(殺獄罪人) 유창섭(兪昌燮), 문치오(文致五),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옥죄인 김소사(金召史), 이공익(李公益),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옥죄인 곽만수(郭萬水), 승(僧) 두만(斗晩), 오국현(吳國玄), 황정오(黃正五), 황해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옥죄인 김정현(金廷賢), 장보원(張甫元), 이보문(李甫文), 이용서(李用西), 윤명중(尹明仲),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옥죄인 서응순(徐應淳), 차진선(車辰先), 김용준(金龍俊), 이정길(李正吉), 지민원(智敏元), 한성부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이용석(李龍石), 삼적죄인(蔘賊罪人)[10] 김용석(金用石), 추재풍(秋才風),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서창순(徐昌淳), 서문유(徐文有), 권성오(權成五), 김병문(金炳文),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윤덕화(尹德化), 황정심(黃正

10 삼적(蔘賊) : 삼도둑, 즉 밭에 있는 인삼을 훔치는 도둑을 말한다.

心), 이화선(李化先), 정오성(丁五成), 김수복(金壽福),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차원길(車元吉), 전장민(田長民), 황해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굴총단해죄인(掘塚斷骸罪人)[11] 배익선(裵益善) 등 모두 34명을 교수형에 처한 건을 별지에 개구(開具)[12]하여 삼가 상주합니다.

광무 4년 7월 25일

임금의 뜻을 받듭니다.

신(臣) 민(閔)

평리원(平理院)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54호

광무 4년 7월 25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리원(平理院)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11 굴총단해죄인(掘塚斷骸罪人) :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자른 죄인을 말한다. 『대명률(大明律)』「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에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開棺槨見屍者絞〕"이라는 율이 있다.

12 개구(開具) : 구체적(具體的)으로 열거(列擧)하여 기록(記錄)함을 말한다.

안(案) 제54호

귀 평리원에서 교형(絞刑)에 처할 것을 선고한 동학죄인(東學罪人) 서정만(徐定萬)에 대해 상주하여 이미 재가(裁可)를 받았으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4년 7월 25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 찬정 민(閔)

평리원 재판장 홍종우(洪鍾宇) 각하

평리원(平理院)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55호

광무 4년 7월 25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리원(平理院)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5호

귀 평리원의 보고서 제206호를 받아 보니, "피고 서정만(徐定萬), 피고 김당골(金堂骨), 피고 편합덕(片合德), 피고 육사명(陸四明) 등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피고 서정만은 일찍이, 전 동학(東學) 거괴로 사형 집행을 받아 죽은 최시형(崔時亨)의 제자로서 선산(善山)에 거주하던 김치만(金致萬)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시형이 사형당한 후에도 피고가 동학을 폐기하지 않고 몰래 신봉하더니, 음력 금년(1900년) 2월 경에 그의 무리인 정해룡(鄭海龍), 양지동(梁地動) 등과 상의하여 최시형의 신원(伸冤)을 위해 무리를 모집하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속리산에서 치성을 드린 후 그대로 상경(上京)하여 대궐 문 앞에 엎드려 호소하겠다고 하며, 청기(靑旗)을 만들어 "남조선충의장군선봉대원수(南朝鮮忠義將軍先鋒大元帥)"라고 크게 쓰고 상복(喪服), 지납(紙衲), 등롱(燈籠) 등을 준비하여 속리산으로 갔습니다.

피고 김당골, 편합덕, 육사명은 음력 작년 기해년(己亥年, 1899) 겨울 무렵부터 서정만에게 동학을 전수 받았는데 서정만을 도통(道通)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속리산 치성에 함께 갔습니다. 이들은 속리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산골짜기에 사는 어리석은 무지렁이 농민들을 아는 사람마다 만나서 서정만의 사람됨을 이구동성으로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모(國母)를 위해 불공을 드린다.'는 등의 환상적인 말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이른바 '성심전(誠心錢)'을 내게 하여 상복, 떡, 술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정해룡, 양지동은 도망가서 아직 체포하지 못했으나 그 사실들은 피고들이 진술하여 자백한 내용이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피고 서정만은 『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正道)를 어지럽힌 수범(首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에 처하였습니다. 피고 김당골, 편합덕, 육사명은 모두 종범(從犯)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笞) 100 징역종신(懲役終身)에 처함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

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귀 평리원에서 죄의 경중을 논의한 내용이 모두 타당합니다. 서정만은 단단히 가두어서 상주(上奏)를 거친 후 훈령을 기다려 집행하고, 김당골, 편합덕, 육사명은 즉시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4년 7월 25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 찬정 민(閔)

평리원 재판장 홍종우(洪鍾宇) 각하

상주안(上奏案) 건 / 안(案) 제204호

광무 4년 7월 25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상주안(上奏案)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04호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 찬정 신(臣) 민(閔)은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평리원에서 심리(審理)한 동학죄인 서정만(徐定萬), 한성부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옥죄인 유창섭(兪昌燮), 문치오(文致五), 강도죄

인 이용석(李龍石), 삼적죄인(蔘賊罪人) 김용석(金用石), 추재풍(秋才風) 등 총 6명을 교형(絞刑)에 처한 건을 별지에 개구(開具)하여 삼가 상주합니다.

광무 4년 7월 25일

임금의 뜻을 받듭니다.

신(臣) 민(閔)

상주안(上奏案) 건 / 안(案) 제243호

광무 4년 9월 15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상주안(上奏案)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43호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신(臣) 권(權)은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평리원 재판장 김영준(金永準)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피고 이유형(李裕馨) 안건을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심리(審理)하니, 갑오년(1894) 동학 비적들이 창궐할 때 피고가 노성(魯城) 등의 지역에서 많은 무리를 규합하여 각자 나무 몽둥이를 든 것은 동학 비적들을 방어하며 각자도생(各自圖

生)하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고 스스로 '군자군(君子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허망하고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음은 피고의 진술에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대명률(大明律)』「잡범편(雜犯編)」불응위조(不應爲條)의 "무릇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경우, 사리로 볼 때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의 율(律)을 적용하여, 피고 이유형을 태(笞) 80에 처판(處辦)하고 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삼가 상주합니다.

광무 4년 9월 15일

삼가 뜻을 받듭니다.

신(臣) 권(權)

상주안(上奏案) 건 / 안(案) 제252호

광무 4년 9월 21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상주안(上奏案)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52호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신(臣) 권(權)은 삼가 상주합니다. 평리원 재판장

김영준(金永準)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피고 서장옥(徐章玉), 손사문(孫思文)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피고 서장옥은 무자년(戊子年, 1888)부터 오로지 동학(東學)을 숭상하다가 갑오년(甲午年, 1894) 무렵에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일으켰는데 그 기세가 전봉준(全琫準), 김개남(金介南), 최시형(崔時亨) 등과 서로 위아래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피고 손사문은 계미년(癸未年, 1883)부터 오로지 동학을 숭상하다가 갑오년에 청주(淸州) 북면(北面) 등지에 설접(設接)하였고 그에 응해서 따르는 자가 수만 명이었는데, 같은 해 9월 무렵에 전봉준에게 가서 합세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피고 등의 진술 내용에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피고 서장옥, 손사문은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正道)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린 수범(首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삼가 상주합니다.

광무 4년 9월 20일

뜻을 받듭니다.

신(臣) 권(權)

평리원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38호

광무 4년 9월 22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리원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38호

귀 평리원의 보고서 제251호를 받아 보고, 이달 21일에 본 법부대신이 다음과 같이 삼가 상주(上奏)하였습니다.

"평리원 재판장 김영준(金永準)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피고 서장옥(徐章玉), 손사문(孫思文)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피고 서장옥은 무자년(戊子年, 1888)부터 오로지 동학(東學)을 숭상하다가 갑오년(甲午年, 1894) 무렵에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일으켰는데 그 기세가 전봉준(全琫準), 김개남(金介南), 최시형(崔時亨) 등과 서로 위아래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피고 손사문은 계미년(癸未年, 1883)부터 오로지 동학을 숭상하다가 갑오년에 청주(淸州) 북면(北面) 등지에 설접(設接)하였고 그에 응해서 따르는 자가 수만 명이었는데, 같은 해 9월 무렵에 전봉준에게 가서 합세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피고 등의 진술 내용에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피고 서장옥, 손사문은 『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正道)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린 수범(首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상주를 올린 같은 날에 상주한 대로 시행하라는 명(命)이 내려왔습

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서장옥, 손사문 모두 교형을 집행한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4년 9월 22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권재형(權在衡)

평리원 재판장 김영준(金永準) 각하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40호

광무 4년 9월 25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0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59호를 받아 보니, "본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비류죄인(匪類罪人) 오재봉(吳在奉), 양선태(梁先太)에 대해 율(律)을 헤아려 선고하고 상소 기간(上訴期間)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률(重律)에 관계되기 때문에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귀 재판소의 평의(評議)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므로 해당 범인 오재봉, 양선태를 모두 단단히 가두었다가, 상주(上奏)를 거쳐 훈령이 내려진 후에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4년 9월 25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권(權)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권종필(趙鍾弼) 각하

추신 : 보고 내용에 어찌하여 율명(律名)을 쓰지 않은 채 '선고서 첨부'라고만 했습니까? 사후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33호

광무 4년 11월 23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3호

귀 전라북도 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 제13호를 받아 보니, "정읍(井邑)의 비도(匪徒) 수종(隨從) 박승도(朴承道), 이흥구(李興九), 이석교(李石

交), 김대율(金大栗), 최한경(崔翰京)을 『대명률(大明律)』「명례율(名例律)」 공범분수종조(共犯分首從條)에서 언급한 "무릇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조의자(造意者)[13]를 수범으로 하고, 수종자(隨從者)[14]는 1등급을 줄인다."라는 율(律)을 적용하여 각각 태(笞) 100 징역 종신(懲役終身)에 처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김사일(金士逸), 이성문(李成文), 남윤선(南允先), 진찬문(陳贊文)은 형벌과 위엄 때문에 겁을 먹고 정치조(鄭治朝)의 지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경중(李京中), 김기홍(金基弘), 이문화(李文化), 배치성(裵致成), 김정화(金正化)의 경우 공사(供辭)를 참작해 보건대 분간(分揀)[15]의 법에 합당할 것 같으나, 비적(匪賊)에 관련된 사건은 신중히 처리해야 하므로 일체를 질품하오며 여러 죄수들의 공안(供案)을 올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평의(評議)한 내용이 타당합니다. 박승도, 이홍구, 이석교, 김대율, 최한경은 선고한 대로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기 바랍니다. 김사일 등 4명의 죄수들의 경우 형벌 때문에 겁먹었다는 진술이 사실을 따져 볼 때 그럴 말할 뿐 아니라, '협박 때문에 저지른 죄는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에 비추어 용서할 만한

13 조의자(造意者) : 조의는 계책을 꾸미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이른다. 『대청률집주(大清律輯註)』에 '죄를 범하려는 뜻은 모두 그 꾸민 데서 말미암는다(造意 謂首事設謀 犯罪之意 皆由其造作者也).'라고 하였다.

14 수종자(隨從者) : 수종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 가며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을 이른다. 『대청률집주』에 '조의가 지휘하는 대로 잘 듣고 따라서 그를 좇아 힘을 쓰는 것이다(隨從 謂同惡相濟 聽從造意之指揮 隨之用力者也).'라고 하였다.

15 분간(分揀) : 죄상(罪狀)을 보아서 용서하는 쪽으로 처결(處決)하는 일로, 지금의 집행유예(執行猶豫)와 비슷한 것이다.

자취가 있습니다. 이경중 등 5명의 죄수들의 경우 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분간(分揀)을 논의한 것이 또한 이치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위 두 항목의 죄수 9명을 모두 죄를 면하여 풀어 주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4년 11월 23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평리원 재판장 육군 참장 김(金)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조한국(趙漢國) 각하

황해도 재판소에 비밀 훈령하는 건 / 안(案) 제71호

광무 4년 12월 12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황해도 재판소에 비밀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71호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이도재(李道宰)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의주진위대(義州鎭衛隊)에서 병사들을 파견하여 동학여당(東學餘黨) 원의길(元宜吉) 등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당(同黨) 정기명(鄭基明)이 황해도로 도망을 갔으니, 법부에서 황해도의 각 군(郡)에 훈령을 내려 기필코 방법을 마련하여 체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

니다.

이를 조사하니, 법망을 빠져나간 남은 무리가 여전히 나쁜 짓을 그만둘 줄 모르고 사술(邪術)을 전파하여 민심을 선동하여 미혹시켰다는 것이 이미 매우 악랄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탐문하여 체포하는 날에 지레 먼저 도망을 쳤는데, 아직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게 더욱 놀랄 만합니다. 이 비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관할하는 각 군에 비밀리에 신칙하여 해당 범인 정기명을 방법을 마련하여 체포하되 혹시라도 소홀히 하여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4년 12월 12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평리원 재판장 육군 참장 김(金)
황해도 재판소 판사 각하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45호

광무 4년 12월 12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5호

귀 평안북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72호를 받아 보니, “동학여당(東學餘黨) 원의길(元宜吉)을 『대명률(大明律)』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師術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종범(從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태(笞) 100 종신징역(終身懲役)에 처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오치덕(吳致德), 이원선(李元善)은 원의길에게 적용한 율에서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도망간 이석화(李錫華) 등은 지금 바야흐로 순검(巡檢)을 특별히 파견하여 기필코 체포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명첩(名帖)’과 ‘성경언주(聖經諺呪)’라고 하는 두 책은 오치덕의 ‘성경(聖經)’ 1권, 이원선의 ‘가사(歌詞)’ 8편과 함께 동봉하여 올려보냅니다. 가장 통탄스럽고 악랄한 자는 정기명(鄭基明)인데, 황해도로 도망갔으니 법부에서 황해도 각 군(郡)에 훈령을 내려 기필코 방법을 마련하여 체포하게 함이 어떠할지,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평의(評議)한 내용이 진실로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원의길은 원래 헤아렸던 율에 따라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하여 보내기 바랍니다. 도망간 정기명은 당연히 법부에서 훈령을 내려 체포하게 할 것입니다만, 그 나머지 여러 범인들의 경우 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도 특별히 방안을 강구하여 기필코 체포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4년 12월 12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평리원 재판장 육군 참장 김(金)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이도재(李道宰) 각하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호

광무 5년 1월 7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호

귀 평안북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80호를 받아 보니, “본 평안북도 재판소의 동학(東學) 수종죄인(隨從罪人) 원의길(元宜吉)을『대명률(大明律)』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종범(從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태(笞) 100 징역 종신(懲役終身)에 처하여 지난달 27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소(上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지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원의길에 대해서는 이미 본 법부에서 지판(指辦)하였으므로 응당 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즉시 집행했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질품하는 것입니까? 전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5년(光武五年, 1901), 1월 7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평리원 재판장 육군 참장 김(金)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이도재(李道宰) 각하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8호

광무 5년 3월 8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8호

귀 평안북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5호를 받아 보니, "동학(東學) 수범(首犯) 강성탁(康聖鐸)은 본 평안북도에서 접주(接主)가 되어 그 무리가 많았는데, 양민(良民)들을 속이고 미혹시켜서 점점 무성한 잡초처럼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 금

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首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에 처함을 선고하였고,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병업(康炳業), 박종근(朴宗根)은 우매한 소치로 사교(邪敎)에 잘못 빠져들어서 그 정상을 볼 때 용서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명률(大明律)』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종범(從犯)”에 대한 율을 적용하되 2등을 감하여 태(笞)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선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강성탁은 범행한 바가 이미 무거워서 율에 따라 징감(懲勘)하는 것을 결코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신징역 이상은 중죄(重罪)에 해당하므로 공초의 개략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하면 그의 판결에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 등의 공초를 별지에 나열하여 적어서 첨부하여 올려보내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5년 3월 8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내부 대신 이(李)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이도재(李道宰) 각하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7호

광무 5년 4월 17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7호

귀 평안북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5호를 받아 보니, “동학(東學) 수범(首犯) 강성탁(康聖鐸)을 『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首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에 처함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병업(康炳業), 박종근(朴宗根)은 그 정상을 볼 때 용서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위 『대명률(大明律)』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종범(從犯)에 대한 율을 적용하되 2등을 감하여 태(笞)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선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접수한 제23호 보고서에, “강성탁 및 강병업, 박종근 등의 공초를 별지에 나열하여 적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들의 공사(供辭)가 이같이 적확(的確)하다면 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평의(評議)한 내용이 진실로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원래 헤아렸던 율에 따라 처판(處辦)하되, 강성탁은 특별히 단단히 가두어 상주(上奏)를 거쳐 훈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서 집행하고, 강병업과

박종근은 즉시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5년 4월 17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 참정 조(趙)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이도재(李道宰) 각하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9호

광무 5년 5월 18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9호

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살옥죄인(殺獄罪人), 강도죄인(强盜罪人), 동학죄인(東學罪人) 등을 교형(絞刑)에 처하여 선고한 안건을 이달 17일에 이미 상주(上奏)를 거쳐 재가받았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김봉희(金奉希), 김봉현(金奉玄), 정원흥(鄭元興), 이태평(李泰平), 방명삼(方明三), 서응순(徐應淳), 김진옥(金珍玉), 차진선(車辰先), 김용준(金龍俊), 이정길(李正吉), 지민원(智敏元), 고소사(高召史), 김택수(金

澤守), 백성관(白成寬), 박춘건(朴春建), 홍만보(洪萬甫), 박명운(朴明云), 강성탁(康聖鐸) 등 총합 18명을 모두 형을 집행한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5년 5월 18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서리 법부 협판 이(李)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각하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7호

광무 5년 월 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7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비류죄인(匪類罪人) 등을 교형(絞刑)에 처하여 선고한 안건을 이달 17일에 이미 상주(上奏)를 거쳐 재가받았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오재봉(吳在奉), 양선태(梁先太)의 형을 집행한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5년 5월 18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서리 법부 협판 이(李)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윤웅렬(尹雄烈) 각하

평리원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58호

광무 6년 4월 26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리원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8호

귀 평리원의 질품서(質稟書) 제10호를 받아 보니, "피고 김연숙(金連叔), 최명기(崔明基)를『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좌도(左道)로 정도(正道)를 어지럽힌 종범(從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태(笞) 100 징역 종신(懲役終身)에 처하여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김춘서(金春西), 조성덕(曺聖德), 이기현(李基鉉), 김영래(金永來)도 동률 동편 동조 동문(同律同編同條同文)을 적용하여 태(笞) 100 징역 종신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갑오년(甲午年, 1894) 동비(東匪)가 창궐할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유혹에 빠지거나 위협을 받아 입도(入道)하였고, 아직까지 동학을 배척(排斥)하지 못한 것은 우매한 소치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애초부터 어디에 가든 행패를 부린 적이 없으므로 참작하여 용서할 만한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율(本律)에서 1등을 감하여 각각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며 일체의 서류들을 함께 올리니 밝게 살펴서 지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귀 평리원에서 평의(評議)한 내용이 모두 타당합니다. 해당 범인 김연숙, 최명기, 김춘서, 조성덕, 이기현, 김영래 등은 모두 원래 헤아린 율을 적용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즉시 올려보내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6년(光武六年, 1902) 4월 26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한(韓)

평리원 재판장 임시서리 경위원 총관 겸임 헌병사령관 육군 참장 이근택(李根澤) 각하

함경남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14호

광무 8년 4월 16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함경남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4호

귀 함경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4호를 받아 보니, “동학당(東學黨) 맹범영(孟凡泳), 김응삼(金應三), 정승조(鄭承祚) 등 세 놈을 『대명률(大明律)』「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만약 사사로이 요서를 가지고 있거나 숨기고 감추어 두어 관에 보내지 않은 경우”의 율(律)을 적용하여 태(笞) 100 징역 3년에 처하였습니다. 백낙현(白樂鉉), 임수련(林秀連)은 동률 동조(同律同條)의 주(註)에 언급된 “만약 전하거나 이용하여 현혹된 자가 2인에 미치지 않은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懲役終身)에 처하였습니다. 윤형천(尹亨天), 승재원(承載元), 최성도(崔成道)는 동률 동조(同律同條)의 “무릇 참위(讖緯) · 요서(妖書) · 요언(妖言)을 지어내거나, 전하거나 이용해서 군중을 현혹한 경우”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사형(死刑)에 처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을 당연히 법부에 보고한 후 지령을 기다려 집행해야 하나, 현재 본 함경남도의 각 군(郡)에 동학이 크게 치성하여 의외의 사건이 일어날 우려가 없지 않아서 만약 시일을 끌게 되면 징계하고 금지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권도(權道)를 좇아 즉시 포살(砲殺)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동학 무리들이 치성(熾盛)하므로 대징창(大懲創)이 없어서는 안 되겠으나 사형수들은 모두 본 법부에 보고하여 상주(上奏)를 거쳐 재가(裁可)받은 후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는 것이 본디 정해진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형천, 승재원 최성도 등을 멋대로 포살하고 비록 ‘부득이하게 권도를 좇았다.’고 하지만, 응당 보고해야 할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에 논경(論警)이 없을 수 없으나 지금은 우선 잠시 보류합니다. 이후에는 장정(章程)을 각별히 준수하여 주착(做錯)[16]에 이르지 않도록 하

기 바랍니다. 해당 범인 맹범영, 김응삼, 정승조, 백낙현, 임수련 등에 대해 경중(輕重)을 나누어 감단(勘斷)[17]한 것은 귀 함경남도 재판소의 평의(評議)가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원율(原律)에 따라 처판(處辦)하되 즉시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8년(光武八年, 1904) 4월 16일

법부대신 임시서리 원수부 회계국 총장 육군 참장 박(朴)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각하

평안남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 안(案) 제17호

광무 8년 6월 16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안남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7호

귀 평안남도 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 제15호에, "중화군(中和郡)에 거주

16 주착(做錯) : 잘못인 줄 알면서 저지른 과실(過失)을 말한다.

17 감단(勘斷) : 죄를 심리하여 처단함을 말한다.

하는 김영학(金永學)과 그 조카 김광찬(金光贊)은 동학(東學) 괴수(魁首)로 많은 도당(徒黨)들을 모아 돈과 재물을 거두고 민심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영학, 김광찬에게 『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백운종교(白雲宗教) 등의 종류를 거짓으로 칭하거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킨 수범(首犯)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종범(從犯)은 장(杖) 100 유(流) 3,000리"라는 율(律)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영학은 교형에 처하고, 김광찬은 장 100 징역 종신(懲役終身) 율에 처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귀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평의(評議)한 바가 모두 타당하니 원래의 율에 따라 처판(處辦)하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범인 김영학은 특별히 단단히 가두었다가 상주(上奏)를 거쳐 훈령이 내리기를 기다려 집행하고, 해당 범인 김광찬은 즉시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보내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8년 6월 16일

법부대신 육군 부장 훈일등(勳一等) 이(李)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각하

추신 : 관찰사(觀察使)와 판사(判事)는 직권(職權)이 같지 않고 인장(印章)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질품서에 관찰사의 직명을 써 넣었고 관찰부의 인장을 날인했으니, 법률을 헤아리는 절차상 공문(公文)이 격례(格例)에 어긋납니다. 이는 진실로 서류를 반환시키고 논경(論警)할 사안에 해당하지만 율의 적용이 타당하므로 우선 잠시 보류할 것이니, 이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기울여 살펴서 혹시라도 착

오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주사(主事)는 그에 상당하는 징계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27호

광무 8년 7월 7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7호

귀 전라북도 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 제13호를 받아 보니, "진위대(鎭衛隊) 제2연대 제3대대 대대장 김한정(金漢鼎)이 보낸 제20호 조회(照會)에, '지난번 원수부(元帥府)의 전칙(電飭)[18]을 받들어서, 전도(傳道)한다고 칭하면서 무리를 모아 부추겨 미혹시킨 동비(東匪)들을 비밀리에 탐문 체포하여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거괴(巨魁)임에 합당한 자를 원수부에 보고하고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받아 본 전칙에 「이미 체포한 동비(東匪)를 본 전라북도 재판소로 넘겨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18 전칙(電飭) : 전보(電報)로써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 대대(大隊)에 가두었던 동비 조창식(趙昌植), 이명삼(李明三), 정순구(鄭順九), 김덕화(金德化), 이이노(李利老), 김문영(金文永)과 지차(之次)[19] 이인규(李仁圭), 홍종한(洪鍾澣), 박순경(朴順京), 조가희(趙可曦) 등 10명을 이에 압송하였습니다. 또한 공초기(供招記)를 아래에 같이 나열하여 적었으며, 문축(文軸)과 체지(帖紙)[20] 등은 이미 원수부에 봉(封)하여 보냈으니 밝게 헤아리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연이어 도착한 해당 대대장 김한정의 제21호 조회에, '본 대대에서 체포한, 백성들을 선동하며 전도(傳道)한 거괴(巨魁)로서 동비(東匪)인 태인(泰仁)의 유달수(劉達守), 임피(臨陂)의 김광유(金光有)와 지차(之次)인 진산(珍山)의 김치삼(金致三) 등을 사실을 조사한 뒤 그 공초기와 문축, 체지, 부장(符章)[21] 등의 물건들을 세 놈과 함께 압송해 보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압송되어 도착한 동비죄인(東匪罪人) 조창식, 이명삼, 정순구, 김덕화, 이이노, 김문영과 지차(之次) 이인규, 홍종한, 박순경, 조가희 등과 유달수, 김광유, 김치삼 등 13명을 모두 본 관찰부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가둔 연유를 원수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인물들의 공초기를 모두 해당 부대에서 보내온 바에 따라 아래에 나열하여 적어서 열람하는 데 편리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개 요즈음 이 무리들이 은밀히 대중들을 선동하여 파다하게 세상을

19 지차(之次) : '그다음' 또는 '이 외에'를 이두식으로 이르던 말이다.

20 체지(帖紙) : 관아에서 이속을 임명할 때 쓰는 임명장, 또는 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말한다.

21 부장(符章) : 악귀를 쫓기 위해 글자 모양을 그려 붙인 종이로, 일반적으로 부적(符籍)이라 부른다.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그 가라지같이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는 뜻에서 볼 때 대수롭지 않게 감단(勘斷)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13명 중 정절(情節)이 매우 무겁고 거괴(巨魁)임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은 대중들을 크게 모아 놓고서 속히 극형(極刑)을 시행한 연후에야 먼 지방의 어리석은 풍속을 가히 경계(警戒)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질품하오니 밝게 조사한 후 그 감처(勘處)할 절차를 특별히 회답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조창식, 김명삼, 정순구, 김덕화, 이이노, 김문영, 유달수, 김광유 등은 범죄 사항이 거괴이니 마땅히 극율(極律)을 시행해야 하고, 이인규, 홍종한, 박순경, 조가희, 김치삼 등은 범죄가 지차(之次)에 해당하니 마땅히 종율(從律)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창식, 김명삼, 정순구, 김덕화, 이이노, 김문영, 유달수, 김광유 등은 『대명률(大明律)』「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首犯)"에 관한 율(律)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에 처하여 선고하되, 해당 범인들을 모두 특별히 단단히 가두었다가 상주(上奏)를 거쳐 훈령이 내리기를 기다려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인규, 홍종한, 박순경, 조가희, 김치삼 등은 동율 동편 동조(同律同編同條)의 종범(從犯)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笞) 100 징역 종신(懲役終身)에 처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보내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8년 7월 7일

법부대신 육군 부장 훈일등(勳一等) 이(李)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각하

평리원에 훈령하는 건 / 안(案) 제144호

광무 8년 10월 12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평리원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44호

귀 평리원의 보고서 제127호를 받아 보니, "본 평리원에서 징역죄인(懲役罪人) 김연숙(金連叔)을 허속(許贖)하여 풀어 주고 그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贖錢)의 실제 액수와 방면(放免)한 날짜를 아래에 나열하여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은 자(字)가 '치구(致九)'이고 호(號)를 '구암(龜巖)'이라고 칭하는 자로서 곧 동학 무리의 효시인 최시형(崔時亨)의 사위입니다. 최시형이 체포되어 처벌받을 때 김연숙을 진술하였으나 법망을 피해 달아나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했다가 어찌 다행스럽게도 잡아들여서 최시형의 종률(從律)에 처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차례의 사면령이 내렸으되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다가 옥문(獄門)을 활짝 열어 사면령을 내리기 이전에 다만 1등을 감하더니 지금 귀 평리원에서 멋대로 허속하여 풀어 주고 이러한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범인은 단지 범죄 행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풍화(風化)[22]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해당 안건을 본 법부에 질품하여 그 처판에 관한 지령을 기다려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속전(贖錢)을 받고 방송하는 일을 어찌하여 지레 먼저 멋대로 시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7조에 "국사범(國事犯) 외의 범죄는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속전(贖錢)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제20조 아래에 "단, 윤상풍화(倫常風化)에 관한 범인(犯人)은 수속(收贖)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법부 훈령에 '용서할 만한 정상(情狀)이 있어서 수속(收贖)할 만한 자는 허락하라.'고 하였습니다만, 해당 범인의 범죄 사항에 어떠한 용서할 만한 정적(情跡)이 있습니까? 좌도(左道)로서 정도(正道)를 어지럽힌 게 풍화(風化)에 관계되지 않습니까? 범행한 바의 경중을 어찌하여 참작하지 않았으며, 현재 각 지방에서 동학이 무성한 잡초 넝쿨처럼 뻗어나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그 실정(實情)을 살피지 않는단 말입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이르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김연숙은 다시 잡아들여 가두고, 속전은 내어주고 전에 처했던 징역에 의해 처리한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연숙을 허속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시행한다는 뜻의 제판(題判)[23]을 담당했던 판사(判事)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여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8년 10월 12일

22 풍화(風化) :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시키는 일을 말하며 풍교(風敎)라고도 한다.

23 제판(題判) : 관아에서 백성의 소장(訴狀)에 써 주던 판결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법부대신 김(金)

평리원 재판장 각하

내부(內部)에 조회하는 건 / 안(安) 제12호

광무 8년 11월 21일 기안

대신 협판 사리국 주임

과

사리국장

과장

내부(內部)에 조회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安) 제12호

지금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이헌경(李軒卿)의 질품서(質稟書)를 받아 보니, "단천군(端川郡) 신만사(新滿社) 안시동(安始洞)에서 사망한 남성 박승화(朴承化)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을 동봉하여 올려보냅니다. 이 옥사(獄事)는 동학(東學)을 포착(捕捉)한 일입니다. 일을 꾸민 자[주모자(做謀者)]는 박신오(朴信五), 김기인(金己仁), 윤준필(尹俊必)이고, 동당(同黨)을 시켜서 묶어 때리도록 한 자[주사자(主使者)]는 이재은(李在銀)이고, 그 시킨 대로 따라서 실행한 자[하수자(下手者)]는 김장권(金長權), 박시영(朴時永)입니다. 그런즉 사망한 자의 죽음이 일을 꾸민 자 때문인지, 묶어 때리도록 한 자 때문인지, 실행한 자

때문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검안(檢案)을 통해 그 상흔(傷痕)을 논하자면 초검안에는 '등 부분에 혈음(血瘖)[24]이 있다'고 하였고, 복검안에는 '귀뿌리 뒤쪽 뼈가 파열되었다'고 하였고, 삼검안에는 '왼쪽 귀뿌리 약간 위쪽의 뼈가 파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뼈가 파열된 것이 혈음보다 중(重)하므로 치명상(致命傷)은 등 부분이 아니고 귀뿌리입니다. 그리고 귀뿌리는 즉사[速死]하는 부위이고 뼈가 파열되는 것은 치명상인데, 즉사하는 부위에 치명상을 입었으니 어찌 그 자리에서 사망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실인(實因)은 '구타당한 것'이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범(正犯)의 경우 초검안, 복검안에 모두 윤준필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시체를 윤준필의 집에 옮겨두었기 때문이고, 둘째 윤준필의 서찰에 이재은을 오라고 한 내용이 있고 셋째 시친(屍親)이 윤준필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의 시체를 옮겨놓은 사항을 말하자면, 이재은의 공초에 '주모자는 윤준필, 박신오, 김기인 3인인데, 시체를 윤준필의 집에 떠메다 놓은 것은 해당 세 놈 중에 윤준필의 집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의 형세가 본디 그러했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윤준필에게 의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의 서찰에 이재은을 오라고 한 사항에 대해 말하자면, 편지에 쓰인 말의 의미에 대해 윤준필은 '부상(負商)들이 침학하고 토색하고 있는데, 네가 접장(接長)이니까 속히 와서 금단(禁斷)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은이 말하길, '지금 속히 올라와서 동학을 금단한 연후에 비용을 마련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재

24 혈음(血瘖) : 타박으로 말미암아 생긴 멍 자국으로, 달무리처럼 둥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

은이 진술한 바가 맞다고 하더라도, 동학이 백성들의 재물을 토색하는 것을 금단할 뜻에 지나지 않고 애초에 살인을 모의하는 등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색(討索)' 문제로 죄를 논할 경우 윤준필은 일을 꾸민 자[조의자(造意者)]에 관한 율(律)을 벗어나기 어렵겠으나, 사람을 죽인 죄는 애초에 윤준필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의 시친이 지목했다는 사항에 대해 말하자면, 시친 박명근(朴明根)의 진술에 '이재은 등이 윤준필을 향해 말하길 「네가 편지를 보내오라고 해서 이러한 살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길래 윤준필이 시켰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윤준필의 편지에 박승화를 염탐하여 붙잡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일의 속내를 파헤쳐 보건대, 이재은 등 여러 놈들은 모두 다른 고을의 부상(負商)들이라서 안면이 생소하고 오직 윤준필 한 사람만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친의 생각에 '만약 윤준필이 사주한 게 아니라면 저 다른 고을의 장돌뱅이 놈들이 어떻게 이 마을에 박승화가 산다는 것을 알아서 잡아갔겠는가?'라고 하며, 윤준필에 대한 원한이 더욱 심하여 기필코 윤준필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홍수(金弘守)의 진술에도 '김기인의 지휘를 기꺼이 받고 부상들과 더불어 박승화의 집으로 함께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처럼 죽은 자를 염탐하여 붙잡은 것을 어찌 유독 윤준필에게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상의 3가지 조항으로 보면 윤준필을 이 옥사(獄事)의 정범(正犯)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여 이 때문에 3검(三檢)을 시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삼검안(三檢案)을 봤을 때 과연 박승화를 구타할 때에 주사자(主使者)는 이재은으로, 그가 바로 정범(正犯)으로 결정하였으니, 이에 이르러 의심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상이 이에 이르러 더 이상 의논할 만한 점이 없기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애처로

운 이 사망자 박승화는 죄없는 몸이 흉악한 무리의 손에 잘못 떨어졌으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실정(實情) 또한 불쌍합니다.

정범(正犯) 이재은은 척사(斥邪)를 빙자하고 토색질을 계획하여 법관(法官)이 아니면서 위엄을 부리며 형벌을 시행하였으니 이미 극도로 악랄합니다. 게다가 동당(同黨)들을 닦달하여 사람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더욱 모질고 흉악합니다. 따라서 이재은을 『대명률(大明律)』「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타인을 시켜 때리게 하여 죽게 하거나 상해하면, 모두 시킨 사람을 수범(首犯)으로 삼는다."고 한 규정의 주(註)에 "주사자(主使者)는 교형(絞刑)"이라고 한 율(律)을 적용하여 교형에 처하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엄히 가두고서 처분을 기다립니다.

간범(干犯) 윤준필은 비록 관령(官令)을 빙자하여 동학 무리들을 체포한다고 하였으나, 비용을 마련한다는 게 실제 의도는 토색질에 있었고, 그가 편지로 요청한 것으로 인하여 결국 옥변(獄變)을 이루게 하였으니 그의 정적(情跡)을 파헤쳐 볼 때 지극히 악랄합니다. 김홍수, 장만홍(張萬弘)은 박승화를 구타할 때 애초에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박승화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한 사실을 이미 스스로 숨김없이 자백했으니 그 악행을 도운 바가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3명의 죄수는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백주(白晝)에 재물을 약탈한 자는 태(笞) 100 징역 3년"이라는 율(律)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였습니다.

장도영(張道永), 안성오(安成五)는 비록 그 자리에서 공(功)을 더한 증거가 드러난 것은 없으나, 그날 밤에 수종(隨從)한 사실은 그들이 이미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동률(同率) 「인명편(人名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함께 모의하여 같이 사람을 때렸는데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각각 장(杖) 100"이라는 율을 적용하여 해당 2명의 죄수를 각각 태 100에 처하였습니다.

박시영(朴時永), 김장권(金長權)은 박승화를 붙잡은 자들이 그들이고 박승화를 구타한 것도 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장권은 도낏자루로 죽은 자의 왼쪽 귀 부분을 마구 때려서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지게 하였으니, 사람으로서 모질고 흉악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그 죄상을 논한다면 마땅히 정범이 되지만, 이미 동률(同律)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에 "직접 손을 대어 죽인 사람을 종범(從犯)으로 논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범인 두 놈은 마땅히 이 율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미를 눈치채고서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김기인, 박신오, 노수관(魯守寬), 신경기(申京己), 백학선(白學善), 한명순(韓明淳), 한명옥(韓明玉), 조준흥(趙俊興), 김기봉(金己奉) 등은 부상(負商) 조직에 들어가 척사(斥邪)를 빙자하여 무리들을 모아 재물을 약탈하다가 옥변(獄變)을 이루고 제멋대로 도망갔으니 모두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위 11놈들에 대해서는 영리한 교졸(校卒)들을 다수 동원하여 기필코 체포하게 하겠습니다.

간증(看證) 한갑수(韓甲守)와 사련(詞連) 장영극(張永極)은 동학으로 지목되어 본 함경남도 재판소의 순교(巡校)에게 체포되었기에 해당 증거를 샅샅이 찾아내어 율을 헤아려 감처(勘處)할 계획입니다.

옥사(獄事)를 검험(檢驗)하는 법의 근본 취지가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도, 초검과 복검에서 간범(干犯)을 정범(正犯)에 집어넣은 것과 뼈가 파열된 상흔(傷痕)을 초검에서 잡아내지 못한 것은 모두 소홀(疎忽)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두 검서기(檢書記)는 모두 압송하여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해당 옥사는 초검관(初檢官) 단천군수 이현재(李賢在)와 복검관(覆檢官) 이원군수(利原郡守) 최우락(崔禹洛)이 검관(檢官)이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정범(正犯)을 잘못 잡아내고 상흔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도리에 비춰 볼 때 소홀함이 막심합니다. 해당 두 관원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징계를 시행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에 우러러 조회하오니 밝게 헤아리기 바랍니다.

광무 8년 11월 21일

법부대신 김(金)

내부 대신 이용태(李容泰) 각하

원문

原文

法部　検事局　起案

案 第九十九號

開國五百四年　閏五月　初四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同五月　　四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案關于全州府觀察使爲荷

案 第九十九號

云云照得上年五月康津古今島安置罪人前古阜郡守趙秉甲을業經拿致ᄒᆞ야現囚監獄ᄒᆞ고行將查辦而此罪人之屢典該邑에政多苛酷ᄒᆞ여以致騷擾ᄒᆞ니罪果難貸라[1]貪虐ᄒᆞ던情節을一一查櫛後에罔夜馳報ᄒᆞ여俾卽照法懲勘宜當者

案 第三十五号

開國五百四年　閏月　四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同月　四日　施行

1 원문에 '前後에'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罪果難貸라'라고 적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案謄移警廳為荷

案 第三十五号

云云昨日貴廳의派送ᄒᆞ신巡檢金光鍊과朴昇浩로東學罪人李龍孫을押領ᄒᆞ야左獄에囚ᄒᆞ라ᄒᆞ여숩더니今日가지回報가無ᄒᆞ기로敝部使令으로ᄒᆞ여금其收到를推來ᄒᆞ오니事為에紛錯ᄒᆞᆯ뿐아니라該巡檢의擧行이緣何ᄒᆞ야慢忽ᄒᆞ미若是ᄒᆞ온지

貴使계稟明ᄒᆞ와別般嚴飭ᄒᆞ여日後에漫緩ᄒᆞᆫ弊를俾無케ᄒᆞ시옵

再卽有罪人譏捕事ᄒᆞ니別巡檢二人만此派送ᄒᆞ심을希ᄒᆞ옵

案 第一百四十九号

開國五百四年　閏月　五日　起案

開國五百仝年　仝月　仝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案謄移漢城裁判所為荷

案 第一百四十九号

云云頃接度支部照會內開照得連山大同米乾沒ᄒᆞᆫ罪人沈啟澤은因該邑報辭ᄒᆞ야貴部에移送하엿더니其時舟橋司船主成册을更査ᄒᆞ온則執籌船主의孫仲元이가連山大同米六百石을裝載ᄒᆞ여온文蹟이消詳ᄒᆞ기로右孫仲元을招致查問ᄒᆞ온則仲元은不得發明이오며戊寅條連山大同分載船主를渠自買賣於沈玄澤云ᄒᆞ고至於沈啟澤은初不相關이라ᄒᆞ즉啓澤之無罪가於斯에發明이오며同孫仲元은姓名이昭載於舟橋司成册ᄲᅮᆫ아니라國穀裝運에船主를渠旣當差ᄒᆞ야私相買賣ᄒᆞ고莫重公穀을以致乾沒ᄒᆞ니其罪가不輕ᄒᆞ기로同孫元仲을押送ᄒᆞ오니照亮查辦ᄒᆞ와公穀을充納케ᄒᆞ시고沈啟澤은發明되오니照例妥勘等因准此查係是公穀所犯이니孫仲元을卽為查辦ᄒᆞ시고沈啓澤은發明되오니妥決홈為荷

再孫仲元이가現囚右獄ᄒᆞ니照亮홈

再左獄囚東學罪人李龍孫押上查辦홈李仲七子

案 第一百五十三号

開國五百四年　閏月　五日　起案

開國五百〃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安謄送漢城裁判所為荷

案 第一百五十三号

敬复者라接准來移內開沈啓澤의名字差誤ᄒᆞᆫ것은度支部에業已移文이오며李龍孫의罪名은旣著軍部照會故로謄抄伴交ᄒᆞ오며平山郡報狀은別無措語이옵고押上緣由이옵기不必謄送이오며孫仲元의情節與文蹟은度支部에셔公移헐時에詳探ᄒᆞ시옴

案 照复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丁國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業謄送內部如何

案 照复

貴第幾号[2]를接准ᄒᆞ와全羅道牒報內에衙門秘關를據ᄒᆞ야龍潭居ᄒᆞᄂᆞᆫ匪魁에名不知金哥와同邑居ᄒᆞᄂᆞᆫ匪魁弟子金樂三을卽為捉致ᄒᆞ야查處報來ᄒᆞᆯ事金哥ᄂᆞᆫ名既不的ᄒᆞ와無以捉得이오金樂三은縣獄에捉囚ᄒᆞ여씨나罪名를不知ᄒᆞ와查處無路ᄒᆞ다허기此를准ᄒᆞ니貴部에關ᄒᆞᆫ故로玆以通知ᄒᆞ니照亮後該道에知委ᄒᆞ야措處ᄒᆞ라신事를照得ᄒᆞ와據此查ᄒᆞ니犯罪를搜捕홈은弊部에所關이온듸項自貴部로該道에秘關ᄒᆞ심은무ᄉᆞᆷ委折이온지今此移照ᄒᆞ시니行將發關ᄒᆞ야措處ᄒᆞᆯ터어으이照亮ᄒᆞ시옵

開國五百四年閏五月十七日

法部大臣

內部署理大臣俞吉濬閣下

案

開國五百四年　閏月　十九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2 원문에 '照'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第幾号'라고 적음.

敬啓者左開案謄照全州府為荷

案

即准內部移照內開ᄒᆞ야貴營所報에龍潭西面居匪魁名不知ᄒᆞᄂᆞᆫ金哥와同邑居ᄒᆞᄂᆞᆫ匪魁弟子金樂三을內務衙門祕關을因ᄒᆞ야搜捕ᄒᆞ온즉[3]金哥ᄂᆞᆫ[4]名既不的ᄒᆞ기로未能捉得ᄒᆞ고金樂三은纔已捉囚後縣獄이ᄂᆞ罪名을또ᄒᆞᆫ不知ᄒᆞ야查處가無路等因을照得ᄒᆞ여據此查ᄒᆞ오니犯罪搜索을本部行令에所係ᄒᆞᆫ지라當初에內部로서貴營에秘關이越權이오며既以東魁與弟子로指目則貴營所報에罪名을不知ᄒᆞ야查處가難ᄒᆞ다云ᄒᆞᆫ者가爽實이온듯玆의關을發ᄒᆞ오니名不知金哥ᄂᆞᆫ置之勿問ᄒᆞ고金樂三段은東學與否을更加嚴查ᄒᆞ야斯速處辦이宜當者

案 訓令 第一百七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卽准警務廳來移照得平康居朴日祿為魁民擾收財民間事此等罪惡

3 원문에는 '여스니'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온즉'이라고 적음.

4 원문에 '則'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ᄂᆞᆫ'이라고 적음.

不可仍置卽為發關該郡守使之押上何如玆仰裁決左開案謄送為荷

案 訓令 第一百七号

云云貴郡高揷面下甕洞庭神坪居ᄒᆞᄂᆞᆫ朴日祿이民擾狀頭가되야京司에行賂ᄒᆡ싸稱ᄒᆞ고民間에収財ᄒᆞᆫ다ᄒᆞ니此等罪惡은仍置키不可ᄒᆞᆯ디라玆에訓令ᄒᆞ오니卽押上홈이宜當홈

開國五百四閏五月 日

法部大臣

平康郡守

東徒金在洪處辦事關林川郡件 / 案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刑事局長

顧問官

東徒金在洪處辦事關林川郡件

敬啓者向接林川郡守牒報內本邑居金在洪投托東徒為之接主奪官庫之軍器脅官屬以勒道又為全琫準之後將屠陷邑村殘害人命一邑吏民欲食其肉積有日月不得跟捉矣際此息鬧金漢幻形曳衰而還歸闔境吏民爭力捉納此等罪惡固當大會人民登時砲殺而恐涉徑庭有難擅便故具格牢囚以待處分等因准此查噫此金在洪罪惡貫盈吏民之爭力捉納可見衆憤所激該犯之自

歸就捕無乃天厭其惡旣是天人共怒之地不可一日容與於覆載之間本局所見發關該郡卽為砲殺以悅被灾之民以慰寃死之鬼恐合事宜左開案關于林川郡何如玆仰裁決

案

即准本月十三日貴報內에東徒金在洪固當登時砲殺以悅吏民而似涉徑庭且罪犯이極重ᄒᆞ야不可擅便니라玆以馳報等因을據ᄒᆞ니金漢의罪惡은實노暴刻을容貸키不可ᄒᆞᆫ지라法意의所在와重罪의關係론押上處辦ᄒᆞ미固當ᄒᆞ나民心을慰ᄒᆞ며衆惑을警ᄒᆞ기ᄂᆞᆫ自邑砲殺ᄒᆞ는이만不若ᄒᆞᆯ지라玆에指令ᄒᆞ오니到卽擧行後에形止를馳報ᄒᆞ미可홈

忠淸道靑山縣監牒報 / 案 第五十四号

開國五百四年 五月 八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忠淸道靑山縣監牒報

敬啓者觀此牒報要曰本縣南面島分里居宋致三本以土豪武斷鄕曲及至東匪猖蹶參以八道都執綱率其黨橫行邑村剽掠無常又稱視察官親戚宣言他邑論其土豪居一道之首魁言以匪類為八路之執綱究其罪狀難以寬貸故捉

囚馳報事本局所見此等悖類不可尋常置之卽為押上懲辦為宜左開案關于該縣何如玆仰 裁決

案 第五十四号

接准來報ᄒᆞ여照得宋致三之前後行悖가聞痛駭라[5]今時就捕가猶云晩矣니此等罪惡은不可尋常懲勘이라卽為定將羅押送이되[6]嚴加枷鎖ᄒᆞ야毋至疏漏ᄒᆞ미宜當者

忠州牧使報牒 / 案 第五十五号

開國五百四年 五月 八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檢事課長	
	顧問官	

忠州牧使報牒

敬啓者觀此牒報要曰本州居進士鄭榮鎭呈法部狀內同隣居盧白用參東徒故自洞中毁家逐出而盧因其嫌而打殺李圭白之侄矣李圭白及為參謀士也捉盧之妻男田萬哲勒供曰鄭之弟陰使盧殺李侄云自錦營以殺獄看證捉去

5 원문에는 '而'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라'로 적음.

6 원문에는 '是矣'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이되'로 적음.

後以東徒罪砲殺此皆李圭白之謀陷詳查雪寃事法部題以查報事到付本牧故搜捕諸犯擧皆逃躲只捉得李兄圭常及該洞頭民問招則頭民供曰盧入東徒因毁家之嫌與其妻男田萬哲打殺李侄而鄭弟之陰囑云者出自田之口招然李鄭之死具是寃抑云圭常供曰鄭弟宅鎭陰囑盧哥掃除李門之說從隱得聞而又為東徒故訴于先鋒陣關公州鎭逮捕幷田萬哲砲殺云鄭榮鎭供曰李與盧因債構嫌久矣則矣弟之陰囑云者初不近理且矣弟見囚時李圭白來言於矣父曰資給匹馬路費則徃營救解云故依言施行渠於此時何不言陰囑等說而反謂救解耶且以東徒論罪則勒入之際非徒矣弟李之兄弟亦皆入參則何獨矣弟被殺云李圭常再供曰盧之督債皆鄭所使而昨秋已為畢報則有何因嫌且以馬匹言之借於鄭族非借於鄭父路費之說初不聞之云矣此訟之查也首犯之盧則逃干犯之田陰囑之鄭已死則執何為證而卞明乎至其乃叔乃兄之各自訴寃事難究竟然鄭宅鎭初以獄證見捉而後以東徒罪被死似是勒加罪名也且李旣親聽殄滅一門之說何不一言於鄭見捉之時乎此足為斷案肰非本牧所可論斷故以此查報事本局所見發關該道先問其砲殺之由仍卽譏捕首犯干犯嚴覈審結為宜左開案題列行關何如玆仰 裁決

案 第五十五号

接准忠牧之查報照得本州金目面五龍洞居鄭宅鎭因同隣居李圭白之謀陷橫死於東學之罪事據本部查報之題捉致該洞頭民及圭白之兄圭常宅鎭之兄榮鎭審訊則各自訴寃事難究竟唯待本部論斷矣夫李圭白之侄被害於盧白用斷斷無疑則該營該牧之不卽譏捕盧漢成獄難免疎漏之責至於砲殺鄭宅鎭觀於圭常榮鎭之所供俱曰捉以獄証殺以東學云則此必有曲折之可究矣鄭宅鎭若果東徒則當其捕捉之時何不明言而指以獄証若以獄証則何不先捕首犯之盧漢審問而径殺看證乎於此可知東學之初無指證亦可想獄証

之終不得情矣然則李圭白之謀陷云者容或無怪而該營之忽於人命曷免其責然此等疑案不可遽再論斷故玆以發關關到卽時鄭宅鎭之獄證得情與否東學眞証有無星火報來是遣李圭白盧白用刻期詗捉嚴查捧招形止一體馳報宜當者

忠州牧使書目 / 案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刑事局長	
	顧問官	

忠州牧使書目

敬啓者觀此書目以鄭宅鎭獄事查報而發關監營之意已經詢可該牧書目不可無回題左開案題于狀內何如玆仰 裁決

案

嚴查歸竟之意方發關巡營

靑山縣監書目 / 案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刑事局長

顧問官

靑山縣監書目

敬啓者觀此書目以土豪匪魁宋致三牢囚馳報事以押上之意發關已經詢可而書目不可無題左開案題于狀內何如玆仰 裁決

案

依關辭擧行宜當

忠淸兵使牒報 / 案 第七十五号

開國五百四年 五月 十三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刑事局長

顧問官

忠淸兵使牒報

敬啓者觀此牒報略曰本州居閔暹鎬本以挾勢土豪居魁東徒竟至被捉於日陣而所供難重不可掩庇幸蒙放歸於田里則確改前習是其當理而乃反誣訴法部曰自營送校作梗籍沒家產租包而今旣蒙放一一還推云云法部題音內

搜探家物是何法理自營靳持尤極無據一一出給報來事盖以租包言之暹鎬起包接戰時被燒民家八十餘戶至於餓孚故以其租分饋而亦與日陣議為者也以汁物言之無所搜探而既有題飭故租包段待秋成報給之意令飭該灾民等處而暹鎬終不足聽捉致洞民鞭朴督捧至有灾民等呼訴於視察官暹鎬之不改舊習冒錄件記萬萬痛駭事本局所見閔暹鎬之赦罪未幾行悖繼甚尤極痛嘆卽為押上懲勘為宜左開案關于該營何如

案 第七十五号

云云接準來報照得閔暹鎬之所為胡至此甚究其前罪係是罔赦而特以放歸鄉里者欲其改過從善之意也今不惟不悛前習反又肆虐以至洞民之困逼因致營邑之論報可想其行為之不測矣以租包言之營既以秋成後報給之意申飭則不至永失也猶患不足督責灾民至於鞭朴顧此灾民尙乏一日之糊口從何以卒辦斗石之米租乎不念此情狀而恣欲施暴素心之不良推此可見也早知如此不但不有推給租包之題幷不許放歸田里矣蔽一言則為定將羅押上以為嚴懲宜當者

案 第五十四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丁國敎
	檢事局長	
	刑事局長	
	顧問官	

敬啓者今以延魯城審決事公移漢城裁判所矣左開案謄移為荷

案 第五十四号

昨年十一月日兵押上廣州諸東徒業經審辦放送而延魯城尙此滯囚究其罪則實無異同矣言念民情極為可悶本局所見自漢城裁判所知照於日領事卽行審決使該民俾便歸農為妥

再警廳供招半交

前轉運使趙弼永保放件 / 題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裁判長　　判事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前轉運使趙弼永保放件

敬啓者接准在囚趙弼永呈訴照得頃者以勘簿事呈狀伏蒙從速勘簿以便辦核之題而將於勘簿之際文簿六駄有餘從人吏輩二十餘人又京司差人及外處差人等不可不查質則久書之浩繁查核之煩劇不可於獄中擧行請願保囚於獄署近處速竣公役事本局所見理勢雖然不可出處獄外則保囚於署內夾室以便勘簿為宜

題案

勘簿間限七日姑為保囚於署內夾室俾速竣役

案 第二十五號

開國五百四年　五月　廿二日　施行

裁判長　　判事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案謄移警廳爲希

案 第二十五號

云云右監獄罪囚에前嶺伯李容直과前判書趙秉式이ᄂᆞᆫ老病이俱有ᄒᆞ야其子가各各狀을呈ᄒᆞ야保放을請ᄒᆞᄂᆞᆫᄃᆡ獄體를揆ᄒᆞᄆᆡ外處가不可ᄒᆞ나情勢를念ᄒᆞᆫ즉矜然이不無ᄒᆞᆫ지라是로以ᄒᆞ야部議를屢經ᄒᆞ야調病間만署內夾室에保囚ᄒᆞᆯ意로裁決ᄒᆞᆫ故로玆를以ᄒᆞ야仰移ᄒᆞ오니上項二人을今日로始ᄒᆞ야署內夾室에居處케ᄒᆞ고其子侄의出入을特許ᄒᆞ야調病케ᄒᆞᆷ이為妥

再罪囚趙弼永이가勘簿헐事로以ᄒᆞ야保放을ᄒᆞ야云호ᄃᆡ浩繁ᄒᆞᆫ文簿와許多ᄒᆞᆫ吏輩를獄中에서查考키難ᄒᆞ니近處에保囚ᄒᆞ믈願ᄒᆞᄂᆞᆫ事를因ᄒᆞ야本大臣계稟ᄒᆞ온즉事體所在에出獄이不可ᄒᆞᄂᆞ勘簿ᄒᆞᆯ事가時

急에亦係ᄒᆞᆫ지라是로以ᄒᆞ야아즉署內夾房에出處ᄒᆞ야勘簿를速竣ᄒᆞᆯ事로命令을承認ᄒᆞ와仰移ᄒᆞ오니該獄署에飭ᄒᆞ와夾房에出處케ᄒᆞ고又文簿의關係ᄒᆞᆫ人은指名錄置ᄒᆞ고出入을禁치勿ᄒᆞ게ᄒᆞᄋᆞᆸ고定限은七日이오니 照亮ᄒᆞ시ᄋᆞᆸ

案 第二十七号

開國五百四年　五月　二十三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案謄移警廳為荷

案 第二十七号

云云頃接　貴复照得在囚趙秉甲朴受晩李應憲閔致純宋廷燮閔炯植蔡慶默閔泳柱八人亦有實病特許保囚於署內夾室等因據此本檢事今將往檢後經本大臣裁決更移矣以此照亮

再李容直趙秉式二人昨以保囚夾室事公移而今每回示者必是尙不擧行之樣也更為提飭守長卽速擧行為妥

趙弼永

裁判長　　判事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右獄囚趙弼永勘簿間姑為保囚於署內夾房事昨已起案而檢事更審獄中則獄間外夾室不過數間已有老病人保囚則趙弼永之居處更無他室而修簿之役極其浩繁則不得不保放然後可以速竣其役不然則日字之遲延尙矣初不可始役本局所見姑許保放俾速勘簿為宜

案　第九十八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案關于海州府觀察使何如

案 第九十八号

云云信川郡守의度支部에報ᄒᆞᆫ狀을接准ᄒᆞᆫ즉該郡居安泰勳과泰元兩漢이東匪를討ᄒᆞᆫ다稱ᄒᆞ고金革을妄動ᄒᆞ야民心을搖亂ᄒᆞ며度支部의公貿ᄒᆞᆫ米五百石을攘奪ᄒᆞ야軍粮에藉用ᄒᆞ고充納키不肯ᄒᆞᄂᆞᆫ지라捉致ᄒᆞ야督捧ᄒᆞ며ᄒᆞᆫ즉安哥가尙今도卒徒를擁ᄒᆞ고村巷에屯[7]ᄒᆞ야公隷를趕逐ᄒᆞ며官令을抗拒ᄒᆞ니殘邑의將羅가擒獲키不能ᄒᆞ다云ᄒᆞᆫ지라玆를以ᄒᆞ야關을發ᄒᆞ니關到ᄒᆞᆫ卽時에校卒을多發ᄒᆞ야긔여이捉得ᄒᆞ여枷鎖를具[8]ᄒᆞ야押上ᄒᆞ되或[9]疎漏ᄒᆞ미無ᄒᆞ게ᄒᆞ여뼈梗化ᄒᆞᆫ習을嚴懲ᄒᆞ고公貿ᄒᆞᆫ米를充納케홈이宜當者

右 關

海州府觀察使

案 第一百二十三號 / 案 第一百二十四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二案照覆度支部何如

7 원문에는 '屯' 뒤에 '據'를 썼다가 삭제하였다.

8 원문에는 '具' 뒤에 '繫'를 썼다가 삭제하였다.

9 원문에는 '或' 뒤에 '도'를 썼다가 삭제하였다.

案 第一百二十三號

云云昨接 來文ᄒᆞ야閱悉一是오며各道監司守令의加下及贓錢區別成册은謹領ᄒᆞ와加下條ᄂᆞᆫ照査徵刷ᄒᆞ야上納未收를充케ᄒᆞ고贓錢은依律裁處ᄒᆞᆯ事ᄂᆞᆫ依敎遵行ᄒᆞ려니와各該監營의報狀과 貴部派員의所報ᄅᆞᆯ아올나送擲ᄒᆞ여審査ᄅᆞᆯ以便케ᄒᆞ시옴須至照复者

右照复

度支大臣魚允中 閣下

案 第一百二十四号

云云昨接來文ᄒᆞ야閱悉一是오며信川郡安泰勳과泰元兩漢이金革을妄動ᄒᆞ여公穀을攘奪ᄒᆞ미所犯이莫大ᄒᆞᆫ지라殘邑의將羅가擒獲키難홈은事勢가固然ᄒᆞᆯ딘즉敝部로서海州府에發關ᄒᆞ여重繩押上헐터이옵고貴部貿米五百石은그捉上ᄒᆞᆯ時를待ᄒᆞ야徵刷ᄒᆞᆯ터오니 照亮ᄒᆞ시옴須至照复者

再信川郡守의報狀은還交ᄒᆞ오니照領ᄒᆞ시옵

韓用健崔錫疇南春鳳移送高裁件 / 案 第二百十六号

開國五百 年 月 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韓用健崔錫疇南春鳳移送高裁件

敬啓者軍部移來罪人韓用健崔錫疇及元山港押來罪人南春鳳幷移送高等裁判所俾卽判決懲勘何如玆仰 裁決左開案謄送爲荷

案 第二百十六号

軍部移來ᄒᆞᆫ擅殺人命罪人韓用健과崔錫疇며元山港監理署押上ᄒᆞᆫ假稱日人罪人南春鳳을幷牢囚左獄ᄒᆞᄋᆞᆷ고其供草와文牒을送交ᄒᆞ오니查照ᄒᆞ신후從速判決ᄒᆞ시미可홈을玆에通牒홈

高等裁判所主事 朴齊璿 座下

案 通牒 第二百二十號 高等裁判所主事 金思鉉 座下

開國五百四年 六月 二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淸道下吏金漢璔張周德逋帳移屬於前郡守蔡慶默使之督刷之意照

會于高等裁判所爲荷

案 通牒 第二百二十號 高等裁判所主事 金思鉉 座下

接准度支部來照內開ᄒᆞ야淸道下吏에金漢璔과張周德等所訴에渠等이去辛卯年田稅色擧行으로各其二百五十兩錢을本官蔡等內에侵奪이되와公錢이欠ㅁᄒᆞ야逋帳磨勘이道理업다ᄒᆞ기로玆以仰佈ᄒᆞ오니同錢五百兩을前郡守蔡慶默에不日督刷ᄒᆞ옵을希홈等因을照得ᄒᆞ여據査ᄒᆞ온즉貴所에關ᄒᆞᆫ事이기에仰佈ᄒᆞ오니蔡慶默이를更為査辦ᄒᆞ야斯速督捧ᄒᆞ심으로玆에照會홈

再라日前崔錫疇韓用健事件海伯牒報를伴交홈

崔錫疇韓用健移漢城裁判所件 / 案 第二百二十四号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長 申載永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崔錫疇韓用健移漢城裁判所件

逕啓者卽接高[10]裁來照玆以修复ᄒᆞ오니左開案謄送高等裁判所為要

10 원문에는 '漢'이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高'라고 적음.

案 第二百二十四号

接准貴照關悉一是崔韓之移送은理固得當續將依此辦行矣 照亮為希

案 第二百六十五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逕啓者張龍淵韓用健事件文化郡牒報送交高所准此照會如何

案 第二百六十五号

張龍淵韓用健事件으로文化郡守洪在駿의牒狀를接准ᄒᆞ온즉貴所에關ᄒᆞ기에送交ᄒᆞ오니照領ᄒᆞ시옵玆에照會ᄒᆞᆷ

案 第二百六十八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逕啓者左案通牒漢城裁判所何如

案 第二百六十八号

信川郡守의牒報를接准ᄒᆞ온즉韓用健의事件이他事件에尾錄ᄒᆞ얏ᄂᆞᆫᄃᆡ原狀은高等裁判所에送交ᄒᆞ기로韓用健의事件만抄呈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要홈

再 信川郡守牒報中韓用健事件

韓用健段本以匪類火砲領將反為本營兵隊領將名色而縱有東徒之枝流餘裔砲殺之微功藉匪行悖民怨至今未鮮有難將功贖罪伏俟處分事

法部檢事局長申載永

漢城裁判所檢事金基肇 座下

案 第二百六十九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逕啓者左案通牒[11]高等裁判所何如

案 第二百六十九号

長壽別將張龍淵事件으로信川郡守牒報를接准ᄒᆞ온즉 貴所의所關이기로原狀을伴交ᄒᆞ으니照領ᄒᆞ시믈要ᄒᆞᆷ

法部檢事局長申載永

高等裁判所檢事吳容默 座下

案 第二百七十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逕啓者左案通牒高等裁判所何如

案 第二百七十号

前黃海監司趙熙一의牒報를接准ᄒᆞ온즉助泥萬戶安宅舜이가匪魁金永甫를逸囚ᄒᆞᆫ事件온ᄃᆡ 貴所의所關일기로原狀을送交오니 照亮裁處ᄒᆞ시믈要ᄒᆞᆷ

11 원문에는 '謄送'이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通牒'으로 적음.

法部檢事局長申載永

高等裁判所檢事吳容默 座下

案

開國五百 〃年 〃月 二十二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逕啓者漢城裁判所所關韓用健崔錫疇事件係是命案所重而其所擬判殊涉率爾則訓令本所使之再審何如玆仰 裁決

案

韓用健崔錫疇의事件이命案에係關ᄒᆞ얏슨즉其前後事狀을綜核處辦ᄒᆞᆯ어시어ᄂᆞᆯ遽爾擬判ᄒᆞ미極涉失宜ᄒᆞᆫ지라玆에訓令ᄒᆞ으니韓崔兩人을更為捉囚ᄒᆞ고審判을另行ᄒᆞ야刑律擬照ᄒᆞᆷ을十分愼重ᄒᆞ미가ᄒᆞᆷ

漢城裁判所判事韓昌洙 座下

法部大臣徐○○

西學輩作鬧事照會外部件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西學輩作鬧事照會外部件

敬啓者韓山公州兩郡守牒報內開東徒餘匪가西學에藉托ᄒᆞ야民間에侵掠ᄒᆞ고敎師를依恃ᄒᆞ야行悖가多端ᄒᆞᄂᆞ地方官이敢히擅便치못ᄒᆞ야懲勵키不得ᄒᆞ다ᄂᆞᆫ等因을准ᄒᆞ온즉係是外人所關이기로外部에知照ᄒᆞ여該公館에照會ᄒᆞ야該敎師等에게嚴飭ᄒᆞ여此等違越之弊가無케ᄒᆞ미何如玆仰 裁決

案 第三百五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案謄照外部為荷

案 第三百五号

接准韓山郡守牒報內開本郡居金善在徐可良俱以東學亂類昨年東擾時與吳

應老有何相詰是加隱喩依勢東徒許多作惡難逭其罪此是郡守赴任前事也且撫恤歸化之意朝令申複而同兩漢不悛其習今称西學出沒作弊甚於東擾時輒称前嫌率黨來到吳應老家破砕家產無數毆打勒奪幾百金舉措叵測而吳民段僅得脫身逃避其妻抱狀來訴故兩漢捉入嚴查則自称西學官庭悖悪傍若無人所聞所見果是無法亂悖之徒也人命雖曰愼重如此亂類不得不懲一勵百故已為捉囚馳報而今以金徐兩漢捉報事大法國傳教士南一良書札自德山陽村來而其辭意內金徐兩人素是聖教人也吳應老東學之類也昨年七月分徐民無故被打於吳哥而反以牢囚聞甚恠然吳民捉囚兩人卽放云云則凡罪之有無治之与否各有地方官可以查決者則自邑措處且難以擅便者則報營酌處事理当然而至於此等各國傳教士為名人未知其罪狀但愛護聖教人有此干涉法不可法治不可治將何措處等因及公州郡守牒報內開經擾之餘渙散者過半矣屢因京関面面曉喩庶有安戢之望自夏以後東徒餘匪不改舊習還付西學藉勢徒黨橫行村閭毆打殘民侵掠錢財難以支保是如呼訴踵至事難擅便玆以據實牒報部教是徃復公館後防徼杜漸使此殘氓以為奠接之地等因ᄒᆞ와此ᄅᆞᆯ查ᄒᆞ오니俱係亂類輩가西學을藉托ᄒᆞ여村閭에行悖ᄒᆞ야無所不至온ᄃᆡ抵罪ᄒᆞ기의及ᄒᆞ야ᄂᆞᆫ教師의게反為誣告ᄒᆞ야罪之有無ᄂᆞᆫ不究ᄒᆞ고此類를庇護ᄒᆞ야各郡行政에干涉ᄒᆞ며防碍가有ᄒᆞ니法規所在에極히妥當치못ᄒᆞ으며各國約章으로言ᄒᆞ여도傳道人을保護ᄒᆞᆯ쓴이오罪에犯ᄒᆞ믈寘而勿問ᄒᆞ라ᄂᆞᆫ条規ᄂᆞᆫ無ᄒᆞᄂᆞᆫ ᄃᆡ此類輩가如是挾勢ᄒᆞ야作鬧莫甚ᄒᆞ오니徼勵가不無ᄒᆞᆯ터이오ᄂᆞ事涉外人이기로玆에仰佈ᄒᆞ오니　貴部로서該公館에照會ᄒᆞ와該教師等의게嚴飭ᄒᆞ야此等違越ᄒᆞᄂᆞᆫ弊가無케ᄒᆞ시믈要홈

法部大臣

外部大臣　閣下

照會高等裁判所件 / 案 第三百四十一号

開國五百四年　七月　二十三日　起案

開國五百〃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丁國教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照會高等裁判所件

敬啓者左開案依ᄒᆞ야謄送為希

案 第三百四十一号

卽接公州郡報告書內開에該鎭在囚ᄒᆞ온平澤居ᄒᆞ난朴瑞有가有名東魁로逃脫漏網而不悛前習ᄒᆞᄋᆞᆷ고劫縛寡婦ᄒᆞ와民訴邑報가丁寧ᄒᆞᄋᆞᆷ기로去月報告ᄒᆞ여더니指令를未承ᄒᆞᄋᆞᆷ고朴瑞有의兄受昌이가洞報邑題의俱稱曖昧이다誣告ᄒᆞ와至承妥放之指令ᄒᆞ온즉其在擧行의極涉難便이오며告訴人에所習亦極痛駭라ᄒᆞ온等因를準此査仰佈ᄒᆞ오니

照亮ᄒᆞ시와査覈審辦ᄒᆞ시를要홈

開國五百四年七月二十三日法部主事丁國敎

高等裁判所 郎署

案 第三百五十九号

開國五百四年　八月　一日　起案

開國五百〃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丁國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案謄外部何如

案 第三百五十九号

曩日에韓山等地東學餘徒가西學을藉托ᄒᆞ고毆民掠財ᄒᆞ야前後行悖가無所不至온듸抵罪ᄒᆞ기의及ᄒᆞ야ᄂᆞᆫ敎師의게反為誣告ᄒᆞ야罪之有無ᄂᆞᆫ不閑ᄒᆞ고此類를庇護ᄒᆞ야各郡行政에妨碍가有ᄒᆞ니

貴部로셔該公館에照會ᄒᆞ와該敎師의게嚴飭ᄒᆞᆯ事로本大臣게셔

貴大臣게知照ᄒᆞ셔ᄉᆞᆸ더니尙無 回示ᄒᆞ시ᄋᆞᆸ기玆에仰佈ᄒᆞ오니 稟明照示ᄒᆞ시믈要흠

外部主事沈鍾舜 座下

案 第二百三十六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案訓[12]令于殷栗郡何如

案 第二百三十六号

貴報告書를接准ᄒᆞ은즉東徒의金啓文鄭宅根鄭寬善金以燮李京煥李根達趙昇贊史明哲金明學九漢을已為砲殺ᄒᆞ엿다ᄒᆞ온바此事件을詳査ᄒᆞ오니諸漢의罪犯이雖是難貸ᄂᆞ事係命案이라疎忽이不無ᄒᆞ니各人名下에某犯某罪을消詳懸錄ᄒᆞ야報告ᄒᆞ미可ᄒᆞᆯ事로玆에訓[13]令ᄒᆞ니[14]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미可흠

案 第二百三十七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崔文鉉

檢事局長

課長

12 원문에는 '指'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訓'로 적음.

13 원문에는 '指'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訓'로 적음.

14 원문에는 'ᄒᆞᆷ'이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ᄒᆞ니'로 적음.

顧問官

敬啓者左開案訓令于海州府何如

案 第二百三十七号

即接殷栗郡守報告ᄒᆞ은즉金啓文鄭宅根鄭寬善金以燮李京煥李根達趙昇贊史明哲金明學等이皆以東徒로或該郡文簿도燒蕩ᄒᆞ고或進上도攘奪ᄒᆞ고或軍器도奪取ᄒᆞ엿기로一切砲殺ᄒᆞ고報告等因據此査ᄒᆞ오니罪犯이雖大나性命이至重ᄒᆞ온데八九人을自郡擅殺ᄒᆞ미疎忽ᄒᆞᆫ慮가不無ᄒᆞᆫ지라自本[15]部로已為訓令于殷栗ᄒᆞ야査實報來ᄒᆞ라ᄒᆞ여시니[16]自貴府[17]로亦為別歧詳探ᄒᆞ야該諸犯의實狀을條列謄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미可홈

案

開國五百四年　九月　四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15 원문에는 '貴'이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本'으로 적음.

16 원문에는 '特'이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自本部로已為訓令于殷栗ᄒᆞ야査實報來ᄒᆞ라ᄒᆞ여시니'로 적음.

17 원문에는 '部'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府'라고 적음.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閔泳龍事件으로崔錫疇와韓用健을捉致再審次로漢城裁判所에訓令ᄒᆞ엿더니尙未捉得이온즉崔錫疇所居江華郡과韓用健所居海州郡에訓令ᄒᆞ야刻卽押上케ᄒᆞ미何如左案玆仰 裁決

案

貴郡居崔錫疇를本部의서査辦ᄒᆞᆯ件이有ᄒᆞ니別歧譏詞ᄒᆞ여刻卽拿捕ᄒᆞ야定羅押上ᄒᆞ되或失捕之弊가無케ᄒᆞ미可ᄒᆞᆫ故로玆에訓令ᄒᆞ으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미可흠

江華郡守 座下 二百四十一号

貴郡居韓用健 此下措語ᄂᆞᆫ右와如케ᄒᆞ시옵

海州郡守 座下 二百四十号

指令

大臣署理 協辦 檢事局

主任 柳遠聲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開案謄送于東萊府為荷

指令

貴[18]質稟書第一号를接據ᄒᆞ온즉興海郡民擾魁首에張相弘을捉囚ᄒᆞ고其前後罪狀을臚列馳報ᄒᆞ온바此을據ᄒᆞ야查ᄒᆞ오니如此兇悖ᄂᆞᆫ晷刻을容貸키不可ᄒᆞᆫ즉[19]重辟에處ᄒᆞᆷ이合ᄒᆞ오나欽恤ᄒᆞᄂᆞᆫ道에在ᄒᆞ야再三盤覈이不無ᄒᆞᆯ디니[20]該犯을更加[21]嚴究ᄒᆞ야供辭와侤音을詳細謄報ᄒᆞ시미可ᄒᆞ므로玆에指令ᄒᆞᆷ

法部大臣署理張博

東萊府觀察使池錫永 座下

案 第九十九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辛成默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18 원문에는 '貴' 앞에 '刻准'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함.

19 원문에는 '지'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즉'이라고 적음.

20 원문에는 '固當重辟에處ᄒᆞᆯ단즉審愼이ᄯᅳᆫ攸重이오니'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重辟에處ᄒᆞᆷ이合ᄒᆞ오나欽恤ᄒᆞᄂᆞᆫ道에在ᄒᆞ야再三盤覈이不無ᄒᆞᆯ디니'라고 적음.

21 원문에는 '一次'라고 하였으나 삭제하고 '更加'라고 적음.

敬啓者左案謄送于警廳如何

案 第九十九号

右獄囚에[22]韓用健을漢城[23]裁判所에移付ᄒᆞ엿숩기玆에照會ᄒᆞ오니 照亮ᄒᆞ와囚徒에移錄ᄒᆞ시믈要함

法部檢事局主事辛成默

警務廳訊問係文奎復 座下

案 第四百七十八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辛成默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案謄送于漢所如何

案 第四百七十八号

海州府押上ᄒᆞᆫ罪人韓用健을右獄에牢囚ᄒᆞ온바貴所審辦에關ᄒᆞᄋᆞᆷ기玆에通牒ᄒᆞ오니 照亮ᄒᆞ와裁決ᄒᆞ시믈要홈

22 원문에는 '의'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에'로 적음.

23 원문에는 '高等'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漢城'으로 적음.

漢城裁判所主事權在運 座下

案 第二百五十五号

大臣署理　　協辦　　檢事局

主任 辛成默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案訓令于海州府如何

案 第二百五十五号

本月二十五日에康翎郡守報告를接准ᄒᆞᆫ즉本郡匪類中巨魁를捕捉正法ᄒᆞᆫ者도有ᄒᆞ고逃躲未捉ᄒᆞᆫ者도有ᄒᆞᄆᆞᆫ기로同匪魁의就死와未捕者姓名을修成册上送ᄒᆞ고就中에吳元京李奉信을今為捉囚ᄒᆞ고玆에報告ᄒᆞᆫ다ᄒᆞ온바此를查ᄒᆞ오니該郡이係是 貴府管下인則該郡守報告中匪類金永夏吳可人吳憲根玄學振趙士汝曺舜承裴東明延順吉宋万永趙鵬道等은各別譏捉ᄒᆞ고在囚二漢을 貴府로押上ᄒᆞ야取供得情ᄒᆞᆫ後[24]權限內適用ᄒᆞᆯ律을照ᄒᆞ야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 施行ᄒᆞ미可홈

開國五百四年九月二十八日

法部大臣署理張博

24 원문에는 '후'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後'라고 적음.

海州府觀察使李鳴善[25] 閣[26]下

案 第二百五十七号

開國五百四年 十月 六[27]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署理 協辦 檢事局

主任 辛成默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案訓令于海州府如何

案 第二百五十七号

頃曩에貴第十三号報告를接准ᄒᆞ온즉殷栗郡報告內開에長連梧里浦日兵이東徒十三人을捉付本郡ᄒᆞ기에就其中九名이罪系囫赦ᄒᆞ고邑村民人이皆曰可殺이라ᄒᆞ기로使義兵으로砲殺하고該犯罪狀을成册修報ᄒᆞᄋᆞᆸ기로該成册을伴交ᄒᆞ여報告ᄒᆞᆫ다ᄒᆞ은바此를查ᄒᆞ온즉該犯의罪名만有ᄒᆞ고供案은無ᄒᆞ니事涉疎忽이오며且況命案의關係ᄂᆞᆫ律典의愼重이어늘該郡守

25 원문에는 '吉'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善'이라고 적음.

26 원문에는 '座'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閣'이라고 적음.

27 원문에는 '三'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六'이라고 적음.

가率爾이直行ᄒᆞ엿시니該犯의實狀이果系應死라도該郡守의擅殺ᄒᆞᆫ責은在所難免이라繼將論勘ᄒᆞ려이와貴府로別定查官ᄒᆞ야該犯의罪狀을綜實查覈ᄒᆞ며該郡守의擅殺ᄒᆞᆫ根由[28]를詳探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으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ᄒᆞ미可홈

開國五百四年十月六日

法部大臣署理張博

海州府觀察使李鳴善 閣下

訓令洪州府觀察使件 / 案 第二百五十八号

大臣署理　　協辦　　檢事局

主任 辛成默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洪州府觀察使件

敬啓者ᄂᆞᆫ韓山郡守報告書를接准ᄒᆞ은즉在囚匪類金善在徐可良을各別懲戢後嚴飭放送ᄒᆞ얏다ᄒᆞ온바此를查ᄒᆞ으니金徐兩犯의罪狀은該郡守의前報를據ᄒᆞ야本部에서指令ᄒᆞ되杖一百流三千里律에照ᄒᆞ야本郡으로處辦케ᄒᆞ야더니今에該郡守가放送ᄒᆞ얏다ᄒᆞ니此ᄂᆞᆫ部令을不遵ᄒᆞᆯ쓴더러該郡守의枉法之律은在所難免이니刻卽押上ᄒᆞ며兩犯段은更為捉囚ᄒᆞ야本部照律을依ᄒᆞ

28 원문에는 '情節'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擅殺ᄒᆞᆫ根由'라고 적음.

야措處케ᄒᆞᆯ事로洪州府에指令ᄒᆞ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을仰흠

案 第二百五十八号

韓山郡守報告書ᄅᆞᆯ頃接ᄒᆞ온즉該郡匪類金善在徐可良이東學에首倡[29]ᄒᆞ야行悖가無常ᄒᆞ다가西學을依藉ᄒᆞ야惡習이尤甚ᄒᆞ기로郡獄에捉囚ᄒᆞ고梟警을請ᄒᆞ온바命案至重ᄒᆞ니棒供馳報ᄒᆞ라指令ᄒᆞ야더니該報ᄅᆞᆯ又接ᄒᆞᆫ즉容貸를請ᄒᆞ야기該犯이前習을不悛ᄒᆞ고吳應老家產을打破ᄒᆞ고錢幾百兩을討索ᄒᆞ며官庭에發惡ᄒᆞ얏다ᄒᆞ니罪實難赦라大明律田宅條棄毁人器物計贓准竊盜論大典會通推斷条儒生이發惡於士主者杖今用笞一百流三千里今終身懲役律에照ᄒᆞ야貴郡으로處辦ᄒᆞᆫ後에形止馳報ᄒᆞ라指令하얏더니該報를刻准ᄒᆞᆫ즉部指令을伏奉ᄒᆞ온바該犯이旣自知戢ᄒᆞ야改過遷善ᄒᆞᄋᆞᆸ고人命이至重ᄒᆞ기에一縷之命을容貸ᄒᆞ야各別懲戢ᄒᆞᆫ後에嚴飭放送緣由를報告ᄒᆞᆫ다ᄒᆞ은바此를查ᄒᆞ으니金徐両漢의罪犯은容貸키不可ᄒᆞᆫ故로已為照律ᄒᆞ야使之懲辦케ᄒᆞᆫ거신데該郡守의前後所報가輕重이不一ᄒᆞ야准信키難ᄒᆞᆯᄲᅮᆫ더러本部照律ᄒᆞᆫ後에擅自放送ᄒᆞ얏시니該郡守의妄生異議ᄒᆞ야枉法ᄒᆞᆫ律은在所当勘이라本部에서拿覈懲辦ᄒᆞᆯ터이니刻卽押上ᄒᆞ고違令放送ᄒᆞᆫ委折을秘探報來ᄒᆞ며金徐両犯은 貴府로更為捉囚[30]ᄒᆞ야本部照律을依ᄒᆞ야處辦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미可흠

法部大臣署理

洪州府觀察使李勝宇 閣[31]下

29 원문에는 '唱'이라고 적었다가 '口'의 위에 붉은 글씨로 '亻'을 덧씀.

30 원문에는 '大'로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ᄒᆞ'라고 적음.

31 원문에는 '座'로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閣'이라고 적음.

案 第五百七十九号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案通牒于漢城裁判所何如

案 第五百七十九号

韓用健와崔錫疇의事件文蹟을繳交ᄒᆞ으니照領ᄒᆞ시믈要ᄒᆞ야玆에通牒홈

法部檢事局長申載永

漢城裁判所檢事崔文鉉 座下

再韓用健保放狀을件交ᄒᆞ으니一切領收ᄒᆞ시옵

指令海州府件 / 案 第一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指令海州府件

海州府報告書ᄅᆞᆯ接准ᄒᆞ온즉東魁姜達祚를府獄에嚴囚ᄒᆞ고指令을待ᄒᆞᆫ다

ᄂᆞᆫ等因이온바此ᄅᆞᆯ査ᄒᆞ오니審愼이不無ᄒᆞᆫ지라供案을上送ᄒᆞ라指令ᄒᆞ미何如ᄒᆞ올지玆에 裁決을仰흠

案 第一号

載寧郡下吏姜達祚ᄅᆞᆯ府獄에嚴囚ᄒᆞᆫ事로舊曆十二月四日에封發ᄒᆞᆫ報告書ᄅᆞᆯ接閱ᄒᆞ온바該犯이重囚에旣係ᄒᆞ고律文이隨重ᄒᆞ니審愼이不無ᄒᆞᆯ지라供案을詳錄上送ᄒᆞ야擬照ᄅᆞᆯ便케ᄒᆞᆯ事로玆에指令흠

法部大臣

海州府觀察使李鳴善 閣下

訓令全州府件 / 案 第十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全州府件

左案을依ᄒᆞ야訓令ᄒᆞ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을仰흠

案 第十号

本月十日에 貴報告書第一号ᄅᆞᆯ接准하온즉本府警務官補金漢鼎의報告書ᄅᆞᆯ准査ᄒᆞ와兵丁을謀換ᄒᆞ야吏校에게報憾코저ᄒᆞ여東匪餘黨을締結ᄒᆞ야

軍器를藏寘ᄒᆞ고發文掛榜ᄒᆞᄂᆞᆫ府下悖類朴俊尙等六漢은已為砲殺ᄒᆞ고崔在卜等十一漢을次第查質後酌處計料ᄒᆞ고金道成等二十五漢을先機逃躲ᄒᆞ왓기로不日詗捕케ᄒᆞ고鎭衛中隊長金潤昌은悖類에게兵丁圖差次로約賂先納ᄒᆞ미證招가丁寧ᄒᆞ고悖類의任寘ᄒᆞᆫ軍器ᄂᆞᆫ鎭衛隊을先為推給이라ᄒᆞ온바此를查ᄒᆞ오니此等悖類ᄂᆞᆫ容貸키不可ᄒᆞ나死刑以上은本部에先報ᄒᆞ야指令을待ᄒᆞᆫ後處辦ᄒᆞᆯᄌᆞᆯ노訓飭이已有ᄒᆞ고軍法以外에ᄂᆞᆫ砲殺ᄒᆞᄂᆞᆫ律은無ᄒᆞ거ᄂᆞᆯ朴俊尙等六漢을徑先砲殺ᄒᆞ얏스니律例에大違ᄒᆞ야重責을難免ᄒᆞᆯ지오崔在卜等十一漢은嚴覈得情ᄒᆞ야貴府로輕重을分ᄒᆞ야適当ᄒᆞᆫ律노照ᄒᆞ야本部에質稟ᄒᆞ며在逃ᄒᆞᆫ金道成等二十五漢은刻期詗捉ᄒᆞ며軍器餘數ᄂᆞᆫ期卽搜覓ᄒᆞᆫ後前後形止을一切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미可홈

法部大臣 趙

全州府觀察使趙民熙 閣下

訓令全州府件 / 案 第十一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全州府件

左案을依ᄒᆞ야謄送ᄒᆞ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을仰홈

案 第十一号

本月十六日에貴電報를接據ᄒᆞᆫ즉前日泰仁等地嘯聚發通匪魁連加譏訶發遣兵丁巡檢捉得漏網巨魁中十八漢査覈得情若以報告則差晩正法之節速示라ᄒᆞ온바此를査ᄒᆞ오니今에捕獲ᄒᆞᆫ十八漢이向日朴俊尙等의餘黨인지得情ᄒᆞ기前에遽爾典刑을施치못ᄒᆞᆯ터이니其藉托聚黨ᄒᆞᆫ源由를捧供報告ᄒᆞ야指令을待ᄒᆞ야擧行ᄒᆞ믈爲ᄒᆞ야玆에訓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미可홈

法部大臣 趙

全州府觀察使趙民熙 座下

再 答電을寄ᄒᆞ얏더니桿線이中斷ᄒᆞ야電信이未通ᄒᆞ기로此訓令을發ᄒᆞ으니捧供後報告가遲後ᄒᆞ깃거든電路接線ᄒᆞ기를待ᄒᆞ야擧槩先示ᄒᆞ미可홈

訓令海州府件 / 案 第十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檢事局

課長

顧問官

訓令海州府件

左案를依ᄒᆞ야謄送ᄒᆞ미何如ᄒᆞ을지玆에裁決를仰홈

案 第十号

內部照會를接准ᄒᆞ와長淵郡守廉仲模의報告書와不軌白楽喜等의供案을照得ᄒᆞ온즉 貴府所管海州郡檢丹坊居柳學善과同郡同坊손이고긔居金昌守와同郡墨坊靑龍寺留金亨鎭과大德坊居崔昌祚와文化遮牆洞居名不知李哥와長淵薪花坊彬陽洞居金在喜等諸漢이不軌白楽喜等과亡計를潛釀ᄒᆞ다가事覺被捉ᄒᆞᄂᆞᆫ境에至ᄒᆞ야先機逃躲ᄒᆞ얏ᄂᆞᆫ되本郡으로捉得키難타ᄒᆞ은바此를査ᄒᆞ오니諸漢에所犯情節이關係極重ᄒᆞᆫ지[32]라晷刻을容貸키不可ᄒᆞ니令到ᄒᆞᆫ卽時에方署을另設ᄒᆞ야上項諸犯을[33]刻期訊捉ᄒᆞ되一漢이라도漏網ᄒᆞᆫ弊가無케ᄒᆞ며弋獲ᄒᆞᆫ後府獄에嚴囚ᄒᆞ고前後情形를捧供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미可홈

建陽元年三月 日

法部大臣 李

海州府觀察使李鳴善 閣下

案 第十六号

建陽元年 三月 十二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32 원문에는 '極為係重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關係極重ᄒᆞᆫ지'라고 적음.

33 원문에는 '上項諸犯을'의 뒤에 '方署을另設ᄒᆞ야'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앞에 적음.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左開案를照复內部何如

案 第十六号

貴照會第十六号를接准ᄒᆞᆫ즉不軌白樂喜等를捉囚取招報告ᄒᆞᆫ다ᄂᆞᆫ海州府長淵郡守廉仲模의報告書를准査ᄒᆞ오니事関貴部ᄒᆞ기로該報告와供案를送交ᄒᆞ니該郡에趕速指令ᄒᆞ라ᄒᆞ오신바此를査ᄒᆞ으니白漢等의所犯이俱係難赦키로當律를照ᄒᆞ와該郡에指令ᄒᆞ얏ᄉᆞ오며在逃諸漢은刻卽訶捕ᄒᆞᆯ事로海州府에訓令를已發하옵고該報告와供案은繳交ᄒᆞ으니

照亮ᄒᆞ시믈望홈

建陽元年三月 日

法部大臣 李

內部大臣 朴定陽 閣下

案 第十七号

建陽元年 三月 十二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左開案를照复內部何如

案 第十七号

貴第十七号照會ᄒᆞᆯ接准ᄒᆞ온즉開城府總巡金天圭의報告書內開에平山匪魁朴大連申昌植朴基英三漢을捉囚等因이라事関貴部ᄒᆞ오니照亮裁處ᄒᆞ라ᄒᆞ시온바此를查ᄒᆞ오니此等罪犯를尋常히處辦키不可ᄒᆞᆫ故로審問를另加ᄒᆞ야擬律馳報ᄒᆞᆯ事로該府觀察使의게訓飭ᄒᆞ옵고玆에照复ᄒᆞ오니

照亮ᄒᆞ심를要흠

建陽元年三月 日

法部大臣 李

內部大臣 朴定陽 閣下

訓令開城府 第十号 / 案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開城府 第十号

左案를依ᄒᆞ야謄送ᄒᆞᆷ이何如ᄒᆞ을지玆에裁決를仰ᄒᆞᆷ

案

今에內部大臣朴定陽의第十七号照會를接ᄒᆞᆫ즉開城府總巡金天圭第六号報告書內開에平山地匪魁朴大連申昌植朴基英三漢를捉囚等因이라事係貴部온즉照亮裁處ᄒᆞ라ᄒᆞ온바此를査ᄒᆞ오니此時此犯를尋常히措置키難ᄒᆞᆫ지라 貴觀察使ᄂᆞᆫ審問을嚴加ᄒᆞ야除質稟事件外에職權內로應辦ᄒᆞᆯ罪犯이거든判決를直行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미可ᄒᆞᆷ

建陽元年三月 日

法部大臣 李

開城府觀察使 李敎榮 閣下

再此等罪犯이有ᄒᆞᆯ時ᄂᆞᆫ 貴府로셔訊問을先行後擬律ᄒᆞ야馳報ᄒᆞᆷ이式例에妥合이거ᄂᆞᆯ今에 貴府總巡이內部에報告만有ᄒᆞ고 貴觀察使ᄂᆞᆫ本部에報告가尙遲ᄒᆞ니甚히訝惑ᄒᆞ기로玆에另訓ᄒᆞ오니理由를詳細具報ᄒᆞᆷ이可ᄒᆞᆷ

訓令海州府件 / 案 第十四号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仝月 仝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海州府件

左案을依ᄒᆞ야謄送ᄒᆞᆷ이何如ᄒᆞ을지玆에 裁決을仰ᄒᆞᆷ

案 第十四号

貴報告書第二十一号ᄅᆞᆯ接准ᄒᆞᆫ즉四月二十四日到付長淵郡守廉仲模의報告內開에本郡在囚白樂喜ᄂᆞᆫ已為砲殺ᄒᆞ고白樂喜로同謀ᄒᆞᆫ全良根白基貞金啓祚와陷從ᄒᆞᆷ金義淳白樂圭等을本月六月에一併處絞라ᄒᆞ고同報告內에視察官印信及文書封을查覓次로多岐譏訶ᄒᆞ야松禾匪魁康成日同黨康云永과本郡山砲李承祚等ᄅᆞᆯ今乃捉得ᄒᆞ야嚴覈盤問ᄒᆞᆫ즉康云永招內에矣身이前以東徒로又入山砲ᄒᆞ야去月에與康成日노起包于牧甘地ᄒᆞ야視察官과羅卒二人砲殺ᄒᆞᄂᆞᆫ光景을目擊ᄒᆞ고康成日의奪去印信及文書封則莫知去就라ᄒᆞ고李承祚招內에徃于起包處라가康成日康云永의東西分坐ᄒᆞ고視察官의遇害ᄒᆞᄂᆞᆫ光境을見ᄒᆞ얏다ᄒᆞ은바康李兩漢이前入東徒ᄒᆞ고後入山砲ᄒᆞ야多般作梗이다가罪犯罔赦ᄒᆞ니斷不假息이라視察官의印信及文書奪去之康成日段은不日訶捕之意로松禾郡에嚴飭ᄒᆞ얏스나尙未就捉이옵고康云永李承祚兩漢은一併具格嚴囚ᄒᆞ라該郡에指飭ᄒᆞ고玆에報告ᄒᆞ오니指令을要ᄒᆞᆫ다ᄒᆞ온바此를查ᄒᆞ오니該三漢에前後所犯이果是罔赦라容貸키不可ᄒᆞ니譏訶을另加ᄒᆞ야刻期拿捕ᄒᆞ며康云永李承祚의供辭ᄂᆞᆫ報告에混謄ᄒᆞ얏슨즉昭[34]詳考閱키難便ᄒᆞᆯ쓴더러供案을別俱粘報ᄒᆞᆷ이前例가已有ᄒᆞᆫ즉該兩犯을更加盤覈ᄒᆞ야從實得情ᄒᆞᆫ後[35]當律노擬照ᄒᆞ고供

案을另具馳報[36]ᄒᆞ야本部指令을待ᄒᆞᆯ事로[37]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홈이可홈

海州府觀察使署理參書官金孝益 座下

法部大臣 韓

案 第十八号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敬啓者左案照复軍部何如

案 第十八号

貴照會第二十三[38]号를接准ᄒᆞ와淸州地方隊參領具永祖所報內에更肆東學ᄒᆞᄂᆞᆫ徐石汝金時默과林景元子道浩를捉囚查覈ᄒᆞᆫ事件을閱悉이은바此를査ᄒᆞ으니該犯等의倖免復萌이痛駭가莫甚이오며見漏旋捉이理所必至

34 원문에는 '照'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昭'라고 적음.

35 원문에는 'ᄒᆞ야'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ᄒᆞᆫ', 검은 글씨로 '後'라고 적음.

36 원문에는 '別紙成錄ᄒᆞ야□□□報'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供案을另具馳報'라고 적음.

37 원문에는 'ᄒᆞᆷ이可ᄒᆞ기로'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ᄒᆞᆯ事로'라고 적음.

38 원문에는 '四'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三'으로 적음.

라固當卽地勘斷이오나命案攸関이온즉審査를更加ᄒᆞᆫ後處辦ᄒᆞ깃ᄉᆞ오니
貴部로셔該參領에게訓飭ᄒᆞ으셔該犯等을公州裁判所에[39]拿付케ᄒᆞ심을
要ᄒᆞ야玆에照复ᄒᆞ오니照亮ᄒᆞ심을務望홈

法部大臣 韓

軍部大臣李允用 閣下

訓令公州裁判所件 / 案 第二十五号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公[40]州裁判所[41]件

左案을依ᄒᆞ야謄送홈이何如ᄒᆞ을지玆에裁決을仰홈

39 원문에는 '淸州郡守에'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公州裁判所에'라고 적음.

40 원문에는 '淸'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公'으로 적음.

41 원문에는 '郡'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府'로 적었으나, 다시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裁判所'라고 적음.

案 第二十五号

軍部大臣照會第二十三号를刻准ᄒᆞᆫ즉內開에卽接淸州地方隊參領具永祖第十一号報告內淸州山外面近地에前日匪魁徐石汝金時默林景元等이潛跡來往ᄒᆞ야更肆東學ᄒᆞ야發通設接ᄒᆞ기密送兵丁ᄒᆞ야徐石汝金時默과林景元의子道浩를捉來ᄒᆞ고三漢家에셔東學文書와所用諸具ᄅᆞᆯ搜覓現納故로查閱ᄒᆞᆫ즉所謂東經大全一卷은出於徐漢家라ᄒᆞ고緇布冠二件과東徑大全一卷과今年二月出ᄒᆞᆫ敬通謄書冊子一卷라甲午年의東徒恣橫ᄒᆞ던名帖等雜蹟은出於金漢家라ᄒᆞ고今年二月出敬通元本은出於林漢家라ᄒᆞ고且兵丁口告內徐石汝家後院에精掃設爐ᄒᆞ야爐未冷而香甚多라ᄒᆞ은바三漢을捉入究問ᄒᆞᆫ즉徐石汝所告內矣身이曾以巨魁孫士文包內接主로逃躲潛伏ᄒᆞ엿다가今幸還接則禁飭之下에豈敢更為東學이리오東徑大全은曾前所存者이온ᄃᆡ還接後未及出棄ᄒᆞ야尙在家中이오後院香爐ᄂᆞᆫ果非矣身所設則莫知其故이오나旣有入聞ᄒᆞ야至此被捉ᄒᆞ니無所發明이라ᄒᆞ고金時默所告內矣身도亦以孫士文包內接主로避身栖屑ᄒᆞ다가還接ᄒᆞᆫ후徐石汝가更起東學ᄒᆞᆯ意로矣身의게送通ᄒᆞ고二月十日에徐石汝家의셔致誠ᄒᆞᄂᆞᆫᄃᆡ矣身이雖未往參이나巨魁姜采西가種種往來ᄒᆞ엿다ᄒᆞ은즉徐姜兩漢이必是主張이오家中所在東學諸物은盡是姜采西의任賓라ᄒᆞ고指東指西에耐刑不告며林景元子道浩所告內矣父가久為逃避타가近雖往來나恒不在家오며敬通은徐石汝가送通ᄒᆞ야留賓ᄒᆞᆫ거시오나莫知事故라ᄒᆞ온바徐金兩漢은衆招와執贓이如是的確ᄒᆞ니合賓重辟이노며林道浩ᄂᆞᆫ年幼沒覺ᄒᆞ고次知로捉來ᄒᆞ얏ᄂᆞᆫ즉合有分揀이오니査照指令等因據此查三漢의罪犯이貴部에關ᄒᆞᆫ刑案이오니照亮裁處ᄒᆞ라ᄒᆞ온바此ᄅᆞᆯ查ᄒᆞ니右三漢의所犯은暴刻을容貸키不可ᄒᆞ나審克ᄒᆞᄂᆞᆫ道에疎忽ᄒᆞᆯ慮가不無ᄒᆞ기로軍部에知照ᄒᆞ야該參領에게訓飭ᄒᆞ야該犯等을貴裁判所로[42]拿付케ᄒᆞ여스니押到

ᄒᆞᆫ後盤覈을更加ᄒᆞ야從實捧招ᄒᆞ야供案을另具ᄒᆞ며證據ᄒᆞᆯ物를一切上送ᄒᆞ야本部指令을待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法部大臣 韓

公州裁判所[43]判事 座下

訓令海州裁判所件 / 案 第二十号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海州裁判所件

左案을依ᄒᆞ야謄送ᄒᆞᆷ이何如ᄒᆞ을지玆에 裁決를仰ᄒᆞᆷ

案 第二十号

貴報告書第三十号ᄅᆞᆯ接准ᄒᆞᆫ즉部訓令을奉准ᄒᆞ와松禾匪魁康成日은另加

42 원문에 '郡으로'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府에'라고 적었으나, 다시 삭제하고 붉은 글씨로 '裁判所로'라고 적음.

43 원문에는 '淸州郡守'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公州裁判所'라고 적음.

譏捉ᄒᆞ고長淵郡在囚山砲康云永李承祚等에所犯情節을更加盤覈ᄒᆞ야供案을另具馳報ᄒᆞ야以為轉報케ᄒᆞᆯ意로翻飭該郡이ᄒᆞᆯ드니該郡守廉仲模報告內에在逃康成日은廣布譏訶ᄒᆞ옵고在囚康云永李承祚等에所犯情節을更加嚴覈이다供案을修報ᄒᆞ옵기로該供案을上送ᄒᆞ오니查照ᄒᆞ옵셔指令ᄒᆞ라ᄒᆞᆫ바此ᄅᆞᆯ查ᄒᆞ니姜云永供辭에ᄂᆞᆫ姜成日의隨從이라ᄒᆞ고李承祚의供辭에ᄂᆞᆫ康云永이가康成日노同為班首로東西首坐ᄒᆞ얏다ᄒᆞ얏스니罪犯의首從ᄅᆞᆯ不分ᄒᆞ면照辦키難ᄒᆞᆫ지라兩犯을更加查覈ᄒᆞ야首從을分揀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建陽元年六月二十三日

法部大臣 韓

海州府觀察使署理參書官海州裁判所檢事金孝益 座下

訓令海州裁判所件 / 案 第二十三号

建陽元年 七月 九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元年 七月 十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海州裁判所件

左案을依ᄒᆞ야謄送ᄒᆞᆷ이何如ᄒᆞ을지玆에 裁決를仰ᄒᆞᆷ

案 第二十三号

貴報告書第三十三号를接准ᄒᆞᆫ즉槩称安岳郡守柳冀大의報告ᄅᆞᆯ據ᄒᆞ야鴟河浦에서日人刺殺ᄒᆞᆫ金昌洙ᄅᆞᆯ捉囚捧招報告等因이은바此ᄅᆞᆯ査ᄒᆞ니該犯의行為가極히悖惡ᄒᆞᆫ지라暑刻을容貸치못ᄒᆞᆯ지나重案에係關ᄒᆞᆫ쓴더러安岳郡守報告와 貴所에서別遣ᄒᆞᆫ耳目의回告內에ᄂᆞᆫ金昌洙가刺殺日人[44]ᄒᆞ얏ᄂᆞᆫ듸該犯供案에ᄂᆞᆫ鴟河浦事ᄅᆞᆯ全然不知라ᄒᆞ야스니安岳郡守와 貴所耳目은分明ᄒᆞᆫ證據ᄅᆞᆯ從何認得인지該犯의供案과自相矛盾ᄒᆞᆫ즉遽爾處辦키有難ᄒᆞ니安岳郡에訓飭ᄒᆞ고貴所耳目의게昭詳採問ᄒᆞ야刺殺ᄒᆞᆫ確據ᄅᆞᆯ綜詳馳報ᄒᆞ며該犯도盤覈을另加ᄒᆞ야期於得情ᄒᆞ야更卽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建陽元年七月九日 法部大臣 韓

海州府觀察使署理參書官海州裁判所檢事金孝益 座下

案 第三十六号

建陽元年 七月 十三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朴齋璿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44 원문에는 '刺殺日人'의 뒤에 'ᄒᆞᆷ이明若觀火라'로 적었다가 삭제함.

左案을照复內部何如

案 第三十六号

貴照會第三十五号를接准ᄒᆞᆫ즉海州府安岳郡鴟河浦의서日人를刺殺ᄒᆞᆫ金昌洙를查覈措辦等因이온바此를查ᄒᆞ오니該府報告와該犯供案이敝部에도來到하얏ᄂᆞᆫᄃᆡ報辭와供艸가矛盾이有ᄒᆞ기로更查馳報ᄒᆞᆯ事로該府에業已發訓[45]ᄒᆞ얏ᄉᆞᆸ기玆에照复ᄒᆞ오니照亮ᄒᆞ심을要흠

建陽元年 七月 十三日

法部大臣韓

內部大臣朴定陽[46] 閣下

訓令忠淸南道裁判所件 / 案 第四十号

建陽元年 十二月 二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郭應淳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45 원문에는 '訓' 뒤에 '令'이라고 적었다가 삭제.

46 원문에는 '署理內部協辦申奭熙'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朴定陽'이라고 적음.

訓令忠淸南道裁判所件

左案을依ᄒᆞ야謄送ᄒᆞᆷ이何如ᄒᆞ올지玆에 裁決를仰ᄒᆞᆷ

案 第四十号

貴報告書第八十一号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開에舒川郡守柳冀南의報告書ᄅᆞᆯ接准ᄒᆞ온즉本郡民徐昌吉이가年前東擾에投名厥黨ᄒᆞ야凌辱官長ᄒᆞ고侵虐平民ᄒᆞ며韓舒兩邑을陷敗ᄒᆞᆫ許多罪狀은非但郡守의稔知라隣邑의指目이오나漏網未捉ᄒᆞᄋᆞᆸ더니入錄西學ᄒᆞ야藉勢設技ᄒᆞ고締結悖類ᄒᆞ야同閈士夫ᄅᆞᆯ結縛推捉ᄒᆞ야私施惡刑에討索錢財ᄒᆞ니頃者所犯이綽有當律커ᄂᆞᆯ復肆惡習은法難容貸요本郡下吏劉漢表는年前東擾의稱以運粮接主ᄒᆞ고本郡水陸軍器ᄅᆞᆯ無難奪取ᄒᆞ야蹂躪韓舒ᄒᆞ고錢穀執留와牛瀼排定에孰不畏熘이며孰不懷憤이리오連膂南匪ᄒᆞ야陷敗数城ᄒᆞ고京兵來討에從以漏網타가與同黨玄道河로托名西學이든지梟音을未革ᄒᆞ고作孽湖南타가玄哥ᄂᆞᆫ被捉全府하고劉漢은又為逃躲ᄒᆞ야咸悦地에逗遛ᄒᆞᄋᆞᆸ기에發校捉來ᄒᆞ야幷與徐昌吉노定隸押上ᄒᆞ니此等妖腰亂領은會衆梟警ᄒᆞ야以雪民寃이法所當然이라ᄒᆞ온바上項徐昌吉과劉漢表ᄅᆞᆯ府庭에捉入ᄒᆞ야前後行為ᄅᆞᆯ質問ᄒᆞ온즉一如郡報에節節自服ᄒᆞ오니苟如所為면宜施一律故로玆以報告ᄒᆞ오니查照ᄒᆞ심을望홈等因인바此ᄅᆞᆯ查ᄒᆞ니此等罪犯은雖係罔赦나成案ᄒᆞᆫ供辭가旣無ᄒᆞᆫ즉但以節節自服이라泛稱ᄒᆞᆫ報告로ᄂᆞᆫ擬斷키有難ᄒᆞᆫ지라該兩犯을更加盘覈ᄒᆞ야綜詳具供案馳報ᄒᆞᆫ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홈이可홈

建陽元年十二月四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忠淸南道裁判所判事李乾夏 閣下

訓令忠淸南道件 / 案 第五十号

建陽元年　十二月　二十二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忠淸南道件

左案을依ᄒᆞ야謄送ᄒᆞᆷ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를仰ᄒᆞᆷ

案 第五十号

貴報告書第一百十五号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槩舒川郡押來罪人徐昌吉劉漢表等의漏網東魁ᄒᆞ고投入西學ᄒᆞ야前後作梗ᄒᆞᆫ情節을各其取供ᄒᆞᆫ後曺京先은別無苛責故로姑為保放ᄒᆞ고供辭ᄂᆞᆫ別錄報告라ᄒᆞᆫ바此를査ᄒᆞ니前度第八十一号貴報告書에ᄂᆞᆫ舒川郡守報告ᄅᆞᆯ接據ᄒᆞ야徐昌吉의投名東擾ᄒᆞ고凌辱官長ᄒᆞ고侵虐平民ᄒᆞ며韓舒兩邑을陷敗ᄒᆞᆫ許多罪狀과劉漢表의水陸軍器ᄅᆞᆯ無難奪取ᄒᆞ야蹂躪韓舒ᄒᆞ고連膓南非ᄒᆞ야陷敗数城ᄒᆞᆫ前後行為ᄅᆞᆯ捉入府庭ᄒᆞ야質問ᄒᆞᆫ즉一如郡報에節節自服이라ᄒᆞ엿더니今此供辭에ᄂᆞᆫ專事推諉ᄒᆞ야只要發明ᄒᆞ엿스니前次質問時自服은何人의自服인지兩犯이罪案이先重後輕은殊涉可訝오貴報의辭意가前後不同ᄒᆞᆷ은尤所加駭ᄲᅮᆫ더러該郡所報ᄂᆞᆫ確據가自在ᄒᆞ며該供의稱寃은證憑이全無ᄒᆞ고劉犯의罪狀은曺京先의供辭에已著ᄒᆞ얏고曺京先段은劉犯供內에稱儒徒率領砲軍ᄒᆞ고勒奪矣妾이라ᄒᆞ얏ᄂᆞᆫᄃᆡ何無一次對質ᄒᆞ야結辭成案인지該三犯을另加

盘覈ᄒᆞ야從實得情ᄒᆞ되만일該犯等이一向不腹커든그凱昧ᄒᆞᆫ確據ᄅᆞᆯ昭詳取質ᄒᆞ야具案報來ᄒᆞ야以便歸決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建陽元年十二月二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忠淸南道裁判所判事李乾夏 閣下

案 第一号

建陽二年 一月 十二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萬敎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左案照會度支部何如

案 第一号

槐山郡下吏金海鵬의訴狀을接ᄒᆞ온즉內開에槐山郡이甲午十月分東徒作梗時에各項文簿燒火되와本郡에셔報告ᄅᆞᆯ未詳이ᄒᆞ와京邸吏의게相左되온事ᄅᆞᆯ乙未八月分에上來歸正妥貼ᄒᆞ읍고未納公錢은昨年에度支部에報告ᄒᆞ와다蕩滌되와ᄉᆞᆸ늡ᄂᆞᆫ듸今忽丙申十月分에本部에셔忠州觀察府에訓

令ᄒᆞ옵셔公納對質歸正次로上使ᄒᆞ라ᄒᆞ옵시니公納對質할事가無ᄒᆞ와度支部文蹟을粘連仰訴ᄒᆞ오니洞燭事狀ᄒᆞ옵셔更為訓令ᄒᆞ와毋至侵漁之地伏祝이라ᄒᆞ온바此ᄅᆞᆯ查ᄒᆞ오니此案이去乙未七月十九日에各邑公納中愆滯不納ᄒᆞᆫ京邸吏와京差人姓名을送交ᄒᆞ신 貴部照會ᄅᆞᆯ據ᄒᆞ야漢城裁判所로仍卽越送ᄒᆞ야督刷케ᄒᆞ얏숩더니槐山郡色吏金海鵬이ᄂᆞᆫ本郡邸吏鄭鎭煥과對質ᄒᆞᆫ事가有ᄒᆞ다ᄒᆞ기로訓飭押上케ᄒᆞ얏숩는ᄃᆡ現接該訴狀內에作年에度支部에報告ᄒᆞ와다蕩滌되왓다ᄒᆞ엿ᄉᆞ오니該邸吏가實有愆納이오며該欠逋가果係何時은지若係甲午以前이온즉自歸勿論이오나前後如何ᄒᆞ온事件이未詳ᄒᆞ와玆에仰佈ᄒᆞ오니

照亮示明ᄒᆞ심을要홈

建陽二年一月十二日

法部檢事局長申載永

度支部司稅局長李海萬 閣下

訓令慶南件 / 案 第十五号

建陽二年 六月 二十八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金昌炯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慶南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玆에 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五号

貴管下山淸郡黃山居金倛升等의訴狀을接閱ᄒᆞᆫ즉內開夫為人子父讐未報가于今四年의至此告訴之境이온즉矣等之撤天大恨을細細垂察焉ᄒᆞ쇼셔矣父千洛이가本以鮮事之人으로因一郡公擧ᄒᆞ와甲午年分의為本郡座首時의適熾東徒乱類ᄒᆞ와人民이支保無路ᄒᆞ올지라身為亞官ᄒᆞ와不無防守之이온故로設謨周施ᄒᆞᄋᆞᆸ다가害身燒骨之境이온즉矣等之其所大恨이倘復如何ᄒᆞ오릿가矣等三兄弟가為人子者ᄒᆞ와豈無當場報仇이오릿가만은其時矣父之被害時犯手者ᄂᆞᆫ閔桂若閔性彦梁允文三漢이其時魁首가되야無数乱類輩를率ᄒᆞᄋᆞᆸ고聚散이無雙ᄒᆞ온즉以三兄弟弱身으로强弱不同ᄒᆞ와曾未報仇이옵고呈營呈邑의至此呼訴於法部之境이온즉始知報讐之日이온지라矣等撤天大恨을細細洞燭後에特為嚴題ᄒᆞ시와使該觀察府로右三漢을期日捉給ᄒᆞ시면一刀로報仇ᄒᆞ와以雪萬一之恨ᄒᆞ오리니玆에泣血鳴寃於嚴明之下하오니快滌此恨之地를望홈等因인바此를査ᄒᆞ니其父橫死에子欲復讐ᄂᆞᆫ據理當然이나此係命案인즉不可無行査이니到卽閔桂若閔性彦梁允文三漢을別般詗獲ᄒᆞ야實犯有無를詳覈具報ᄒᆞ야以法措處케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흠

建陽二年六月廿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慶尙南道裁判所判事曺始永 閣下

訓令醴泉郡守件 / 案 第壱号

建陽二年　六月　二十二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金昌炯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醴泉郡守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玆에 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壱号

貴郡前郡守金近淵報告書第一号를接准ᄒᆞᆫ즉內開本郡이自甲午로三歲之內에二経東擾義攘ᄒᆞ야弊敗之狀은業已京鄕聞知者이다온郡守昨年七月到任以後로邑弊也와民瘼也許多瘡疣을晝思夜度ᄒᆞ와期圖蘇醒之望而就其中最先急務者舊未上納故로反閱文簿則盡在燒失에七零八落이온바甲六以後上納中身死逃亡指徵無處者之逋가至為数萬餘両之多而未由刷清이견다에甲午年分前前趙等在郡時東徒猖獗ᄒᆞ야全道也之父子가俱以匪魁로甚至有黑夜掩邑之擧而脫身亾命에永沒形跡則自邑으로搜驗其田土ᄒᆞ야已為屬公이온바乙未夏에全道也之子世鎭이替身徃訴于前安東府ᄒᆞ야至有推還之擧矣러니本年冬稅務視察官이到郡ᄒᆞ와以為勝賊之功은在此ᄒᆞ고藉沒之土ᄂᆞᆫ屬他가可謂越人耕而趙人藉之라ᄒᆞ야照會於安東府ᄒᆞ고訓令于本郡ᄒᆞ야更以此土로劃付補逋之意로成給完文이自在郡上故로郡守其在為上納刷逋帳之地에擬其所在公蹟ᄒᆞ야以此由修報于觀察使ᄒᆞᄋᆞᆸ고果為從時價放賣ᄒᆞ야已

入于甲午結已上納中矣러니昨冬良中에龍宮居南敬益從中突出ᄒᆞ야以已屬公充上納之物노看作奇貨ᄒᆞ고衝動世鎭ᄒᆞ야佯若買土ᄒᆞ고借名世鎭ᄒᆞ야囑邑而未得售奸ᄒᆞ고呈府而已判題決則宜其知過而退息이거ᄂᆞᆯ撐肚之慾이猶冀僥倖ᄒᆞ야又呈京部ᄒᆞ와至下訓令之鄭重ᄒᆞ니噫彼南民이計雖巧矣나情固譎矣라此等挾雜之獘를若不猛加嚴懲이면法無可施之處故로玆에據實仰報ᄒᆞ오니照亮ᄒᆞ옵셔依律勘處ᄒᆞ시와俾懲悖習ᄒᆞ심을望홈等因인바此를查ᄒᆞ니全犯行悖가果有確據면罪固罔赦라自當隨獲隨勘ᄒᆞ려니와至於庄土之藉沒은叅以新式에極涉無據ᄒᆞᆫ즉該裁判所公決이自有ᄒᆞᆯ터이니恪遵施行ᄒᆞ며嗣後此等案件을擧報ᄒᆞᆯ時ᄂᆞᆫ 貴觀察府를經ᄒᆞ야轉報케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흠

建陽二年六月二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醴泉郡守李寅聲 座下

照會高所件 / 案 第八十六号

建陽二年 六月 五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金昌炯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照會高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玆에 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八十六号

醴泉郡守金近淵의報告內開本郡이自甲午로三歲之內에二經東擾義擾ᄒᆞ야弊敗之狀은業已京鄕聞知者이다이온郡守昨年七月到任以後로邑弊也民瘼也許多瘡疣을晝思夜度ᄒᆞ와期圖蘇醒之望而就其中最先急務者舊未上納故로反閱文簿則盡在燒失에七零八落이온바甲六以後上納中身死逃亾指徵無處者之逋가至為数萬餘両之多而未由刷淸이견다에甲午年分前前趙等在郡時東徒猖獗ᄒᆞ야全道也之父子가俱以匪魁로甚至有黑夜掩邑之擧而脫身亾命에永沒形跡則自邑으로搜驗其田土ᄒᆞ야已為屬公이온바乙未夏에全道也之子世鎭이替身徃懇于前安東府ᄒᆞ야至有推還之擧矣러니本年冬稅務視察官이到郡ᄒᆞ와以為勝賊之功은在此ᄒᆞ고藉沒之土ᄂᆞᆫ屬他가可謂越人耕而趙人獲之라ᄒᆞ야照會於安東府ᄒᆞ고訓令于本郡ᄒᆞ야更以此土로劃付補逋之意로成給完文이自在郡上故로郡守其在為上納刷逋帳之地에擬其所在公蹟ᄒᆞ야以此由修報于觀察使ᄒᆞᄋᆞᆸ고果為從時價放賣ᄒᆞ야已入于甲午結已上納中矣러니昨冬良中에龍宮居南敬益從中突出ᄒᆞ야以已屬公充上納之物로看作奇貨ᄒᆞ고衝動世鎭ᄒᆞ야佯若買土ᄒᆞ고借名世鎭ᄒᆞ야囑邑而未得售奸ᄒᆞ고呈府而已判題決則宜其知過而退息이거ᄂᆞᆯ撐肚之慾이猶輩僥倖ᄒᆞ야又呈京部ᄒᆞ와至下訓令之鄭重ᄒᆞ니噫彼南民이計雖巧矣나情固譎矣라此等挾雜之弊를若不猛加嚴懲이면法無可施之處故로玆에據實仰報ᄒᆞ오니照亮ᄒᆞ옵셔依律勘處ᄒᆞ시와俾懲悖習ᄒᆞ심을望홈等因이온바此를査ᄒᆞ오니藉沒屬公云云이固不妥當이오나事案如何를先須詳知라야可以發訓이오니厥初南敬益의上訴가在於何時이오며 貴所

聽判如何를消詳 示明ᄒᆞ라신本大臣句敎를承ᄒᆞ와仰佈ᄒᆞ오니

照亮示明ᄒᆞ심을要흠

建陽二年六月五日 法部檢事局長申載永

高等裁判所判事俞箕煥 閣下

訓令漢城裁判所件 / 案 第百十四号

建陽二年 七月 二十七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寅福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漢城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흠이何如ᄒᆞ을지玆에 裁決ᄒᆞ심을仰흠

案 第百十四号

警務使報告第十四号를接准ᄒᆞᆫ즉內開告訴人柳璣供辭ᄅᆞᆯ據ᄒᆞ와被告諸人을訊獲訊問ᄒᆞ온바金亨鎭段은禱張妖荒ᄒᆞ고藉托祈禱ᄒᆞ야自誇通靈而賺取財貨ᄒᆞ며暗懷不道而情現詩句ᄒᆞ오니其所匪悖가難逭大辟이오며呂基銓段은眩惑神助ᄒᆞ며甘聽署職ᄒᆞ야為其買屋而不愛千金ᄒᆞ고知其情節已尋訪多日ᄒᆞ오며金雲培段은亦知祈禱而約資黃燭ᄒᆞ고鮮折夢兆而反兇為吉ᄒᆞ며得聞三月有事ᄒᆞ고欲杜其口則應知其情이옵거늘及問刺史署差ᄒᆞ

야只道叅聽而反覆抵頼이오며白完亨段은以隣近을亨鎭兇謀와諸人聚會를莫不透知ᄒᆞ고冠岳祈禱와七星降處를亦為随従ᄒᆞ오며金信元段은自念佛菴就捉에亦聞金亨鎭不軌之說而終乃掃之虛荒之意로餘詐粧撰이오나旣以不敢言之說이入耳而泯然不發則此等所為를亦難叅恕이오며僧法天段은以念佛菴主掌으로混捉其中이오나別無可問이오며小閙利仁聖段은以十六歲稗驗로不必取供이으나自廣州到處祈禳에随従使喚則或可有證問之端이옵기에右發告柳璣及被告金亨鎭呂基銓金雲培白完亨金信元等은並其供案ᄒᆞ옵고頭陀法天仁聖合八人을一切押交ᄒᆞ오며巡檢金泰圭는縱有發示나未知顚末則想無可據이옵기姑留差役ᄒᆞ오며玆에報告等因인바准此監獄署에嚴囚ᄒᆞ고該供草를一切送交ᄒᆞ니刻卽押上ᄒᆞ야另行審覈ᄒᆞ야具供報來ᄒᆞᆯ事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建陽二年七月二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漢城裁判所檢事韓鏞敎 座下

訓令漢城裁判所件 / 案 第百二十一号

建陽二年 八月 七日 起案 月 日 可決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寅福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漢城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ᆷ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ᄒᆞᆷ

案 第百二十一号

貴報告書第七百六十六号를接准ᄒᆞᆫ즉內開部訓令第百十四号와百十五号를奉准ᄒᆞ와被告金亨鎭罪案을查覈ᄒᆞ은즉金亨鎭段ᄂᆞᆫ本以蠢氓으로曾於十八年前에願得血屬ᄒᆞ야始行祈禱이온바自丙甲二月分祈禱時로接山魔ᄒᆞ야惑信其言ᄒᆞ고對人說去ᄒᆞ며大君主陛下케ᄋᆞᆸ서卽天子位于昌德宮後에渠當得刺史而比同小國王之說라盡誠祈禱則必通大法而與同孫行子等說을得聞於山魔ᄒᆞ고期欲通大法得刺史ᄒᆞ야為業祈禱ᄒᆞ며或以有神將掃蕩各國等說로眩惑衆民ᄒᆞ며或造符書ᄒᆞ야稱以避病之符ᄒᆞ고賣與於人ᄒᆞ니其所行為가殊極痛惡이오며白完亨段ᄂᆞᆫ因療子病ᄒᆞ야親知金亨鎭이고為其酬勞ᄒᆞ야來徃使喚인즉宜知金亨鎭前後行為이온ᄃᆡ及到查庭ᄒᆞ야ᄂᆞᆫ依警供輸欵於初招ᄒᆞ고據然變供於再問ᄒᆞ야以眩獄情ᄒᆞ며只稱得聞金亨鎭為刺史之說이라ᄒᆞ니該犯의變幻供辭가極涉痛惋이오며呂基銓段ᄂᆞᆫ由醫親瘠ᄒᆞ야給價用藥ᄒᆞ며厚施酬勞이고初惑其言ᄒᆞ고至買符書라가竟知虛狂ᄒᆞ고仍為絶交ᄒᆞ엿스며金雲培段ᄂᆞᆫ欲治子病ᄒᆞ得知金亨鎭이고或有尋逐이은바得聞虛誕之說ᄒᆞ며見其操行之不精ᄒᆞ고擧責絶交이오며至於觧夢一款ᄒᆞ야ᄂᆞᆫ乃是例言答觧者이ᄋᆞᆸ고初無約財施助이오며金信元段은有髮僧으로藏跡沙門ᄒᆞ야曾聞金亨鎭荒狂之說ᄒᆞ고雖不禁其行禱나本無共謀이으니無足深責이오며小閹利仁聖은非徒年幼이오라隨行이不久ᄒᆞ야未認金亨鎭之因何祈禱이ᄋᆞᆸ고僧法天段ᄂᆞᆫ初不知金亨鎭祈禱委折이온즉別無深究者이오며告發人柳璣段金亨鎭의妖荒ᄒᆞᆯ을巡檢金泰圭에게得聞ᄒᆞ고為探真跡ᄒᆞ야徃見金亨鎭ᄒᆞ고示以親密ᄒᆞ고期称助財ᄒᆞ야探得金

哥犯諱情節ᄒᆞ고開錄發告이온ᄃᆡ頑彼亨鎭이가吐輕呑重ᄒᆞ야專事粧撰이오니極為巧惡이온지라柳璣의錄告口供을聽准ᄒᆞᄋᆞᆸ고金亨鎭의行為를叅互ᄒᆞ으면金犯이必有狂譎之計와悖逆之言이은즉雖無自服이으나性質은以繫國事犯이오니本所로서擅断하기ᄒᆞᄋᆞᆸ기諸犯의前後供案라柳璣가警務廳에呈納ᄒᆞᆫ錄紙一片을粘聯ᄒᆞ와緣由ᄅᆞᆯ에報告ᄒᆞ오니查照ᄒᆞ오셔裁處ᄒᆞ심을望흠等因인바此를查ᄒᆞ니悖逆之言은縱有告發이나旣無確據ᄒᆞ니遽難以國事犯으로擬論이詐稱降魔ᄒᆞ고專事惑衆은金亦自服ᄒᆞ얏스니到卽該犯等을自貴所로分輕重擬照ᄒᆞᆯ事로前後供案과錄片을徼交ᄒᆞ고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흠

建陽二年八月六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漢城裁判所檢事韓鏞敎 座下

訓令慶尙南道裁判所 件 / 案 第二十一号

光武元年 八月 十七日 起案 月 日 可決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鄭寅福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慶尙南道裁判所 件

左開案을謄送ᄒᆞᆷ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흠

案 第二十一号

貴報告第十一号를接准ᄒᆞᆫ즉內開部訓令第十五号를承准ᄒᆞ와閔桂若閔性彦梁允文三漢을別般詗捉則梁允文段은東徒後不知去處ᄒᆞᄋᆞᆷ고閔桂若閔性彦ᄲᅮᆫ捉來故로與狀民金俱升第相升奎升으로質査則相升等供內矣父가去甲午年座首時에被害於民乱이온바當場誰某之手犯은雖不目擊ᄒᆞ나有一可據ᄒᆞ니其時乱民旗竿에書以狀頭閔桂若閔性彦이라ᄒᆞ약슨즉矣父之死가非渠伊誰리요以雪幽明之寃이다이올고閔桂若等供內民擾發通之初에矣身叔父가年邵行高ᄒᆞ야為一門門長故로招諭矣等曰以閔為姓者가若叅於民擾ᄒᆞ면當割名於宗案云而卽為揭搒於閭里이온즉矣等은初無干涉於民擾이살고若叅狀頭則有何旗竿書名之理乎이此必乱民輩舍嫌於矣叔之揭搒而以為胥淪之計이오며閔桂若이向金相升曰吾與汝로有瓜葛之誼ᄒᆞ고無纖芥之嫌則汝父之死을為指目於我乎며為父報讐가何等大事而只以然疑之端으로年前에呈訴無罪之鄙族而勘配旋宥ᄒᆞ고今於四年之後에謂為旗竿之書名ᄒᆞ고執捉吾之従兄第者果出於為父復讐之心乎아金相升答曰汝若無罪면其時狀頭를指示則吾當捨汝云云이다이온바事係命案이라不可不審愼故로屢回査覈에一切如是이오며叅互兩說則金相升等段은爲父報讐에不可以然疑로執贓이ᄋᆞᆷ고且狀頭指示之說이綻露於面質地場則其不分明認得은推此可悉이오며閔桂若等段은有叔揭搒이家行甚嘉而初不主謀則不可以旗竿之書名으로做成厲階인즉合有叅恕之道이ᄋᆞᆷ기玆에臚列報告ᄒᆞ오니査照ᄒᆞ오셔指令ᄒᆞ시를望홈等因인바此를査ᄒᆞ니金欲報讐ᄂᆞᆫ理雖當然이나閔旣無犯ᄒᆞ니有何可究리오在囚閔桂若等은到卽放釋ᄒᆞ며金相升等은曉喩退送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홈

光武年八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慶尙南道裁判所判事曺始永 閣下

訓令漢城裁判所 件 / 案 第十四号

光武二年 二月 二十一日 起案 月 日 可決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韓止淵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漢城裁判所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四号

警務使李忠求의報告第十号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開本月十一日內部來訓을承准內開視察官金敎爀이가利川郡에悖類ᄅᆞᆯ捉囚ᄒᆞ얏스니押上捧招等因이은바卽派巡檢ᄒᆞ와郡獄이現囚ᄒᆞᆫ李尙玉申明雨金正業金洛哲權聖佐等을捉致訊査ᄒᆞ은즉俱以東學匪類로譸張妖譏ᄒᆞ야煽惑愚俗ᄒᆞ고暗地蚓徒ᄒᆞ야包藏禍心이現於供辭이은바粵在甲午에天討已行ᄒᆞ샤殲厥巨魁而餘黨尙存ᄒᆞ야興灾作孽이莫此爲甚이은즉漏網巨魁ᄂᆞᆫ火速發捕ᄒᆞ야期於斯捉이오며右項五犯은幷其供案押交等因인바據此査事關貴所이기該犯五名은監獄署에嚴囚ᄒᆞ고該供案을添付送交ᄒᆞ니該犯等을貴所로押上ᄒᆞ야另行審覈ᄒᆞ야其案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ᄒᆞᆯ事

光武二年二月二十一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漢城府裁判所檢事咸台永 座下

訓令漢城 件 / 案 第二十九号

光武二年 三月 十七日 起案 月 日 可決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韓止淵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漢城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裁決ᄒᆞ심을仰흠

案 第二十九号

貴報告書第十五號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部訓令第十四號를奉准ᄒᆞ와監獄署에在囚ᄒᆞ온李尙玉申明雨金正業金洛哲權聖佐等을一體審覈ᄒᆞ온즉諸犯이皆稱甲午以前染跡ᄒᆞ얏ᄉᆞ와나 天討를經ᄒᆞ은後로ᄂᆞᆫ背道歸農이라ᄒᆞ온바就中權聖佐ᄂᆞᆫ東學匪魁金致九外家山近地에其父ᄅᆞᆯ入葬이온ᄃᆡ金哥가常爲督掘이러니金哥言內에渠教를更從ᄒᆞ면不掘ᄒᆞᆫ다기로保山ᄒᆞ기ᄅᆞᆯ爲ᄒᆞ야具教ᄅᆞᆯ更崇ᄒᆞ얏ᄉᆞ오나傳學ᄒᆞᆫ者ᄂᆞᆫ初無타ᄒᆞ오며申明雨ᄂᆞᆫ渠子가東學魁崔哥의게入贅ᄒᆞ엿고金致九의送寄ᄒᆞᆫ柾籠等物을受寄ᄒᆞ엿스나其學을更信홈은無타ᄒᆞ오며金洛哲은金淑汝의게被誘ᄒᆞ야金致九家에徃ᄒᆞ야受斅ᄒᆞ기로金哥의게得諾ᄒᆞᆯ ᄲᅮᆫ이오金哥의緣臂且東學魁崔哥ᄅᆞᆯ逢見코ᄌᆞᄒᆞ야金致九家에在ᄒᆞ엿스니入教ᄂᆞᆫ못ᄒᆞ여다ᄒᆞ오며金正業은背學餘蹤으로厥徒의書札를傳送ᄒᆞ엿스나更信홈은無타하오며李尙玉은金致九가送書ᄒᆞ야前日所學을更崇ᄒᆞ라ᄒᆞᆫ時에致答謝去ᄒᆞ고復惑홈은無타ᄒᆞ오니聽

供察貌ᄒᆞ오면俱是蠢虫이온바權聖佐段은復向詐術이極涉痛惡이오나其心이實由爲先이온즉其情을究ᄒᆞ오면可原可矜이오며申明雨段은敎子以不義ᄒᆞᆫ責은難免이오나究法則無擬이오며其餘ᄂᆞᆫ或傳書札或約敷學而已올쓴더러諸犯의行爲를深究ᄒᆞ오면由前由後가原非惑衆이오俱是被惑이온즉邪術의從으로도擬断키難ᄒᆞ올듯ᄒᆞ오니飭勵歸化ᄒᆞ야四民의道ᄅᆞᆯ務盡케ᄒᆞ오면渠等의萬幸이옵고不然이오면諸囚를京畿裁判所에移付ᄒᆞ옵고各從住址ᄒᆞ야犯人의罪跡을探覈ᄒᆞ야實否ᄅᆞᆯ准ᄒᆞ야論決케ᄒᆞ오면枉曲이必無ᄒᆞ겟ᄉᆞᆸ기諸供案을粘付ᄒᆞ와玆에報告ᄒᆞ오니査照ᄒᆞ오셔裁處ᄒᆞ시믈至望等因인바據此查李尙玉等五名之不悛前習이極爲痛駭라此若不別般嚴懲이면染邪之徒必將接踵而惑衆이라分輕重按律處辦은在所不已니到卽將此辭意ᄒᆞ야移照于京畿裁判所ᄒᆞ고該犯五名을仍爲押移于該所ᄒᆞ고形止를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ᆯ事

光武二年三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漢城府裁判所檢事咸台永 座下

再一功書類繳交事

訓令忠南 件 / 案 第四十一号

光武二年 六月 十八日 起案 月 日 可決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忠南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四十一号

貴報告書第一百十五號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本部四十號訓令을承准ᄒᆞ와舒川郡에셔押來ᄒᆞᆫ罪人徐昌吉과劉漢表等의漏網東魁ᄒᆞ고投入西學ᄒᆞ야前後作梗ᄒᆞᆫ情節을各其取供ᄒᆞᆫ後에曺京先은別無苛責故로姑爲保放ᄒᆞ고供辭ᄂᆞᆫ別錄等因인바據此查舒川郡報에劉徐兩犯의許多罪狀을貴所質查之日에節節自服이라ᄒᆞ얏스나發訓捧招之場에兩犯所供이半吐半呑ᄒᆞ야訝惑이層生ᄒᆞ니其在審克에詎可決折가到即該兩犯을另行更查ᄒᆞ야按律馳報이며保放ᄒᆞᆫ曺京先을幷爲招質後仍爲保放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二年六月十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忠淸南道裁判所判事鄭周永 閣下

訓令長城 件 / 案 第一号

光武二年 七月 一日 起案 月 日 可決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長城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一号

貴報告書第一號를接准ᄒᆞᆫ즉內槩에金興淳은自称聖教人이라ᄒᆞ고締結徒黨ᄒᆞ야私掘人塚과毆打人命을無所不至이오되渠則非官家所管之人이라ᄒᆞ며朴君達ᄂᆞᆫ卽東匪時巨魁로今則父子이西教에托名ᄒᆞ고其妻萬全으로前村에酒店을開ᄒᆞ고通奸富人ᄒᆞ야欺脫其錢ᄒᆞ기가自來伎倆이온바証囑于淳昌洋館ᄒᆞ야發差發牌에虐民討錢ᄒᆞ고教師의袒護를憑恃ᄒᆞ야不法을恣行ᄒᆞ고悪事를任作ᄒᆞ오며該教師法國人曺有道ᄂᆞᆫ偏袒罪人ᄒᆞ야威脅守令ᄒᆞ고漏網匪魁와行淫賊娼을循私衛護ᄒᆞ야拿致無罪之民ᄒᆞ며指嗾其徒ᄒᆞ야討索錢財ᄒᆞ고서郡守가從公處辦ᄒᆞᄂᆞᆫ地에猶復巧辭扯謊ᄒᆞ야執言尋釁ᄒᆞ고無禮絶悖之說로生心脅制ᄒᆞᄂᆞᆫ諸事가公法의所未見이오約章의所不載라此若仍寘ᄒᆞ오면入教之民은已非吾民이오不入之民은必至盡劉이옵기憂憤之極에不避猥越ᄒᆞ고具由直報等因인바據此查該教師之袒護事案은業已知照于外部ᄒᆞ엿슨즉諒應轉照該公館ᄒᆞ야隨現禁斷ᄒᆞ려니와金興淳朴君達之藉托西教ᄒᆞ고不法行爲가聞極痛駭라到卽捉囚兩犯ᄒᆞ고詳查捧招ᄒᆞ야馳報該府ᄒᆞ야罪之輕重을待其處辦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여施行事

光武二年七月一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長城郡守金星圭 座下

訓令黃海 件 / 案 第四十一号

光武二年 七月 廿七日 起案 月 日 可決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黃海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四十一号

頃接學部第七号照會ᄒᆞ야趙鴻基金益容의案件을自貴所로築底究覈ᄒᆞ야分輕重按律處辦後報來事로已於本年三月二十八日에有所發訓인즉諒應知飭이겐과現接白川郡趙鍾憲訴狀則內開에矣父鴻基가安士健의誣訴를因ᄒᆞ야本部訓令을承准ᄒᆞ와該府에滯囚ᄒᆞ온바寃抑ᄒᆞᆫ其事案은府郡이確認ᄒᆞᆫ빈라向在甲午東匪之時에安士健門族이化家黨魁ᄒᆞ야放火於鄕校及書院이온바安貞愍公位版이亦在其中矣라安姓之爲其子孫自以人爲性으로胡至此不法이던지一鄕士民이莫不痛憤이옵다가衆議以爲洙泗之源을不可泯滅이라ᄒᆞ

야修正舊案이오되鄕案儒錄을搜得於書院舊藏及儒林中抄件ᄒᆞ와謄舊本正案이옵고無一位差錯이ᄒᆞᆯ거날噫彼安士健等이出沒京鄕에勢莫敢何이더니乃以構捏之說로称曰渠之先祖가失序라ᄒᆞ야至於擧訴이오나彼萬不當之事乎잇가大凡儒家之崇師ᄂᆞᆫ彼我一般이온ᄃᆡ寧有是理이오며且況正案之日에非一二人所幹이오亦非有司之擅便이라一郡儒鄕이共同爛商ᄒᆞ야謄本修案이오니有何錯誤이오며爲貞愍公之後裔安姓者誠有慕先之義則何不來恭於正案之日이던지屢招不來이다가反爲侵責於他人이오니究厥心腸則當初放火之主意가有所窺爲ᄒᆞ야憑藉其先祖而侵虐外人之計를推此可知이오며且以金益容之肆酒行悖로執言則醉中狂忘은未知何端而設使容益으로有所罪犯이라도何関於矣父이관ᄃᆡ使八耋老人으로至此橫罹ᄒᆞ야屢月滯囚케ᄒᆞ엿ᄉᆞ오니豈不抑寃乎아特爲發訓放釋ᄒᆞ심을伏望等因인바據此查該案決折이有何難便ᄒᆞ야施至屢月인지誠甚訝惑이라到卽別妓查覈ᄒᆞ야果如狀辭어든該囚趙鴻基ᄂᆞᆫ從理公決ᄒᆞ고金容益의案件도亦卽處辦後報來이되毋惑如前漫諟케ᄒᆞᆯ事로玆에訓令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二年七月二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申

黃海道裁判所判事李垠鎔 閣下

上奏案 件 / 案 第二百十五号

光武二年 七月 十一日 起案 月 日 可決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顧問官

上奏案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百十五号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臣趙 謹

奏本月二日前郡守黃夔仁言事疏

批旨省疏具悉發於供招諸人何無指名令法部查問以

奏事

命下矣自臣部欽奉

聖旨黃夔仁行將招引之際該員自現於高等裁判所故發於供招諸人何無指名之由查問則所供內法司愼密審查之事在外之人豈知其姓名誰某之出諸崔時亨供招耶但意謂縉紳中似有所出者而過于鍾路聞人風說則縉紳多出於崔時亨供招中云而其姓名之誰某未能指的知云矣且該員職名以前郡守上疏而捧供之場以庚寅除盈德縣令辛卯移拜康津縣監爲供故問其相左則供以近来外任都稱郡守故書之云矣竊

伏念

奏御文字何等審愼而該員敢以猜度肆然

陳疏未有姓名之指的至有職名不實之境究其所犯罪合當勘奉

旨查問之下自臣部不敢擅便何以爲之敢

奏

光武二年七月十一日奉

旨

臣趙

訓令忠南件 / 案 第四十七号

光武二年　八月　五日　起案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訓令忠南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 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四十七号

頃接 貴所前判事李乾夏의第一百十五號報告書則內槩에舒川郡押來罪人徐昌吉劉漢表等所供이半吐半呑ᄒᆞ야訝惑이層生이라ᄒᆞᆫ바查此其在審克에遽難折決ᄒᆞ기到卽該兩犯을另行更查ᄒᆞ야按律馳報ᄒᆞ며保放ᄒᆞᆫ曺京先을幷爲招質ᄒᆞᆯ事로訓飭矣러니現에 貴報告書第八十四號를接准ᄒᆞᆫ즉內槩에徐昌吉劉漢表를承部訓更查次로拿入케ᄒᆞᄋᆞᆸ고曺京先을招致케ᄒᆞ엿ᄉᆞᆸ더니徐劉兩漢段은首尾三載를拘在牢中ᄒᆞ야俱有廢疾이온ᄃᆡ府下居宋秉根은徐昌吉을擔着ᄒᆞᄋᆞᆸ고鄭宜中은劉漢表를擔着ᄒᆞ와保管키를自願ᄒᆞ오되久而未決이ᄋᆞᆸ더니爲念宗病이던지前判事在任時에各該主人의게保管ᄒᆞ얏ᄉᆞ온바今當更查ᄒᆞ야該兩人所供內에爲其調病ᄒᆞ야許其暫還터니仍

不来待라ᄒᆞᄋᆞᆷ기定限督現ᄒᆞ온즉兩犯이俱在逃避ᄒᆞ야査無踪跡이라ᄒᆞ온바前判事時에罪囚를私自請保ᄒᆞ엿ᄉᆞ오니擔着保囚에如無接肚면似無是理이오며更査之地에踪跡이亦沒이라ᄒᆞ오니究厥罪犯ᄒᆞ오면有浮於該犯ᄒᆞ온지라上項主[47]人宋秉根鄭宜中은幷爲嚴杖牢囚ᄒᆞ오며曺京先을招待ᄒᆞᆯ意로該郡에發訓ᄒᆞ엿ᄉᆞᆸ더니以商民으로出他未還이다報來ᄒᆞ얏ᄉᆞᆸ기玆에據宗報告ᄒᆞ오니査照ᄒᆞ심을望홈等因인바據此査重囚保授가已是乖當而保人之擅許還家가尤極痛駭라除非故縱이면必無是失이니到卽所謂保人宋秉根鄭宜中에게其故縱之由를築底査覈ᄒᆞ야不日督現케ᄒᆞ고形止를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二年八月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申

忠淸南道裁判所判事鄭周永 閣下

訓令慶南裁判所件 / 案 第四十五号

光武二年 十月 二十九日 起案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訓令慶南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 裁決ᄒᆞ심을仰홈

47 문에는 '罪'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고 '主'라고 적음.

案 第四十五号

現接度支部照會內開慶尙南道河東郡吏鄭燦杓犯逋甲午條結錢三千一百九兩五錢五分徵刷事로已有仰佈이견과現據其子丁得訴告ᄒᆞᆫ즉厥父가甲午吏房으로戰亡東擾ᄒᆞ야所逋公錢을已蒙免徵ᄒᆞ온바如何隱漏이옵던지京部免徵文牒을粘連仰訴ᄒᆞ오니依前免徵케를請ᄒᆞᆫ지라査鄭吏逋錢을特許免徵이文蹟有據ᄒᆞ니宜所分晰이기로玆에仰佈ᄒᆞ오니照亮ᄒᆞ신後行訓該道觀察ᄒᆞ와放釋其囚케ᄒᆞ심을爲要等因인바據此査該吏의免徵ᄒᆞᆫ証蹟이旣係明確ᄒᆞᆫ즉宜卽放釋히기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二年十月二十九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徐

慶尙南道裁判所判事曺始永 閣下

訓令高裁件 / 案 第二十号

光武三年 二月 十七日 起案

大臣署理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訓令高裁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 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十号

全羅南道裁判所報告書ᄅᆞᆯ接准內槩管下興德郡에서亂民作擾事로該郡首

書記朴佑鍾의文狀을據ᄒᆞᆫ즉該亂民輩가蔑分犯綱이似出於渠矣之一時逞嫌이오나郡守의平日施措가苟能見孚於人民이면致此罕有之變恠이올지該倅之政令失宜와亂民等之有何寃狀을不容不嚴覈另査故로以管下長城郡守金星圭로別定明査官ᄒᆞ야本事顚末을使之査覈報来矣러니該査報ᄅᆞᆯ閱悉ᄒᆞ온즉該郡守林鏞炫의職在字牧ᄒᆞ야宜其持身廉潔而不此之爲ᄒᆞ고招此禍變이極爲駭瞠이라從法論警은惟在處分이오며亂魁李化三段은本以萍梗之踪跡으로自恃英學之捉托ᄒᆞ야挺擔隣友之嫌憾ᄒᆞ니血黨이互相網繆ᄒᆞ야打起睡氓에直入政堂ᄒᆞ야凌犯命吏ᄒᆞ고搜驗官房에踢官取印을罔有紀極ᄒᆞ고宋敏洙段은挾憾汰任에包藏禍心ᄒᆞ야慫恿化三에一而二也나旣作漏網ᄒᆞ야幷與在逃諸漢으로另飭譏詗ᄒᆞ야期使弋獲이오며首書記朴佑鍾段은變出中夜에事雖蒼黃이나捍圍赴蹈ᄅᆞᆯ不能與同ᄒᆞ고及爲来徃於亂民之中ᄒᆞ얏스니情跡이亡測에道理가乖戾ᄒᆞ니合施懲勘等因인바此ᄅᆞᆯ査ᄒᆞ니該郡守林鏞炫의政令失宜ᄒᆞ야致此民鬧ᄒᆞᆷ은誠甚該歎이며亂魁李化三의首倡作擾ᄒᆞ야甚至踢官取印ᄒᆞᆷ은究厥所爲에萬萬痛惡이라到卽該林鏞炫을拿致審査이되李化三과朴佑鍾을亦爲押上ᄒᆞ야另行審査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二月 日

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學部大臣申

高等裁判所檢事咸台永 座下

再該道報告書와査案을伴交ᄒᆞ니結審ᄒᆞᆫ後繳送事

訓令全南判事件 / 案 第十号

光武三年　三月　三日　起案

大臣署理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訓令全南判事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号

貴報告書第九號를接ᄒᆞᆫ즉內槩管下靈光郡守申泰寬의報告書를接准ᄒᆞ온즉內槩外部訓令據ᄒᆞ신使訓令을奉准ᄒᆞ와本郡境內如有稱托英學ᄒᆞ고設禊行悖者면無論首從ᄒᆞ고捉囚指名馳報이시온바本郡森南面金台書爲名漢이誘引人物ᄒᆞ고欺騙錢財가卽渠伎倆也라近日에藉托英學ᄒᆞ고脅勒平民ᄒᆞ야驅納於彼黨타가少咈其意則招怨逞憾에動輒禍患이라哀彼村氓이久厭其惡ᄒᆞ야聯名呼訴而取考狀辭則金漢之染汚가將及善良이라澤魚가混淆ᄒᆞ고屋烏를難辨이다온成給公文ᄒᆞ와俾別淸濁이라ᄒᆞ왓시나遽再推捉이恐欠審愼ᄒᆞ와到底廉捜則所謂金台書者가以東匪巨魁로旣已漏網而自經甲午로爲鄕里之指目ᄒᆞ야以死中求生之計로藉托英學ᄒᆞ고欲售舊習ᄒᆞ야鉗制衆口에有此行悖者也라稱曰七邑禊長ᄒᆞ고揭榜通衢에指而聚黨ᄒᆞ고勒驅平民而收錢充壑ᄒᆞ야多方煽惑에羣情이疑懼ᄒᆞ니似此法外之類ᄂᆞᆫ合施懲勘이옵기上項金漢을爲先捉囚等因該金台書를本所로押待ᄒᆞ야所犯情節을嚴核取供ᄒᆞ와別紙開錄ᄒᆞ와入鑑次賚上ᄒᆞ올견과今此金台書가以甲午匪魁로漏網圖生則宜其革心改面ᄒᆞ야以作新人이어ᄂᆞᆯ藉托英學

而投名禊案ᄒᆞ야替帶宋文汝之任事而揭榜於社倉南溪ᄒᆞ니禊長之行爲가亡測ᄒᆞ고信從崔一西之指揮ᄒᆞ야叅會於古阜抹牧ᄒᆞ니平民之勒脅이可駭라到今禍患이雖遏於微漸이나衆愚가易惑於煽訛이다온似此者流ᄂᆞᆫ從法懲一然後에可以警百이옵기牢囚於警務署ᄒᆞ옵고玆에報告等因이라據此查凡係人犯을明細取供ᄒᆞ며搜集證據ᄒᆞ야論擬質報ᄒᆞᄂᆞᆫ案에刊落浮文ᄒᆞ고務從平實ᄒᆞᆷ이맛당ᄒᆞ거ᄂᆞᆯ今에 貴報를照查ᄒᆞ건ᄃᆡ文字가從涉張皇ᄒᆞ고事實은反欠昭詳ᄒᆞ니一二를擧言컨ᄃᆡᆫ其曰少咈其意則招怨逞憾에動輒禍患이라ᄒᆞ니逞憾은何樣으로ᄒᆞ엿스며禍患은何境에至ᄒᆞ얏스며其曰收錢充壑에多方煽惑이라ᄒᆞ니充壑ᄒᆞᆫ錢이幾貫이며何人에게討索ᄒᆞ얏스며煽惑ᄒᆞᆫ方法이幾個件何樣事인지此等情節이犯供昭然ᄒᆞ고證招明的ᄒᆞᆫ後에方可擬斷이고[48]且查金台書招記首行에英學罪人이라書ᄒᆞ야스니英學은是何樣學인지未詳ᄒᆞ거니와字義만推想ᄒᆞᆯ지라도英學二字가엇지罪名에近ᄒᆞ리오此가 貴所擬罪上失錯ᄲᅮᆫ아니라[49]貽笑招譏가必致不尠ᄒᆞ리니殊甚慨然이라令到卽時에該金台書를更行訊查이되務須詳益求詳ᄒᆞ야情真證備토록十分加意ᄒᆞ야成案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三月 日

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學部大臣申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永喆 閣下

48 원문에는 다음에 '旣曰哀彼村氓이久厭其惡ᄒᆞ야聯名呼訴라ᄒᆞᆫ즉何不與金台書로一次質訊이며'라고 적었다가 삭제함.

49 원문에는 다음에 '現今外交가日廣ᄒᆞ고耳目이周通ᄒᆞᆫᄃᆡ'라고 적었다가 삭제함.

訓令全南 件 / 案 第十三号

光武三年　三月　十八日　起案　　月　　日　可決

光武三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訓令全南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三号

貴報告書第一号를接ᄒᆞᆫ즉內槩興德郡亂民作鬧事에長城郡守金星圭로定查官查報ᄒᆞ야查案을賚上等因인바據此查李化三段은郡守의過失을初不的知ᄲᅮᆫ더러又無係己之寃而首倡作鬧ᄒᆞ야凌犯命吏ᄒᆞ며搜驗官房ᄒᆞ니蔑分犯紀와狂悖凶獰이誠極痛駭이고朴佑鍾段은身爲首書記ᄒᆞ야伊夜光景을袖手觀瞻ᄒᆞ고不思挺身赴救ᄒᆞ야스니揆以事體ᄒᆞ면亦極駭然이라到卽該両犯을按律馳報ᄒᆞ며在逃宋敏洙李二先李卜煥蔡基燁朴基洙丁桂述等을嚴密訶獲ᄒᆞ야一切另核ᄒᆞ야分軽重懲勘ᄒᆞ며該郡守林鏞炫段은捧賂之說이旣著查案則宜卽懲警이되詞證이未備ᄒᆞ야不可遽擬니自貴所로另探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三月　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兪箕煥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永喆　閣下

訓令全南 件 / 案 第三十四号

光武三年 七月 八日 起案 月 日 可決

光武三年 月 日 施行

大臣 署理 協辦 檢事局 主任

檢事局長

課長

訓令全南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三十四号

貴管下高敞郡鄭崙永報告書을接准ᄒᆞᆫ즉內槩에本郡就捉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를各具成册ᄒᆞ야玆에賚上等因인바查此該成册中亂黨金相欽은所謂砲軍巡察로被捉ᄒᆞ고金在浩ᄂᆞᆫ所謂大將旗手로被捉ᄒᆞ야陰曆四月二十五日에押去于本道觀察府라ᄒᆞ니該兩犯이果已押到인지到卽所犯情節을另行審查ᄒᆞ야按律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七月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趙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永喆 閣下

法部　刑事局　起案

關黃海兵營事件 / 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李徽善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關黃海兵營事件

敬啓者黃海兵營所送關艸ᄅᆞᆯ左開하와交送ᄒᆞ오니即爲修正ᄒᆞ야派送爲荷

[自今爲始開國下塡年月日送之爲希]

案

相考事接準軍部照會則內開黃海兵使牒報를見ᄒᆞᆫ즉即接本道視察委員安宗洙秘報內長壽山城別將張龍淵은本來東徒의窩主로本道觀察使赴任之路에捉去ᄒᆞ야拘留三日ᄒᆞ고東徒ᄅᆞᆯ勿侵ᄒᆞᆯ事로俜言ᄅᆞᆯ受한後에放送ᄒᆞ야該觀察使가威脅을不服ᄒᆞ야張龍淵과其徒玄學璜으로裨將을幷差ᄒᆞ야歸化시킨다ᄒᆞᆫ즉東徒의根窩가漸大ᄒᆞ야毒이道內에流ᄒᆞ여尙今未淨ᄒᆞᄋᆞᆸ고又張龍淵之徒韓用健이가自願歸化ᄒᆞ야義兵이라稱ᄒᆞ고巡營兵丁의領將이되야서東徒之勢가熾盛ᄒᆞᆯ時에出戰ᄒᆞᆫ다ᄒᆞ면東徒의內應이되어逃避ᄒᆞᆯ路ᄅᆞᆯ暗通ᄒᆞ고勒入ᄒᆞ엿다가歸化ᄒᆞᆫ者ᄅᆞᆯ東徒라稱ᄒᆞ고劫掠ᄒᆞ야奪財ᄒᆞ며燒家ᄒᆞ고平民之家에軍需ᄅᆞᆯ討索ᄒᆞ야該觀察使의게만欺瞞ᄒᆞ고道內威權을行ᄒᆞ야聽聞이駭怪ᄒᆞ다ᄒᆞᄋᆞᆸ고兵使亦爲偵探節之無差ᄒᆞ오니甚爲駭瞠

ᄒᆞᆷ기에長壽山城別將張龍淵를爲先罷黜ᄒᆞ오니其罪狀을攸司로令ᄒᆞ야拿問勘處ᄒᆞᆷ시고玄學瑱과韓用健도東徒의隱魁온즉不日押上ᄒᆞᆯ터이오니緣由牒報等因準此　該長壽別將張龍淵은職旣罷黜ᄒᆞ엿ᄉᆞ오니貴部에셔拿問勘處ᄒᆞᆷ고玄學瑱과韓用健도亦爲措處하심을望홈事等因據此玆以發關ᄒᆞ오니關到ᄒᆞᆫ即時에該鎭別將張龍淵를刻即派員押上ᄒᆞ며玄學瑱과韓用健도罪犯이緊重하오니一體로押上本部ᄒᆞ야處判을便케ᄒᆞᆷ이可홈

右 關

黃海兵使 ○○ 座下

開國五百四年五月七日

答度支部照會事件 / 照會

開國五百四年　　月　　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答度支部照會事件

敬啓者左開ᄒᆞ온答照會를正書ᄒᆞ시와度支部로卽送홈읍為荷

照會

湖南前總務官趙弼永이敝部에就囚ᄒᆞ야勘罪ᄒᆞᆯ터이온즉伊時에文簿相關ᄒᆞᆫ從人與營吏等待事은敝部에서擅便ᄒᆞᆯ터이오니 照亮ᄒᆞ시믈希홈

開國五百四年五月十五日

法部大臣徐○○

度支部大臣魚允中閣下

通牒漢城裁判所事件 / 案 第一百八十四号

開國五百四年 閏五月 十七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通牒漢城裁判所事件

逕啓者라左開書를謄送ᄒᆞ믈為希

案 第一百八十四号

原州牒報中東徒罪人李圭夏는洪鍾成이과同黨이온며五月二十七日公移時에牒報與證據物를一一送交ᄒᆞ여ᄉᆞ오니左獄在囚ᄒᆞᆫ李圭夏ᄂᆞᆫ洪鍾成과一功審辦ᄒᆞ시옵崇此玆에通牒홈

開國五百四年閏五月十七日 法部刑事局卽署楊孝健

照复高等裁判所事件 / 案 第二百四号

開國五百四年 閏五月 二十六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照复高等裁判所事件

逕啓者左開書를謄送ᄒᆞ시옵

案 第二百四号

昨日貴所照會中東徒罪人黃河一이를徒三年照律ᄒᆞ여습더니流三千里라ᄒᆞ오니엇진事端이온지詳示ᄒᆞ시옵玆以照复홈

開國五百四年閏五月二十六日 法部刑事局卽署楊孝健

忠淸道林川郡在囚匪魁金在洪의死刑에関指令件 / 指令

開國五百四年 七月 九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忠淸道林川郡在囚匪魁金在洪의死刑에關指令件

該郡守의所報ᄒᆞᆫ一功文牒를詳査ᄒᆞ은즉該犯에所為가極惡絶悖ᄒᆞ와死刑에合宜오니左開案를依ᄒᆞ야該郡守에指令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를仰홈

指令

忠淸道林川郡

開國五百四年七月九日第一號

貴郡在囚匪魁金在洪은自貴郡으로處絞ᄒᆞᆫ後形止를卽為馳報ᄒᆞ미宜當홈

法部大臣徐

忠淸道淸州營將과及淸州郡守所稟를依ᄒᆞ야匪類吳一相의死刑과與匪三名에關ᄒᆞᆫ指令件 / 指令

開國五百四年　七月　九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忠淸道淸州營將과及淸州郡守所稟를依ᄒᆞ야匪類吳一相의死刑과與匪三名에關ᄒᆞᆫ指令件

該營將該郡守의所報ᄒᆞᆫ一功文牒를詳査ᄒᆞ온즉該犯의吳一相은所為가極惡絶悖ᄒᆞ와死刑에合宜ᄒᆞ오며與匪三名도俱係罔赦ᄒᆞ오나參酌이不無ᄒᆞ오니左開案를依ᄒᆞ야該營將該郡守에指令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를仰홉

指令

忠淸道淸州營將及淸州郡守

開國五百四年七月九日第一號

貴鎭在囚匪魁吳一相은處絞ᄒᆞ고餘匪吳斗相李正道金仁東三名은貴鎭貴郡으로罪之輕重을分ᄒᆞ야依律處辦ᄒᆞᆫ後形止를卽為馳報ᄒᆞ미宜當홈

法部大臣

淸州營將及淸州郡守指令件 / 案 第三号 / 指令

開國五百四年 七月 十一日 起案

開國五百仝年 仝月 仝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清州營將及清州郡守指令件

逕啓者左開案를正書ᄒᆞ시와本局으로送交ᄒᆞ시ᄋᆞᆷ

案 第三号

指令

清州營將清州郡守

開國五百四年七月十一日第 號

貴鎭在囚匪魁吳一相은處絞ᄒᆞ고餘匪吳斗相李正道金東仁三名은貴鎭과貴郡으로罪之輕重을分ᄒᆞ야依律處辦ᄒᆞᆫ後擧行形止를卽為馳報ᄒᆞ미宜當ᄒᆞᆷ可ᄒᆞᆫ故로玆指令ᄒᆞᆷ

法部大臣○○○

清州營將及清州郡守所稟을依ᄒᆞ야匪類吳一相과餘匪三名에關ᄒᆞᆫ指令件 / 指令 第 號 十四号

開國五百四年 九月 五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清州營將及清州郡守所稟를依ᄒᆞ야匪類吳一相과餘匪三名에關ᄒᆞᆫ指令件

該營將該郡守의所報ᄒᆞᆫ一功書類를詳査ᄒᆞ온즉吳一相이가名雖喧藉ᄒᆞ나實無悖行ᄒᆞ고■護士民ᄒᆞ미乃反有功ᄒᆞ다ᄒᆞ오니參酌이不無ᄒᆞ오ᄆᆞᄀᆞ吳一相段은減死一等照律ᄒᆞ고餘匪金東仁李正道吳斗相段分輕重處辦ᄒᆞ와指令ᄒᆞ시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를仰홈

指令 第 號 十四号

貴郡在囚匪魁吳一相은名雖喧藉나悖行ᄒᆞᆫ跡이無ᄒᆞ고士民을保護ᄒᆞ야乃反有功이라ᄒᆞ니參酌이不無ᄒᆞᆯ지라吳一相段은減死一等照律ᄒᆞ고餘匪金東仁李正道吳斗相段은罪之輕重을分ᄒᆞ야依律處辦ᄒᆞᆫ後擧行形止를卽為馳報ᄒᆞ미可ᄒᆞᆫ故로玆에指令홈

清州郡守李敎夏 座下

忠淸道林川郡在囚金在洪의死刑에關ᄒᆞᆫ指令件 / 指令 第 號 十三号

開國五百四年 九月 五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忠淸道林川郡在囚金在洪의死刑에關ᄒᆞᆫ指令件

該郡守의所報ᄒᆞᆫ一功書類를詳査ᄒᆞ온즉該犯에所為가極惡絶悖ᄒᆞ와死刑에合宜ᄒᆞ오니左開案를依ᄒᆞ야該郡守에指令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를仰홈

指令 第 號 十三号

貴郡在囚匪魁金在洪의所犯은大典會通推斷條에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今用絞]律을照ᄒᆞ야自貴郡으로處絞ᄒᆞᆫ後擧行形止를卽為馳報ᄒᆞ미可ᄒᆞᆫ故로玆에指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홈

開國五百四年九月五日

法部大臣署理

林川郡守兪鎭沃 座下

林川匪魁金在洪處絞小單子件 / 案

開國五百四年 九月 五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林川匪魁金在洪處絞小單子件

逕啓者라左開案를依ᄒᆞ야小單子를正書入呈ᄒᆞ시옵

案

法部

林川匪魁金在洪以殺害人命罪로處絞ᄒᆞᆷ

開國五百四年九月 日

訓令 第十七号

訓令 第十七号

前任黃海道觀察使에所報를接據ᄒᆞ온즉文化郡在囚匪魁李東燁과僧錦月의供辭內에多率火砲ᄒᆞ고突向信川松禾長淵甕津康翎等邑ᄒᆞ야官舍를燒蕩ᄒᆞ며錢穀을搶奪ᄒᆞ고人民을戕殺ᄒᆞ엿다ᄒᆞ기로此를查ᄒᆞ오니所犯이極惡ᄒᆞ야容貸키不可ᄒᆞᆫ지라李東燁段은大典會通推斷條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今用絞]律을照ᄒᆞ고僧錦月段은為其從者杖一百流三千里[今終身懲役]律에照ᄒᆞ야

自貴府로依律文化郡에訓令ᄒᆞ야依律處辦ᄒᆞᆫ後擧行形止를卽為馳報ᄒᆞ미可ᄒᆞᆫ故로玆에訓令ᄒᆞᆷ

開國五百四年九月六日

法部大臣署理○○

海州府觀察使李鳴善 閣下

指令韓山郡件 / 指令第十九號

開國五百四年　　月　　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指令韓山郡件

該郡守의報告書를接准ᄒᆞ온즉在囚匪類金善在와徐可良이가西學이라自稱ᄒᆞ고吳應老의家產을無數이打破ᄒᆞ고錢幾百金을勒索ᄒᆞ고官庭에發惡ᄒᆞ엿다ᄒᆞ오니該罪犯은大明律田宅條棄毁人器物計贓準竊盜論大典會通推斷條儒生發惡於士主者杖一百流三千里令終身懲役律에照ᄒᆞ야處辦ᄒᆞ시옵고左開案를依ᄒᆞ야指令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을仰稟

指令第十九號

貴郡在囚匪類金善在와徐可良의罪狀更査ᄒᆞᆫ報告書을接據ᄒᆞ온즉前報에는梟警ᄒᆞ미可타ᄒᆞ고今에는容貸ᄒᆞ기을請ᄒᆞ니有何參酌이온지實難准施라該犯이前習을不悛ᄒᆞ고吳應老의家產을無數이打破ᄒᆞ고錢幾百兩을勒索ᄒᆞ고官庭에發惡ᄒᆞ엿다ᄒᆞ니罪實難赦라該犯은大明律田宅條棄毁人器物計贓準竊盜論大典會通推斷條儒生發惡於士主者杖一百[今用笞]流三

千里令終身懲役律에照ᄒᆞ야貴郡으로處辦ᄒᆞᆫ後形止를卽為馳報ᄒᆞ미可ᄒᆞᆫ故로玆에訓令홈

開國五百四年九月八日

法部大臣署理

韓山郡守白樂亨 座下

內閣記錄通牒件 / 案 第四百四十七号

開國五百四年 月 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內閣記錄通牒件

逕啓者라左開案를謄送ᄒᆞ시옵

案 第四百四十七号

處絞罪人에罪目과姓名을左갓치錄送ᄒᆞ오니官報에揭載ᄒᆞ믈要ᄒᆞ야玆에通牒홈

開國五百四年九月 日

法部刑事局長趙重應

內閣記錄局長朴永斗 座下

林川匪魁金在洪이가殺害人命罪로處絞ᄒᆞ고文化匪魁李東燁이가列邑官舍를燒蕩ᄒᆞ며人民錢穀을搶奪罪로處絞홈

照會于軍部 / 案第四百五十四号

開國五百四年 月 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照會于軍部

敬啓者左開案을謄送ᄒᆞ시ᄋᆞᆸ

案第四百五十四号

海州府報告書를接據ᄒᆞ오니軍部訓令第五号를接准ᄒᆞ야本府在囚ᄒᆞᆫ長壽山城聚首賊魁尹德汝를通衢砲殺ᄒᆞ고其餘黨金云成은以白晝創奪條로減一等徒二年照律ᄒᆞ고孟所回는以其隨從으로減二等 徒一年照律ᄒᆞ야並依新定式懲役ᄒᆞ오며女賊二名은移送海州郡ᄒᆞ야各其夫訶捉間姑為保授ᄒᆞ고方彝祚는造銃이不耐其威脅이오初不入於其黨이다極口鳴寃故로嚴

杖三十度懲戒放送이라ᄒᆞ온바此를據ᄒᆞ야査ᄒᆞ오니本部에서ᄂᆞᆫ今始初聞이오니貴部에서該事件으로訓令이有ᄒᆞ엿ᄂᆞᆫ지玆에照會ᄒᆞ오니照亮ᄒᆞ오셔示明ᄒᆞ시믈要홈

開國五百四年九月十三日

法部刑事局第二課長李熙悳

軍部軍法局理事洪祐亨 座下

照會軍部大臣件 / 照會第四百二十四号

開國五百四年 月 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照會軍部大臣件

海州府報告書를接准ᄒᆞ온즉軍部訓令을據ᄒᆞ야長壽山城賊魁尹德汝等을或砲殺或徒配ᄒᆞ엿다ᄒᆞ니軍部則軍令以外ᄂᆞᆫ照律이無ᄒᆞᆫ지라凡一切照律은本部에知照ᄒᆞ미可ᄒᆞ거늘軍部에서該府에訓令ᄒᆞ야命案과獄事를獨斷ᄒᆞ미不可ᄒᆞ기로照會ᄒᆞ랴ᄒᆞ오니玆에裁決을仰홈

照會第四百二十四号

海州府第七号報告書를接據ᄒᆞ온즉貴部第五号訓令을承ᄒᆞ야長壽山城賊魁尹德汝를通衢砲殺ᄒᆞ고 餘黨金云成은以白晝創奪條로減一等徒二年照律ᄒᆞ고孟所回는以其隨從으로減二等徒一年照律ᄒᆞ야依新式懲役ᄒᆞ고女賊二名은各其夫詗捉間姑為保授ᄒᆞ엿다ᄒᆞ온바此를據ᄒᆞ야查ᄒᆞ오니除軍律以外一切照律은皆自本部로酌量이오貴部에所關이아니온즉此等事項은本部에知照ᄒᆞ야處辦케ᄒᆞ미可ᄒᆞ온ᄃᆡ貴部에서獨斷을行ᄒᆞ야人命을擅殺ᄒᆞ기에至ᄒᆞ오니事體에妥當치못ᄒᆞᄋᆞᆸ고該觀察使도擅行ᄒᆞᆫ罪過가不無ᄒᆞ오나貴部訓令을承ᄒᆞ야擧行ᄒᆞ얏다ᄒᆞ기로姑為參酌ᄒᆞ오니嗣後此等事項이有ᄒᆞ거든 敝部에知照ᄒᆞ시를要ᄒᆞ야玆에照會홈

開國五百四年九月十五日

法部大臣署理

軍部大臣趙羲淵 閣下

指令海州府件 / 指令第二十五号

開國五百四年　九月　十五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顧問官

指令海州府件

海州府報告書를接准ᄒᆞ온즉軍部訓令을據ᄒᆞ야長壽山城賊魁尹德汝等을或砲殺或徒配ᄒᆞ엿다ᄒᆞ니軍部에셔도本部로知照치아니ᄒᆞ고獨斷ᄒᆞ미不可ᄒᆞᆯᄲᅮᆫ더러該觀察使도輕先擅行後報告ᄒᆞ미有違格式ᄒᆞ니該府에指令ᄒᆞ여以杜日後違格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을仰홉

指令第二十五号

貴第七号報告書를接據ᄒᆞ온즉軍部第五号訓令을承ᄒᆞ야本部在囚ᄒᆞᆫ長壽山城에聚首ᄒᆞ엿든賊魁尹德汝를通衢砲殺ᄒᆞ고　餘黨金云成은以白晝創奪條로減一等徒二年照律ᄒᆞ고孟所回ᄂᆞᆫ以其隨從으로減二等徒一年照律ᄒᆞ야依新式懲役ᄒᆞ고女賊二名은各其夫訶捉間姑為保授ᄒᆞ엿다ᄒᆞ온바此를據ᄒᆞ야査ᄒᆞ니此等重大事項은本部指揮를必俟ᄒᆞ야施行ᄒᆞ미合當ᄒᆞᆫ지라雖有軍部訓令이나軍部則軍律以外ᄂᆞᆫ照律이無ᄒᆞ며貴府에셔도擅行後報告가有違格式ᄒᆞ니固當論警이오나姑為參酌이오며日後此等事件은必先報告于本部ᄒᆞ야指令을待ᄒᆞ미可ᄒᆞ기로玆에指令홈

開國五百四年九月十五日

法部大臣署理

海州府觀察使李鳴善　閣下

再諸犯의照律案을査ᄒᆞ오니重罪을輕減ᄒᆞᆯᄲᅮᆫ더러減等이錯誤가多ᄒᆞ와正當ᄒᆞᆫ適用을得지못ᄒᆞᆫ지라欽恤之典에在ᄒᆞ와踈忽之責이難免이오니嗣後審愼을另加ᄒᆞ야此等違誤가無케홈

案第五百六十八号

開國五百四年　十月　二十四日　起案

開國五百　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敬啓者左案通牒高所何如

案第五百六十八号

金善在와徐可良의事件文狀五張을送交ᄒᆞ으니照閱ᄒᆞ시믈要ᄒᆞ야玆에通牒홈

法部刑事局主事楊孝健

高等裁判所主事李圭晉　座下

再訓令洪州府及指令韓山郡草件을伴交ᄒᆞ으니署理大臣게呈覽ᄒᆞ시옵

指令洪州府件 / 案　第一号

建陽元年　正月　六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指令洪州府件

敬啓者左開案을謄送為希

案 第一号

貴報告書第七号를接准ᄒᆞᆫ즉韓山匪類金善在徐可良을部照律을依ᄒᆞ야並히終身懲役에施ᄒᆞ얏ᄉᆞ오나其原委를詳査ᄒᆞ온즉金善在ᄂᆞᆫ徐可良이가吳應老家에徃閙ᄒᆞᆯ時에同行而已요助虐의事ᄂᆞᆫ果無이온ᄃᆡ俱施同律은有欠平允故로據實報告라ᄒᆞ온바果若金善在가徐可良의隨從이的確ᄒᆞᆫ즉參酌이不無ᄒᆞᆯ지라金犯은貴府로分輕重ᄒᆞ야照律處辦ᄒᆞ고懲役處所ᄂᆞᆫ亦自貴府로設行ᄒᆞ미可ᄒᆞᆫ故로玆에指令홈

建陽元年一月六日

法部大臣

洪州府觀察使李勝宇 閣下

照會軍部件 / 案 第四号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檢事局長

照會軍部件

左開案을謄送何如

案 第四号

公州府觀察使李淙遠報告書를接准ᄒᆞ온즉淸州郡守朴正彬報告內開에本部在囚匪魁吳一相을自親衛第二大隊行陣所로軍部訓令을因ᄒᆞ와本月九日午時量에砲殺ᄒᆞ엿다ᄒᆞ기로玆에報告等因此를査ᄒᆞ오니上項吳一相은上年九月에淸州郡守와淸州營將의報告를據ᄒᆞ야所犯情節을詳査ᄒᆞ온즉該犯이罪名은비록喧藉ᄒᆞ나行悖ᄒᆞᆫ跡이無ᄒᆞ기로本部에서適當ᄒᆞᆫ律을照ᄒᆞ야懲役에處ᄒᆞ엿더니令에貴部訓令을因ᄒᆞ야砲殺ᄒᆞ엿다ᄒᆞ오니貴部에서的實ᄒᆞᆫ訓令이有ᄒᆞ오며何罪目을據ᄒᆞ야砲殺ᄒᆞ엿ᄂᆞᆫ지事甚訝惑ᄒᆞ온지라本部에서旣是照律ᄒᆞ온거슬貴部에서越權ᄒᆞ여砲殺ᄒᆞ오니本部行政上에妨礙가不無ᄒᆞᆯ지라此等事項으로本大臣이貴大臣게照會ᄒᆞᆷ이非止一再라上年九月十六日에海州匪魁尹德汝砲殺ᄒᆞᆫ事로貴部에照會ᄒᆞ엿더니貴照复內에嗣後則此等事項이有ᄒᆞ면當貴部에知照ᄒᆞ고獨斷을하니ᄒᆞ실쥴노ᄒᆞ여ᄉᆞ오며本年本月十一日에忠州府報告를接准ᄒᆞ야貴部에照會ᄒᆞ여ᄉᆞᆸ더니貴照覆內에軍律以外一功照律은貴部에서酌量定擬ᄒᆞ시미新式에妥當ᄒᆞ오니行將另飭各府ᄒᆞ야死刑은貴部에報告ᄒᆞ야待指揮酌處케ᄒᆞ나ᄒᆞ시온바幾日이不過ᄒᆞ야砲殺ᄒᆞ라ᄂᆞᆫ貴部訓令이有ᄒᆞ니是ᄂᆞᆫ貴照复이文具와便同ᄒᆞᆫ지라前後照复과行政이甚히矛盾ᄒᆞ온故로玆에照會ᄒᆞ오니照

亮ᄒᆞ신後에示明ᄒᆞ시믈要홈

建陽元年一月二十三日

法部大臣

軍部大臣臨時署理度支大臣魚允中 閣下

指令東萊府件 / 案 第四号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指令東萊府件

左案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를仰홈

案 第四号

貴第三号質稟書를接准ᄒᆞᆫ즉興海民擾魁首張相弘이가結役滅定事로聚衆呈訴를称ᄒᆞ고攔入官庭타가官家에서砲放捧打ᄒᆞ믈因ᄒᆞ야散出ᄒᆞᄂᆞᆫ民人을山上에立旗聚會ᄒᆞ야人家를燒毁ᄒᆞ미乱民에所行인즉現에當律를決不可逃라ᄒᆞ온바此를査ᄒᆞ니該犯張相弘은大明律訴訟条口称奏訴直入衙門脅制官吏者發邊衛充軍이라ᄒᆞ고大典會通罪犯準計条邊遠充軍者准杖一百流三千里律에照ᄒᆞ미可ᄒᆞ나其擾焉初因郡弊요所犯焉聚民作擾ᄒᆞ에스

되肆悖官庭이果無現證이라ᄒᆞ니其情此을酌量ᄒᆞ야一等을ㅁ減ᄒᆞ야杖一百[今用笞]流十五年令懲役十五年에處ᄒᆞ미可ᄒᆞᆫ故로玆에指令홈

建陽元年二月二十八日

法部大臣李

東來府觀察使池錫永 閣下

再金龍九段은有弊必訴ᄂᆞᆫ容有可議ᄲᅮᆫ더러乱民隨起가實非指使요慮其亂根ᄒᆞ야見機退去ᄒᆞ왓ᄉᆞ오니叅互顚末에似不無叅恕라ᄒᆞ니有寃必訴ᄂᆞᆫ民之常情이니自貴府로嚴飭放送이可홈

訓令長淵郡件 / 案 第一号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檢事局長

訓令長淵郡件

左開案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를仰홈

案 第一号

內部照會第十六号內開에海州府長淵郡守報告書를接准ᄒᆞᆫ즉不軌ᄒᆞᆫ白樂喜等을捉囚ᄒᆞ고取招報告라ᄒᆞ온즉事關貴部ᄒᆞ기로該報告書와供招案을添付送交ᄒᆞᆫ다ᄒᆞ온바此를查ᄒᆞ니白樂喜ᄂᆞᆫ本以東徒魁首로又為山砲魁首ᄒᆞ야潛釀兇謀ᄒᆞ야謀危

社稷ᄒᆞ고全良根과白基貞과金桂祚ᄂᆞᆫ同謀ᄒᆞ고金義淳과白樂圭ᄂᆞᆫ隨從이되여스니上項罪犯은覆載之間에暑刻을貸치못ᄒᆞᆯ지라兇謀ᄒᆞᆫ白樂喜와同謀ᄒᆞᆫ全良根白基貞金桂祚와隨從ᄒᆞᆫ金義淳白樂圭六漢은大明律賊盜編謀反大逆條에凡謀反共謀者不分首從皆凌遲處死[今用絞]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고在逃ᄒᆞᆫ金亨鎭金昌守金在喜柳學善崔昌祚와文化郡名不知李哥等六漢를刻卽訶捕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홈

建陽元年三月十一日

法部大臣李

長延郡守廉仲模 座下

訓令海州府件 第十一号 / 案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訓令海州府件 第十一号

左開案을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貴報告書第六号을接准ᄒᆞᆫ즉載寧郡下吏姜達祚가匪類로作梗ᄒᆞᆫ實狀을嚴問ᄒᆞ야供辭를別紙에錄上ᄒᆞᆫ다ᄒᆞᆫ바此를査ᄒᆞ니姜達祚가為東徒接主ᄒᆞ야同黨數百名을率ᄒᆞ고各處饒民에게執穀이為數百石이오信川郡을焼蕩ᄒᆞᆫ接主元容駉을率徒迎接ᄒᆞ고姜熙烈의二十七石을搶奪ᄒᆞ야火砲에게分給ᄒᆞ고金僉使에雜穀三十六石을搶奪ᄒᆞ엿스니行兇情跡이極為絶悖ᄒᆞᆫ지라匪魁姜達祚ᄂᆞᆫ大明律造妖書妖言條凡造妖書妖言及傳用惑衆者斬[今用絞]이라ᄒᆞ고白晝搶奪條搶奪人財物者杖一百[今用笞]徒三年[今懲役三年]이라ᄒᆞ고名例云二罪俱發以重論이라ᄒᆞ니該犯姜達祚ᄂᆞᆫ絞에處ᄒᆞ고擧行形止를刻卽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홈

建陽元年三月十七日

法部大臣李

海州府觀察使李鳴善 座下

照复內部件 第十九号 / 案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照复內部件 第十九号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시믈仰홈

案

貴照會第十九號를接准ᄒᆞ온즉長淵郡守의報告書內開에本郡匪類白樂喜等供案를業已修上이옵고現今各處山砲作變ᄒᆞ야本郡을掃蕩ᄒᆞ고白樂喜를奪去云ᄒᆞ니此等匪類를不可暫時假息ᄲᅮᆫ더러視察官寃魂이倘復何如乎잇가視察官返柩時에魁首白樂喜를砲殺ᄒᆞ야幽冥의寃을慰로ᄒᆞ오며餘外諸罪人을待指令擧行次로姑為牢囚等因이라事關貴部ᄒᆞ기로玆에照會ᄒᆞᆫ다ᄒᆞ온바此를査ᄒᆞ오니貴照會第十六號와長淵郡報告書를依ᄒᆞ야不帆ᄒᆞᆫ白樂喜와同謀ᄒᆞᆫ全良根白基貞金桂祚와隨從ᄒᆞᆫ金義淳白樂圭六漢은絞에處ᄒᆞ고在逃ᄒᆞᆫ金亨鎭金昌守金在喜柳學善崔昌祚와名不知文化郡李哥等六漢를刻卽訶捕ᄒᆞ라ᄒᆞ야本月十二日에該郡守의게訓令ᄒᆞ엿ᄉᆞ오니

照亮ᄒᆞ시믈要ᄒᆞ야玆에照复홈

建陽元年三月二十八日

法部大臣李

內部大臣朴定陽 閣下

訓令長淵郡件 / 案 第二号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訓令長淵郡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号

貴報告書第　號를接准ᄒᆞᆫ즉不軌ᄒᆞᆫ白樂喜와全良根과白基貞과金桂祚와金義淳과白樂圭等六漢을使各依律亟處之意로報告于海州府이러니尙無如何之指令이옵기不得已冒越格例ᄒᆞ옵고玆에報告ᄒᆞᆫ다ᄒᆞᆫ바此를査ᄒᆞ니刑獄은本部所關이어늘貴郡守가本部에報告치아니ᄒᆞ고內部에報ᄒᆞᆷ이違越之責이不無ᄒᆞ니嗣後ᄂᆞᆫ審愼擧行ᄒᆞᆯ지라前次의內部照會第十六號內開에長淵郡守가不軌ᄒᆞᆫ白樂喜等六漢을捉囚ᄒᆞ고取招報告하ᄒᆞ온즉事關貴部ᄒᆞ기로該報告書와供招案를添付送交라ᄒᆞ옵기에兇謀ᄒᆞᆫ白樂喜와同謀ᄒᆞᆫ全良根白基貞金桂祚隨從ᄒᆞᆫ金義淳白樂圭等六漢은大明律賊盜編謀反大逆條에凡謀反共謀者不分首從皆凌剮處死[今用絞]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고在逃ᄒᆞᆫ金亨鎭金昌守金在喜柳學善崔昌祚와文川郡名不知李哥等六漢를刻卽訶捕ᄒᆞ라ᄒᆞ야本年三月十一日에訓令ᄒᆞ엿더니尙未到付인지上項六漢를不日處辦ᄒᆞ고擧行形止를斯速馳報ᄒᆞᆯ事로更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홈

建陽元年四月一日

法部大臣李

長淵郡守廉仲模 座下

再貴報告書에號數가無ᄒᆞ기로記치못ᄒᆞ니嗣後ᄂᆞᆫ詳明히錄送ᄒᆞ야後考케ᄒᆞᆷ이可ᄒᆞᆷ

照會軍部件 / 案 第十号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照會軍部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시믈仰ᄒᆞᆷ

案 第十号

全州府觀察使署理參書官廉圭桓의無號報告書를接准ᄒᆞ온즉本府警務官補金漢鼎報告書內開에親衛第二大隊大隊長兼司令官訓令을承准ᄒᆞ야本署在囚ᄒᆞᆫ泰仁等地에서捉得東徒十七漢中에權成中 趙成五金尹仲崔文兼張士元金俊三金致弘申京伯朴允巨吳宅洙와追後捉得ᄒᆞᆫ匪類李周輔를亦為查覈得情後에以上十一漢을當日午後一点鍾에正刑于南門外場市上이옵고其餘隨從ᄒᆞᆫ文卜萬車聖圭 金鳳鉉崔秉用等은各嚴杖三十度ᄒᆞ고崔

炳宇朴化叔金君巨等은各嚴杖二十度ᄒᆞ고符同匪種ᄒᆞ야眩亂軍心ᄒᆞᆫ在囚隨從罪人十一漢中에崔在卜高卜乞金性烈金卜仁裵永春張卜同金有文白致先金順用　朱濟豊等十漢은各嚴杖三十度ᄒᆞ야一併嚴懲放送ᄒᆞ고朴鳳烈段은因病物故이다ᄒᆞᄋᆞᆸ기로玆에報告ᄒᆞᆫ다ᄒᆞ온바此를査ᄒᆞ오니東匪權成中等十一名을正刑ᄒᆞ고隨從文卜萬等十七人을嚴杖放送이라ᄒᆞ니事甚訝惑ᄒᆞᆫ지라本月八日에到付ᄒᆞᆫ該府觀察使의報告書中該犯等의供案를査閱ᄒᆞᆫ즉該匪等의罪犯之輕重이自在ᄒᆞ고隨從之差等이亦有ᄒᆞ거늘該府에서部令을待치아니ᄒᆞ고人命을擅殺ᄒᆞᆷ이新式에　有違ᄒᆞᆯᄲᅮᆫ더러況히廢止ᄒᆞᆫ正刑과杖刑을無碍이執行ᄒᆞ야法律을不遵ᄒᆞ니事甚駭然ᄒᆞ오며貴部照复第二號內開에軍律以外ᄂᆞᆫ一切照律은貴部에서酌量定擬ᄒᆞ시미新式에妥當ᄒᆞᆫ故로行將另飭各府ᄒᆞ야賊徒를捕獲ᄒᆞ거든貴部에報告ᄒᆞ야待指令酌處ᄒᆞ라ᄒᆞ엿다ᄒᆞᄋᆞᆸ더니今此照复을准施치아니ᄒᆞ고　貴部에서該大隊長의게訓飭ᄒᆞ시와行此刑法이온지該大隊長이妄自擅行이온지理由를莫知ᄒᆞᄋᆞᆸ기로 玆에照會ᄒᆞ오니

照亮示明ᄒᆞ심을要홈

建陽元年四月二十一日

法部大臣韓

軍部大臣李允用 閣下

上 奏案件 / 案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姜璡熙

刑事局長

第二課長

上 奏案件

左開案은上奏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시믈仰홈

案

海州府長淵郡匪魁白樂喜ᄂᆞᆫ本以東徒匪魁로又為山砲魁首ᄒᆞ야潛釀兇謀ᄒᆞ야謀危

社稷ᄒᆞ엿ᄉᆞᆸᄂᆞᆫᄃᆡ全良根과白基貞과金桂祚ᄂᆞᆫ同謀ᄒᆞ고金義淳과白樂圭ᄂᆞᆫ隨從이되여ᄉᆞᆸ기로大明律賊盜編謀反大逆條에凡謀反共謀者不分首從皆凌遲處死[今用絞]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엿ᄉᆞᆸ고平壤府价川郡下吏李廷恩은郡守柳錫煥의게私嫌을報코자ᄒᆞ야本郡守를戕殺ᄒᆞ엿ᄉᆞᆸ기로大明律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에若吏卒謀殺本部五品以上長官已殺者斬[今用絞]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엿ᄉᆞᆸ고仁川府水原郡匪徒嚴允明朴敬玉等은兵器를各持ᄒᆞ고賊魁를隨從ᄒᆞ야村閭에財貨를掠奪ᄒᆞ고安城郡吏房과龍仁地行人二名을戕殺ᄒᆞᄋᆞᆸ고柳永順은兵器를持ᄒᆞ고賊魁를從ᄒᆞ야公私의財產을掠奪홈이不少ᄒᆞ여ᄉᆞᆸ기로該三犯은本年法律第二号第七条强盜律第七項表에依ᄒᆞ야絞에處ᄒᆞ엿ᄉᆞᆸ고平壤府順安郡居金承文은韓國玄으로姻査之間이온ᄃᆡ財貨를相爭타가國玄이가被觸致死ᄒᆞ엿ᄉᆞᆸ기로該犯은大明律人命編鬪毆條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엿ᄉᆞᆸ고祥原郡居朴得權은隣居崔召史를强奸코져ᄒᆞ다가彼怒를逢ᄒᆞ고羞憤

이激發ᄒᆞ야礪石과擣杵로乱打致死ᄒᆞ엿ᄉᆞᆸ기로該犯은大明律人命編故殺人条故殺者斬[今用絞]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여ᄉᆞᆸ기로本年刑律名例第九條를據ᄒᆞ와上

奏案을提呈홈

建陽元年五月三十日

法部大臣韓

內閣總理大臣尹容善 閣下

訓令公州裁判所件 / 案第二十七号

建陽元年　七月　一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訓令公州裁判所件

左案을依ᄒᆞ야謄送홈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을仰홈

案第二十七号

貴報告書第五十四号를接准ᄒᆞᆫ즉淸州地方隊에서所捉ᄒᆞᆫ匪魁徐石汝金時默과林景元의子道浩를押到ᄒᆞ기를待ᄒᆞ여從實捧招ᄒᆞ야修報ᄒᆞᆯ意ᄂᆞᆫ임의報告ᄒᆞ여ᄉᆞᆸ기니와本月二十日에同罪人三名을淸州地方隊에서押到ᄒᆞ여

合기刑具를設ᄒᆞ고左右盘覈ᄒᆞ야取招ᄒᆞ온즉淸州郡山外面琴巖居徐石汝年四十八白等矣身이甲午年八月東學熾盛時에以巨魁孫士文包內接主로逃躲潛伏ᄒᆞ엿다가今幸還接이옵더니不意本年陰曆三月二十五日에邑名不記前江原道居ᄒᆞᄂᆞᆫ姜采水為名漢이矣家에來到ᄒᆞ야强勸ᄒᆞ기를如此洶洶之世에設壇致誠이極合防禍라ᄒᆞ옵기에陰曆四月初百의果為精灑焚香ᄒᆞ읍고東經大全은前에所存이은바還接ᄒᆞᆫ後에未及出棄ᄒᆞ야尙在家中이라가以至被捉ᄒᆞ니無他可達이라이삽고淸州郡山外面寺洞居金時默年三十八白等矣身이本以孫士文包內接主로幸為圖命이읍더니陰曆三月二十五日에徐石汝가通文을姜采水로ᄒᆞ야금矣身에게傳ᄒᆞ야勸ᄒᆞ되更起東學ᄒᆞᆫ次로設壇致誠ᄒᆞᆫ다ᄒᆞᄂᆞᆫ바矣身은意未往參ᄒᆞ엿ᄉᆞ오며東學諸物은姜采水에任寘ᄒᆞᆫ기시으니更無可達이라이삽고淸州郡山外面寺洞居林道浩年十九白等矣身父가曾以東學接主로久為逃避라가近雖往來나常不在家이온바敬通은徐石汝가傳送ᄒᆞ와留寘ᄒᆞᆫ기시나莫知其故이오니他無可達이삽졔라ᄒᆞ옵ᄂᆞᆫ바徐金兩漢段은俱以匪魁로初焉漏網이已是倖逭이은바今又萌蘖에難免天誅여늘如是粧撰이尤極通駭뿐더러設壇致誠라定期發通이昭有可據ᄒᆞ고所謂東經大全과敬通謄本冊子와名帖及雜蹟과致誠諸具가無非襲舊更肆之跡이오며林道浩段은旣非身犯이오年幼沒覺ᄒᆞᆫ合有裁處이오며諸般證據ᄒᆞᆯ物은別紙에左開ᄒᆞ야一切上送ᄒᆞ오니査照ᄒᆞ오셔指令를望ᄒᆞᆫ다ᄒᆞᆫ바此를查ᄒᆞ니徐石汝와金時默은本以東魁孫士文의接主로倖逭天網ᄒᆞ여다가又為姜采水의所誘ᄒᆞ야設壇致誠은復續妖書之確據으定期發通은煽動良民之根因이라敎唆ᄂᆞᆫ自有其人이나為從에難免當律ᄒᆞᆯ지라大明律禁止師巫邪術條左道亂正燒香集衆煽動人民為從者律에照ᄒᆞ야各杖[今用笞]一百流三千里令懲役終身에處辦ᄒᆞ며林道浩ᄂᆞᆫ染邪之跡이確無可證ᄒᆞ니曉飭放送ᄒᆞ되其父의所犯이渠口供에莫掩ᄒᆞ엿스니幷與

在逃ᄒᆞᆫ姜采水로一體譏詗ᄒᆞ야期於拿獲後捧招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

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建陽元月三十日

法部大臣韓

公州裁判所判事李乾夏 閣下

上奏案件 / 案第十八号 / 處刑罪人의関ᄒᆞᄂᆞᆫ件

建陽元年 九月 九日 起案

建陽元年 九月 十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鄭寅福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上奏案件

左開案를謄呈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裁決ᄒᆞ심을仰ᄒᆞᆷ

案第十八号

處刑罪人의関ᄒᆞᄂᆞᆫ件

漢城裁判所强盜罪人李聖澤과黃海道匪類金善長과咸鏡南道永興郡殺獄正犯金在浩와忠淸南道沔川郡殺獄正犯成雲西와黃海道鳳山郡火砲李元

早와忠淸南道木川郡砲軍李萬龍等六名을左開照律處辦ᄒᆞ옵기로本年法律第三號刑律名例第九條에依ᄒᆞ야上

奏案를提呈홈

建陽元年九月九日

法部大臣韓

內閣總理大臣尹容善 閣下

一 漢城裁判所에서審理ᄒᆞᆫ强盜罪人李聖澤이가典洞客主金普民家에往ᄒᆞ야別銀願買人이有ᄒᆞ다稱ᄒᆞ고居間人張鎭國을誘引ᄒᆞ야別銀二十一兩二賤重을携帶ᄒᆞ고新寺下勝戰峯에偕至ᄒᆞ야張鎭國을扼釰刺殺ᄒᆞ고奪取該金ᄒᆞᆫ罪로本年法律第二號賊盜處斷例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捧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刼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옵ᄂᆞᆫ件

一 黃海道裁判所에서審理ᄒᆞᆫ匪類金善長이가本是東徒火砲領將이라稱ᄒᆞ고壽大山八兄弟라ᄒᆞᄂᆞᆫ從黨으로恣橫村落ᄒᆞ야搶奪民財ᄒᆞ고又假托巡捕ᄒᆞ고出沒於窮村孤島之間ᄒᆞ야討索錢財ᄒᆞᆫ罪로本年法律第二號賊盜處斷例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捧或兵器을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刼奪ᄒᆞᆫ者ᄂᆞᆫ首從를不分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옵ᄂᆞᆫ件

一 咸鏡南道永興郡殺獄正犯金在浩가死者金濟淳에從孫女를刼奪ᄒᆞᆫ즉金濟淳이가往呼孫女而歸路에金在浩가又杖으로毆打項頸ᄒᆞ야傷

重而翌朝에致死케ᄒᆞᆫ罪로大明律人命編鬪毆殺人者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一　忠淸南道沔川郡殺獄正犯成雲西가死者孫今山의招辭不應이라ᄒᆞ야忽然成雲西가孫今山을拳毆足踢ᄒᆞ며縛繫抹木ᄒᆞ야致死케ᄒᆞᆫ罪로大明律人命編鬪毆殺人者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一　黃海道裁判所에서審理ᄒᆞᆫ鳳山郡火砲李元早가東徒幾百名으로沙院站에來到ᄒᆞ야衝火燒蕩ᄒᆞᆯ際에無論某人ᄒᆞ고逢輒砲殺ᄒᆞᆷ이四十餘人이온ᄃᆡ其中宋相源을砲殺ᄒᆞ고奪取銀錢ᄒᆞᆫ事로其子允和의呼訴를因ᄒᆞ와李元早를捉致詰問則果是砲殺人命ᄒᆞ고刼奪貨財ᄒᆞᆷ을自服ᄒᆞᆫ罪로本年法律第二號賊盜處斷例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捧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刼奪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一　忠淸南道裁判所에서審理ᄒᆞᆫ木川郡李萬龍이가隣居柳會一에게負債二十五兩을督報ᄒᆞᆷ을含憾ᄒᆞ야新設砲軍에入參ᄒᆞ야柳會一을構陷賊徒ᄒᆞ야率黨捉去ᄒᆞᄂᆞᆫᄃᆡ其曖昧ᄒᆞᆫ情狀을四隣이本郡에控訴ᄒᆞ야放送ᄒᆞᄂᆞᆫ거슬中路에서砲殺ᄒᆞᆷ으로其妻許召史에呼寃을因ᄒᆞ야李萬龍을捉査ᄒᆞᆫ즉果以私嫌을擅殺人命ᄒᆞᆷ을自服ᄒᆞᆫ罪로大明律人命編故殺人者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訓令黃海道裁判所件 / 案 第四号

建陽元年　九月　十一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訓令黃海道裁判所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四号

貴報告書第三號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鳳山郡守李敏皐에報告를接准ᄒᆞ온즉本郡沙院站宋允和訴求內開에昨年正月分載寧東徒幾百名이来到本站ᄒᆞ야無論某人ᄒᆞ고逢輒砲殺ᄒᆞ며衝火燒蕩ᄒᆞᆯ際에人命殺害가為四十餘名이요民家被燒가為三百餘戶온ᄃᆡ矣父相源이가亦為火砲李元早에砲殺이오나此時此漢之勢를不敢對敵ᄒᆞ야尙未復讎矣러니今玆捉納ᄒᆞ니卽速代償等因이옵기로同元早를捉入嚴問則供招內에宋相源과金基成을果為砲殺이옵기供招記를粘連仰報ᄒᆞ오니特為勘處이다이옵고連接鳳山沙院站宋允和訴求則亦如報查이온바匪類作梗을今不必追究이오되今此李元早가自謂火砲ᄒᆞ고率黨究八站底ᄒᆞ야燒蕩家舍ᄒᆞ고戕殺人命ᄒᆞᆫ情節를渠旣自服故로供招記를左開報告ᄒᆞ오니查照懲辦ᄒᆞ시믈望홈等因이온바此를查

ᄒᆞ니李元早의行賊来歷이旣係明確ᄒᆞ고寃家尋讐에亦為自服ᄒᆞ얏시니莫嚴三尺을渠焉得逭가該犯을本年法律第二号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捧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刼取ᄒᆞᆫ者ᄂᆞᆫ首従을不分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ᆯ意로本月十日에上

奏ᄒᆞ야더니本月十一日內閣指令內開에火砲李元早의處絞에関ᄒᆞᆫ件을謹上奏ᄒᆞ와

裁可ᄒᆞ심을經ᄒᆞ얏기로玆에指令홈等因이온바令到卽時에該犯李元早를絞에處ᄒᆞ고擧行形止를卽為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홈이可홈

建陽元年九月十一日

法部大臣韓

黃海道裁判所判事閔泳喆 閣下

訓令黃海道觀察使件 / 案 第五号

建陽元年　　月　　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第二課長

訓令黃海道觀察使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五号

前海州府觀察使署理參書官金孝益의報告書第三十八號를接准ᄒᆞᆫ즉海州郡馬山坊居金善長이本以東徒로林宗鉉에火砲領將이라稱ᄒᆞ며壽大山百八兄弟라ᄒᆞᄂᆞᆫ黨으로恣橫村落ᄒᆞ야搶奪民財ᄒᆞ든者라ᄒᆞ온되初에京日兵이駐紮城府ᄒᆞ야遇賊行剿ᄒᆞᆯ境遇에匪窟이尾觧ᄒᆞᆫ지라渠乃竄身匿跡이다가近又巡捕라假托ᄒᆞ고無常出沒於窮村孤島之間ᄒᆞ야種種侵虐ᄒᆞᄂᆞᆫ弊가多端ᄒᆞ다有所入聞故로派巡檢捕獲ᄒᆞ야前後作梗ᄒᆞ든行為를牢刑盤問ᄒᆞ와具供案上送ᄒᆞ오니查照懲辦ᄒᆞ심을要홈이라ᄒᆞᆫ바此를查ᄒᆞ니該犯이本是匪類로啸聚徒黨ᄒᆞ야搶奪民財가已是痛惡이어ᄂᆞᆯ又稱巡檢ᄒᆞ고出沒村閭ᄒᆞ야侵虐行悖가尤極凶獰이라該犯을本年法律第二号賊盜處断例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静處或大道上에拳脚桿捧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刼取ᄒᆞᆫ者ᄂᆞᆫ首従을不分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ᆯ意로本月十日에上

奏ᄒᆞ얏더니本月十一日內閣指令內開에匪類金善長의處絞에関ᄒᆞᆫ件을謹上奏ᄒᆞ와

裁可ᄒᆞ심을經ᄒᆞ얏기로玆에指令홈等因이온바令到卽時에匪類金善長은絞에處ᄒᆞ고擧行形止를卽為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홈이可홈

建陽元年九月十一日

法部大臣韓

黃海道裁判所判事閔泳喆 閣下

訓令黃海道觀察使件 / 案 第六号

建陽元年　九月　二十九日　起案

建陽元年　九月　　三十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訓令黃海道觀察使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六号

貴報告書第七號를接准ᄒᆞᆫ즉鳳山郡李元早가自謂火砲ᄒᆞ고率黨究八站底ᄒᆞ야燒蕩家舍ᄒᆞ고戕殺人命ᄒᆞᆫ情節를具供案報告이홀견과卽接鳳山郡守李敏皐報告內開에本郡沙院站宋相元金基成等砲殺ᄒᆞᆫ李元早가偶得泄症ᄒᆞ야連日苦痛이다가至於致死이다鎖卒이来告故로使之摘奸이온즉肉色이痿黃에因病致死的然等因이옵기玆에報告ᄒᆞ오니査照ᄒᆞ시믈要홈이라ᄒᆞᆫ자此를査ᄒᆞ니李元早의罪犯殺越ᄒᆞ고施律之前에逕自病死가極為巧矣나摘奸實因이旣是的確則別無更究之端ᄒᆞ니屍體을卽令出埋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홈

建陽元年九月二十九日

法部大臣韓

黃海道觀察使閔泳喆 閣下

訓令黃海觀察使件 / 案 第八号

建陽元年 十月 十三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鄭寅福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訓令黃海觀察使件

左開案를謄送ᄒᆞᆷ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ᄒᆞᆷ

案 第八号

全羅北道古阜郡畓內面蒼田里居童家李東淳에訴狀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告訴人의父達淑이가昨年二月分에本郡民擾事로橫罹ᄒᆞ야延安郡으로定配되와卽向配所이옵다가中路得病ᄒᆞ와三四朔彌留ᄒᆞ다가六月의야到配ᄒᆞ온바昨年七月의開國五百四年以前罪犯中六條外의는放送ᄒᆞ라신勅命이게시와八域配囚가一切放釋이오나惟獨告訴人의父는尙不蒙放이오니洞燭ᄒᆞ신後卽為放送ᄒᆞ심을望ᄒᆞᆷ等因이라ᄒᆞᆫ바此를據ᄒᆞ야謹考開國五百四年六月二十七日勅命則

朕이更張ᄒᆞᆫ時를當ᄒᆞ야維新ᄒᆞᆫ政에斟量이不無ᄒᆞ니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以前罪犯中에謀反과殺人과竊盜와强盜와通奸라騙財를犯ᄒᆞᆫ者를除ᄒᆞᆫ外에ᄂᆞᆫ一功放釋ᄒᆞ야셔廣蕩ᄒᆞᆫ典을示ᄒᆞ라ᄒᆞ시온바李達淑이가罪名이雖非六犯이나到配가旣在赦後ᄒᆞ야配囚放秩에初不修正矣러니今閱其訴에犯在四月一日以前을確無可擬라到卽發訓配邑ᄒᆞ야使卽放送ᄒᆞ며松禾郡配囚宋正化와殷栗郡配囚金處中等이俱與李達淑으로同犯而同時發配者也니亦卽分飭囚在官ᄒᆞ야幷卽放送케ᄒᆞ고擧行形止를幷為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建陽元年十月十三日

法部大臣韓

黃海道觀察使閔泳喆 閣下

上奏案件 / 案 第七号

建陽元年 十月 二十三日 起案

建陽元年 十月 二十八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上奏案件

左開案를謄呈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七号

漢城裁判所强盜罪人張明叔과强盜罪人嚴敬弼과强盜罪人韓萬乭과仁川裁判所强盜罪人金昌洙와平安南道慈山郡殺獄正犯罪人金世種과江原道裁判所砥平郡砲軍朴定植과漢城裁判所所管江華府强盜罪人朱銀釗李介佛呂尙福崔聖根과江原道裁判所匪徒李德一合十一名을幷依左開照律處辦ᄒᆞ옵기로本年法律第三号刑律名例第九條에依ᄒᆞ와謹

奏

建陽元年十月二十二日奏

旨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臣韓

一 漢城裁判所에서審理ᄒᆞᆫ强盜罪人張明叔과嚴敬弼은締結徒黨ᄒᆞ야各持捧釰ᄒᆞ고各處에奪取財貨ᄒᆞᆫ罪와强盜罪人韓萬乭은被脅為從ᄒᆞ야同行分贓ᄒᆞᆫ罪本年法律第二號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靜僻處或大道上에拳脚桿捧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刼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一 仁川港裁判所에서審理ᄒᆞᆫ强盜罪人金昌洙가自稱左統領이라ᄒᆞ고日本商人土田讓亮을當場打殺ᄒᆞ야投之江氷ᄒᆞ고財錢과環刀를奪取ᄒᆞ야八百金은店主에게任置ᄒᆞ고驢子를買ᄒᆞ며其外錢貫은同行三人에게分給ᄒᆞᆫ罪로本年法律第二号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

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捧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刼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一　平安南道慈山郡殺獄正犯罪人金世種이가死者黃金千의妻를潛通ᄒᆞ고奸情이未洽ᄒᆞ야設酒同飮타가兇心을暗懷ᄒᆞ고舊債를强督ᄒᆞ야鎌刃으로黃金千을刺殺ᄒᆞᆫ罪로大明律人命編鬪毆及故殺人條故殺人者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一　江原道裁判所에서審理ᄒᆞᆫ砥平郡砲軍朴定植이가昨年臘月分에該郡郡守孟英在를向ᄒᆞ야開化者에게銃丸이不入이라ᄒᆞ고三次放砲ᄒᆞᆫ罪로大典會通推斷條邑民向官長放砲者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一　漢城裁判所所管江華府에서審理ᄒᆞᆫ强盜罪人朱銀釗李介佛呂尙福崔聖根等이徒黨을糾結ᄒᆞ야江華府境內에서放銃起火ᄒᆞ며橫行閭里ᄒᆞ야搶奪財貨ᄒᆞ며傷害人民ᄒᆞᆫ罪로本年法律第二号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捧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刼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一　江原道裁判所에서審理ᄒᆞᆫ匪徒罪人李德一이가前春川府視察使曺寅承이赴任ᄒᆞᆯ時에削髮觀察使라詐辱ᄒᆞ고洞民을指揮ᄒᆞ야中路에執留ᄒᆞ얏다가翌日에匪類等이捉去ᄒᆞ야竟為砲殺ᄒᆞᆫ罪로大明律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部民謀殺本屬知府已殺者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ᄋᆞᆸᄂᆞᆫ件

判決宣告書

判決宣告書

忠淸南道唐津郡居 平民

被告 金性元

年四十六

右被告金性元에對ᄒᆞᆫ私掘人塚ᄒᆞᆫ事件은檢事의公訴에由ᄒᆞ야此ᄅᆞᆯ 審理ᄒᆞ니 被告ᄂᆞᆫ 開國五百三年七月에唐津郡에서東徒에投入ᄒᆞ야同郡居ᄒᆞᄂᆞᆫ孫炳一의妻塚이不當禁之地어ᄂᆞᆯ被告의山이라稱ᄒᆞ고聚黨私掘ᄒᆞ얏스니其事實은孫炳一의告訴와被告自服ᄒᆞᆫ陳供에証ᄒᆞ야明白ᄒᆞᆫ지라賊盜編發塚罪에該當ᄒᆞᆷ으로仍ᄒᆞ야凡發掘墳塚見棺槨者律에照ᄒᆞ야被告ᄅᆞᆯ杖一百流三千里에處ᄒᆞ야懲役處斷例第一條에依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ᆯ만ᄒᆞ나그為先ᄒᆞᄂᆞᆫ情狀을酌量ᄒᆞ야二等을減ᄒᆞ야笞一百懲役十年에處ᄒᆞᆷ

建陽元年十一月五日

檢事柳學根檢事試補李徽善立會ᄒᆞᆷ

高等裁判所 裁 判 長 韓圭卨

判 事 權在衡

豫備判事 金基肇

豫備判事 金敎性

主 事 鄭錫圭

訓令全羅北道裁判所件 / 案 第六号

建陽二年 二月 五日 起案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鄭寅福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訓令全羅北道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六号

貴所所管茂朱郡金千用의訴狀을據ᄒᆞᆫ즉內開에矣身의父金貴西가去甲午年에以東擾之罪로定配于慶尙道南海郡이온바其時本郡同罪五人이幷為定配이다四人은從法勘罪ᄒᆞ야還為懲役於本郡이고矣身之父만獨未蒙解이온니發訓于南海郡ᄒᆞ야依法懲役於本郡ᄒᆞ야一體勘罪케ᄒᆞ심을千萬伏乞홈等因인바此를査ᄒᆞ니懲役定式以後에依前定配가聞極可駭라到卽自貴所로文移于慶尙南道裁判所ᄒᆞ야期卽押來ᄒᆞ야盤覈其罪ᄒᆞ야以懲役으로處辦호ᄃᆡ罪不在於終身이어던這間到配月日을准理於刑期上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홈

建陽二年二月二十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全羅北道裁判所判事尹昌燮 閣下

照會漢城裁判所 / 案 第四十七号

建陽二年　三月　二十二日　起案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照會漢城裁判所

左開案을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四十七号

貴所에서判決ᄒᆞᆫ懲役丁中左開姓名人에供招을卽為送交ᄒᆞ시와以便查閱케ᄒᆞᆷ을為ᄒᆞ야玆에照會ᄒᆞ오니照亮示明ᄒᆞ심을為要

建陽二年三月二十二日

法部刑事局主事楊孝健

漢城裁判所主事丁明燮 座下

左開

孫鼎欽　金性元

金昌洙　南義根

咸鍾國　共八名

朴致三

黃命淵

劉弘烈

訓令全羅北道裁判所件 / 案 第十三号

建陽二年　三月　二十三日　起案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俞鶴柱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訓令全羅北道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三号

貴道高山郡東下面時雨洞居鄭寅賢告訴內에告訴人이甲午年東擾時에家產汁物을見奪ᄒᆞ엿숩더니乾淨後에見失汁物ᄒᆞᆫ人이擧皆推尋이옵기로告訴人도亦欲推尋次로金致景家에徃ᄒᆞ옵더니巧値金致景에子가以匪魁로知其罪ᄒᆞ고既為結項致斃ᄒᆞ옵기로不得推一物而還이옵더니金致景이가以滅口ᄒᆞᆯ次로反為誣囑ᄒᆞ야告訴人에侄致模는再昨年分에定配于洪川郡

ᄒᆞ고告訴人에子世模는定配于康津郡이옵다가昨年分에俱為解配이옵더니不意昨年五月分에告訴人에子世模를自本府로捉上ᄒᆞ와不問曲折ᄒᆞ고懲役에處ᄒᆞ오니豈不至寃極痛乎잇가其事實은前狀에照ᄒᆞ야明홈仍ᄒᆞ야玆에告訴홈等因인바據此查曾以鄭世模金斗奉高同業朴斗述金奉柱等換處懲役後其罪狀을昭詳懸錄報来事로發訓이在於元年三月二十四日이거ᄂᆞᆯ何至視若文具ᄒᆞ고尙此稽報인지揆以擧行에萬萬駭然이라伊時觀察使ᄂᆞᆫ不可以已遞로勿論이라行將論警ᄒᆞ려니와上項五囚罪名을到卽詳覈ᄒᆞ야火速報来ᄒᆞ야以便審錄케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홈이可홈

建陽二年三月二十三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議政府贊政趙

全羅北道裁判所判事尹昌燮 閣下

訓令忠南道件 / 案 第二十三号

建陽二年 四月 十三日 起案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姜璡熙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訓令忠南道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을지玆에裁決ᄒᆞ시믈仰홈

案 第二十三号

貴報告書第四十一号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本府管下等地所謂東學이라稱ᄒᆞ고奄成徒黨行止殊常ᄒᆞᆫ바木川鎭岑連山文義等地尤甚ᄒᆞ고公州山內面上下蘇田里에ᄂᆞᆫ窩窟을便成聽聞狼藉ᄒᆞ니果然인지令到卽時形止消詳採探不日馳報호ᄃᆡ如或捱過日後滋蔓ᄒᆞᆫ弊가有ᄒᆞᆫ境遇에ᄂᆞᆫ其責有歸라ᄒᆞ신內部秘訓承准ᄒᆞ와上項各郡에翻謄秘飭ᄒᆞᆫ緣由ᄂᆞᆫ已為馳報이견과木川等四郡段은姑無殊常之跡이다連續報来이올고公州郡守徐玉淳段은巡校書記를派送ᄒᆞ야秘探ᄒᆞᆫ件記를錄上ᄒᆞ엿ᄉᆞᆸ기巡檢十八廳使二名을發遣ᄒᆞ와十五名을捉来ᄒᆞ와供辭ᄂᆞᆫ別紙開錄ᄒᆞᄋᆞᆸ고柳夢石李鳳汝等段은出他未捉ᄒᆞ고金汝宗段은亦自守備隊로派送兵丁ᄒᆞ야捉囚該隊이온즉未得取供ᄒᆞ온緣由를內部에報ᄒᆞ고玆에謄報ᄒᆞ오니査照ᄒᆞ시믈望홈等因인바據此查諸囚抵賴가如出一口ᄒᆞ니公州書記ᄂᆞᆫ據何秘探인지到卽更査ᄒᆞ야具供馳報ᄒᆞ되就中無罪之確有可據者ᄂᆞᆫ卽行放免ᄒᆞ야無罪者로毋或枉罹케ᄒᆞ며有罪者로不得倖逭케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홈이可홈

建陽二年四月十三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趙

忠淸南道裁判所判事李乾夏 閣下

訓令高等裁判所件 / 案 第三十九号

建陽二年 七月 十九日 起案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金昌炯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訓令高等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玆에裁決ᄒᆞ시믈仰홈

案 第三十九号

本月十六日에議政府贊政法部大臣臣韓圭卨謹奏今番稱慶陳賀時頒詔文中一各道流配以下人犯俱着減等發落一京外監禁人犯查明所犯情節分別減等發落　內有案情本輕可予矜原者亦着該部查明請旨定奪事頒下矣流配監禁人犯之各減幾等懲役人犯之並為減等與否及何揆罪犯之可以減等自臣部並不敢擅便何以為之敢稟奉旨謀叛強盜竊盜殺人通奸騙財各減一等未決囚待判決亦減一等事命下矣欽奉 詔勅高等裁判所 漢城裁判所 判決罪犯中 謀叛強盜竊盜殺人通奸騙財外 懲役人犯之當減一等者 姓名罪名 及始役日字 別紙開具謹奏 同日奉旨依奏ᄒᆞ라ᄒᆞᄋᆞᆸ신바 判付內辭意를奉審施行ᄒᆞ되 左開罪人을 到卽押致ᄒᆞ야 聖旨를 布諭 各減一等ᄒᆞ고 形止를 報来ᄒᆞᆯ事로 玆에 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 施行ᄒᆞᆷ이可홈

建陽二年七月十九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高等裁判所判事李寅祐 閣下

左開

金性元

朴景雲

訓令忠淸北道件 / 案 第三十号

光武元年 八月 十七日 起案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訓令忠淸北道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三十号

貴報告書第五十九號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第七號訓令을承准ᄒᆞ와本府懲役人犯處에各其布諭ᄒᆞ고本律에減一等ᄒᆞ야其姓名役限라道內各郡에曾前赴配而未宥者와懲役罪囚之滿限當放者을專為鑑燭ᄒᆞ야一體左開註明ᄒᆞ

와已於今四月二十九日에報告이올더니尙未承指令故로更玆報告ᄒᆞ으니查照指令ᄒᆞ시믈要ᄒᆞ올事等因인바據此查懲丁吳斗相李正道ᄂᆞᆫ東匪隨從으로執馬執穀ᄒᆞ얏시니是亦盜也라減等一疑을何可擧論이며黃東俊은罪雖賊盜나役限이已滿ᄒᆞ니到卽放送ᄒᆞ며堤川郡配囚沈致成李達濟淸風郡配囚盧昌根等을一倂押致貴所ᄒᆞ야詳覈其犯罪事件後에依律照勘ᄒᆞ야換處懲役이되各其居配月日은幷於役限內准理ᄒᆞ여沈致成은罪于玆寡ᄒᆞ니亦難減等이오盧昌根李達濟는奉赦典ᄒᆞ와各減一等ᄒᆞ고擧行形止믈卽為報来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믈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光武元年八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忠淸北道裁判所判事朴齊億 閣下

指令漢城裁判所件 / 案 第一百三十九号

光武元年　　月　　日　起案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金昌炯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指令漢城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一百三十九号

貴質稟書第八百十号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開에本所檢事公訴에由ᄒᆞ야被告ᄒᆞᆫ金亨鎭白完亨呂基銓金雲培金信元僧法天洪仁聖等의案件을審理ᄒᆞ오니被告金亨鎭은為其求嗣ᄒᆞ야曾於十八年前에禱于名山ᄒᆞ야生得一男ᄒᆞ고酷信神道ᄒᆞ야燒香行禱를式至于今인바丙申二月以後로奪性於山魔ᄒᆞ고妄言以惑衆ᄒᆞ야至有渠當為刺史之說이고或造符書ᄒᆞ야稱度病厄ᄒᆞ고賣與於人이라ᄒᆞ오며被告白完亨은 金亨鎭의前後行為를有似略知이오나中道改舌ᄒᆞ야吞重吐輕ᄒᆞ야以眩獄情ᄒᆞ엿ᄉᆞ오며被告呂基銓은為親酬勞ᄂᆞᆫ由其常情이오見欺買符ᄂᆞᆫ寔出愚迷이온바覺其狂妄ᄒᆞ고始乃絶交라ᄒᆞ오며被告金雲培ᄂᆞᆫ欲治子病ᄒᆞ야追逐亨鎭타가見其虛誕ᄒᆞ고擧責絶交라ᄒᆞ오나其所觧夢之說은何其癡而且誕이오며被告金信元은念佛庵에居留ᄒᆞᆫ故로金亨鎭의数次祈禱홈을得見ᄒᆞ고其為刺史之說은歸之虛誕이라ᄒᆞ오며被告僧法天과被告洪仁聖은或見其設禱ᄒᆞ고或従以使喚이오나俱不知情이라ᄒᆞ오니竊查金亨鎭段은卽一接魔失性之人으로假降山靈ᄒᆞ고狂言惑衆이殊極痛駭나柳璣告發之辭ᄂᆞᆫ涉於誣軽而為重이오白完亨吞吐之情은以其含糊而致疑이온바金亨鎭之褻瀆神明과假降邪神은難逭當律이옵기被告金亨鎭은大明律祭祀編褻瀆神明條凡私家告天拜斗褻瀆神明者律과同律同編禁止師巫邪術條假降邪神書符呪水扇惑人民為首者律노名例編二罪俱發以重論條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律에照ᄒᆞ야絞에處홈이可ᄒᆞ오며被告白完亨은同律雜犯編不應為條凡不應得為而為之事理重者律에照ᄒᆞ야笞八十에處ᄒᆞ옵고被告呂基銓金雲培金信元等은同律同編同條

凡不應得爲而爲之者 律에 照하야 各히 笞四十에 處ᄒᆞ옴이可ᄒᆞ오나被告等所犯이係是六犯外이온즉奉赦典各減一等ᄒᆞ옴이可ᄒᆞᄆᆞᆫ고被告僧法天과被告洪仁聖은別無罪犯이온즉參酌放免이可ᄒᆞ오며告發人柳璣ᄂᆞᆫ何以處辦ᄒᆞ올지並玆質稟ᄒᆞ오며一切書類를粘呈ᄒᆞ오니査照ᄒᆞ오셔指令ᄒᆞ심을望홈等因인바據此查金亨鎭之憑魔惑衆과白完亨之吞吐眩獄과呂基銓金雲培金信元之酷信邪術等情節이今於會查에悉露無餘ᄒᆞ니究其所犯에俱極痛駭라貴所議讞이甚為妥合ᄒᆞ니幷依原擬律施行ᄒᆞ되本年八月十六日凡未決囚待判決一體亦減一等ᄒᆞ라ᄒᆞᄆᆞᆫ신聖旨를布諭後各減一等ᄒᆞ야金亨鎭은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고白完亨은笞七十에處辦放送ᄒᆞ고呂基銓과金雲培와金信元은各笞三十에處辦放送ᄒᆞ고僧法天과洪仁聖은參情究跡에別無可罪之端ᄒᆞ니幷與告發人柳璣로一體放釋後擧行形止를卽為報来ᄒᆞᆯ事로玆에指令홈

光武元年九月十三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漢城裁判所判事徐相世 座下

再一切書類ᄅᆞᆯ繳還홈

訓令全羅南道件 / 案 第二十三号

光武元年　　月　　日　起案

光武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金昌炯

刑事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顧問官

訓令全羅南道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十三号

貴報告書第二十五号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管下光州郡不動坊楊林里居鄭琪愚가其子洵敎에范治明의獄事惡名을千萬曖昧히冒被ᄒᆞ엿다原狀을抱ᄒᆞ고建陽元年十二月에泣訴府庭이옵기命案審理ᄒᆞ미事係難憤이기로同福郡守崔俊相으로別定査官ᄒᆞ와該獄初覆原案을底泝考ᄒᆞ고隣證諸招를更為查覈ᄒᆞ여成案報來ᄒᆞ옵기自府로參互供ᄒᆞ고執定因犯ᄒᆞ와論理報告ᄒᆞ온指令內槩에此를査ᄒᆞ니獄到疑眩ᄒᆞ야는雖至十査라도務在必覈而正犯被告는姑且勿論ᄒᆞ고為苦主之指讎者ㅣ卽一鄭洵敎인듸漏網多日에尙未斯得이라到卽另加譏詗ᄒᆞ야隨獲即報ᄒᆞ여以其疑似로換塡名目이揆以獄體에寧不有欠가在囚鄭琪愚는放送ᄒᆞ고其子洵敎를另加譏詗이라該郡에訓飭ᄒᆞ야使之擧行이옵더니七月日에鄭琪愚의訴狀을接准ᄒᆞᆫ즉內槩에獄事는人命이関係가在ᄒᆞ니死者가冒被人殺之名ᄒᆞ고生者가橫被殺人之名ᄒᆞ면幽明이雖為殊塗나豈無鬼誅顯戮之理乎아范治明이甲午十二月日에以租苞事로出於匪魁白半石之口招ᄒᆞ야見捉於官牌이던지渠是生之家十餘年畓舍音이라同月十六日黃昏에来訪生之子洵敎이온바洵敎는伊日本

官册室生辰에入去不在而與生으로白魁의所奪租苞相左事에見捉ᄒᆞᆫ来歷과無事周旋ᄒᆞᆯ事로數語付託後에旋去이옵더니翌日未明에范哥三十餘名이擔治明之屍ᄒᆞ고指斥洵教ᄒᆞ야發告官庭則及其檢驗에屍無傷痕은衆目所睹요天日共證이온즉檢官이分付刑吏曰如此没實之事를何可成案乎아一報可斷云云者一場耳目이所共聞見이옵고且以隣證諸招로觀之라도范治明이黃昏에来訪生之子家ᄒᆞ야不見洵教ᄒᆞ고與生暫語旋去之狀은證目이自在ᄒᆞ옵고治明이當夜에醉倒於西門外川邊ᄒᆞ야守城軍宋巡之趙永仲이歷路的見ᄒᆞ고竟其子范玄植ᄒᆞ야負入村店에救之未甦은丁寧納供이온즉被打之誣가歸之落空이오范之死가不由鄭은自可斷矣여ᄂᆞᆯ末梢에切隣金判卜과李春化를施刑勒招ᄒᆞ야論以被打ᄒᆞᆯ斷以正犯ᄒᆞ야忽地飜案ᄒᆞ여使此千萬曖昧之人으로橫被悪名ᄒᆞ니金石은可磨라도此名은難磷이요天神이共知어ᄂᆞᆯ此寃을何伸가追後覆檢이一如初案ᄒᆞ야以若重案으로爲其不共之案이라如此窮極之寃을六次鳴寃于全州監營에仍未得審查伸寃ᄒᆞ고又為奔於法部ᄒᆞ와承題到付次下来則生之子洵教가六朔縲紲이다가未脫悪名ᄒᆞ고逃躲其身이온바生與治明으로旣有接語ᄒᆞ니以此罪로至於范獄則此或無寃이려니와不見范哥之洵教가彼此難雪之悪名은雖范鬼라도有罪요鄭鬼라도抱憾이라以法部題辭로卽呈于全州府ᄒᆞ와審查於光州郡ᄒᆞ고又為裁判於羅州府ᄒᆞ와范治明之子珉植과両檢刑吏로三造對質後前後情節을更為查覈ᄒᆞ와報告法部ᄒᆞ고自部로又爲訓令ᄒᆞ와羅州府에셔光州郡으로飜訓更查ᄒᆞ와其時緊證의게捧直招ᄒᆞ여仍為修報이옵더니未承斷案ᄒᆞ와丙申九月日에又爲鳴寃于觀察府ᄒᆞ여同福郡守로定查官ᄒᆞ와其時應問各人處에一一查問ᄒᆞ온즉范哥食主人全哲文의招內當夜死已久之范屍를何可擔来吾家오卽為退送이라ᄒᆞ엿시니范治明之子所謂回甦遺言之說이於理不當이옵고醫員千成在招內에十二月十六日夜에范德仲이謂

有行中挾滯者ᄒᆞ니急用凡藥이라ᄒᆞ야以蘇合丸出給云者范治明之入於匪魁之口招ᄒᆞ야見捉入邑에懷惴氣塞을可知이온즉前後査報中被打之誣가明若觀火라決讞伸寃ᄒᆞᄋᆞᆷ기를千萬泣祝이ᄋᆞᆷ더니法部에셔下来ᄒᆞᆫ指令을伏見ᄒᆞ온즉正犯被告勿論ᄒᆞ고鄭琪愚는放送ᄒᆞ고洵教를譏詗ᄒᆞ야隨獲卽報之處分이시온바洵教가非檢前逃躲라勒招로成案ᄒᆞ야因犯之目을誤錄ᄒᆞᆷ을認得ᄒᆞ고六朔縲紲이다가以此含寃逃脫ᄒᆞᆷ이라洵教의伊日册室辰宴에終日參座ᄒᆞ여至夜不還은三班官屬이俱為見知이온즉渠矣正犯之目은發明脫祛ᄒᆞ랴면畢境被告之目이라도其時范哥ᄒᆞ고接語ᄒᆞ든其父의게歸之ᄒᆞ것시니父子之間에罪名을相加ᄒᆞ옵는境遇에渠被悪名이라도至寃切痛이라更加審理ᄒᆞ야報告上部ᄒᆞ와悪名을脫祛케ᄒᆞ여지라는等因이온바今此鄭洵教之所遭范獄은非但其父鄭琪愚가泣血呼訴之至死不休라泝考檢案에獄是疑獄而有一劈疑之端ᄒᆞ니執此以究ᄒᆞ면因犯之不至臆斷이燎然可判이라鄭洵教當日册室參宴에至夜不還은人人共證이요范治明之醉倒西川에觸冷後負来는宋巡之趙永仲之證供的確ᄒᆞ고死已久之范屍를還為退送은食主人全哲文之招가丁寧則范之子珉植招內에其父回甦遺言之說이於理不當이요有誰立證가苦主之指斥洵教가雖曰緊切이나凡係獄體에豈可以苦主之說로偏聽断獄이올지其在死生無憾之地에欽以虞刑ᄒᆞ고施以尉當이온바范治明之被打於洵教가旣無證隣이온듸范之子가托以其父之遺言ᄒᆞ고指斥洵教ᄒᆞ여歸之正犯이온바斷案之後不得伸寃ᄒᆞ고遽然逃躲則其所詗捉은在法當然이오以其父所訴로見之則父子之間에有難以罪名相加ᄒᆞ야事勢不得已逃라ᄒᆞ니參互倫彝에情或可原이라獄到疑眩에用以傅生之典이容有可議而未克審愼ᄒᆞ야致有寃訴ᄒᆞ오니此不得不自部로明査裁判然後에乃可無寃이ᄋᆞᆷ기玆에據實報告ᄒᆞ오니査照ᄒᆞᄋᆞᆷ셔原被告를質査判決ᄒᆞ심을伏望等因인바據此查死者之醉飽致命이今據報辭에

無容更疑라因犯定目을詎可只憑苦招ᄒᆞ야猜度而斷之리오貴所疑論이甚為妥當ᄒᆞ니鄭洵教를不必追詗ᄒᆞᆯ事로玆에指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光武元年九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全羅南道裁判所判事尹雄烈 閣下

訓令忠南裁判所件 / 案 第七十八号

光武元年 十一月 十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李容成

刑事局長

刑事課長

訓令忠南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ᄒᆞᆷ

案 第七十八号

貴報告書第一百四十九号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槩에訓令을承准ᄒᆞ와本所所管懲丁中六犯外人犯等處에聖旨ᄅᆞᆯ布諭後一併放送ᄒᆞᄋᆞᆸ고姓名成册을先玆修上等因인바據此查前後訓飭이何等截嚴而令此罪囚放送에全不審愼ᄒᆞ야六犯以內人犯이混入放秩ᄒᆞ얏스니其在擧行에寧不駭歎가不審之責은行

將論警ᄒᆞ려니와左開人犯을到卽還囚就役後形止ᄅᆞᆯ馳報ᄒᆞ며私掘罪人李友日은溯考刑名簿則初無此犯ᄒᆞ고只有討索錢穀罪人李友一ᄒᆞ니名雖相近이나罪各不同이라該李友日을亦卽還囚ᄒᆞ고詳查委折ᄒᆞ야星火報来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ᆷ

光武元年十一月 日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法部大臣趙

忠淸南道裁判所判事李乾夏 閣下

左開

柳致培 匪擾為從罪

徐石汝 東學罪

金時默 東學罪

鄭在河 匪擾罪

金善在 打破人家隨從准窃盜罪

安聖秀 討索錢穀為從罪

鄭完乞 暗賣公廨罪

李友日 更查次

指令全羅北道裁判所 / 案 第一号

光武二年 二月 五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指令全羅北道裁判所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一号

貴質稟書第二十九號를接准ᄒᆞ야貴管下鎭安郡斗尾面佳林里致死男人全乃三獄事査案을閱査ᄒᆞ니全乃三의五寸姪이曾八東匪ᄒᆞ야收馬近邑타가因為伏法이더니茂朱郡居李敬長이見失赤騾라ᄒᆞ고隣居朴成三卞若金等을来見乃三ᄒᆞ고責出其라騾즉乃三이告官卞明ᄒᆞ얏거ᄂᆞᆯ李敬長이又送朴卞兩民ᄒᆞ야勒索騾價즉乃三이二十五兩을辦給ᄒᆞ니朴卞兩犯이五兩錢을加討ᄒᆞᄂᆞᆫ지라乃三이又辦給ᄒᆞᆯ意로東西請貸ᄒᆞ야로竟至未得홈에乃用葛索縊死ᄒᆞ얏스니死也雖浪이나李敬長이不遵官決ᄒᆞ고縱慾横侵타가致此人命自戕홈이殊極痛惡이라期於拘覈定罪이고朴成三卞若金은李敬長의指使를聽從ᄒᆞ야肆毒討財타가致此獄變ᄒᆞ니俱難免由我之律이라朴成三은大明律人命編威逼人致死條凡因事威逼人致死者律에照ᄒᆞ야笞一百에處辦放送이되追埋葬銀一十兩給付屍親이고在逃卞若金은刻期訶捉ᄒᆞ야施以同律이可ᄒᆞᆯ事로玆에指令홈

光武二年二月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全羅北道裁判所判事尹昌燮 閣下

訓令忠淸北道件 / 案 第十号

光武二年　三月　四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訓令忠淸北道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玆에裁決을仰홈

案 第十号

貴報告書第十六號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第三號訓令을承准ᄒᆞ와懲丁의姓名下에罪名及役限을更詳左開報告라ᄒᆞ고連接文義郡李正永의訴狀즉內開에兄正道가以曖昧事로乙未十月分에處於二年懲役ᄒᆞ와役限則去年九月이온데未得蒙放等因인바據此査懲丁嚴三允方宗石金卜元金水根朴三哲金在元等은罪犯縛寡ᄒᆞ니係是六犯以內라姑不加放送而當為減等ᄒᆞ려니와吳斗相李正道ᄂᆞᆫ役限이已滿ᄒᆞ얏스니何不放釋ᄒᆞ고致此奔訴인지誠極可駭라到卽該犯吳斗相李正道ᄂᆞᆫ斯速放送後卽為馳報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ᆯ事

光武二年三月四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忠淸北道裁判所判事朴齊億 閣下

訓令黃海道件 / 案 第十六号

光武二年　三月　廿九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訓令黃海道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을仰홈

案 第十六号

貴第三十号報告書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開部第十二号訓令을奉准ᄒᆞ와自全羅南道谷城郡으로定配於本道兎山郡罪人李鍾泰의事件을取考府上配案이온즉以稱托剿匪ᄒᆞ고討索民財罪로七月十九日到配而到配之時에適當營屬은方解ᄒᆞ고府務ᄂᆞᆫ未定ᄒᆞ야到配形止ᄅᆞᆯ初未及修報이온지配文도亦為闕失이고所存者只是配案一册이온바事係討財에罪近六犯ᄒᆞ온즉果難擅便ᄒᆞ와玆에報告ᄒᆞ오니查照處分ᄒᆞ심을要홈等因인바據此查該犯李鍾泰의到配月日을初不報来故로上年十月二十八日에本部大臣이溯考配案ᄒᆞ와罪雖六犯이나犯在新式以前諸罪人을恩霈之下에上奏ᄒᆞ와奉旨並令特為放送ᄒᆞ라ᄒᆞᄋᆞᆸ신바今此李鍾泰가獨漏於赦典ᄒᆞ엿스니聞甚可駭라到卽飜飭該郡ᄒᆞ야聖旨ᄅᆞᆯ布諭後放送ᄒᆞ고形止ᄅᆞᆯ報来ᄒᆞᆯ意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可ᄒᆞᆯ事

光武二年三月二十九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黃海道裁判所判事李嘉鎭 閣下

訓令仁港件 / 案 第十一号

光武二年 三月 二十九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訓令仁港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一号

貴報告書第三號을接准ᄒᆞᆫ즉內開에昨日午時量에本港警務官劉漢翼에報告書를接閱ᄒᆞ온즉內開本日上午点鍾에當直權任巡檢泰貞鎭任在鎬監獄看守巡檢吳基煥黃世永所告內에在囚懲役罪人曺德根梁鳳九黃順用姜伯石과日人刺殺未辦罪人金昌洙가穿獄越墻ᄒᆞ와幷為逃去이다이올기即與巡檢으로港底坊曲과船隻에一一詗探ᄒᆞ오되現無踪跡이옵기로分派巡檢於水陸ᄒᆞ와期圖詗捉케ᄒᆞ오며當直權任巡檢泰貞鎭任在鎬監獄看守巡檢吳基煥黃世永과監獄押牢金春化를一併捉囚ᄒᆞᄋᆞᆸ고刻期詗捉이오나姑無現跡이올기로不勝悚仄ᄒᆞ와玆에報告ᄒᆞ오니照亮ᄒᆞ시믈望홈等因이온바

監獄署에牢囚ᄒᆞ온罪人을多數失捕가聞甚驚訝이오며且該各等이関係六犯이을고就中金昌洙段은所供이重大이옵고事関外國ᄒᆞ온바尙未裁決ᄒᆞ옵신ᄇᆞᄀᆡ라該警務官劉漢翼에게另加嚴飭ᄒᆞ와一併査拿케ᄒᆞ라ᄒᆞ엿ᄉᆞ오나當該監獄署長當直巡檢等의宜有警責은本判事萬難處断ᄒᆞ와玆에報告ᄒᆞ오니照亮ᄒᆞ시와裁處指令ᄒᆞ심을望홈等因인바據此查該犯等의越獄逃躲가聞甚可駭라在逃諸漢을期於訶捉이되百日限內에若未斯得이면貴判事와該警務官과監獄署長은行將論警ᄒᆞ리니十分惕念ᄒᆞ야無或踈忽이며看守巡檢吳基煥黃世永은職在監獄ᄒᆞ야有此失錯이고監獄押牢金春化ᄂᆞᆫ身為獄卒ᄒᆞ야不覺失囚ᄒᆞ엿스니其在擧行에萬萬痛駭라該犯等은一幷嚴囚ᄒᆞ고當直巡檢泰貞鎭任在鎬ᄂᆞᆫ別無監守之責ᄒᆞ니嚴懲放送ᄒᆞᆯ意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二年三月二十九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仁川裁判所判事徐相喬 座下

指令京畿裁判所件 / 案 第十一号

光武二年 五月 四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指令京畿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一号

貴質稟書第一號를接准ᄒᆞᆫ즉內槩에漢城裁判所檢事咸台永第一號照會를接准ᄒᆞ온즉內開에法部訓令第二十九號를奉准[1]內開에部訓令第十四號를奉准ᄒᆞ와監獄署에在囚ᄒᆞ온李尙玉申明雨金正業金洛哲權聖佐等을一體審覈ᄒᆞ온즉諸犯이皆稱甲午以前에ᄂᆞᆫ東學에染跡ᄒᆞ엿ᄉᆞ오나天討를經ᄒᆞ온後로ᄂᆞᆫ背道帰農이라ᄒᆞ온바盖此巨魁ᄂᆞᆫ崔時衡金致九兩漢이온ᄃᆡ在逃未捉이옵고現下諸犯은俱是勒行이요實非樂從ᄲᅮᆫ더러且事屬過境이요非今復惑이온즉特從改之為貴와脅從罔治之義ᄒᆞ야飭諭放送ᄒᆞ야使各帰農ᄒᆞ오며恐未知何如이올지該犯等의供案를玆에粘付質稟ᄒᆞ오니査照ᄒᆞ오셔處辦ᄒᆞ시믈為要等因인바據此查該犯等이旣云帰化ᄒᆞ니勒行樂從을令可擧論이라到卽自貴所로愼勤安業之意로另飭後幷為放送ᄒᆞᆯ事로玆에指令事

光武二年五月四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京畿裁判所判事金永悳 閣下

指令畿裁件 / 案 第三十五号

光武二年 七月 八日 起案

1 밑줄 친 부분은 내용상 잘못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 보아도 <內開>가 3개 연이어져 있다.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指令畿裁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三十五号

貴第十五號質稟書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開에陽城郡老谷居洪秉燮은以東學餘踪으로轉入義兵ᄒᆞ야義兵이歸化則又轉入耶蕪教ᄒᆞ야與教頭龍仁居金俊熙로相為表裏ᄒᆞ야恣行不義ᄅᆞᆯ無所不至ᄒᆞ니該兩郡居民이酷被其禍ᄒᆞ야皆曰可殺이다니온바金犯은間已懲役이오나洪犯을尙未勘罪ᄒᆞ야常欲捉懲터니天理孔昭에罪難斯逃이올던지金俊熙의行悖情節을渠欲代言發明次自首於查實之場故로仍為捉囚ᄒᆞ고查問其行跡則所供이與所聞으로毫無異同이라藉稱教人ᄒᆞ고侵虐平民과攘奪錢財ᄅᆞᆯ有甚於前日東學義兵時作弊ᄒᆞ야陽城老谷居李寶京의畓ᄀᆞᆫ十五斗落農牛一隻奪取ᄒᆞ온前後事件이綻露無餘則其在衛生除暴之地에此等悖類ᄂᆞᆫ實不可歇勘이온지라大典會通禁制條武斷鄕曲凌虐百姓律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옴이妥當ᄒᆞ을듯ᄒᆞᄋᆞᆸ기로玆에質稟ᄒᆞ오니查照ᄒᆞ오서指令ᄒᆞ심을望홈等因인바據此查洪秉燮의藉教行悖가罪雖可痛이나首犯金俊熙가旣経重勘ᄒᆞ니不無首従之別이라該犯洪秉燮은大明律名例編隨従減一等律에炤ᄒᆞ야金俊熙本律에一等을減ᄒᆞ야笞一百懲役三年에處ᄒᆞᆯ事로玆에指令事

光武二年七月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京畿裁判所判事金永悳 閣下

訓令全南件 / 案 第三十三号

光武二年 七月 十二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訓令全南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三十三号

貴第十四號報告書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槩自府로另派巡檢ᄒᆞ야井邑泰仁等地에셔匪類十名을捉来ᄒᆞ왓기嚴覈情節ᄒᆞ야供招ᄅᆞᆯ賫上ᄒᆞ올선과今此十漢中金亨淳段는渠以匪魁로戕害人命ᄒᆞ고攘奪錢財之許多行悖無所不至而前已漏網에今又現跡이可謂悪貫已盈罪不可長이라雖無起黨之根窩나以其已染之邪說노誣惑愚民ᄒᆞ니如此者類ᄂᆞᆫ不可貸縷라施律警勵ᄂᆞᆫ惟在處辦이시오며其餘沈道豊林蒙基趙辰玉姜道連段은俱以甲午餘徒로內懷不化之意에尙蹈殊常之跡ᄒᆞ야為人指目에就此譏捉ᄒᆞ엿스니究厥所為에不可

仍置오李乃亨金在元趙大集韓用基崔同骨段는多歧鉤覈이나現無可執之贓ᄒᆞ니不可强加罪名等因이며第十九號報告內開匪類十名供招ᄂᆞᆫ已為報告ᄒᆞ잇견과十名中巨魁金亨淳은前已漏網에今纔現捉ᄒᆞ얏스니使渠求活이라도不可得矣이오며趙辰玉段은為金魁之窩主ᄒᆞ야東學文書ᄅᆞᆯ搜推於渠矣則焉敢曰無罪이며沈道豊은甘聽誣惑之說ᄒᆞ야謂以修其道則無灾疾이라ᄒᆞ고受帖誦呪ᄒᆞ엿스니匪類之目을焉可得免이리오至於林蒙基姜道連李乃亨金在元趙大集韓用基崔同骨七漢ᄒᆞ야ᄂᆞᆫ三朔牢囚에多歧鈎覈이오되現無可執之贓則不可强加罪名이온바回指前有罪自府擅放이오되已自繡所로譏探捉來者則蚩蚩其氓이睊睊胥顧ᄒᆞ야各懷疑懼ᄒᆞ고不能安堵而捉匪之說이日益騷訛ᄒᆞ야使彼已化之民으로懼溺自沈之歎徃往有之이다고로其在撫綏之道에宜用權經之術이ᄋᆞᆷ기在囚罪人中金亨淳趙辰玉沈道豊은嚴枷牢囚ᄒᆞ고其餘林蒙基姜道連李乃亨金在元趙大集韓用基崔同骨七漢은自府庭嚴懲曉諭에使之歸業ᄒᆞᆯ意로併為放送이온바已報之罪人을回指前擅行勘放이自不勝悚仄緣由ᄅᆞᆯ玆에報告等因이며第三十二號報告內槩總巡申光熙報告內在囚罪人金亨淳捧招後具格牢囚ᄒᆞ얏더니該漢이乘其人靜夜深ᄒᆞ야開扳枷杻碎破枷頭絶斷着栲鑽金ᄒᆞ고穿壁逃走等因이며第三十四號報告內槩總巡申光熙報告內本獄在囚匪類罪人沈道豊因病致死等因이ᄋᆞᆷ기使之如例檢驗이온즉因病致死的實ᄒᆞ기로屍身出給埋瘞等因인바據此查金亨淳은冒法行悖ᄅᆞᆯ渠旣自服ᄒᆞ고且閔獄犯인데身先逃躲ᄒᆞ니殊極痛歎이라連加譏詗ᄒᆞ며沈道豊은所犯情節이與金一也로되未経按法而致斃ᄒᆞ니尤切慨歎이며趙辰玉은查閱供案에終無可罪之確據ᄒᆞ고至若册子之搜推ᄂᆞᆫ是乃金魁之任置者라ᄒᆞᆫ즉與李乃亨等으로宜異ᄒᆞ리니另以操身勤行ᄒᆞ야無或陷罪之意로曉飭放送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二年七月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泳喆 閣下

指令高所件 / 案 第七十三号

光武二年 七月 十九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指令高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七十三号

貴第十二號質稟書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開本所檢事公訴에由ᄒᆞ야被告崔時亨과被告黃萬己와被告朴允大와被告宋一會의案件을審理ᄒᆞᆫ즉被告崔時亨은丙寅年에杆城居筆墨商朴春瑞為名人에게所謂東學을受ᄒᆞ야善道로病을療ᄒᆞ며呪文으로神을降ᄒᆞᆫ다稱ᄒᆞ고列郡各道에週遊遍行ᄒᆞ야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란十三字呪文과至氣今至願為大降이란八字降神文과東學原文第一編布德文과第二編東學論과第三編修德文과第四編不然其然文과弓弓乙乙之符로人民을煽惑ᄒᆞ며徒黨을締結ᄒᆞ고또伏誅人崔濟愚

의萬年枝上花千朶四海雪中月一鑑이란詩句를慕尙ᄒᆞ며法兄法弟의稱為尊崇ᄒᆞᆷ을因ᄒᆞ야法軒의號를稱ᄒᆞ고海月의章을刻ᄒᆞ야敎長과敎授와執綱과都執과大正中正等頭目을各方에 署置ᄒᆞ고또包와帳이란會所를設하야徒衆을聚集ᄒᆞᆷ이千萬으로計ᄒᆞᆫ지라伏法ᄒᆞᆫ崔濟愚를伸寃ᄒᆞᆫ다 稱ᄒᆞ고 往在癸巳에其徒弟數千人으로進闕陣疏타가旋卽解散하고또報恩帳內에 多衆을聚集ᄒᆞ얏다가巡撫使의宣諭ᄒᆞᆷ을因ᄒᆞ야各自散去러니甲午春에至 ᄒᆞ야被告의徒黨全琫準이가古阜地方에黨羽를嘯聚ᄒᆞ야乘機蜂起ᄒᆞ야官 吏를戕殺ᄒᆞ며城鎭을陷覆ᄒᆞ야兩湖之地에糜爛波盪ᄒᆞᆫ境에至ᄒᆞ니被告가 此에指使和應ᄒᆞᆫ事ᄂᆞᆫ無ᄒᆞ다ᄒᆞ나亂階와蘖根을究ᄒᆞ면被告의呪符惑衆ᄒᆞᆷ 에由ᄒᆞᆷ이오被告黃萬己ᄂᆞᆫ去甲午五月에東徒林學善의脅勒을受ᄒᆞ야入道 ᄒᆞ야旋卽歸化ᄒᆞ얏다가昨年七月또林學善의言을聽ᄒᆞ고尙道之地에大宗 先生을義不可不見이라ᄒᆞ야逃命ᄒᆞᆫ崔時亨을訪見ᄒᆞ고魚鮮을饋遺ᄒᆞ엿고 被告 宋一會ᄂᆞᆫ甲午四月에東學에投入ᄒᆞ야崔時亨이靑山地方에在ᄒᆞᆯ時 一次訪見ᄒᆞᆫ後至今年正月에所親ᄒᆞᆫ東徒朴允大處에셔崔時亨이가利川地 方에住在ᄒᆞᆷ을聞得ᄒᆞ고沃川人朴哥處에說及ᄒᆞ엿더니警務廳官人에게被 捉ᄒᆞ야朴允大와眼同前導ᄒᆞ야原州地方에前往ᄒᆞ야崔時亨을捕獲ᄒᆞ엿고 被告朴允大ᄂᆞᆫ東學에投入ᄒᆞ야崔時亨의女婿金致九家에雇傭타가警務廳 官人에게被捉ᄒᆞ야宋一會와俱與前導ᄒᆞ야原州地에셔崔時亨을捕獲ᄒᆞᆫ後 因而得放ᄒᆞ야歸途에所親ᄒᆞᆫ東徒朴致景을逢着ᄒᆞ야該人에囑託을受ᄒᆞ야 葉錢二十兩을帶ᄒᆞ고京中에專来ᄒᆞ야崔時亨의食費를資助ᄒᆞᆯ次로警務廳 에來到ᄒᆞ엿다가 被捉ᄒᆞᆫ其事實은被告等陣供에訂ᄒᆞ야明白ᄒᆞᆫ지라被告 崔時亨은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 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扇惑人民爲首者律로絞에處ᄒᆞ고被告黃萬己朴 允大宋一會ᄂᆞᆫ同編同條為從者律各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ᆯ만ᄒᆞ오ᄂᆞ被告

宋一會朴允大ᄂᆞᆫ崔時亨捕獲時效勞가不無ᄒᆞ온즉可合減等ᄒᆞᄋᆞᆸ기로並玆質稟ᄒᆞ오며一切書類伴呈等因인바據此査崔時亨은罪惡貫盈ᄒᆞ니咎刻難貸라依原擬律宣告後報来ᄒᆞ며黃萬己ᄂᆞᆫ甘聽林學善之指使ᄒᆞ야尙學ᄒᆞᆯ意로訪見崔時亨ᄒᆞ엿스니難免隨從之律이라亦依原擬律處辦ᄒᆞ고朴允大宋一會도隨從之律은在所難免이되崔時亨捕獲之時에有前導之效勞ᄒᆞ니貴所減等之論이誠為妥當이되朴允大ᄂᆞᆫ有食費資助之擧ᄒᆞ니極涉痛駭라原擬律에一等을減ᄒᆞ야笞一百懲役十五年에處ᄒᆞ고宋一會ᄂᆞᆫ二等을減ᄒᆞ야笞一百懲役十年에處ᄒᆞᆯ事로玆에指令事

光武二年七月十九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高等裁判所判事朱錫冕 閣下

再一切書類繳還

訓令高所件 / 案 第七十四号

光武二年 七月 十九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局長

課長

訓令高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七十四号

貴第三十三號報告書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開에部第七十三号指令을承准ᄒᆞ야被告崔時亨은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扇惑人民為首者律로絞에處ᄒᆞᆯ意로宣告ᄒᆞᄋᆞᆷ고玆에報告等因인바被告崔時亨을原擬律에依ᄒᆞ야絞에處ᄒᆞᆯ意로本日에上奏ᄒᆞ왓더니同日奉旨依奏ᄒᆞ라ᄒᆞᄋᆞᆷ신바到卽該犯崔時亨을絞에處ᄒᆞ고形止ᄅᆞᆯ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二年七月 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高等裁判所判事朱錫冕 閣下

上奏案件 / 案 第二百二十三四号

光武二年 七月 十八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上奏案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百二十三号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臣趙○○謹

奏即接高等裁判所質稟書內開由本所檢事公訴被告崔時亨案付審査則被告崔時亨所供內丙寅年分於杆城居筆墨商朴春瑞處受東學善道療病呪文降神列郡各道周遊遍行以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之十三字呪文至氣今至願爲大降之八字降神文東學文第一編布德文第二編東學論第三編修德文第四編不然其然文弓弓乙乙之符煽惑人民締結徒黨且慕尙伏誅人崔濟愚之萬年枝上花千朶四海雪中月一鑑之詩句因法兄法弟之稱換做稱法軒之號刻海月之章敎長敎授執綱都執大正中正等頭目署置各方且設包帳之會所聚集徒衆以千萬計而稱以伸冤崔濟愚往在癸巳與其徒弟數千人進闕陳疏旋卽解散且於報恩帳內聚集多衆之時因巡撫使宣諭各自散去至甲午春被告徒黨全琫準於古阜地方嘯聚黨羽乘機颺起戕害官吏陷覆城鎭兩湖之地至於糜亂波盪之境被告雖無指使和應之事究其亂階蘖根由於被告之呪符惑衆被告崔時亨照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扇惑人民為首者律處絞何如云矣該犯崔時亨依原擬律處辦之意謹

奏

光武二年七月十八日奏

旨

臣趙

訓令忠淸南道裁判所件 / 案 第五十八号

光武二年　八月　二十三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鄭濟鬩

刑事局長

刑事課長

訓令忠淸南道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五十八号

貴報告第九十号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本所句管罪人徐昌吉의保人宋秉根과劉漢表의保人鄭宜中에게其故縱之由를築底査覈ᄒᆞ야不日督現케ᄒᆞ고形止馳報ᄒᆞ라신第四十七号訓令를承准ᄒᆞ온바徐昌吉은間已自現이온故로為先取供ᄒᆞᄋᆞᆸ고宋秉根은懲放ᄒᆞ온事由를임의報告ᄒᆞ여ᄉᆞᆸ게니와鄭宜中짜ᄂᆞᆫ劉漢表를定限督現이不啻屡矣이오나終不捉納이올쑨더러又有二罪之俱發이온바府下郡獄은前日監營時로쑤터營囚邑囚를混處케ᄒᆞ고郡에서刑鎖를寘ᄒᆞ야監守ᄒᆞᄋᆞᆸ더니設府之後에도監獄署와郡獄兩處로混用ᄒᆞᄋᆞᆸ고郡에刑鎖ᄂᆞᆫ仍寘ᄒᆞ온지라建陽元年十二月에上報ᄒᆞ와尙今未決ᄒᆞ온稷山郡殺獄罪人韓基周ᄂᆞᆫ乃是賊魁라更査審辦ᄒᆞᆯ事로前判事在任時에押上取供ᄒᆞ고公州郡獄에拘囚ᄒᆞ여ᄉᆞᆸᄂᆞᆫᄃᆡ冷獄에서食飮을不得ᄒᆞ고病勢가危劇ᄒᆞ야方在死境이ᄋᆞᆸ던지衆囚狹窄之中에徑斃之慮가似有ᄒᆞ와前判事時에請保ᄒᆞ야許令救療이ᄋᆞᆸ거늘調病之後에不卽還囚ᄒᆞ고仍至逃失이온지라本判事到任之初에罪囚

를默閱ᄒᆞ와事情이綻露ᄒᆞ와到任之前에在逃ᄒᆞ온故로為先嚴治ᄒᆞ고連為督現이온즉分明捉納之意로定限이屢過에施之于令이온바一囚見失도已是難貸커든兩犯俱逃ᄂᆞᆫ其罪何居이오며當初許保ᄂᆞᆫ竊想為念其徑斃이온지追後逃失은必有代勘ᄒᆞ와야可以杜弊懲後이ᄋᆞᆷ기上項鄭宜中을嚴囚杖問ᄒᆞ온즉所供에窮搜廣探ᄒᆞ야期於捉納ᄒᆞᄆᆞᅵ쓰오나到此之境ᄒᆞ오니惟俟厳勘處分이라ᄒᆞᄋᆞᆷ게玆에報告ᄒᆞ오니查照ᄒᆞ시믈望홈等因인바據此查鄭宜中은身為監獄刑吏ᄒᆞ야兩犯重囚를肆然請保ᄒᆞ고逃失之後屢限不現ᄒᆞ니故縱之律을渠烏得免가該犯을大明律捕亡編主守不覺失囚條故縱者各與囚同罪律노各例編称與同罪條至死者減一等律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되劉漢表等捉納之日에ᄂᆞᆫ蒙放ᄒᆞᄂᆞᆫ律이有ᄒᆞ니在逃劉漢表韓基周等을另詗弋以此飭諭擧行이되具格牢囚ᄒᆞ고依例就役等節을加倍嚴飭ᄒᆞ야毋或踈漏生梗이ㅁ獲後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을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二年八月二十三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申

忠淸南道裁判所判事鄭周永 閣下

指令高等裁判所件 / 案 第百五十二号

光武二年 十二月 二十一日 起案

光武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指令高等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百五十二号

貴質稟書第十四号를接准ᄒᆞᆫ內開에本所檢事公訴에由ᄒᆞ야被告鞠在奉과鞠在俊과宋乃春의案件을 審理ᄒᆞ오니被告鞠在奉과鞠在俊은其父弘默이가去甲午八月三日에同郡龍歸洞匪魁金亨順金文化等에게被殺ᄒᆞᆫ바金亨順金文化等이仍爲逃避ᄒᆞ믹未得復仇러니陰曆本年正月二十二日該道繡衣가 同匪魁金亨順을井邑地에서捉得ᄒᆞ야潭陽郡에押到ᄒᆞᆫ즉被告鞠在奉等이復讎ᄒᆞᆯ由로本郡守에게告ᄒᆞᆫ즉繡衣에所捉罪人이라官不可擅便爲敎故로戶長廳拘囚ᄒᆞᆫ바金亨順이被告鞠在奉을對ᄒᆞ야言ᄒᆞ듸鄭寅岳이가吾의被捉ᄒᆞᆷ을若知ᄒᆞ면逃逸ᄒᆞᆯ慮가有ᄒᆞ다ᄒᆞ기로被告等이渠의從弟基同等을送ᄒᆞ야 鄭寅岳을捉來ᄒᆞ야戶長廳에拘囚ᄒᆞ고告官ᄒᆞᆫ즉敎內에當有措處라ᄒᆞ고首校ᄅᆞᆯ命ᄒᆞ야看守케ᄒᆞᆫ後觀察府에往ᄒᆞᆫ지라被告가金亨順에게渠父殺害ᄒᆞᆫ由를問ᄒᆞᆫ즉其言內에甲午七月分에鄭寅岳이가渠을 本郡訓鍊廳前才人家에來見ᄒᆞᆯ時와右道東徒가鄭家에來掠ᄒᆞᆯ時에渠을請邀ᄒᆞ야囑託鞠弘默을除去ᄒᆞ여야後慮가無ᄒᆞ리라ᄒᆞ더니同年八月二日에宋乃春을其家門前路邊에서逢見ᄒᆞ고申託ᄒᆞ듸鞠弘默이執綱을圖得ᄒᆞ야龍歸洞接을屠戮ᄒᆞᆫ다ᄒᆞ기로發通聚黨ᄒᆞ고其翌初三日에射亭에서砲殺ᄒᆞ얏다ᄒᆞᄂᆞᆫ지라陰曆本年正月二十四日에光州府에서巡檢을派送ᄒᆞ야金亨順과所招諸漢을一幷押上ᄒᆞᆯ意로訓飭이有ᄒᆞ야鄭寅岳도亦在押上이라被告等이巡檢을對ᄒᆞ야鄭金兩人을衆目所視處에一次質問ᄒᆞ기ᄅᆞᆯ該郡拂月樓下

에서鄭金을質卞ᄒᆞᆫ즉金亨順이가鄭寅岳을對ᄒᆞ야前言으로說去ᄒᆞᄆᆡ鄭哥의答辭를　被告等이不爲採問ᄒᆞ고紅箭門路上에挾到ᄒᆞ야被告鞠在奉은以刀로割腹ᄒᆞ고被告鞠在俊은以刀斫頸ᄒᆞ얏스며被告宋乃春은甲午八月二日에潭陽郡場市往赴ᄒᆞᄂᆞᆫ路에鄭寅岳을其家門前路邊에서逢着ᄒᆞᆫ즉其言內에鞠弘默이東學執綱을圖得ᄒᆞ야邑包ᄅᆞᆯ圖得ᄒᆞ고龍歸洞接을打破ᄒᆞ다ᄒᆞ니觀市歸路에此事機을龍歸洞執綱에게往傳ᄒᆞ야以爲預防케ᄒᆞ라ᄒᆞ기依其言往傳ᄒᆞᆫ즉該執綱金亨順等이其明日에齊會射亭ᄒᆞᆯ意로發通ᄒᆞ더니果於其翌에該徒屢百名이射亭에聚集ᄒᆞ고鞠弘默을攫去ᄒᆞ야卽爲砲殺ᄒᆞᆷ을與衆同見ᄒᆞ얏스니其事實은被告等의陳供自服과該道巡校文振元等証供에訂ᄒᆞ야明白ᄒᆞᆫ지라被告鞠在奉은大典會通殺獄條其父被殺成獄不待究覈擅殺其讎人者減死定配文으로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왑고被告鞠在俊은同條同律로大明律名例共犯罪分首從條若家人共犯侵損於人者以凡人首從論이라ᄒᆞ고同條凡共犯罪隨從者減一等文으로笞一百懲役三年에處ᄒᆞᄋᆞᆸ고被告宋乃春은　同律人命編謀殺人條凡謀殺人從而不加功者律로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오며何如ᄒᆞ올지玆에質稟ᄒᆞ오며一切書類을伴呈ᄒᆞ오며査照指令ᄒᆞ심을伏望等因인바據此査被告鞠在奉鞠在俊等은其父被殺에旣獲讎人이면告官査覈ᄒᆞ야依法償命이可也어ᄂᆞᆯ恣行擅殺이已係不法이온況金亨順之放砲行兇은不啻明白이오鄭寅岳之造意敎唆ᄂᆞᆫ初無自服ᄒᆞ니金犯招鄭이安知非嫁禍之計而乃於金鄭面質之場에不採鄭答ᄒᆞ고指鄭謂讎ᄒᆞ야割弟斫이霎時交加ᄒᆞ니入之兇獰이胡至此極고鞠之讐鄭이已無可據인즉貴所議讞이似不襯當ᄒᆞ니被告鞠在奉은大明律人命編鬪毆及故殺人條故殺者律에照ᄒᆞ고被告鞠在俊은鞠在奉本律로隨從減一等律에照ᄒᆞᆯ만ᄒᆞ나其父冤死에亟於復讎ᄒᆞ야致此罪戾가事涉錯誤ᄒᆞ니其情狀을酌量ᄒᆞ야本律에各一等을減ᄒᆞ야被告鞠在奉은笞一百懲役終身

에處ᄒᆞ고被告鞠在俊은笞一百懲役十五年에處ᄒᆞ고被告宋乃春은鄭之所囑이雖無謀殺之情이나言之不淑에不無漫傳之責이라該犯은大明律雜犯編不應為條凡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律에照ᄒᆞ야笞八十處辦放送ᄒᆞ고在逃金亨順은訓飭該所ᄒᆞ야別歧訶獲케ᄒᆞᆯ事로玆에指令事

光武二年十二月二十六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尹

高等裁判所裁判長尹 閣下

再一切書類繳交ᄒᆞ오니查收ᄒᆞ심을要

訓令高所件 / 案 第五号

光武三年 一月 十七日 起案

光武三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訓令高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五号

本月十四日本大臣이謹奏本月二日幼學臣鞠在南等上疏批旨省疏具悉爲父復讐人彝固然令法部更爲裁判事命下矣欽奉批旨鞠在奉鞠在俊裁決案

別紙開具謹奏同日奉旨依奏鞠在俊特爲放送ᄒᆞ라ᄒᆞᄋᆞᆸ신바判付內辭意ᄅᆞᆯ奉審施行ᄒᆞ오되到卽該鞠在奉鞠在俊等을押致貴所ᄒᆞ야聖旨를布諭後鞠在俊은特爲放送ᄒᆞ고鞠在奉은懲役十年에處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一月 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高等裁判所裁判長李 閣下

再 奏本別紙ᄂᆞᆫ謄本送交事

案 第四号 / 別紙

光武三年 一月 十四日 起案

光武三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案 第四号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臣李 謹 奏本月二日幼學臣鞠在南等上疏 批旨省疏具悉爲父復讐人彝固然令法部更爲裁決事命下矣欽奉聖旨鞠在奉鞠在俊等裁決案別紙開具謹

奏

光武三年一月十四日奉

旨

臣李

別紙

高等裁判所審理全羅南道潭陽郡殺獄罪人鞠在奉鞠在俊事件更查則去甲午八月三日鞠在奉之父弘默被殺於匪徒金亨順金文化等而兩金仍逃未得復讐陰曆本年正月二十二日金亨順爲該道繡衣所捉 押到潭陽郡鞠在奉等告請復讐則本郡守以爲繡衣所捉罪人官不可擅便云故拘囚於戶長廳金亨順對鞠言鄭寅岳若知吾之被捉慮必逃逸云鞠在奉乃捉鄭寅岳亦爲拘囚告于本官則曰當有措處令首校看守鞠在奉對金亨順問其殺害渠父之由則金亨順言內甲午七月東徒來掠時鄭寅岳以除去鞠弘墨可無後慮之意邀渠囑託同年八月又囑宋乃春傳言鞠弘墨圖得東徒執綱將屠龍歸洞接云故發通聚黨砲殺於射亭云矣陰曆本年正月二十四日自該道觀察府訓飭該郡金亨順及其所招諸漢幷押上時鄭寅岳亦在押上鞠在奉等擅使鄭金兩人質卞於該郡拂月樓下金亨順對鄭寅岳如前言說去則鞠在奉不採鄭答 挾到路上鞠在奉以刀割腹鞠在俊以刀斫頭

蓋鄭寅岳之敎唆雖無自服宋來春之口傳金亨巡之耳聞俱爲的確鞠之殺鄭不可以故殺處斷該犯鞠在奉曲大典會通殺獄条其父被殺成獄不待究覈擅殺其讐人者減死定配律處懲役終身而爲父復讐合有情狀之參量本律減一等上年十一月二十八日雖六犯內本情可予矜原者減一等事判付內辭查欽奉又減一等處懲役十年鞠在俊以同律擬大明律名例共犯罪分首從條家人共犯罪侵損於人者以凡人首從論文合處隨從之律爲父復讐迥異於凡他侵損而二子幷役其在欽恤不無參恕特從惟輕何如件

訓令忠淸南道裁判所件 / 案 第五号

光武三年　一月　二日　起案

光武三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訓令忠淸南道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五号

貴報告書第一百十號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天安郡守趙應顯의報告書內槩本郡前前郡守金炳塾遇害事는令人膽落이온바匪魁朴萬貴를捉入査問이온즉所供內에甲午年奪去本邑軍器時官門放砲의攔入官房과對官家欲爲放砲는雖是威脅所使이오나自顧行犯이오면死無足惜이다하옵기該供案을別錄報告ᄒᆞ오니査照處辦ᄒᆞ심을望홈等因인바據此査朴萬貴ᄂᆞᆫ犯此貫盈之罪ᄒᆞ고詎赦逃逭가今旣幸獲ᄒᆞ니咎刻難貸라該犯을大典會通推斷條軍服騎馬作變官門者律에照ᄒᆞᆯ意로上年十二月三十一日에上奏ᄒᆞ앗더니同日奉旨依奏ᄒᆞ라ᄒᆞ옵신바到卽該犯朴萬貴를絞에處ᄒᆞᆫ後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一月二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兪

忠淸南道裁判所判事鄭周永 閣下

訓令全南裁判所件 / 案 第三号

光武三年　一月　二十五日　起案

光武三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刑事局長

刑事課長

訓令全南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三号

貴管下潭陽郡居進士鄭大燮의請願書를接准ᄒᆞᆫ즉內開에凡於獄事檢查之際에所入獄費를正犯者當之가法例卽然이거늘現今에故殺復讐罪人鞠在奉在俊兄弟作變之後에查驗官盤費을以本郡稅錢中葉一千七百両으로劃用이다欲爲分徵於罪生이온바稅錢之劃用於何處를雖未可知나罪生則揆以法例에初無相閑이다온今此獄費一疑은從法勿侵을千萬血祝等因인바據此查獄費之討索屍親이聞甚加駭ᄒᆞ니到卽嚴飭該郡ᄒᆞ야卑勿更侵케ᄒᆞᆯ意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一月二十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兪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泳喆 閣下

法部　司理局　起案

訓令全南 件 / 案 第三十八號

光武三年 七月 十七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全南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三十八號

貴報告書第六十二號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槩金台書ᄅᆞᆯ更行訊査ᄒᆞ야取供成案ᄒᆞ야粘付報告이올견과當初査報時에英學二字ᄅᆞᆯ非直以罪名으로指目이라金漢이以甲午漏網之匪類로倖爲逃命타가投托於英學ᄒᆞ야揭榜社倉ᄒᆞ고參會抹牧ᄒᆞ니莫掩聚黨之跡이요無帶兩任ᄒᆞ고締結七邑ᄒᆞ야自有收錢之數이며隣民이厭汚ᄒᆞ야呈官之公文이昭在ᄒᆞ고英師가禁弊ᄒᆞ니指日之會事ᄅᆞᆯ云革이라大抵此類가以東學舊黨으로外若歸化나內包禍心ᄒᆞ야称參英禊ᄒᆞ고誦讀呪文ᄒᆞ야日以結黨爲事ᄒᆞ니參互情節ᄒᆞ고揣量時宜즉似此者類ᄅᆞᆯ若以英學生徒로不爲警法이오면衆心이易惑이요愚俗을難化이ᄋᆞᆸ기玆에更覈査報等因査此 貴所之初報와該犯之先供이有所模糊ᄒᆞ야使之更査者而今此 貴報에曰莫掩聚黨之跡이라ᄒᆞ고該供에曰所謂稧案은英學願入者姓名列錄이라ᄒᆞ며 貴報에自有收錢之數ᄉᆞᆫ라ᄒᆞᆫ該供에曰每名下以五錢定數收捧ᄒᆞ야俾爲衆會日下記之費라ᄒᆞ엿시니稧案列名을難謂聚黨이오五錢收捧이不是夥數ᄲᅮᆫ더러至於東學隨從ᄒᆞ야ᄂᆞᆫ渠旣後悔ᄒᆞ

야或商或農ᄒᆞ야僅爲保命이라ᄒᆞ엿스니據報參供에有難遽斷이라到卽更加詳覈ᄒᆞ야確有可據어든自　貴所로量宜處辨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七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趙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永喆　閣下

照覆漢裁 件 / 案 第九十四號

光武三年　七月　二十一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照覆漢裁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九十四號

貴照會第百號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開에被告ᄒᆞᆫ申光熙의案件을檢事公訴에由ᄒᆞ야審理ᄒᆞ온즉被告가曾於戊戌閏三月二十日에全羅南道觀察府摠巡으로入直ᄒᆞ얏다가殺獄罪人金亨巡의破枷逃獄홈을不覺ᄒᆞ얏슨즉在逃ᄒᆞᆫ金亨巡의所犯何罪을先定ᄒᆞᆫ後에야被告ᄅᆞᆯ乃可擬律이온ᄃᆡ金亨巡이殺獄罪人이면其事案이貴局所關이올지라金亨巡을何律에擬定홈을詳知ᄒᆞ와야該

案을歸決ᄒᆞ깃숩기玆에照會ᄒᆞ오니示明ᄒᆞ심을爲要等因此ᄅᆞᆯ查ᄒᆞ오니前高等裁判所에셔鞫在奉等案件을審辦ᄒᆞᆫ質報에金亨巡의如何處辦ᄒᆞᆷ을稟請ᄒᆞᆷ이無ᄒᆞ온故로本部에셔도指辨치아니ᄒᆞ옵고且金犯이在逃未捉ᄒᆞ야不得詳覈이온즉　貴所로셔平理院에知照ᄒᆞ오셔該犯等案件을取閱定罪ᄒᆞ심이可ᄒᆞ기로玆에仰覆ᄒᆞ오니

照亮ᄒᆞ심을　爲要

光武三年七月二十一日　　法部司理局長　閔泳璇

漢城府裁判所判事李啓弼　座下

訓令全南　件 / 案　第四十二號

光武三年　八月　四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全南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四十二號

貴報告書第六十七號ᄅᆞᆯ接准ᄒᆞ야高敞郡押來匪類罪人金相欽金在浩等供案을查閱ᄒᆞᆫ즉金相欽은所犯情節을渠旣輸欵ᄒᆞ니一律處辦은無容更疑라仍將擬斷ᄒᆞ려니와金在浩ᄂᆞᆫ旗手之名이非渠樂從이라係是勒充이오逃避

之路에被執見困이確有其據즉有何可責이리오到卽放送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八月四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趙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泳喆 閣下

訓令全北 件 / 案 第二十二號

光武三年 八月 四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全北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十二號

貴報告書第十五號를接准ᄒᆞ야匪類崔榮斗等二十九名案件을查閱ᄒᆞᆫ즉崔榮斗ᄂᆞᆫ所犯情節을渠自輸款ᄒᆞ니一律處辨은無容更疑라行將擬斷ᄒᆞ려니와河允玄은雖以被脅粧撰이나負銃而徃宿崔家가已有同犯之跡이오況此擾之始終을渠旣條條納供즉焉免隨從之目가該犯은大典會通推斷條隨從者減一等律에照ᄒᆞ야笞一白懲役終身에處ᄒᆞ其고餘二十七名中崔東巡等五名은已自貴所放送즉不必更論이오金春彦等二十二名은叅供究跡에別無可責ᄒᆞ니

并卽放送ᄒᆞ야以示 朝家罔治之意ᄒᆞᆫ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을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八月 日

議政府贊政 法部大臣臨時署理 中樞院議長 趙

全羅北道裁判所判事李完用 閣下

訓令忠南 件 / 案 第六十四號

光武三年 八月 十四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忠南 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옴이何如ᄒᆞ을지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六十四號

貴所在因徐昌吉의前後供辭ᄅᆞᆯ査閱ᄒᆞᆫ즉投名東擾와凌辱官長과侵虐平民을渠雖抵賴나尹李証供이若彼明確ᄒᆞ고府郡査報가若是丁寧ᄲᅮᆫ더러渠供에亦云矣侄의雇工錢推索次로矣身이與三四人으로尹士平家에往ᄒᆞ야言語가自然不恭이라ᄒᆞ엿스니若推當捧之錢이면何必三八人作黨이며旣已作黨往討즉其云不恭이無乃凌辱之謂歟아端緖가已著에情跡을莫掩이라不可以渠之發明으로有恕니該犯은大典會通禁制條武斷鄕曲侵虐平民者律에照ᄒᆞ되犯在 赦前ᄒᆞ니本年二月十日

赦典을欽奉ᄒᆞ야本律에一等을減ᄒᆞ야笞一白懲役十五年에處ᄒᆞᆯ事로玆에

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八月十四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趙

忠淸南道裁判所判事 閣下

照覆內部 件 / 案 第五號

光武四年 四月 五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照覆內部 件

案 第五號

貴照會第三號를接准ᄒᆞ온즉內槩에礪山居東學巨魁高文詵病斃等因이온

바此를査ᄒᆞ오니該報가敝部에도抵到ᄒᆞ얏ᄉᆞᆸ기玆에仍复ᄒᆞ오니

照亮ᄒᆞ심을爲要

光武四年四月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

議政府贊政內部大臣李乾夏 閣下

指令全北 件 / 案 第十三號

光武四年　四月　十一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指令全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三號

貴質稟書第二號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槩에向日捉來之高文詵에同黨金準弘柳德長李關東李龍九等四囚段은大明律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燒香集衆煽惑人心爲首者律노幷絞에擬ᄒᆞ오며金成初張漢汝李致玉等三囚段은同條爲從者各杖一百流三千里律에照ᄒᆞ야終身懲役에擬ᄒᆞ옵고該犯等處에各各宣告後玆에質稟ᄒᆞ와待指令執行計料ᄒᆞ오며金允國等十一漢段은旣出諸招所供故로一一詗捕ᄒᆞ야嚴囚報來之意로秘訓另飭于各郡等因繼接　貴報告書第十九號內槩에李關東이以身病致斃等因인바查此李關東은旣已徑斃ᄒᆞ니更無可論이견과金準弘等은是高文詵之同黨也라高旣爲首則金犯等은自可爲從이니不可以爲首律擬斷이라金準弘柳德長李龍九ᄂᆞᆫ原擬律爲從者律에照ᄒᆞ야各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고金成初張漢汝李致玉은雖有和應之跡이나俱非肯綮之案이니○以情狀에不無酌量이라本律에二等을減ᄒᆞ야各笞一百懲役十年에處ᄒᆞ야고在逃金允國等十一名은另加嚴飭ᄒᆞ야期於詗獲케ᄒᆞᆯ事로玆에指令事

光武四年四月十一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

全羅北道裁判所判事李完用 閣下

照會全北 件 / 案 第一號

光武四年 四月 十四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照會全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一號

本部에서頃接 貴所質稟書ᄒᆞ야高文詵同黨金準弘等六名을纔已處辨發訓而繼接 貴報則金準弘等七名을幷爲押送矣라今此該犯等押上이雖非因本部之訓이나旣爲押到則當行更査而前此處辨之訓이自歸銷案이니該十三號訓令을即爲繳交ᄒᆞ라신本部大臣勻敎를承佈ᄒᆞ오니

照亮ᄒᆞ심을爲要

光武四年四月十六日

法部主事李圭晉

全羅北道裁判所主事 座下

指令全南件 / 案 第三十三

光武四年　五月　十八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指令全南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三十三

貴質稟書第四十三號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槩에匪類罪人吳在奉梁先太를大全通編刑典推斷編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律에照ᄒᆞᆯ지나凡干罪人之役終身以上은自本所로擬律宣告ᄒᆞᄂᆞᆫ格例가無ᄒᆞ옵기玆에報告等因인바查此刑律名例第十五條改正後自部發訓이非上一再則諒應次第到達이오揭載官報則亦應關悉이거ᄂᆞᆯ無宣告格例云者誠涉踈忽이라到即該兩犯을擬律宣告ᄒᆞ고待上訴期間經過後更報이되凡於刑名上에另加注意ᄒᆞ야務遵規程ᄒᆞ야無或違越ᄒᆞᆯ事로玆에指令事

光武四年五月十六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泳喆 閣下

上 奏案 件 / 案 第二百四号

光武四年　七月　二十五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上 奏案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百四号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臣閔 謹

奏平理院審理東學罪人徐定萬漢城府裁判所審理殺獄罪人兪昌燮文致五忠淸南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金召史李公益慶尙南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郭萬水僧斗晩吳國玄黃正五黃海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金廷賢張甫元李甫文李用西尹明仲平安北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徐應淳車辰先金龍俊李正吉智敏元漢城府裁判所審理强盜罪人李龍石蔘賊罪人金用石秋才風忠淸南道裁判所審理强盜罪人徐昌淳徐文有權成五金炳文忠淸北道裁判所審理强盜罪人尹德化黃正心李化先丁五成金壽福慶尙南道裁判所審理强盜罪人車元吉田長民黃海道裁判所審理掘塚斷骸罪人裵益善合三十四名處絞件別紙開具謹

奏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奉

旨

臣閔

訓令平理院 件 / 案 第五十四号

光武四年 七月 二十五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平理院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五十四号

貴院에서處絞宣告ᄒᆞᆫ東學罪人徐定萬을已經

奏下ᄒᆞ왓ᄉᆞᆸ기到卽執行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閔

平理院裁判長洪鍾宇 閣下

訓令平理院 件 / 案 第五十五号

光武四年 七月 二十五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平理院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五十五号

貴報告書第二百六號를接准ᄒᆞᆫ바內開被告徐定萬과被告金堂骨과被告과片合德被告陸四明等의案件을檢事公訴의由ᄒᆞ야此를審理ᄒᆞ온즉被告徐定萬은曾前東學巨魁로伏法ᄒᆞᆫ崔時亨의弟子善山居金致萬에게東學을受ᄒᆞ얏더니崔時亨이伏法ᄒᆞᆫ後에도被告가東學을發棄치아니ᄒᆞ고其學을暗呪ᄒᆞ더니陰曆本年二月○에其徒鄭海龍梁地動等과相議ᄒᆞ야崔時亨의伸冤次로募衆鳩財ᄒᆞ야俗離山에致誠ᄒᆞᆫ後仍爲上京伏

閤ᄒᆞᆫ다ᄒᆞ고靑旗를造ᄒᆞ야南朝鮮忠義將軍先鋒大元帥라大書ᄒᆞ고喪服紙衲燈籠等物을準備ᄒᆞ야俗離山에往ᄒᆞ얏스며被告金堂骨과被告片合德과被告陸四明은昨年陰曆己亥冬間부터徐定萬에게東學을受ᄒᆞ야徐定萬을道通ᄒᆞᆫ人으로認ᄒᆞ야俗離山致誠에同爲往赴ᄒᆞ얏스며俗離山發往ᄒᆞ기前에被告等이山峽愚蠢ᄒᆞᆫ農氓을隨知逢見ᄒᆞ고徐定萬爲人을咸稱ᄒᆞ며爲國母佛供等說로幻辭誘引ᄒᆞ야所謂誠心錢을出ᄒᆞ며喪服과餠酒等物을準備ᄒᆞ얏고鄭海龍梁地動은在逃ᄒᆞ야姑未捉獲ᄒᆞᆫ其事實이被告陳供自服에證ᄒᆞ야明白ᄒᆞᆫ지라被告徐定萬은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爲首者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옵고被告金堂骨과被告片合德과被告陸四明은幷히爲從者律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ᆷ을宣告ᄒᆞ옵고玆에報告ᄒᆞ오니査照ᄒᆞ시믈爲望等因인바査此貴院議讞이俱爲妥當ᄒᆞ니徐定萬은另加牢囚ᄒᆞ야待經奏後發訓執行이고金堂骨片合德陸四明은即爲執行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閔

平理院裁判長洪鍾宇 閣下

上 奏案 件 / 案 第二百四号

光武四年 七月 二十五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上 奏案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百四号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臣閔 謹

奏平理院審理東學罪人徐定萬漢城府裁判所審理殺獄罪人兪昌燮文致五

强盜罪人李用石蓼賊罪人金用石秋才風合六名處絞刑件別紙開具謹

奏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奉

旨

臣閔

上 奏案件 / 案 第二百四十三號

光武四年　九月　十五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上 奏案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百四十三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臣權 謹

奏接准平理院裁判長金永準報告書內開李裕馨案件由檢事公訴審理則甲午東匪猖獗時被告於魯城等地糾合多衆各持木椎計出於防禦東匪各自圖生云而自號以君子軍者未免妄誕其事實被告陳供明白照大明律雜犯編不應爲條凡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律被告李裕馨笞八十處辨放送云矣謹奏

光武四年九月十五日奉

旨

臣權

上 奏案 件 / 案 第二百五十二號

光武四年　九月　二十一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上 奏案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二百五十二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臣權 謹

奏接准平理院裁判長金永準報告書內開被告徐章玉孫思文案件由檢事公訴審査則被告徐章玉自戊子年專尙東學甲午年間煽起衆民其勢與全琫準金介南崔時亨莫相上下被告孫思文自癸未年專尙東學甲午年設接於淸州北面等地應從者數萬名同年九月間往投合勢於全琫準其事實被告等陳供明白被告徐章玉孫思文照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爲首者文幷處絞之意宣告玆報告云矣謹

奏

光武四年九月二十日奉

旨

臣權

訓令平理院 件 / 案 第百三十八号

光武四年 九月 二十二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平理院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百三十八号

貴報告第二百五十一號를接准ᄒᆞ야本月二十一日에本大臣이謹奏接准平理院裁判長金永準報告書內開被告徐章玉被告孫思文案件由檢事公訴審理則被告徐章玉自戊子年專尙東學甲午年間煽起衆民其勢與全琫準金介南崔時亨莫相上下被告孫思文自癸未年專尙東學甲午年設接於淸州北面等地應從者數萬名同年九月間往投合勢於全琫準其事實被告等陳供明白被告徐章玉孫思文照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政之術爲首者文幷處絞之意宣告玆報告云矣謹奏同日奉

旨依奏事

命下矣시온바到即該犯徐章玉孫思文을幷絞刑執行後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四年九月二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在衡

平理院裁判長金永準 閣下

訓令全南 件 / 案 第四十號

光武四年 九月 二十五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全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四十號

貴報告書第五十九號ᄅᆞᆯ接ᄒᆞᆫᄌᆞ즉內開本所所管匪類罪人吳在奉梁先太를擬律宣告ᄒᆞ고上訴期間이經過ᄒᆞ왓시나此係重律이옵기宣告書ᄅᆞᆯ粘報等因查此 貴讞이俱爲妥當ᄒᆞ니該犯吳在奉梁先太ᄅᆞᆯ幷加牢囚ᄒᆞ고待經奏發訓後執行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四年九月二十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

全羅南道裁判所判事趙鍾弼 閣下

再報告中에何不書律名ᄒᆞ고以宣告書添附인지嗣後ᄂᆞᆫ另加注意ᄒᆞᆯ事

指令全北 件 / 案 第卅三号

光武四年　十一月　二十三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指令全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卅三号

貴質稟書第十三號ᄅᆞᆯ接准ᄒᆞᆫ즉內槩에井邑匪徒隨從朴承道李興九李石交金大栗崔翰京은大明律名例共犯分首從條云凡共犯罪者以造意爲首隨從減一等이란律에照ᄒᆞ야各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와宣告ᄒᆞᄋᆞᆸ고金士逸李成文南允先陳贊文은怛於刑威ᄒᆞ야鄭治朝指揮之言으로果爲納供이ᄋᆞᆸ고李京中金基弘李文化裵致成金正化ᄂᆞᆫ參以供辭에恐合分揀之典이오나係是匪賊에終涉難愼ᄒᆞ와一體質稟ᄒᆞ오며諸囚供案上送等因인바查此貴讞이妥當ᄒᆞ니朴承道李興九李石交金大栗崔翰京은依宣告執行後刑名簿修上ᄒᆞ며金士逸等四囚ᄂᆞᆫ怛刑納供이究情或然ᄲᅮᆫ더러其在罔治之義에容有可原之跡ᄒᆞ고李京中等五囚ᄂᆞᆫ　貴所分揀之論이亦爲妥合ᄒᆞ오니兩項九囚를幷免罪放送ᄒᆞᆯ事로玆에指令事

光武四年十一月二十三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金

全羅北道裁判所判事趙漢國 閣下

秘訓令海裁 件 / 案 第七十一號

光武四年　十二月　十二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秘訓令海裁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七十一號

接准平安北道裁判所判事李道宰報告書內槩에自義州鎭衛隊로東學餘黨元宜吉等를派兵捉囚이옵고其同黨鄭基明은逃往黃海道ᄒᆞ여ᄉᆞ오니自本部로發訓於黃海道各郡ᄒᆞ야期於設法詗捉이何如等因인바查此漏網餘黨이猶不知戢ᄒᆞ고傳布私術ᄒᆞ야煽惑民心이已是痛惡이거ᄂᆞᆯ及其詗捕之日에徑先逃還ᄒᆞ야尙不就捉이尤極可駭라到即秘飭于管下各郡ᄒᆞ야該犯鄭基明을設方詗捉ᄒᆞ야無或踈漏케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四年十二月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金

黃海道裁判所判事 閣下

訓令平北 件 / 案 第四十五号

光武四年　十二月　十二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平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四十五号

貴報告書第七十二號를接准ᄒᆞᆫ즉內槩에東學餘黨元宜吉은大明律禁止師巫師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者律에依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야宣告ᄒᆞᄋᆞᆸ고吳致德李元善은元宜吉의同律에二等을減ᄒᆞ야笞一百懲役十年에處ᄒᆞ야執行ᄒᆞᄋᆞᆸ고刑名簿並爲修上이오며在逃李錫華等은今方另派巡檢ᄒᆞ야期於捉得計料ᄒᆞ오며其所謂名帖也聖經諺呪兩册은並與吳致德聖經一卷李元善歌詞八篇으로同封上送이올견과最所痛惡者ᄂᆞᆫ鄭基明也而逃往黃海道ᄒᆞ여ᄉᆞ온즉自本部發訓於黃海道各郡ᄒᆞ야期於說法詷捉이何如이올지玆에報告等因인바查此貴所議讞이誠爲妥當ᄒᆞ니該犯元宜吉은依原擬律執行後刑名簿修送이고在逃鄭犯은當自本部로發訓詷捉하려니와其餘諸犯은自 貴所로亦加另設方略ᄒᆞ야期於弋獲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四年十二月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金

平安北道裁判所判事李道宰 閣下

訓令平北 件 / 案 第一号

光武五年 一月 七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平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一号

貴報告書第八十號를接准ᄒᆞᆫ즉內開의本所東學隨從罪人元宜吉을大明律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者律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ᄋᆞᆷ고去月二十七日에宣告ᄒᆞ여ᄉᆞᆸ더니上訴期間이經ᄒᆞ여ᄉᆞᆸ기執行次玆에報告ᄒᆞ오니査照ᄒᆞ오서指令ᄒᆞ시믈伏望等因인바査此元宜吉을旣自本部指辦則應自 貴所로即爲執行이거ᄂᆞᆯ有何更質之爲哉아依例就役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五年一月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金

平安北道裁判所判事李道宰 閣下

訓令平北 件 / 案 第八号

光武五年　三月　八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平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八号

貴報告書第十五號ᄅᆞᆯ接ᄒᆞᆫ즉內槩東學首犯康聖鐸은本道에爲接主ᄒᆞ야其徒寔繁ᄒᆞ고詿誤良民에轉成滋蔓故로該犯을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扇惑人民爲首者律에照ᄒᆞ야處絞宣告而待指令執行計料ᄒᆞ오며康炳業朴宗根은愚迷所致로誤陷邪敎ᄒᆞ오니情有可原故로同律同條爲從者律에二等을減ᄒᆞ야笞一百懲役十年에處ᄒᆞ야宣告等因査此康聖鐸等은所犯이旣重ᄒᆞ니依律懲勘을斷戒不可已로셔ᄃᆡ終身以上은係是重罪라不可以報告中抄槩之供으로遽甭決折이니該犯等供招ᄅᆞᆯ別紙開錄ᄒᆞ야粘付上送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五年三月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李

平安北道裁判所判事李道宰 閣下

訓令平北 件 / 案 第十七号

光武五年　四月　十七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平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七号

貴報告書第十五號ᄅᆞᆯ接ᄒᆞᆫ즉內槩東學首犯康聖鐸은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扇惑人民爲首者律에照ᄒᆞ야處絞宣告ᄒᆞ오며康炳業朴宗根은情有可原故同律同條爲從者律二等을減ᄒᆞ야笞一百懲役十年에處ᄒᆞ야宣告等因繼接第二十三號報告書內槩康聖鐸及康炳業朴宗根等供招別紙開錄等因查此該犯等供辭가若是的確則　貴讞이誠爲妥當ᄒᆞ니各依原擬律處辨이되該康聖鐸은 另加牢囚ᄒᆞ야待經

奏發訓後執行이고康炳業朴宗根即爲執行後刑名簿ᄅᆞᆯ修送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五年四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趙

平安北道裁判所判事李道宰 閣下

訓令平北 件 / 案 第十九號

光武五年 五月 十八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平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九號

貴所宣告殺獄罪人及强盜罪人與東學罪人等處絞案을本月十七日에已經奏下ᄒᆞ왓ᄉᆞ오니到即該犯金奉希金奉玄鄭元興李泰平方明三徐應淳金珎玉車辰先金龍俊李正吉智敏元高召史金澤守白成寬朴春建洪萬甫朴明云康聖鐸等合十八名을幷爲執行後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五年五月十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李

平安北道裁判所判事 閣下

訓令全南 件 / 案 第十七号

光武五年 月 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全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七号

貴所宣告匪類罪人等處絞案을本月七日에已經

奏下ᄒᆞ얏ᄉᆞ오니到卽該犯吳在奉梁先太을執行後報來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

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事

光武五年五月十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李

全羅南道裁判所判事尹雄烈 閣下

指令平院 件 / 案 第五十八号

光武六年　四月　二十六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指令平院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五十八号

貴質稟書第十号를接ᄒᆞᆫ즉內槩에被告金連叔崔明基ᄂᆞᆫ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左道亂正爲從者律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고被告金春西와曺聖德과李基鉉과金永來ᄂᆞᆫ同律同編同條同文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ᆯ지나甲午年東匪猖獗時에爲保成命ᄒᆞ야被誘或被脅而入道ᄒᆞ얏ᄂᆞᆫᄃᆡ尙未背斥ᄒᆞᆷ은愚迷所致ᄲᅮᆫ더러且到處行悖ᄒᆞᆫ事가初撫ᄒᆞᆫ즉不可無參加心之端故로本律에一等을減ᄒᆞ야各히笞一百懲役十五年에處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玆에質稟ᄒᆞ오며一切書類를伴呈ᄒᆞ오니査照指令ᄒᆞ심믈爲要等因査此 貴讞이俱爲妥當ᄒᆞ니該犯金連叔崔明基金春西曺聖德李基鉉金永來等을依原擬律執行後刑名簿를即爲上送ᄒᆞᆯ事로玆에指令事

光武六年四月二十六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警衛院摠管兼任憲兵司令官陸軍參將李根澤 閣下

指令咸南 件 / 案 第十四號

光武八年 四月 十六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指令咸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四號

貴報告書第四號를接准內槩東學黨孟凡泳金應三鄭承祚三漢段은大明律賊盜編造妖書妖言條若私有妖書隱藏不送官者律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三年에處하오며白樂鉉林秀連은同律同條註云若傳用者所惑不及二人之律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ᄒᆞ오며尹亨天承載元崔成道ᄂᆞᆫ同律同條凡造讖緯妖書妖言及傳用惑衆者律에照ᄒᆞ야死刑에處ᄒᆞ미妥當ᄒᆞ온지라事當修報于部ᄒᆞ와待指令執行이오나現今道內各郡에東學이大熾ᄒᆞ와不無意外之慮이오니苟延時日이면無以懲創禁戢이옵기不得已從權ᄒᆞ와卽行砲殺等因인바查此東徒之熾盛을不容無大懲創而死囚之具報本部ᄒᆞ야奏經裁可○待指令執行이自有定章이거ᄂᆞᆯ今此尹亨天承載元崔成道等之擅行砲殺이雖曰不得已從權이나其應報不報之責은不可警而今姑安徐ᄒᆞ오니嗣○ᄂᆞᆫ恪遵章程ᄒᆞ야毋至做錯ᄒᆞ며該犯孟凡泳金應三鄭承祚白樂鉉林秀連等을分輕重勘斷홈은 貴讞이妥當ᄒᆞ니並依原律處辨이되卽爲執行홈이可ᄒᆞ기로玆에指令事

光武八年四月十六日

法部大臣臨時署理 元帥府會計局摠長陸軍參將朴

咸鏡南道裁判所判事 閣下

指令平南 件 / 案 第十七號

光武八年 六月 十六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指令平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七號

貴質稟書第十五號內槩中和郡居金永學叔侄이以東學魁首로多聚徒黨에收捧錢財ᄒᆞ야煽動民心이다온바該犯金永學金光贊을大明律祭犯編禁止師巫邪術條白雲宗教等會一應左道亂正之術煽惑人民爲首者絞爲從者杖一百流三千里律에照ᄒᆞ야金永學은絞律에處ᄒᆞ고金光贊은杖一百懲役終身律에處ᄒᆞ야宣告ᄒᆞᄋᆞᆸ고玆에以質稟等因인바查此　貴讞이俱妥ᄒᆞ니並依原律處辨이되該犯金永學은另加牢囚ᄒᆞ야待經奏發訓後執行이고該犯金光贊은即爲執行後刑名簿를修上홈이可ᄒᆞ기로玆에指令事

光武八年六月十六日

法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李

平安南道裁判所判事 閣下

再觀察使와判事가職權이不同ᄒᆞ고印章이各殊ᄒᆞ거날今此質稟書에觀察使職名을書塡ᄒᆞ고觀察府印章을踏捺ᄒᆞ얏스니照律上公文이有違格例ᄒᆞ니固當繳還論警이나律旣妥合故로今姑安徐ᄒᆞ니嗣後ᄂᆞᆫ倍

加審愼ᄒᆞ야毋或做錯케ᄒᆞ며該掌主事ᄂᆞᆫ施以相當懲戒ᄒᆞᆯ事

指令全北 件 / 案 第卄七號

光武八年 七月 七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指令全北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卄七號

貴質稟書第十三號ᄅᆞᆯ接准內槩鎭衛第二聯隊第三大隊大隊長金漢鼎第二十號照會內開向承 元帥府電飭ᄒᆞ와桶以傳道ᄒᆞ고煽惑聚黨之東匪를密地詷捉ᄒᆞ야十分屠覈ᄒᆞ야可合渠魁者를報府請勘이올더니卽伏承電飭內開에已捉東匪越送本道裁判所이시기로本隊在囚東匪趙昌植李明三鄭順九金德化李利老金文永과之次李仁圭洪鍾澣朴順京趙可曦等十名를玆以押送而供招記을亦爲左開ᄒᆞ오며文軸帖紙等은己爲封上于上府ᄒᆞ왓시니照亮爲要等因이오며鱗接該大隊長金漢鼎第二十一號照會內開本隊所捉煽動傳道之渠魁東匪泰仁劉達守臨陂金光有와之次珍山金致三等查覈後其供招記與文軸帖紙符章等物을眼同三漢ᄒᆞ야玆以押送事等因이ᄋᆞᆸ기兩次押到之東匪罪人趙昌植李明三鄭順九金德化李利老金文永과之次李仁圭

洪鍾澣朴順京趙可曦等과劉達守金光有金致三等十三名을一併牢囚于本部警務署之由을報告于元帥府ᄒᆞᄋᆞᆷ고各人等供招記를一依該隊所送而開錄于左ᄒᆞ야以備便覽이ᄋᆞᆷ견과盖近日此徒之潛通煽衆이頗多物情之騷援則其在除害去莠之義에不可尋常勘斷이오니今此十三名中情節深重ᄒᆞ고難免渠魁者ᄂᆞᆫ大會衆民ᄒᆞ고亟施極律然後에遐方思俗을可警可戒이ᄋᆞᆷ기玆에質稟ᄒᆞ오니查照ᄒᆞ신後其勘處之節을特爲回指令ᄒᆞ심을望ᄒᆞᆷ等因인바查此該犯趙昌植金明三鄭順九金德化李利老金文永劉達守金光有等은罪犯渠魁ᄒᆞ니宜施極律이오李仁圭洪鍾澣朴順京趙可曦金致三等은罪居之次ᄒᆞ니宜施從律이니趙昌植金明三鄭順九金德化李利老金文永劉達守金光有等은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扇惑人民爲首者律에照ᄒᆞ야絞律에處辨宣告이되該犯等을並另加牢囚ᄒᆞ야待經奏發訓後執行이고李仁圭洪鍾澣朴順京趙可曦金致三等은同律同編同條爲從者律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終身에處辨執行後刑名簿을修上ᄒᆞᆷ이可ᄒᆞ기로玆에指令事

光武八年七月七日

法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李

全羅北道裁判所判事 閣下

訓令平理院 件 / 案 第百四十四號

光武八年 十月 十二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訓令平理院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百四十四號

貴報告書第一百二十七號를接准內開에本院에서懲役罪人金連叔을許贖放送ᄒᆞ압고其罪名刑期와贖錢實數와放免月日을左開ᄒᆞ와玆에報告等因인바查此該犯은字曰致九號稱龜巖者而即東徒嚆矢崔時亨之女婿也라崔犯捉得處辨時에該金犯이出於口供이나漏網未捕ᄒᆞ얏다가何幸見獲ᄒᆞ야崔之從律에處辨ᄒᆞ고其後에屢有 赦典ᄒᆞ딕不原其罪타가前於洞開獄門 赦典에只減一等矣터니令自 貴院으로擅行許贖放送ᄒᆞ고有此報到ᄒᆞ니該犯이非但罪犯重大에有關風化者也라當初該案을質稟本部ᄒᆞ야待指令處辨執行이거날令於收贖放送에何可逕先擅行乎아刑律名例第十七條國事犯外所犯輕重을酌量ᄒᆞ야役刑收贖홈을得홈이라ᄒᆞ고第二十條下但倫常風化에關ᄒᆞᆫ犯人은收贖홈을許치아니홈이라ᄒᆞ얏고頃者本部訓令에情有可原ᄒᆞ야可合收贖者ᄂᆞᆫ聽許라ᄒᆞ얏거ᄂᆞᆯ該犯罪案이有何可原之情跡耶아左道亂正이不關於風化耶아所犯輕重을何不酌量이며現今各地方東學之滋蔓을盍察情形고言念及此에不勝慨歎이라令到卽時에該犯金連叔은還爲捉囚ᄒᆞ야出給贖錢이고依前處役後報來ᄒᆞ며許贖時認施之意로題判ᄒᆞᆫ當該判事誰某를先卽指的馳報홈이可ᄒᆞ기로玆에訓令ᄒᆞ니此를衣ᄒᆞ야施行事

光武八年十月十二日

法部大臣金

平理院裁判長 閣下

照會內部 件 / 案 第十二號

光武 八年 十一月 廿一日 起案

大臣 協辦 司理局 主任

課

司理局長

課長

照會內部 件

左開案를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玆에裁決ᄒᆞ심을仰홈

案 第十二號

現接咸鏡南道裁判所判事李軒卿質稟書內開端川郡新滿社安始洞致死男人朴承化初覆三檢案은同封上送이옵견과此獄段은以東學捕捉事做謀者ᄂᆞᆫ朴信五金己仁尹俊必也오主使同黨而縛打者ᄂᆞᆫ李在銀也오聽其主使而下手者ᄂᆞᆫ金長權朴時永也라然則死者之死가由於做謀乎아由於主使者乎아柳由於下手者乎아第以檢案으로論其傷痕ᄒᆞ오면初檢에曰脊背血瘀이라ᄒᆞ옵고覆檢에曰耳根後骨碎라ᄒᆞ옵고三檢에曰左耳根稍上骨裂이라ᄒᆞ오니骨裂이重於血瘀則致命之傷은非脊背也오是耳根也而耳根은速死之處오骨裂은致命之傷이라以速死之處로當致命之傷ᄒᆞ오니安得免當下致命乎아實因之爲報打ᄂᆞᆫ無容更議이오며至於正犯ᄒᆞ야ᄂᆞᆫ初檢覆檢이俱以

尹俊必懸錄者가一則以屍體之移置後必家也오二則以後必書札來在銀也오三則以屍親之指斥後必也이오나以言乎屍體移置則在銀所供에曰做謀者尹俊必朴信五金己仁三人而屍體之運擔尹家者ᄂᆞᆫ該三漢中에尹家最近故也라ᄒᆞ오니事勢固然에不可以此로寘疑於俊必也오以言乎書札招來則該書辭意ᄅᆞᆯ俊必則曰負商侵討ᄅᆞᆯ汝是接長이니東來禁斷이라ᄒᆞᄋᆞᆷ고在銀則曰速上來ᄒᆞ야禁斷東學然後에措處費財라ᄒᆞ오니設若在銀所供이라도卽不過禁斷東討索民財之意오初無謀殺等說이오니以討索으로論罪則俊必이難免乎造意之律이어니와殺人之罪ᄂᆞᆫ初非可擬於俊必者이오며以言乎屍親指斥則屍親朴明根所供에曰在銀等이向俊必而言因汝片紙請來ᄒᆞ야致此殺變云故로知是俊必之指使라ᄒᆞ오니當初俊必之書에何嘗有詞捉承化之說乎아靜究裏許ᄒᆞ오면在銀等諸漢은皆是他邑負商이라面目이生踈ᄒᆞᄋᆞᆷ고惟獨俊必一人이同居一洞ᄒᆞ오니屍親之意에曰若非俊必之指使면彼他邑負商輩가何知此洞에有朴承化而捉去리오ᄒᆞ와怨俊必이尤甚ᄒᆞ야期欲復讐於俊必이오나金弘守所供에亦云甘聽金己仁指揮ᄒᆞ고與負商等으로同往朴承化家라ᄒᆞ오니令此死者之詞捉을何可獨責於俊必乎아以己上三條로觀之ᄒᆞ오면俊必之爲此獄正犯이十分可疑ᄒᆞ야所以行三檢이ᄋᆞᆷ더니及見三檢案則果以毆打時主使者李在銀으로執定正犯ᄒᆞ오니於是乎可釋疑端矣라獄情到此에更無可議故로屍體ᄂᆞᆫ使之出給埋瘞ᄒᆞ오며哀此死者朴承化ᄂᆞᆫ以其無瑕之軀로橫殞兇黨之手ᄒᆞ오나死固寃矣오情亦憾矣이오며正犯李在銀段ᄂᆞᆫ藉托斥邪ᄒᆞ고計在討索이라非法官而行威用刑은已極痛惡이오喝同黨而毆人至死가又何凶獰고此ᄅᆞᆯ大明律鬪毆編威力制縛人條若以威力主使人毆打而致死傷者拜以主使之人爲首註云主使者絞之律에照ᄒᆞ야絞에處ᄒᆞᆷ이何如이올지嚴囚待處分ᄒᆞ오며干犯尹俊必段ᄂᆞᆫ東學捕捉을雖托官令이오나費財措處ᄂᆞᆫ意在討索이라緣渠書請ᄒᆞ야馴

致獄變ᄒᆞ오니究厥情跡에極爲痛惡이오며金弘守張萬弘段ᄂᆞᆫ打承化之時에初無手犯은渠雖發明이오나入承化之家ᄒᆞ야掠取计物은已自輸款ᄒᆞ오니其所助惡이尤極痛歎이라已上三囚ᄂᆞᆫ賊盜處斷例第七條第十日項白晝에財物을搶奪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之律에照ᄒᆞ야笞一百懲役三年에處ᄒᆞ오며張道永安成五段ᄂᆞᆫ當場加功은雖無現證이오나伊夜隨從은渠旣自服이라此ᄅᆞᆯ同律人命編鬪毆及故殺人條若同謨共毆人因而致死者餘人各杖一百之律에照ᄒᆞ야該兩囚ᄅᆞᆯ各笞一百에處ᄒᆞ오며朴時永金長權段ᄂᆞᆫ捕捉承化者渠也오毆打承化者亦渠也라最是長權이以斧柄木으로橫打死者左耳邊ᄒᆞ야以致當下殞命ᄒᆞ오니人之凶獰이胡至此極고論其罪狀ᄒᆞ오면當爲正犯이오나旣有同律威力制縛人條下手人爲從論之文이온즉該犯兩漢은當置此律而知機漏網이尤極痛惡이오며金己人朴信五魯守寬申京己白學善韓明淳韓明玉趙俊興金己奉等咖ᄂᆞᆫ托名負商에藉稱斥邪ᄒᆞᄋᆞᆸ고聚黨掠財타가以致獄變ᄒᆞ고肆然在逃가俱極痛歎이라上項十日漢은使之多發伶俐枝卒ᄒᆞ야期於捉得케ᄒᆞᄋᆞᆸ고看證韓甲守詞連張永極은以東學指目으로被捉於本所巡敎者이ᄋᆞᆸ기覈得證據ᄒᆞ와擬律勘處計料ᄒᆞ오며檢獄法意가何等愼重而初檢覆檢之以正犯으로寘諸干犯과傷痕之骨裂者ᄅᆞᆯ初檢之不爲執症이俱涉疎忽이ᄋᆞᆸ기該兩檢書記ᄂᆞᆫ幷爲押上懲勵ᄒᆞᄋᆞᆸ고玆에質稟等因인바此ᄅᆞᆯ査ᄒᆞ오니該獄初檢官端川郡守李賢在와覆檢官利原郡守崔禹洛이職在檢官ᄒᆞ야誤執正犯ᄒᆞ고不審傷痕ᄒᆞ얏스니其在審愼之道에疎忽이莫甚ᄒᆞ온즉該兩員을合施相當懲戒이ᄋᆞᆸ기玆庸仰照ᄒᆞ오니

照亮ᄒᆞ심을爲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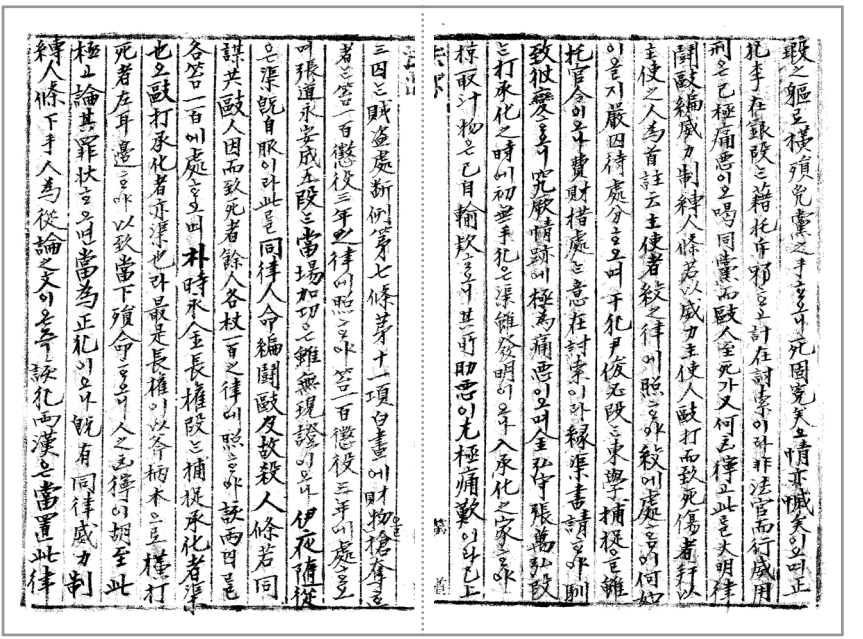
光武八年十一月二十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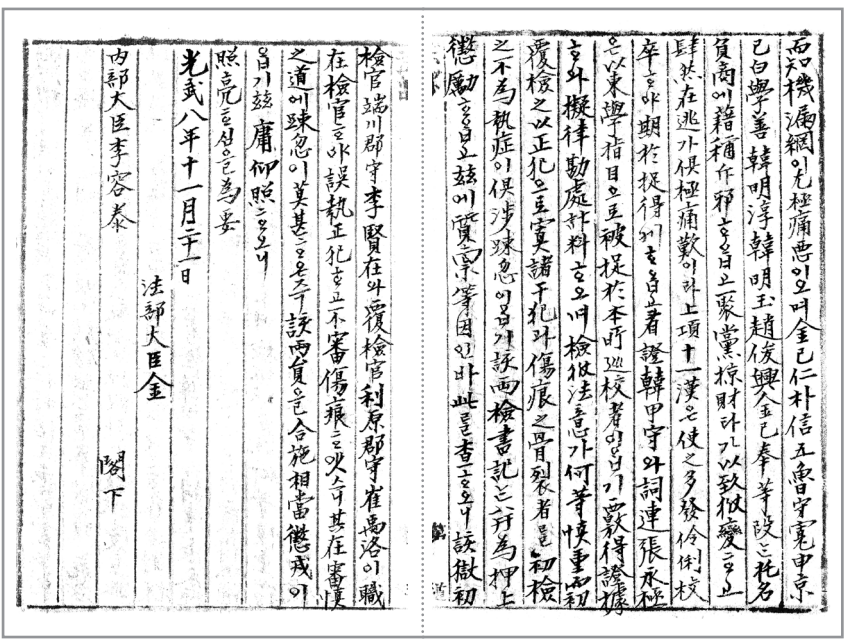
法部大臣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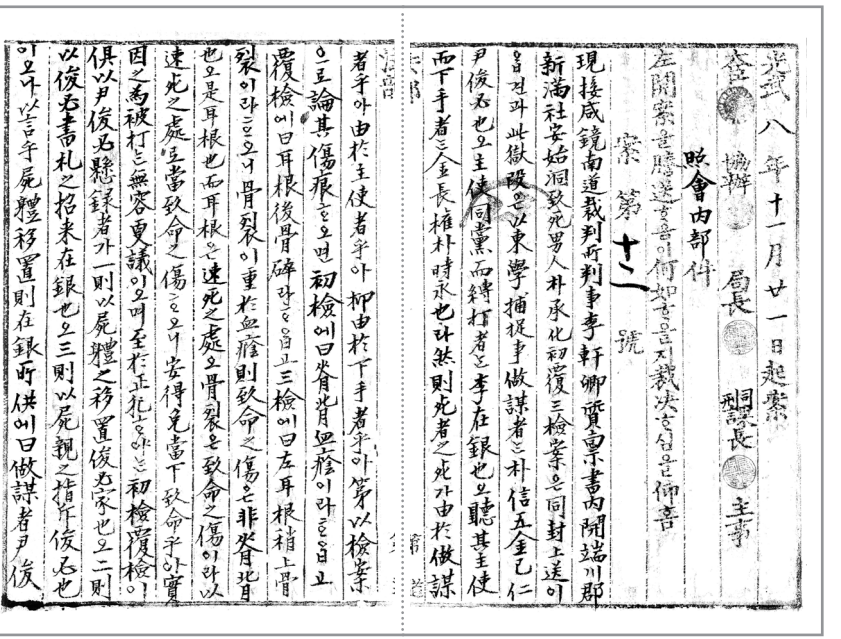
內部大臣李容泰 閣下

영인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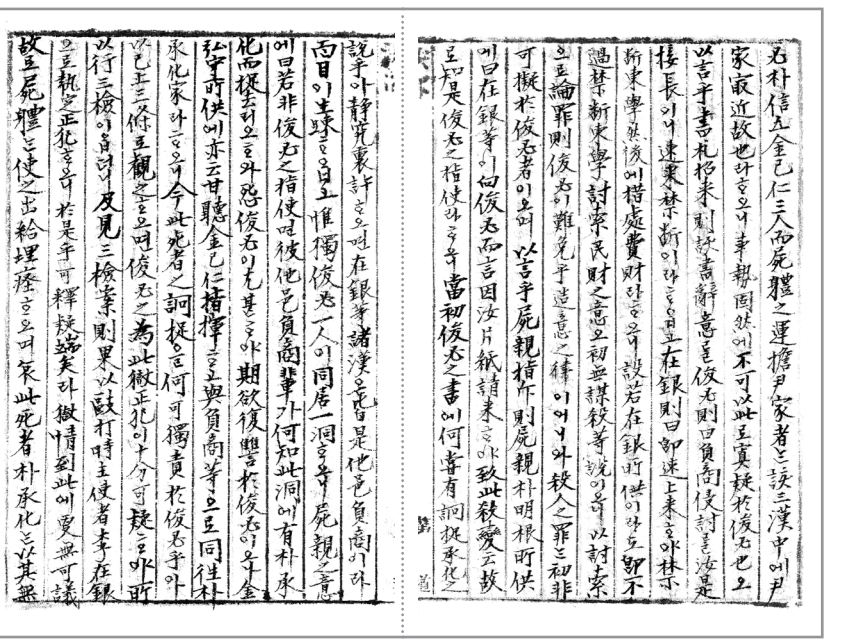
影印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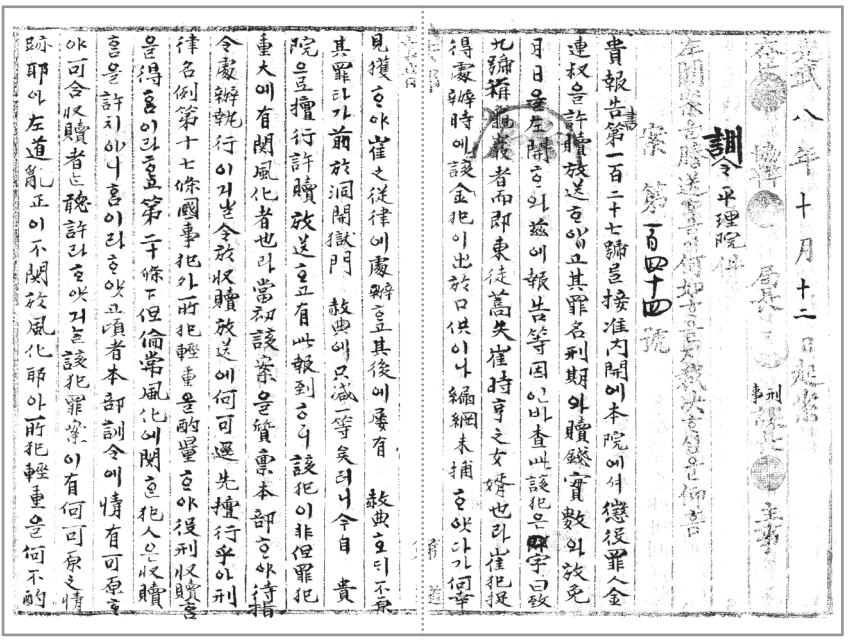




光武八年十一月廿一日起案
協辦 爲長 同謀長 主事
照會由部件
左開案呈謄送吉會府知事吉田良信吉
案第十二號
現接咸鏡南道裁判所判事李軒卿貢案書內開端川郡
新滿社安始洞致死男人朴承化初復三檢案吉同封上送事
呈訖此檢殺吉以東學捕捉事做謀者三朴信五金乙仁仁
尹俊老也五主使同黨而縛打者之李在銀也五聽其主使
而下手者三金長植朴時永也叶然則先者之死叶由於做謀
者手叶由於主使者手叶抑由於下手者手叶第以檢案
吉五論其傷痕吉五則初檢에曰脊背無瘡이라吉立
覆檢에曰耳根後骨碎라吉立三檢에曰左耳根稍上骨
裂이라吉五骨裂이重於血瘡則致命之傷은非脊背
也五是耳根也而耳根은速死之處五骨裂은致命之傷이叶以
速死之處吉當致命之傷吉五安得免當下致命手叶實
因之禹被打三無容更議이五叫至於正犯吉叶三初檢覆檢이
俱以尹俊老書札之招来在銀也五三則以屍親之指作俊老也
叶五叶三吉手屍體移置則在銀所供에曰做謀者尹俊



老朴信五金乙仁三人而屍體之運擔尹家者三誤三漢中에尹
家寂近故也叶吉五叶事勢固然에不可以此五實疑於俊老也五
以吉手書札招来則誤書辭意是俊老則曰負商俊討是沒是
接長이叶速禁禁斷이라吉五在銀則曰卽速上来吉叶林下
新東學徒俊에措處費財라吉叶設若在銀所供이叶五卽不
過禁新東學討索民財之意五初無捧錢者誤이吉以討索
五論罪則俊老의難免乎造意之律이이叶鉄人之罪三和非
可擬於俊老者이五叫以吉手屍親指作則屍親朴明根所供
에曰在銀等이曰俊老石吉因汝片紙請来吉叶致此鉄愛云故
五知是俊老之指使라吉立當初俊老之書에何事有詗捉承化之
說手叶靜筑裏許吉五則在銀等諸漢은皆是他邑負商이叶
而目이生疎吉五唯獨俊老二人이同居一洞吉立屍親之意
에曰若非俊老之指使면彼他邑負商輩가何知此洞에有朴承
化而捉去리오五叶恐俊老의无基吉叶期欲復讐於俊老之叶吉
私字所供에亦云甘聽金乙仁指揮吉五與負商等으로同往朴
承化家叶吉立叶今此死者之詗捉은何可獨責於俊老手叶
以上三條로觀之五면曰俊老之為此徹正犯이十分可疑吉叶所
以行三檢이吉臥及見三檢案則果以敲打時主使者李在銀
으로執定正犯吉立於是乎可釋疑端矣叶徹情到此에更無可議
故로屍體三使之出給埋瘞吉五叫寃此死者朴承化之以其



光武八年十月十二日 起案

刑事局長 主事

謝令 平理院裁判長

左開案件謹送 貴院裁判長 閣下 照會

案第百四十四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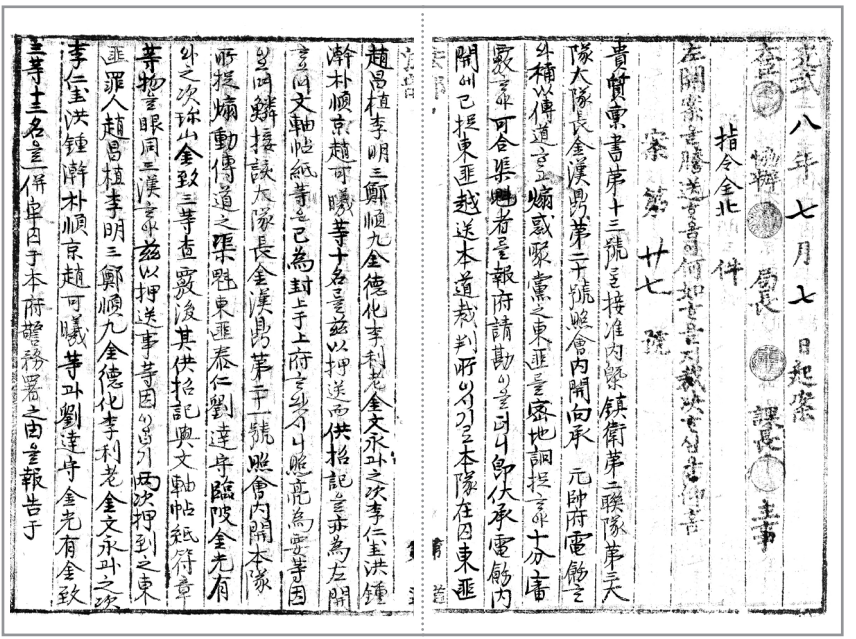
貴報告第一百二十七號 豈接准內開 本院에서 懲役罪人金連权을 許贖放送하고 其罪名刑期와 贖錢實數의 放免日日을 左開하라 하심에 報告等因이라 查此該犯은 [illegible]字日致北騙籍脫監者而 即東徒高失崔持亨之女婿也라 崔犯捉得處辦時에 該金犯이 出於口供이나 緝網未捕하야 가히 倖

見攫하야 崔之從律에 處辦하고 其後에 要有 故典하되 不敢其罪라가 前於洞開獄門 故典에 只減一等 矣더니 今自 貴院으로 擅行許贖放送하고 有此報到하니 該犯이 非但罪犯重大에 有關風化者也라 當初該案을 贊稟本部하야 待指令處辦就行이거늘 今於收贖放送에 何可逕先擅行乎아 刑律名例第十七條 國事犯과 所犯輕重을 酌量하야 從刑收贖을 得하되 其第二十條下 但倫常風化에 關한 犯人은 收贖을 許치 아니하되 其이라 하야 고 順者 本部訓令에 情有可原하야 可令收贖者는 聽許하되 其이라 하야 고 該犯罪案이 有何可原之情跡耶아 左道亂正이 不關於風化耶아 所犯輕重을 何不酌量이며 現今各地方東學之滋蔓을 益察情形하고 言念及此에 不勝慨歎이라 令到即時에 該犯金連权은 要為提回 [illegible] 出給贖錢이고 依前處役後報來호되 許贖時認施之意로 題判하고 當該事誰某를 先即指的馳報하되 可 [illegible] 此를 依 [illegible] 施行事

光武八年十月十三日

法部大臣 金

平理院裁判長 閣下



光武八年七月 日起案

協辦 局長 課長 主事

指令金北 件

左開案查據某某等呈稱如查昌大義決定自當呈報等

案第廿七號

貴贊東書第十三號呈接准內務鎮衛第三聯隊第六隊大隊長金漢昌第二十號照會內開向承 元帥府電飭之外稱以傳道之煽惑吸黨之東亞之密地詞提示十分嚴緊云可令渠魁者呈報府請勘云云卽伏承電飭內開叙已提東亞越送本道裁判所云云本隊在囚東亞

趙昌植李明三鄭順九金德化李利老金文永卄之次李仁圭洪鍾濬朴順京趙可曦等十名呈玆以押送而供招記呈赤為左開事由文軸帖紙等呈已為封上于上府云云卽應亮為要等因

呈叩辦據該大隊長金漢昌第二十號照會內開本隊所捉煽動傳道之渠魁東亞泰仁劉達亨臨陂金光有外之次依此金致三等查收後其供招記與文軸帖紙等

幷物呈眼同三漢呈來玆以押送事等因呈出因而收押到之東亞罪人趙昌植李明三鄭順九金德化李利老金文永卄之次李仁圭洪鍾濬朴順京趙可曦等卄劉達亨金光有金致三等十二名呈一併卑呈于本府證務署之由呈報告于

元帥府呈白各人等供招記呈一係該隊所送而開錄于左呈來以備便覽白旨卄盖近日此徒之潛通煽衆이頻多物情之騷擾則其在除害去莠之義이不可尋常勘斷이오今此十三名中情節深重呈難免渠魁者는大會衆民呈亟施極律然後이遐方愚俗은可諒可戒이白只玆이質稟云云卄直照

云云後其勘處之部呈特為回指令云云望喜等因이外查此訣犯趙昌植金明三鄭順九金德化李利老金文永劉達亨金光有等은罪犯渠魁云云宜施極律이오李仁圭洪鍾濬朴順京趙可曦金致三等은在囚之次云云宜施從律이니趙昌植金明三鄭順九金德化李利老金文永劉達亨金光有等은大明律笞杖編

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崇或人民為首者律이絞律에處斬宣告이卄該犯等은並勿加笞杖宣告이卄

奏裁訓後執行이오李仁圭洪鍾濬朴順京趙可曦金致三等은同律同編同條為從者律이照云云이나笞一百徒三年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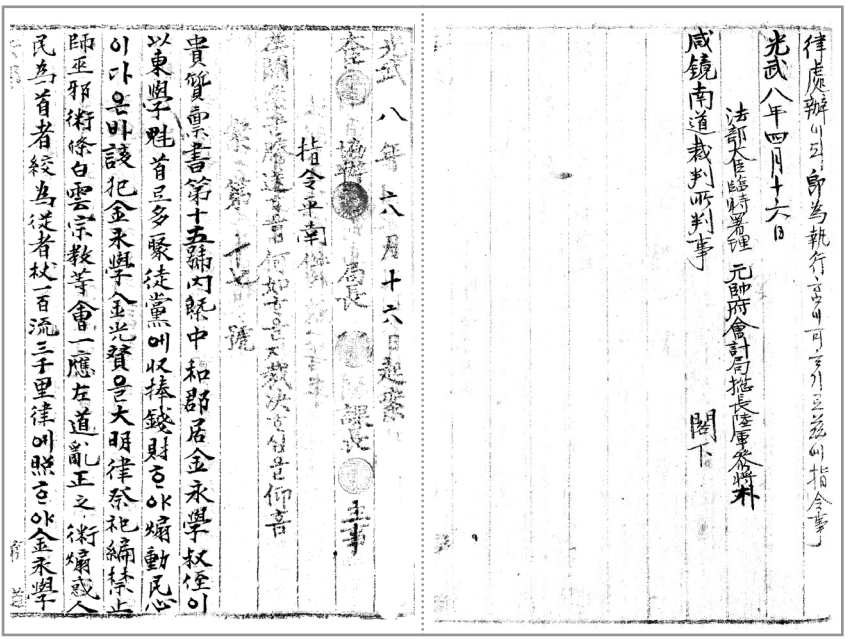
行流刑名簿云云修上吉이니可云云이오玆以指令事

光武八年七月 日

法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李

陛下

金羅北道裁判所判事



律處辦이되 卽爲執行事로 可호기로 玆에 指令事

光武八年四月十六日

法部大臣臨時署理 元帥府會計局摠長陸軍參將 朴

咸鏡南道裁判所判事 閣下

光武八年六月十六日 起案

會長 課長 主事

指令平南

各殊호기로 今此貢稟書에 觀察使職名을 書

填호고 觀察府印章을 踏捺호야 照律上

公文이 有違格例호니 固當繳還論飭이나 律

旣妥合故로 今姑妥除호니 嗣後는 倍加審愼

호야 毋或做錯케호며 該掌主事는 施以相當徵

戒호事

은絞律에 處호고 金光贊은 杖一百 徵役終身律에 處호야

宣告호오며 玆以質稟等因이라 査此 貴職이 俱要

호니 並依本律處辦이되 該犯金永學은 另加牢固호야

待經

奏裁訓後執行이고 該犯金光贊은 卽爲執行後刑名簿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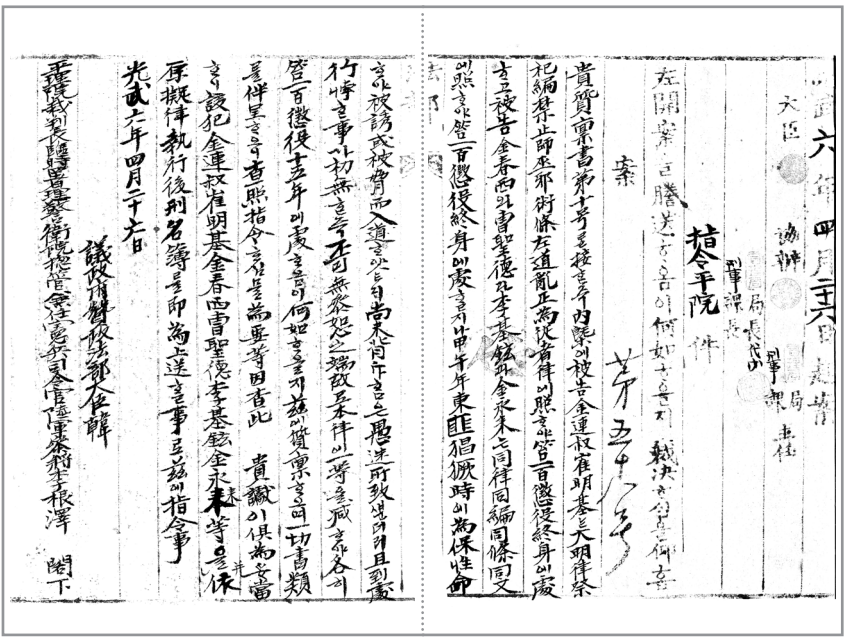
修上홈이 可호기로 玆에 指令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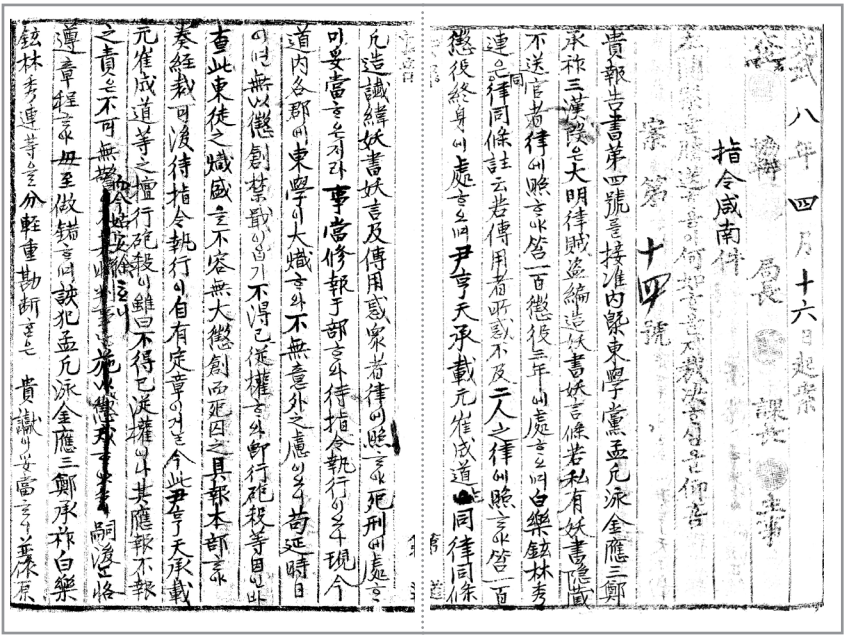
光武八年六月十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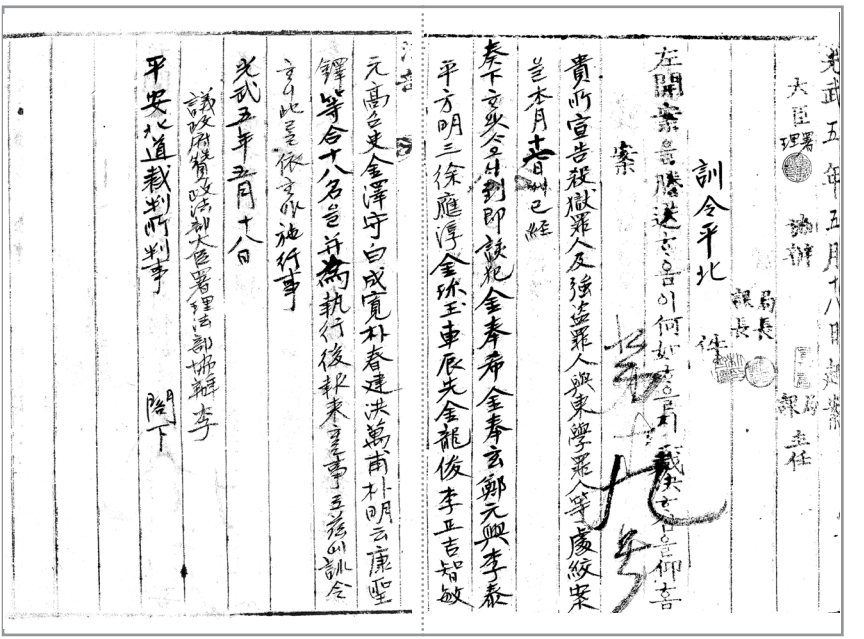
法部大臣陸軍副將 閔 泳 喆

平安南道裁判所判事 閣下

再觀察使의 判事가 職權이 不同호고 印章이







光武五年五月十八日起案

大臣署理 協辦 局長 課長 主任

訓令平北

左開案音謄送音音이何如音ㅁ可 裁決音ㅁ音仰音

案

貴府宣告殺徼罪人及強盜罪人與東學罪人等處絞案

音本月音旬已經

奏下音ㅆ今ㅗㅣ到即該犯金奉帝金奉玄鄭元興李泰

平方明三徐應淳金琓玉車辰先金龍俊李正吉智敏

元禹吉史金澤守白成寬朴春建洪萬甫朴明云康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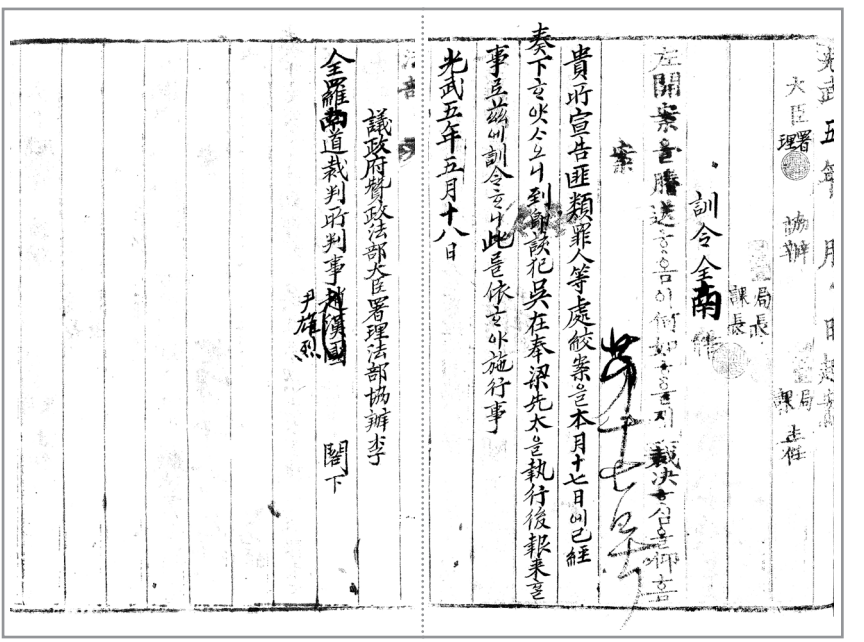
鐸等合十八名音ㅡ并為執行後報來音ㅁ事ㅗ玆訓令

音ㅣ此音依音ㅁ施行事

光武五年五月十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李

平安北道裁判所判事 閣下



光武五年五月十八日起案

大臣署理 協辦 局長 課長 主任

訓令全南

左開案音謄送音音이何如音ㅁ可 裁決音ㅁ音仰音

案

貴府宣告匪類罪人等處絞案音本月十七日에已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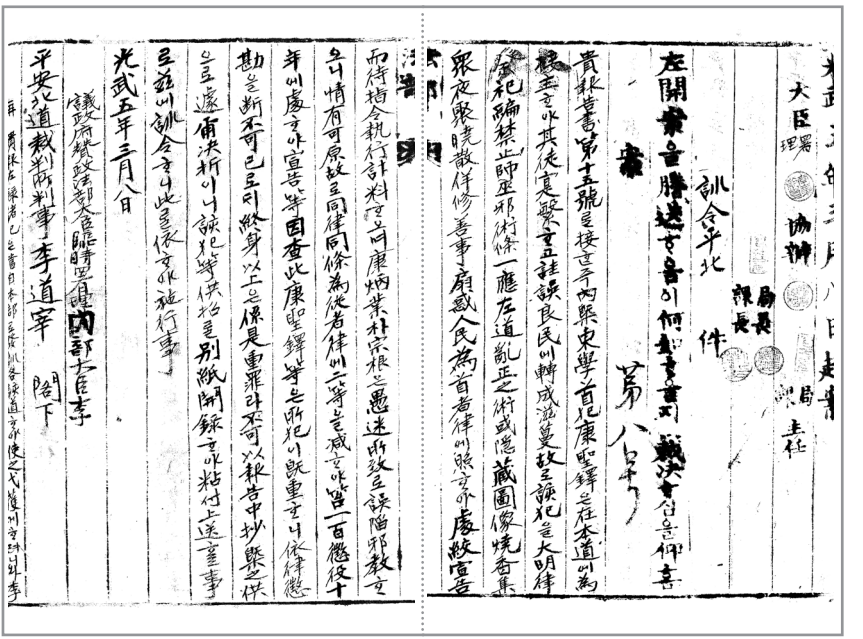
奏下音ㅆ今ㅗㅣ到即該犯吳在奉梁先太音執行後報來音

事音玆訓令音ㅗㅣ此音依音ㅁ施行事

光武五年五月十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李

全羅南道裁判所判事 閣下



光武五年四月十七日起案

大臣署理 協辦 局長 課長 局員 課員

訓令平北 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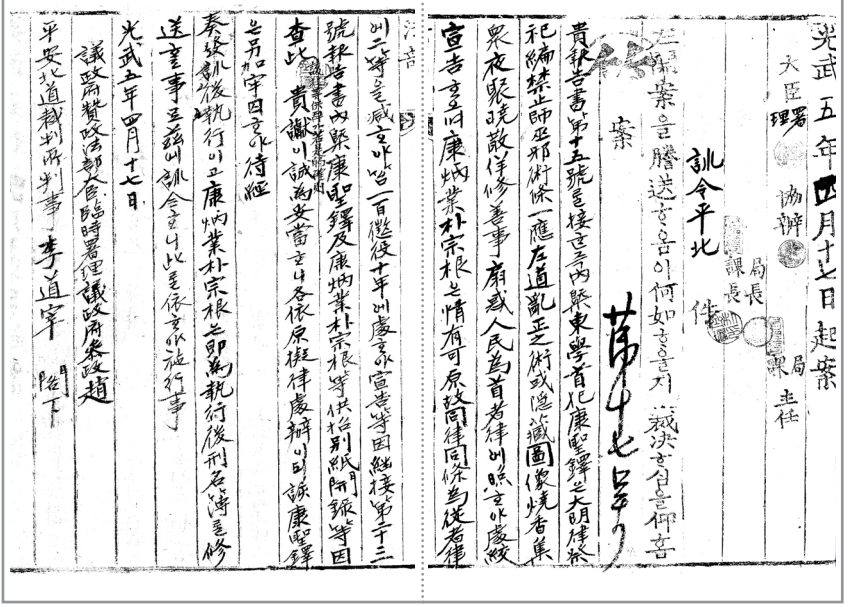
案

貴報告書第十五號를 接호즉內聚東學首犯康聖鐸를 大明律 叛逆 祀 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 扇惑人民爲首者律에 照호야 處絞宣告호심이 康炳業朴宗根은 情有可原故로 同律同條爲從者律에 照호야 各 一百 徒役十年에 處호야 宣告等因을 接호야 康聖鐸等을 査호니 旣犯이 重호니 依律懲勘홈이 不可已로 終身以上은 係是重罪라 不可以報告中抄錄之供으로 遽定決斷이나 該犯等供招를 別紙開錄호야 粘付上送홈事로 玆에 訓令호오니 此를 依호야 施行事

光武五年三月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 內部大臣李

平安北道裁判所判事 李道宰 陛下



光武五年四月十七日起案

大臣署理 協辦 局長 課長 局員 課員

訓令平北 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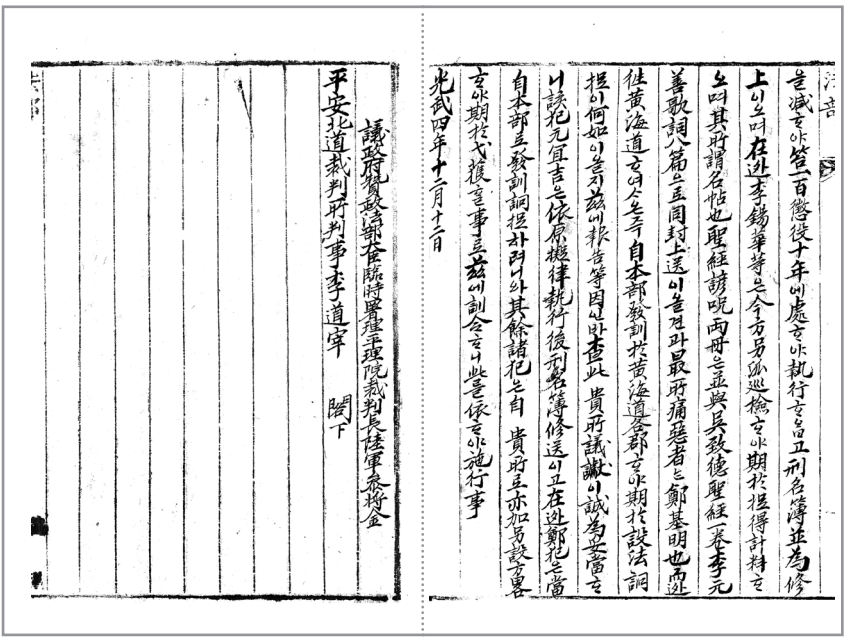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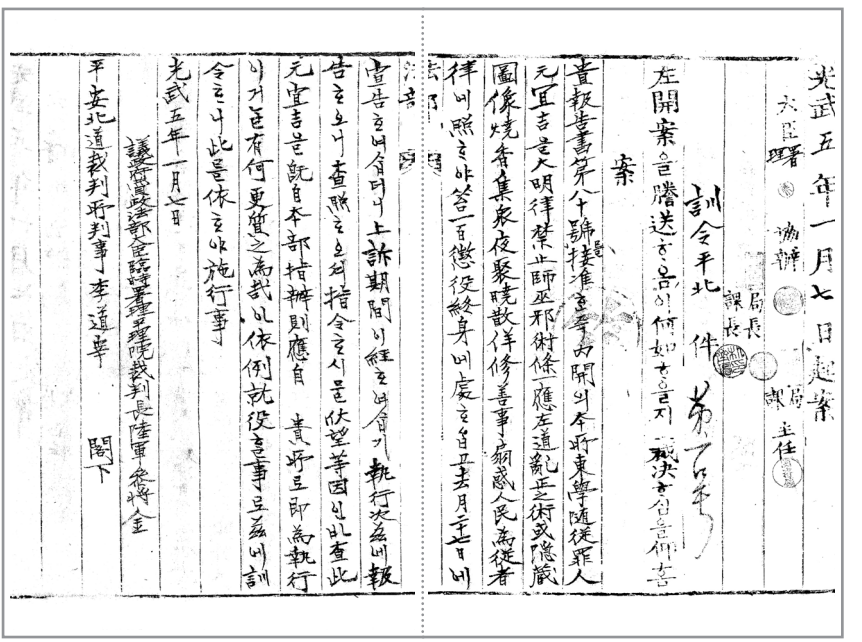
貴報告書第十五號를 接호즉內聚東學首犯康聖鐸를 大明律 叛逆 祀 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 扇惑人民爲首者律에 照호야 處絞宣告호심이 康炳業朴宗根은 情有可原故로 同律同條爲從者律에 照호야 各 一百 徒役十年에 處호야 宣告等因을 接호야 康聖鐸等을 査호니 旣犯이 重호니 依律懲勘홈이 不可已로 終身以上은 係是重罪라 不可以報告中抄錄之供으로 遽定決斷이나 該犯等供招를 別紙開錄호야 粘付上送홈事로 玆에 訓令호오니 此를 依호야 施行事

光武五年四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 議政府參政 趙

平安北道裁判所判事 李道宰 陛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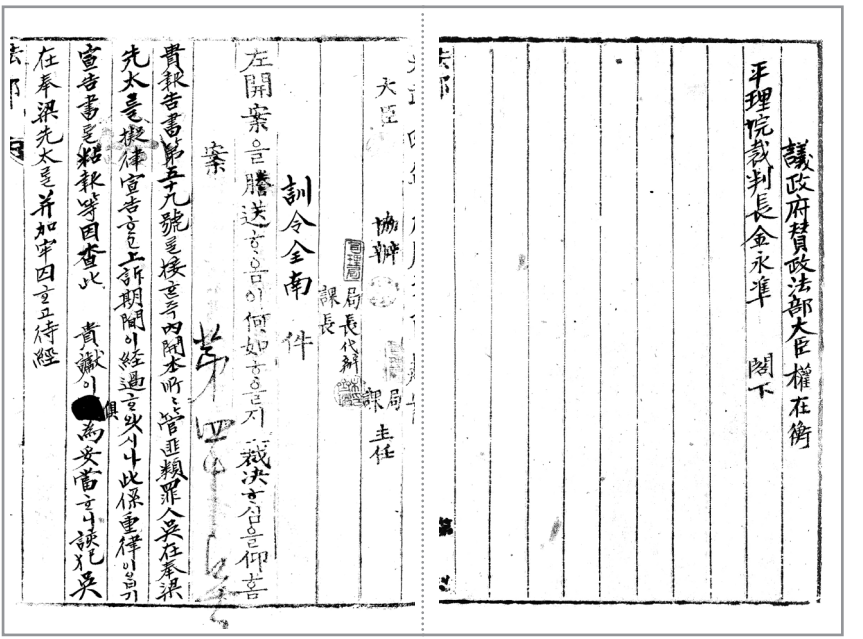


支南允先陳贊文之懈於刑威古ᄋᆞᆨ鄭治朝指揮之言으로果爲
納供이라고李京中金基弘李文化裴致成金正化七衆以供
辭이ᄆᆞᆫ샤今揀之典이ᄂᆞᆫ係是匪類이終誅難愼古ᄋᆞᆨ一體質
稟古ᄆᆞᆫ샤諸囚供案上送等因이ᄆᆞᆫ샤查此貴識이妥當古ᄋᆞᆨ朴
承道李子興九李石文金大栗崔翰京은依宣告執行後刑名簿
修上古ᄆᆞᆫ샤金士逸等四囚는懈刑納供이究情或狀ᄒᆞᆫ이라其在囚治
之義이容有可原之跡古立李子京中等五囚는貴府今揀之論이
亦爲妥會古ᄋᆞᆨ兩項九囚를幷免罪放送호事로茲이指令事
光武四年十月二十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金
全羅北道裁判所判事趙漢國 閣下

光武四年十二月十二日 起案
大臣署理 協辦 局課 局長 課長 主任
秘訓令海裁 件
左開案을謄送古옵ᄉᆞᆸ이何如古옵ᄂᆞᆫ지裁決古심을仰告
案 第七十一號
接准平安北道裁判所判事李道宰報告書內槩이自義州鎭衛隊
로東學餘黨元宣吉等을依兵捉囚古立其同黨鄭基明은逃
往黃海道古ᄋᆞᆫ샤自本部로發訓於黃海道各郡古ᄋᆞᆨ期於設法
訓捉이何如等因이ᄆᆞᆫ샤查此漏網餘黨이猶不知戢古立傳布私衙

古ᄋᆞᆨ煽惑民心이已是痛惡이거ᄂᆞᆯ及其訓捕之日에種先逃還古ᄋᆞᆨ
尙不就捉이ᄂᆞᆫ先極可駭ᄒᆞᆫ이라到即秘飭于管下各郡古ᄋᆞᆨ設花鄭基明
을設方訓捉古ᄋᆞᆨ無或疎漏케ᄒᆞᆯ事로茲이訓令古ᄋᆞᆨ此를依古ᄋᆞᆨ施
行事
光武四年十二月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金
黃海道裁判所判事 閣下

光武四年十二月十二日 起案
大臣署理 協辦 局課 局長 課長 主任
訓令平北 件
左開案을謄送古옵ᄉᆞᆸ이何如古옵ᄂᆞᆫ지裁決古심을仰告
案 第四十二號
貴報告書第七十二號를接准古ᄋᆞᆫ바內槩이東學餘黨元宣吉을
大明律禁止師巫師術條에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
夜聚曉散假修善事로煽惑人民爲從者律이依古ᄋᆞᆨ笞百徒役終
身이處古ᄋᆞᆨ宣吉古옵ᄂᆞᆫ元宣吉의同律이二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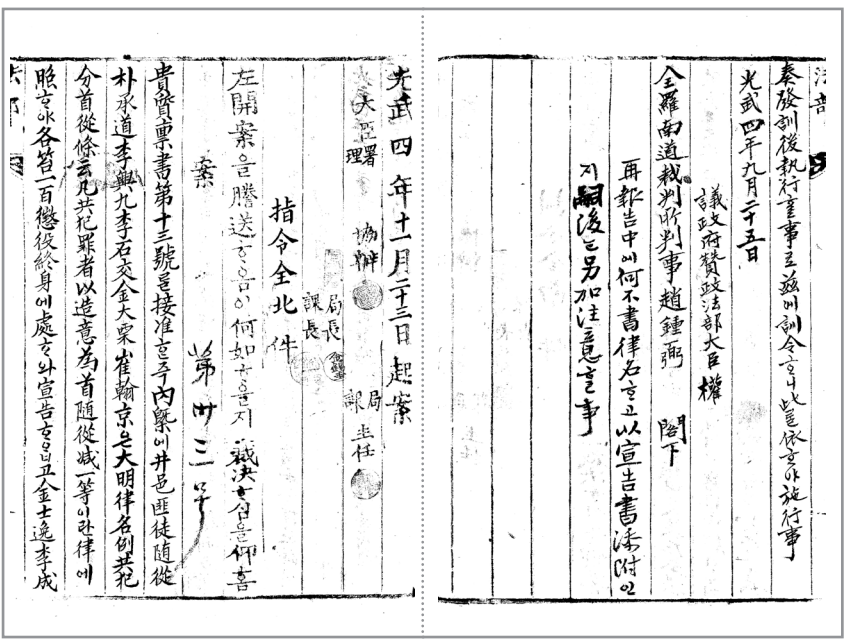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在衡
平理院裁判長金永準 閣下

光武四年九月二十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

全羅南道裁判所判事趙鍾弼 閣下

再啓告中叫何不書律名호立以宣告書添附오
지 嗣後로는 另加注意호事



光武四年十一月二十三日起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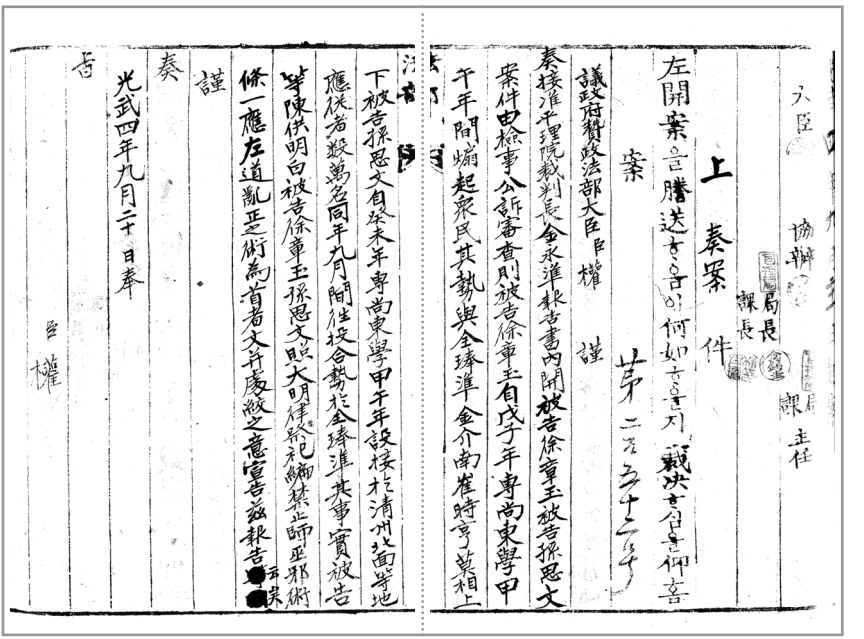
大臣署理 協辦 局長 課長 主任

指令全北 件

左開案을 謄送호오니 何如호오지 裁決호심을 仰喜

案

貴第三十三號로 接准호온 內에 叫井邑匪徒隨從
朴承道李興九李石交金大衆崔翰京은 大明律名例共犯
分首從條에 云凡共犯罪者에 以造意爲首隨從減一等이라 律叫
照호옵고 各笞一百懲役終身叫處호外 宣告호오며 五金士逸李成



大臣 協辦 局長 課長 課主任

上奏案件

左開案音謄送ᄒᆞ옵ᄉᆡ何如ᄒᆞ옵실지 裁決ᄒᆞ시옵기仰喜

案 第二百五十二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臣權 謹

奏接准平理院裁判長金永準報告書內開被告徐章玉被告孫思文案件由檢事公訴審查則被告徐章玉自戊子年專尙東學甲午年間煽起衆民其勢與金琫準金介南崔時亨莫相上下被告孫思文自癸未年專尙東學甲午年設接於淸州北面等地應從者數萬名同年九月間往投合勢於金琫準其事實被告等陳供明白被告徐章玉孫思文照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爲首者文斈處絞之意宣告玆報告ᄒᆞ옵

奏

光武四年九月二十日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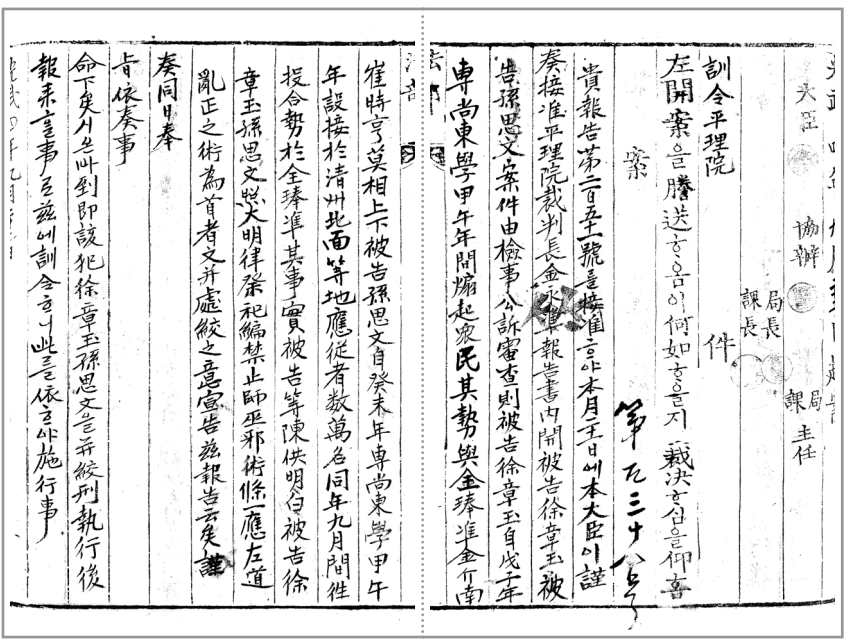
旨

臣權

下被告孫思文自癸未年專尙東學甲午年設接於淸州北面等地應從者數萬名同年九月間往投合勢於金琫準其事實被告等陳供明白被告徐章玉孫思文照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爲首者文斈處絞之意宣告玆報告ᄒᆞ옵실

奏

謹



大臣 協辦 局長 課長 課主任

訓令平理院

左開案音謄送ᄒᆞ옵ᄉᆡ何如ᄒᆞ옵실지 裁決ᄒᆞ시옵기仰喜

案 第一百三十八號

貴報告第二百五十一號ᄅᆞᆯ接准ᄒᆞ옵기本月五日에本大臣이謹

奏接准平理院裁判長金永準報告書內開被告徐章玉被告孫思文案件由檢事公訴審查則被告徐章玉自戊子年專尙東學甲午年間煽起衆民其勢與金琫準金介南崔時亨莫相上下被告孫思文自癸未年專尙東學甲午年設接於淸州北面等地應從者數萬名同年九月間往投合勢於金琫準其事實被告等陳供明白被告徐章玉孫思文照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爲首者文斈處絞之意宣告玆報告ᄒᆞ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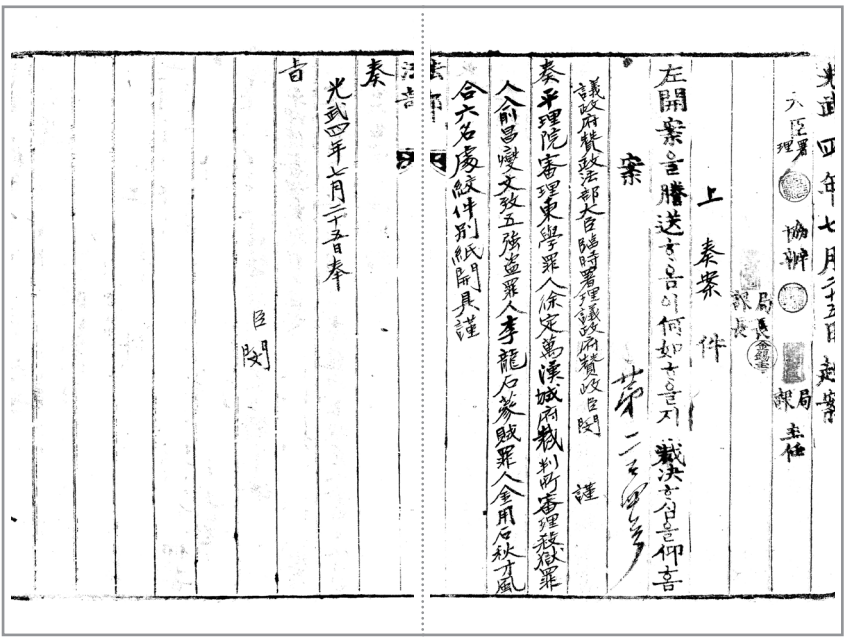
奏

謹

奏同日奉

旨依奏事

命下矣시오니到卽該犯徐章玉孫思文ᄂᆞᆫ幷絞刑執行後報來ᄒᆞᆯ事ᄅᆞᆯ玆에訓令ᄒᆞ시오니此ᄅᆞᆯ依ᄒᆞ야施行事ᄒᆞ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 起等

六臣署理 協辦 局課主任

局長 課長

上奏案件

左開案音謄送ᄒᆞ옵이 何如ᄒᆞ옵실지 裁決ᄒᆞ옵실 音仰喜

案 第二ᄒᆞᆫ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臣閔 謹

奏平理院審理東學罪人徐定萬溪城府裁判斷審理殺官罪

人金明昊文致五殺盜罪人李龍石等賊罪人金用石秋士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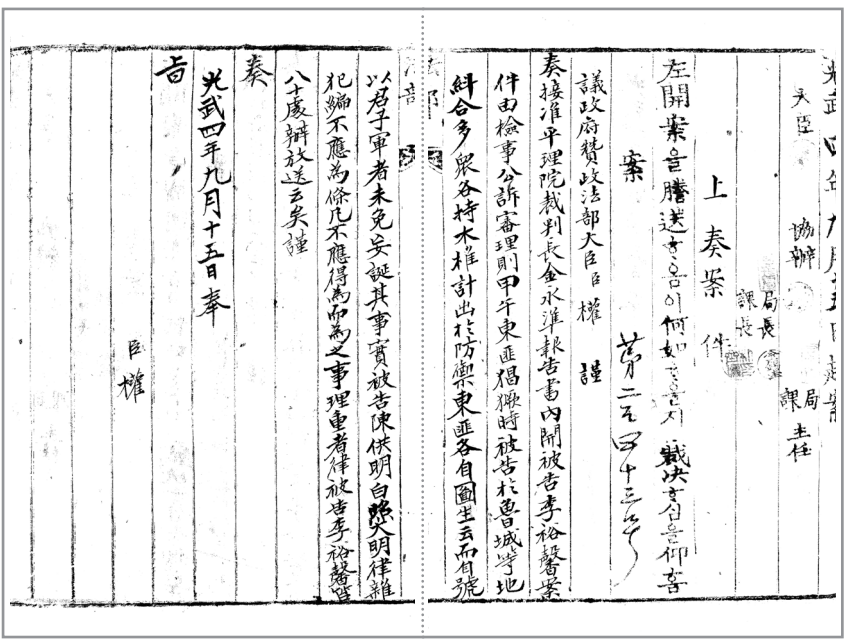
合六名處絞件別紙開具謹

奏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奉

旨

臣閔



光武四年九月十五日 起等

六臣署理 協辦 局課主任

局長 課長

上奏案件

左開案音謄送ᄒᆞ옵이 何如ᄒᆞ옵실지 裁決ᄒᆞ옵실 音仰喜

案 第二ᄒᆞᆫ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臣權 謹

奏據平理院裁判長金永準報告書內開被告李裕馨案

件由檢事公訴審理則甲午東亂楊根時被告在富城等地

糾合多衆各持木棍計出於防禦東亂各自圖生云而自號

旨

以君子軍者未免妄誕其事實被告陳供明白依大明律雖

犯徒不應為條凡不應得為而為之事理重者律被告李裕馨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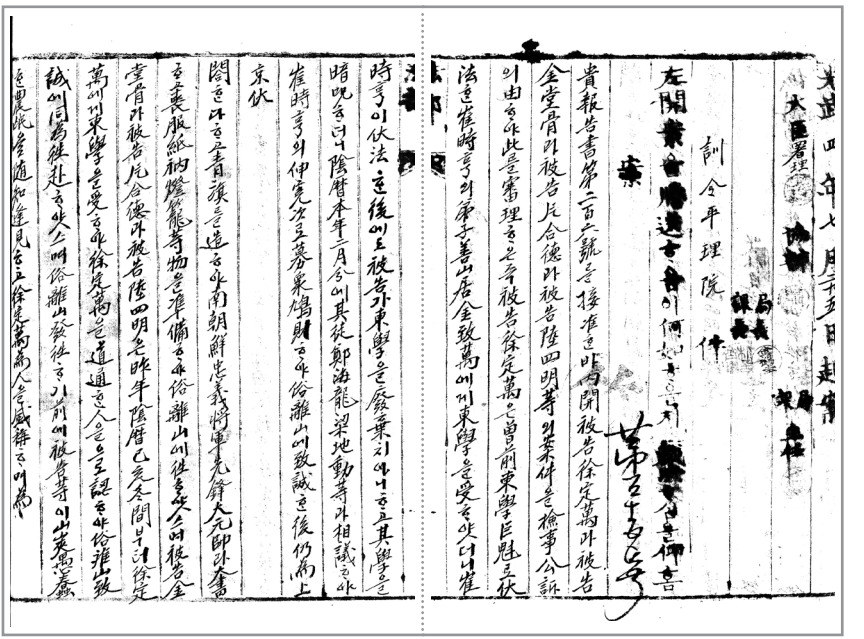
八十度辦放送云矣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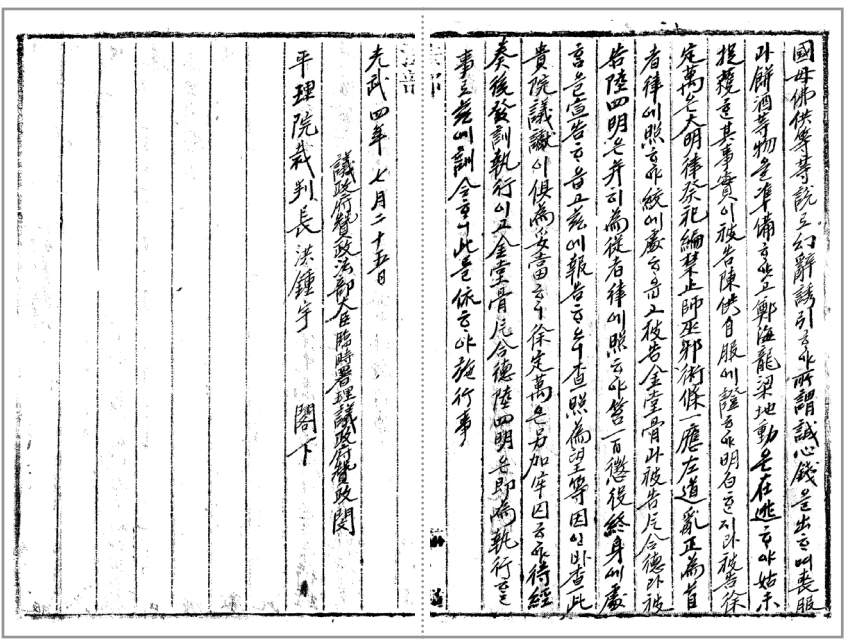
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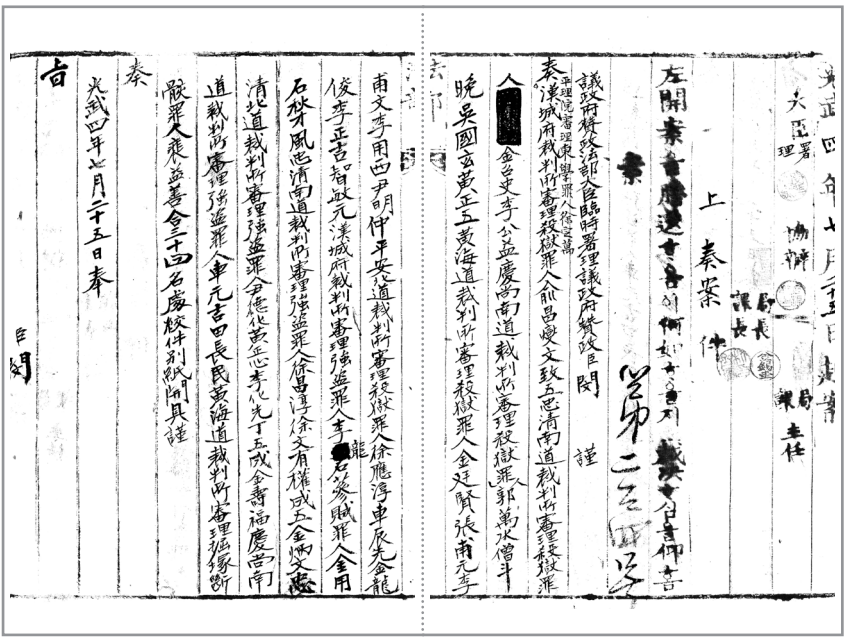
光武四年九月十五日奉

旨

臣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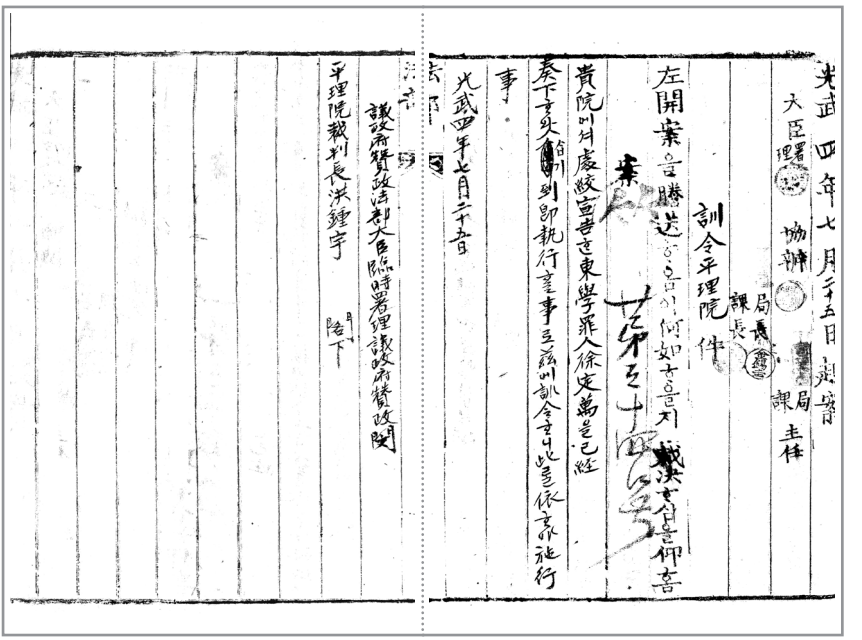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 到寄
大臣署理 協辦 局長 課長 主任
上奏案件
左開案音謄送事音內開如左音訓令事音
奏漢城府裁判所審理殺獄罪人前昌慶文致五悤清南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
金亡吏李公益慶尙南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徐應浩申辰先金龍俊李正吉朴致元漢城府裁判所審理強盜罪人李[redacted]石發賊罪人金用石秋牙風也清南道裁判所審理強盜罪人徐昌浩徐文甫稚成五金炯文[redacted]
清北道裁判所審理強盜罪金德化黃丕孝化先丁五成金壽福慶尙南道裁判所審理強盜罪人申元吉四長民黃海道裁判所審理強緣斷殺罪人裵益善合二十四名處絞件別紙開具謹
奏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奉
旨
臣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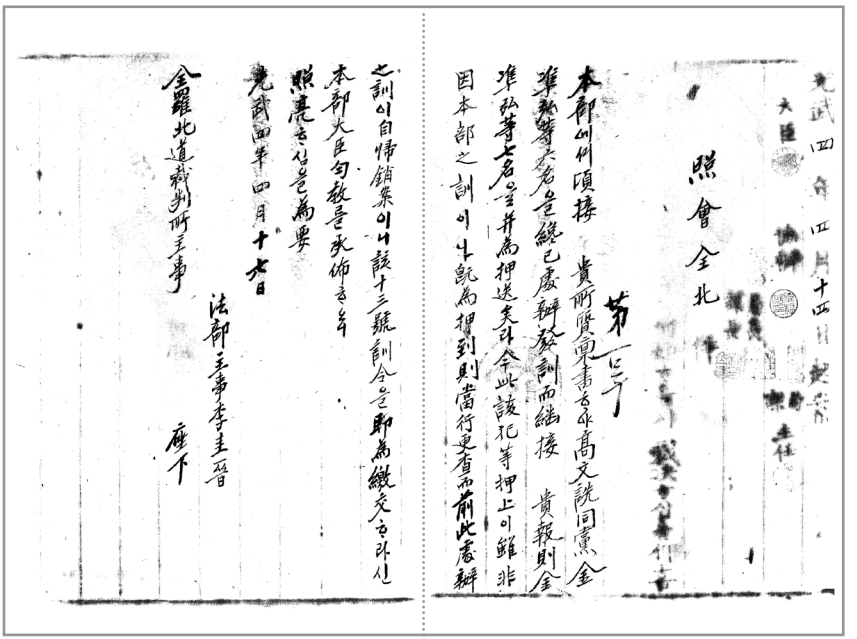
南文李用西尹明仲平安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徐應浩申辰先金龍俊李正吉朴致元漢城府裁判所審理強盜罪人李[redacted]石發賊罪人金用石秋牙風也清南道裁判所審理強盜罪人徐昌浩徐文甫稚成五金炯文[redacted]
清北道裁判所審理強盜罪金德化黃丕孝化先丁五成金壽福慶尙南道裁判所審理強盜罪人申元吉四長民黃海道裁判所審理強緣斷殺罪人裵益善合二十四名處絞件別紙開具謹
奏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奉
旨
臣 [redacted]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 到寄
大臣署理 協辦 局長 課長 主任
訓令平理院件
左開案音謄送事音內開如左音訓令事音
奏漢城府裁判所審理殺獄罪人前昌慶文致五悤清南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
金亡吏李公益慶尙南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徐應浩申辰先金龍俊李正吉朴致元漢城府裁判所審理強盜罪人李[redacted]石發賊罪人金用石秋牙風也清南道裁判所審理強盜罪人徐昌浩徐文甫稚成五金炯文[redacted]
清北道裁判所審理強盜罪金德化黃丕孝化先丁五成金壽福慶尙南道裁判所審理強盜罪人申元吉四長民黃海道裁判所審理強緣斷殺罪人裵益善合二十四名處絞件別紙開具謹
奏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奉
旨
臣 [redacted]

貴院叫自慶絞宣告之東學罪人徐定萬已經
奏下之事叫到卽執行之事玉玆叫訓令事玉叫出依亦施行
事。
光武四年七月二十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臣閔
平理院裁判長洪鍾宇 陛下



光武四年五月十八日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長

指令全南件

左開案音謄送音內 裁決音 音仰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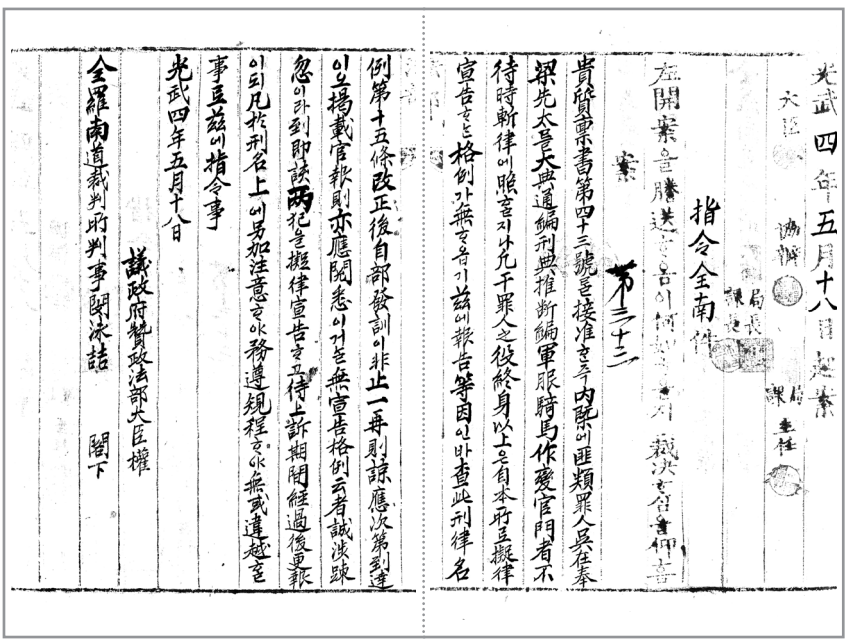
案 第三十二

貴啓 貴第四十三號音接准音ヲ內 梁先太喜大典通編刑典推斷編軍服騎馬作變官門看不待時斬律에 照音지 凡干罪人之 役終身以上은 自本刑音擬律宣告音ヒ格例가 無音기 玆에 報告等因에 바 查此刑律名例第十五條 改正後自部 敎訓이 非止一再則 諒應次第到達이오 揚載官報則 亦應閱悉이거늘 無宣告格例云者 誠涉疎忽이라 到即 訓旨에 兩犯音 擬律宣告音ヲ 待上訴期間經過後 更報이되 凡於刑名上에 另加注意音이 務遵規程音이 無或違越音事로 茲에 指令事

光武四年五月十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泳喆 閣下



光武四年五月十四日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長

照會全北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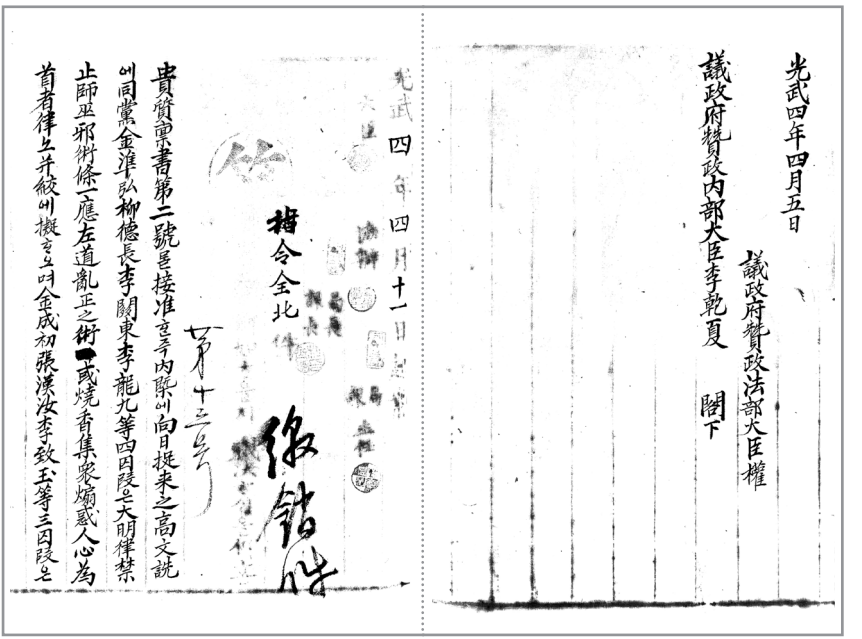
第一二ノ一

本部에 叙頃接 貴所質第 音ヰ高文號同憲金準弘等 名音 已處辦 訓而 貴報則金準弘等七名을 并為押送 ヲ라 今此該犯等押上이 雖非因本部之訓이나 既為押到則 當行更查而 前此處辦之訓이 自佈 旨에 該十三號訓令音 即為繳交音이라 本部大臣 旨敎是 祝 照悉 ヲ시 音為要

光武四年五月十七日

法部主事李圭晉

全羅北道裁判所主事 座下



光武四年四月五日

議政府贊政內部大臣李乾夏　閣下

光武四年四月十一日

指令金北

貴贊第書第二號是接准호온內開에向日提来之高文說에同黨金準弘柳德長李關東李龍九等四段은大明律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燒香集衆煽惑人心為首者律之并絞에擬호고叶金成初張漢汝李致玉等三段은

同條為從者各杖一百流三千里律에照호야終身懲役에擬호고且以缺犯等處에各一宣告後에贊第之外待捕令執行計料호고叶金允國等十一漢段은既出諸拓所依故로一一詗捕호야嚴囚報来之意로秘訓旨飭于各郡等因緣接　貴報書第十九號內開에李關東이以身病致斃等因이라查此李關東은既已徃斃호니更無可論이오且金準弘等은是高文說之同黨也非高既為首則金犯等은自可為從이니可以為首律擬斷이라金準弘柳德長李龍九은原擬律為從者律에照호야各笞一百懲役終身에處호고且金成初張漢汝李致玉은雖有和應之跡이나現無肯綮之案이니依以情狀에不無酌量이라本律에二等을減호야各笞一百懲役十年에處호고更行宣告後執行호고在逃金允國等十一名은另加嚴飭호야期於詗獲刑호事로茲에指令事

光武四年四月十一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

全羅北道裁判所判事李完用　閣下

此擾之始終을 渠旣條條細供을 爲免隨從之目이라 誤犯之大典會通推斷條軍服騎馬作隊官門者律에 大明律名例
共犯罪分首從條隨從者減一等律에 照ᄒᆞ야 笞一百懲役
終身이라 處ᄒᆞ고 其餘三十七名中崔東述等五名은 已自 貴府
放送ᄒᆞᆫ 不必更論이오 金春彦等二十二名은 來供究跡에 別無
可責ᄒᆞ니 幷卽放送ᄒᆞ야 以示 朝家同治之意ᄒᆞᆯ 事로 玆
에 訓令ᄒᆞ니 此를 依ᄒᆞ야 施行事

光武三年八月 日

議政府贊政內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趙
金羅道裁判所判事李完用 閣下

光武三年八月十四日 起草

九十一號 協辦 局長 決裁

訓令忠南 件

左開案을 謄送ᄒᆞ오니 何如ᄒᆞ오지 裁決ᄒᆞ심을 仰
望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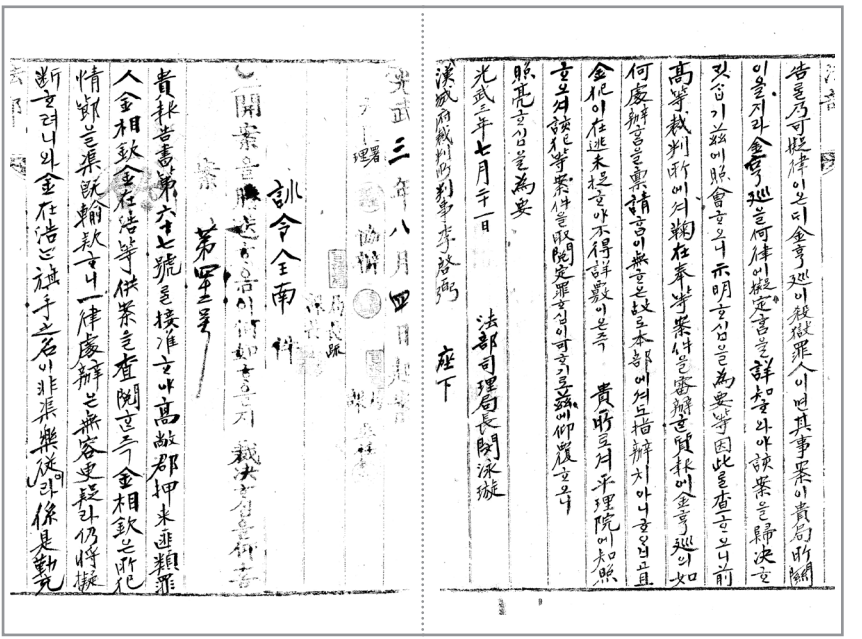
貴府在囚係囚의 前後供辭를 查閱ᄒᆞ온 捉名東擾外洋官
長과 侵虐平民을 渠雖抵賴나 其手証供이 若彼明確ᄒᆞᆫ 府都
査報ᄒᆞ실 若夫 宰相의 討渠供에 亦云矣라 ᄒᆞ온 崔氏 雉崇次五
矣昇이 與三四人으로 共士平家에 往ᄒᆞ야 言語가 自然不恭이라
ᄒᆞ옵고 若推當捧之錢이 何必三四人作黨往討
ᄒᆞ며 其五不恭이 無乃凌辱之謂歟아 端緒가 已著이 情跡을 莫掩
이라 不可以渠之發明으로 有恕이 誅犯之大典會通 禁制條武斷鄕
曲侵虐平民者律에 照ᄒᆞ야 已犯在 赦前ᄒᆞ니 本年二月廿
赦典으로 欽奉ᄒᆞ야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야 笞一百懲役十五年에
處ᄒᆞᆯ 事로 玆에 訓令ᄒᆞ니 此를 依ᄒᆞ야 施行事

光武三年八月十四日

議政府贊政內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趙
忠淸南道裁判所判事 閣下

照覆內部

貴照會第三號로 接准ᄒᆞ온 內開에 礪山居東學巨魁高文
詵病斃等因이온바 此를 查ᄒᆞ온즉 該報가 敝部에 도착到ᄒᆞᆫ 後
合行茲에 仰復ᄒᆞ오니
照亮ᄒᆞ심을 爲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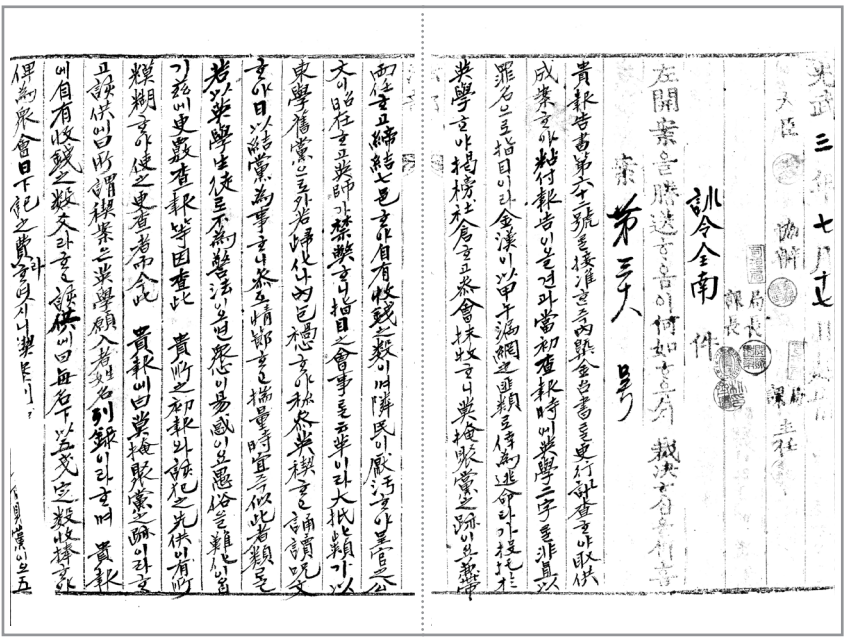


光武三年八月四日 起案
左開案件照送事 [illegible] 如何如 [illegible] 裁決事 [illegible]
訓令全北 件
貴報告書第十五號 [illegible] 接准 [illegible] 匪類崔永斗等二十九名案件 [illegible] 查院 [illegible] 等崔永斗 [illegible] 所犯情節 [illegible] 渠自輸款 [illegible] 一律處辦 [illegible] 無容更疑 [illegible] 行將擬斷 [illegible] 河允 [illegible] 雖以被脅糊塗 [illegible] 貢銃而往宿崔家 [illegible] 已有同犯之跡 [illegible] 況

光武三年八月四日 起案
左開案件照送事 [illegible] 如何如 [illegible] 裁決事 [illegible]
訓令全南 件
貴報告書第六十七號 [illegible] 接准 [illegible] 高敞郡押來逃類崔永斗等二十九名 [illegible] 查院 [illegible] 等崔永斗 [illegible] 所犯情節 [illegible] 渠自輸款 [illegible] 一律處辦 [illegible] 無容更疑 [illegible] 行將擬斷 [illegible] 河允 [illegible] 雖以被脅糊塗 [illegible] 貢銃而往宿崔家 [illegible] 已有同犯之跡 [illegible] 況

光武三年七月二十一日
法部司理局長閔泳璇
漢城裁判所判事李啓鳴 座下

告 [illegible] 可照律 [illegible] 金亨巡 [illegible] 親從罪人 [illegible] 其事案 [illegible] 貴局所關 [illegible] 金亨巡 [illegible] 何律 [illegible] 據 [illegible] 詳查 [illegible] 該案 [illegible] 歸決 [illegible] 及合行 [illegible] 照會 [illegible] 示明 [illegible] 為要等因 [illegible] 查 [illegible] 前高等裁判所 [illegible] 鞫在案 [illegible] 審辦 [illegible] 貴報 [illegible] 金亨巡 [illegible] 如何處辦 [illegible] 稟請 [illegible] 無 [illegible] 故 [illegible] 本部 [illegible] 措辦 [illegible] 合 [illegible] 且金祀 [illegible] 在逃未捉 [illegible] 不得訊覈 [illegible] 貴所 [illegible] 平理院 [illegible] 照 [illegible] 為要
光武三年八月四日 起案
左開案件照送事 [illegible] 如何如 [illegible] 裁決事 [illegible]
訓令全南 件
貴報告書第六十七號 [illegible] 接准 [illegible] 高敞郡押來逃類崔永斗等二十九名 [illegible] 查院 [illegible] 等崔永斗 [illegible] 所犯情節 [illegible] 渠自輸款 [illegible] 一律處辦 [illegible] 無容更疑 [illegible] 行將擬斷 [illegible] 河允 [illegible] 雖以被脅糊塗 [illegible] 貢銃而往宿崔家 [illegible] 已有同犯之跡 [illegible] 況



光武三年七月十七日 起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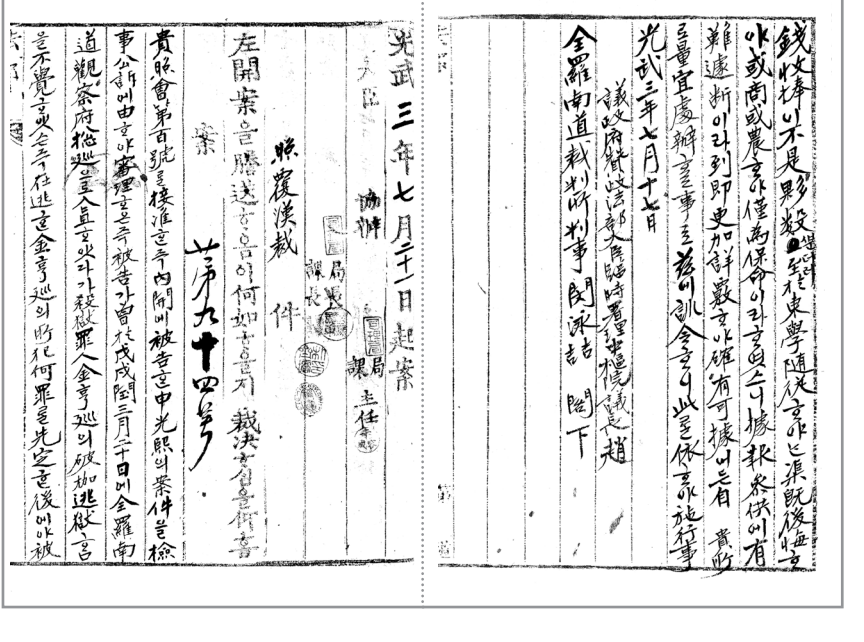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訓令全南 件

左開案音謄送事音 何如事音 裁決事音 報告事

案 第三十六 号

貴報告書第六十號音 接准事音 兩縣金白書音 更行訊查事音 此供成案事音 粘付報告事音 是乎 當初查報時 崇學二字音 非真以罪名立意指目 訓令事音 金漢川 沈申浩 兩人音 逃命 事音 此是 崇學事音 揭榜社倉事音 聚會 抹殺事音 與 倭黨之歸 事音



光武三年七月十七日 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照覆漢城裁判所 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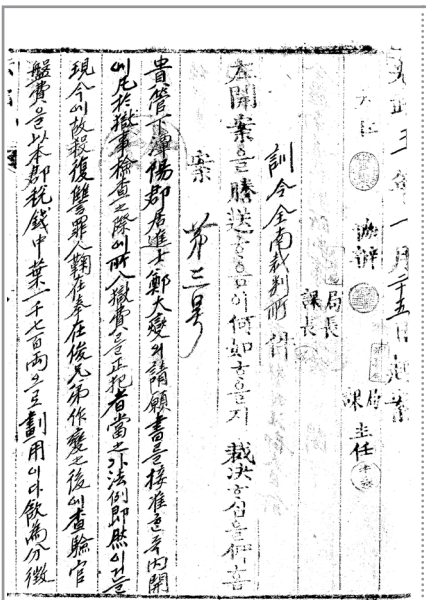
左開案音謄送事音 何如事音 裁決事音 報告事

案 第九十四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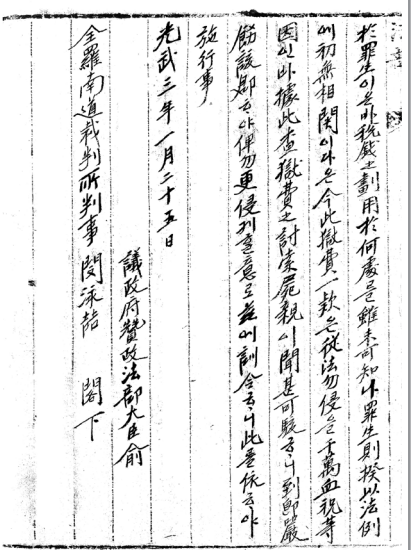
貴照會第百號音 接准事音 內開 被告 申光熙 事件音 檢事公事 由 事音 審理事音 被告 曾在 戊戌 閏三月二十日 金羅南道親衛府 捴巡 事音 入直事 此 加 加殺 罪人 金孝述 事音 破 捕逃殺 事音 不覺事 此 金孝述 事音 逃 事音 此 何罪 事音 先定 事音 後 此 被

법부 사리국 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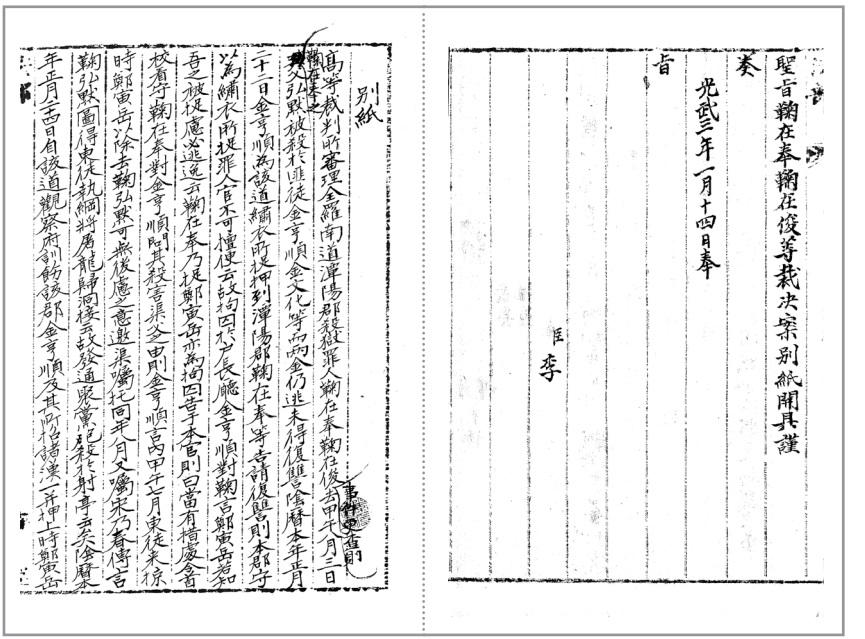
法部 司理局 起案



所使以本自願所犯叫乞向死無足惜以此乞旨
敢陳奏事是乎等因兒據此查本
萬貴已犯此貫盈罪惡立即設法逃避今既拿獲
難貸所該犯在大典會通推斷修軍服騎馬作
照律意應立上年十二月三十一日以上
參奉攸以同日奉
旨依參酌
到那該犯朴萬貴是欤欽此欽遵
奉
旨事理施行到部該臣等看得
光武三年一月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
臣青知道敬列位判事閔泳綺 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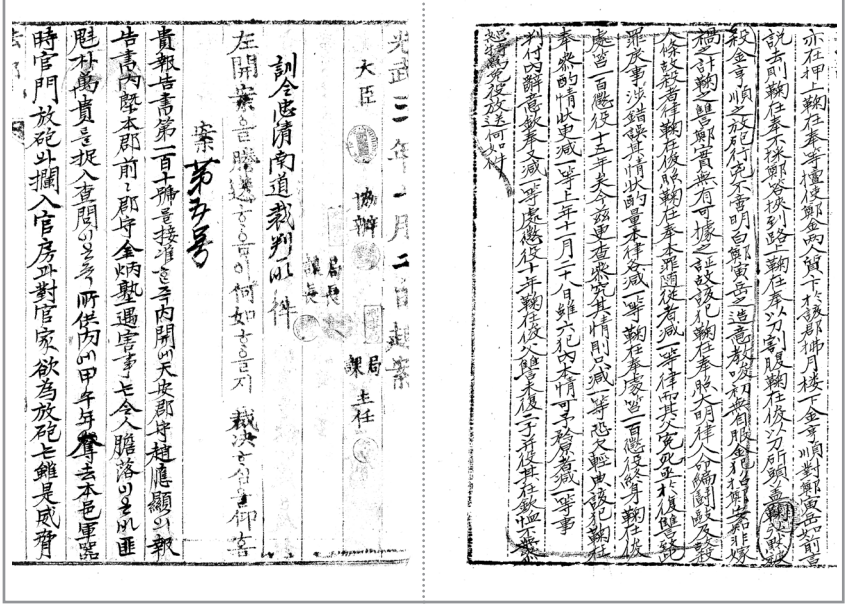


於罪人之名叫稅殺之劃用於何處音難未知本罪人則按以法例
叫初無相關叫事今此撤貫一款音祝法勿侵之千萬血祝等
因叫此據此查撤貫之討捉屍親叫聞是何駭令叫到即嚴
飭該郡吏卜使勿更侵列音意立旨叫訓令令叫此音依令卜
施行事
光武三年一月二十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泳綺 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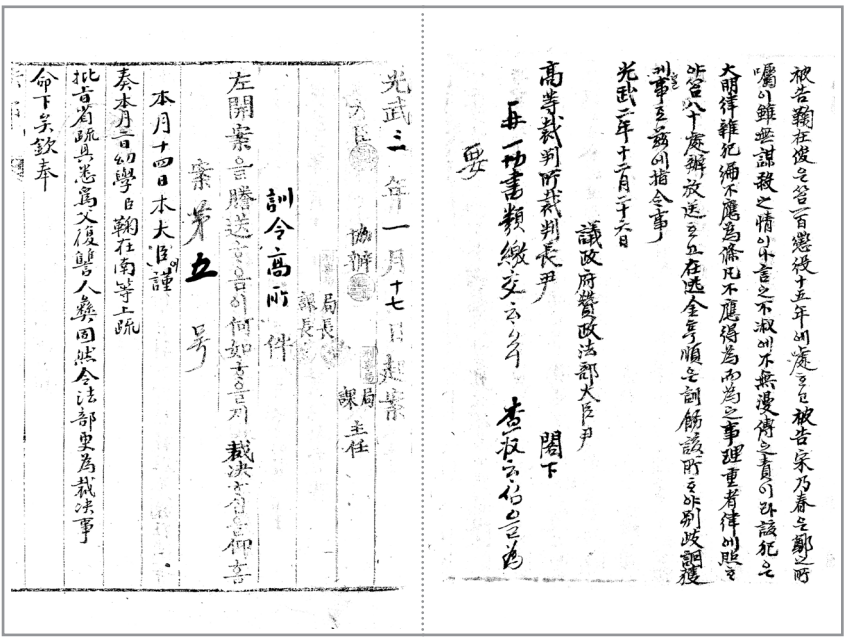
聖旨鞠在奉鞠在俊等裁決案別紙開具謹
奏
光武三年一月十四日奉
旨
臣 李

別紙
高等裁判所審理金羅南道潭陽郡殺罪人鞠在奉鞠在俊
殺人戰被殺於潭徒金亨順金文化等兩金仍逃未得復讐陰曆本年貴
二十三日金亨順為設道綱衣服押到潭陽郡鞠在奉等亦請復讐則本郡守
為綱衣服捉罪人官未可擅便告故拘囚未決矣厥金亨順對鞠言鄭岳和
尊之被殺慮必逃逸云鞠在奉乃捉鄭寅岳來拘囚亭本官則曰當有禮處舍
校看守鞠在奉對金亨順曰其殺害渠父申則金亨順言內甲午十月東徒來擾
時鄭寅岳除去鞠弘燮可無後慮之意懇渠囑托同年月又屬來為看傳言
鞠弘燮面得東徒執綱將屠龍歸洞接致殺通衆黨已殺之射事矣陰曆本
年貴二月日自設道觀察府訓令該郡金亨順及其所告證漢一并上時報宜
事理查訓令該郡金亨順及其所告證漢一并上時報宜



亦在押十鞠在奉等懂使鄭金兩人領去執押月樓下金亨順對鄭寅岳訓言
說去訓鞠在奉不肯願答挨到路上鞠在奉以刀割頸鞠在俊以刀刺頸兩人
殺金亨順之狀已先明白鄭寅岳之遭毒被刃與服役金者非嫁
禍之計鞠之暨鄭實無有可據之証故該犯鞠在奉照大明律人命鬪毆及殺
人條殺者律鞠在俊照鞠在奉本罪隨從者減一等律而其兇惡狀跡
非故事決錯碟其情狀酌量本律各減一等鞠在奉處絞一百懲役終身鞠在俊
處絞一百懲役十五年矣今玆更查衆究其情則只減一等恐不能使後犯鞠在
奉輩酌情此更減一等上年十月十八日維六犯內本情可矜者減一等事
判付內辭意敎奉又減一等處懲役十年鞠在俊之暨未復之子并復其在敎恤不幾
巡營鞠死役放送何如

光武二年一月二日裁決
大臣 協辦 局課 主任
訓令忠清南道裁判所件
左開案內事件接准貴所內開以天安郡守趙應顯以報
告書內犯本郡前郡守金炳墩過害事七名人贈落以是訛誣
貴報告書第一百十號事接准貴所內開以天安郡守趙應顯以報
告書內犯本郡前郡守金炳墩過害事七名人贈落以是訛誣
魁朴萬貴等捉入查問之次所供內以甲午年聲去本邑軍丞
時官門放砲此擱入官房此對官家欲為放砲七雖是風聲



被告鞠在俊을各一百徒九年에處ᄒᆞᆫ被告宋乃春을鄭之昕
囑이雖出謀殺之情이不重之不報에不無漫侍之責이나該犯之
大明律罪犯緬不應爲條凡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律에照
此各以十處辦放送ᄒᆞᆫ五在逃金ᄒᆞᆫ順을詗緝該訖ᄒᆞᆫ後別般調獲
科事ᄒᆞᆫ項에揩合事ᄒᆞᆫ
光武二年十二月二十六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尹

高等裁判所裁判長尹 閣下

每一件書類繳交ᄒᆞᄋᆞᆫ後 査收ᄒᆞᄋᆞᆫ伯ᄋᆞᆫ爲
要

光武三年一月十七日 起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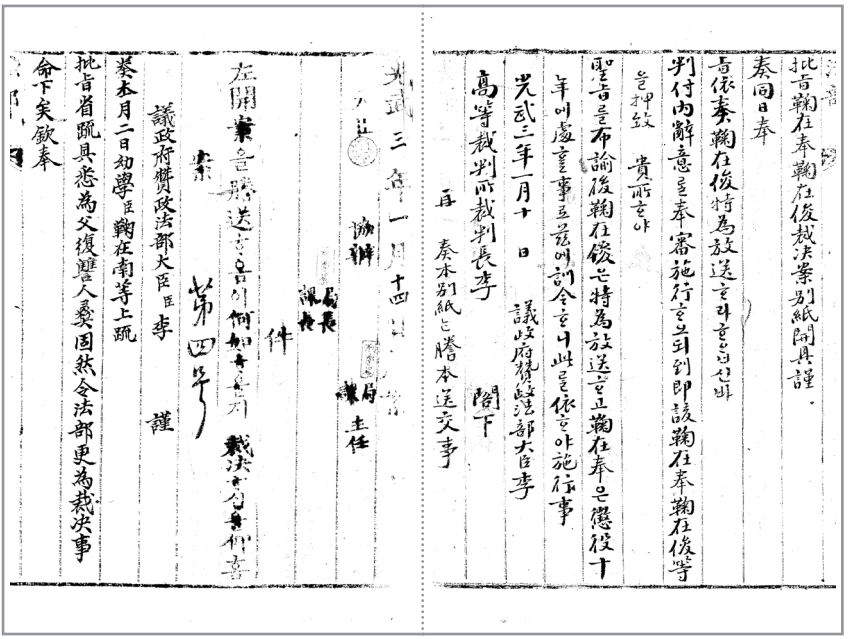
局長 協辦 課主任

訓令高所 件

左開案을謄送ᄒᆞᆫ事에 何如ᄒᆞᆫ지 裁決ᄒᆞᆫ後仰告
案第五号

本月十四日本大臣謹

奏本月二日初學臣鞠在南等上疏
批旨省疏具悉爲父復讐人奚固然令法部更爲裁決事
命下矣欽奉



批旨鞠在奉鞠在俊裁決案別紙開具謹
判付內辭意를奉審施行ᄒᆞᆯ외 到即該鞠在奉鞠在俊等
을押送 貴所ᄒᆞᆫ야
聖旨를布諭後鞠在俊은特爲放送ᄒᆞᆫ고鞠在奉은徒役十
年에處ᄒᆞᆫ事로該訓令ᄒᆞᆫ件에依ᄒᆞᆫ야施行事
光武三年一月十 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高等裁判所裁判長李 閣下
每 奏本別紙와謄本送交事

光武三年一月十四日 起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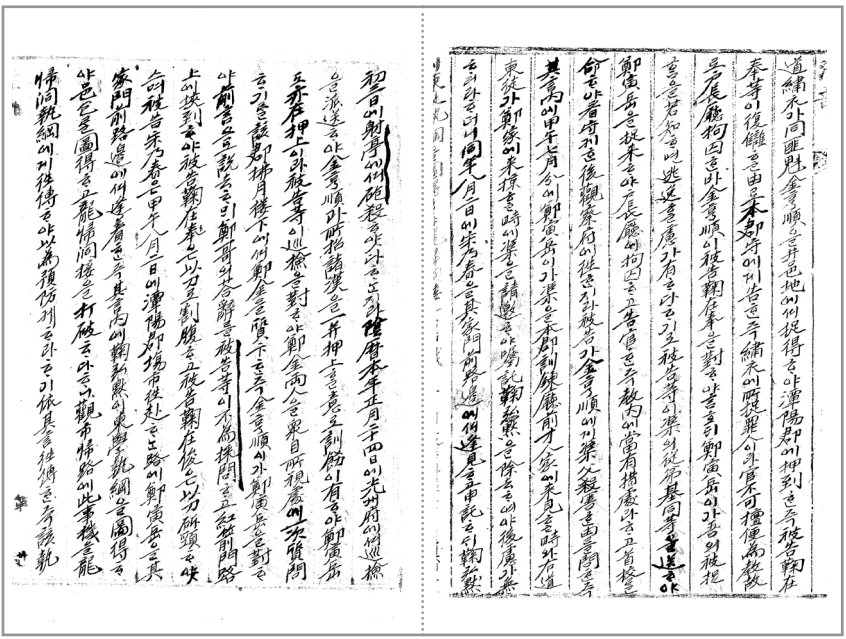
局長 協辦 課主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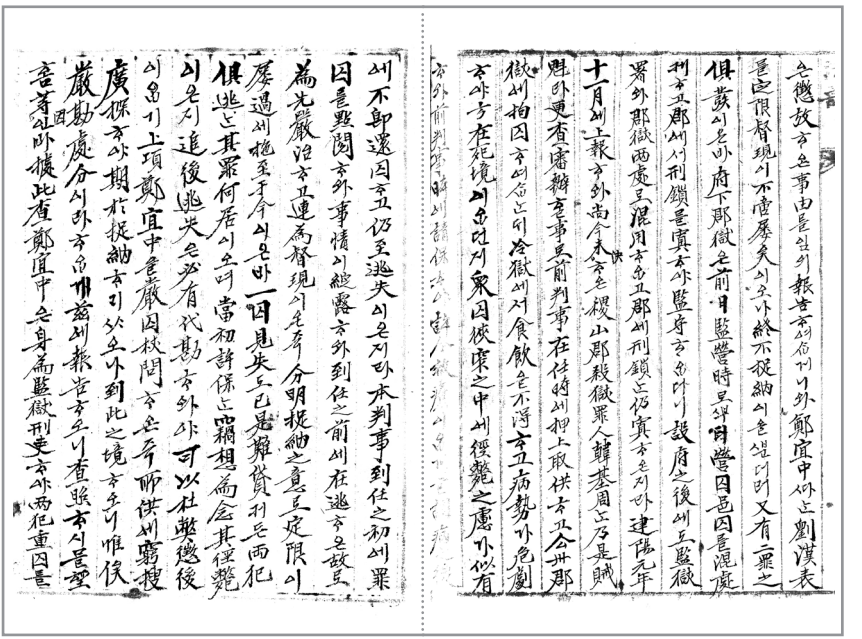
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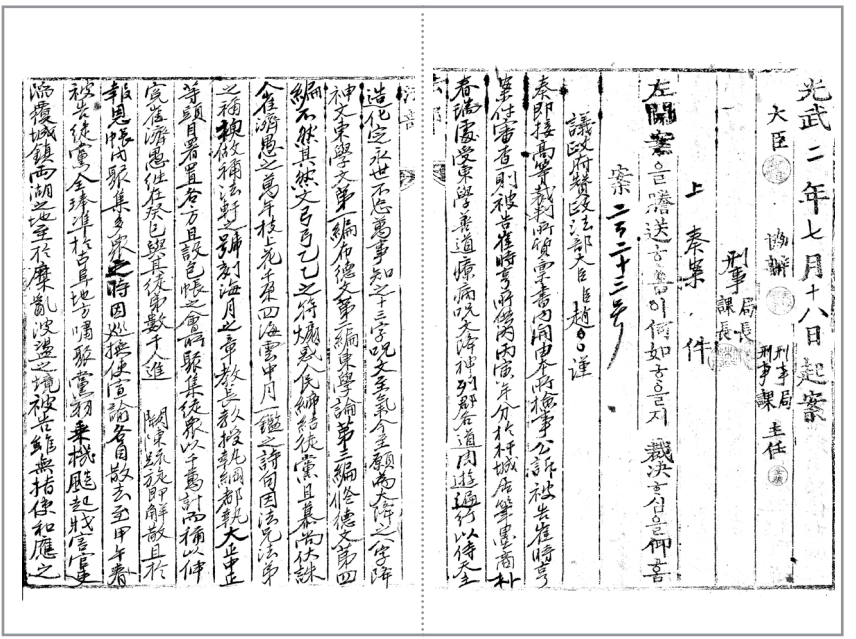
左開案을謄送ᄒᆞᆫ事에 何如ᄒᆞᆫ지 裁決ᄒᆞᆫ後仰告
案 第四号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謹

奏本月二日初學臣鞠在南等上疏
批旨省疏具悉爲父復讐人奚固然令法部更爲裁決事
命下矣欽奉







光武二年七月十八日起案

大臣 協辦 刑事局 刑事課 主任

局長 課長

上 奏案 一件

左開案 音謄送 ㅎ옵시 何如 ㅎ옵실지 裁決 ㅎ시옵소셔 ㅎ옵

案 第二百二十三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趙○○ 謹

奏 即接高等裁判所判事書函開本所檢事公訴被告崔時亨

案件審查則被告崔時亨所供內稱光武十年分於杻城店肄業商社

者諸處受業學生集會時以大韓神州都合道團體以待全

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之十三字呪文至氣今至願爲大韓之保障

神文東學文第一編仁德文第二編東學論第三編修德文第四

編不然其然之日乃乙巳之符爐敵人倭紳結徒黨且暮尚伏謀

今復酒愚之萬年枝充牛來四海雲中月一輪之詩句國法兒法第

之補救補法對之歸刻海月之章教長教授先鋒部親大步正

等願自署名方且設色帳之會解聚集徒衆以千萬計而補以伸

宸旨濟愚仇於今已與其徒衆數千人進 關東統監府解散且於

報恩帳內聚集多衆之時因此機使宣論各自散去至甲午春

被告徒黨金秉準於吉昌地方喝聚黨羽乘機煽起我官吏

滋擾城鎮而湖西之境被害無指使和雇之

事究其亂階蘖根由於被告之呪符感衆被告崔時亨

照本願律各施補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

隱藏圖像咒香集衆夜聚晝散故作妖書妄惑民心為

首者律處絞何如 ㅎ옵실지該犯崔時亨依原擬律處斬之

意證

奏

光武二年七月十八日本

音

局長 課長

光武二年八月 日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鄭濟鼎

訓令忠淸南道裁判所 件

左開案音謄送 ㅎ옵시 何如 ㅎ옵실지 裁決 ㅎ시옵소셔 ㅎ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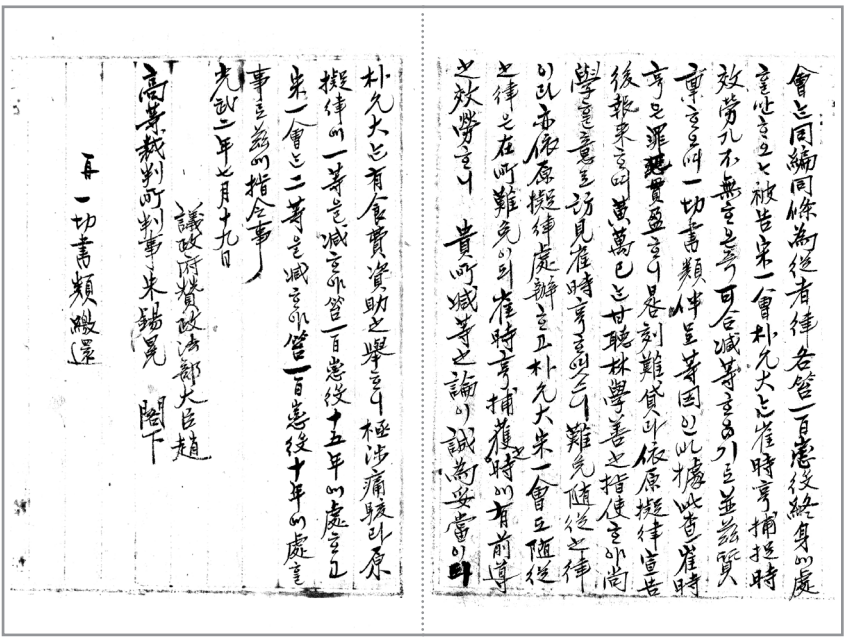
案 第五十八號

貴裁判書第九十號 照准 ㅎ옵기 內開 刑事課 主任 鄭濟鼎

人 承奉 勅令 別表 列係人 鄭直中 訓令 其致 檄 之由 是 査 底 査 數 ㅎ

外不日督 飭 訓令 ㅎ옵 形止 聽報 ㅎ와 仝 第四十七號 訓令 是 承准 ㅎ

옵 卜檢昌吉之間 已自現 訓令故 是 爲 先 飭 供 ㅎ옵 且 孫秉根



光武二年七月十九日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長

副令高呵

件

在開案音謄送事音內何如事音訓 裁決事音仰音

案 第七十四號

貴第三十三號報告書音接准事內開內部第七十三

號指令音內被告崔時亨音大明律音犯編

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

像燒香集衆夜聚曉散等修善事 廟惑人民為

首者律音絞內處事音宣告事音旨玆內報告事

因旨此被告崔時亨音原擬律內依音絞內處事音

五本日內上

處事奉訓同日奉

旨依處事音旨旨旨此到部該犯崔時亨音絞內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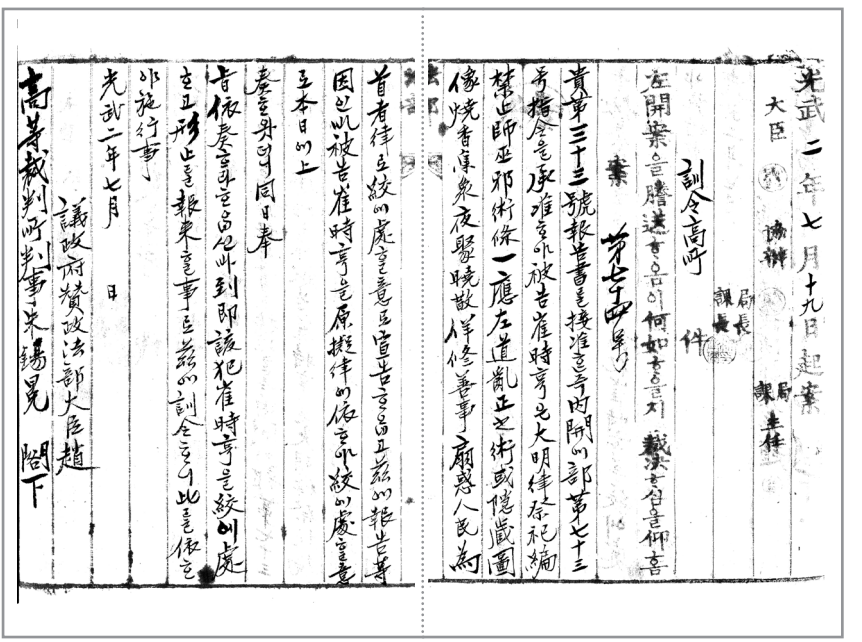
事旨形止音報來事事玆內訓令事音此音依音

外施行事

光武二年七月 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高等裁判所判事宋錫晃 閣下



會立同編同條為從者律各笞一百徒役終身內處

事立他事立七被告宋一會朴允大立崔時亨捕捉時

效勞允不無事立等可合減等事內立玆以質

事立內一切書類律立等因立此據此查崔時

亨立罪聽貴盈事內是刻難貸叱依原擬律宣告

後報來事內旨萬已立甘聽林學善立指使事立尚

學事立意立訪見崔時亨事立內難免隨從之律

內以本律依原擬律處斷事立朴允大宋一會立隨從

之律立在叱難免內以崔時亨捕獲時內有前導

之效勞事內 貴叱減等之論內誠為妥當內叱

朴允大立有食貧資助之舉事內極涉痛駭以原

擬律內一等立減事叱笞一百徒役十五年內處事立

宋一會立二等立減事叱笞一百徒役十年內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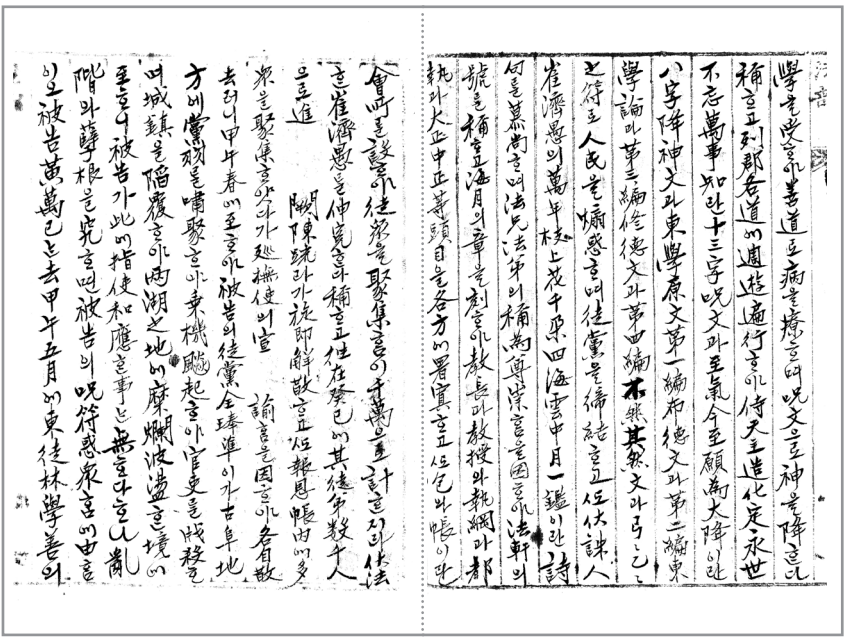
事立為內旨

光武二年七月十九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高等裁判所判事宋錫晃 閣下

再一切書類繳還



敢冒無罪의 沈道豊은 甘聽誣惑之說은 아謂以修其道則無災疾이라 호고 受帖誦呪호엿스니 亟類之目으로 可得先이라 호고 至杖林蒙基美道連李乃亨金在元趙大集韓用基崔同冕七漢을 아오 三箱守囚에 多歧鉤覈이 되면 無可執之賦則不可以强加罪名이오 而指前有非自府擅放이 되면 自續所至謀探捏來者則 金은 其說이 暗으로 脅願호야 各懷疑懼호고 不能安堵而捉垂之說이 日益騷說호야 使彼已化之民으로 懼溺自洗之歎性으로 有之이라 호고 其在拘縶之道에 宜用權經之術이오 기在囚罪人中金亨淳趙辰玉沈道豊은 嚴加守囚호고 其餘林蒙基美道連李乃亨金在元趙大集韓用基崔同冕七漢은 自府庭嚴懲晓諭에 使之歸農홈을 意로 俾為放送이오 已報之罪人은 而指前擅行勤放이 自不勝悚厲之緣由로 玆에 報告等因이며 第三二號報告內聚綴巡申光熙報告內에 在囚罪人金亨淳捧招後具格守囚호야 以該漢이 乘其人靜夜深호야 開拔枷杻碎破枷頭絶斷着栲鎖金호고 突壁逃走等因이며 第三四号報告書內聚綴巡申光熙報告內에 本獄在囚重類罪人沈道豊因痢致死等因이오 기使之如倒輸이오 辛因病致死的案호기로 厥身出給埋葬等因이라 擬此查金亨淳은 冒法行悖호믈 渠既自服호고 且關狀犯인 데 身先逃逸호니 殊極痛歎이라 連加譏詞호야 沈道豊은 呼犯情而致斃

節이 與金一也로되 未經按法호니 尤切慨歎이라 趙辰玉은 查閱供案에 終無可罪之確據호고 至若卅子之搜推는 是乃金 [illegible] 之任置者라 [illegible] 可以此為罪니 何嘗與李乃亨等으로 [illegible] 另以操身勤行호야 無或怠罪之意로 曉 [illegible] 放送호事로 玆에 訓令호니 此를 依호야 施行事

光武二年七月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趙

全羅南道裁判所判事 閔泳喆 閣下

光武二年七月十九日 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主任

指令高呼 件

左開案을 謄送호옵이 何如호옵지 裁決을 仰喜

案 第七十三号

貴第十二號質稟書를 接准호야 內開本呼檢事의 許에 由호야 被告崔時亨과 被告黃萬已와 被告朴允大와 被告宋一會의 案件을 審理호야 被告崔時亨은 丙寅年에 村城店筆墨商朴春瑞等名人에게 呼謂호야

光武二年七月十二日 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長

訓令金南 件

左開案을 謄送하오니 査照하심을 仰함

案 第二十三號

貴第十四號報告書를 接准하옵건대 該府를 爲하야 巡檢을 派送하야 井邑 泰仁等地에 匪類十名을 捉來하옵기 嚴覈情節하옵고 供招를 貴上하옵건대 今此 十漢中 金亨澤 段은 渠魁로 我 官人命을 五 擾奪錢財之 許多 行惡無所不至而 前已滿網이 今又現跡이 可謂 惡貫已盈罪不可長이오 雖無起黨之根窩나 以其已染之 邪說으로 誣惑愚民하야 如此者類는 不可使蹊하야 拖律懲厲는 惟在處辦이라 하야 其餘沈貴豊 林蒙基 趙辰玉 姜道連 段은 俱以 甲午餘徒로 內懷不化之意하야 尙踏殊常之跡하옵고 斯人指目이 就此讒捉하옵기 兇厥이 滿이라 不可仍置하옵고 査在 元趙大集 韓用基 崔同晉 段은 多段 鉤覈이나 現無可捉之贓하옵기 不可強加罪名하옵고 其餘 第十九號報告內開匪類十名 供招 已滿報告하옵기 十名中 巨魁 金亨澤 段은 前已滿網하야 今旣現捉하옵고 餘他 未滿하옵기 趙辰玉 段을 將金魁之竄書하야 東學文書를 搜推於 渠魁處하옵고 其餘 從之 刑이 該犯 洪秉燮을 大明律名例編 隨從減等律하야 照本律하야 一等을 減하옵고 各一百 徒役 三年하야 處하옵事로 玆하야 指令事

光武二年七月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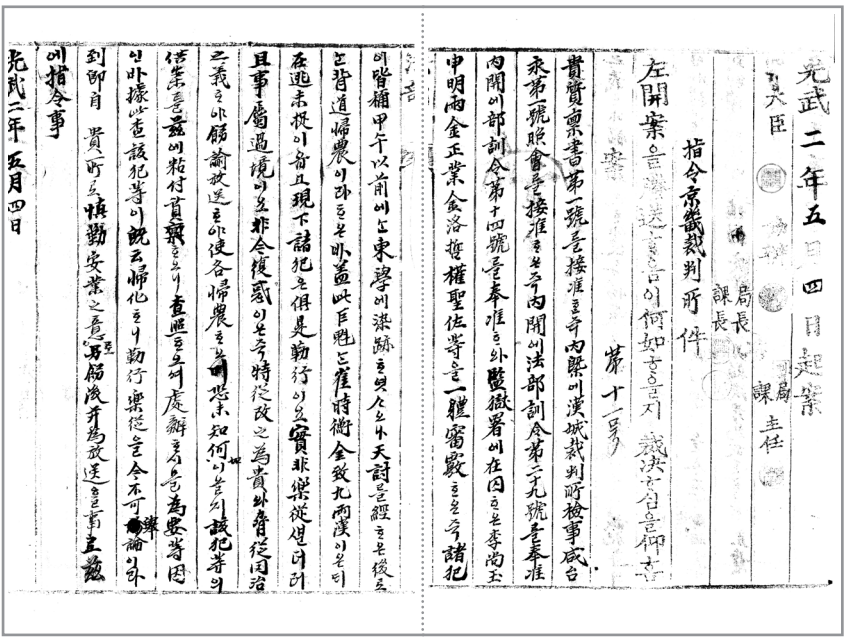
京畿裁判所判事 金永惠 階下

外罪雖可痛이나 首犯 金俊燮이 旣經重勘하야 不啻從之 刑이라 該犯 洪秉燮을 大明律名例編 隨從減等律하야 照本律하야 一等을 減하옵고 各一百 徒役 三年하야 處하옵事로 玆하야 指令事

光武二年七月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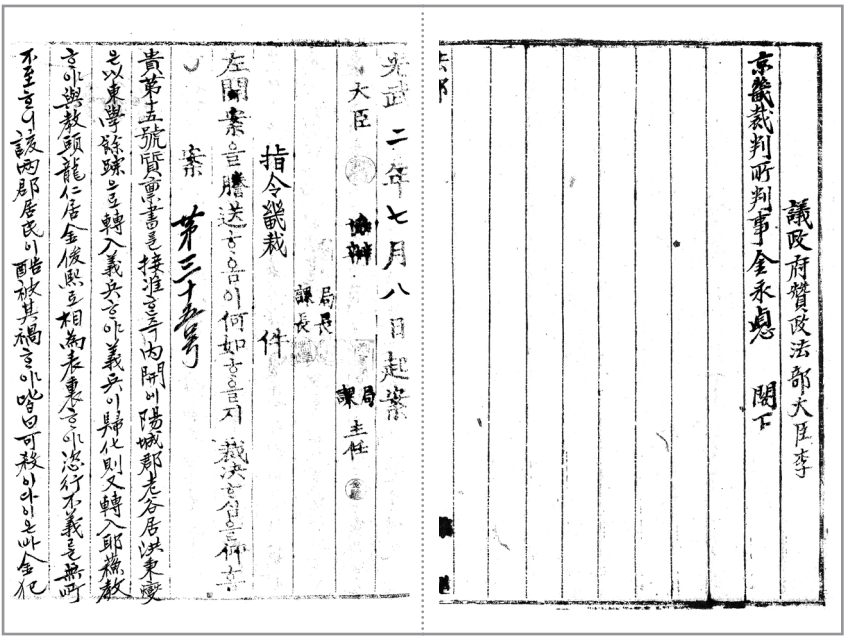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趙

京畿裁判所判事 金永惠 階下



光武二年五月四日起案
大臣 局長 課長 課主任
指令京畿裁判所件
左開案音謄送ᄒᆞ오니 何如ᄒᆞᆸ지 裁決ᄒᆞ옵신 後ᄒᆞ
案 第十一號
貴贊勅書第一號ᄂᆞᆫ 接准ᄒᆞᆫ 後內閣에 漢城裁判所檢事 咸台永第一號照會ᄒᆞᆫ 接准ᄒᆞᆫ 後內閣에 法部訓令第二九號ᄂᆞᆫ 奉准ᄒᆞᆫ 後內閣에 部訓令第十四號ᄂᆞᆫ 奉准ᄒᆞᆫ 外 竪徽署에 在囚ᄒᆞᆫ 李萬玉 申明兩 金正業 金洛瑾 權聖佐等ᄋᆞᆯ 一體審覈ᄒᆞᆫ 後ᄒᆞ 諸犯
에 皆補甲午以前에 在東學에 染跡ᄒᆞ얏ᄉᆞᆸ고 且天討ᄂᆞᆫ 經ᄒᆞᆫ 後로 正背道歸農이 ᄒᆞᆫ 外 蓋此巨魁ᄂᆞᆫ 雇時潛金致九兩漢이 ᄂᆞᆫ 已在逃未捉이 ᄆᆞᆫ 且現下諸犯ᄋᆞᆯ 俱是勅行이 ᄋᆞᆫ 實非樂從ᄒᆞᆫ 情理ㅣ 且事ᄂᆞᆫ 過境이 ᄋᆞᆫ 非今復咎이 ᄂᆞᆫ 特從改之ᄒᆞᆫ 為貴外脅從同治之義ᄒᆞ야 飭諭放送ᄒᆞ야 使各歸農ᄒᆞ게 ᄒᆞᆸ심 如何이 ᄂᆞᆫ 以該犯等의 供案ᄋᆞᆯ 錄에 粘付貴敎ᄒᆞ오며 查照ᄒᆞᆫ 後에 處辭ᄒᆞ옵기 為要等因 ᄒᆞ야 據此ᄒᆞᆫ 該犯等이 旣云歸化ᄒᆞ야 勅行 樂從ᄒᆞᆫ 今不可 ᄒᆞᆫ 論이라 ᄒᆞ야 到部ᄒᆞ 貴部ᄒᆞᆫ 旨ᄒᆞ야 慎勤安業之意로 飭諭放送ᄒᆞᆫ 事로 立題
에 指令事
光武二年五月四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京畿裁判所判事金永惠 閣下



光武二年七月八日起案
大臣 局長 課主任
指令裁判 件
左開案音謄送ᄒᆞ오니 何如ᄒᆞᆸ지 裁決ᄒᆞ옵신 後ᄒᆞ
案 第三十五號
貴第十五號質稟書ᄂᆞᆫ 接准ᄒᆞᆫ 後內開에 陽城郡老谷居洪東燮ᄂᆞᆫ 以東學餘孽로 轉入義兵ᄒᆞᆫ 外 義兵이 歸化則又轉入郎擾敎ᄒᆞᆫ 云에 與敎頭龍仁居金俊奭로 相約在東ᄒᆞᆫ 外 恣行不義ᄒᆞᆫ 無所不至ᄒᆞᆫ 云이 該兩郡居民이 皆被其禍ᄒᆞᆫ 外 皆曰可殺이라 ᄒᆞᆫ 云이 此金犯

光武二年三月十九日 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主任

訓令仁港件

左開案音謄送호옵이何如호옵지 裁決호옵仰喜

案 第十五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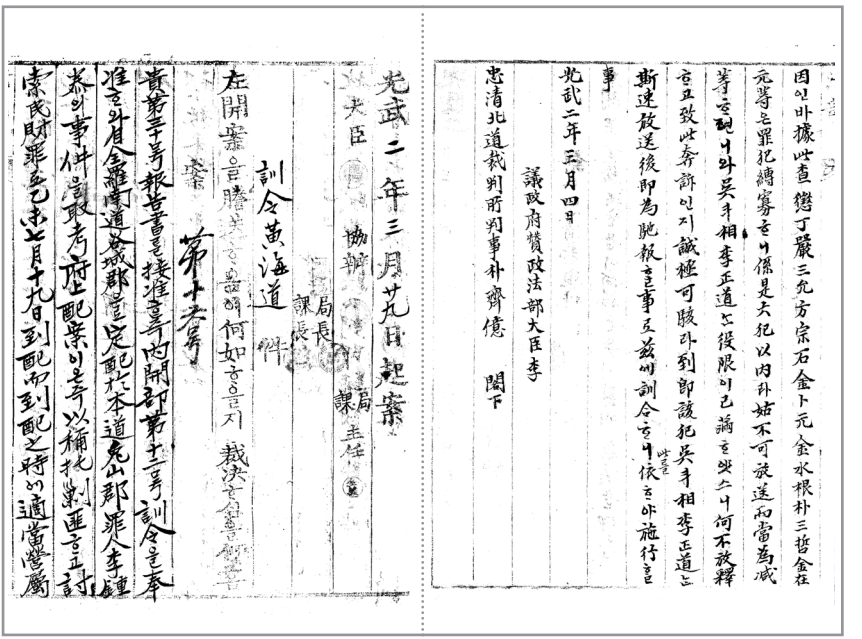
貴報告書第三號音接准호온바內閔이昨日午時量에本港警務官劉漢翼에報告書音接閱호온즉內閔本日午后一鍾에當直檀任巡檢秦貞鎭任在鎬監獄官守巡檢吳基燁等世永部音內에在因懲役罪人曺德根梁鳳九黃順用金伯在外日人刺殺未辦罪人金昌洙가脫獄越墻호옵外并為逃去이라이音기即共巡檢으로滬底坊四外搜查호옵외現無踪跡이옵기로分派巡檢於水陸要外期圖詗捉케호옵內當直檀任巡檢秦貞鎭任在鎬監獄官守巡檢吳基燁等世永外監獄押守金春化等二名을捉因호옵은즉期詗捉이오나姑無現跡이音기로勝悚及호外茲에報告호오니照亮호시音望喜等因이온바監獄署에守因호온罪人音을數失補가聞甚駭訝에且該各等이關係大矣이音已就中金昌洙段은即快에重大이名은事關外國호옵新尙未就獲호옵仕叫라該警務官劉漢翼에另加嚴飭호外一併查

拿케호라호옵소서 當該監獄署長當直巡檢等이宜有警責으로判事萬難憑斷호外茲에報告호오니照亮호옵內載處看호옵內音望喜等因이外據此查該犯等의越獄逃躲가開甚可駭라在逃諸漢을期於刻捉이되 百日限內에若未斯得이면 貴判事外該警務官과監獄署長은各科論警호리니十分悚念호야無或疎忽이면有守巡檢吳基燁等世永之職在監獄호야有此失錯이오監獄押守金春化之身為獄守호야不覺失囚호옵소서甚在擧行에萬一痛販라該犯等은二名獄囚호온當直巡檢秦貞鎭任在鎬는別無監守之責호오니嚴徵放送호音意로茲에訓令호오니此音依호야施行事

光武二年三月二十九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仁川港裁判所判事俸相喜 座下



光武二年三月廿九日起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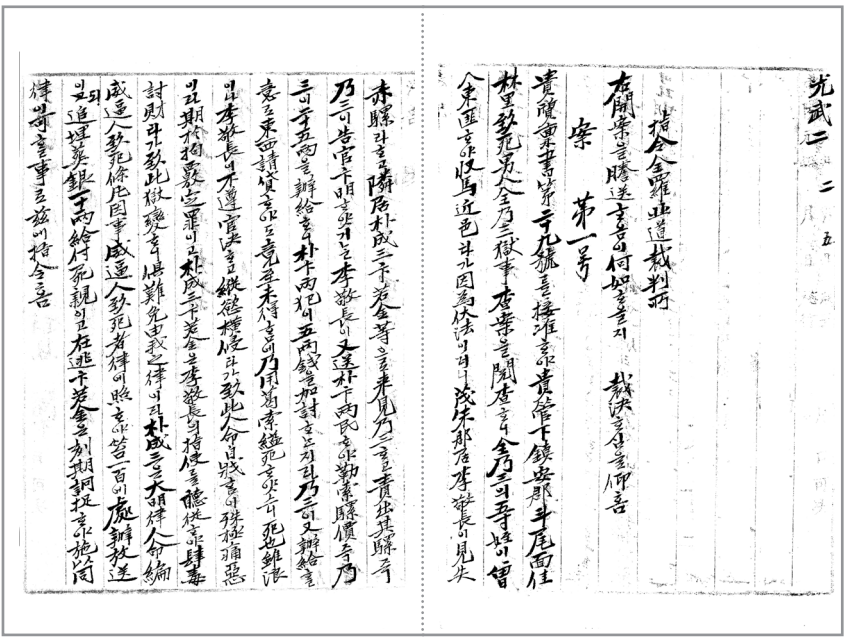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訓令黃海道 件

左開案音謄送令音到何如令音乙 裁決令音仰

第十二案

貴第三号報告書를 接准令音內開第十二号訓令을 奉准令音外旨 金鑛南道 載寧郡 定配犯本道 鬼山郡 罪人 李鍾泰의事件을 取考令音 定配案이 無令音以 補充令音乙 請令音 案



光武二年二月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

金羅北道裁判所判事尹爲變閣下

副令忠淸北道件

左開案을謄送호옵이何如호옵실지玆에裁決을仰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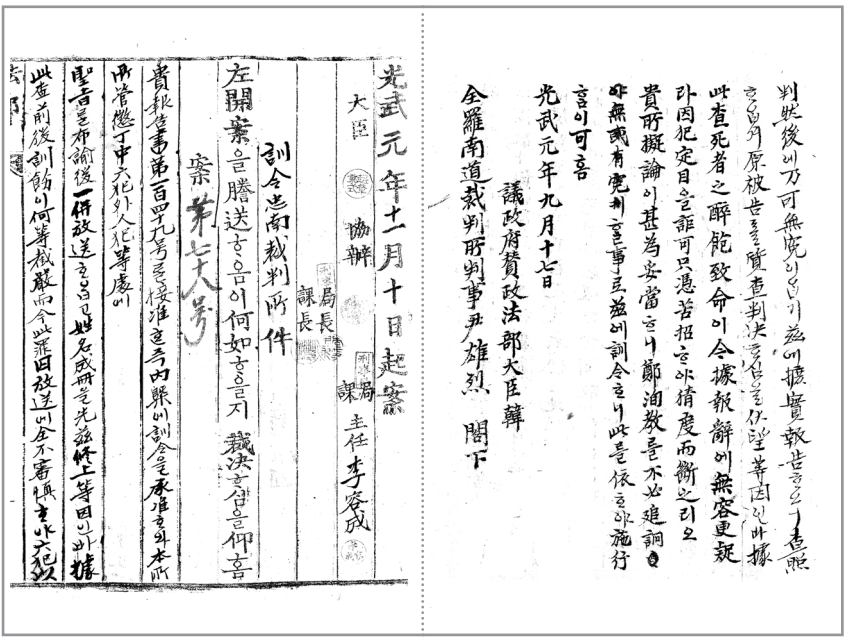
案 第十號

貴報告書第十六號을接准호온內開에第三號副令을承准호

外懲丁의姓名下에罪名及役限을更詳左開報告라호오니連接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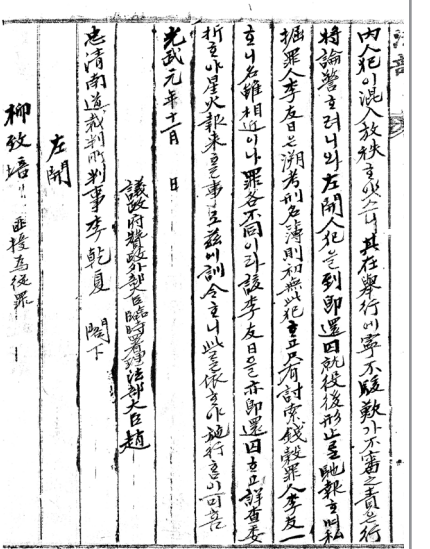
義那李正永의訴狀을內開에兄正道가以曖昧事로乙未十月

分에處於二年懲役호外役限則去年九月이오니未得蒙放等



判決後에 乃可無冤이라 玆에 據實敷告하오니 査照하옵시고 原被告를 覆査判決하옵심을 伏望함 因此에 此據
此査死者之醉飽致命이 今據報辭에 無容更疑
라 因犯定目을 誰可只遇苦招하오며 猶慶而斷之리오
貴府擬論이 甚為妥當하니 卿洵敎를 不必追詞하
고 無或有冤枉之事하도록 玆에 訓令하니 此를 依하야 施行
하는 事
光武元年九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
全羅南道裁判所判事 尹雄烈 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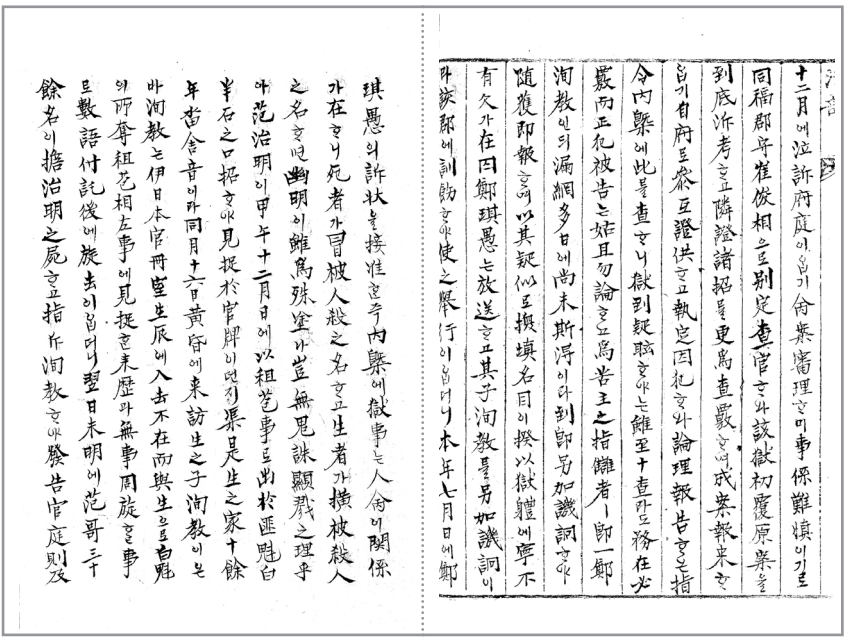
光武元年十一月十日起案
大臣 協辦 局課 主任 李容成
局長
課長
訓令忠南裁判所件
左開案을 謄送하옴이 何如하옵지 裁決하옵심을 仰함
案第七十六號
貴報告書第百四十九號를 依准하온 內에 訓令을 承准하와 本所
所管懲丁中 六犯外 犯等處에
配하옵고 布諭後 一併放送하옵되 姓名成冊을 先玆呈上等因으로 此據
此査前後訓飭이 何等嚴厲하옵심 此罪 因放送이온 全不審愼한 本所六犯



內犯이 混入放釋하옵시니 其在舉行이 寧不嚴歟아 不審之責은 行
特論警하리니와 左開犯을 到卽還囚하여 從後刑止하는 事로 訓飭하심
捆縛犯人李春之潮가 刑名淸則 不無死罪오나 討索錢穀罪 全李友一
하니 名雖相近이나 罪各不同이라 該李友日은 亦卽還囚하고 詳查要
折하야 星火報來하도록 事로 玆에 訓令하니 此를 依하야 施行하는 事
光武元年十月 日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法部大臣 趙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閣下
左開
柳致培 年 五十 五 配流為徒罪 一

徐石汝 東學罪
金時默 東學罪
鄭在河 配流罪
金善在 打破人家造從准窃盜罪
安聖秀 討索錢穀為徒罪
鄭完甫 暗賣公廨罪
李友日 更查次

立又爲裁判於羅州府ᄒᆞ야范治明之子珉植과兩檢刑
吏로三造對質後前後情節을更爲查覈ᄒᆞ야報
告法部ᄒᆞ立有部로又爲訓令ᄒᆞ야羅州府에移光州部로
로飭訓更查ᄒᆞ야其時關證의게捧直招ᄒᆞ야仍爲修報
이ᄂᆞᆯ러니未承斷案ᄒᆞ야丙申九月日에又爲喝覓于觀察
府ᄒᆞ야同福郡守로定查官ᄒᆞ야其時應聞各人處에一一
查問ᄒᆞ온즉范哥食主人全哲文의招內當夜死已
久之范屍를何可擔來吾家之卽爲退送이라ᄒᆞ온ᄆᆞᆫ
范治明之子珉謂四魋遺言之說이於理不當이옵고醫
員千戒在招內에十一月十六日夜에范德仲이謂有行中挾
滯者ᄒᆞᆫᄃᆡ急用丸藥이라ᄒᆞ야以藥合九出給云者范治
明之入於匪魁之口招ᄒᆞ야見捉入邑에懷恸氣塞ᄒᆞ야
知이온즉前後查報中被打之証과明若觀火ᄒᆞ야決識仲
覓ᄒᆞ온ᄆᆞᆫ로千萬注視이옵더니法部에서下來ᄒᆞᆫ指令ᄒᆞ온
伏見ᄒᆞ온즉正犯被告勿論ᄒᆞ고鄭琪愚를放送ᄒᆞ고洞教를議
罰ᄒᆞ야隨後卽報之處가이ᄀᆞᆺ치洞教가非檢前逃躲라勒
捉成案ᄒᆞ야因犯之目을誤錄ᄒᆞ온ᄆᆞᆫ로認得ᄒᆞ고六朔纏縛이라야
以此舍覓逃脫ᄒᆞ온이라洞教의伊日冊室辰宴에終日參應
ᄒᆞ야至夜不還ᄒᆞ고三班官廳이俱爲見知이온즉今渠矣正
犯之目을發明脫捉ᄒᆞ야以畢境被告之目이라ᄒᆞ고其時范
哥ᄒᆞᆫ接語ᄒᆞ온其父의게歸之ᄒᆞ옵시니父子之間에罪
名을相加ᄒᆞ온音을境遇에渠被愚名이라ᄒᆞ고至覓切痛이라야
更加審理ᄒᆞ야報告上部ᄒᆞ야愚名을脫捉케ᄒᆞ야지라ᄒᆞᆫ等
因이온라今此鄭洞教之押遣范獄을非但其父鄭琪愚
가泣血呼訴之至死不休라沂考檢案에獄是疑獄而有
一辟疑之端ᄒᆞ기로此以覓ᄒᆞ온ᄆᆞᆫ因犯之不至隱諱이燎然可
判이라鄭洞教當日冊室參宴에至夜不還ᄒᆞᆫ人과共證
이옵范治明之醉倒庖川에觸冷後貞來之來巡之趙永
伸之證供的確ᄒᆞ온즉死已久之范屍를還爲退送ᄒᆞᆫ食
主人全哲文之招가丁寧則范之子珉植招內에其父回
魋遺言之說이於理不當이옵고有誰立證가若主之指
作洞教가雖曰緊切이나乃係獄體에豈可以若主之說로
偏聽斷獄이옵기로其在死生無憾之地에欽以虐刑을ᄒᆞ온
以尉當이옵라范治明之被打於洞教가既無證隣이옵기
范之子가托以其父之遺言ᄒᆞ온즉指作洞教ᄒᆞᆫ이歸之正犯이
옵라斷案之後不得伸冤ᄒᆞ온ᄆᆞᆫ遽聚逃躲則其所訴捉ᄒᆞ온
在法當解이옵以其父所訴ᄒᆞᆫ바를見之則父子之間에有難
以罪名相加ᄒᆞ야事勢不得已逃躲ᄒᆞ옵기로參互倫義에情或
可原이라獄到疑眩에用以儆生之典이客有可議而未克
審愼ᄒᆞ야致有冤訴ᄒᆞ옵기로此不得不有部로明查裁



十二月에 泣訴府庭이ᄂᆞᆯ기舍業當理ᄒᆞ미事係難愼이기로
同福郡守崔俊相이ᄃᆞᆫ別定查官ᄒᆞ야該獄初覆原案을
到底詳考ᄒᆞᆫ隣證諸招를更爲查覈ᄒᆞ고成案報來ᄒᆞ
ᄂᆞᆯ이自府ᄃᆞᆫ衆口證供ᄒᆞᆫ執定因犯ᄒᆞ야論理報告ᄒᆞᆫ指
令內槩에此를查ᄒᆞ니獄到疑駁ᄒᆞ야ᄂᆞᆫ雖至十查라도務在必
覈而正犯被告ᄂᆞᆫ姑且勿論ᄒᆞᆫ烏告主之指敎者ㅣ卽一鄭
洵敎인ᄃᆡ漏網多日에尙未斯得이라到卽另加譏詞ᄒᆞ야
隨獲卽報ᄒᆞ고以其疑似ᄃᆞᆫ揑填名目이捺以獄體에寧不
有欠가在囚鄭琪愚ᄂᆞᆫ放送ᄒᆞᆫ其子洵敎를另加譏詞이
라狹隘에訓飭ᄒᆞ야使之隨行이ᄂᆞᆯ니本年七月日에鄭

琪愚의訴狀을接准ᄒᆞᆫ후內槩에獄事ᄂᆞᆫ人命이關係
가在ᄒᆞ니死者가冒被人殺之名ᄒᆞᆫ生者가橫被殺人
之名ᄒᆞᆫ면幽明이雖爲殊塗나豈無鬼謀顯戮之理乎
아范治明이甲午十二月日에以租苎事로出於匪魁白
半石之口招ᄒᆞ야見捉於官牌이면ᄉᆡ渠是生之家十餘
年舊舍音이라同月十六日黃昏에來訪生之子洵敎이ᄂᆞᆫ
바洵敎ᄂᆞᆫ伊日本官冊室生辰에入去不在而與生으로自鬼
와所奪租苎相左事에見捉ᄒᆞᆫ來歷과無事周旋ᄒᆞᆫ事
로數語付託後에旋去이ᄂᆞᆯ니翌日未明에范哥三十
餘名이搶治明之家ᄒᆞᆫ指作洵敎ᄒᆞ야發告官庭則及

其檢驗에屍無傷痕ᄂᆞᆫ衆目所睹로ᄃᆞᆫ天日共證이ᄂᆞᆫ之人檢
官이分付刑吏曰如此浸漬之事를何可成案乎아一報
可斷云ᄒᆞᆫ者一場耳目이所共聞見이ᄂᆞᆯ니且以隣證諸招
로觀之라도范治明이黃昏에來訪生之家ᄒᆞ야不見洵
敎ᄒᆞᆫ與生酬語旋去之狀ᄂᆞᆫ證日이自在ᄒᆞᆫ바治明이
當夜에醉倒於西門外川邊ᄒᆞ야ᄂᆞᆯ光城軍朱巡之趙永
伸이歷路的見ᄒᆞᆫ후ᄃᆞᆫ其子范玄植ᄒᆞ야負入村居에救
之未甦ᄂᆞᆫ丁寧納供이ᄂᆞᆫ즉被打之誣가歸之落空이ᄂᆞᆫ
范之死가不由鄭ᄂᆞᆫ自可斷矣이ᄂᆞᆫ來稍에切隣金判
卜과李春化를施刑勒招ᄒᆞ야論以被打ᄒᆞᆫ斷以正犯

ᄒᆞ야忽地飜案ᄒᆞ야使此千萬矇昧之人으로橫被惡名
ᄒᆞ니金石ᄂᆞᆫ可磨라도此名ᄂᆞᆫ難磷이ᄂᆞᆫ天神이共知어ᄂᆞᆫ
此冤를何伸가追後覆檢이一如初案ᄒᆞ야以若重案
으로爲其不共之案이라如此窮極之冤를六次雪冤于
全州監營에仍未得雪查伸冤ᄒᆞᆫ又爲奇於法部ᄒᆞ야
承題到付次下來則生之子洵敎가六朔縲絏이라未脫
惡名ᄒᆞᆫ고迯躲其身이ᄂᆞᆫ바生與治明으로ᄃᆞᆫ旣有擾語ᄒᆞ니以
此罪로至於范獄則此或無冤이려니와不見范哥之洵敎
가被此難雪之惡名ᄒᆞ야ᄂᆞᆫ范兒라도有罪ᄒᆞᆫ鄭兒라도抱憾
이라以法部題辭로卽至于全州府ᄒᆞ야當查於光州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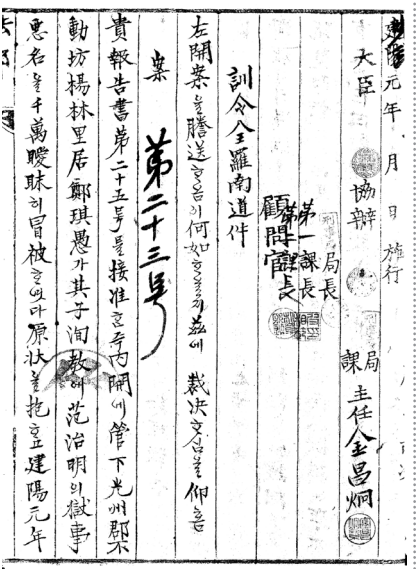
術條俊陳邪神書符呪水痲感人民為首者律之各
例編二罪俱發以重論條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律
例照常統計處杖可也叫被告白完亨之同律雜
犯編不應為條凡不應為而為之事理重者律例照
常外笞八十叫處杖笞五被告呂基銓金雲培金信元
等之同律同編同條凡不應得為而為之者律例照常
外各加笞四十叫處杖笞五可也叫被告等所犯俱係
是六犯外以之亏奉 赦典各減一等笞五可也叫五
被告僧法天叫被告洪仁聖之別無罪犯以之旀斷
放免可也叫告發人柳璣之何以處辦之事別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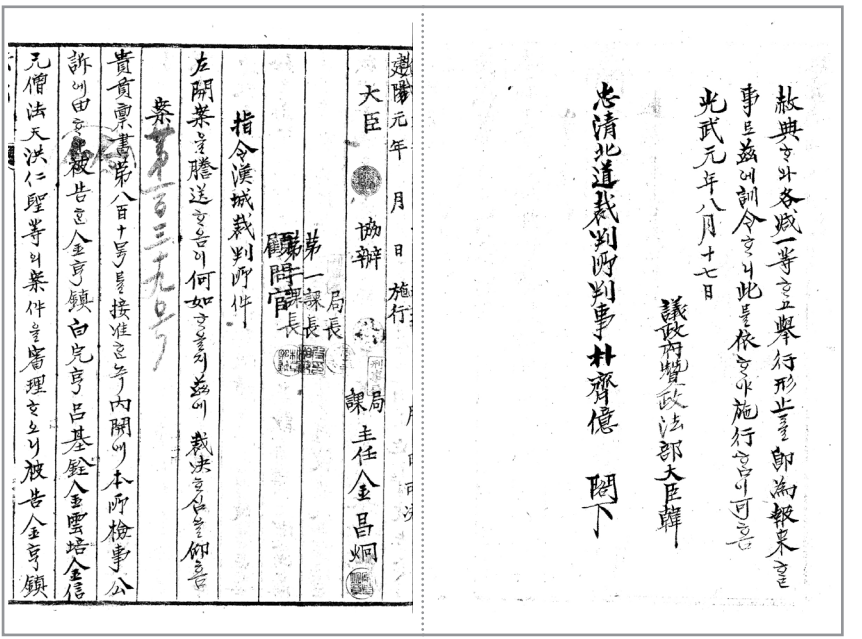
質稟之叫一切書類是粘呈之叫查照之外指令
之侶之望喜等因叫叫據此查金亨鎮之惡魔感
衆叫白完亨之吞吐賑穢叫呂基銓金雲培金信元
之酷信邪術等情節節分明於會查叫惡跡無餘之叫
究其所犯叫俱極痛駭叫 貴所議擬叫甚為妥合
之叫并依原擬律施行之叫本年八月十六日丸未決囚待
判決一體亦減一等之叫凡
聖旨是布諭後各減一等之外金亨鎮之笞一百懲役終
身叫處之五白完亨之笞七十叫處辦放送之五呂基銓叫
金雲培叫金信元之各笞三十叫處次放送五僧法天叫洪仁

聖恭情究跡叫別無可罪之端之叫并與告發人柳璣
三一體放釋後舉行形止是 即為馳來是事是旀叫
指令喜
光武元年九月 十 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漢城裁判所判事徐相世 座下

再一切書類是繳還喜


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局課 主任金昌炯
局長
第一課長
顧問官
訓令全羅南道件
左開案是謄送之旀叫何如之之之為旀叫 裁決之旨是仰之喜
案 第二十三号
貴報告書第二十五号是接准之亨內開叫管下光州郡來
動坊楊林里居鄭琪愚叫其子淘教叫范治明叫徽事
惠名是千萬曖昧叫冒被之叫叫原狀是抱立建陽元年



敕典ᄒᆞ야 各戒一等ᄒᆞᆫ立擧行形止ᄅᆞᆯ 卽爲報來ᄒᆞᆫ事ᄅᆞᆯ 玆에 訓令ᄒᆞ노니 此ᄅᆞᆯ 依ᄒᆞ야 施行ᄒᆞ심이 可ᄒᆞᆫ지라

光武元年八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

忠淸北道裁判所判事 朴齊億 閣下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局

課主任 金昌炯

第一課長 局長

課員 課長

指令漢城裁判所件

左開案ᄅᆞᆯ 謄送ᄒᆞᄂᆞᆫ니 何如ᄒᆞᆫ지 玆에 裁決ᄒᆞ심을 仰ᄒᆞᄂᆞᆫ 案

貴廳書第八百十号ᄅᆞᆯ 接准ᄒᆞᆫ즉 內開에 本所檢事 公訴에 由ᄒᆞ야 被告ᄅᆞᆯ 金亨鎭 白完亨 吕基銓 金雲培 金信元 僧法天 洪仁聖等의 案件ᄋᆞᆯ 審理ᄒᆞᆫ즉 被告 金亨鎭ᄋᆞᆫ 爲其來嗣ᄒᆞ야 嘗於十八年前에 禱于名山ᄒᆞ야 生淳一男ᄒᆞᆫ立 酷信神道ᄒᆞ야 燒香行禱ᄅᆞᆯ 式至于今ᄒᆞ야 丙申二月以後로 專性於山魔ᄒᆞᆫ立 妄言以惑衆ᄒᆞ야 罪有攸當ᄒᆞᆫ지라 前史之說에 立武造符書ᄒᆞ야 楠度病厄ᄒᆞᆫ立 憤與於人이라ᄒᆞᄂᆞᆫ지라 被告 白完亨ᄋᆞᆫ 入金亨鎭의 前後行爲ᄅᆞᆯ 有似略知ᄒᆞᄋᆞᆫ즉 中道改吉ᄒᆞ야 吞重吐輕ᄒᆞ야 以眩徼情ᄒᆞᄂᆞᆫ지라 被告 吕基銓ᄋᆞᆫ 爲親酬勞ᄒᆞᆫ 由로 其常情이ᄋᆞᆫ 見欺買符ᄒᆞ고 寔出愚迷이ᄂᆞᆯ 覺其狂妄ᄒᆞᆫ立 始乃絶交라ᄒᆞᄂᆞᆫ지라 被告 金雲培ᄂᆞᆫ 欲治子病ᄒᆞ야 追逐亨鎭라ᄒᆞ야 見其虛誕ᄒᆞᆫ立 擧責絶交라ᄒᆞᄂᆞᆫ지라 其所辯夢之說ᄋᆞᆫ 何其疑而且誕이며 被告 金信元之念佛庵에 居留ᄒᆞᆫ 故로 金亨鎭의 數次祈禱ᄒᆞᆫ 事ᄅᆞᆯ 得見ᄒᆞᆫ立 其爲刺史之說ᄂᆞᆫ 歸之虛誕이라ᄒᆞ며 被告僧法天라 被告洪仁聖ᄒᆞᆫ 或見其設禱ᄒᆞᆫ立 或從使喚이ᄂᆞᆯ 俱不知情이라ᄒᆞᄂᆞᆫ지라 竊查 金亨鎭段ᄂᆞᆫ 卽一接魔失性之人으로 假降山靈ᄒᆞᆫ立 狂言惑衆이 殊極痛駭ᄒᆞ며 柳璣告發之辭ᄂᆞᆫ 涉於誣輕而爲重이ᄂᆞᆯ 白完亨吞吐之情ᄂᆞᆫ 以其含糊而致疑이ᄂᆞᆯ라 金亨鎭之褻瀆神明라 假降邪神ᄒᆞᆫ 難逭當律이ᄋᆞᆯ 被告 金亨鎭ᄂᆞᆫ 大明律祭祀編褻瀆神明條 凡私家告天拜斗褻瀆神明者律라 同律同編 禁止師巫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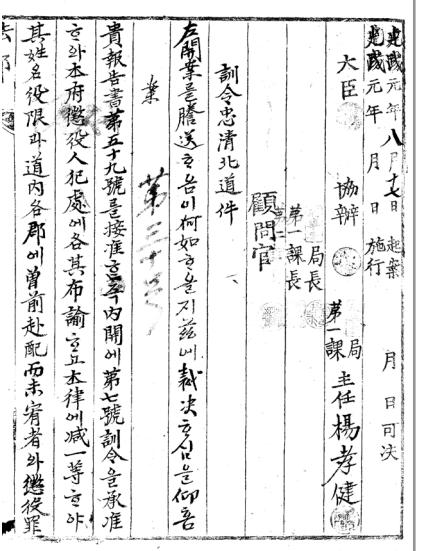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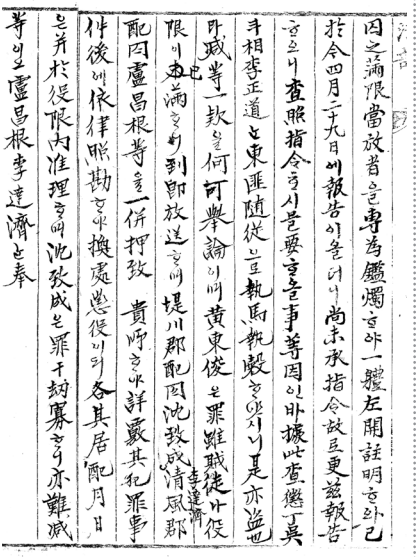
詔勅高等裁判所潭城裁判所判決犯中謀叛強盜
竊盜殺人通奸騙財外懲役人犯之當減一等者姓名罪
名及始役日字別紙開具謹
奏同日奉
肯依奏宣卿宜知此
判付內辭意奉審施行宣判左開罪人等到卽押
致宣卿
聖旨等布諭後各減一等宣立形止等報來等事宣玆
에訓令宣ᄒᆞ노니라 等宣依宣卿施行宣ᄒᆞ시옵소셔
建陽二年七月十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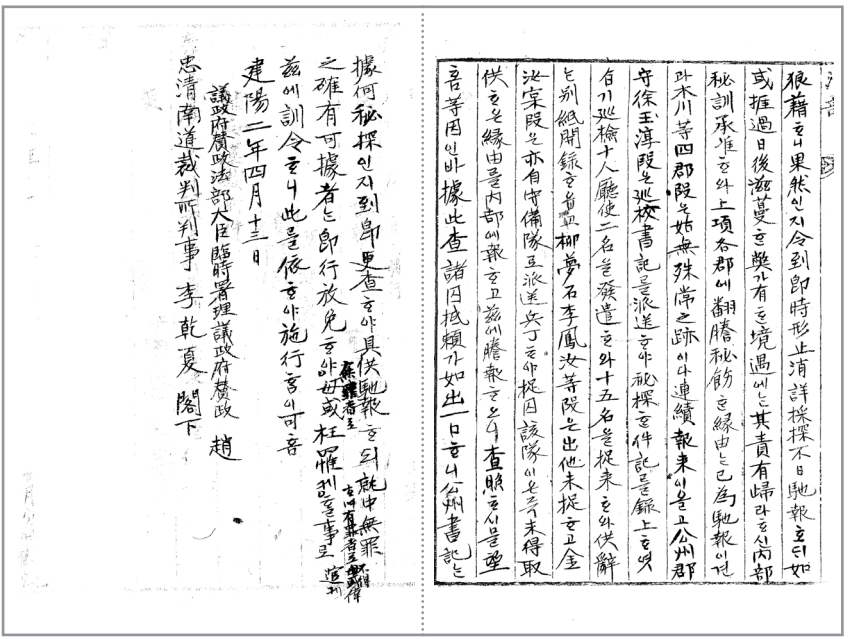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

高等裁判所判事李鳳祐 閣下

左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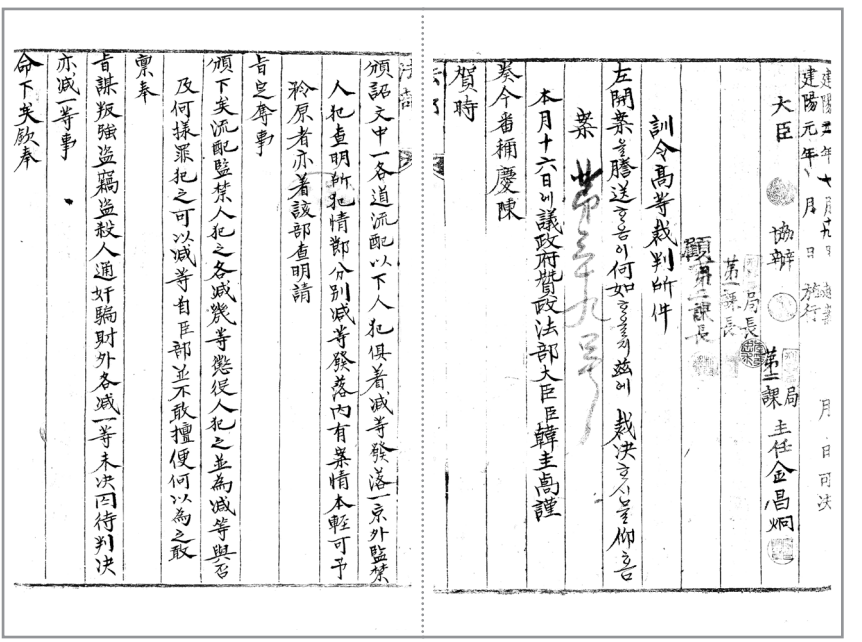
金性元
朴景雲


光武二年八月 日起案
光武二年 月 日施行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楊孝健
顧問官
副令忠淸北道伴
左開案等謄送宣ᄒᆞ시옵소셔 何如宣ᄒᆞ옵소셔 玆에 裁決宣ᄒᆞ옵소셔 仰告
案
貴報告書第五十九號等接准宣ᄒᆞ옵소셔 內開에 第七號副令等承准
宣ᄒᆞ옵소셔 本府懲役人犯處에 各其布諭宣ᄒᆞ옵소셔 本律에 減一等宣ᄒᆞ옵소셔 外
其姓名役限ᄒᆞ옵소셔 道內各郡에 曾前赴配而未窮者外懲役罪

囚之滿限當放者宣等爲屬燭宣ᄒᆞ옵소셔 一欵左開註明宣ᄒᆞ옵소셔 外已
於今四月二十九日에 報告에 宣ᄒᆞ옵소셔 尙未承指令故로 更玆報告
宣ᄒᆞ노니 査照指令宣ᄒᆞ시옵소셔 要宣宣事等因에 ᄒᆞᆫ 據此查懲宣 其
手相李正道宣ᄒᆞ옵소셔 東匪隨從宣ᄒᆞ옵소셔 執馬執轂宣ᄒᆞ옵소셔 是亦盜也
外 戒等一欵宣ᄒᆞ옵소셔 何可擧論이리오 黃東俊宣ᄒᆞ옵소셔 罪雖戰徒나 役
限이 未滿宣ᄒᆞ노니 到卽放送宣ᄒᆞ옵소셔 提川郡配囚沈致成淸風郡
配囚盧昌根等宣ᄒᆞ옵소셔 一併押致 貴師宣ᄒᆞ옵소셔 詳覈其犯罪事
件後에 依律照勘宣ᄒᆞ옵소셔 換處懲役이리오 各其居配月日
宣ᄒᆞ옵소셔 幷於役限內准理宣ᄒᆞ옵소셔 沈致成宣ᄒᆞ옵소셔 罪干朝廷宣ᄒᆞ옵소셔 亦難減
等에 盧昌根李達濟宣ᄒᆞ옵소셔 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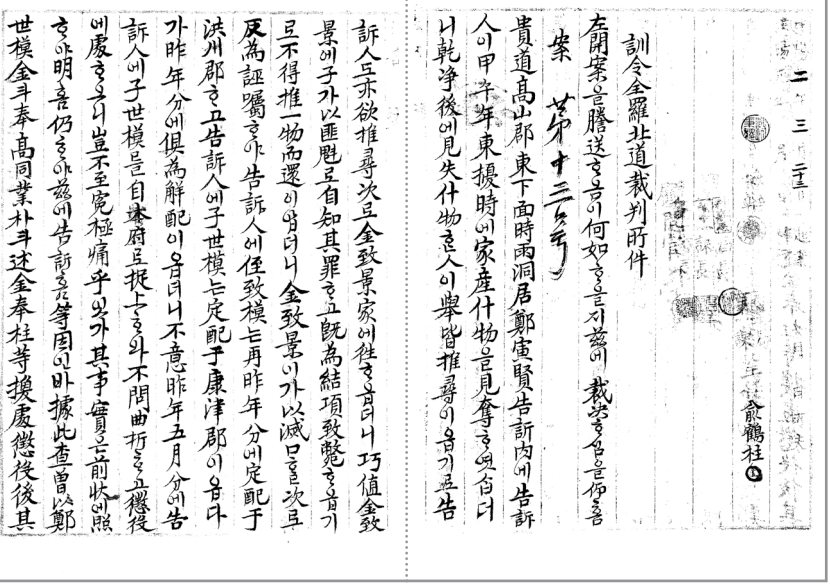
狼藉云々果然신지令到即時形止消詳探探不日馳報호되如
或捱過日後漠莫호奚有호境過에는其責有歸라호신內部
秘訓承准호外上項各郡에翻謄秘飭호緣由는已爲馳報에旣
叙木川等四郡段은姑無殊常之跡이나連續報來이옵고公州郡
守徐玉淳段은巡校書記를派送호야祕探호件記를錄上호옵
有기巡檢十人廳使二名을發遣호外十五名을捉來호外供辭
는別紙開錄호옵고捕校卒柳夢石李鳳汝等段은出他未捉호고金
汝宰段은亦有守備隊五派送兵丁호야捉囚該隊에옵기未得取
供호온緣由를內部에報호고玆에謄報호오니查照호시옵쇼
音等因이나據此查諸囚拔頭가如出一日호니公州書記는

據何秘探인지到即更查호야具供馳報호되就中無罪
之雇有可據者는卽行放免호야毋或杜罹冤枉之事로
玆에訓令호니此를依호야施行홈이可喜
建陽二年四月十三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趙
忠清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閣下



建陽元年十月 日 施行 月 日 可決
大臣 協辦 局長 第二課 主任金昌炯
訓令高等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호옵이何如호오리잇고玆에 裁決호시옵仰喜
案
本月十六日에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圭卨謹
奏令番稱慶陳
賀特

頒詔之中一各道流配以下人犯俱着減等發落一京外監禁
人犯查明新犯情節分別減等發落內有案情本輕可乎
矜原者亦着該部查明請
旨定奪事
頒下奚流配監禁人犯之各減幾等勉徑人犯之並兩減等與否
及何項罪犯之可以減等自臣部並不敢擅便何以爲之敢
稟奉
旨謀叛強盜竊盜殺人通奸騙財外各減一等未決囚待判決
亦減一等事
命下奚欽奉



訓令金羅北道裁判所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오니何如ᄒᆞᆫ지玆에 裁決ᄒᆞ심을伏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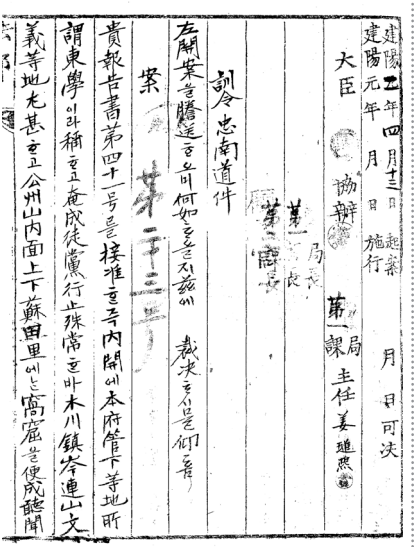
案 第十三ᄒᆞᆫ

貴道高山郡東下面時雨洞居鄭宝賢告訴內에 告訴人이甲辛年東擾時에家産什物을見奪ᄒᆞ옵고ᄃᆡ니乾淨後에見失什物ᄒᆞᆫ人이擧皆推尋이옵기로告訴人도亦欲推尋次로金致景家에往ᄒᆞ옵ᄃᆡ니巧値金致景에子가以匪魁로自知其罪를立ᄒᆞ고旣爲結項致斃ᄒᆞ옵기로不得推一物而還이옵더니金致景이가以減日로次로反爲誣囑ᄒᆞ야告訴人에게致模는再昨年分에定配于洪州郡ᄒᆞ고立告訴人에子世模는定配于康津郡이옵다가昨年分에俱爲解配이옵ᄃᆡ니不意昨年五月分에告訴人에子世模를自本府로捉上ᄒᆞ온ᄃᆡ不問曲折ᄒᆞ고立毬後에處ᄒᆞ오니豈不至寃極痛乎잇가其事實은前牧에照ᄒᆞ야明査ᄒᆞ옵ᄀᆞᆫ玆에告訴ᄒᆞᄂᆞᆫ等因으로ᄇᆞᆨ據此查實ᄒᆞ옵ᄉᆞᆸ고鄭世模金斗奉高同業朴斗述金奉柱等換處懲後後其罪狀을昭詳懸錄報來事로發訓이온在於元年三月二十四日이거ᄂᆞᆯ何至視若文具ᄒᆞ고尙此稽報잇가揆以擧行에萬ᄒᆞ駭然이라伊時觀察使ᄂᆞᆫ不可以已遞로勿論이라行將論罰ᄒᆞ올ᄃᆡ니外上項五囚罪名을到卽詳錄ᄒᆞ야火速報來ᄒᆞ야以便審錄케ᄒᆞᆯ事로玆에訓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옵기可ᄒᆞᆷ

建陽二年三月二十三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議政府贊政趙

金羅北道裁判所判事尹雄烈 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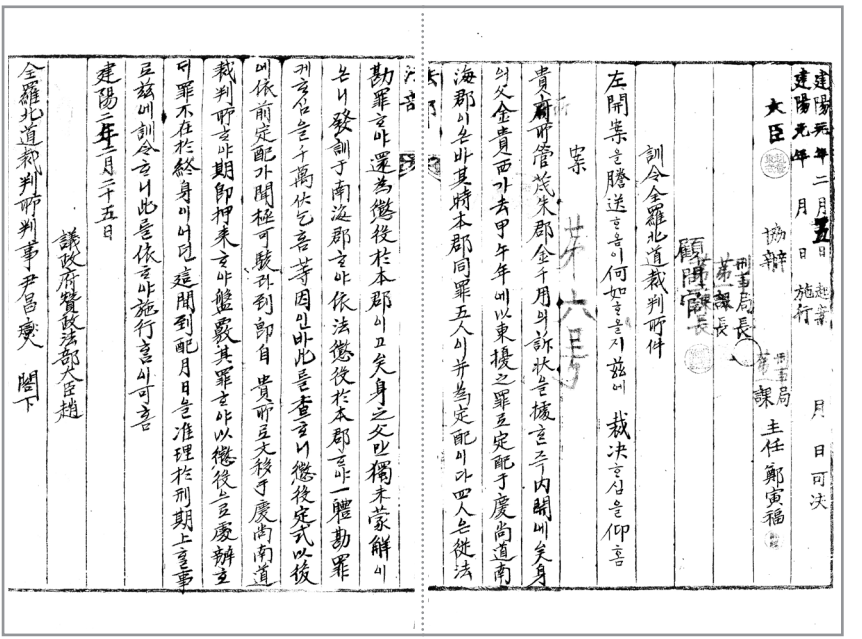


訓令忠南道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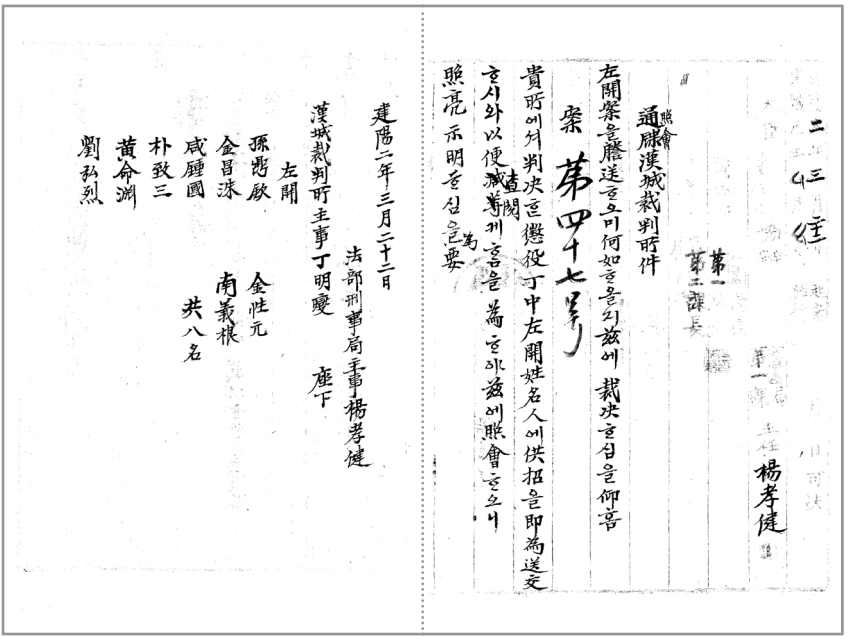
左開案을謄送ᄒᆞ오니何如ᄒᆞᆫ지玆에 裁決ᄒᆞ심을伏望

案 第二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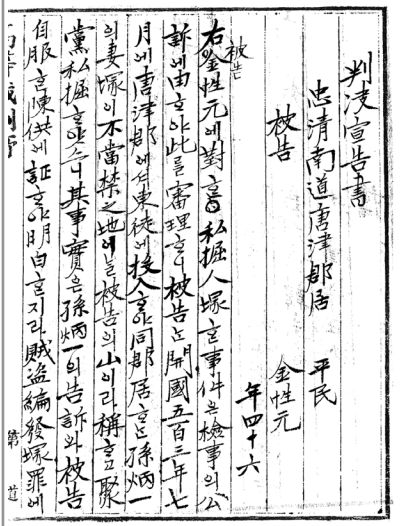
貴報告書第四十一号를接准ᄒᆞ온內開에本府管下等地所謂東學이라稱ᄒᆞ고嘯聚徒黨行止殊常ᄒᆞ옵ᄆᆞᆫ木川鎭岑連山文義等地ᄂᆞᆫ尤甚ᄒᆞ고公州山內面上下蘇田里에ᄂᆞᆫ窩窟을便成聽聞



建陽元年二月 日 施行 只 日可決
大臣 協辦 刑事局長 書記官 課主任 鄭寅福
顧問官 顧問官 顧問官 顧問官 顧問官
訓令 全羅北道裁判所件
左開案을 謄送하심이 何如하올지 茲에 裁決하심을 仰함
案 第六號
貴府所管茂朱郡 金千用의 訴狀을 據하온즉 內開에 矣身
의父 金貴西가 去甲午年에 以東擾之罪로 定配于慶尙道南
海郡이옵바 其時本郡同罪五人과 幷為定配이와 四人은 從法
勘罪하야 還為懲役於本郡이오 矣身之父만 獨未蒙解이
옵니 發訓于南海郡하야 依法懲役於本郡하야 一體勘罪
케하심을 千萬伏乞하옵기 等因인바 此를 查하니 懲役定式以後
에 依前定配가 誠極可駭라 到即自 貴部로 文移于慶尙南道
裁判所하야 期即押來하야 盤覈其罪하야 以懲役으로 處辦하
야 罪不在於終身이어니와 這間到配月日을 准理於刑期上하옵事
로 茲에 訓令하니 此를 依하야 施行하심이 可함
建陽二年二月二十五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趙
全羅北道裁判所判事 尹昌燮 閣下



建陽二年三月二十二日 施行
法部刑事局事務官 楊孝健
漢城裁判所主事 丁明燮 座下
左開
孫鼎欽 金性元
金昌洙 南義根
咸鍾國 共八名
朴致三
黃命淵
劉弘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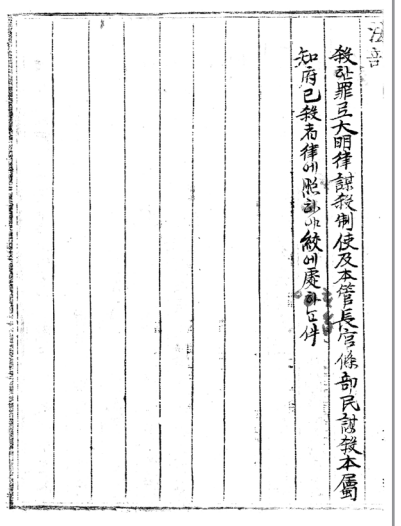


判決宣告書

忠淸南道唐津郡居 平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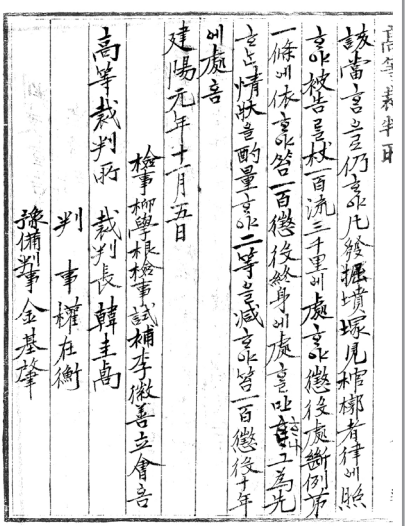
被告 金性元 年四十六

右金性元에對喜 私掘人塚喜事件에檢事의公訴에由喜야此를審理喜ᄉᆡ 被告는開國五百三年七月에唐津郡에서衆徒에 扶入喜야同郡居喜ᄂᆞᆫ 孫炳一의妻塚의 不當禁之地에ᄂᆞᆫ 被告의 山이라 構言야 聚黨私掘喜ᄆᆞᆫ 其事實은 孫炳一의 告訴와 被告自服言이 陳供에 証喜ᄆᆞᆫ 日由言지라 賊盜編錄 罪에



法言

殺人罪로大明律에 謀殺傷人及本管長官條에 凡民에 謀殺本屬知府已殺者律에 照에 絞에 處에 合件



該當言으로仍言야 先發掘墳塚見棺槨者律에 照言야 被告를 杖一百流三千里에 處言야 懲役處斷例에 一條에 依言야 笞一百懲役終身에 處言야 ᄯᅩ 贖言으로 先言야 情狀을 酌量言야 二等을 減言야 笞一百懲役十年에 處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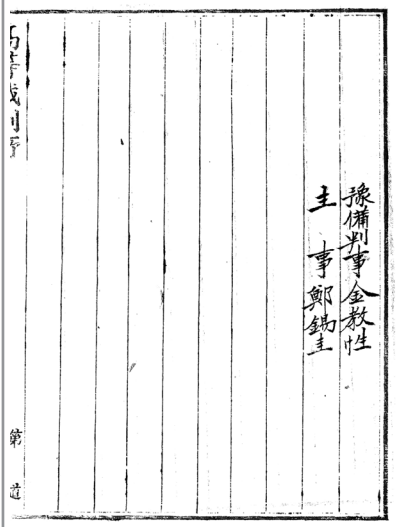
建陽元年十一月五日

檢事 柳寧根 檢事試補 李徽善 立會言

高等裁判所 裁判長 韓圭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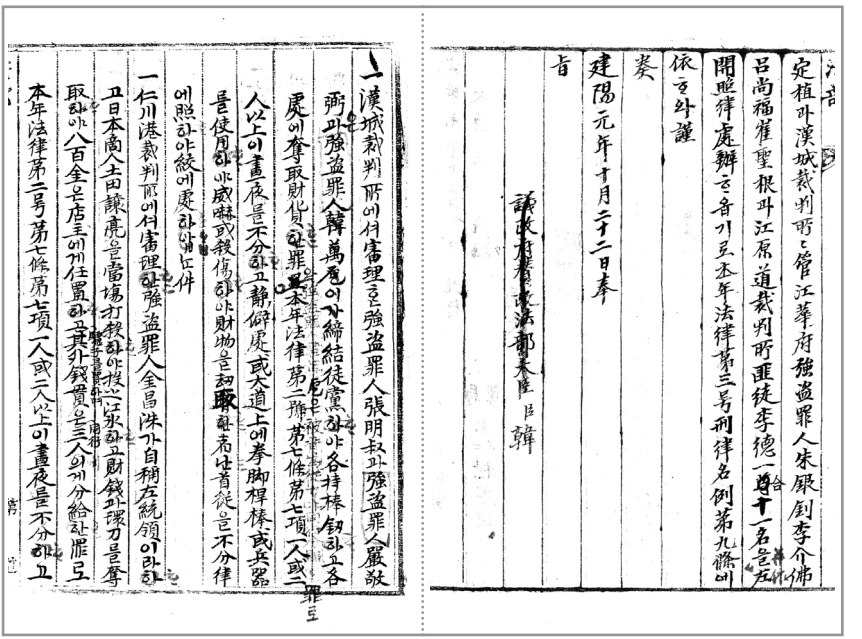
判事 權在衡

豫備判事 金基鋒



豫備判事 金敎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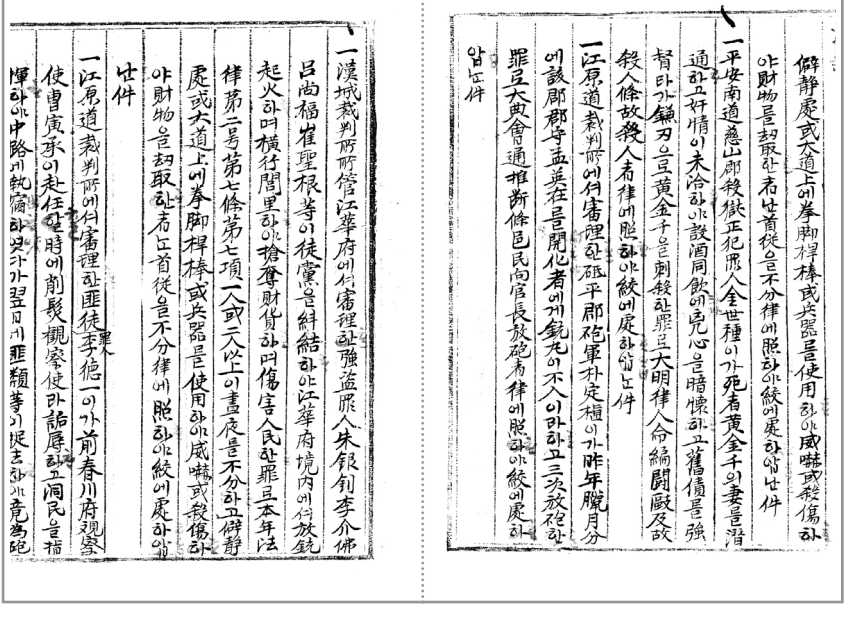
主事 鄭鈗圭



定植과漢城裁判所에서管江華府強盜罪人朱汲劍李介佛
呂尙福崔聖根과江原道裁判所에서徒李德一尊十一名을左開照律處辦호옵기로本年法律第三號刑律名例第九條에依호와謹
奏
建陽元年十月二十二日奉
旨
議政府參贊漢城判尹兼秩陸卿臣 呂 韓

一漢城裁判所에서審理호強盜罪人張明叔과強盜罪人嚴敬
弼과強盜罪人韓萬奎이가締結徒黨하야各持棒劒하고各
處에奪取財貨한罪로本年法律第二編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
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靜僻處或大道上에拳脚棍棒或兵器
를使用하야威嚇或殺傷하야財物을劫取한者난首從을不分律
에照하야絞에處할件

一仁川港裁判所에서審理한強盜罪人金昌洙가自稱左統領이라하
고日本商人吉田謙虎을當場打殺하야拔出來하고財錢과腰刀를奪
取하야八百金을店主에게任置하고其外錢貨를三人의게分給한罪로
本年法律第二号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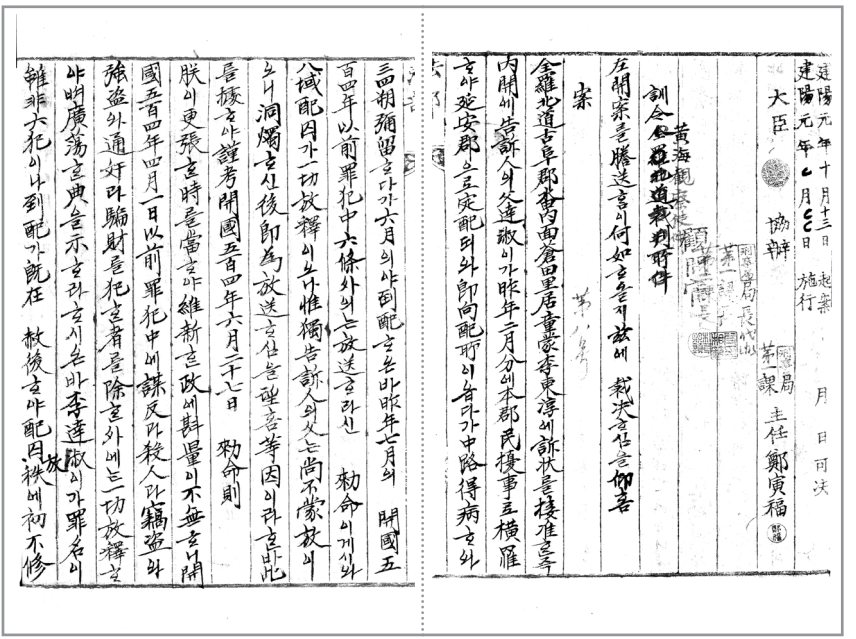
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棍棒或兵器를使用하야威嚇或殺傷하
야財物을劫取한者난首從을不分律에照하야絞에處할件

一平安南道慈山郡殺獄正犯罪人金世種이가死者黃金千의妻를潛
通하고奸情이未洽하야設酒同飮에兇心을暗懷하고猶傷을强
暫하가鎗刃을로黃金千을刺殺한罪로大明律人命編鬪毆及故
殺人條故殺人者律에照하야絞에處할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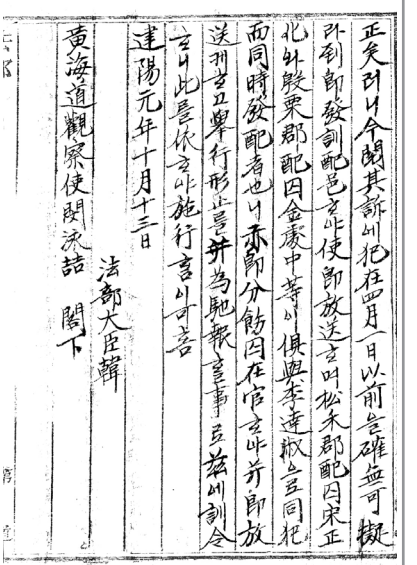
一江原道裁判所에서審理한砲平郡砲軍朴定植이가昨年臘月分
에該郡郡守孟英在를開化者에게銃丸이不入이라하고三次放砲한
罪로大典會通推斷條邑民向官長放砲者律에照하야絞에處할
件

一漢城裁判所에서管江華府에서審理한強盜罪人朱銀劍李介佛
呂尙福崔聖根等이徒黨을糾結하야江華府境內에서放銃
起火하며橫行閭里하야搶奪財貨하며傷害人民한罪로本年法
律第二号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僻靜
處或大道上에拳脚棍棒或兵器를使用하야威嚇或殺傷하
야財物을劫取한者난首從을不分律에照하야絞에處할
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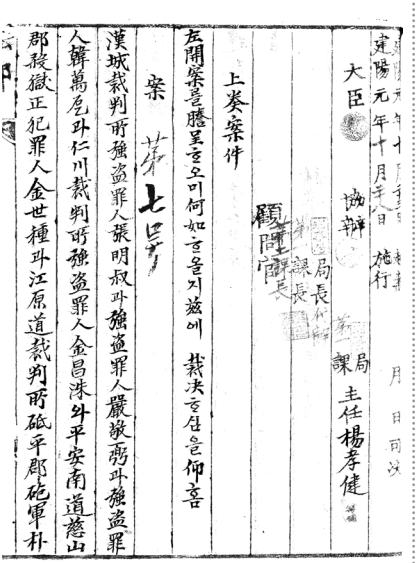
一江原道裁判所에서審理한徒李德一이가前春川府觀察
使曺寅承이赴任時에削髮覘察使하라詬辱하고洞民을指
揮하야中路에執縛하야끌고가끌고다니며毒打한罪等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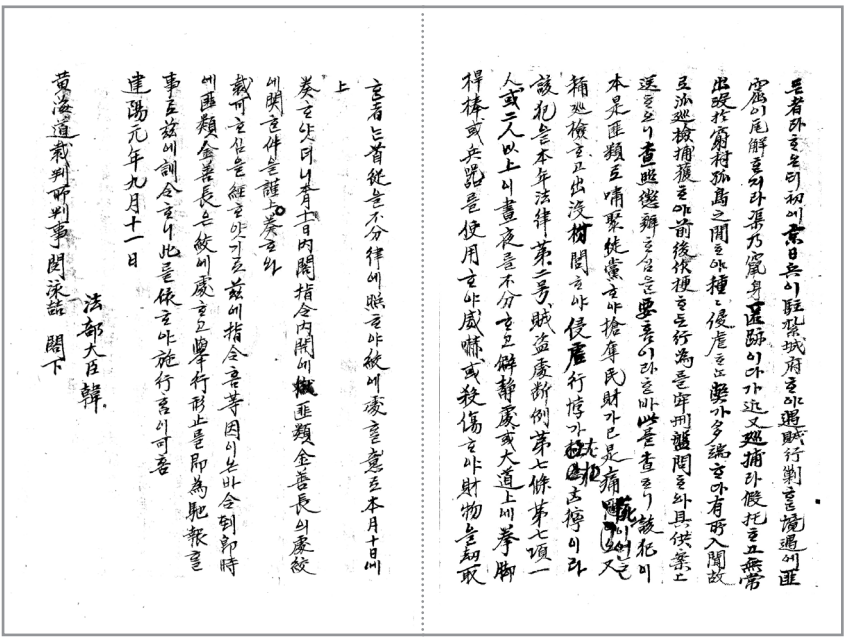
建陽元年十月十三日 起案 施行 月 日 可決
大臣 協辦 局 課 主任 鄭寅福
黃海道觀察使 判事
訓令 金羅北道古阜郡內面倉田里居 童蒙李東淳 訴狀 是 接准 호 事
內開 訴人 父 逮赦 이 라 昨年二月分 에 本郡 民擾事 로 橫罹
호 야 延安郡 으로 定配 되 야 即向配所 이 옵 더 니 中路得病 호 야
三四朔 彌留 호 다 가 六月 의 야 到配 호 옵 야 昨年七月 의 開國五
百四年 以前罪犯中六條外 의 는 放送 호 라 신 勅命 이 계 시 와
八域 配囚 가 一切放釋 이 오 나 惟獨告訴人 의 父 는 尙不蒙放 이
오 니 洞燭 호 신 後 卽爲放送 호 심 을 千萬 等因 이 라 호 옵 기
是據 호 야 謹考 開國五百四年六月二十七日 勅命則
扶 이 更張 호 時是當 호 야 維新 호 政 에 斟量 이 不無 호 니 開
國五百四年四月一日 以前罪犯中 에 謀反 과 殺人 과 竊盜 와
強盜外通好 라 騙財是犯 호 者是除 호 外 에 는 一切放釋 호
야 明廣蕩 호 典 을 示 호 라 호 시 옵 야 李達 賊 이 가 罪名 이
雖非大犯 이 나 到配 가 旣在 赦後 호 야 配囚 秋 에 初不修



正矣 라 니 今 閱其訴 에 犯在四月一日 以前 은 確無可疑
라 到卽 發 到配 邑 호 야 使卽放送 호 야 松禾郡配囚宋正
北 外 竪東郡配囚金慶中等 이 俱與李達 賊 으 同犯
而同時 發配者也 니 亦卽分飭囚在官 호 야 幷卽放
送 케 호 되 舉行形止 은 幷爲馳報 호 事 로 茲 에 訓令
호 니 此是依 호 야 施行 호 시 옵 소 서
建陽元年十月十三日
法部大臣 臣
黃海道觀察使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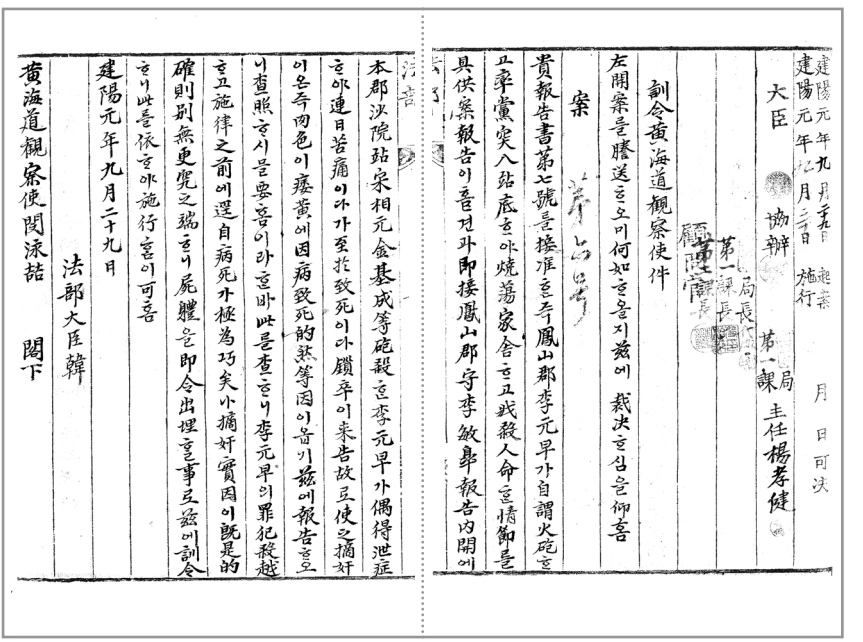
建陽元年十月十三日 起案 施行 月 日 可決
大臣 協辦 局 課 主任 楊孝健
上奏案件
左開案 을 謄呈 호 오 니 何如 호 옵 지 玆 에 裁決 호 심 을 仰 호 옵 기
案 第七號
漢城裁判所強盜罪人張明叔 과 強盜罪人嚴敬弼 과 強盜罪
人 鐸萬 은 과 仁川裁判所強盜罪人金昌洙 와 平安南道慈山
郡 監獄 囚犯罪人金世種 과 江原道裁判所 硫平郡 砲軍朴



其者卧호者ㅣ라 初에 京日兵이 駐紮城府호야 踐賊行劫홈을 擒遇에 匪
窩의 尾解홈이라 渠乃竄身호야 踪跡이 아가 迅又巡捕가 假托호고 無常
出沒於窮村孤島之間호야 捕ㅣ 侵虐호고 掠가 多端호야 有所入聞故
로 派巡檢捕獲호야 前後供稱호기를 行為ㅣ 罪刑難免이라 供案上
送호오니 查照懲辦호심을 要홈이라 호얏눈ᄃᆡ 此等 查照ᄒᆞ오니 被犯이
本是匪類로 嘯聚徒黨호야 搶奪民財가 已是痛恨이온ᄃᆡ 又
稱巡檢호고 出沒村閭호야 侵虐行悖가 尤極可惡이라
該犯은 本年法律 第二号 賊盜處斷例 第七條 第七項 一
人或二人以上이 晝夜를 不分호고 僻靜處或大道上에 拳脚
棍棒或兵器를 使用호야 威嚇或殺傷호야 財物을 劫取
호者ㄴ 首從을 不分律에 照호야 絞에 處홈이 意至本月十日에
上
奏호얏더니 奉十日內閣指令內閣에 機密類金善長의 處絞
에 關호 件을 謹上奏호오
裁可호심을 經호얏기로 玆에 指令호심 等因이 準此令到卽時
에 匪類金善長을 絞에 處호고 擧行形止를 卽爲馳報홈을
事로 玆에 訓令호ᄂᆞ 此를 依호야 施行홈이 可喜
建陽元年九月十一日

法部大臣 韓

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閣下



建陽元年九月二十九日 施行 月 日 可決

大臣 協辦 局長 第一課長

局 主任 楊孝健

訓令黃海道觀察使件

左開案을 謄送호오니 何如호심을지 玆에 裁決호심을 仰喜

案

貴報告書第七號를 接准호온ᄃᆡ 鳳山郡 李元早가 自謂火砲호
고 率黨突入砧底호야 燒蕩家舍호고 戕殺人命호얏ᄉᆞᆸ기로 是
具供案報告이옵길래 卽接鳳山郡守 李敏皐報告內開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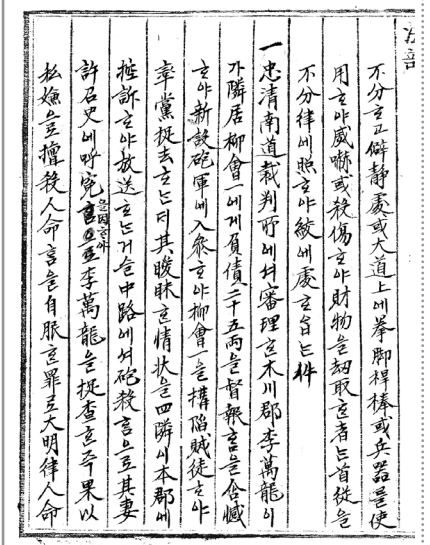
法部

本郡洑院站衆相元金基成等砲殺호온 李元早가 偶得泄症
호야 連日苦痛이라가 至於致死이라 劓卒이 來告故로 使之摘奸
이온ᄃᆡ 兩色이 瘵黃에 因病致死的款等因이옵기 玆에 報告호오
니 查照호시믈 要홈이라 호얏눈ᄃᆡ 此를 查호니 李元早의 罪犯殺越
호고 施律之前에 逕自病死가 極為巧矣나 摘奸實因이 既是的
確則 別無更究之端이니 屍體은 卽令出埋호事로 玆에 訓令
호ᄂᆞ 此를 依호야 施行홈이 可喜
建陽元年九月二十九日

法部大臣 韓

黃海道觀察使 閔泳喆 閣下

燒蕩ᄒᆞᆫ際에人命殺害가為四十餘名이오民家被燒가為三百餘戶온ᄃᆡ矣父相源이가亦為火砲李元早에砲殺이오ᄂᆞᆫ此時此漢之勢ᄂᆞᆫ不敢對敵ᄒᆞ야尙未復讎矣러니今茲捉納ᄒᆞ야即速代償等因이옵기로同元早ᄂᆞᆫ提入嚴問則供招內에宋相源과金基成ᄋᆞᆫ果為砲殺이옵기供招記ᄂᆞᆫ粘連仰報ᄒᆞ오ᄂᆡ特為勘處이아이옵고連接風山洑院站宋允和訴求則亦如이온바匪類依捉ᄒᆞᆫ令不必追究이옵되今此李元早가自謂火砲ᄒᆞ고竊黨突入站底ᄒᆞ야燒蕩家舍ᄒᆞ고殺人命ᄒᆞᆫ情節ᄂᆞᆫ渠既自服故로供招記ᄂᆞᆫ左開報告ᄒᆞ오ᄂᆡ查照懲辦ᄒᆞ시믈望ᄒᆞᆷ等因이온바此ᄂᆞᆫ查ᄒᆞᆫ李元早의行賊來歷이既係明確ᄒᆞ고ᄯᅩ寃家尋讐에ᄂᆞᆫ前為自服ᄒᆞ야ᄉᆡ莫嚴三尺ᄋᆞᆫ渠焉得逭乎該犯ᄋᆞᆫ本年法律第二号第七條第七項人或二人以上ᄋᆡ晝夜ᄂᆞᆫ不分ᄒᆞ고ᄒᆞᆫ靜處或大道上에拳脚棍棒或兵器ᄂᆞᆫ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ᆫ者財物ᄂᆞᆫ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ᄋᆞᆫ不分律에照ᄒᆞ야敎에處ᄒᆞᆫ意로ᄒᆞᆫ本月十日에上奏ᄒᆞᆫ바ᄃᆡ令ᄂᆡ本月十日內開指令內開에火砲李元早의處絞에閔ᄒᆞᆫ件ᄋᆞᆫ諺上奏ᄒᆞᆫ바裁可ᄒᆞᆫ旨ᄋᆞᆫ經ᄒᆞ야ᄉᆡ玆에指令ᄒᆞᆷ等因이ᄅᆞ此合到卽時에該犯火砲李元早ᄂᆞᆫ絞에處ᄒᆞ고ᄯᅩ擧行前止ᄂᆞᆫ卽為馳報ᄒᆞᆷ事로玆에訓令ᄒᆞᆫ이ᄂᆞᆫ卽為照會ᄒᆞᆷ等因이온바ᄂᆞᆫ查ᄒᆞᆫ李元早ᄂᆞᆫ既已正法ᄒᆞ얏ᄉᆞᆸ기로ᄂᆞᆫ卽為馳報ᄒᆞᆷ事로ᄒᆞᆫ訓令ᄒᆞᆫ이ᄂᆞᆫ卽為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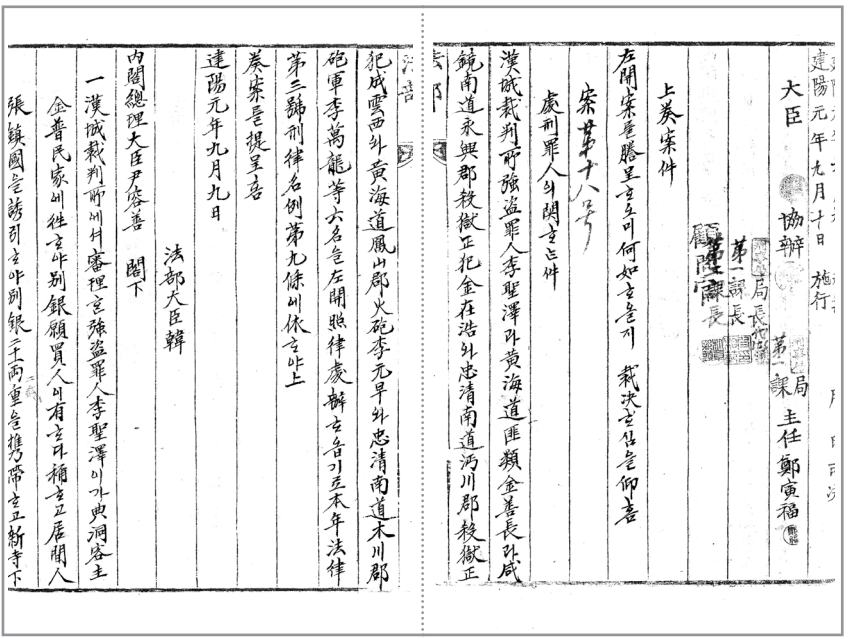
招辭不應以刁吉咋悠然成雲而加孫令山吉拳毆是
陽吉叫綁繫抹木吉咋致死刑吉罪至大明律人命編
鬪毆殺人者律叫照吉咋絞叫處吉旨ㄴ件
一黃海道裁判所叫付審理吉鳳山郡火砲李元早가
東徒幾百名吉豆沙院站叫來到吉咋衝火燒蕩吉ㄴ
際叫無論某人吉고逢靶砲殺吉이四十餘人이라可其
中宋相源吉砲殺吉고奪取銀錢吉事로其子允和의
呼訴吉因吉咋李元早吉捉致詰問則果是砲殺人命
吉고劫奪貨財吉ㄴ自服宮罪로本年法律第二號
賊盜處斷例第七條第七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ㄴ

為音
不分吉고僻靜處或大道上叫拳脚棍棒或兵器ㄴ使
用吉咋威嚇或殺傷吉咋財物吉劫取吉者ㄴ首從ㄴ
不分律叫照吉咋絞叫處吉旨ㄴ件
一忠淸南道裁判所叫付審理吉木川郡李萬龍이
가隣居柳會一叫게負債二千五兩ㄴ督報吉ㄴ舍憾
吉咋新設砲軍叫入參吉咋柳會一ㄴ搆陷賊徒吉作
率黨捉去吉ㄴ다其曉昧吉情狀吉四隣이本郡叫
梃訴吉咋放送吉ㄴ다ㄱ中路叫付砲殺吉ㄴ고其妻
許召史叫吩究吉고李萬龍ㄴ捉查吉ㄴ즉果以
私嫌ㄴ로擅殺人命吉ㄴ自服宮罪로大明律人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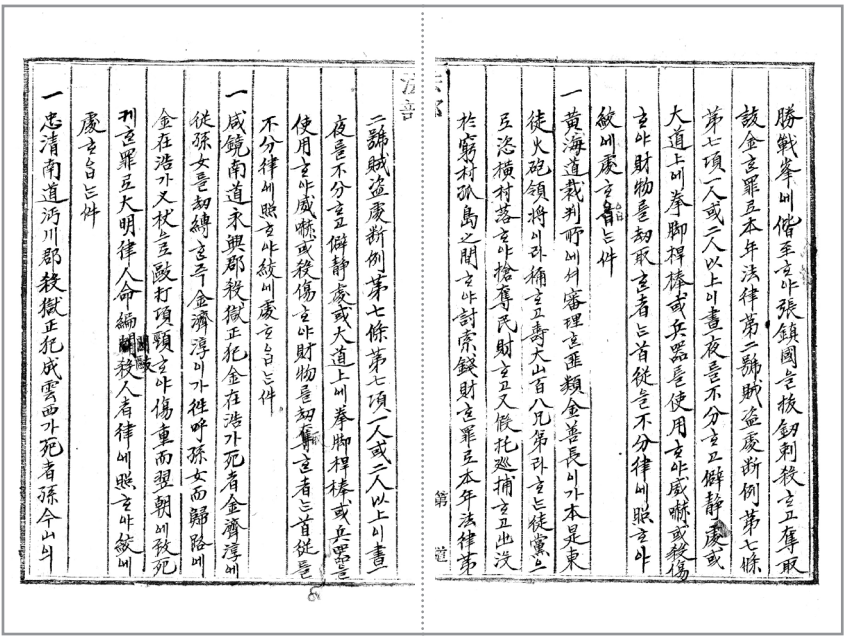
編致殺人者律叫照吉咋絞叫處吉旨ㄴ件

建陽元年 月 日 決裁 施行
大臣 協辦 局長
第一課長 局課主任 楊孝健
顧問 課長

訓令黃海道裁判所件
左開案ㄴ謄送吉오니何如吉ㄹ지玆에裁決吉심ㄹ仰吉
案第四號
貴裁告書第三號ㄴ接准吉즉內開에鳳山郡守李敏皐에報告
ㄴ接准吉온즉本郡沙院站宋允和訴求內開에昨年正月分載寧
東徒幾百名이來到本站吉咋無論某人吉고逢靶砲殺吉叫衝火



建陽元年九月十日 施行
大臣 協辦 第一課 局 主任 鄭寅福
局長 第一課長
上奏案件
左開案是謄呈事宜何如事宜 裁決事項伺啓
案第十八號
處刑罪人引開事宜件
漢城裁判所強盜罪人李聖澤外黃海道匪類金善長外咸鏡南道永興郡救徼正犯金在浩外忠清南道洪川郡救徼正
犯咸雲西外黃海道鳳山郡火砲李元早外忠清南道木川郡砲軍李萬龍等六名左開照律處斷事各引立本年法律第三號刑律名例第九條叫依事叶上奏案是提呈者
建陽元年九月九日
法部大臣 韓
內閣總理大臣 尹 閣下
一漢城裁判所叫서審理宣強盜罪人李聖澤의가典洞居主金善民家叫往事叶別銀願買人의有事叶稱事立店間人張鎭國是誘引事叶別銀三兩重是捧帶事立新寺下



勝戰峯叫僧是事叶張鎭國是拔劒刺殺事立奪取該金事是本年法律第二號賊盜處斷例第七條第七項二人或三人以上이晝夜是不分事立僻靜處或大道上叫拳脚棒棒或兵器是使用事叶威嚇或殺傷事叶財物是劫取事者는首從是不分律叫照事叶絞叫處事宜件
一黃海道裁判所叫서審理宣匪類金善長이가本是東徒火砲領將이라稱事立壽大山百八兄弟라事는徒黨으로恣橫村落事叶搶奪民財事立又假托逃捕事立此沒於窮村洞島之間事叶討索錢財事是本年法律第

三號賊盜處斷例第七條第七項二人或三人以上이晝夜是不分事立僻靜處或大道上叫拳脚棒棒或兵器是使用事叶威嚇或殺傷事叶財物是劫奪事者는首從是不分律叫照事叶絞叫處事宜件
一咸鏡南道永興郡救徼正犯金在浩가死者金濟淳叫從孫女是劫縛事立金濟淳이가往呼孫女面歸路叫金在浩가又杖으로毆打項頸事叶傷重而翌朝叫致死刑宣罪로大明律人命編殺人者律叫照事叶絞叫處事合宜件
一忠清南道洪川郡救徼正犯咸雲西가死者孫今山의

出官行以本月十日에回難人金은清州地方隊에서押到之
出官行刑具은說之고左右盤竄之하야旺拒之故로清州郡
外面琴巖居徐石汝年四十八白等矣身이甲午年에 月東學
熾盛時에以巨魁孫士文包內接主로逃躲潛伏之고라가
今年正接이各道이不意本年陰曆三月十日에邑名不記
前江景道居主로美米水商人漢이矣家에來到主야談話
三日留宿此時之世에說壇致誠이極合妨碍나主各其家
曆四月初旬에果為精灑焚香主고東經大全을前에所
存이라도還捉之後에未及出棄主야尚在家中이라가以至
被捉主이無他이達이라가以로清州郡外面寺洞居金

時默年三十八白等矣身이本以孫士文包內接主로幸為
國命이各道이陰曆三月十日에徐石汝가通文이美
米水로主야吉矣身에게傳主야衝主이更起東學
主라고說壇致誠主다主고로矣身은果未往矣로
如干東學諸物을美米水에任寘主고以其後로
無可達이라가로清州郡外面寺洞居林道浩年九白
等矣身又가當此東學接主로久為逃避라가近難往來以
不在家이로撤通은徐石汝가傳送主와如干寘主고以
以莫知其詳이라他無可達이로到此主고로此徐金兩
漢段은俱以距避로初頭漏網이로是白�déjà今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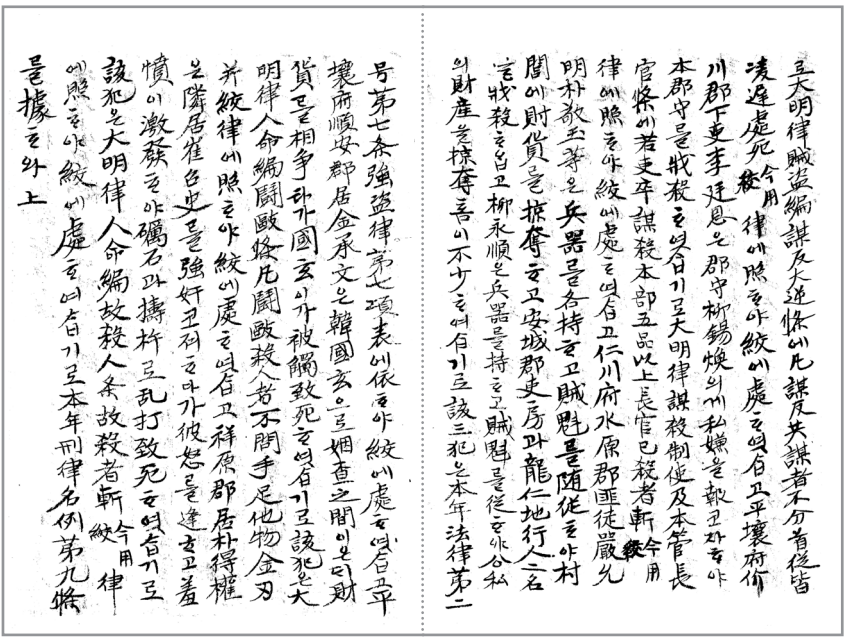
擧兵難免天誅四字如是粧撰이라極凶痛駭但라設壇
致誠과定期發通이昭有可據主고昨謂東經大全과撒通謄
本四字와名帖及雜貨가致誠諸具가無非醜虜叛逆之
跡이오며林道浩段은既非身犯이오年幼設覺主야含有
載處이라諸般證據主物은別紙에左開主와一切捧
主야主照하시고有指令是望主고此比段은本是
徐石汝와金時默은本以東學孫士文이接主로傳道
天綱主다가又為美米水에訛誘主와設壇致誠으로復
讀妖書之確據으로定期發通은煽動良民之根因이라
敎唆은自有其人이라為從이難免懲律主야大明

律禁止師巫邪術條左道亂正燒香集衆煽惑人民
為從者律에照主야各杖壹百流三千里(今德復)
雜主며林道浩之梁邪之跡이確無可證主야曉飭放送
主되其父의所犯은各供에莫掩主며公行并與在逃
姜米水로一體誅剿主야期於拿獲後捧招馳報是事
로敎에劄令主야比照律施行主라며主고

陽曆二月二十日

法部大臣 臣 趙

公州裁判所判事 李乾夏 閣下



奏案爲提呈事
建陽元年五月 日
法部大臣 韓
內閣總理大臣 尹 容善 閣下

建陽元年 七月 日
楊孝健

訓令各府裁判所件
奏案爲依准訓令節選言渡事件裁決事例爲
案 第二十七号
貴報告書第 号爲接准 訓令 清州地方隊附
所提出匪魁 金時默外林潗元外 道訓令 押到
事件 訓令修報事意旨 調查

徒十七漢中叫權咸中趙咸五金尹仲崔大弟張士元金俊二金致弘
中京伯朴元良邑漆外延俊捉得立匪類李周甫是齊和查驗
得情後叫以上十一漢是昔日午後一点鍾叫正刑于南門外場市上
叫昌五其餘隨從立大卜萬車聖主金鳳鎭崔東周等立各嚴杖三十
度立崔烱宇朴化叔金君良等立各嚴杖二十度立節同匪種立賊
亂軍心立在囚隨從罪人十漢中叫崔在卜高卜元金性烈金卜仁裴承
春張卜同金有文白致元金順用朱濟豊等十漢立各嚴杖三十度立生一
併嚴懲放送立朴鳳秋段七同病物故叫昌五기是齊叫報告立라라
此是查立生기東權咸中等十一名告正刑立又隨從大卜萬等十七人을
嚴杖放送이라立기事是飛啓立기本月八日叫到付立該府觀察使

의報告書中該化等의供案是查閱立후該匪等의罪化之輕重이自
在立후隨從之差等이有立기是該府에서部令을待치아니立고八命을
擅殺立이新式에有違立是더욱況히廢止立正刑과杖刑은無碍이
執行立야法律을不遵立이事甚駭然立오며 貴部照覆第二號內
開에軍律以外로一切照律은貴部에서酌量定擬立시면新式에妥當
立故로行將易飭各府立야賊徒를捕獲立거든貴部에報告立야待
指令酌處立라立與아立시되今此照覆을准施치아니立고 貴部에
서該大隊長의게訓飭立시와行此刑法이是치該大隊長이妄自糧行
이라함은理由를莫知立오기로玆에照會立오니
照亮不明立信을要喜

建陽元年四月二十一日

軍部大臣李乙用 閣下

法部大臣韓

刑事第一 代辦 姜璿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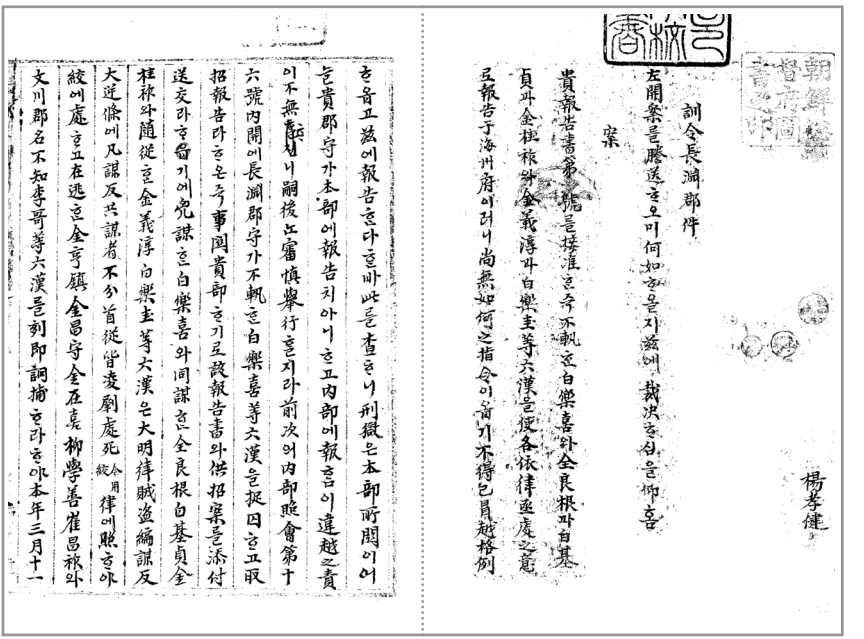
刑事第二 代辦

上 奏案件

左開案是上 奏立시미何如立을지玆에裁決立시믈仰喜

案

海州府長淵郡匪魁白樂喜는本以東徒魁首로又爲山砲戰
者立야潛釀宪謀立야謀危 社稷 立고又金良根과白基貞
과金桂菲는同謀立고又金義漢과白樂圭는隨從이되야各기



訓令長淵郡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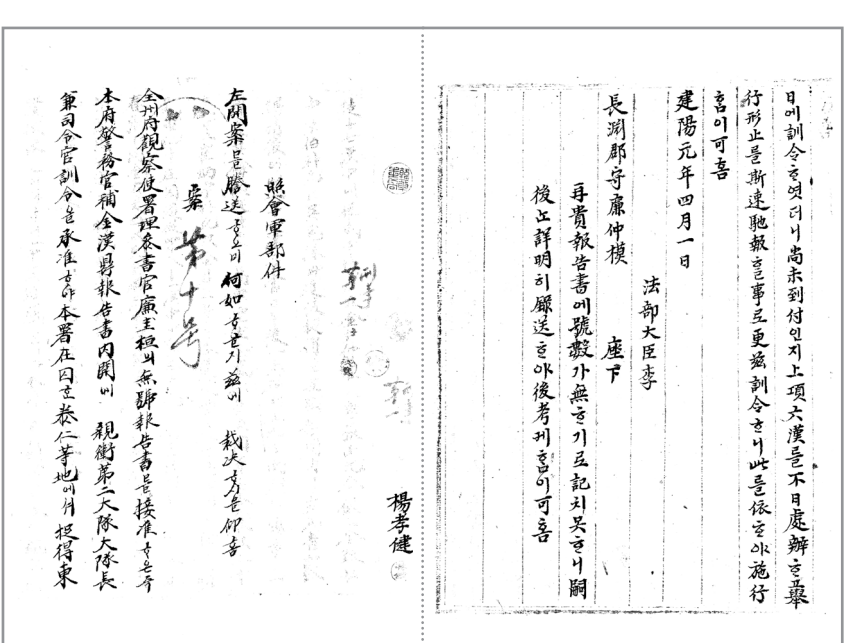
左開案를 謄送호오미 何如호옵지 玆에 裁次호옵기 仰호옵

案

貴報告書第 號를 接准호온즉 不軌호 白樂喜와 金良根과 白基貞과 金桂根과 金義淳과 白樂圭等 六漢을 使各依律 亟處之意로 報告于海州府이더니 尙無如何之指令이옵기 不得已 員越格例

楊孝健

호옵고 玆에 報告호옵나이다 此를 查호시고 刑獄은 本部所問이어늘 貴郡守가 本部에 報告치 아니호고 內部에 報호옴이 違越之責이 不無홀지니 嗣後로 審愼擧行홀지라 前次에 內部照會第十六號內開에 長淵郡守가 不軌호 白樂喜等 六漢을 捉囚호고 即招報告라호온즉 事關貴部호기로 設報告書와 供招案을 添付送交라호옵기에 兇謀호 白樂喜와 同謀호 金良根 白基貞 金桂根과 隨從호 金義淳 白樂圭等 六漢은 大明律賊盜編謀反大逆條에 凡謀反共謀者 不分首從皆凌遲處死 令欽 律에 照호야 綏에 處호고 在逃호 金亨鎭 金昌守 金在喆 柳學善 崔昌根과 文川郡 名不知 李哥等 六漢을 刻即 訶捕호라호야 本年三月十一



日에 訓令을 엿더니 尙未到付인지 上項六漢을 不日處辦호야 擧行形止를 斬速馳報홀事로 更玆 訓令호니 此를 依호야 施行호이 可喜

建陽元年四月一日

法部大臣 李

長淵郡守 座下

再貴報告書에 號數가 無호기로 記치 못호니 嗣後로 詳明히 擧送호야 後考케 호이 可喜

楊孝健

照會軍部件

左開案를 謄送호오미 何如호옵기 玆에 裁次호옵

案

金州府觀察使署理參書官 兪星根 叅領 金漢景報告書內開에 親衛第二大隊大隊長本府警務官補 參領 金漢景報告書內開에 親衛第二大隊大隊長兼司令官 訓令을 承准호야 本署在因호야 恭仁等地에 分捉得東

令ᄒᆞ시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이何ᄒᆞᆷ

建陽元年三月十七日

海州府觀察使李鳴善 座下

法部大臣李

楊孝健

照復內部件

左開案을謄送ᄒᆞ오미何如ᄒᆞᆫ을지玆에裁決ᄒᆞ시를仰ᄒᆞᆷ

案

貴照會第十九號를接准ᄒᆞ온즉長淵郡守의報告書內開에本郡匪類白樂喜等供案을業已修上이옵고現今各處山砲依慶ᄒᆞ야本郡을掃蕩ᄒᆞ고白樂喜를奪去云ᄒᆞ니此等匪類를不可暫時假息케ᄒᆞ야視察官宽枢時에覇首白樂喜를砲殺ᄒᆞ야幽寃의冤을慰ᄒᆞ오며餘外諸罪人을待指令擧行次로姑為牢囚等因이라事關貴部ᄒᆞ기로玆에照會ᄒᆞᆷ라ᄒᆞ온바此를查ᄒᆞ온즉貴照會第十六號와長淵郡報告書를依ᄒᆞ야不貶ᄒᆞᆫ白樂喜와同謀ᄒᆞᆫ全良根白基貞金桂祚와隨從ᄒᆞᆫ金義濂白樂玉六漢은被砲處ᄒᆞ고在逃ᄒᆞᆫ金守鎭金昌守金在喜柳學吾崔昌祚와名不知文化郡李哥等六漢을刻即訶捕ᄒᆞ야本月十二日에該郡守의稟訓令ᄒᆞ엿스오니照亮ᄒᆞ시를要ᄒᆞ야玆에照復ᄒᆞᆷ

建陽元年三月二十八日

內部大臣朴定陽 閣下

法部大臣李

호온바 此를 查호니 白巢喜는 本以東徒魁首로 又爲山砲
魁首호야 潛釀兇謀호야 謀危
社稷호고 全良根과 白基貞과 金桂祚는 同謀호고 金義淳
과 白巢主는 隨從이되여스니 上項罪犯은 覆載之間에 暴戾
을 貸치 못할지라 兇謀는 白巢喜와 同謀호 全良根 白基
貞 金桂祚와 隨從호 金義淳 白巢主 六漢은 大明律賊盜
編謀反大逆條에 凡謀反共謀者不分首從皆凌遲處死
(今用律에 照호야 處絞호고 在逃호 金亨鎭 金昌守 金在喜
柳學善 崔昌祚와 文化名不知李哥等六漢은 刻即訶捕호
事로 此에 訓令호니 此를 依호야 施行喜이 可喜

建陽元年三月十一日

法部大臣李

長淵郡守 廉仲模 座下

訓令海州府件 第十一号

左開案을 謄送호오니 何如호올지 玆에 裁決호심을 仰
喜

案

貴報告書第六号를 接准호수 載寧郡下吏 姜達
祚가 匪類로 作梗호 實狀을 嚴問호야 供辭를 別紙에 錄上
호온바 此를 查호니 姜達祚가 為東徒接主호야 同
黨數百名을 率호고 各處饑民에게 執穀이 為數百石
이오 信川郡을 燒蕩호 接主元容駙(魯)率徒迎接호고
姜熙烈의 租二十七石을 搶奪호야 火砲에게 分給호고
金僉使에 雜穀三十六石을 搶奪호엿스니 行兇情跡
이 極為(極)絶悖호지라 匪魁 姜達祚는 大明律造妖書妖
言條 凡造妖書妖言及傳用惑衆者斬(今用絞)이라호고
白晝搶奪條 搶奪人財物者杖一百(今用笞)徒三年(今遷復
三年)이라호고 名例云二罪俱發以重論이라호니 該犯姜達
祚는 絞에 處호고 擧行形止를 刻即馳報홀事로 玆에 訓
令호니 照

指令于某府伴

左承旨啓送ᄒᆞ오니 何如ᄒᆞᆫ지 茲에 裁決ᄒᆞᆷ을 仰喜

案

貴第三号質稟書ᄂᆞᆫ 接准ᄒᆞ야 海民接魁首張相弘
이가 結侵滅定事로 聚衆呈訴ᄒᆞᆷ을 稱ᄒᆞ야 捆入官庭ᄒᆞ야 官
家에 行在放施滅ᄒᆞᆷ을 因ᄒᆞ야 散去ᄒᆞᆫ 民人ᄋᆞᆫ 山上에 立
聚會ᄒᆞᆫ 아人家ᄅᆞᆯ 燒毁ᄒᆞᆫ 乱民에 所行이 現著
律ᄅᆞᆯ 決不可逃ᄒᆞᆯ 者ㅣ라 此ᄅᆞᆯ 查ᄒᆞ야 該犯張相弘은 大明
律訴訟条口称奏訴直入衙門抹制官吏者杖一百
이라ᄒᆞ고 大典會通罪犯準計ᄒᆞᆫ 者ㅣ면 充軍者准杖一百
流三千里律에 此ᄒᆞᆫ 者ㅣ면 可ᄒᆞ야 其接馬柯周邦等과 兩犯馬
聚民作接ᄒᆞᆷ에 二회 肆情官庭이 果出現病이라ᄒᆞ야 其
情狀ᄅᆞᆯ 酌量ᄒᆞᆫ 者ㅣ라 一等ᄅᆞᆯ 特減ᄒᆞ야 流十五年 令遠役에
處ᄒᆞᆫ 者ㅣ 可ᄒᆞᆯ 지라 此에 指令ᄒᆞᆷ.

建陽元年二月二十八日

法部大臣李

東某府觀察使池錫永 閣下

再拿龍九段은 有冤必訴之容有可議ᄒᆞᆫ 者ㅣ라
乱民隨起가 實非指使之慮其亂根ᄒᆞ야 見
機退去ᄒᆞᆫ 外ᄂᆞᆫ 衆志頓未에 泯無叅想이라
ᄒᆞ니 有冤必訴之民之常情이니 自 貴府로
嚴飭放送이 可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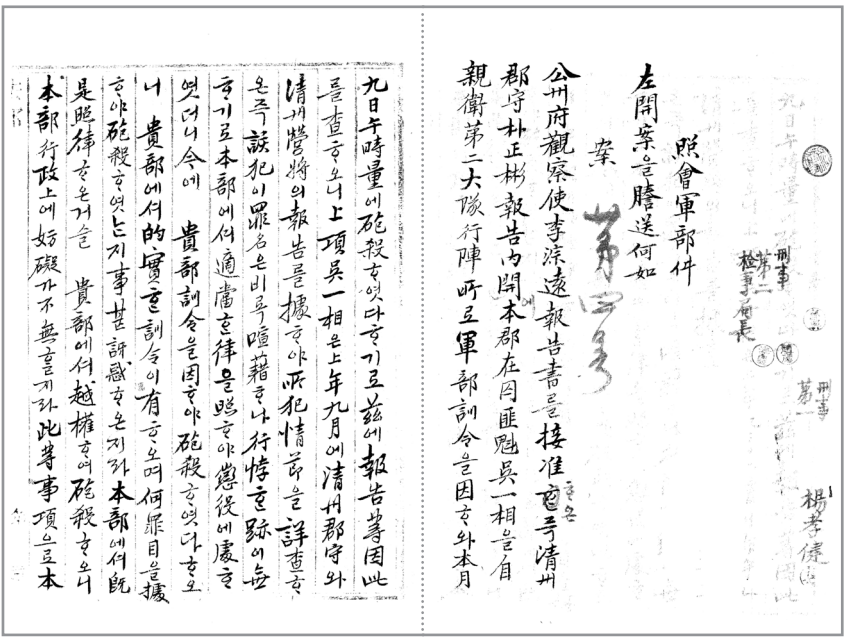
楊孝健

訓令長淵郡伴

左開案牒送ᄒᆞᆫ 바 何如ᄒᆞᆫ 지 茲에 裁決ᄒᆞᆷ을 仰喜

案 一号

內部照會第十六号內開에 海州府長淵郡守報告書로
接准ᄒᆞ야 不軌ᄒᆞᆫ 白樂喜等ᄋᆞᆯ 捉囚ᄒᆞ고 取招報告라ᄒᆞᆫ 바
今事關貴部ᄒᆞ기로 該報告書와 供招案ᄋᆞᆯ 添付送交ᄒᆞᆷ



照會軍部件

左開案을謄送何如

案

公州府觀察使李淙遠報告書를接准호즉淸州郡守朴正彬報告內開本郡在囚匪魁吳一相을自親衛第二大隊行陣所로軍部訓令을因호야本月九日午時量에砲殺호얏다호기로玆에報告等因此를查호오니上項吳一相은上年九月에淸州郡守와淸州營將의報告를據호야所犯情節을詳查호온즉說犯이罪名은비록暗藉호나行悖를跡이無호기로本部에서適當호律을照호야懲役에處호얏더니今에貴部訓令을因호야砲殺호얏다호오니貴部에서的實호訓令이有호오며何罪目을據호야砲殺호얏는지事甚訝惑호온지라本部에何敢是照律호온거슬貴部에서越權호야砲殺호오니本部行政上에妨礙가不無호지라此等事項으로本大臣이貴大臣께照會호심이非止一再라上年九月十六日에海州匪魁尹德汝砲殺호事로貴部에照會호얏더니貴照復內에嗣後則此等事項이有호면當貴部에知照호고獨斷을아니호심을要호여스오며本年本月十日에忠州府報告를據准호야貴部에照會호여습더니貴照覆內에軍律以外一切照律은貴部에서酌量定擬호시미新式에妥當호오니行將各道各府호야死刑은貴部에報告호야待指揮酌處케호기따호시온바幾日이不過호야砲殺호라는貴部訓令이有호니是는貴照復이文具와便同호지라前後照復과行政이甚히矛盾호온故로玆에照會호오니照亮호신後에來明호시믈要홈

建陽元年一月二十三日

法部大臣

軍部大臣臨時署理度支大臣魚允中 閣下

호지라欽恤之典에在호야踈忽之責이難免이오
니嗣後審愼을另加호야此等違誤가無케홈

署理 刑事第二 楊孝健

敬啓者左案通牒高旺何如
案第一号
金善在外徐可良의事件文狀五張을送交호오니
照閱호시기를要호옵고茲에通牒호오
法部刑事局主事楊孝健
高等裁判所主事李主晋座下
再訓令洪州府及指令韓山郡草件是件交호오
署理大臣이星覽호시기를



指令洪州府件
廷啓者左開案을謄送為希
案 第一号
貴報告書第七号를接准호즉韓山匪類金善
在徐可良을部令照律을依호야並히終身懲
役에施호얏다오나其原委를詳查호온즉金善

楊孝健

在ᄒᆞᆫ徐可良이가兵應老家에往閒ᄒᆞᆯ時에同行而已오
助虐의事ᄂᆞᆫ果無이온ᄃᆡ俱施同律은有欠平允故로
據實報告라ᄒᆞ온바果若金善在가徐可良의隨從
이的確ᄒᆞᆫ즉恭酌이不無ᄒᆞᆯ지라金犯은貴府로
分輕重ᄒᆞ야照律處辦ᄒᆞ고懲役處所ᄂᆞᆫ亦自
貴府로設行ᄒᆞ시기可ᄒᆞᆫ故로茲에指令喜
建陽元年一月六日
法部大臣
洪州府觀察使李勝宇 閣下

可ᄒᆞᆫᄃᆡ 貴部에셔獨斷ᄒᆞᆫ行ᄒᆞ야人命ᄋᆞᆯ擅殺ᄒᆞᆫ
ᄃᆡ至ᄒᆞᆫᄉᆞ事體에妥當치못ᄒᆞᆷ고該觀察使
도擅行ᄒᆞᆷ罪過가不無ᄒᆞᆫᄉᆞ 貴部訓令ᄋᆞᆯ遵ᄒᆞᆫ
擧行ᄒᆞ야ᄂᆞᆫᄒᆞ기로姑為參酌ᄒᆞᆫᄉᆞ嗣後此等事
項이有ᄒᆞᆫ거ᄂᆞᆫ敝部에知照ᄒᆞᆫ시ᄆᆞᆯ要ᄒᆞ야玆에照
會ᄒᆞᆷ

開國五百四年九月十五日

法部大臣趙義淵 閣下

軍部大臣署理

刑事第一 楊孝健

刑事局 檢事局 刑事課長

指令海州府件

海州府報告書ᄅᆞᆯ接准ᄒᆞᆫᄌᆞᆫ軍部訓令ᄋᆞᆯ據ᄒᆞᆫ
ᄇᆞᆫ長壽山城賊魁尹德汝等ᄋᆞᆯ或砲殺或徒配ᄒᆞᆫ것
ᄋᆞᆫᄉᆞ軍部에셔도本部ᄅᆞᆯ知照치아니ᄒᆞᆫᄃᆞᆫ獨斷
ᄒᆞᆫ미不可ᄒᆞᆫᄆᆞᆫ더러該觀察使도輕先擅行後報
告ᄒᆞᆫ미有違格式ᄒᆞᆫᄉᆞ該府에指令ᄒᆞᆫ여以杜日
後違格이何如ᄒᆞᆫ지玆에裁決ᄒᆞᆯ仰吾

指令第 號

貴第七號報告書ᄅᆞᆯ接據ᄒᆞᆫ즉ᄌᆞᆫ軍部第五六
訓令ᄋᆞᆯ接准ᄒᆞᆫ바本府在內ᄒᆞᆫ長壽山城에聚首ᄒᆞᆫ
것ᄃᆞᆫ賊魁尹德汝等ᄋᆞᆯ通衢砲殺ᄒᆞᆫ고餘黨金云成ᄋᆞᆫ
以白晝劇奪條로減一等徒二年照律ᄒᆞᆫ고孟所回ᄃᆞᆫ以
其隨從으로減二等徒一年照律ᄒᆞ야依新式懲役
ᄒᆞᆫ고女賊二名ᄋᆞᆫ各其夫詗捉間姑為保授等因准此
查ᄒᆞᆫᄉᆞ此等重大事項ᄋᆞᆫ本府指揮ᄒᆞᆯ必俟ᄒᆞ야施
行ᄒᆞᆫ미合當ᄒᆞᆫ지라雖有軍部訓令이나軍部則
軍律以外ᄂᆞᆫ照律이無ᄒᆞᆫ바 貴府에셔도擅行
後報告가有違格式ᄒᆞᆫᄉᆞ固當論警이오나姑為
參酌이오ᄆᆞᆫ日後此等事件ᄋᆞᆫ必先報告于本部ᄒᆞ
야指令ᄋᆞᆯ待ᄒᆞᆫ미可ᄒᆞᆫ기로玆에指令ᄒᆞᆫ니認此施
行ᄒᆞᆷ

開國五百四年九月十四日

法部大臣署理

海州府觀察使李鳴善 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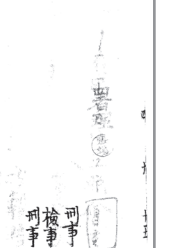
再啓犯劍照律案ᄋᆞᆯ查ᄒᆞᆫᄉᆞ重罪ᄋᆞᆯ輕減ᄒᆞᆷ은
ᄆᆡ양減等이錯誤가多ᄒᆞᆫ外正當ᄒᆞᆫ適用ᄋᆞᆯ得지못

其餘黨金云成은以白晝創奪條로減一等徒二年照律호고孟所回는以其隨從으로減二等徒一年照律호야並依新定式懲役호고여女賊二名은移送海州府호야各其夫詞根問始為保授호고方奠祚는造銃이不耐其威脅이로初不入於其黨이라極口鳴冤故로嚴杖三十度懲戒放送等因推查호오니本部에서도今始初聞이오니貴部에서何以此事로詳查호야訓令이有無호엿는지玆에照會호오니照亮호시고未明호시를要喜

開國五百四年九月十三日

法部刑事局第二課長李熙憲

軍部軍法局理事洪祐亨 座下



照會軍部大臣件

海州府報告書로接准호온즉軍部訓令으로據호야長壽山城賊魁尹德汝等을或砲殺或徒配호엿다호니軍部則軍令以外는照律이無호지라凡一切照律은本部에知照호미可호거늘軍部에서該府에訓令호야命案外嶽事를擅斷호미不可호기로照會호야호오니玆에裁決을仰喜

照會第七十號

海州府第七號報告書로接據호온즉 貴部第五號訓令을據호야長壽山城賊魁尹德汝를通砲殺호고餘黨金云成은以白晝創奪條로減一等徒二年照律호고孟所回는以其隨從으로減二等徒一年照律호야依新式懲役호고女賊二名은各其夫詞根問始為保授等因此事件을推查호오니除軍律以外一切照律은皆自本部로酌量이오 貴部에所關이아니온즉此等事項은本部에知照호야處辦케喜

里(今終身懲役)律에照호야處辦호後形止를即爲馳報
호기로호故로玆에指令홈
開國五百四年九月八日

法部大臣署理
韓山郡守白樂亨 座下

刑事第一 楊孝健

內閣記錄局通牒件
還啓者라左開案을謄送호시읍
案

處絞罪人에罪目과姓名을左丈치錄送호오니官報에揭載
호심을要호야玆에通牒홈
開國五百四年九月 日

刑事檢事局 刑事課長

法部刑事局長趙重應 座下

內閣記錄局長朴永斗

林川匪魁金在洪이가殺害人命罪로處絞호고
文化匪魁李東燁이가列邑官舍를燒燼호며人
民錢穀을搶奪罪로處絞홈

刑事第一 楊孝健

照會于軍部件
故啓者左開案을謄送호시읍
案

頃據海州府報告內開接據호온즉軍部
買部訓令第五号를接准호야本府在囚호
長壽山城聚首賊魁尹德汝를通衢砲殺호고

訓
指令第十九號

前黃海觀察使(文化)啓(罪狀)
貴郡在囚匪魁李東燁斗僧錦月(名)
率火炮(數)突向信川松禾長淵龍津康翊等邑
(各五人民之家)
(搶奪)
此是查(罪狀)
李東燁段(名)
門者不待時斬(令用)
從者杖一百流三千里(令終身)
貴郡(自貴府至配所)
(文化郡)
(令改)
(令改)
(令改

外指令ᄒᆞ시오미何如ᄒᆞ옵지玆에裁決ᄒᆞᆷ을仰ᄒᆞᆷ

指令 第號十四年ㄴ

貴郡在囚匪魁吳一相은名雖嗜藉나行悖ᄒᆞᆫ跡이無ᄒᆞ고士民이保護ᄒᆞ야乃反有功이라ᄒᆞ니衆酌이不無ᄒᆞᆫ지라吳一相段은減死一等照律ᄒᆞ고贓匪金東仁李正道吳斗相段은罪之輕重을分ᄒᆞ야依律處辦ᄒᆞᆫ後擧行形止ᄒᆞᆷ을即爲馳報ᄒᆞ미可ᄒᆞᆫ故로玆에指令ᄒᆞᆷ

淸州郡守李敎夏 上座下

刑事 第一 楊孝健

刑事 第二

忠淸道林川郡在囚金在洪外死刑에關ᄒᆞᆫ指令件

該郡守의呈報ᄒᆞᆫ一切書類를詳査ᄒᆞᆫ즉該犯이呼寃加極惡絶悖ᄒᆞ야死刑에合宜ᄒᆞ오니左開案을依ᄒᆞ야該郡守에指令ᄒᆞ오미何如ᄒᆞ옵지玆에裁決ᄒᆞᆷ을仰ᄒᆞᆷ

指令 第號十三年ㄴ

貴郡在囚匪魁金在洪의呼犯은大典會通推斷條에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今用律을照ᄒᆞ야自貴郡으로處絞ᄒᆞᆫ後擧行形止를即爲馳報ᄒᆞ미可ᄒᆞᆫ故로玆에指令ᄒᆞ오니此를依ᄒᆞ야施行ᄒᆞᆷ

開國五百四年九月五日

法部大臣署理

林川郡守俞鎭沃 座下

刑事 第一 楊孝健

刑事 檢事局 刑事課長

林川匪魁金在洪處絞小單子件

遲落者卜左開案을依ᄒᆞ야小單子를正書入呈ᄒᆞ시옵

案

法部

林川匪魁金在洪以殺害人命罪로處絞ᄒᆞᆷ

開國五百四年九月 日

指令ᄒᆞᄋᆞᆫ叫何如ᄒᆞ옵ᄂᆡ玆에裁決ᄒᆞ옵심仰喜
指令
忠淸道淸州營將及淸州郡守
開國五百四年七月九日第一號

貴鎭在囚匪魁吳一相은處絞ᄒᆞ고餘匪吳斗相李正道金仁東三名은貴鎭貴郡으로罪之輕重을分ᄒᆞ야依律處斷ᄒᆞᆫ後形止를卽爲馳報ᄒᆞ叫宜當喜

法部大臣

四七十一

刑事第一 楊孝健

刑事第二

淸州營將及淸州郡守請令件

逕啟者左開案을正書ᄒᆞ시사本局으로送交ᄒᆞ시옵

案第三號

指令

淸州營將淸州郡守

開國五百四年七月十一日第 號

貴鎭在囚匪魁吳一相은處絞ᄒᆞ고餘匪吳斗相李正道金仁東三名은貴鎭과貴郡으로罪之輕重을分ᄒᆞ야依律處斷ᄒᆞᆫ後擧行形止를卽爲馳報ᄒᆞ叫宜當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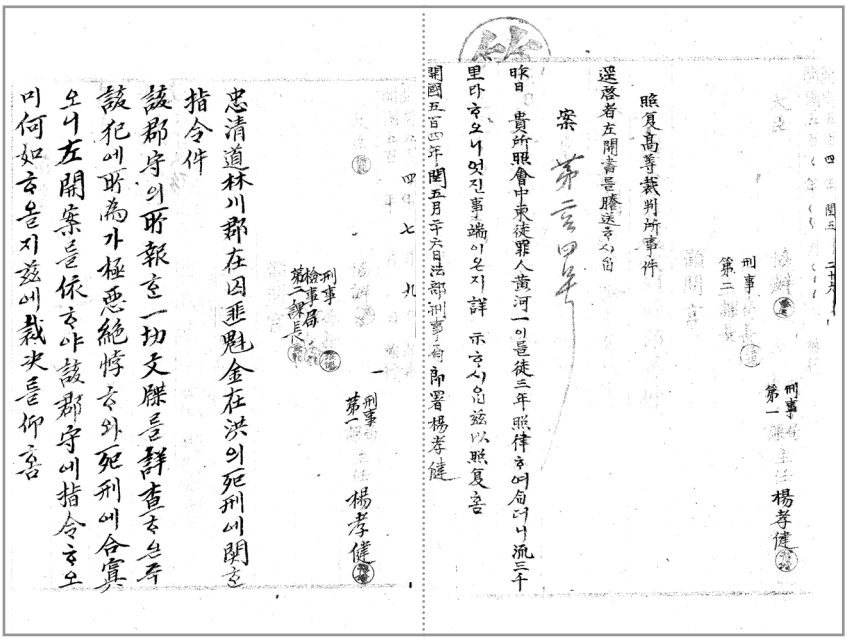
法部大臣

刑事第一 楊孝健

淸州營將及淸州郡守稟呈件

淸州營將及淸州郡守稟稟을依ᄒᆞ야匪魁吳一相과餘匪三名에關ᄒᆞᆫ指令件

該營將該郡守의所報ᄒᆞᆫ一切書類를詳査ᄒᆞᆫ즉吳一相이가名雖喧藉ᄒᆞ나實無悖行ᄒᆞ고且護士民ᄒᆞ叫乃反有功ᄒᆞᆫ바ᄒᆞ고李酌이不無ᄒᆞ고且吳一相段은減死一等ᄒᆞ야律ᄒᆞ고餘匪金東仁李正道吳斗相段을分輕重處斷ᄒᆞ



指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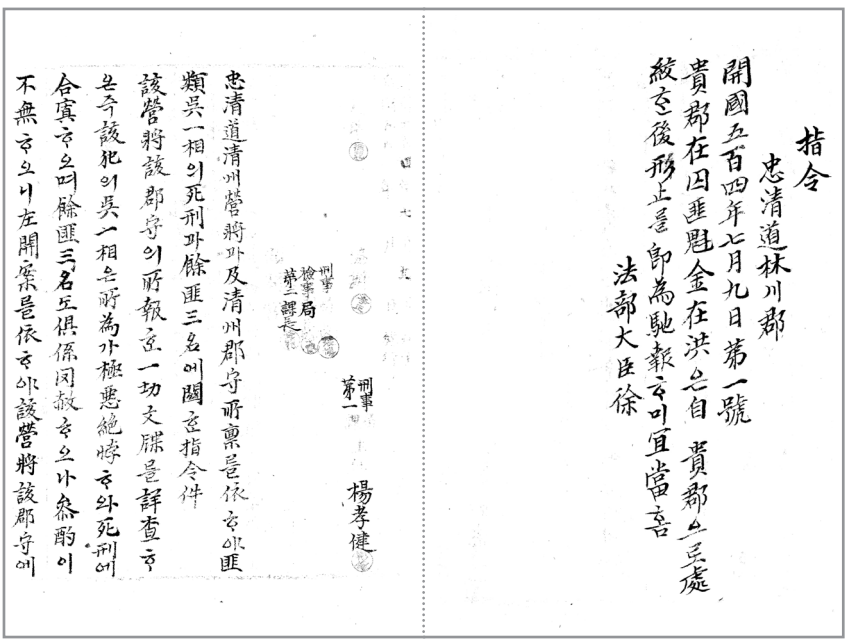
忠清道林川郡

開國五百四年七月九日第一號

貴郡在囚匪魁金在洪之自 貴郡至三處

被杖後形止是卽為馳報ᄒᆞ미宜當ᄒᆞᆷ

法部大臣徐



忠淸道林川郡在囚匪魁金在洪의死刑에關ᄒᆞᆫ

指令件

該郡守의所報ᄒᆞᆫ一切文牒은詳査ᄒᆞᆫ즉

該犯에所為가極惡絶悖ᄒᆞᆫ外死刑에合宜

ᄒᆞᆫ지라開案을依ᄒᆞ야該郡守에指令ᄒᆞ오

미何如ᄒᆞᆫ지玆에裁決을仰ᄒᆞᆷ

忠淸道淸州營將과及淸州郡守所稟을依ᄒᆞ야匪

類吳一相의死刑과餘匪三名에關ᄒᆞᆫ指令件

該營將該郡守의所報ᄒᆞᆫ一切文牒은詳査ᄒᆞ

ᆫ즉該犯의吳一相은所為가極惡絶悖ᄒᆞᆫ外死刑에

合宜ᄒᆞᆫ즉餘匪三名도俱係從犯ᄒᆞᆫ즉參酌이

不無ᄒᆞᆫ지라開案을依ᄒᆞ야該營將該郡守에

刑事 第二
刑事 第一 楊孝健

答度支部照會事件

敬啓者左開ᄒᆞᆫ건答照會ᄒᆞᆫ건正書ᄒᆞ시와度支部로ᄇᆞᆯ이送ᄒᆞᆷ을爲ᄒᆞ야

照會

湖南前摠務官趙秉永이敝部에就因ᄒᆞ야勒罪ᄒᆞᆫ바이ᄂᆞᆫ伊時에文簿相關ᄒᆞᆫ從人與營吏等待事로敝部에到擾便ᄒᆞᆫ바이오니 照亮ᄒᆞ시ᄆᆞᆫ希ᄒᆞᆷ

開國五百四年五月十五日

法部大臣徐○○

度支部大臣魚允中閣下

刑事 第二
刑事 第一 楊孝健

通牒

漢城裁判所事件

逕啓者ᄂᆞᆫ左開書ᄅᆞᆯ謄送ᄒᆞᆷ을爲希

案

逕啓者ᄂᆞᆫ原州牒報中東徒罪人李圭夏ᄂᆞᆫ洪鍾成이와同案이ᄆᆞᆫ五月二十日公移時에牒報與証據物ᄅᆞᆯ一ᄒᆞᆫ건送ᄒᆞᆫ바이ᄋᆞᆺ치ᄂᆞᆫ左獄在囚ᄒᆞᆫ李圭夏ᄂᆞᆫ洪鍾成과一切審辦ᄒᆞᆫ後에ᄂᆞᆫ自當此로通牒ᄒᆞᆷ을

開國五百四年閏五月十七日法部刑事局郎署楊孝健

刑事 第二

第一 李徽善

關若海兵營事件

[illegible]者黃海兵營[illegible]送關外[illegible]之送[illegible]
[illegible]而爲修[illegible]之外派送爲有 [illegible]今日附[illegible]
[illegible]月日送[illegible]

案

相[illegible]事據準[illegible]部巡會則內開若海兵使牒報[illegible]見[illegible]
卽[illegible]指令道稅委員安宗洙秘報內長壽山城[illegible]
爲將張龍淵[illegible]本東徒의竄[illegible]本道觀察使赴任
之路에捉[illegible]之外拘留三日[illegible]東徒를勿侵[illegible]事를傳言
[illegible]愛[illegible]後에放送[illegible]之外該觀察使가感[illegible]를不[illegible]
之外張龍淵과其徒[illegible]學璜으로[illegible]神將[illegible]等差[illegible]之外歸化
시킨다[illegible]東徒의根窩가漸大[illegible]之外毒이道內에流
[illegible]에尙有未淨[illegible]自又張龍淵之徒韓用健에게自
願歸化[illegible]之外義兵이外稱[illegible]고逃營[illegible]丁의領將이되[illegible]之
外東徒之勢가熾盛[illegible]時에出戰[illegible]하면東徒의內應이
되어逃過[illegible]路를暗通[illegible]고勒入[illegible]것이가歸化[illegible]者를東
徒라稱[illegible]고刼掠[illegible]之外奪財[illegible]며燒家[illegible]고平民之家에軍
需를討索[illegible]之外該觀察使의게必欺瞞[illegible]고道內感情
을行[illegible]之外聽聞이駭愕[illegible]다[illegible]音고兵使가爲偵探[illegible]
勢差[illegible]之[illegible]甚爲駭聽[illegible]音[illegible]에長壽山城[illegible]將張龍
淵을爲先罷黜[illegible]之[illegible]甚罪狀을彼司로令[illegible]之外拿[illegible]勘處
[illegible]之[illegible]시고[illegible]學璜과韓用健도東徒의隨魁은즉不日押上
[illegible]를[illegible]여[illegible]之[illegible]緣由牒報[illegible]因準[illegible]準此該長壽別將張龍
淵은職[illegible]罷黜[illegible]之[illegible]여[illegible]之[illegible] 貴部에[illegible]之[illegible]拿[illegible]勘處[illegible]之
[illegible]之[illegible]學璜과韓用健도[illegible]爲捉處[illegible]之[illegible]之[illegible]望[illegible]事
[illegible]因據此爲此發[illegible]之[illegible]關到[illegible]卽時[illegible]該鎭[illegible]將
張龍淵을刻[illegible]派員押上[illegible]之[illegible][illegible]學璜과韓用
健도罪犯이緊重[illegible]之[illegible]一體[illegible]押上本部[illegible]之外處判
을便[illegible]音[illegible]이[illegible]之[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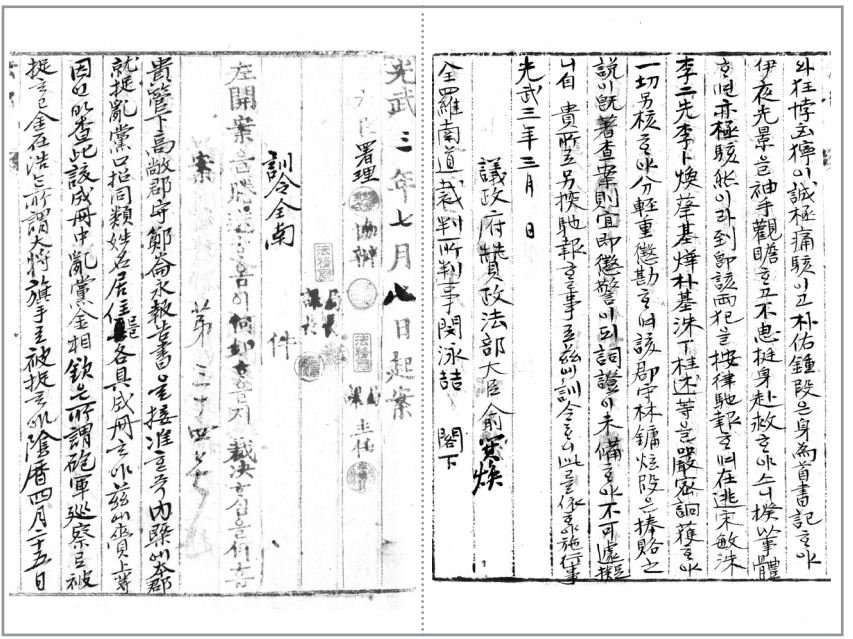
右 關

若海兵使 [illegible] 前下

[illegible]開國五百四年 四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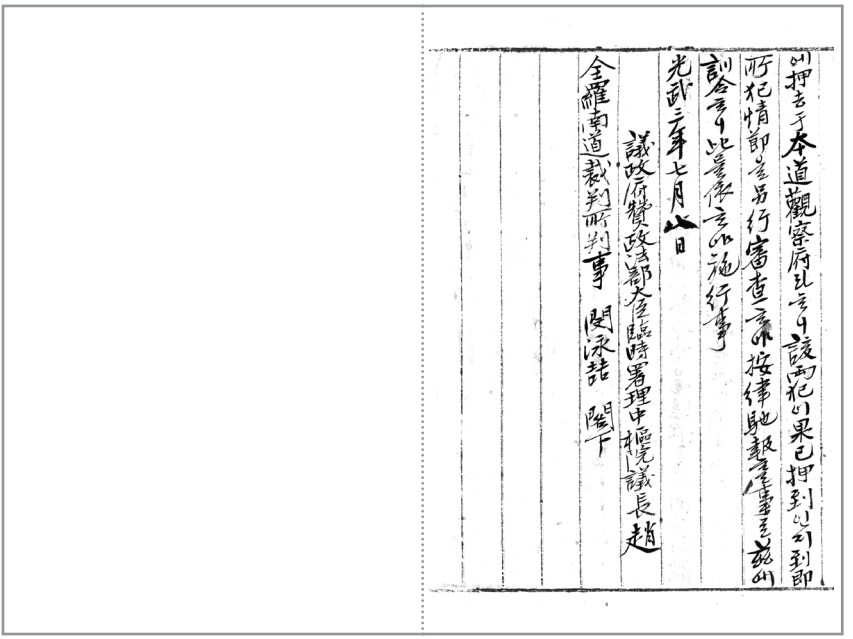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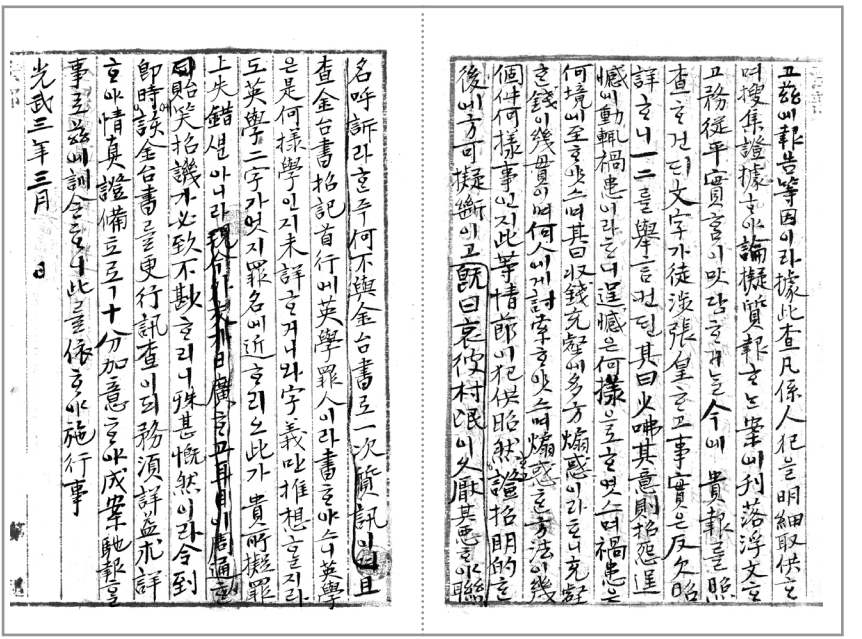


外任悖亂停止誠極痛駭以五朴佑鍾段亦身爲首書記之叱
伊夜先畧言神手觀瞻之五不思挺身赴救之叱今挨事體
亦涸未極駭然以五到即該兩犯主捉律馳報之叫在進宋敏洙
李二先李卜煥李基燁朴基洙卞桂述等言嚴密詗獲之叱
一切另核之叱分輕重懲勘之旨該郡守林鎬恒段亦捧貼之
說叱既著查案則宜即懲警叱到詞證叱未備之叱不可遽捉
以爲 貴所之另挨馳報之事五叱訓令之叱言依施行事
光武三年三月 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俞鎭煥
全羅南道裁判所判事 閔泳喆 閣下

光武三年七月 日起案
主任 署理
訓令全南
件
左開案 [illegible]
案 第 二十四
貴營下高敞郡守鄭裕永報告書 [illegible] 接准之叱內聚衆都
就捉亂黨以招同類姓名居住 [illegible] 各具成冊之叱旨仰質上事
因此查此該成冊中亂黨金相欽之所謂砲軍延察之被
捉言已金在浩之所謂大將旗手主被捉言叱陰曆四月二十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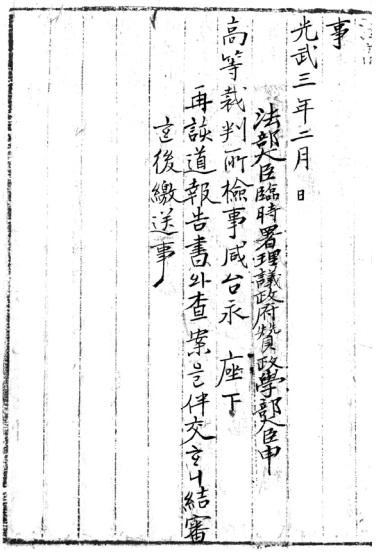
叱押送于本道觀察府比爲有旀該兩犯叱果已押到叱到即
所犯情節叱另行審查事承按律馳報宜事之叱
訓令爲此合仰依施行事
光武三年七月 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 趙
全羅南道裁判所判事 閔泳喆 閣下



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學部大臣申
全羅南道裁判所判事閔泳喆 閣下

光武三年三月十八日 發
協辦 局長 課長 主任
訓令全南
左開案查勝送 [illegible] 如 [illegible]
案 第十三號
貴報告書第一號言接至李內榮與穆郡亂民作鬧事以長城郡守 [illegible] 宋查明查報事以查案 [illegible] 等因以此據此查李化三段是郡守之過失豈初不的知但已往之事久無係已之冤而首倡作鬧之此凌犯命吏之叫搜驅官房之以莫分犯紀名呼訴乃至于何不與金台書互一次質訊且查金台書招記首行內英學罪人以下書之內英學是何樣學人之未詳之而以字義叱推想之則英學二字加於之罪名內近之則之此加貴所擬罪上失錯想必有我令[illegible]貴所見耳目所及過[illegible]貽笑招議不必致不數之則殊甚慨然以下令到即時該金台書言更行訊查以期務須詳盡無疑詳報事至訓令之此之依施行事

光武三年三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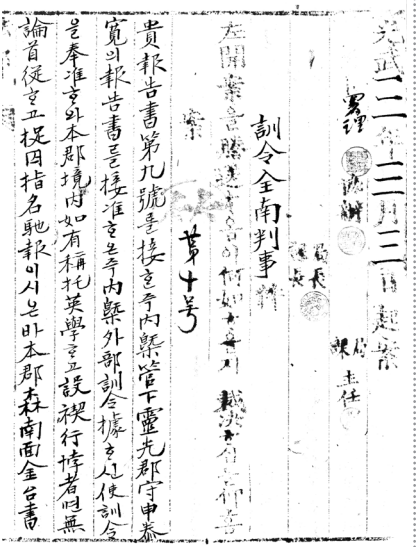


事

光武三年二月 日

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學部尙書
高等裁判所檢事咸台永 座下

再啟道報告書外査案은 伴交ᄒᆞ야結審
ᄒᆞᆫ後繳送事



光武三年二月 日 起案

署理 局長 課主任

決裁 二月 日 發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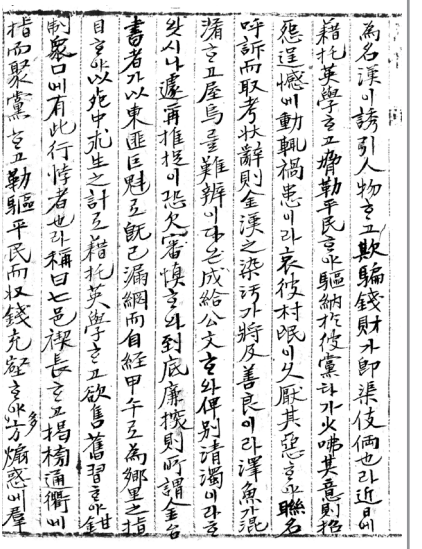
判事 印

副令全南判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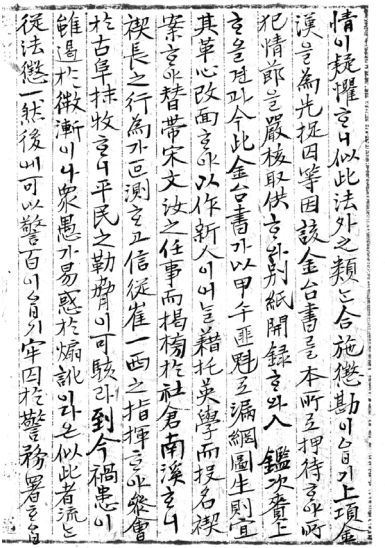
左開案ᄂᆞᆫ 貴下 第 號로 ᄒᆞᆫ 事

第十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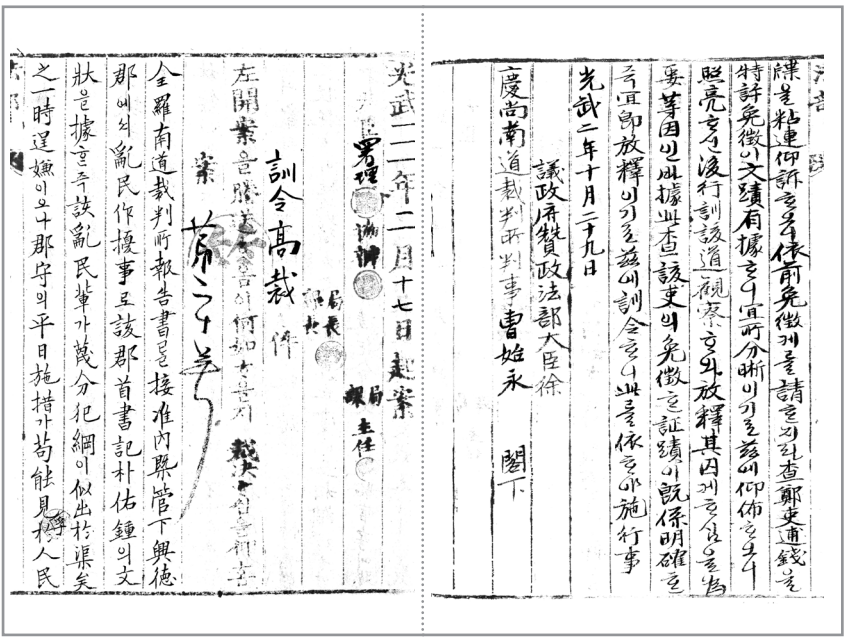
貴報告書第九號를 接ᄒᆞᆫ즉 內縣管下靈光郡守申泰
寬의 報告書를 接准ᄒᆞᆫ즉 內縣外部訓令據ᄒᆞᆫ 內使訓令
ᄂᆞᆫ 奉准ᄒᆞᆫ 外本郡境內에 如有稱托英學ᄒᆞᆫ 誤視行悖者ᄒᆞ야 無
論首從ᄒᆞᆫ 捉囚指名馳報이시ᄂᆞᆫ 卽本郡森南面金台書



爲名漢이誘引人物ᄒᆞᆫ 後에 欺騙錢財가 卽渠伎倆也라 近日에
藉托英學ᄒᆞᆫ 後에 增勒平民ᄒᆞᆫ 後에 驅納於使窠ᄒᆞ야 火佛其意則稍
慰逞憾이 動輒禍患이라 衰彼村氓이 久厭其惡ᄒᆞᆫ 後에 聯名
呼訴而取考狀辭則金漢之染污가 將及善良이라 澤魚가 混
蒲ᄒᆞᆫ 後에 屋烏를 難辨이라 已成給公文ᄒᆞᆫ 後에 別淸濁이라ᄒᆞᆫ
後에 ᄂᆞᆫ 遽肯推捉이 恐欠審愼ᄒᆞᆫ 後에 到底廉探則所謂金台
書者가 以東匪巨魁로 旣已漏網而自經甲午로 爲鄕里之指
目ᄒᆞᆫ 後에 以先中元生之計로 藉托英學ᄒᆞᆫ 後에 欲售舊習ᄒᆞᆫ 後에 ᄂᆞᆫ
制衆口에 有此行悖者也라 稱曰七邑楔長ᄒᆞᆫ 後에 揭榜通衢에
指而聚黨ᄒᆞᆫ 後에 勒驅平民而收錢充窟ᄒᆞᆫ 後에 多方煽惑에 擧



情이 疑懼ᄒᆞᆫ 後에 似此法外之類로 合施懲勘이 合當이오 上項金
漢은 爲先捉囚掌囚該金台書로 本所로 押待ᄒᆞᆫ 後에 所
犯情節을 嚴核取供ᄒᆞᆫ 後에 別紙開錄ᄒᆞᆫ 後에 入 鑑次奪上
ᄒᆞᆫ 後로 ᄐᆞᆫ 外에 今此金台書가 以甲午亂魁로 漏網圖生則宜
其革心改面ᄒᆞᆫ 後에 以作新人이어ᄂᆞᆯ 藉托英學而投名楔
案ᄒᆞᆫ 後에 替帶宋文汝之任事而揭榜於社倉南溪ᄒᆞᆫ 後에
楔長之行爲가 叵測ᄒᆞᆫ 後로 信從崔一西之指揮ᄒᆞᆫ 後에 聚會
於古阜排牧ᄒᆞᆫ 後에 平民之勒奪이 可駭라 到今禍患이
雖過於徵漸이나 衆愚가 易惑於煽訛이라 似此者流ᄂᆞᆫ
從法懲一然後에 可以警百이오 自外牢囚於警務署ᄒᆞᆫ 後로



牒呈粘連仰訴之狀依前免徵事請訓矣查鄭吏通錢之特許免徵之文蹟有據云云宜所分晰以聞之意仰仰訓令事
照亮施行訓令該道觀察使知悉放釋其囚禁之意為
要等因此相應查該吏之免徵之証蹟既係明確應
如宜即放釋以示茲訓令事
光武二年十月二十九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徐
慶尚南道裁判所判事曹始永 閣下

光武二年十二月十七日 起案
局長 判事 檢事
判決
訓令 高裁 件
左開案卷謄送令飭何如事訓
案 第二十号
全羅南道裁判所報告書呈接准內稟管下興德
郡에서亂民作擾事로該郡首書記朴佑鍾의文
狀을據호즉該亂民輩가蔑分犯綱이似出於渠矣
之一時逞嫩이오나郡守의平日施措가苟能見於人民

이면致此罕有之變惟이올지該倅之政令失宜와亂
民等之有何冤狀을不容不嚴覈易查故로以當下
長城郡守人垂星圭로別定明查官호야本事顚末을
使之查覈報來矣라ᄒᆞ니該查報를閱悉호즉該郡守
林鏞炫의職在宇牧호야宜其持身廉潔而不此之為호고
招此禍釁이極為駭瞠이라從法論警은惟在處分이
오며亂魁李化三段은本以萍梗之踪跡으로自恃狡獪
之技托호야挺擔隣友之嫌憾호니血黨이互相網繆호야
打起睚眦이遣人啟堂호야淩犯令吏호고搜驗官房에踢
官取印을罔有紀極호고宋敏洙段은挾憾沈任에包藏

禍心호야慫恿化三에一而二也나既作漏網호야并與
在逃諸漢으로另飭譏詗호야期使弋獲이오며首書
記朴佑鍾段은變出中夜에事雖蒼黃이나捍圍赴
援을不能與同호고反為來往於亂民之中호얏스니情跡
이叵測에道理가乖戾호니合施懲勘等因이바此를
查호니該郡守林鏞炫의政令失宜호야致此民閧
言은誠甚該歎이나亂魁李化三의首倡作擾호야
甚至踢官取印호는究厥所為에萬分痛惡이라到即該
林鏞炫을拿致審查이외李化三과朴佑鍾을亦為押
上호야另行審查호事로茲에訓令호니此를依호야施行

光武二年八月五日起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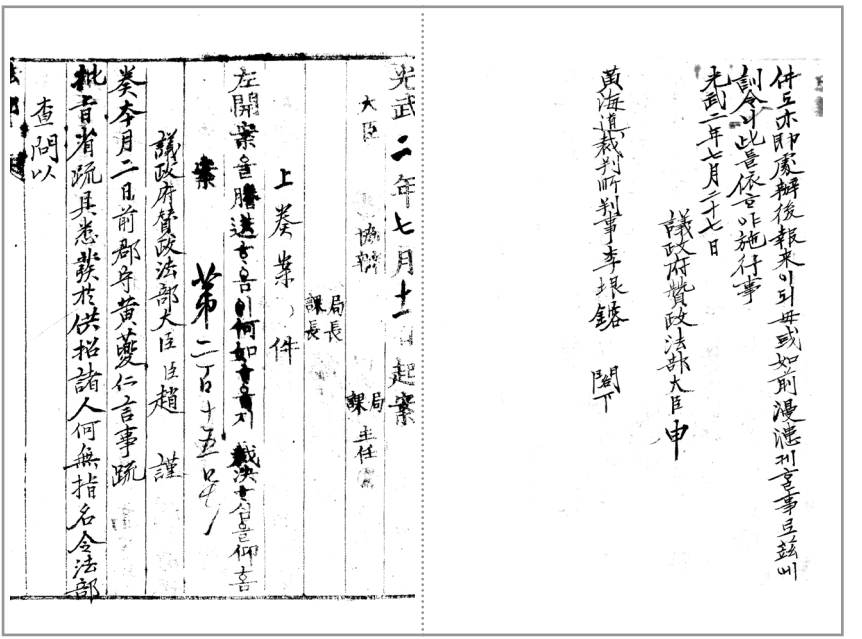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副令忠南 件

左開案을 謄送ᄒᆞ옴이 何如ᄒᆞ옵ᄂᆞᆫ지 裁決ᄒᆞ심을 仰ᄒᆞ옵

案 第四十七號

頃接 貴府判事李乾夏의第一百十五號報告書則內에 錦川郡押來罪人徐昌吉劉漢表等이 供ᄒᆞ기를 半ᄆᆞᆫ 吾ᄂᆞᆫ 酷虐ᄒᆞᆫ 層生이라 ᄒᆞ얏ᄉᆞᆸ기 此ᄂᆞᆫ 査ᄒᆞᆫ 바 其在當初에 逃避折決ᄒᆞ기로 到即該兩犯을 另行更査ᄒᆞ야 按律馳報ᄒᆞᆷ이 可保牧ᄒᆞᆫ 事로 訓飭ᄒᆞ얏ᄉᆞᆸ더니 現에 貴報書第十四號를 接准ᄒᆞᆫ 즉 內에 徐昌吉劉漢表를 承部訓更査次로 拿來ᄒᆞᆫ 즉 同案先後를 據敎ᄒᆞ야 以査ᄒᆞ기로 徐劉兩漢은 首尾三載를 拘在牢中ᄒᆞ야 備有瘐疾이오ᄆᆞᆫ 原下居來로 根之徐昌吉을 據着ᄒᆞ야 自五鄭宜中을 劉漢表를 據着ᄒᆞ야 保管ᄒᆞ기를 自願ᄒᆞ오ᄃᆡ 久而未決이오ᄆᆞᆫ 且ᄂᆞᆫ 為念保ᄒᆞᆫ 病이오ᄆᆞᆫ 且ᄂᆞᆫ 前判事在任時에 各該主人의게 保管ᄒᆞᆫ 바오ᄆᆞᆫ 今番更査ᄒᆞᆫ 바 該兩人所供內에 為其調病ᄒᆞᆫ 바ㅣ 其辭還ᄒᆞ기ㅣ 仍不來待ᄒᆞᆫ 즉 自己ᄂᆞᆫ 鬼限督現ᄒᆞᆫ 즉 兩犯의 供在逃避ᄒᆞᆫ 바 査無踪跡이라ᄒᆞᆫ 바 前判事時에 罪因은 私有請保ᄒᆞᆫ 바 보ᄉᆞ오ᄂᆡ 據着保目에 如無接目ᄒᆞ야ᄉᆞᆫ 似無是理이오ᄆᆡ 更査ᄒᆞᆫ 바 地에 踪跡이 不現이라ᄒᆞᆫ 즉 兇戚罪犯은 已有浮於該犯ᄒᆞᆫ 즉 이지라 上項犯人을 主人에게 付送ᄒᆞ야 嚴加看守ᄒᆞ야 隨時現捉ᄒᆞ야 更加嚴刑ᄒᆞ야 期於得情ᄒᆞ야 報來ᄒᆞᆸ시ᄆᆞᆫ 事關人命ᄒᆞᆫ 즉 不可不愼ᄒᆞᆫ 바ㅣ 오니 貴府判事로 ᄒᆞ야금 更加嚴飭



件至本部處辦後報來可到無致如前漫漶之事亦茲叫
訓令此令依令施行事
光武二年七月二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申
黃海道裁判所判事李堈鎔 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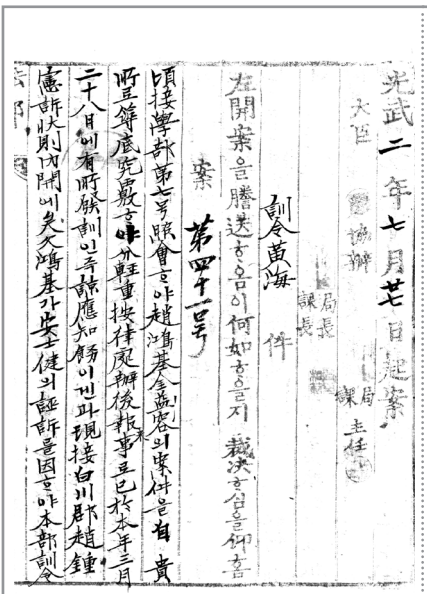
光武二年七月十一日 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長 局長 課長
上奏案 一件
左開案查膳送吉昌伯如書內載漢書令旨仰喜
案 第二百十五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趙 謹
奏本月二日前郡守黃燮仁言事疏
批旨有疏其悉敷於供招諸人何無指名令法部
查問以



奏事
命下來自臣部欽奉
聖旨黃燮仁行將招劃之際該員自現於高等裁
判所敷奏於供招諸人何無指名之由查問則所供
內法司憧密審查之事在外之人豈知其姓名誰某
之出諸崔時亨供招部但意謂緯紳中似有所出者
而過于鍾路開人風說則崔時亨供招中所開某
某云而其姓名之誰某未能指的云矣該員職名
以前郡守上疏而捧供之場以會同[illegible]縣監為供故問
其相左則供以近來外任都稱郡守故吉之云矣稿

伏念
奏御文字何等重愼而該員敢以猜度辭於
陳疏全有曉名之請始
曉名不實之境究其所犯罪合當勘奉
旨查問之下自臣部不敢擅便何以為之敢
奏
光武二年七月十一日奉
旨

臣 趙



據此查該教師之徂謝事宗은 業已知照于外部호얏스
며 京城應轉飭該公館호야 隨現禁斷호려니와 金興淳
朴君達之藉托西教호고 不法行爲가 聞極痛駭已到卽
提囚兩犯호고 詳查稟報호야 飭該府호야 罪之輕重
을 待稟慶辦케 호事로 茲에 訓令호니 此를 依호야 施
行事

光武二年七月一日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植

長城郡守 金星圭 座下

光武二年七月 日 起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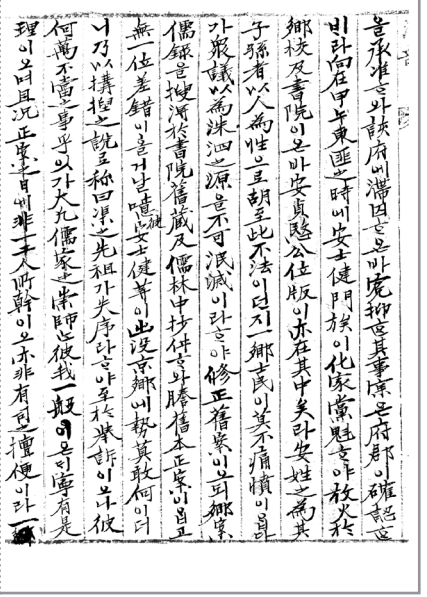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案 第四十一号

左開案을 謄送호오니 何如호오를지 裁決호옵심을 伻
望

訓令 第 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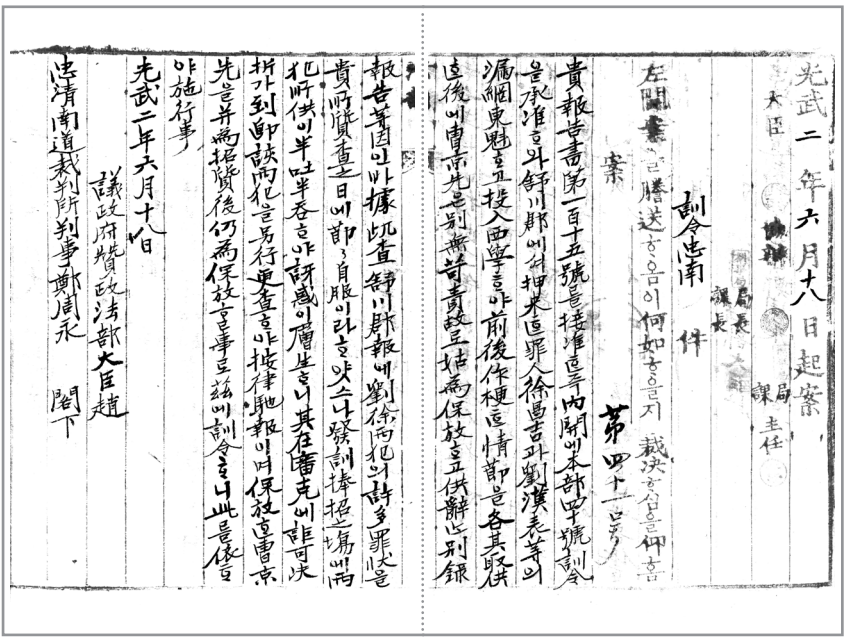
頃接學部第 号照會호야 趙鎭基金嘉鎭의 案件은 有貴
府査辦處호얏고 且軽重按律處辦後報事로 已於本年三月
二十八日에 有訓飭訓令호얏거니와 現接白川郡趙鍾
憲訴狀則內開에 矣大鴻基가 安士健의 誣訴를 因호야 本部訓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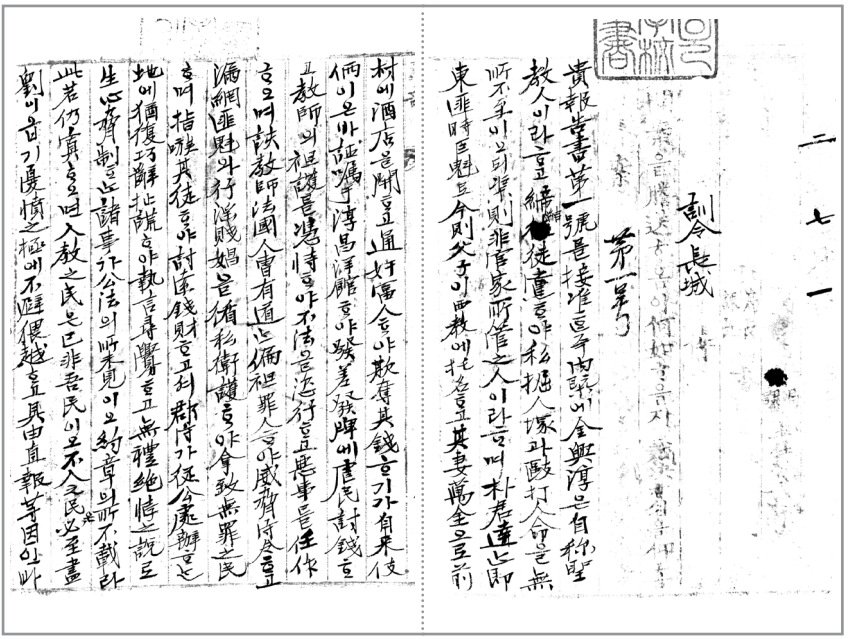
을 承准호야 該府에 滯因호옵아 處辦호事로 已於郡에 確認호
비라 而在甲午東匪之時에 安士健門族이 化家黨魁호야 校火於
鄕校及書院이오며 安貞駿公位版이 亦在其中矣라 安姓之爲其
子孫者以人爲性으로 胡至此不法이리잇고 一鄕士民이 莫不痛憤이옵
아 衆議以爲洙泗之源은 不可泯滅이라호야 修正舊案이오되 鄕案
儒錄은 搜濟於書院舊藏及儒林中抄供호야 謄錄本正案이 自是
無一他差錯이옵기 生等은 安士健等이 出沒京鄕에 勢莫敢何이리
니 乃以構捏之說로 稱曰渠之先祖가 失序라호야 呈於營訴이 此彼
何萬不當之事乎잇가 大凡儒家之崇師之義는 一般이온즉 寧有是
理이잇가 且況 正廟之日에 非一二人所幹이오 本非有貶擅便이라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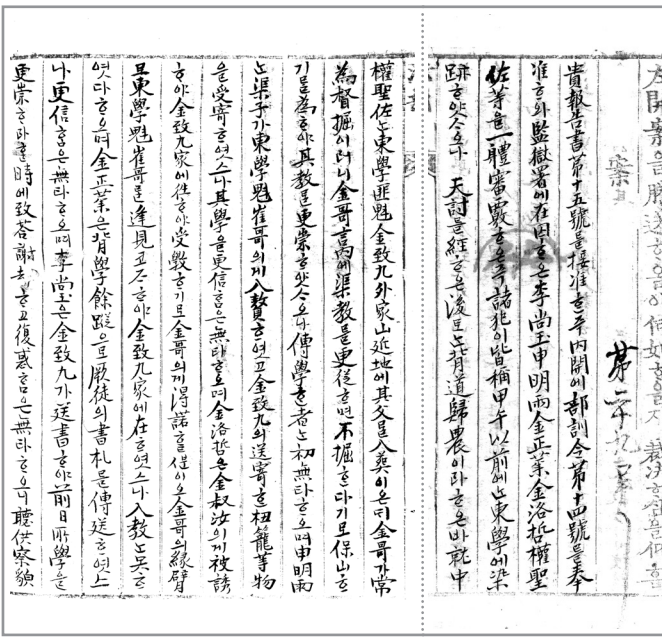
鄕儒鄕이 共同爛商호야 謄本修案에 以有何錯誤이며 爲貞
陵公後裔妄姓者哉有某先之義則何不來參於正案之日이
며 且其慶招不來이라 反爲侵責於他人이오니 曉厥心腸則猶初
故로 生等은 不得不有所煩籲호야 冒瀆籍其先祖而侵虐外人之計를 是遣
此可知이오며 且以金嘉鎭之肆酒行悖로 執言則酗中狂妄은 來
知何端而設使審盖로 有所罪犯이라도 何關於矣이관데 使
八耋老人으로 至此橫罹호야 屢月滯囚케 호얏스니 豈不抑冤
乎아 特爲嚴飭放釋호심을 伏望等因이오며 據此查辦案決折
이 有何難便호야 拖至屢月이지 誠遑誠惶이라 玆以具狀 遞嚴
호야 果如狀辭이온 該因趙鴻基之從理公決호고 五金嘉鎭의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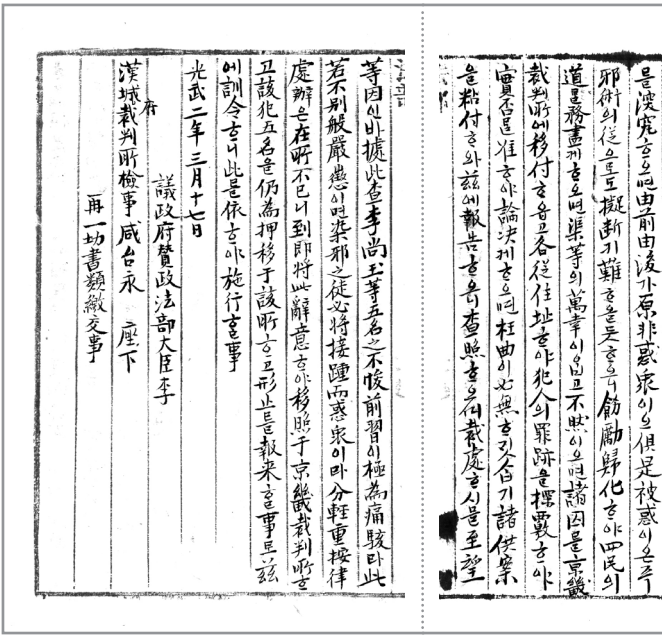
光武二年六月十八日起案
大臣 局長 課長 主任
副令忠南 件
左開書를 謄送하옴이 何如하옵지 裁決하심을 仰함
案
第四十一號
貴報告書第一百十五號로 接準함에 開에 本部甲號訓令을 承准하와 錚川郡에 拘束된 罪人 徐昌吉과 劉漢表等의 漏網東魁를 捉入取學함에 前後作梗한 情節은 各其取供한 後에 別錄 先呈하옵고 姑爲保放하옵고 供辭는 別錄
報告함에 此據하야 查錚川郡報에 劉徐兩犯의 詐多罪大함을 貴所深查하심에 即日自服이라 하오나 發訓棒招之後에 兩犯所供이 半吐半呑하야 所感이 僅止니 其在審充에 誰可決折가 到即訣兩犯하옵고 易行更查하와 按律馳報이며 保放한 曾束 先은 并稟 指實後 仍爲保放하옵事로 玆에 訓令하오니 此를 依하야 施行事
光武二年六月十八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忠清南道裁判所判事鄭崑永 閣下



二七一
副令長城
第一號
貴報告書第一號로 接準함에 開에 全與淳은 自稱望教人이라 하옵고 繞徒를 糾合하야 私拘人塚과 毆打人命은 無所不爲이오되 準則非官家所管之人이라는 叱 朴君達은 即東匪首魁로 今則父子가 西教에 托名하옵고 其妻 鳳金으로 前
材에 酒店을 開하옵고 通好偏人하야 欺奪其錢하옵기가 有來伎倆이온바 誣濁淨濁 昌洋館하야 發差發牌에 庶民討錢하옵고 教師의 袒護를 憑恃하야 不法을 恣行하옵고 惡事를 任作하오며 缺教師法國人會有通하옵고 偏袒罪人하야 威脅侍令하옵고 漏網匪魁와 行淫賤娼하옵고 循私衛護하야 會致無罪之民을 하여 指嗾其徒하야 討索錢財하옵고 到處가 從公處辦하옵고 地에 猶復巧辭比號하야 執官尊嚴을 不顧無禮絶悖之說로 生心作劇하옵고 諸事가 公法의 所未見이오 幼章의 所不載라 此若仍置하오면 入教之民은 已非吾民이오 不入之民은 必至盡劇이옵기 憤慨之極에 不暇偃蹇하옵고 其由直報事因이 此



光武二年三月十七日起案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韓止洞
訓令漢裁 件
左開案을 謄送하옴이 何如하올지 裁決하옵심 伏望
案
貴報告書第十五號를 接准하온 本內開에 部訓令第十四號를 奉准하와 監獄署에 在囚한 李尙玉申明兩金等 案金洛祖權聖佐等을 一體審覈하온 事諸犯이 皆稱甲午以前에 在東學에 染跡하였사오며 天討를 經하온 後로 改悔歸農이라 하온바 就中 權聖佐는 東學匪魁 金致九外家山延地에 其父로 入葬이온즉 金哥가 常為看護이라 하나 金哥는 卽渠魁 金致九의 從兄으로 保山을 其基地로 하야 其敎를 更崇하옵거늘 傳學者는 初無하온지라 申明兩金은 渠子가 東學匪魁 崔哥의게 入贅하였고 金致九의 送寄한 柑籠等物을 受寄하였으며 其學을 更信하온 無疑하온즉 金洛祖는 金敎汝의게 被誘하와 金致九家에 往來하와 受敎하기로 金哥의게 渭話를 往하온 金哥의 緣脣로 東學匪魁 崔哥를 逢見하온 金致九家에 在하였으며 入敎하였다 하온즉 金正集은 비록 學餘踪으로 厥徒의 書札을 傳送하였다 하나 更信하온 無하온즉 李尙玉은 金致九가 送書하온 前日 所學을 更崇하온 時에 致答謝去하온 後로 蔵하온 無하온지 聽供案貌



호온즉 俱是蠢愚이온바 權聖佐段은 復向詐術이 極涉痛惡이오나 其心이 實由為先이온즉 其情을 究호온즉 可原可矜이온즉 申明兩段은 敎子以不義호 責을 難免이오나 現法則 無擬이온즉 其餘는 或傳書札 或約繳學而已을 是乎旀 諸犯의 行為를 據實호온즉 由前由後가 原非惑衆이오 俱是被惑이온즉 邪術이 從을 是擬斷키 難호온 是乎旀 勵勵歸化호와 四民의 道를 務盡케 호온즉 渠等의 萬幸이옵고 不然이오즉 諸囚를 竟致 裁判所에 移付호옵고 各從住址호와 犯人의 罪跡을 標覈호와 實狀을 粘付호와 玆에 報告호옵니 查照호옵신 後裁處하시옵심 至望

等因이온바 據此查李尙玉等五名之不悛前習이 極為痛駭하오며 此若不剔除嚴懲이오면 渠那之徒必將接踵而惑衆이오며 分輕重按律處斷은 在所不已이나 到即將此辭意하와 移照于京畿裁判所하옵고 該犯五名을 仍為押移于該所하옵고 形止를 報來호 事로 玆에 訓令하옵나니 此를 依하와 施行호 事

光武二年三月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李

漢城裁判所檢事 咸台永 座下

再一切書類徵交事

纖芥之痕則汝父之死를 何為指目於我乎叫為父報讐亦何等大事而忍以私疑之端으로 五年前에 呈訴無罪之鄭旼而勘配旋宥호고 今於四年之後에 謂以旌等之書名으로 執挺告之旌兄弟者果出於為父復讐之心乎아 金相什答曰汝若無罪면 其特狀頭를 指示則吾當捨汝云云이라 이는 此事係命案이라 不可不審慎故로 屢回查覈에 一切如是이오 叫發兩說則金相什等段은 為父報讐에 不可以然疑로 執贓이 自立且狀頭指示之說이 綻露於面貢之場則其不分明認得을 推此可悉이오 叫閔桂若等段은 有故揭榜이나 家行甚嘉而初不主謀則不可以旌等之書名으로 做成廕階의 事合有參酌之道이오 其他에 臚列報告호 事는 查照호 事로 指令호이 是望호노라 等因이라 此를 查호니 金欽報讐는 理雖當然이나 閔旣無犯호니 有何可究리오 在囚閔桂若等은 到卽放釋호며 金相什等은 曉喻退送호 事로 玆에 訓令호노니 此를 依호야 施行호이 可喜

建陽二年八月十四日

光武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

慶尙南道裁判所判事 曹始永 閣下

光武二年二月 日 起案

協辦 局長 課長 主任 韓止洵

訓令 漢城裁判所件

左開案을 謄送호오니 照호야 何如호을지 裁決호심을 仰호옵

案 第十四号

警務使李忠求의 報告第十号로 接准호온 內開本月十日에 部吏 劉孟承이 漢城에 開視警廳 金敎憲의 利川郡에 潛類를 捉因호야 押上棒招等因이온 即派巡檢호야 郡廳에 現

賢宜似繫國事犯以之以本所宜升擅斷宜可難宜旨可
諸犯與前後供案加細攷察務歸明確以憑核辦宜
尼宜粘聯宜外緣由宜茲叫報告宜以查照宜施行宜
庶宜合宜並望宜等因到此查宜情送之言宜
縱有告發以晚無確據宜以遽難以國事犯之立
擬論叫叫詐稱[illegible]宜專[illegible]惑衆之金亦自服宜決
宜到即放[illegible]等宜自 貴所宜分輕重擬照宜事
宜[illegible]叫訓令宜以此宜依宜施行宜叫可宜
建陽二年八月六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臣韓

漢城裁判所檢事韓鎬敎 壁下

光武元年八月 日起案 月 日可決
光武元年 月 日施行

大臣 協辦 局長 課長 局 課 主任鄭寅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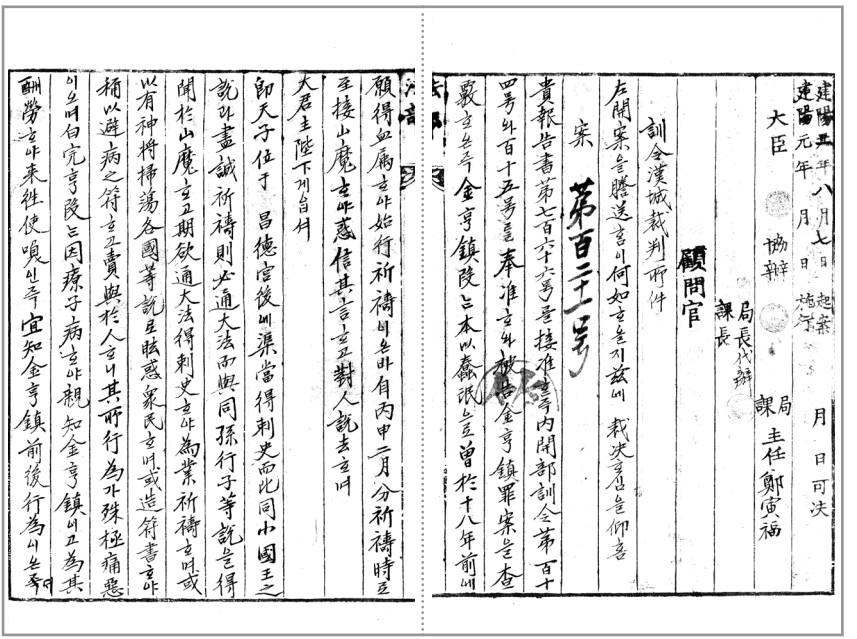
顧問官

訓令慶南道裁判所件

左開案宜謄送宜叫何如宜者叫茲叫 裁決宜合宜何宜
案

貴報告第十一号宜接准宜李內繫部訓令第十五号宜承
准宜外閔桂若閔姓彦梁先文三漢宜刑服詞挺則梁先文段
宜東徒後不知去處宜旨立閔桂若閔姓彦俟捉来故宜與

狀民金使并第相升奎升宜貢查則相升等供內矣父升宜甲
午年亞首時叫被害於民乱叫乘陽誰某之手犯宜雖不目
擊宜斗有一可據宜叫其時乱民旗竿叫書以狀頭閔桂若閔姓
彦叫升宜矣父之死升非渠伊誰引宜以雪幽明之冤
叫叫叫宜立閔桂若等供內民擾發通之初叫矣身叔父升年
卻行高宜叫為一門長故宜招諭矣等曰以閔為姓者升若
衆於民擾宜同當剳名於宗案云而即為揭榜於閭里叫出
示矣等宜初無干涉於民擾叫省出若衆狀頭則有何旗竿
書名之理乎叫此必乱民輩升舍嫁於矣叔之揭榜而以為看渝之
計叫出叫閔桂若叫叫宜相升曰宜與汝宜有仇萬之誼宜立無



建陽五年八月七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決案

大臣 協辦 局長代辦 月 日可決
局長 課長
課 主任 鄭寅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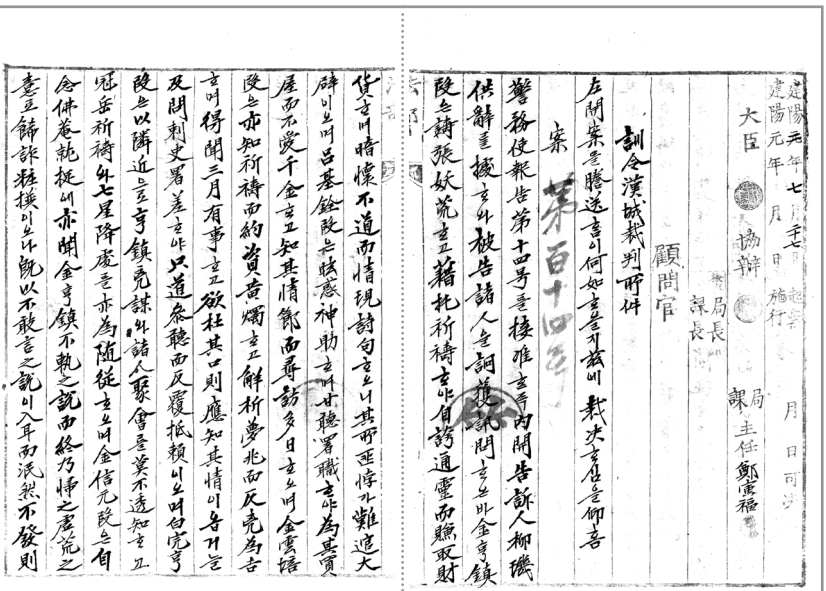
顧問官

訓令漢城裁判所件

右開案合謄送事이 何如事오 茲에 裁決事를 仰告
案 第百二十五号

貴報告書第七百六十六号로 接准事이 內開 部訓令第百十
四号에 百十五号로 奉准事에 依하야 金亨鎭罪案을 查
覈事오 金亨鎭은 本以蠢氓으로 曾於十八年前에

及到查庭事하야는 依警供輸款於初招事오 遽然變供於
再問事하야 以眩徵情事에 不稱得聞金亨鎭爲刺史之
說이라事이 該犯이 變幻供辭가 極涉痛惋이오며 呂
基銓은 由醫覩癤事하야 給價用藥事에 厚施酬勞
이오 初惑其言事오 堅買符書라가 竟知虛狂事오 仍爲
統率事에 與之며 金雲培은 欲治子病事하야 得知金亨鎭
이오 或有再邀이오나 得聞虛誕之說事에 見其操行之不
精事오 擧責絶交이오며 至於解夢一款事는 乃是例言
荅辭者이오며 初無納財施助이오며 金信元은 是有髮僧
으로 藏跡沙門事하야 曾聞金亨鎭荒狂之說事오 雖不察
其行藏이나 本無共謀이오니 無足深責이오며 小閘利仁聖
은 是徒弟僧이오라 隨行이 不久事하야 未認金亨鎭之因何
祈禱이며 且僧法天은 初不知金亨鎭祈禱委折이오
今別無深究者이오며 告發人柳璣은 金亨鎭의 妖荒
言事으로 巡檢金泰主에게 得聞事오며 爲探真跡事하야 往見金
亨鎭事오며 示以親密事오며 期於助財事하야 探得金哥已
誹情節事오며 聞錄供告이오니 頑彼亨鎭이 亦吐輕
重事하야 專事粧撰이오니 極爲巧惡이온지라 柳璣의 錄告
口供을 聽准事하옵고 金亨鎭의 行爲를 姑置事오며 問金犯
이 必有狂譎之計와 悖逆之言이온즉 雖無自服이오나 此



建陽元年七月壬午朔 起
建陽元年 月 日 施行 月 日 可沙

大臣 協辦 局長 課主任 鄭憲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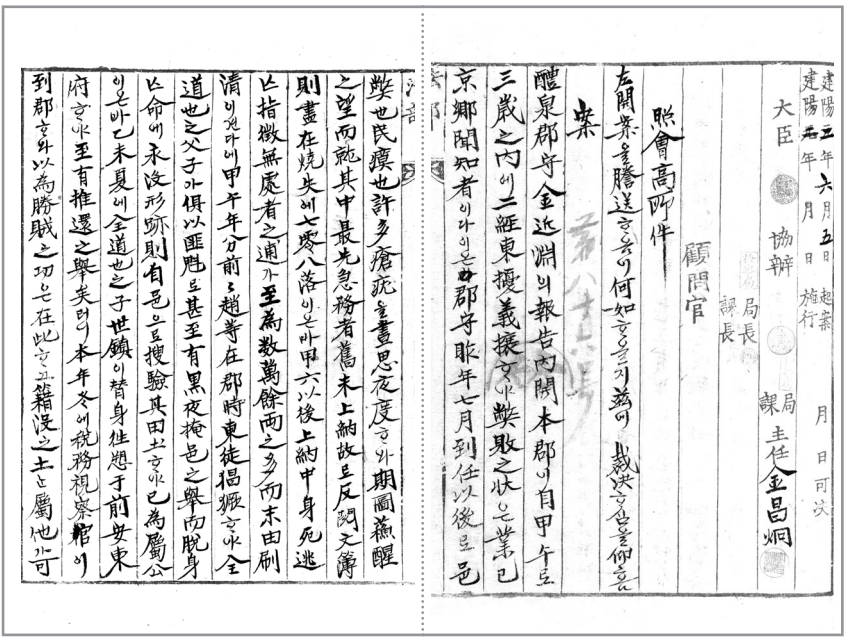
顧問官 協辦 局長

訓令漢城裁判所件

左開案之謄送事이 何如호오릿가 該所 裁決事宜를 仰喜

案 第百十四號

警務使報告第十四号를 接准事를 內開告訴人柳磯
供辭를 據호온바 被告諸人을 訶護訊問事로 此金宇鎭
段을 鑄張妖荒호고 藉托祈禱事로 自誇通靈而騙取財
貨事이 暗懷不道而情現詩句호고 其所亞悖가 難逭大
辟이오며 呂基銓段은 眩惑神助호야 甘聽署職事로 爲其貿
屋而不愛千金호고 知其情鄙而專訪多日호야 金雲娟
段을 亦知祈禱而約資音燭호고 解祈夢兆而反免爲古
事이며 得聞三月有事호고 欲杜其口則應知其情이옵기로
及問刺史署差事로 只道衆聽而反覆抵賴이오며 白完亨
段을 以隣近으로 宇鎭免謀外諸人聚會를 莫不透知호고
惡於祈禱外七星降處를 亦爲隨從호오며 金信元段은 自
念佛庵執捉이온 亦聞金宇鎭不執之說而終乃悔之處置之
意로 歸諉狡撲이오나 既以不服으로 言之說이 入耳而泯然不發則
此等所爲를 亦難衆怒이오며 僧法天段을 以念佛庵主
事로 混捉其中이오나 別無可問이옵고 小閹利仁聖
段은 以十六歲稚駭로 不必取供이오나 自廣州로 到處
祈禳이온 隨從使嗾則或可有證問之端이옵기로 右發告
柳磯及被告金宇鎭呂基銓金雲娟白完亨金信元
等을 並具供案事로 頭陀法天仁聖으로 合八人을 一切
押交事로 訓飭檢事로 擬有發示이나 未知題末則
想無可擾이옵기로 姑留差役事로 玆에 報告等因이옵
准此鹽徹署이嚴旨事로 該使道로 一切送交事로 判
飭押上事로 另行審覈事로 具供報來事로 玆에 訓
令事이니 照會施行事이옵기 合行
建陽二年七月二十七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 臣 韓
漢城裁判所檢事韓鎬敎 座下



建陽三年 六月 五日 起案
建陽 年 月 日 施行 月 日 可決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金昌炯

顧問官

照會高所件

左開案을 謄送하심이 何如하올는지 裁決하옵심을 仰하옵

案

醴泉郡守 金迈淵의 報告內開 本郡이 自甲午로 三歲之內에 二經東擾義擾하야 弊敗之狀은 業已 京鄕聞知者이거니와 郡守 昨年七月 到任以後로 邑

弊也民瘼也許多瘡疣를 晝思夜度하야 期圖蘇醒 之望而就其中最先急務者舊未上納故로 反覈之簿 則盡在燒失에 七零八落이온바 甲六以後上納中身死逃 亡指徵無處者之通가 至爲數萬餘兩之多而未由刷 清이오며 甲午年分前 三趙等在郡時東徒猖獗하야 全 道之父子가 俱以匪徒로 甚至有黑夜掩邑之擧而脫身 亡命에 未沒形跡則有邑으로 搜驗其田土하야 已爲屬公 이온바 未復에 全道之子世鎭이 替身往想于前安東 府하야 至有推還之擧矣러니 本年冬에 稅務視察官이 到郡하야 以爲勝賊之功으로 在此하야 藉浸之土로 屬他公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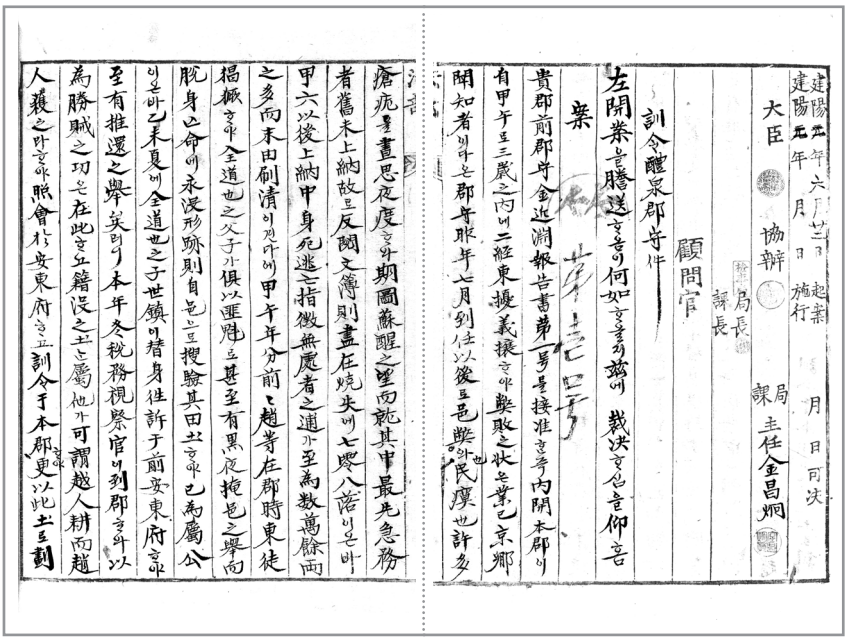
謂趙人耕而趙人穫之라 하야 照會於安東府하야 訓令 于本郡하야 更以此土로 劃付補之意로 成給完文이 有 在郡上故로 郡守其在爲上納刷還帳之地에 擬其所 在公蹟하야 以此由修報于觀察使하야 果爲從時價 放賣하야 已入于甲午結已上納中矣러니 冬良中에 龍 宮居南敬益從中突出하야 以已屬公充上納之 物로 省作奇貨하야 計劃世鎭하야 佯若買土하야 借 名世鎭하야 囑邑而未得信好하야 呈府而已判題決則 其過而退息이라가 挾嫌之慾이 揣摹僥倖하야 又呈京部 하야 至下訓令之鄭重하니 噫彼南民의 詐雖巧矣나 情固譎

矣라 此等挾雜之弊를 若不嚴加懲戢이면 法無可施之處故로 玆에 據實仰報하오니 照覈하심이 依律勘處하심과 俾懲悖習하심을 望하옵심 等因이온바 此를 查하오니 籍 沒屬公事는 已國不安當이오나 事案如何를 先須詳知 하야야 可以發訓이옵고 厥初南敬益이 上訴가 在於何時이 오며 貴所聽判은 如何를 消詳 來明하심과 本大臣 旬教를 承하야 仰佈하오니

照覈하심을 要함

建陽二年 六月 五日 法部檢事局長 申載永

高等裁判所判事 兪箕煥 閣下



建陽二年六月廿三日 起案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局課 主任 金昌炯

局長 課長

顧問官

訓令醴泉郡守件

左開案牘謄送事宜如何事理玆以 裁決事飭仰事

案 [illegible]

貴郡前郡守金述淵報告書第 号準接准事內開本郡內有甲午三歲之內二經東擾義擄事飭聚收之狀牒案已京鄕聞知者以下至郡守自 年七月到任以後至 邑弊以民瘼也許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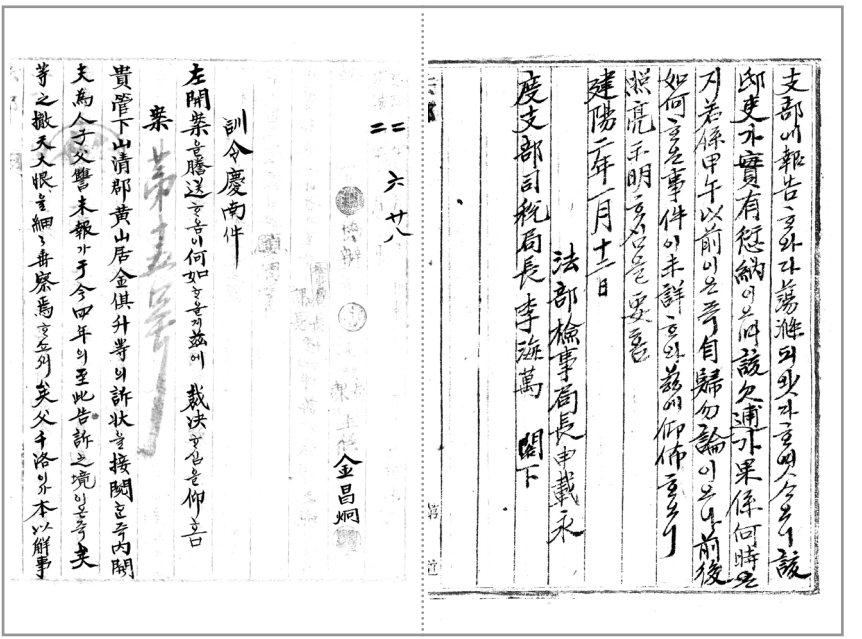
瘡疣畫思夜度事外期圖蘇醒之望而就其中最先急務者舊未上納故反閱文簿則盡在燒失中七零八落以下叶甲六以後上納中身死逃之捐徵無處者之通加至萬數萬餘兩之多而未由刱清以前甲午年分前之趙等在鄕時東徒搆禍事外全道也之父子仆俱以匪黨至有黑夜掩邑之擧而脫身亡命中永沒形跡則自邑立捜驗其田土事外已為屬公以下叶未及中全道也之子世鎭中潛身往訴于前安東府事外至有推還之擧矣到中本年冬稅務視察官中到郡事外以為勝賊之功也在此事外籍沒之立屬他仆可謂越人耕而越人穫之叶事外照會于安東府事立訓令于本郡更以此立劃

付補通之意立成給完文中旬在郡上故是郡守其在為上納刱通帳之地中擬其所在公績事外以此由修報于觀察使事立果為從時價放賣事外已入于甲午結已上納中矣以下眼冬良中中龍宮居南敬益從中突出事外以已屬公免上納之物立者依奇貨立衒動世鎭事外伴若買立事稱名世鎭事外囑邑而未淂信奸事立星府而已判題決則匿其知過而退息中分事撐肚之慾以橋冀僥倖事外又呈京部事外至下訓令之鄭重事以嚮彼南民以詐雖巧矣情固譎矣叶此等挾雜之弊是若不痛加嚴懲中則法無可施之處故立玆中據實仰報事以照亮事向依律勘處事以伊懲悛習事是望事等因中此是宮以人全犯行悖加果有確據他罪固宜報中自當隨後隨勘事向外至於庄土之籍沒事叶新式中極涉無據事以該裁判所公決以有如此中格遵施行事中嗣後此等案件事擧報事時上貴觀察府是經事外轉報刊事事立玆中訓令事此是依事外施行事向可事

建陽二年六月二十二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臣

醴泉郡守李寅燁 座下



支部에 報告ᄒᆞ야 다시 查覈ᄒᆞᆫ 後에 ᄯᅩ 다시 ᄒᆞᆫ 次 ᄉᆞᆼ 議ᄒᆞ야 ᄒᆞᆫ 事件에 ᄒᆞᆫ 번 ᄒᆞᆫ 번 ᄉᆞᆼ 議ᄒᆞ야

호며該供의稱冤은證憑이全無호고劉犯의罪狀은曹京先의供辭에已著호얏고曹京先段之劉犯供內에稱儒徒率領砲軍호고勒奪矣妥이라호얏스니何無一次對質호야結辭成案인지該三犯을另加嚴覈호야從實得情호기로此는該犯等이一向不服호고亂昧호야確據를憑詳取質호야具案報來호야以便歸決홀事로玆에劄合호오니此를査照호야施行호심이可홈

建陽元年十二月二十一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

忠淸南道裁判所判事李乾夏閣下

建陽二年 月 日 起案
建陽二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局長 課長 局 主任 鄭萬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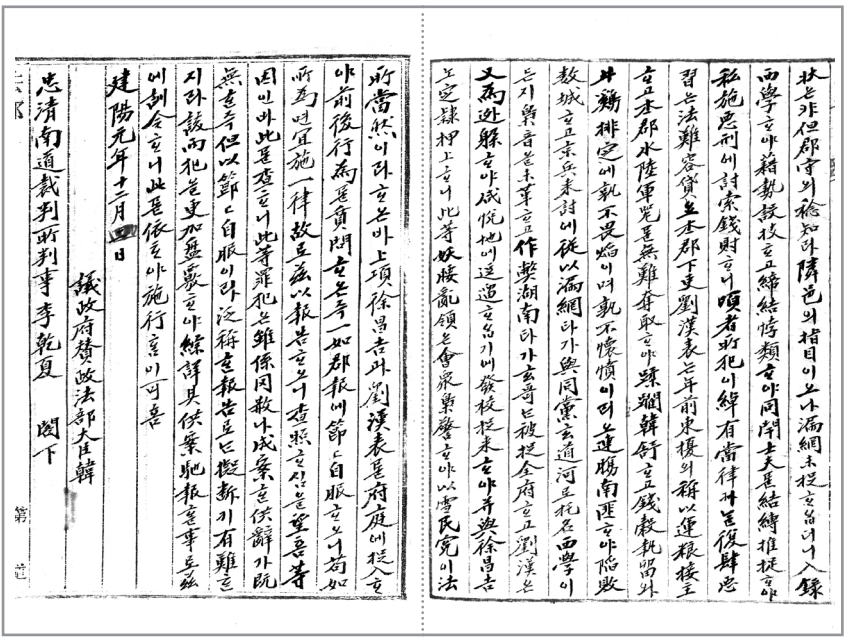
顧問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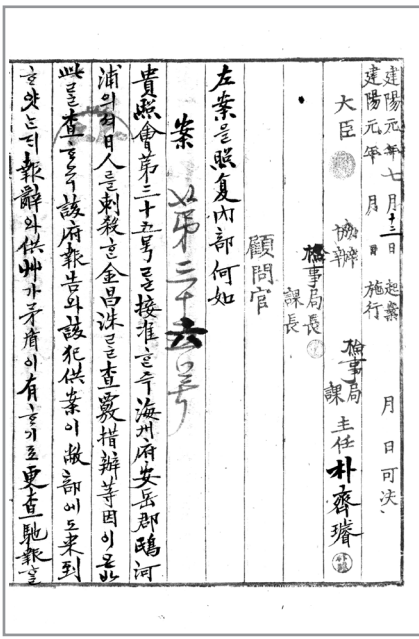
左案照會度支部何如

案

槐山郡下吏金海鵬의訴狀을接호즉호니內開에槐山郡이甲午十月分東徒作梗時에各項文簿燒火로以本郡에付報告를未詳이호야京邸吏의게相左된事를乙未八月分에上來歸正安帖호얏고又호야未納公錢之昨年

에度支部에報告호얏다湯滌되야合出되今忽丙申十月分에本郡에付忠州觀察府에劄合호심을付公納對貢之歸正次로上使호야호얏다公納對貢之事가無호야度支部文蹟을粘連仰訴호기로洞燭事狀호심付要查劄合호야毋至侵漁之地伏祝이라호기로此를查호즉此案의乙未七月九日에各邑公納中怠滯不納之京邸吏와京差人姓名을送來호기로槐山郡色吏金海鵬이亦本郡邸吏鄭鎭煖과對質호事가有호기로訓飭押上케호야今合出호기로現捉該訴狀內에昨年에度





建陽元年七月二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月 日可決

大臣 協辦 檢事局長 課長 主任 朴齊璜

顧問官

左案을 照覆內部何如

案 第三十五號

貴縣會第三十五號을 接准호즉 海州府安岳郡鴨河浦의 召日人을 刺殺호 金昌洙를 查覈措辦等因이온바 此를 查호즉 該府報告와 該犯供案이 俱部에 來到호얏고 報辭와 供案에 不齊處이 有호기로 更查馳報호

建陽元年七月九日 法部大臣 韓

海州府觀察使署理參書官 海州裁判所檢事 金孝益 座下

事로 該府에 案發訓令호얏다가 玆에 照覆호오니 照亮호심을 要호오

建陽元年七月十三日

內部大臣 朴定陽 法部大臣 韓

署理內部協辦 申應澈 閣下

建陽元年七月八日 起案
建陽元年 月 日 施行 月 日可決

大臣 協辦 局長 課長 主任 郭鹿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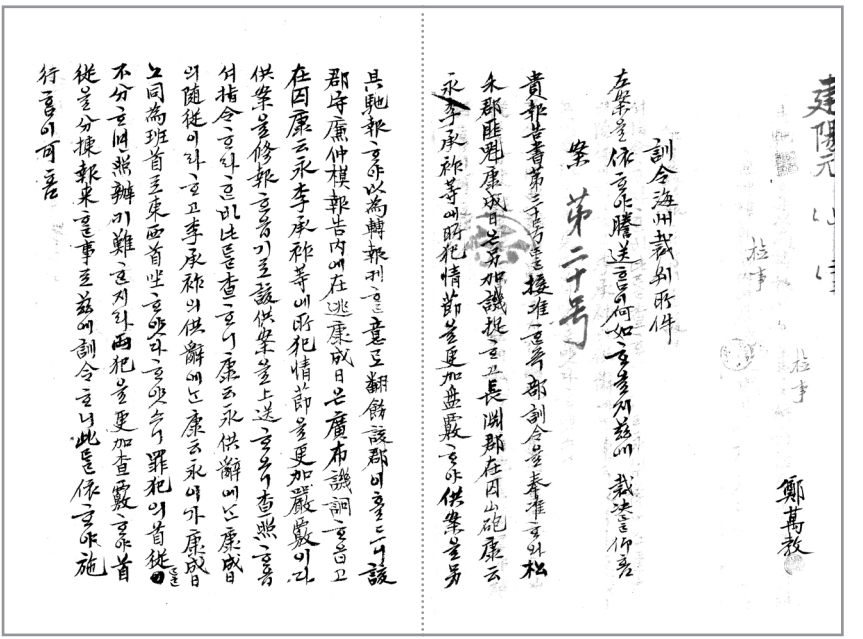
顧問官

訓令忠淸南道裁判所件

左案을 依호야 聽送호심이 何如호온지 玆에 裁決을 仰호옵

案 第四十號

貴報告書第八十三號를 接准호즉 內開에 舒川郡守 柳基南의 報告書를 接准호온즉 本郡民 徐昌吉이가 年前 東援에 投名脫黨호야 淩虐官長호고 侵虐平民호야 辭舒向邑을 騷擾호얏슬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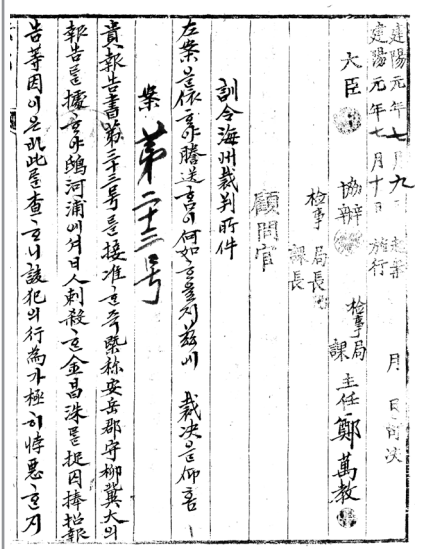


建陽元年 月 日 施行
檢事 局長 課長
鄭萬敎

判事
判事

建陽元年 月 日
法部大臣 臣 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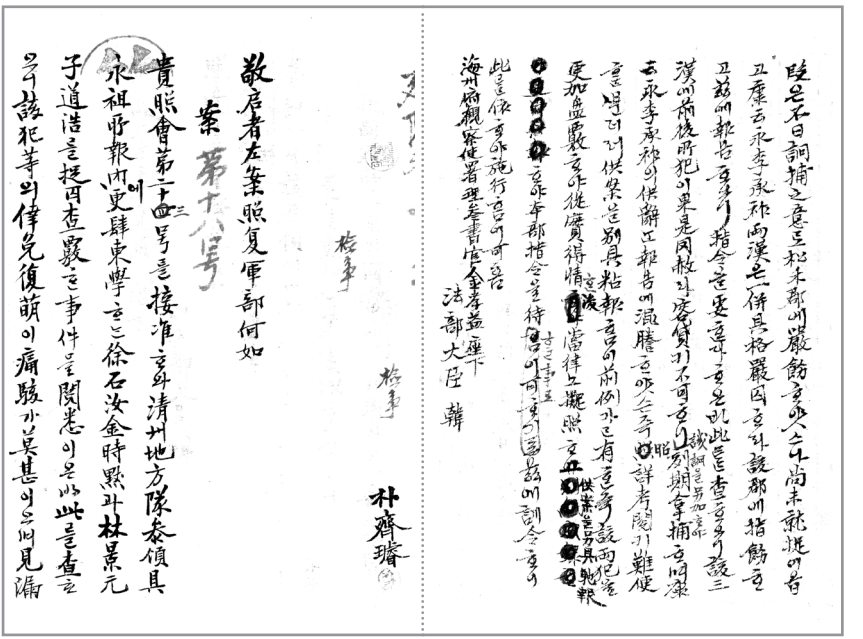
建陽元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檢事局 課 主任 鄭萬敎
檢事 局長
顧問官



近地에 前日亜魁 徐石汝 金時默 林景元等이 潜跡來往하며 更聯東學하야 普通設接하야 容送兵丁하야 徐石汝 金時默과 林景元의 子道浩를 招來하야 三漢家에 入東學文書와 所用諸具를 搜覓現納故로 查閱하니 所謂東經大全一卷은 出於徐漢家라 하고 猫布冠二件과 東經大全一卷과 今年二月出送 敎通謄書冊子一卷과 甲午年의 東徒縱橫하던 名帖等雜蹟은 出於金漢家라 하고 今年二月出敎通元本은 出於林漢家라 하고 且兵丁口告內 徐石汝家 後院에 精舍設爐하야 爐未冷而香甚多라 하고 三漢은 挺入宛問하니 徐石汝所告內 實以巨魁 孫士文으로 內接主로 逃躲潜伏하야 今年 正月 初旬에 始還家하야 聞其接則禁錮之下에 豈敢更爲東學이리오 東經大全은 曾前所存者이오 到還接後未及出業하야 尚在家中이오 後院香爐는 果非矣身所設則莫知其故이오 且既有入聞하야 至此被捉하니 無所發明이라 하고 金時默所告內 矣身도 亦以孫士文으로 內接主로 避身深山하야 還接後 徐石汝가 更起東學하니 是乎矣身이 以通하야 二月十日에 徐石汝家의 設致誠하니 是乎矣身이 雖未往參이나 巨魁 姜采西가 種이라 往來하야 與徐石汝家 後院에 精舍設爐하야 姜采西가 主張이오 家中所在 東學諸物은 盡是姜采西의 所為라 하고 寅라 하고 指東指西에 耐刑不告하니 林景元子道浩所告內 矣父가 久為逃避하야 近雖往來나 恒不在家하니 敎通은 徐石汝가 送通하야 留寘하고 矣父는 實不知事故라 하고 徐金兩漢之袒拾執贓이 如是的確하야 合寘重辟이오 而林道浩는 年幼浸覺하야 次知로 捉來하니 矣身은 合有分揀이라 查照指令하야 三漢의 罪犯이 貴部에 關到하야 刑案이 昭昭하니 虎毒은 不食子하고 此를 查하야 右三漢의 所犯은 暴刻을 容貸키 不可하야 審克하야 道에 啄忽을 憲가 不無하야 至軍部에 知照하야 該案領에 前劄飭하야 該犯等을 貴部에 拿付하야 押到之後 無論緩急하고 更加嚴訊하야 實捧招供하야 案을 另具하야 一面 謹據하야 物量一切上送하야 本部指令을 待하야 事至施에 劄令하야 此를 依하야 施行하야 可하야

公州 裁判所 判事 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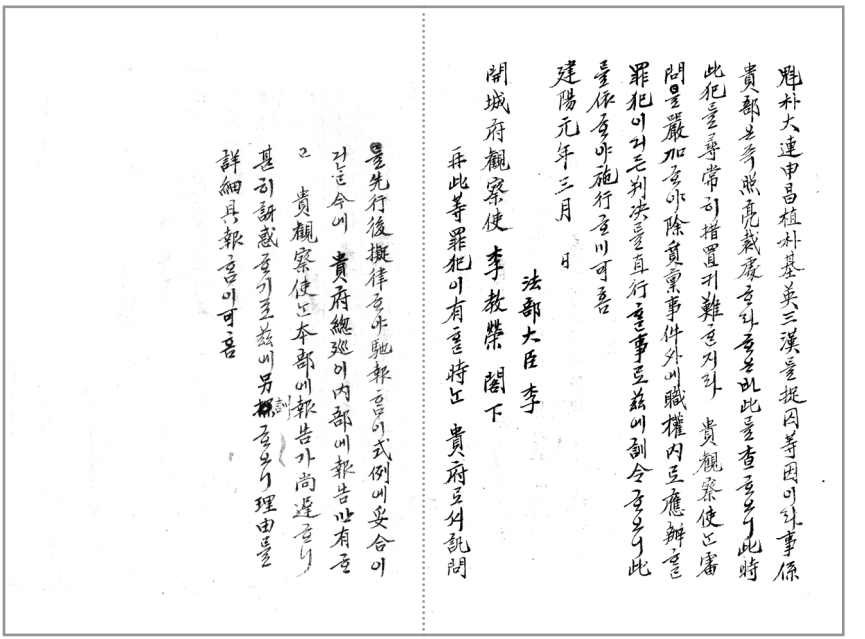
法部大臣 韓 座下



旋捉到理斷公至라國當即地勘斷이온후命案攸關
이온즉審查를更加호야淩雲次호옵고
貴部로셔該參領에게訓飭호옵셔該犯等을
拿付케호옵심을要호옵고茲에照覆호옵나이다
照覆호옵는務望호옵
軍部大臣李允用 閣下
法部大臣韓

敬啓者左案照覆軍部何如
案第十八號
貴照會第二十四號을接准호야淸州地方隊參領具
永祖等報內吏肆東學도之徐石汝金時默과杜景元
于道浩을捉囚查覈호事件을閱悉이온바此을查호
오니該犯等의偉兇復萌이痛駭가옵고甚히見漏

訓令公州件
左案을依호야謄送호오니何如호옵실지茲에裁決
을仰호옵
案第二十五號
軍部大臣照會第二十三號을刻准호온후內開에即接
淸州地方隊參領具永祖第十一號報告內淸州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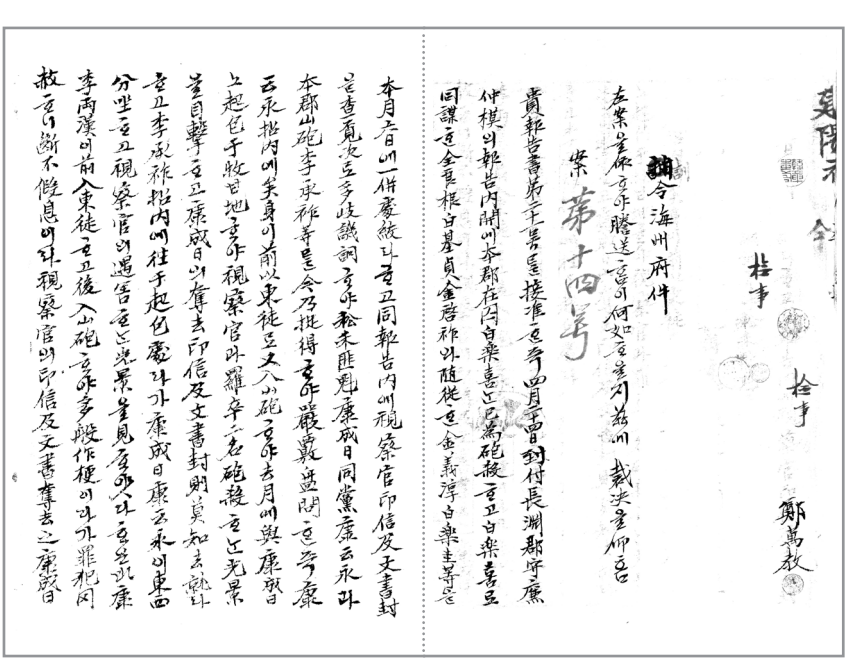


雖朴大連申昌植朴基英三漢等捉囚等因이有事係
貴部之事照覆爲旀事段此是查事之乙此時
此犯是尋常히措置키難事지라 貴觀察使ᄂᆞᆫ審
問ᄒᆞᆫ後嚴加ᄒᆞᆫ後에除貢稟事件外에職權內로應辦ᄒᆞᆫ
罪犯이라ᄃᆞᆫ判決ᄒᆞᆫ後行ᄒᆞᆫ事로茲에劄令ᄒᆞᆫ乙乙此
是依ᄒᆞᆫ後施行ᄒᆞᆫ이可喜
建陽元年三月 日

法部大臣 李

開城府觀察使 李教榮 閣下

右此等罪犯이有ᄒᆞᆫ時ᄂᆞᆫ 貴府로서訊問
ᄒᆞᆫ後行後擬律ᄒᆞᆫ後ᄂᆞᆫ馳報ᄒᆞᆫ後이式例에妥合이
ᄀᆞᆫ은今에 貴府總巡이內部에報告ᄒᆞᆫ後有ᄒᆞᆫ
ᄃᆞᆫ 貴觀察使ᄂᆞᆫ本部에報告가尙遲ᄒᆞᆫ乙乙
甚히訝惑ᄒᆞᆫ乙茲에另飭ᄒᆞᆫ乙乙理由ᄂᆞᆫ
詳細具報ᄒᆞᆫ後이可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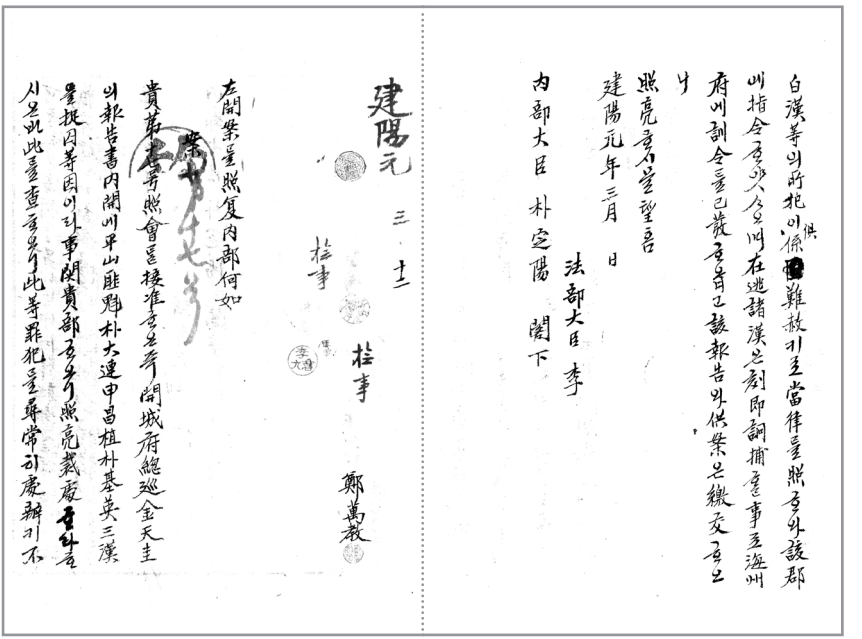


第二號 令

訓令海州府伴

奏案ᄂᆞᆫ依ᄒᆞᆫ後謄送ᄒᆞᆫ後이何如ᄒᆞᆫ事乙茲에 裁決ᄒᆞᆫ後이
奏 第十四號

貴報告書第二號ᄂᆞᆫ接准ᄒᆞᆫ後乎四月二日에付長淵郡守康
仲模의報告內開에本郡在囚白樂喜ᄂᆞᆫ昨砲殺ᄒᆞᆫ後로白樂喜로
同謀ᄒᆞᆫ後金基根白基貞金啓祚等ᄂᆞᆫ隨從ᄒᆞᆫ後金義淳白樂喜等은
本月二日에一併處絞ᄒᆞᆫ後로同報告內에觀察官印信及文書封
ᄂᆞᆫ遺覓ᄒᆞᆫ後로多岐識詞ᄒᆞᆫ後이未能塊康成日同黨康云永과
本郡山砲李承祚等ᄂᆞᆫ今乃拘得ᄒᆞᆫ後嚴覈盡問ᄒᆞᆫ後乎康
云永拘內에矣身이前以東徒로又入山砲ᄒᆞᆫ後去月에與康成日
ᄂᆞᆫ起包于牧白地ᄒᆞᆫ後觀察官과羅卒二名砲殺ᄒᆞᆫ後로光景
ᄂᆞᆫ目擊ᄒᆞᆫ後로康成日의奪去印信及文書封對로莫知去處라
ᄒᆞᆫ後로李承祚拘內에往于起包處라가康成日康云永이東西
分坐ᄒᆞᆫ後로觀察官의過客ᄒᆞᆫ後로光景ᄂᆞᆫ見ᄒᆞᆫ後이라ᄒᆞᆫ後로康
李兩漢이前入東徒ᄒᆞᆫ後로入山砲ᄒᆞᆫ後로多般作梗이라가罪犯同
救ᄒᆞᆫ乙乙斷不假息이라觀察官의印信及文書奪去之康成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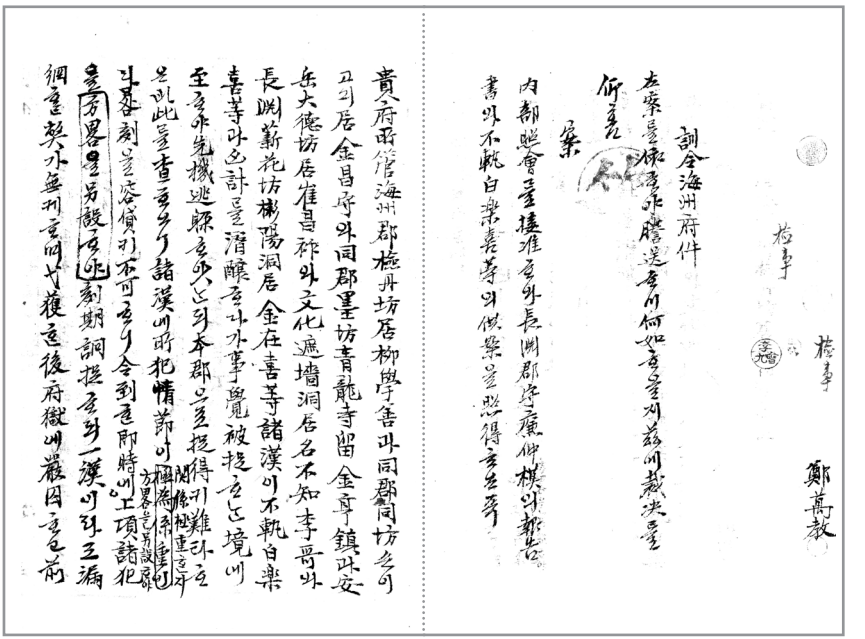


白漢等의所犯이係(供)
■難救刃至當律是照호外該郡
州指令호야八令호야在逃諸漢之劾即訶捕호事至海州
府에訓令호已蒙호旨之該報告外供案은繳交호오
니照亮호시望喜
建陽元年三月 日 法部大臣 李
內部大臣 朴定陽 閣下

建陽元 三 十二
校事 鄭萬敎
校事
左開案是照復內部何如
貴第■■照會是接准호오니開城府總巡金天圭
의報告書內開에平山匪魁朴大連申昌植朴基英三漢
是捉因等因이라事關貴部호오니照亮裁處■■호
시오며此호査호오니此等罪犯은尋常刃處辦刃不

可호故로審問是另加호야擬律馳報是事로該府
觀察使의게訓飭호旨之爲에照復호오니
照亮호시望要喜
建陽元年三月 日 法部大臣 李
內部大臣 朴定陽 閣下

校事 鄭萬敎
訓令開城府
左案是依호야謄送호旨何如호오리잇가裁決是仰
喜
案
令에內部大臣朴定陽의第十七號照會是接准호
開城府總巡金天圭第二等報告書內開에平山地匪



訓令海州府伴

左案查准本府長淵郡守廉仲模呈報

伴案

內部照會案准本府長淵郡守廉仲模呈報

書內不軌白樂喜等叛案查照得該

貴府所管海州郡梳井坊居柳學善以同郡同坊之

以居金昌序外同郡墨坊青龍寺留金享鎭以安

東大德坊居崔昌祚外文化遮墻洞居名不知李哥外

長淵薪花坊楸陽洞居金在喜等諸漢以不軌白樂

喜等以必討逆潛釀事覺被捉之地境內

至今未獲逃躲之狀已到本郡合行捉得刊難之

若此案查查之內諸漢內所犯情節內

斗案劇盜容貸刊不可之令到查即將內工項諸犯

劃期調捉之刊一漢內刊三漏

細查契外無內之時內捉送後府徵內嚴因事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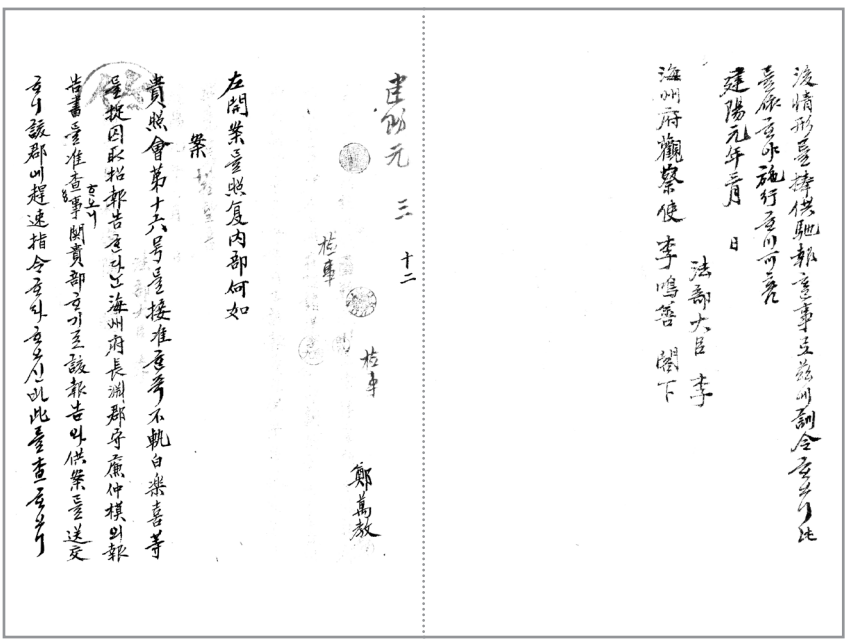
後情形查報供軌報案事左為訓令事

案係查永施行查內內

建陽元年 月 日

法部大臣 李

海州府觀察使 李鳴善 閣下



建陽元年 三 十二

左開案查照復內部何如

案

貴照會第十六号案接准

咨呈不軌白樂喜等

叛逆因取招報告

咨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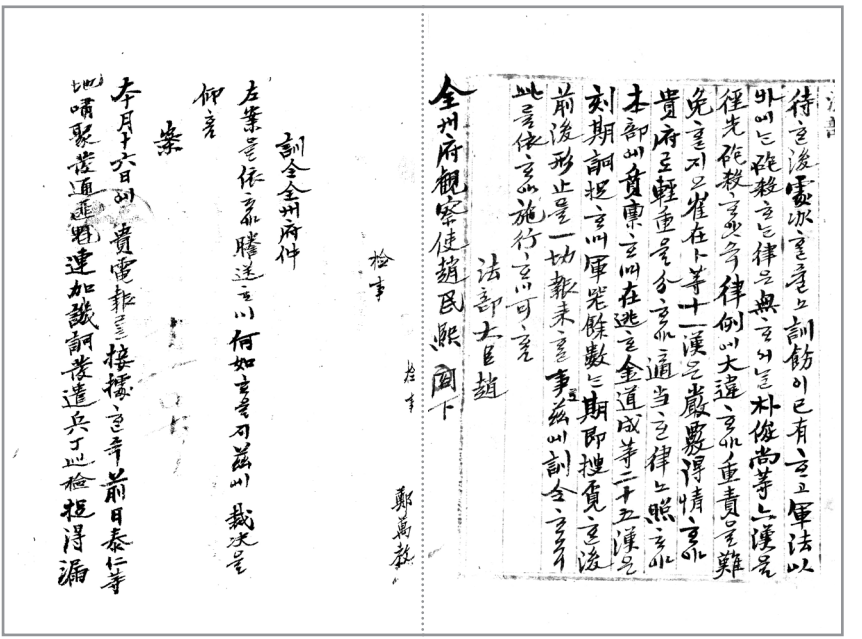
告書案准查

咨內貴部

咨以該報告內供案案送

咨到該郡內趕速指令

咨內此案查



待之後雲水之寺立訓飭이已有之고軍法以外에는施設之律은無之니是朴俊尙等上漢을徑先施設之罪로今律例에大違之事로重責을難免之지라崔在卜等十一漢은嚴覈得情之後에貴府로輕重을多少로通当之律로照之施行之事로咨覆之後에在逃之金道成等二十五漢을刻期訶捉之事로軍牢餘數로期即捜覓之後에前後形止를一切報來之事로咨請이라

此를依之施行之事로

法部大臣趙

全州府觀察使趙民熙閣下

檢事 鄭萬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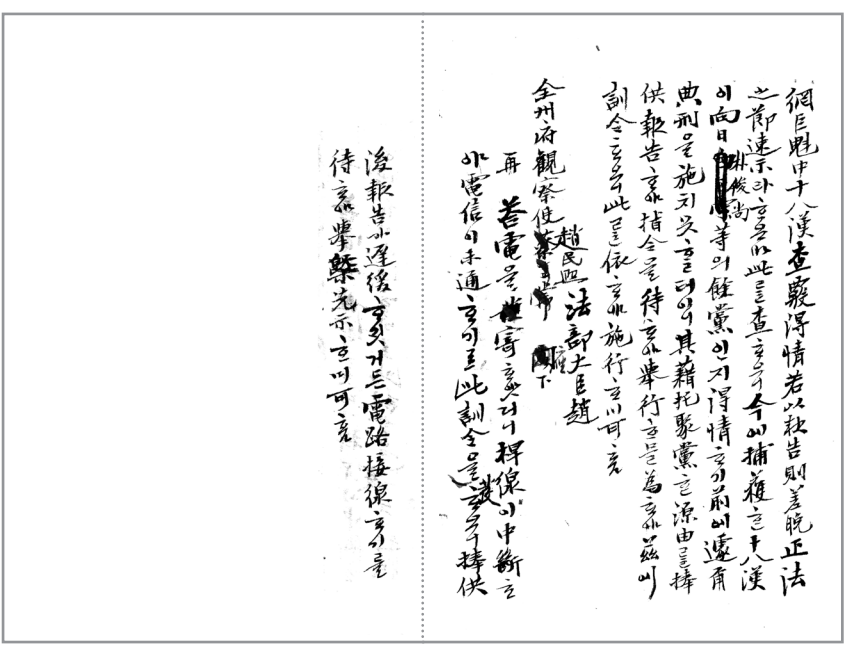
副全州府伻

左案을依例謄送之事로何如之를行移之事로

敎旨

奉

本月十六日에貴電報之事로接準之事로前日泰仁等地에聚徒通匪者를逮加誡訶後遣兵丁으로檢捉得漏



徑自施設之罪로今律例에大違之事로重責을難免之지라崔在卜等十一漢은嚴覈得情之後에貴府로輕重을多少로通当之律로照之施行之事로咨覆之後에在逃之金道成等二十五漢을刻期訶捉之事로軍牢餘數로期即捜覓之後에前後形止를一切報來之事로咨請이라

此를依之施行之事로

法部大臣趙

全州府觀察使趙民熙閣下

再

蒼電을準之事로라其線이中斷之

外에電信이未通之事로此副全을後之事로捧供

後報告之事로指令之事로

待之後擧行之事로爲旨之事로

奉

敎

先示之事로

檢事

檢事 朴齊璿

指令海州府伴

海州府報告書를 接准ᄒᆞᆫ즉 東匪 姜達祚 是 府獄에 嚴囚ᄒᆞ고 指令을 待ᄒᆞ라ᄂᆞᆫ 等因이온바 此를 查ᄒᆞᆫ즉 審愼이 不無ᄒᆞᆫ지라 供案을 上送ᄒᆞ라 指令ᄒᆞ심이 何如ᄒᆞᆫ지 伏乞ᄒᆞ옵심 裁決을 仰호

案

載寧郡下吏 姜達祚를 府獄에 嚴囚ᄒᆞᆫ 事로 舊曆十一月四日에 封疏ᄒᆞ야 報告書를 接准ᄒᆞᆫ즉 該犯이 重因이 既係ᄒᆞᆫ 律文이 隨重ᄒᆞ니 審愼이 不無ᄒᆞᆫ지라 供案을 詳錄上送ᄒᆞ옴이 擬照를 便제ᄒᆞᆫ 事로 伏심 指令ᄒᆞ심을

法部大臣

海州府觀察使 李鳴善 閣下

檢事 朴齊璿

訓令金州府伴

右案을 依ᄒᆞ야 訓令ᄒᆞᆫ심이 何如ᄒᆞᆫ지 伏심 裁決을 仰호

案

本月十日에 貴報告書第一号를 接准ᄒᆞ야 名考ᄒᆞᆫ즉 本府警務廳補 金漢敎의 執告書를 准査ᄒᆞᆫ즉 兵丁은 謀換ᄒᆞ옴에 史枝에 敢憾ᄒᆞ야 東匪 餘黨을 締結ᄒᆞ옴에 軍器를 藏匿ᄒᆞ고 斐文 掛榜ᄒᆞᆫ 등 府下 悖類 朴俊尙 等 六漢으로 爲 砲殺ᄒᆞᆫ 後에 在卜 等十一漢은 次第 査覈後 酌處 訓料ᄒᆞᆫ 金道成 等 二十五漢은 先捉 逃躲ᄒᆞ옴으로 不日 訓捕케 ᄒᆞᆫ 鎭衛中隊長 金潤昌은 悖類에게 兵丁 圍攻ᄒᆞᆫ 次로 行賂 先俾ᄒᆞ심이 證招가 丁寧ᄒᆞᆫ 立悖類의 任實ᄒᆞᆫ 軍器는 鎭衛隊로 先爲 推給이라 ᄒᆞᆫ심이 此를 查ᄒᆞ건ᄃᆡ 此等 悖類는 密偵키 不可ᄒᆞᆫ 死刑以上은 本部에 先稟ᄒᆞ옴이 指令을

送ᄒᆞᆫᄃᆞᆫᄃᆞ此ᄂᆞᆫ部令을不遵ᄒᆞᆫ을엿더ᄒᆡ該郡守의枉法之律은在所難免이ᄂᆡ刻即押上ᄒᆞᆫ後에兩犯段은更爲梳因ᄒᆞᆫᄆᆞᆫ本部照律是依ᄒᆞᆫᄆᆞᆫ揩雲ᄒᆡᄒᆞᆫ事로洪州府에指令ᄒᆞᆫ이何如ᄒᆞᆫ지玆에裁決을仰ᄒᆞᆫ

案

韓山郡守報告書를頃接ᄒᆞᆫ즉該郡亞賴金善在徐可良이東學의首倡ᄒᆞᆫᄆᆞᆫ行悖가無常ᄒᆞᆫ가ᄒᆞ西學을依藉ᄒᆞᆫᄆᆞᆫ惡習이尤甚ᄒᆞᆫ지라郡獄에梳因ᄒᆞᆫ바嚴警을請ᄒᆞᆫ즉ᄒᆞᆫ가ᄒᆞ命案至重ᄒᆞᆫ지라捧供馳報ᄒᆞᆫ가指令ᄒᆞᆫᄆᆞᆫ이ᄂᆡ該犯을又接을ᄒᆞᆫ즉賓貸을請ᄒᆞᆫᄆᆞᆫ이前習을不悛ᄒᆞᆫ고吳應老家產을打破ᄒᆞᆫ錢幾百兩을討索ᄒᆞᆫ바ᄂᆡ宦庭에狼噬ᄒᆞᆫ즉ᄒᆞᆫ가ᄒᆞ罪實難赦ᄒᆞᆫ지大明律田宅條에典賣人口ᄆᆞᆫᄆᆞᆫ詐賦准竊盜論大典會通推斷條에傷生이狼噬在上者杖一百流三千里今用律에照ᄒᆞᆫᄆᆞᆫ貴郡으로當次ᄒᆞᆫ後에形止馳報ᄒᆞᆫ바指令ᄒᆞᆫ즉ᄒᆞᆫ이ᄂᆡ該報로刻准ᄒᆞᆫ즉ᄒᆞᆫ이部指令으로依奉ᄒᆞᆫ바該犯이既自知戮ᄒᆞᆫ고改過遷善ᄒᆞᆫ즉ᄒᆞᆫ고人命至重ᄒᆞᆫ이ᄂᆡ一律之命을容貸ᄒᆞᆫᄆᆞᆫ各別懲戢ᄒᆞᆫ後에嚴飭放送緣由로報告ᄒᆞᆫ즉ᄒᆞᆫ이此를查ᄒᆞᆫ즉ᄒᆞᆫ이金徐兩漢의罪犯은容貸ᄒᆞᆫ이不可ᄒᆞᆫ故로已爲照律ᄒᆞᆫᄆᆞᆫ使之憲次케ᄒᆞᆫ즉ᄒᆞᆫ이ᄂᆡ該郡守의前後所報가輕重不一ᄒᆞᆫᄆᆞᆫ准信키難ᄒᆞᆫ을엿더ᄒᆡ李部照律ᄒᆞᆫ後에擅自放送ᄒᆞᆫ즉ᄒᆞᆫ이ᄂᆡ該郡守의枉法을律은在所当勘이라李部拿覈懲辦ᄒᆞᆫ즉ᄒᆞᆫ이ᄂᆡ刻即押上ᄒᆞᆫ고違令放送ᄒᆞᆫ委折을私探報來ᄒᆞᆫ바金徐兩犯은貴府로更爲梳因ᄒᆞᆫ大抵本部照律을依ᄒᆞᆫᄆᆞᆫ雲次ᄒᆞᆫ事로玆에訓令ᄒᆞᆫ즉ᄒᆞᆫ이此를依ᄒᆞᆫᄆᆞᆫ施行ᄒᆞᆫ바可ᄒᆞᆫ즉ᄒᆞᆫ

法部大臣署理

洪州府觀察使李勝宇 座下

檢事

敬啓者左案通牒于漢城裁判所何如

案

韓用健와崔錫疇의事件文牘을繳交ᄒᆞᆫ즉ᄒᆞᆫ이照領ᄒᆞᆫ바是要ᄒᆞᆫᄆᆞᆫ玆에通牒ᄒᆞᆫ

法部檢事右長申載永

漢城裁判所檢事崔文鉉 座下

再韓用健保放狀을伴交ᄒᆞᆫ즉ᄒᆞᆫ이一切領收ᄒᆞᆫ

署理 檢事 辛成默

敬啟者左案訓令千海州府如何

案 順 卿

卿 貴第十三号報告을接准호온즉該案
郡報告內開에長連梧里浦日兵이東徒十三人을
捉付本郡호기에就其中九名이罪系固執호고邑
村民人이皆曰可殺이라호기로使義兵으로槍殺호고

該犯罪狀을成冊修報호오니기로該成冊을伴交
호여報告호라호오나此를查호온즉該犯의罪名
만有호고供案은無호니事涉疑忽이오니且況命案
의關係는律典의愼重이어늘該郡守가率爾이直行
호여시니該犯의實狀이果系應殺이라도該郡守의擅
殺之責은在所難免이라嚴將論勘호라이外 貴府
로別定查官호야該犯의罪狀을綜實查覈호며該
郡守의情節을詳擬報來호事로玆에訓令호오니此
를依호야施行호시可호

開國五百四年十月六日

法部大臣署理張 樽

海州府觀察使李鳴善 閣下

署理 檢事 辛成默

訓令洪州府觀察使件

敬啟者는韓山郡守報告書를接准호온즉在日匪
類金善在徐河良을各別嚴戢後嚴飭放送호얏다
호온바此를查호온즉金徐兩犯의罪狀은該郡守의前
報를據호온本部에서指令호되杖一百流三千里律에
照호야本郡으로處辦케호얏더니今에該郡守가放

檢事 辛成默

敬啓者左案謄送于警廳如何
案
右獄囚韓用健乙高等裁判所에移付호얏
기茲에照會호오니照亮호시고囚徒에호시길
要호오

法部檢事局主事辛成默
警務廳訊問係文奎復 座下

檢事 辛成默

敬啓者左案謄送于漢所如何
案
海州府押上호罪人韓用健乙右獄에牢囚호옵
貴所審辦에關호오니茲에通牒호오니照亮호
시고裁決호시길要호오
漢城裁判所主事
權在運 座下

署理 檢事 辛成默

敬啓者左案訓令于海州府如何
案
本月二十五日에本部大臣署理張 慕
賴中匪魁乙捕捉正法호者五有호고逃脫未捉호者五
有호오니其同匪魁의就死外未捕者姓名乙修成冊上
送호고就中에吳元京李奉信은今為捉囚호고茲에報告
호오니查照該郡에係是 貴府管下인則該郡守報
告中匪賴金永夏吳可人吳德根玄學振趙士浩曺炳承
裴東明延順吉宋方永趙鵬道等乙各別譏捉호고在
囚二漢乙 貴府로押上호시고取供得情호신後에權限內通
用호는律乙照호시고報來호는事로茲에訓令호오니此乙
依호시고施行호시可호오
開國五百四年九月二十八日
法部大臣署理張 燾
海州府觀察使李鳴吉 座下

檢事 朴齊璜

敬啓者閔泳龍事件으로 崔錫疇과 韓用健을 捉致再審次로 漢城裁判所에 訓令하였더니 尙未捉得이온즉 崔錫疇所居 江華郡과 韓用健所居 海州郡에 訓令하오니 刻即押上케 하심이 何如오 茲 仰 裁決 茲

貴郡居 崔錫疇를 本部의 査辦하는 件이有하온바 別紙說訓하오니 刻即拿獲하야 定罪押上하되 或失捕之弊가 無케 하심이 可하옵기 此를 依하야 施行하심이 可하옵

江華郡守 座下 二六字一号

貴郡居 韓用健 此下措語는 右와 如케 하옵심

海州郡守 座下 二六字四十号

敬啓者左開案牘을 送于東萊府爲荷

指令

貴質稟書第一号(로 據하온즉 與海郡民擾鬼首 崔相弘을 捉囚하고 且其前後罪狀을 臚列馳報하온바 此를 據하야 查하오니 如此兇悖之輩를 刻을 容貸치 不可하옵기

重辟에 處하심을 仰望하옵

(이라는 말은 重辟에 處하심을 仰望하옵 이라는 말을 두 번 쓴 것을 삭제하였다.)

固當重辟에 處하옵고 且其黨惯의 必須嚴重 (이라는 말은 更加嚴究하옵 이라는 말을 삭제하였다.) 詳細謄報하심이 可하옵고 茲에 指令하옵

法部大臣 署理張 博

東萊府觀察使 池錫永 座下

檢事 朴齊璿

敬啓者左開案訓令于慶栗郡何如

案第二百三十六號

貴報告書를接准호즉 東徒의金啓文 鄭宅根鄭寬善金以燮李京煥李根達趙昇贊史明哲金明學九漢을 已爲砲殺호고 나호즉 此事件을詳查호즉 諸漢의罪犯이雖是難貸ㄴ事係命案이라疎忽이不無호ᄆᆞ로各人名下에某犯某罪를消詳懸錄호야報告호미可호事로茲에稱令호오니 此를依호야施行호미可호

訓

檢事 崔文鉉

敬啓者左開案訓令于海州府何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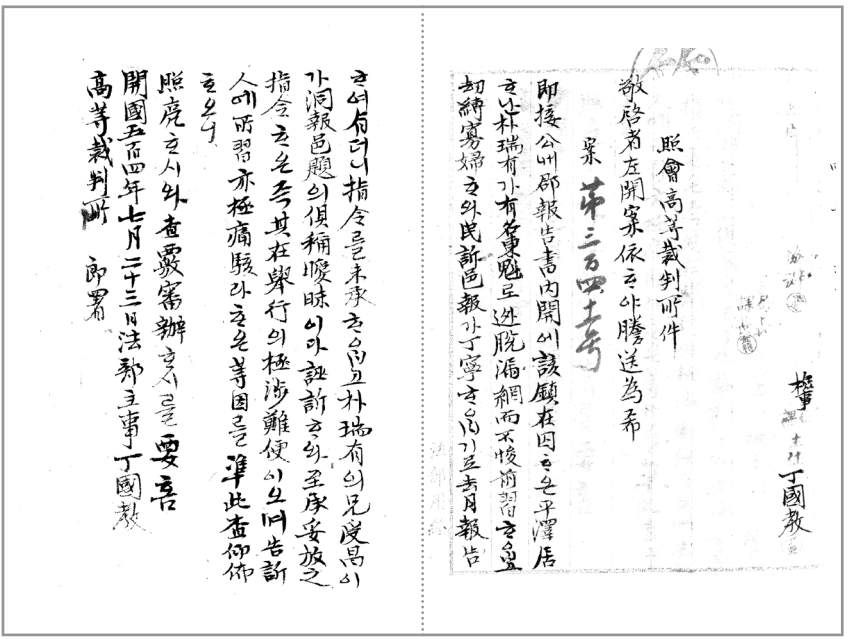
案

第二百三十七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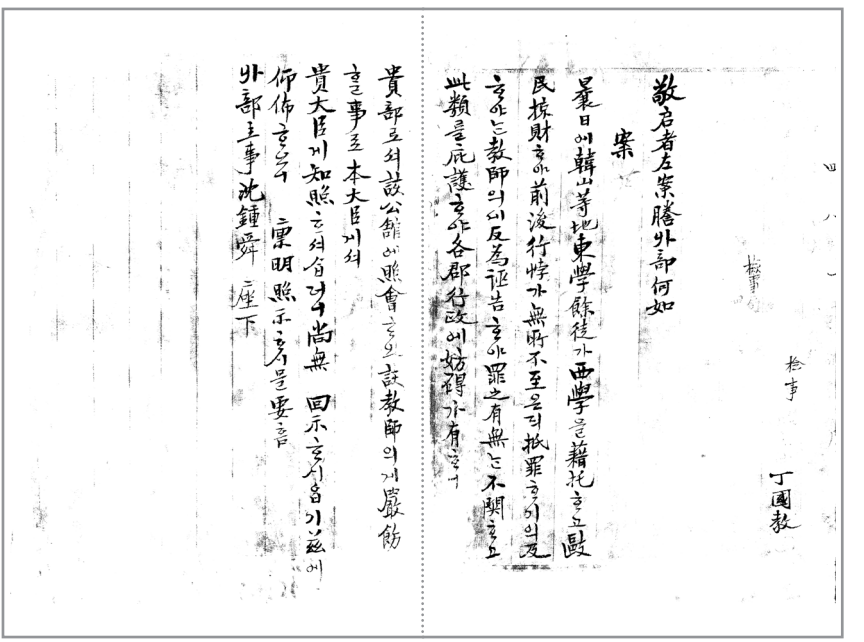
即接殿栗郡守報告호즉 李金啓文鄭宅根鄭寬善金以燮李京煥李根達趙昇贊史明哲金明學等이皆以東徒로或該郡文簿를燒藩호고或進上을攘奪호고或軍[罷]를奪取호고 여기至一切砲殺호고報告等因據此查호즉 罪犯의雖大나性命이至重호ᄆᆞ로八九人을自郡擅殺호미疎忽을慮나不無호지라 特自 貴部로別使詳探호야該諸犯의 實狀을條列謄報호事로茲에訓令호오니 此를依호야施行호미可喜

訓

自貴部로 別使詳探호야 該諸犯의 實狀을 條列謄報호事로 茲에 訓令호오니 此를 依호야 施行호미 可喜



照會高等裁判所件
敬啓者左開案依ᄒᆞ야謄送為希
案 第三百四十号
即接公州郡報告書內開에該顧在因ᄒᆞᆫ平澤居
ᄒᆞᄂᆞᆫ朴瑞有가有兇鬼로逃脫潛匿而不悛悔習ᄒᆞᆷ으
切紳寡婦ᄒᆞ야民訴呈報가丁寧ᄒᆞ오나已去月報告
ᄒᆞ얏有ᄃᆡ指令을未承ᄒᆞ오며朴瑞有의兄度昌이
가潤報邑題의俱稱嗾昧이야訛訴ᄒᆞ야至康妥放之
指令ᄒᆞᆫ을忘其在擧行의極涉難便이오니告訴
人에所習亦極痛駭라ᄒᆞᆫ等因을準此查仰仰
ᄒᆞᆞᆫ오ᄆᆞ
照庶ᄒᆞ시外查覈審辦ᄒᆞ시기를要喜
開國五百四年七月二十三日法部主事丁國教
高等裁判所 卽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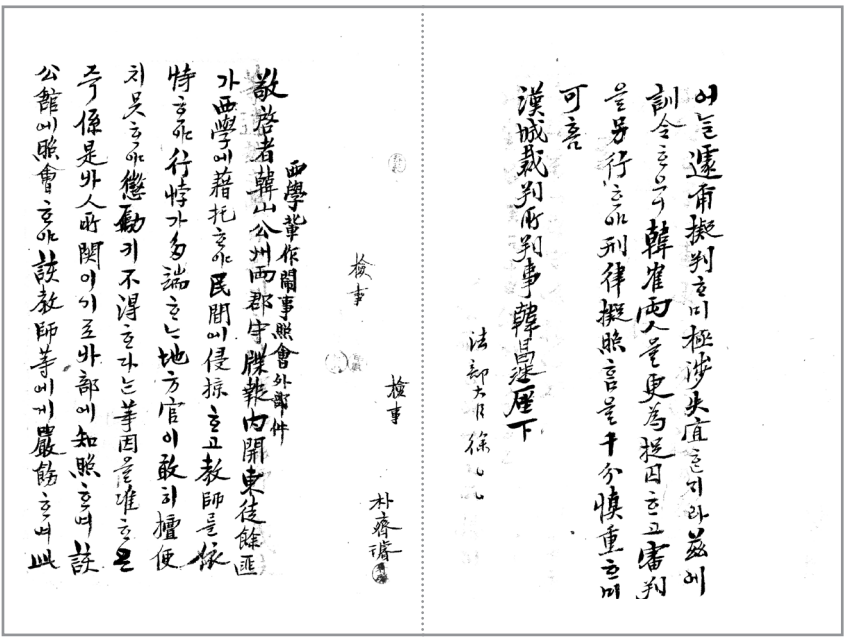
敬啓者左案謄外部何如
案
翼日에韓山等地東學餘徒가西學을藉托ᄒᆞ야殿
民掠財ᄒᆞ야前後行悖가無所不至ᄒᆞ오니此罪ᄒᆞᆫ이의及
ᄒᆞᄂᆞᆫ敎師의이反為誣告ᄒᆞ야罪之有無ᄂᆞᆫ不關ᄒᆞ오
此類를庇護ᄒᆞ야各郡行政에妨礙가有ᄒᆞᆫ지
貴部ᄒᆞ오서設公館에照會ᄒᆞ오ᄉᆞᆫ敎師의게嚴飭
ᄒᆞᆯ事로本大臣께서
貴大臣께如照ᄒᆞ시야省ᄒᆞ시고尙無回示ᄒᆞ시옴이玆에
仰佈ᄒᆞᆞᆫ오ᄆᆞ 照明照示ᄒᆞ시기를要喜
外部主事沈鍾燮 座下

西漢不悛其習今稱西學出沒作弊甚於東擾時
輒稱前嫌率黨來到吳應老家破碎家產無數
毆打勒奪幾百金舉措叵測而吳民段僅得脫身逃
避其妻托狀來訴故西漢捉入嚴查則自稱西學官
長悖惡倡若無人聞聽見果是無法亂悖之徒也人
命雖曰愼重如此亂類不得不懲一勵百故已爲捉囚馳
報而今以金徐兩漢捉報事大法國傳教士南一良書札
自德山陽村來而其辭意內金徐兩人素是聖教人
也吳應老東學之類也昨年七月分徐民無故被打於
吳哥西反以客囚聞甚駭聚吳民捉囚兩人即放云云則凡

罪之有無治之与否各有地方官可以查決者則自己措
處且難以擅便者則報營畝事理当稟而至於此等
各國傳教士爲名人未知其罪狀但覺護 聖教人有此干
涉法不可法治不可治將伸措處等因及公州郡守牒
報內開經捉之餘溷散者過半吳屬因京關而曉
喻庶有安戢之望自夏以後東徒條連不改舊習還付
西學藉勢徒黨橫行村閭毆打殘民侵掠錢財難以
丈保是如呼訴雖至事難擅便茲以據實牒報 部教
是徃復公館淺防徵杜漸使此殘氓以爲奠接之地事因
如此云查云云俱係亂類筆亦西學之藉托之村

閭에行悖ᄒᆞ야無所不至ᄒᆞᆫ지抵罪ᄒᆞᆯ이의及ᄒᆞ야ᄂᆞᆫ敎
師의게反爲誣告ᄒᆞ야罪之有無ᄂᆞᆫ不究ᄒᆞ고此類ᄅᆞᆯ庇護
ᄒᆞ야各郡行政에干涉ᄒᆞ야防礙가有ᄒᆞ니法規所在에極
히妥當치못ᄒᆞᆫ지라各國約章에ᄂᆞᆫ言ᄒᆞ야도傳道人ᄋᆞᆯ
保護ᄒᆞ고但이ᄂᆞᆫ罪에犯ᄒᆞᆫ者ᄂᆞᆫ寘而勿問ᄒᆞ라ᄂᆞᆫ條規ᄂᆞᆫ
無ᄒᆞᆫ즉ᄂᆞᆫ지라此類ᄅᆞᆯ外에如是挾勢ᄒᆞ야作鬧莫甚ᄒᆞᆫ
니ᄉᆞᆫ勘가不無ᄒᆞᆯ더이니ᄉᆞᆫ事涉外人이이ᄂᆞᆫ茲에
仰佈ᄒᆞᄂᆞᆫ니貴部ᄂᆞᆫ즉詴公館에聯會ᄒᆞ야該
敎師等의게嚴飭ᄒᆞ야此等違越ᄒᆞᆫ者ᄅᆞᆯ一ᄂᆞᆫ嚴加懲
ᄒᆞ지ᄂᆞᆫ妥ᄒᆞᆫ

外部大臣 閣下 法部大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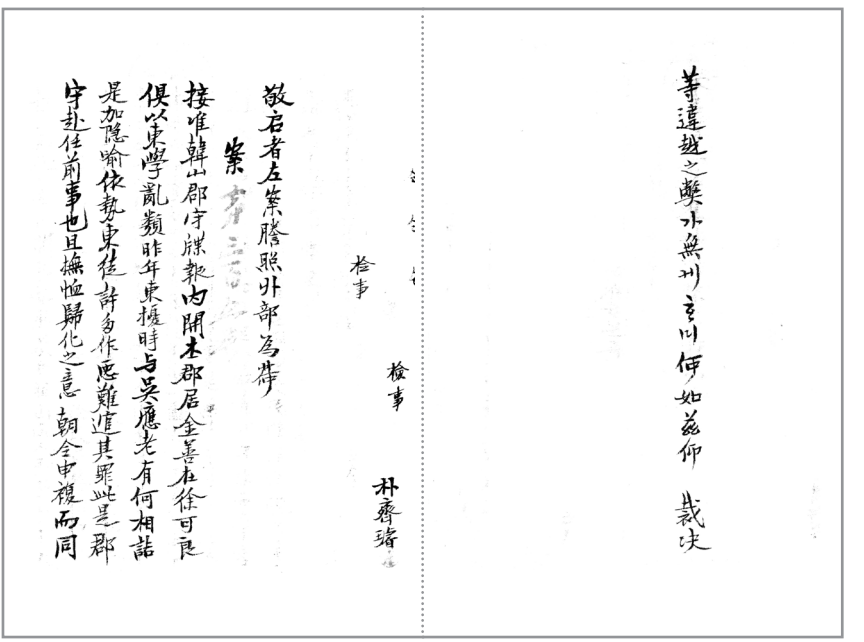
以上遠甫擬判之意極涉失宜故以
訓令之旨韓崔兩人更為提出之審判
官另行之刑律擬照言渡十分慎重之意
可喜
漢城裁判所判事韓昌建座下

法部大臣徐丙

檢事 朴齊璿

西學事件關事照會外部件

敬啓者韓山公州兩郡守牒報內開東徒餘匪
外西學以藉托之名民間以侵掠之立教師之依
特之勢行悖外多端之地方官以敢行擅便
制止之懲勵其不得之旨固是唯之
予係是外人所關以以之外部以知照之以訖
公龍以照會之故敢教師等以嚴飭之以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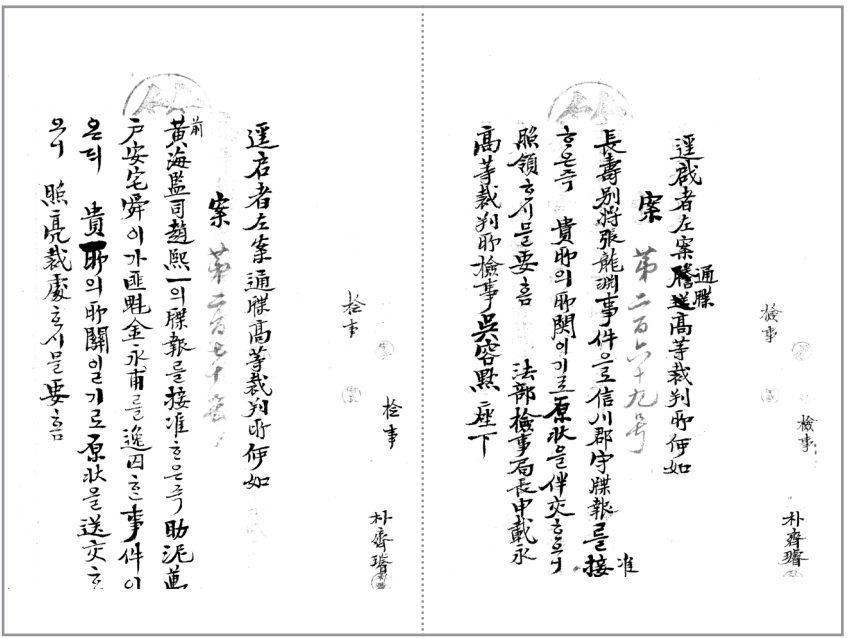
等違越之擧亦無以之以俾如茲仰 裁決

檢事 朴齊璿

敬啓者左案謄照外部為荐

案

接准韓山郡守牒報內開本郡居金善在徐可良
俱以東學亂類昨年東擾時与吳應老有何相詰
是加隱喻依教東徒許多作惡難逭其罪此是郡
守赴任前事也且撫恤歸化之意朝令暮改而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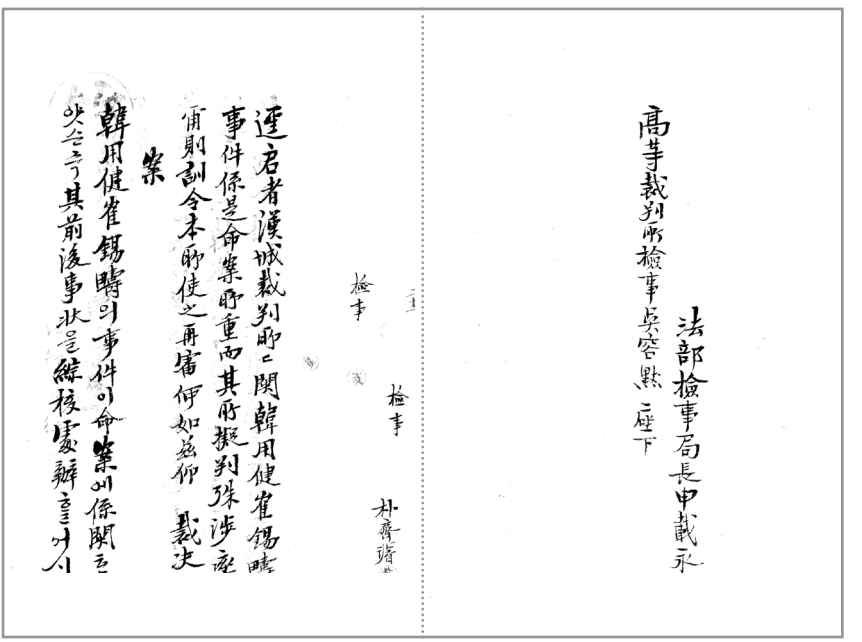


運啟者左案通牒高等裁判所伊如
案第二百七十九号
長壽郡將張龍謌事件ニ付信川郡守牒報ニ接准
セシニ付貴廳ノ照閲ヲ仍テ原狀ヲ伴交セラレ
照領セラレン事ヲ要ス
法部檢事石長甲載永
高等裁判所檢事吳容默 座下

檢事 朴齊璿

運啟者左案通牒高等裁判所伊如
案第二百七十九号
前黃海監司趙熙一ノ牒報ニ接准セシニ付助泥面
戶安宅舜ノ加毆斃金永甫ニ至ル事件ノ
如キ貴廳ノ照閲ニ付原狀ヲ送交セ
ラレ照亮裁處セラレン事ヲ要ス

檢事 朴齊璿



法部檢事石長甲載永
高等裁判所檢事吳容默 座下

檢事 朴齊璿

運啟者漢城裁判所ニ関韓用健崔錫疇
事件係是命案ノ重而其所擬判殊涉疎
脫則副含本所使之再審伊如為旨 裁決
案
韓用健崔錫疇ノ事件ノ命案ニ係関セ
ル事ニテ其前後事狀ヲ綠牧處辦セシ

崔錫疇韓用健移漢城裁判所件
逕啓者卽接漢城裁判所為要
照送高等裁判所為要
案第二百二十四号
接准 貴照會第一號崔韓二名移送之理一
得當續將依此辦行矣 照亮為希

檢事長 申載玉

逕啓者張龍淵韓用健事件文化郡守報送次
高等法院會如何
案第二百二十五号
張龍淵韓用健事件文化郡守報告接准
貴所照會之旨一一照領之意 為此回答之

檢事 朴齊瞳

逕啓者左案通牒漢城裁判所何如
案第二百二十六号
信川郡守의牒報를接准호온즉韓用健의
事件이他事件에尾錄호야도原狀은高
等裁判所에送交호기로韓用健의事件也朴
呈호오니 照亮호시믈 要홈

檢事 朴齊瞳

再 信川郡守牒報中韓用健事件
韓用健殿本以匪類火砲領將反為本地
兵隊偵將名色而從有東徒之枝流餘孽
砲殺之徵功藉匪行悖民惡至今未解有出
特功贖罪伏俟 處分事
法部檢事局長申載玉
漢城裁判所檢事金基肇 座下

檢事 崔文鉉

韓用健崔錫疇南春鳳移送高裁件

啟啟者軍部移來罪人韓用健崔錫疇及其
山港押來罪人南春鳳并移送高等裁判所
卽判決懲勳河如茲仰 裁決 [illegible]

案

軍部移來 [illegible] 殺人命罪人韓用健崔錫

疇叫元山港監理署押上 [illegible] 假稱日人罪人南
春鳳 [illegible] 并牢囚左獄 [illegible] 其供草 [illegible] 文牒
[illegible] 送交 [illegible] 查照 [illegible] 仕 [illegible] 速判決 [illegible] 何
[illegible] 通牒 [illegible]

高等裁判所主事朴齊璿 座下

四六二

檢事 崔文鉉

啟啟者清道下吏金漢璿張周德 [illegible]
移屬於前郡守蔡慶默使之督刷之 [illegible]
照會于高等裁判所為荷

案 第二百二十号 通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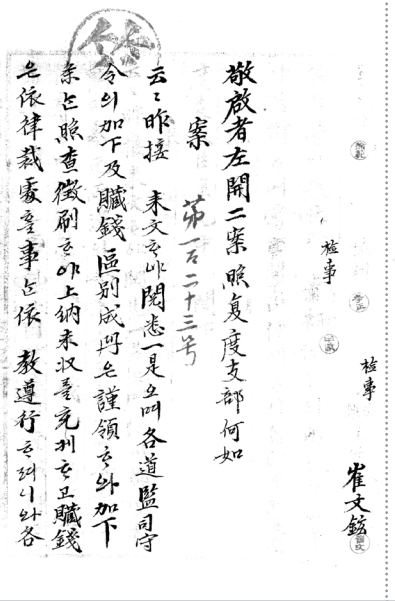
高等裁判所主事金思鉉 座

接准 [illegible] 部來照內開 [illegible] 清道下吏
叫金漢璿 [illegible] 張周德等所訴叫渠等 [illegible]
去辛卯年田稅色擧行 [illegible] 各其二百五十
錢 [illegible] 本官蔡等叫侵奪 [illegible] 公錢 [illegible]
[illegible] 通帳磨勘 [illegible] 道理 [illegible] 茲以
佈 [illegible] 四錢五百兩 [illegible] 前郡守蔡慶默叫
不日督刷 [illegible] 希喜等因 [illegible] 照得 [illegible]
查 [illegible] 貴所叫關 [illegible] 事 [illegible] 叫仰佈 [illegible]
蔡慶默叫 [illegible] 更為查辦 [illegible] 斯速督捧 [illegible]
[illegible] 茲叫照會 [illegible]

再啓日前韓用健事件海伯牒報 [illegible]
伴交 [illegible]

四六二

右 咨
海州府觀察使



權事 崔文鎰

敬啓者左開二案照覆度支部何如

案 第一百二十三号

云々昨接 来文內開恩一是內叫各道監司守令의加下及贓錢區別成冊을謹領호外加下 来文照查徵刷호야上納未收를充刑호고贓錢은依律裁處홀事로依 敎遵行호시라시外各

該監營의報狀內 貴部派員의所報를아셔送擲호시매審查를以便刑호시옵頃至照覆者

右 照 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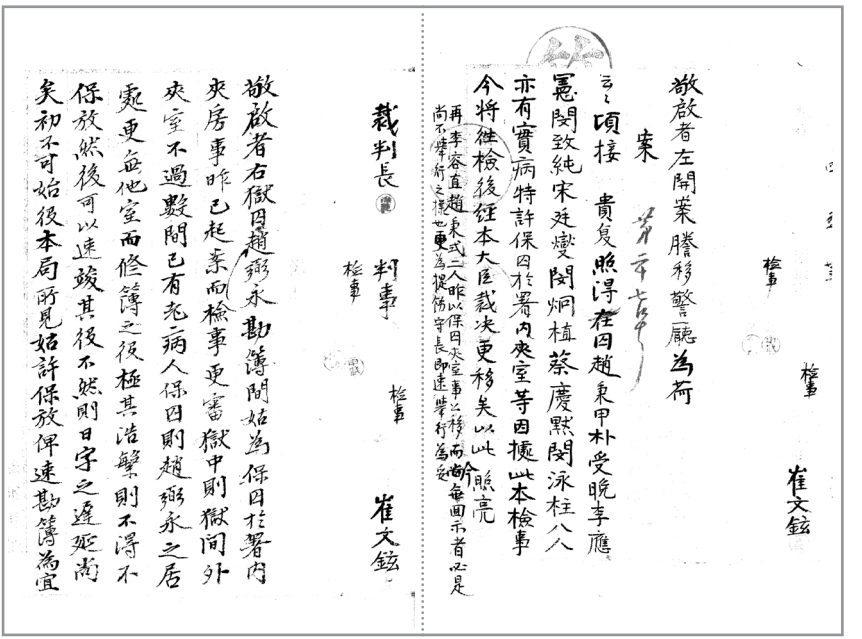
度支大臣兪允中 閣下

案 第一百二十四号

云々昨接 来文內開恩一是內叫信川郡守泰熏이泰元西漢의金革을妄動호시매公穀을攘奪호시매所犯이莫大호지라殘邑의將罷가倫獲키難홈은事勢가固然홀뿐아니라敝部로

貴部貿來五百石은二捉上홀時를待호야徵刷홀터스니 照亮호시옵頃至照覆者

再信川郡守의報狀은還交호스니 照領호옵



敬啓者左開案謄移警廳爲荷

案

云々頃接 貴廳照得在囚趙秉甲朴受晩李應憲閔致純宋廷燮閔炯植蔡慶默閔泳柱八人亦有實病特許保囚於署內房室等因擬此本檢事今將往檢後經本大臣裁決更移矣以此照亮

再李容直趙秉式二人昨以保囚次室事已移而今番回示者必是尚不悉前之擬也更爲提飭守長即速擧行爲要

檢事 崔文鉉

裁判長 判事 檢事 崔文鉉

敬啓者右獄囚趙鎔永勘簿聞始爲保囚於署內房事昨已起送而檢事更審獄中則獄間外房不過數間已有老病人保囚則趙鎔永之居處更無他室而修簿之後極其浩繁則不得不保放然後可以速竣其後不然則日字之遲延尚矣初不可始役本局所見姑許保放俾速勘簿爲宜

檢事 崔文鉉

敬啓者左開案關于海州府觀察使何如

案

云々信川郡守以度支部訓報至狀呈據准至令該郡居安泰默卿泰元兩漢以東匪亂討逐之稱之金革無避動之以民心呈挫亂之叫度支部以公貿至米五百石呈

檢事 崔文鉉

據奪之以軍粮以藉用之五元納刁不肯之仰刁抵致之以督捧之到之等安敢加尙今五卒徒呈擁之五村落以充擾之以公務呈趕逐之叫官令呈抗拒之以殘兒以將羅刁稱獲刁不能之以云之以刁故呈以之以國呈發之以國到來即時以校卒呈多發之以刁以以捉得之以枷鎖呈具繫之以押上之以或呈疎漏之叫無之刁之以以梗化之習呈嚴懲之五公貿至來呈元納刁喜以宜當者

近處速竣公役事本曹所見理勢雖然不可出處
獄外則保因於署內夾室以便勘簿為宜
題案 勘簿聞姑為保因於署內夾室俾速竣役

檢事 崔文鎭

敬啓者左開案謄移鑒廳為希
案
云。右監獄罪囚內前嶺伯李容直所前判書趙
秉式以老病方保放事請辭且獄體重大不可
不稟請定奪向事緣由茲以
是呈以亦部議事屢經辭病閒地署內
夾室內保因事意至裁決之故至茲呈以亦
仰移辭上項二人事今日至始辭署內夾
室內居處刑吏及其子侄出入事特許辭亦謂
病刑吏之為要
再罪囚趙秉式所犯勘簿到事至以亦保
放事請辭亦云云而詰朝文簿外許多
文書事重獄中內外查考之難辭近處
內保因事重願辭亦云事事因辭亦本大且刑曹
辭亦云云事體所在內出獄之不可辭亦勘
簿事內時急內亦係辭之故是以辭亦
所呈署內夾房內出處辭亦勘簿事速竣
事事命令承認辭外仰移辭之由該
獄署內論辭外夾房內出處刑吏及文簿
出入之關係辭之人名錄置事之
出入事禁之向辭及刑吏及定限辭之
日內之由 照亮辭之向

未事盖以租包言之還鎬却包捉戰時被燒民家八十餘戶至於餓莩故以其租分饋而亦與日陣議為者也以汁物言無所搜探而既有題飭故租包段待秋成報給之意令飭該灾民等處而還鎬終不見聽捉致洞民鞫朴督捧至有灾民等呼訴於視察官還鎬之不改舊習曾錄伴記萬一痛駭事本局所見閔還鎬之救罪未幾行悖猶甚尤極痛嘆即為押上懲勘為宜左開案關于該營何如

案第七十五号

云云接准来報照得閔還鎬之所為胡至此甚究其前罪係是罔赦而特以放歸鄉里者歟其改過從善之意

也今不惟不悛前習反又肆毒以空洞民之田還因致營邑之論報可想其行為之不測矣以租包言之營既以秋成後報捴之意申飭則不至永失也猶患不足督責灾民至於鞭朴顧此灾民尚之一日之糊口涉何以卒辦斗石之米租乎不念此情狀而恣欲施暴素心之不良推此可見也早知如此不但不有推給租包之題并不許放歸田里矣敝一言即為之將罹押上以為嚴懲宜當者

敬啓者今以延曾城審決事公移漢城裁判所矣左開案謄移為荷

案第七十四号

昨年十月日兵押来廣州諸東徒業經審斷放送而延曾城尚此滯囚究其罪則實無里同衆言念民情極為可憫本局所見自漢城裁判所知照於日領事即行審決使該民俾便歸農為要

再警廳供招伴文

裁判長 判事 檢事 崔文鎭

檢事

前轉運使趙爾永保放件

敬啓者接准在囚趙爾永呈訴照得頃者以勘簿事呈狀伏蒙派速勘簿以便辦校之題而將於勘簿之際文簿六駄有餘派人吏掌二十餘人又京司差人及外衙差人等不可不查覈則文書之浩繁查一校之煩劇不可於猥中舉行請頼係囚在獄署

檢事 刑事局

問而徑殺者證乎於此可知東學之初無指證亦可
想徵詰之終不得情矣歷則李重白之謀陷云者容
或無怪而該營之忽於人命曷免其責然此等起案
不可遷再論斷故玆以發關到即特鄭宅鎭之徵
證得情與否東學真詐有無星火報來是遣李
重白盧白用刻期詗捉嚴查捧招後稟止一體馳報
宜當者

檢事 崔文鎭

檢事
刑事局

忠州牧使書目

敬啓者觀此書目以鄭宅鎭徵事查報而發關監
營之已經詢可該牧書目不可無題右開案題于
狀內何如玆仰 裁決

案

嚴查歸竟之意方發關廻啓

青山縣監書目

敬啓者觀此書目以土豪匪魁宋致三牢囚馳報
事以押上之意發關已經詢可而書目不可無題左
開案題于狀內何如玆仰 裁決

案

依關辦擧行宜當

檢事 崔文鎭

檢事
刑事局

忠淸兵使牒報

敬啓者觀此牒報略曰本州居閑遞鎬本以挾勢土豪居魁
東徒竟至被捉於日陣而肝供難重不可掩庇幸蒙放歸
於田里則確改前習是其當理而乃反誣訴法部曰自營
送校作梗藉沒家産租包而今旣蒙放還推云云法部
題音內摸捺家物是法理自營斬持尤極無據一出給報

四五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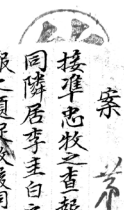
檢事 崔文鉉

檢事

忠州牧使牒報

敬啓者觀此牒報要曰本州居進士鄭榮鎭呈法部狀內同隣居盧白用叅來徒故自洞中毁家逐出而盧因其空而打殺李圭白之侄矣李圭白又爲叅謀士也捉盧之妻男田萬拶勒供曰鄭之弟陰使盧殺李侄云自錦營以殺獄看證捉去後以來徒罪砲殺此皆李圭白之謀陷詳查雪寃事法部題以查報事到付本牧故捕諸犯率留逃隙只捉得李兄圭常及該洞頭民閒指則頭民供曰盧入來徒毁家之擧與其妻男田萬拶打殺李侄而鄭弟之陰囑云者出自田之口指獄李鄭之死具是寃抑云圭常供曰鄭弟宅鎭陰囑盧奮梯除李門之說從隱得聞而又爲來徒故訴于先鋒陣閫公州鎭逮捕并田萬砲殺云鄭榮鎭供曰李與盧因債構嫌久矣則矣弟之陰囑云者初不近理且矣弟見囚特李圭白未言於矣父曰資給匹馬路費則往營救解云故依言施行渠於此時何不言陰囑等說而及謂救解耶且以來徒論罪則勒入之際非徒第

李之兄弟亦皆入叅則何獨矣弟被殺云李圭常再供曰盧之督債皆鄭所使而昨秋已爲畢報則有何因緣且以馬匹言之借於鄭族非借於鄭父路費之說初不聞之云矣此訟之查也首犯之盧則逃千犯之田陰囑之鄭已死則執何爲證而卞明乎至其乃叔乃兄之各自訴寃事難究竟然鄭宅鎭初以獄證見捉而後以來徒罪被死似是勒加罪名也且李既親聽殄滅一門之說何不一言於鄭見捉之時乎此足爲斷案厥非本牧所可論斷故此查報事本局所見叅閱該道先問其砲殺之由仍即譏捕首犯千犯嚴覈審結爲宜左開案題列行閫何如分仰 裁決



接準忠牧之查報照得本州金目面五龍洞居鄭宅鎭因同隣居李圭白之謀陷橫死於東學之罪事擬本部查報之題捉致該洞頭民及圭白之兄圭常宅鎭之兄榮鎭審訊則各自訴寃事難究竟唯待本部論斷矣夫李圭白之侄被害於盧白用斷無疑則該營該牧之不即譏捕盧漢成獄難免疎漏之責至於砲殺鄭宅鎭觀於圭常榮鎭之所供俱曰捉以獄訟殺以東學云則此必有曲折之可究矣鄭宅鎭若果來徒則當其捕捉之時何不明言而指以獄訟若以獄訟則何不先捕首犯之盧漢審

大會人民聲時砲殺而恐涉徑庭有難擅便故其移牢
因以待處分等因准此查噫此金在洪罪惡貫盈吏
民之爭力抵納可見衆憤所激該犯之自歸就捕無
乃天厭其惡既是天人共怒之地不可一日容與於覆
載之間本府所見不同該郡即為砲殺以快被虐
之民以慰冤死之鬼恐合事宜左開案關于林川郡何
如若仰 裁決
 案
即准本月十三日 貴報內以東徒金在洪罔當登時
砲殺以悅吏民而似涉徑庭且罪犯以極重之以不
可擅便因卧若以馳報等因合擬令金漢以罪
惡貫盈登時砲殺事理實屬可嘉在外重罪以關係毛押上處辦之叫國當之以民
心重歟之叫衆惑之警之可乞自邑砲殺之七以此
不若令之卧若以指令之因到即擧行後以形
止臺馳報之叫可喜

忠清道青山縣監牒報
敬啓者觀此牒報書本縣南面烏分里居宋致三本以土豪武斷鄉曲
及座東匪猾痲疥恣以逆部執綱率其黨橫行邑村剽掠無常又
稱視察官親戚宣言他邑論其土豪居一道之首魁言以匪類
為八路之執綱究其罪狀難以寬貸故拘回馳報事本官所
見此等悖類不可尋常置之即為押上懲辦為宜左開



案關于該縣何如若仰 裁決
 案
接准來報照得宋致三之前後行悖聞極痛駭而
今始就捕猶云晚矣此等罪惡不可尋常徵勘即
為定將羅押送營嚴加枷鎖毋至疎漏宜當者

的主기至未能捉得主고金集三은雖云捉囚
該獄이나罪名을仕主不知主야查실기
로敢出囚主也니捉出查主고犯罪
搜索은本部行令에所係主지로貴初에內部
主로서貴營에報知이越權이오旣出東郊
第主로指目刘貴營에報에罪名을不知主야
查실之難主고云主者ㅣ爽實이요茲의洞
을貴主고不名不知人을訴主고置之勿問主고人을
樂三阪은東營소屬이主更加査主야妙圖
실辦이宜喜七

檢事 崔文鎭

檢事

敬啟者ㅣ准警務廳來移照得平康居朴日
祿爲魁民擾奴財民間事此等罪惡不可仍
置卽爲祥訊該郡守使之押上何如伏仰裁決
左開案謄送爲荷

案 訓令 第 號

云ᄉ貴郡高揮面下麗洞庭神坪居ᄒᆞᆫ朴

日祿이民擾狀頭가되야京司에行賂히야
稱ᄒᆞᆫ바民間에奴財ᄒᆞᆫ바此等罪惡은
仍置키不可ᄒᆞᆫ지라茲에訓令ᄒᆞᆫ바ㅣ卽爲
押上喜이宜當喜

開國五百四年閏五月 日

法部大臣

平康郡守

檢事 崔文鎭

檢事
刑事局

東徒金在洪慶辦事開林川郡件
敬啟者ㅣ向接林川郡守牒報內本邑居金在洪投托東
徒爲之援主奪官庫之軍器脅官屬以勒道之爲
金捧準之後將屠陷邑村殘害人命一邑吏民欲
食其肉積有日月不得捉去除此悍鬧金漢幻
形鬼衷而還歸闔境吏民爭力捉納此等罪惡固當



檢事 崔文鎭

敬啓者右開案牒也全州府內之

白准內部移也內開之外貴署派員
龍潭西面居亞魁名不知金哥也內

檢事 崔文鎭

敎啓者左開案謄移漢城裁判所爲荷

案 第一百四十五號

云々頃接度支部照會內開照得連山大同米
乾沒之罪人沈啓澤은因該邑報聲査明貴
部에移送査明더니其時舟楫司船主成冊
을更査査則執事船主의孫仲元이가連
山大同米六百石을裝載査야온文蹟이淸晰査기
로右孫仲元을拉致查問査온則仲元이不得諱明
이오내戊寅條連山大同分載船主는張白貴貴
於沈玄澤云査고至於沈啓澤은初不相涉이라
査야啓澤之被罪가於斯에蕆明이오내同孫仲元
은姓名이昭載於舟楫司成冊이오이실國穀裝
運에船主를渠旣當差査야私相買賣査고莫重
公穀을以致乾沒査니其罪가不輕査기로同孫
仲元을押送査오니照庋查辦査야公穀을完納
케査고沈啓澤은蕆明되기로照例妥勘等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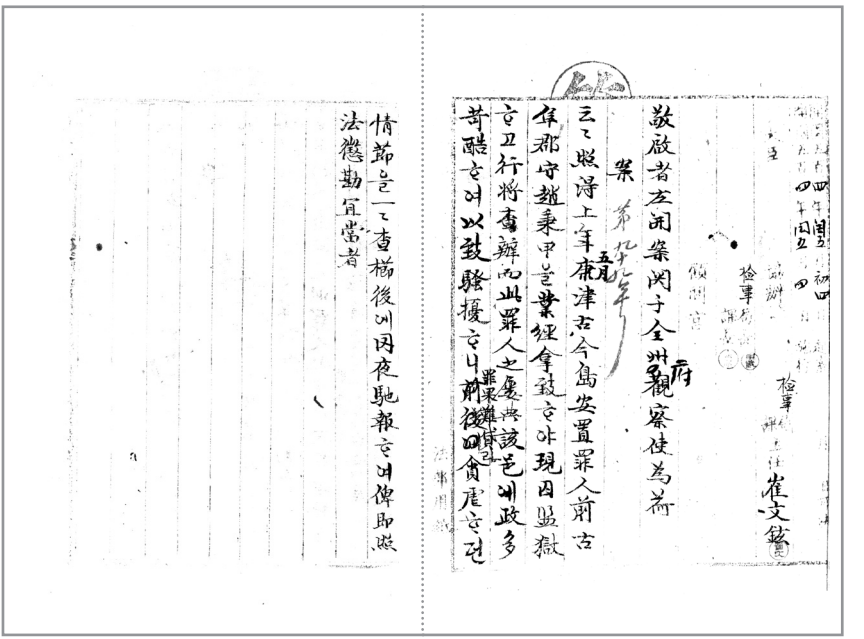
准此查係是公穀所犯이니孫仲元은卽爲查辦
査고且沈啓澤은蕆明되오니妥決喜爲荷
再孫仲元이가現囚右獄査니照悉喜
再左獄囚東學罪人李龍孫押上查辦喜 李仲七古

檢事 崔文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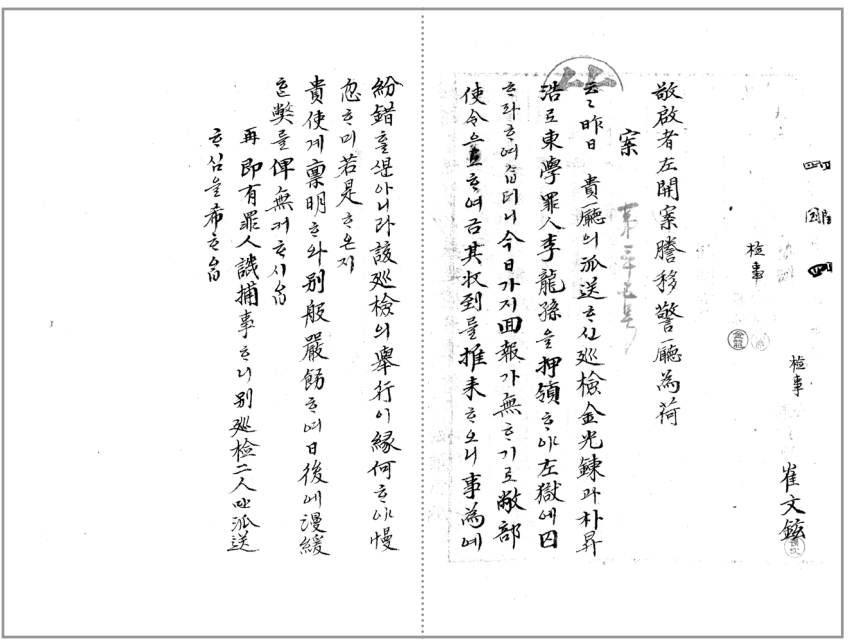
敎啓者左開案謄送漢城裁判所爲荷

案 第一百五十三號

敎旨者라接准來移內開沈啓澤의名字姜誤査
고之度支部에業已移文이오매李龍孫의罪名은
旣着軍部照會故로謄抄伴交査오니平山郡報狀
은別無措辭이옵기押上緣由提音이不必謄送이



敬啓者左開案牒于全州觀察使為為
案 第 號
云云照得上年康津古今島安置罪人前古
阜郡守趙秉甲竟棄經拿致令現囚監獄
令卫行將查辦而此罪人之憂典該邑政多
苛酷令여以致騷擾令니前後四貪虐令건
情節을一一查檢後에因夜馳報令며俾即照
法懲勘宜當者



敬啓者左開案牒移警廳為荷
案 第 號
云云昨日 貴廳의派送令신巡檢金光鍊과朴昇
浩로東學罪人李龍孫을押領令야左獄에囚
令라令여旨旨니今日가지回報가無令기로敝部
使令을重令여今其校到를推未令오니事為에
紛錯을堤야니라該巡檢의舉行이緣何令야慢
忽令며若是令온지
貴使께稟明令와別般嚴飭令며日後에漫緩
令弊를俾無케令시옵
再即有罪人識捕事令니別巡檢二人을派送
令심을希望令옵

법부 검사국 기안

法部 檢事局 起案

영인본

影印本

ㄱ
강달조(姜達祚) 98, 195
강도련(姜道連) 256, 257, 258
강백석(姜伯石) 250
강병업(康炳業) 313, 314
강성일(康成日) 107, 108, 113
강성탁(康聖鐸) 312, 313, 314, 316
강운영(康云永) 107, 108, 113
강진희(姜璡熙) 202, 227
강채서(姜采西) 111
강채수(姜采水) 205, 206, 207
강희열(姜熙烈) 195
고동업(高同業) 226
고문선(高文詵) 291, 292, 293
고복돌(高卜乭) 200
곽만수(郭萬水) 296
곽응순(郭應淳) 117
국재남(鞠在南) 273, 275
국재봉(鞠在奉)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9, 286
국재준(鞠在俊)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9
국홍묵(鞠弘默) 269, 270, 271, 275, 276
권성오(權成五) 296
권성좌(權聖佐) 139, 140, 141, 252
권성중(權成中) 200
권재운(權在運) 92
권재형(權在衡) 222, 305
권종필(趙鍾弼) 306
금월(錦月) 177, 178
김가진(金嘉鎭) 250
김개남(金介南) 303, 304
김계문(金啓文) 87, 88
김계조(金啓祚) 107, 193, 197, 198, 202
김광련(金光鍊) 46
김광유(金光有) 323, 324
김광찬(金光贊) 321
김교성(金敎性) 222
김교혁(金敎爀) 139
김군거(金君巨) 200
김귀서(金貴西) 223
김규승(金奎升) 136
김근연(金近淵) 125, 128
김기봉(金己奉) 331
김기성(金基成) 212, 215
김기승(金倛升) 123, 136
김기인(金己仁) 327, 328, 329, 331
김기조(金基肇) 78, 222
김낙삼(金樂三) 50, 51, 52
김낙철(金洛哲) 139, 140, 141, 252
김당골(金堂骨) 298, 299, 300
김대율(金大栗) 307
김덕화(金德化) 323, 324
김도성(金道成) 99, 100

김동인(金東仁) 174, 175
김두봉(金斗奉) 226
김명학(金明學) 87, 88
김문영(金文永) 323, 324
김문화(金文化) 269, 275
김병문(金炳文) 296
김병숙(金炳塾) 277
김보민(金普民) 208
김복원(金卜元) 248
김복인(金卜仁) 200
김봉주(金奉柱) 227
김봉현(金奉玄) 315
김봉현(金鳳鉉) 200
김봉희(金奉希) 315
김사현(金思鉉) 74
김상승(金相升) 136, 137, 138
김상흠(金相欽) 161, 287
김선장(金善長) 208, 209, 213, 214
김선재(金善在) 82, 83, 95, 96, 97, 179, 187, 188, 245
김성규(金星圭) 146, 155, 160
김성렬(金性烈) 200
김성원(金性元) 221, 222, 225, 231
김성초(金成初) 292
김세종(金世種) 219, 220
김소사(金召史) 296
김수근(金水根) 248
김수복(金壽福) 297
김숙여(金淑汝) 141
김순용(金順用) 200
김승문(金承文) 203
김시묵(金時默) 109, 110, 111, 112, 204, 205, 206, 245
김신원(金信元) 131, 134, 234, 236
김여포(金汝宗) 228
김연숙(金連叔) 317, 318, 325, 326
김영덕(金永悳) 254, 255
김영래(金永來) 317, 318
김영보(金永甫) 79
김영준(金永準) 301, 303, 304, 305
김영하(金永夏) 93
김영학(金永學) 321
김용구(金龍九) 192
김용석(金用石) 296, 301
김용익(金容益) 148
김용준(金龍俊) 296, 315
김운배(金雲培) 130, 131, 133, 234, 236
김운성(金云成) 182, 183, 185
김유문(金有文) 200
김윤국(金允國) 292
김윤중(金尹仲) 200
김응삼(金應三) 319, 320
김의순(金義淳) 107, 193, 194, 197, 198, 202
김이섭(金以燮) 87, 88
김익용(金益容) 146
김인동(金仁東) 172, 173
김장권(金長權) 327, 331
김재원(金在元) 248, 257, 258
김재호(金在浩) 161, 208, 209, 287
김재홍(金在洪) 53, 54, 170, 171, 175, 176, 177, 181
김재희(金在喜) 102, 194, 197, 199
김정업(金正業) 139, 140, 141, 252
김정현(金廷賢) 296

김제순(金濟淳) 209
김준삼(金俊三) 200
김준홍(金準弘) 292, 293
김준희(金俊熙) 254, 255
김진옥(金珍玉) 315
김창수(金昌洙) 102, 114, 115, 116, 194, 197, 199, 219, 220, 225, 250, 251
김창형(金昌炯) 122, 124, 127, 229, 233, 237
김처중(金處中) 218
김천규(金天圭) 105, 106
김천락(金千洛) 123
김천용(金千用) 223
김춘서(金春西) 317, 318
김춘화(金春化) 251
김치경(金致景) 226
김치구(金致九) 140, 141, 253, 261
김치만(金致萬) 299
김치삼(金致三) 323, 324
김치홍(金致弘) 200
김태규(金泰圭) 131, 134
김태서(金台書) 157, 158, 159, 283
김택수(金澤守) 315
김판복(金判卜) 239
김한정(金漢鼎) 99, 200, 322, 323
김한진(金漢瑨) 74
김해붕(金該鵬) 121, 122
김형순(金亨淳) 256, 257, 258, 259, 269, 270, 271, 272, 275, 276, 285, 286
김형진(金亨鎭) 102, 130, 131, 132, 133, 134, 135, 194, 197, 199, 234, 235, 236
김홍수(金弘守) 329, 330
김효익(金孝益) 108, 114, 115, 213
김흥순(金興淳) 144, 146

ㄴ

남경익(南敬益) 126, 129
남의근(南義根) 225
남일량(南一良) 82
남춘봉(南春鳳) 73
노백용(盧白用) 56, 57, 58, 59, 60
노수관(魯守寬) 331
노창근(盧昌根) 232, 233

ㄷ

두만(斗晩) 296

ㅁ

맹범영(孟凡泳) 319, 320
맹소회(孟所回) 182, 184, 185
맹영재(孟英在) 220
문규복(文奎復) 91
문복만(文卜萬) 200
문치오(文致五) 296, 300
민계약(閔桂若) 123, 124, 136, 137, 138
민섬호(閔暹鎬) 62, 63
민성언(閔性彦) 123, 124, 136
민영룡(閔泳龍) 89
민영주(閔泳柱) 69
민영철(閔泳喆) 159, 160, 161, 213, 214, 216, 218, 259,

280, 285, 287, 295
민치순(閔致純) 69
민형식(閔炯植) 69

ㅂ
박경옥(朴敬玉) 203
박경운(朴景雲) 231
박군달(朴君達) 144, 146
박기수(朴基洙) 160
박기영(朴基英) 105, 106
박대련(朴大連) 105, 106
박두술(朴斗述) 227
박득권(朴得權) 203
박만귀(朴萬貴) 278
박명근(朴明根) 329
박명운(朴明云) 316
박봉렬(朴鳳烈) 200
박삼철(朴三哲) 248
박서유(朴瑞有) 85
박성삼(朴成三) 246
박수만(朴受晩) 69
박수창(朴受昌) 85
박순경(朴順京) 323, 324
박승도(朴承道) 306, 307
박승호(朴昇浩) 46
박시영(朴時永) 327, 331
박신오(朴信五) 327, 328, 331
박우종(朴佑鍾) 154, 155, 160
박윤거(朴允巨) 200
박윤대(朴允大) 259, 261, 262
박일록(朴日祿) 52
박재선(朴齊璿) 73, 76, 77, 78, 79, 80, 81, 87, 89, 98, 99, 108, 110, 116
박정빈(朴正彬) 189
박정식(朴定植) 219, 220
박정양(朴定陽) 104, 105, 106, 116, 197
박제억(朴齊億) 233, 248
박종근(朴宗根) 313, 314, 315
박준상(朴俊尙) 99, 100, 101
박춘건(朴春建) 316
박춘배(朴春瑞) 259
박치경(朴致景) 261
박치삼(朴致三) 225
박화숙(朴化叔) 200
방명삼(方明三) 315
방종석(方宗石) 248
배동명(裵東明) 93
배영춘(裵永春) 200
배익선(裵益善) 297
백기정(白基貞) 107, 193, 197, 198, 202
백낙규(白樂圭) 107, 193, 194, 197, 198, 202
백낙현(白樂鉉) 319, 320
백낙형(白樂亨) 180
백낙희(白樂喜) 102, 103, 107, 193, 196, 197, 198, 202
백반석(白半石) 239, 241
백성관(白成寬) 316
백완형(白完亨) 131, 133, 234, 235, 236
백치선(白致先) 200
백학선(白學善) 331
범민식(范珉植) 240, 242

범치명(范治明) 238, 239, 240, 241, 242
범현식(范玄植) 239
법천(法天) 234, 235, 236
변약금(卞若金) 246

ㅅ
사명철(史明哲) 87, 88
서가량(徐可良) 82, 83, 95, 96, 97, 179, 187, 188
서문유(徐文有) 296
서상교(徐相喬) 252
서상세(徐相世) 237
서석여(徐石汝) 109, 110, 111, 112, 204, 205, 206, 245
서옥순(徐玉淳) 228
서응순(徐應淳) 296, 315
서장옥(徐章玉) 303, 304, 305
서정만(徐定萬) 296, 298, 299, 300
서창길(徐昌吉) 117, 118, 119, 143, 151, 266, 267, 289
서창순(徐昌淳) 296
선봉진(先鋒陣) 57
성운서(成雲西) 208, 209
손금산(孫今山) 209
손병일(孫炳一) 222
손사문(孫士文) 111, 205, 206
손사문(孫思文) 303, 304, 305
손정흠(孫鼎欽) 225
손중원(孫仲元) 47, 48, 49
송내춘(宋乃春) 269, 270, 271, 272, 276
송만영(宋万永) 93
송문여(宋文汝) 158
송민수(宋敏洙) 155, 160
송병근(宋秉根) 151, 152, 266, 267
송상원(宋相源) 210, 211, 212, 215
송순지(宋巡之) 239, 242
송원화(宋允和) 211
송윤화(宋允和) 210, 212
송일회(宋一會) 259, 261, 262
송정섭(宋廷燮) 69
송치삼(宋致三) 55, 56, 61
승재원(承載元) 319
승전봉(勝戰峯) 208
신경기(申京己) 331
신경백(申京伯) 200
신광희(申光熙) 258, 285
신명우(申明雨) 139, 140, 141, 252
신성묵(辛成默) 91, 92, 93, 95
신재영(申載永) 75, 78, 79, 97, 122, 129
신정식(新定式) 182
신창식(申昌植) 105, 106
신태관(申泰寬) 156
심계택(沈啟澤) 47, 48, 49
심도풍(沈道豊) 256, 257, 258
심종순(沈鍾舜) 86
심치성(沈致成) 232, 233
심현택(沈玄澤) 48

ㅇ
안성수(安聖秀) 245
안성오(安成五) 330
안정민(安貞愍) 147
안종수(安宗洙) 165

안태원(安泰元) 71, 72
안태훈(安泰勳) 71, 72
안택순(安宅舜) 79
양봉구(梁鳳九) 250
양선태(梁先太) 294, 305, 306, 316
양윤문(梁允文) 123, 124, 136
양지동(梁地動) 299
양효건(楊孝健) 167, 168, 169, 170, 171, 173, 174, 175, 177, 179, 180, 181, 183, 184, 187, 189, 191, 193, 194, 196, 198, 199, 204, 211, 213, 215, 218, 224, 225, 231
어윤중(魚允中) 72, 168, 191
엄경필(嚴敬弼) 219
엄삼윤(嚴三允) 248
엄윤명(嚴允明) 203
여기전(呂基銓) 130, 131, 133, 234, 236
여상복(呂尙福) 219, 221
연순길(延順吉) 93
염규환(廉圭桓) 200
염중모(廉仲模) 102, 104, 107, 113, 194, 199
오가인(吳可人) 93
오국현(吳國玄) 296
오기환(吳基煥) 250, 251
오두상(吳斗相) 172, 173, 174, 175, 232, 248
오용묵(吳龍默) 78, 79
오원경(吳元京) 93
오응노(吳應老) 179, 188
오응로(吳應老) 82, 83, 96
오일상(吳一相) 171, 172, 173, 174, 175, 189, 190
오재봉(吳在奉) 294, 305, 306, 316
오택수(吳宅洙) 200
오헌근(吳憲根) 93
원용일(元容馹) 195
원의길(元宜吉) 308, 310, 311, 312
유기남(柳冀南) 117
유기대(柳冀大) 114
유기환(俞箕煥) 129, 160
유길준(俞吉濬) 50
유달수(劉達守) 323, 324
유덕장(柳德長) 292
유몽석(柳夢石) 228
유석환(柳錫煥) 202
유영순(柳永順) 203
유원성(柳遠聲) 90
유진옥(兪鎭沃) 176
유창섭(兪昌燮) 296, 300
유치배(柳致培) 245
유학선(柳學善) 102, 194, 197, 199
유학주(俞鶴柱) 225
유한익(劉漢翼) 250, 251
유한표(劉漢表) 117, 118, 119, 120, 143, 151, 266, 267, 268
유홍렬(劉弘烈) 225
육사명(陸四明) 298, 299, 300
윤덕여(尹德汝) 182, 183, 185, 190
윤덕화(尹德化) 296
윤명중(尹明仲) 296

윤용선(尹容善) 204, 208
윤웅렬(尹雄烈) 243, 317
윤준필(尹俊必) 327, 328, 329, 330
윤창섭(尹昌燮) 224, 227, 247
윤형천(尹亨天) 319
이개불(李介佛) 219, 221
이건하(李乾夏) 118, 120, 151, 207, 229, 244, 291
이경장(李敬長) 246
이경환(李京煥) 87, 88
이계필(李啓弼) 286
이공익(李公益) 296
이관동(李關東) 292
이교영(李敎榮) 106
이교하(李敎夏) 175
이규백(李圭白) 56, 57, 58, 59, 60
이규진(李圭晉) 187, 294
이규하(李圭夏) 169
이근달(李根達) 87, 88
이근용(李垠鎔) 149
이근택(李根澤) 318
이기현(李基鉉) 317, 318
이내형(李乃亨) 257, 258, 259
이달숙(李達淑) 217, 218
이달제(李達濟) 232, 233
이덕일(李德一) 219, 221
이도재(李道宰) 308, 311, 312, 313, 315
이동순(李東淳) 217
이동엽(李東燁) 177, 178, 181
이만용(李萬龍) 208, 210
이명삼(李明三) 323
이명선(李鳴善) 93, 94, 98, 103, 178, 186, 196
이민고(李敏皐) 211, 215
이보경(李寶京) 255
이보문(李甫文) 296
이복환(李卜煥) 160
이봉신(李奉信) 93
이봉여(李鳳汝) 228
이상옥(李尙玉) 139, 140, 141, 142, 252
이석교(李石交) 306, 307
이석화(李錫華) 310
이성탁(李聖澤) 208
이승우(李勝宇) 97, 188
이승조(李承祚) 107, 108, 113
이완용(李完用) 289, 293
이용구(李龍九) 292
이용서(李用西) 296
이용석(李龍石) 296, 301
이용성(李容成) 243
이용손(李龍孫) 46, 48, 49
이용식(李容植) 69
이용직(李容直) 67
이용태(李容泰) 332
이우일(李友日) 244, 245
이원조(李元早) 208, 210, 211, 212, 215, 216
이유형(李裕馨) 301, 302
이윤용(李允用) 109, 201
이응헌(李應憲) 69
이이노(李利老) 323, 324
이이선(李二先) 160
이인규(李仁圭) 323, 324
이인성(李寅聲) 127

이인우(李寅祐) 231
이재은(李在銀) 327, 328, 329, 330
이정길(李正吉) 296, 315
이정도(李正道) 172, 173, 174, 175, 232, 247, 248
이정영(李正永) 247
이정은(李廷恩) 202
이종원(李淙遠) 189
이종태(李鍾泰) 249
이주보(李周甫) 200
이중칠(李仲七) 48
이춘화(李春化) 239
이충구(李忠求) 138
이치옥(李致玉) 292
이태평(李泰平) 315
이해만(李海萬) 122
이헌경(李軒卿) 327
이현재(李賢在) 332
이화삼(李化三) 155, 160
이화선(李化先) 297
이휘선(李徽善) 165, 222
이흥구(李興九) 306, 307
이희덕(李熙悳) 182
임경원(林景元) 109, 110, 111, 204
임도호(林道浩) 109, 110, 111, 112, 204, 205, 206
임몽기(林蒙基) 256, 257, 258
임수련(林秀連) 319, 320
임용현(林鏞炫) 155, 160
임재호(任在鎬) 250, 251
임종현(林宗鉉) 213

ㅈ

장도영(張道永) 330
장만홍(張萬弘) 330
장명숙(張明叔) 219
장보원(張甫元) 296
장복동(張卜同) 200
장사원(張士元) 200
장상홍(張相弘) 90, 191, 192
장영극(張永極) 331
장용연(張龍淵) 76, 78, 165, 166
장주덕(張周德) 74
장진국(張鎭國) 208
장한여(張漢汝) 292
전내삼(全乃三) 246
전만철(田萬哲) 56, 57, 58
전봉준(全琫準) 53, 260, 265, 303, 304
전세진(全世鎭) 125, 126, 128, 129
전양근(全良根) 107, 193, 197, 198, 202
전장민(田長民) 297
전철문(全哲文) 240, 242
정계술(丁桂述) 160
정관선(鄭寬善) 87, 88
정국교(丁國敎) 49, 64, 85, 86
정기명(鄭基明) 308, 309, 310
정기우(鄭琪愚) 238, 241, 242
정만교(鄭萬敎) 100, 101, 103, 104, 105, 107, 113, 114, 119, 120
정석규(鄭錫圭) 222
정세모(鄭世模) 226
정순교(鄭洵敎) 238, 239, 240, 241,

242, 243
정순구(鄭順九) 323, 324
정승조(鄭承祚) 319, 320
정영진(鄭榮鎭) 56, 57, 58, 59
정오성(丁五成) 297
정완돌(鄭完乭) 245
정원흥(鄭元興) 315
정윤영(鄭崙永) 161
정의중(鄭宜中) 151, 152, 266, 267, 268
정인복(鄭寅福) 130, 132, 135, 207, 216, 223
정인악(鄭寅岳) 270, 271, 272, 275, 276
정인현(鄭寅賢) 226
정재하(鄭在河) 245
정정득(鄭丁得) 153
정제현(鄭濟賢) 266
정주영(鄭周永) 143, 152, 269, 278
정진환(鄭鎭煥) 122
정찬규(鄭燦糾) 153
정치모(鄭致模) 226
정택근(鄭宅根) 87, 88
정택진(鄭宅鎭) 57, 58, 59, 60
정해룡(鄭海龍) 299
조가희(趙可曦) 323, 324
조경선(曺京先) 119, 120, 143, 151, 152
조대집(趙大集) 257, 258
조덕근(曺德根) 250
조민희(趙民熙) 100, 101
조병갑(趙秉甲) 45, 69
조병식(趙秉式) 67, 69
조붕도(趙鵬道) 93
조사여(趙士汝) 93
조성덕(曺聖德) 317, 318
조성오(趙成五) 200
조순승(曺舜承) 93
조승찬(趙昇贊) 87, 88
조시영(曺始永) 124, 138, 154
조영중(趙永仲) 239, 242
조유도(曺有道) 145
조응현(趙應顯) 277
조인영(曺寅承) 221
조종헌(趙鍾憲) 147
조준흥(趙俊興) 331
조중응(趙重應) 181
조진옥(趙辰玉) 256, 257, 258
조창식(趙昌植) 323, 324
조필영(趙弼永) 65, 66, 68, 69, 70, 167
조한국(趙漢國) 308
조홍기(趙鴻基) 146, 147, 148
조희연(趙羲淵) 184
조희일(趙熙一) 79
주석면(朱錫冕) 262, 264
주은쇠(朱銀釗) 219, 221
주제풍(朱濟豊) 200
지민원(智敏元) 296, 315
지석영(池錫永) 90, 192

ㅊ

차성규(車聖圭) 200
차원길(車元吉) 297
차장동(遮牆洞) 102
차진선(車辰先) 296, 315

채경묵(蔡慶默) 69, 74, 75
채기엽(蔡基燁) 160
천성재(千成在) 241
최동골(崔同骨) 257, 258
최명기(崔明基) 317, 318
최문겸(崔文兼) 200
최문현(崔文鉉) 45, 46, 47, 49, 51, 52, 53, 55, 56, 60, 61, 62, 65, 67, 68, 69, 70, 71, 73, 74, 88, 97
최병용(崔秉用) 200
최병우(崔炳宇) 200
최석주(崔錫疇) 73, 75, 76, 80, 89, 97
최성근(崔聖根) 219, 221
최성도(崔成道) 319
최시형(崔時衡) 150, 253, 259, 261, 262, 263, 264, 266, 299, 303, 304, 325
최영두(崔榮斗) 288
최우락(崔禹洛) 332
최일서(崔一西) 158
최재복(崔在卜) 99, 100, 200
최제우(崔濟愚) 260, 265
최준상(崔俊相) 238
최창조(崔昌祚) 102, 194, 197, 199
최한경(崔翰京) 307
추재풍(秋才風) 296, 301

ㅌ

태정진(泰貞鎭) 250, 251

ㅍ

편합덕(片合德) 298, 299, 300

ㅎ

하윤현(河允玄) 288
한갑수(韓甲守) 331
한국현(韓國玄) 203
한규설(韓圭卨) 222, 230
한기주(韓基周) 267, 268
한명순(韓明淳) 331
한명옥(韓明玉) 331
한용건(韓用健) 73, 75, 76, 77, 80, 89, 91, 92, 97, 166, 167
한용기(韓用基) 257, 258
한지연(韓止淵) 138, 140
함종국(咸鍾國) 225
함태영(咸台永) 139, 142, 156, 252
현학진(玄學振) 93
현학진(玄學瑱) 165, 166, 167
홍만보(洪萬甫) 316
홍병섭(洪秉燮) 254, 255
홍우형(洪祐亨) 182
홍인성(洪仁聖) 234, 235, 236, 237
홍재준(洪在駿) 76
홍종성(洪鍾成) 169
홍종우(洪鍾宇) 298, 300
홍종한(洪鍾澣) 323, 324
황금천(黃金千) 220
황기인(黃夔仁) 149
황동준(黃東俊) 232
황만기(黃萬己) 259, 261, 262
황명연(黃命淵) 225

황세영(黃世永) 250, 251
황순용(黃順用) 250
황정심(黃正心) 296
황정오(黃正五) 296
황하일(黃河一) 170

ㄱ
강원도(江原道) 205, 219, 220, 221
강진(康津) 45
강진군(康津郡) 226
강화부(江華府) 219, 221
개성부(開城府) 105, 106
개천군(价川郡) 202
경기(京畿) 252, 254, 255
경기도(京畿道) 141, 253
경상남도(慶尙南道) 122, 124, 135, 136, 138, 153, 154, 223, 224, 296, 297
고금도(古今島) 45
고부군(古阜郡) 217
고산군(高山郡) 226
고삽면(高揷面) 52
고창군(高敞郡) 161, 287
곡성군(谷城郡) 249
공주(公州) 81, 109, 110, 112, 204, 207, 228
공주군(公州郡) 85, 229, 267
공주부(公州府) 189
광주(廣州) 65, 131
광주군(光州郡) 238, 240
광주부(光州府) 270
괴산군(槐山郡) 121
금련산(岑連山) 228
금암(琴巖) 205
금목면(金目面) 59

ㄴ
나주부(羅州府) 240
남면(南面) 55
남해군(南海郡) 223

ㄷ
단천군(端川郡) 327, 332
담양군(潭陽郡) 269, 271, 275, 276, 279
답내면(畓內面) 217
당진군(唐津郡) 221, 222
도분리(島分里) 55
동래부(東萊府) 90, 191, 192
동복군(同福郡) 238, 240
동하면(東下面) 226

ㅁ
면천군(沔川郡) 208, 209
목천군(木川郡) 208
목천진(木川鎭) 228
무주군(茂朱郡) 223, 246
문의(文義) 228
문의군(文義郡) 247
문화군(文化郡) 76, 177, 178, 181, 194, 197

ㅂ
배천군(白川郡) 147
봉산군(鳳山郡) 208, 210, 211, 215
북면(北面) 303, 304

ㅅ
사동(寺洞) 205
산내면(山內面) 228
산외면(山外面) 110, 205
산청군(山淸郡) 123
삼남면(森南面) 157
상원군(祥原郡) 203
상하(上下) 228
서면(西面) 51
서울 83, 118, 125, 126, 128, 129, 153, 261
서천군(舒川郡) 119, 143
소전리(蘇田里) 228
속리산(俗離山) 299
송화군(松禾郡) 108, 113, 218
수원군(水原郡) 203
신만사(新滿社) 327

ㅇ
안동부(安東府) 125, 126, 128
안성군(安城郡) 203
안시동(安始洞) 327
안악군(安岳郡) 115, 116
양성군(陽城郡) 254, 255
연산(連山) 47, 48
영광(靈光) 156
영흥군(永興郡) 208, 209
예천(醴川) 124, 125, 127, 128
오룡동(五龍洞) 59
옥천(沃川) 261
용담(龍潭) 51
용인(龍仁) 203, 254
원산항(元山港) 73
원주(原州) 169, 261
은율군(殷栗郡) 87, 88, 94, 218
이천(利川) 261
이천군(利川郡) 139
인천(仁川) 219, 252
인천부(仁川府) 203
인천항((仁川港) 220, 250, 251
일본(日本) 62, 63, 65, 73, 94, 114, 115, 116, 220, 250
임천(林川) 176, 177
임천군(林川郡) 53, 54, 170, 171, 175, 176, 181

ㅈ
자산군(慈山郡) 219, 220
장성(長城) 146, 154, 160
장성군(長城郡) 144
장연군(長淵郡) 102, 104, 107, 113, 193, 194, 196, 197, 198, 199, 202
재령군(載寧郡) 98, 195
전라남도(全羅南道) 154, 156, 159, 160, 161, 237, 238, 243, 249, 256, 259, 275, 276, 278, 279, 280, 283, 284, 285, 286, 287, 294, 295, 305, 306, 316, 317
전라도(全羅道) 50, 260, 265, 269
전라북도(全羅北道) 217, 223, 224, 225, 226, 227, 245, 247, 287, 288, 289, 291,

292, 293, 294, 306, 307, 308, 322, 324
전주부(全州府) 45, 51, 99, 100, 101, 118, 200, 201, 226, 240
정신평(庭神坪) 52
정읍(井邑) 256, 269, 306
지평군(砥平郡) 219, 220
직산군(稷山郡) 267

ㅊ
창전리(蒼田里) 217
청도(淸道) 74
청산(靑山) 261
청주(淸州) 110, 171, 172, 173, 174, 175, 189, 190, 205, 303, 304
청주군(淸州郡) 172, 173, 175, 189, 205
충주(忠州) 56, 59, 62
충주부(忠州府) 190
충청(忠淸) 121
충청남도(忠淸南道) 116, 117, 118, 119, 120, 142, 143, 151, 152, 208, 209, 210, 221, 227, 228, 229, 243, 244, 266, 269, 277, 278, 289, 290, 296
충청도 55, 170, 171, 172, 175, 260, 265
충청북도(忠淸北道) 231, 232, 233, 247, 248, 296

ㅌ
태인(泰仁) 101, 200, 256, 323
토산군(兎山郡) 249

ㅍ
평강(平康) 52
평산군(平山郡) 49
평안남도(平安南道) 219, 220
평안북도(平安北道) 296,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평양부(平壤府) 202, 203

ㅎ
하동군(河東郡) 153
하옹동(下甕洞) 52
한산(韓山) 81, 86, 117, 119
한산군(韓山郡) 178, 179, 180, 187, 188
한성(漢城) 47, 49, 64, 65, 75, 77, 78, 80, 89, 91, 92, 97, 121, 130, 132, 134, 135, 138, 139, 140, 142, 168, 169, 208, 219, 221, 224, 225, 230, 233, 236, 237, 252
한성부(漢城府) 139, 140, 142, 219, 285, 286, 296, 300
함경남도(咸鏡南道) 208, 209, 318, 319, 320, 327, 331
함열(咸悅) 118
해월(海月) 260, 265

해주부(海州府) 70, 71, 72, 75, 88, 92, 93, 94, 98, 101, 102, 103, 104, 106, 107, 108, 114, 115, 116, 178, 182, 183, 184, 185, 186, 190, 193, 194, 195, 196, 198, 202, 213
호남(湖南) 118, 167
홍주부(洪州府) 95, 97, 187, 188
홍천군(洪川郡) 226
황산(黃山) 123
황해(黃海) 165, 167
황해도(黃海道) 146, 147, 149, 165, 177, 178, 208, 209, 210, 211, 213, 214, 215, 216, 217, 218, 248, 249, 250, 296, 297, 308, 309, 310
흥덕군(興德郡) 154, 159
흥해군(興海郡) 90, 191

연구소 발간 자료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발간 현황

▸ 1권(2006,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취어(聚語)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양호전기(兩湖電記)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

▸ 2권(2006,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謄錄)

▸ 3권(200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수록(隨錄) 동비토록(東匪討錄) 김기술 문서(金箕述文書) 박봉양경력서(朴鳳陽經歷書)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 동요일기(東擾日記) 토비대략(討匪大略) 소모일기(召募日記)

▸ 4권(200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금번집략(錦藩集略) 홍양기사(洪陽紀事) 남유수록(南游隨錄) 피난록(避亂錄) 동비토론(東匪討論)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 황해도동학당정토약기(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갑오해영비요전말(甲午海營匪擾顚末)

▸ 5권(2008,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영상일기(嶺上日記)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갑오사기(甲午事記) 갑오약력(甲午略歷) 겸산유고(謙山遺稿) 동도문변(東徒問辨)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염기(廉記) 강재유고(剛齋遺稿) 난파유고(蘭坡遺稿) 연파집(蓮坡集) 오남집(吾南集) 사복재집(思復齋集) 복재집(復齋集) 송사집(松沙集) 면앙집(勉菴集) 육유재유고(六有齋遺稿) 담원문록(薝園文錄) 호산집(壺山集) 영회당사집(永懷堂史輯) 영회기(永懷記) 한달문 옥중서신(韓達文獄中書信) 거의록(擧義錄) 취의록(聚義錄) 김상철이력행장(金相轍履歷行狀) 봉남일기(鳳南日記)

▸ 6권(2008,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시문기(時聞記) 약사(若史) 경란록(經亂錄) 갑오동란록(甲午東亂錄) 갑오기사(甲午記事) 의산유고(義山遺稿) 복암사집(復菴私集) 금산의병순의비(錦山義兵殉義碑) 홍성 금석문(洪城 金石文) 갑오일기(甲午日記) 정운경가 동학고문서(鄭雲慶家東學古文書) 세장년록(歲藏年錄) 나암수록(羅巖隨錄) 시경록(時經錄) 기문록(記聞錄) 농산집(農山集) 유하집(柳下集) 백곡지(柏谷誌)

▸ 7권(20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장계(狀啓) 계초존안(啓草存案) 찰이전존안(札移電存案) 금영래찰(錦營來札)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册)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册)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册)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소착즙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所捉什物幷錄成册)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將領姓名竝錄成册)

▸ 8권(20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 선봉진서목(先鋒陣書目)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선봉진상순무사서(부잡기)[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李圭泰往復書竝墓誌銘)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 9권(20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갑오실기(甲午實記) 소모사실(召募事實) 교남수록(嶠南隨錄) 경상도소모영전곡입하실수성책(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册) 효유문(曉諭文) 전주부전전라도각읍상납중비류소탈전목미태구별성책(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木米太區別成册)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규모관사조약별록성책(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摸關辭條約別錄成册) 도인경과내력등 문건(道人經過來歷등 文件) 공산초비기(公山剿匪記) 모충사 전망장졸씨명록(慕忠祠 戰亡將卒氏名錄) 호연초토영각읍절의열행인성명성책(湖沿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册) 남정일기(南征日記) 사정일기(沙亭日記)

▸ 10권(20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 김약제일기(金若濟日記) 백석서독(白石書牘) 노정약기(路程略記)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謄書)

▸ 11권(20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繹史)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繹史) 본교역사(本教歷史)

▸ 12권(201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중범공초(重犯供草) 이병휘공초(李秉輝供草) 이준용공초(李埈鎔供草) 동학관련판결선고서(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본사관함등(日本士官函謄) 곡성군수보장(谷城郡守報狀)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 동학당정토약기(東學黨征討略記)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册) 나주명록(羅州名錄)

▸ 13권(20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대선생주문집(大先生主文集) 대선생사적(大先生事蹟)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천도교서(天道教書)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발간 현황

▸ 1권(20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종리원사 부 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순교약력(殉教略曆), 고흥군 교구역사(高興郡教區歷史), 균암장 임동호씨 약력(均菴丈林東豪氏略曆), 이종훈 약력(李鐘勳略曆)

▸ 2권(20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창계실기(蒼溪實記)

▸ 3권(20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초전(鶴樵傳) 1

▸ 4권(20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초전(鶴樵傳) 2

▸ 5권(20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미나미고시로문서(南小四郎文書)

▸ 6권(201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3

▸ 7권(201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4~6

▸ 8권(201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7~10

▸ 9권(201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정일기(東征日記),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溪中日韓關係史料)

▸ 10권(201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별계(別啓), 사법품보(司法稟報)

▸ 11권(201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군 편지(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김진휘 등이 보낸 통문, 이병림 등이 작성한 품목, 민영주가 작성한 간찰, 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에게 내린 유서, 수령이 풍헌 등에게 보낸 전령,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 도약장소에서 사사로이 보낸 통문, 민준호가 작성한 간찰, 유학 김영택을 별감으로 임명하는 첩, 유학 김성택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첩,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북하면 도면정 성하동이 작성한 보고, 예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순포중군이 집사에게 보낸 전령, 도통장이 작성한 통문, 나주 목사가 발급한 완문, 나주 목사가 홍우전에게 발급한 물침첩, 전라도 관찰사하 한학모에게 발급한 표, 남평현감이 이정돈에게 발급해 준 물침표,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 서산 유회장이 작성한 통문, 해미 염솔면 이석노 등이 작성한 단자, 의정부가 나주 목사에게 보낸 관, 어천면 주인에게 보낸 전령, 구본협 등이 작성한 상서, 수곡리에 거주하는 대소 민인이 작성한 등장, 어상천 면장 등이 작성한 완문, 조호승 등이 작성한 등장, 백기효를 장흥 도방수장으로 차정한 문서 등, 방수장 박모가 작성한 서목, 북삼면 상유사 황모 등이 작성한 첩정, 이서면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외귀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강계 도호부사가 작성한 서목, 이재희가 작성한 원정, 고산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이도재가 순천 조 석사에게 보낸 간찰,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동오면 의거소 좌목,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서, 담양 사인 구상순이 작성한 통문), 춘당록(春塘錄)

▸ 12권(202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현감 하첩 5점, 소모관 전령, 1895년 초토사 첩정, 1895년 호남 초토사 서목, 순찰사 효유문, 능주 오면재 문서, 오통절목, 방화적 절목, 의관령 방화적 조목, 화북면 첩정, 각 동 입규 조목, 화북면 품목, 입규 조목, 조약 절목, 화북면 집강 명단, 유회성책, 황해도 강령현민 등장, 영천 안핵계초, 도소 사통, 동학소 입전기, 간찰 6점)

▸ 13권(202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집〉

겸산집, 고당집, 고헌유고, 급산집, 당천집, 돈헌유고, 동와유고, 방려문집, 병암집, 사남유고, 송재집, 심석재집, 우인당유고, 율은집, 지암집, 청사유고, 취묵헌유고

▸ 14권(202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일본 사료〉

동학당의 상황, 폭민 동학당,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

▸ 15권(202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일본 사료〉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찰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 16권(202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일본 사료〉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 내란실기 조선 사건, 조선폭동실기, 동아선각지사기전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발간 현황

▸ 창간호(2023)

〈일반논문〉

배항섭,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김양식,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신진희, 경북 예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특집논문〉

유바다,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정을경,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조재곤,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변동

전경목,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자료소개〉

신영우, 갑오일기 해제

갑오일기 영인본

▸ 제2호(2024)

〈특집논문〉

왕현종, 19세기말 고부지역 수리시설 운영과 만석보 수세 징수

조광환,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홍성덕, 1894년 고부 '만석보'의 위치 재검토

〈일반논문〉

조재곤,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이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김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특징 및 현황과 활동거점 연구

신영우, 1894년 앙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

신순철,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서평>
이영호, 우리가 겪은 그들의 전쟁
-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조재곤, 푸른역사, 2024) -

<자료소개>
이병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왕현종,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조선사편수회, 1934)

▸ 제3호(2024)
<특집논문>
정경호,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찰
- 뉴욕 언론지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
유바다, 독일제국 외교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김태웅,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인식과 대응
한동훈, 청일전쟁 전후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 동학농민운동 인식을 중심으로 -
권의석,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영일관계의 변화

<일반논문>
녹두팀 · 박정민,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엄찬호,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남경국, 헌법적 관점에서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 논의를 중심으로 -
홍성덕,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자료소개>
이병규, 이풍암공실행록(李澧菴公實行錄)
김희태,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幷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민전쟁 기록 -

▸ 제4호(2025)

〈특집논문〉

김양식,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
-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 중심으로 -

성주현, 김동규 기증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일반논문〉

신진희,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혁명

김현선,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홍성덕,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 · 활용방안

〈서평〉

유바다,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지수걸 저, 2024, 역사비평사)-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

총괄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기획 **이병규** (연구조사부장)
편집 **오진경** (연구조사부)
번역 **김기성**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전임연구원)/ 법부 검사국 기안
최진욱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법부 형사국·사리국 기안
교감 **전병무**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법부 검사국 기안 | 법부 형사국 기안 | 법부 사리국 기안

인쇄 2025년 8월 14일
발행 2025년 8월 30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홈페이지 www.1894.or.kr
전화 063-530-9432
전송 063-538-2893
편집인쇄 흐름 (www.heureum.co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비매품

ISBN 979-11-990487-4-4 94910
ISBN 979-11-979477-1-1 (세트)

* 발행처의 승인 없이는 본서의 무단복제를 금함